

독도자료실 자료해제집

2004. 3

해양수산부



간행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통합 관리함으로써 독도 연구자들에게 종합적인 연구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독도관련 자료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독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도에 관한 자료들을 연차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왔습니다. 이들 자료는 2002년 10월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독도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 수집된 자료는 도서 7,203권과 지도 607점 등 모두 7,810점에 달합니다.

그러나 독도자료실에 소장된 많은 자료들이 한자로 쓰인 고서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기록된 자료로서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독도관련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 않고도 쉽게 자료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도자료실 소장자료 중 독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312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제(解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에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독도자료실 자료해제작업을 주관하여 주신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이석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도자료실 설치와 독도자료해제집 발간이 우리나라의 해양영토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국토사랑의식을 고양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3월

해양수산부장관 장 승 우

여 백

- 12 -

범 례

1. 편찬취지

이 『독도자료실 자료해제집』은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갖가지 도서와 지도에 대한 기본자료집이다. 독도자료실의 자료들은 우선 도서와 지도로 분류하고, 도서는 다시 총류, 인문학자료, 사회과학자료, 자연과학자료로 분류하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참조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용자들이 원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필요한 원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들이 독도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2. 수록범위

- 1)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소장자료 중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독도와 관련이 있는 도서와 지도를 해제대상으로 하였다.
- 2) 해제의 종수는 도서 208종과 지도 104종이다.

3. 분류

- 1) 자료를 먼저 도서와 지도로 구분하였다.
- 2) 도서에 대한 해제는 자료의 관련분야를 기준으로 총류, 인문학자료, 사회과학자료, 자연과학자료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간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국자료, 동양자료, 서양자료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 3) 지도에 대한 해제 역시 간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국자료, 동양자료, 서양자료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4. 해제

- 1) 자료명과 간단한 서지사항을 앞에 기재하였다.
- 2) 해제작성은 저자의 소개를 포함하여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자료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순서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기술한 내용과 순서는 바꾸었다.
- 3) 자료별 해제분량은 원고지 5-12장을 기본으로 하되, 자료의 가치나 분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 4) 문장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고유명사나 사람이름, 자료명, 지명, 전문용어는 원어를 위주로 표기하였다.

5. 체제

- 1) 자료제목 : 원본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 2) 도서번호 : 독도자료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분류번호를 기재하였다.
- 3) 저 자 : 저자의 원명을 기재하였다.
- 4) 발행기관 : 자료의 발행처나 기타 생산기관을 표기하였다.
- 5) 연 대 : 일반적인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고유의 성질을 띤 것은 그대로 표시하였다. 연대는 서기로 표기하고, 王朝年과 年號年 등은 ()로 묶었다.
- 6) 부 호 : 해제문 안의 서명이나 자료명은 『 』(보편적인 것은 제외), 항목 또는 부분인용은 「 」, 인용문은 “ ” 또는 ‘ ’ 등으로 표시하였다. 그 외의 부호는 일반의 통용의 예에 따랐다.
- 7) 구 성 : 일반적으로 자료의 분량을 기록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책, 권을 기록하였다.

6. 배열

- 1) 한국자료는 자료명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 2) 동양자료는 자료명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였다.
- 3) 서양자료는 자료명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다.

7. 업무분담

- 1) 해제작성자의 성명은 본문 말미의 ()안에 기입하였다.
- 2) 해제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 연 구 책 임 자 : 이석용(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감 수 :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관, 법학박사)
 - 인문사회분야 자료해제 : 임영정(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문학박사)
양태진(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장, 문학박사)
 - 국제법분야 자료해제 : 김찬규(경희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이석용(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해양수산분야 자료해제 : 한상복(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장, 이학박사)
이상태(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문학박사)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문학박사)
- 교 열 및 편 집 : 곽영조 전영준 박수진 김지영 조은정

8. 색인

- 1) 저자명색인은 서지사항 저자란에 기록된 인명 및 관서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색인은 한글 자모순으로 작성하되, 동양자료와 서양자료는 한글음순을 따랐다.

여 백

목 차

- > 간행사 / i
- > 별 례 / iii

I. 총 류

1. 한국자료 / 3

- 舊韓國官報(구한국관보)3
- 大韓每日新聞(대한매일신문)5
- 星湖僿說類選(성호사설유선)7
-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9
- 制憲國會速記錄(제헌국회속기록)11
- 황성신문13

2. 동양자료 / 15

- 官報(明治編)15
- シ-ボルト先生渡來百年記念論文集17
- 倭漢三才圖會19
- 朝鮮總督府官報22
- 朝鮮總督府月報24
- 朝鮮總督府調査月報26

3. 서양자료 / 27

- Encyclopaedia Britanica, 1st ed.27
-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28

II. 인문학자료

1. 한국자료 / 31

- 各觀察道去來案(각관찰도거래안)31
- 各觀察府照會存案(각관찰부조회존안)32

•各司謄錄(각시등록)	33
•各部請議書存案(각부청의서존안)	35
•江原監營關牒(강원감영관첩)	37
•江原道關草(강원도관초)	38
•江原道來去案(강원도래거안)	39
•江原道誌(강원도지)	41
•高麗史(고려사)	43
•高麗史節要(고려사절요)	44
•嶠南誌(교남지)	45
•交涉局日記(교섭국일기)	46
•內部來去文(내부래거문)	47
•內部來去案(내부래거안)	49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	50
•大東輿地圖의 研究	53
•大東地志(대동지지)	54
•島嶼文化(도서문화)	56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57
•독도와 동해	58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59
•東國通鑑(동국통감)	67
•東萊港報牒(동래항보첩)	68
•同文彙考(동문회고)	69
•東史綱目(동사강목)	70
•東輿備考(동여비고)	73
•(국역)변례집요	76
•北路紀略(북로기략)	77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	79
•(朝鮮時代)私撰邑誌(조선시대 사찬읍지)	81
•三國史記(삼국사기)	99
•三國遺事(삼국유사)	100
•順菴集(순암집)	102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	103
•鵝溪遺稿(아계유고)	104

• 藥泉集(약천집)	106
• 輿圖備志(여도비지)	107
• 邑誌(읍지)	109
• 日省錄(일성록)	117
• 全羅南道誌(전라남도지)	120
•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121
• 朝鮮湖南誌(조선호남지)	127
• 朝鮮寶輿勝覽(조선환여승람)	129
• 조선후기 지방지도	132
•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135
• 增正交隣志(증정교린지)	137
• 勅令(칙령)	138
• 通文館志(통문관지)	141
• 漂人領來臈錄(표인영래등록)	143
• 한국 고지도 발달사	146
• 韓國近代邑誌(한국근대읍지)	148
• 韓國文集叢刊(한국문집총간)	155
• 韓國의 古地圖	158
• 韓國의 옛 地圖	160
•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167
• 韓末外國人記錄	169
• 海東釋史(해동역사)	175
• 海東地圖(해동지도)	177
2. 동양자료 / 183	
• 甲午戰前釣魚列嶼歸屬考 兼質日本奧原敏雄諸教授	183
• 三國通覽圖說	185
• シ-ボルト關係書翰集	187
• シボルトと鎖國開國日本	189
• シ-ボルト研究	191
• シ-ボルト參府旅行中の日記	194
• 新考 伊能忠敬	196
• 伊能忠敬の科學的業績	199
• 伊能図に學ぶ	201

-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204
- 朝鮮地誌略207
- 朝鮮策略210
- 釣魚島 관련자료 I212
- 釣魚島 관련자료 II214
- 釣魚島-歷史與主權214
- 竹島考證 (上)·(中)·(下)216
-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218
-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219
- 中國海疆歷史與現狀研究223
- 韓國開化期史料集成224
- 韓海通漁指針227
- PH. Fr. von Siebold 研究論集229

3. 서양자료 / 231

- Corea: The Hermit Nation231

III. 사회과학자료

1. 한국자료 / 235

-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대한제국기정책사자료집)235
- 독도논쟁236
-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237
- 독도연구239
- 독도의용수비대와 국제법241
- 독도특수연구243
- 섬의 국제법상 지위244
- 統監府法令資料集(통감부법령자료집)246
- 解放前後 美國의 對韓政策史 資料集247
- (국역)해행총재248

2. 동양자료 / 253

- 孤島の歸屬に關する法理253
- 島根縣竹島の新研究254
- 世界の領土·境界紛爭と國際判例255

• 領土歸屬の國際法	256
• 日本國領土源流 釣魚列嶼主權辨(上·中·下)	260
• 日本の領域問題(一)	262
• 日本の領域問題(二)	263
• 日本の領域問題(三)	265
• 日本の領域問題(最終回)	267
• 日本の領土	268
• 日本の領土處理における二つの盲點 -千島と沖繩	269
• 日本外務省 特殊調査文書	270
• 日韓外交資料集成	272
• 朝鮮通漁事情	273
• 竹島(獨島)領有に關する若干の考察	274
• 竹島=獨島問題と日本國家	275
• 竹島歸屬をめぐる(一)	277
• 竹島歸屬をめぐる(二)	278
• 竹島歸屬をめぐる(三)	279
• 竹島論争の問題點	280
• 竹島分争	283
• 「竹島紛争」再考 - 領土權原をめぐる國際法の觀點から	284
• 竹島の歸屬をめぐる日韓紛争	285
• 平和條約と竹島(再論)	286
3. 서양자료 / 288	
•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288
• The Aegean Sea 2000 :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egean Sea	292
•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295
•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96
• The Bolivia-Chile-Peru Dispute in the Atacama Desert	297
• Boundary Problems and the Formation of New States	299
• The Brunei-Malaysia Dispute over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International Law	301
• Ceuta and the Spanish Sovereign Territories : Spanish and Moroccan Claims	302

- Claims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304
-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307
- Developments in the Technical Determination of Maritime Space ...311
- The Eastern Greenland Case in Historical Perspective313
- The Ecuador-Peru Boundary Dispute : The Road to Settlement ..317
- Essays in Honour of Wang Tieya318
- Estoppel, Acquiescence and Recognition in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 Settlement319
- The Falkland Islands and their Adjacent Maritime Area321
- The Falklands/Malvinas Case : Breaking the Deadlock in the
Anglo-Argentine Sovereignty Dispute323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VI325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XXII326
- Geographical Information in Delimitation Demarcation and
Management of International Land Boundaries327
- Historic Titles in International Law329
- How to Prove Title to Territory : A Brief Practical
Introduction to the Law and Evidence331
- Internation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Past, Present and Future332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333
- International Law335
- International Law and Self-Determination337
-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1,2338
-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3343
-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344
- Island Disputes and the Law of the Sea :
An Examination of Sovereignty and Delimitation Disputes347
- The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n Relation to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348
- The Land Boundaries of Indochina: Cambodia, Laos and Vietnam ...350
- Marine Policy352

- Maritime Boundaries in the Baltic Sea : Past, Present and Future353
- The Maritime Boundaries of the Adriatic Sea354
- Parting the Red Sea : Boundaries, Offshore Resources and Transit ..355
-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357
- Peaceful Resolution of Major International Disputes358
-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Reports359
- Positioning and Mapping International Land Boundaries360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362
- The Sino-Vietnamese Approach to Managing Boundary Disputes363
- Small Islands and Big Politics : The Tonbs and Abu Musa
in the Gulf365
- Some Problems Relating to the Definition of Insular Formations
in International Law : Islands and Low-Tide Elevations367
- Sovereignty over the Paracel and Spratly Islands368
- The Spratly Islands Dispute : Who's on First?371
- State Practice Regarding State Succession and Issues of Recognition :
The Pilot Project of the Council of Europe374
-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376
- Third Party Dispute Settlement in an Interdependent World379
- Undelimited Maritime Boundaries of the Asian Rim in the
Pacific Ocean381
- The Verdict of the League : China and Japan in Manchuria ...382
- The Verdict of the League : Columbia and Peru at Leticia383
- When is an 'Island' Not an 'Island' in International Law?
The Riddle of Dinkum Sands in the Case of US v. Alaska385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386

IV. 자연과학자료

1. 한국자료 / 391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391
- 독도측량 지도제작 사업보고393
- 동해안 항로지394

• 동해의 울릉군 독도 연구자료집	397
• 섬 연구회 논문집, 독도 특집호	399
• 울릉도해역의 일일수온변화	400
• 韓國沿岸水路誌(한국연안수로지)	400
• 韓國沿岸水路誌(한국연안수로지), 제1권(동해안편)	403
• 한일어업관계 조사자료	404
•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405
• Korea Review	406
• Korean Repository	406
2. 동양자료 / 408	
• 簡易水路誌 朝鮮沿岸	408
• 朝鮮水産開發史	411
• 寶瀛水路誌 제2권 제2판	411
3. 서양자료 / 414	
• 서양자료로 본 독도	414
• The China Pilot, 3rd ed.	415
• China Pilot, 4th Edition	420
• Discovery of Australia	425
• Japan Pilot, vol. I, 7th ed.	426
•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427
• Sailing Directions (Enroute) Coasts of Korea and China	429
• Sailing Directions (Enroute) Japan, volume II	433
•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434
•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	436

V. 지도

1. 한국자료 / 441	
• 대한민국	441
• 大韓全圖(대한전도)	441
• 대한해협 및 부근	442
• 독도	443

• 독도(獨島)	443
• 東海及黃海(동해급황해)	444
• 동해 및 황해	444
• 최신판 우리나라전도	445
• 한국근해(일본서부)	445
• 한국남부해역 해저지형도	446
• 한국동부해역 해저지형도	446
• 한국동안	447
• 韓國東海(日本海)及 日本諸島 南方諸島	448
• 한국에서 타이완	448
• Korean World Map compiled by K. Kwon and H. Lee in 1402	449
2. 동양자료 / 451	
• 1875년 출판된 부산항	451
• 1876년 출판된 朝鮮東海岸圖	451
• 20만분지 1 지형도	452
• 50만분지 1 도별(道別) 지형도	453
• 5만분지 1 조선교통도	454
• 5만분지 1 지형도	454
•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455
• 근세한국 5만분지 1 지형도	456
• 大日本國沿海略圖 속의 독도	458
• 레지의 조선도(1721)	459
• 舞水端至豆滿江	460
• 三國接壤之圖	461
• 實測朝鮮全圖	461
• 鴨綠江口	462
• 日本近海 海底地形圖	462
• 日本近海演習區域一覽圖	463
• 日本總部及附近諸海	463
• 日本海西部	464
• 조선총독부제작 1만분지 1 조선지형도 집성	465
• 朝鮮八道之圖	465
• 最新極東大地圖	466

• 最新實測日清韓三國圖	466
• 韓國全圖	467
• 咸興灣至舞水端	467
• 海上交通保護擔任區域圖	468
• 黃海, 東支那海(東海)及 附近	468
• 黃海 東海 及 附近	469
• General Map of Eastern Asia	469
• Karte vom JAPANISCHEN REICHE	470
• Map of Chosen	470
• Map of Chosen	471
• Map of Chosen	471
• Ma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72
• Reproduction der Karte vom Japanischen Reich nach Originalkarten und astronomischen Beobachtungen der Japaner von V. Siebold 1840	472
• Road Construction Map of Korea	473
3. 서양자료 / 474	
• 1798년 출판된 북서태평양	474
• 1852년에 조사된 한반도 동해안	477
• 1855년 출판된 조선지도	478
• 아시아지도(Map of Asia, 1615)	479
• 조선지도(1747)	480
•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와 독도(1864)	481
• Aeronautical Charts	482
• Carte de CORÉE	482
• Carte Des DECOUVERTES faites en 1787	483
• Carte des Huit Provinces du TCHAO SIAN	484
• Carte des TROIS ROYAUMES	485
• Carte du Royaume de Kau-li ou Corée(조선도)	485
• Carte Generale de L'OCEAN PACIFIQUE	486
• Chart of the Coast of China and of the Japan Islands	486
• A Chart of the Indian Ocean and a part of the Pacific Ocean	487

- A Chart of the N. E. Coast of ASIA, and Japanese Isles with the Track of H.M.S. Providence and her Tender in 1796 and 1797488
- Chart of the Northern Seas of China and Japan including the Discoveries of H.M.S. SAMARANG 1845488
- A Chart of the World exhibiting the Track of M. de La Perouse and the Route of M. Lesseps across the Continent489
- Chart Showing the Tracks of H.M.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489
- China490
- CHINA(중국)490
- CHINA(중국)491
- CHINA and JAPAN491
- CHINA divided into its great Provinces and the Islet of JAPAN (중국 및 일본도)492
- CHINA nebst COREA(중국 및 조선도)492
- Chinese Empire and Japan493
- Corea and Japan493
- CORÉE494
- CORÉE494
- CORÉE d'Après l'Original dressée par Andre Kim en 1846495
- De Fer의 동아시아지도(1705)495
- Die Aufnahmen an der sued Kueste der Mandschurei496
- Die Neuen Departements-Haupstaedte von JAPAN497
- Eastern Soviet Union497
- General Map of Korea498
- General Map of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498
- Islands of JAPAN with Corea, Manchooria and the New Russian Acquisitions499
- JAPAN499
- Japan and Korea500
- Japan and Korea500
- JAPAN and KOREA501

- Korea, Nordost-China und Sued-Japan502
- KOREA oder Tscho-Sen der Japaner502
- Map of China503
- Map of CHO-SEN or COREA503
- Map of Korea and Manchuria504
- Map of Manchuria504
- Map to Accompany the Notes on Manchuria505
- North West Pacific Ocean including Yellow, Japan & Okhotsk
Seas, the Kuril Islands and Kamchatka505
- Pacific Ocean506
- Pacific Ocean(North-West Part)506
- Partie de la Chine507
- People's Republic of China507
- Royaume de Corée(조선지도)508

저자명색인511

I. 총 류

1. 한국자료 / 3
2. 동양자료 / 15
3. 서양자료 / 27

여 백

1. 한국자료

舊韓國官報(구한국관보)

도서번호 : 독도(P) 354.51 7383 7

저 자 : 舊韓國政府 官報局

발행기관 : 아세아문화사(영인본) (원본 舊韓國政府 官報局 官報課)

발행년도 : 1973년 (원본 1894년 6월 21일~1910년 8월 29일)

구 성 : 국배판 전 22책

舊韓國政府의 官報局 官報課에서 발간한 官報로서 高宗 31년(1894) 金弘集 내각이 甲午更張을 일으켜 국정을 쇄신하던 시기인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에 시작하여 隆熙 4년(1910)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던 날 까지 총 4,876호를 日刊으로 발간하고 폐간되었다.

官報는 첫 발행일이 음력 6월 21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관보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의 것을 한데 모아서 발행하였으므로, 첫 발행일자는 갑오개혁이 실시되던 6월 24일 이후, 즉 6월 28일로 비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렇지만 관보의 발행계획은 그 전에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또 다른 관보가 발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추측은 국가사업으로 활자로 인쇄되는 관보의 첫 발행에는 반드시 창간사 내지 이에 준하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국왕의 勅語 또는 국가적 고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자 관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

한편 관보는 처음에 號數 없이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던 것을 1895년 4월 1일부터 제 1호 號數를 붙여 매일 정기적으로 제 4,768호까지 발행하였다. 官報가 이전의 「朝報」의 체제로부터 명실공히 근대적 官報 체제로 개편된 것은 1895년 4월 1일부터이다. 이때부터 號數와 曜日를 표시하고 기사의 내용을 勅令·閣令·敍任·宮廷錄事·彙報 등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다. 官報는 이미 1894년 12월 11일자부터는 국한문을

혼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신식의 鉛活字로 인쇄된 것은 제 77호부터이다.

官報를 발행하는 官報課는 정부의 관제 개편에 따라 1895년 4월 1일부터는 內閣의 記錄局에, 1896년 10월 13일부터는 議政府 總務局에, 1905년 3월 1일부터는 參書官室·法制官 등에 소속되었으며, 李完用이 총리대신이 되어 議政府를 內閣으로 고치는 1907년 6월 16일부터는 다시 內閣의 法制局에 소속되었다. 이처럼 그 소속에 변동이 많았던 것에서도 우리는 그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구한국정부는 외압과 절박한 국내 여건을 이겨내고 16년 동안에 다섯 번의 局 課를 개편하는 와중에도 총 15,771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관보를 발행했던 것이다.

官報는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기사가 있을 때에는 마감시간이 지났거나 공휴일이라도 ‘號外’로 발행하였다. 또 장편기사일 경우는 附錄으로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1906년 9월부터는 매일 「官報摘要目錄」을 발행하였다.

官報에 게재하는 사항은 시기별로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奏議’ 5(1895년 3월 29일자)로 官報 제 73호(1895년 閏 5월 25일자)에 밝혀진 官報의 게재 사항을 살펴보면, ① 詔勅, ② 法律, ③ 勅令, ④ 閣令, ⑤ 部令, ⑥ 布達(宮內府에서 發하는 명령), ⑦ 訓令, ⑧ 警務廳漢城府令 및 告示, ⑨ 豫算, ⑩ 敘任及辭令, ⑪ 宮廷錄事(動駕·動輿·祭典·王族事項), ⑫ 彙報—官廳事項, 警察事項, 軍事, 學士, 産業, 褒賞事項, 司法(特赦·死刑執行), 雜事(氣象·測候·船舶難破), ⑬ 外報, ⑭ 廣告 등이다.

다음으로 官報 제 3,947호(1907년 12월 12일자)에 보이는 閣令 제 1호 「官報編制에 관한 件」에는 官報의 게재 사항을 ① 國家 또는 帝室에 관한 것으로 國務大臣이나 宮內府大臣이 副署한 詔勅, ② 協約·協定·約束, ③ 豫算及豫備金支出, ④ 法律, ⑤ 勅令 또는 宮內府布達, ⑥ 閣令, ⑦ 部令 또는 宮內府令, ⑧ 訓令, ⑨ 告示, ⑩ 敘任과 外國勳章紀章의 受領·佩用許可를 포함하는 辭令, ⑪ 行事·行路謁見·陪食·賜宴·褒賞·救恤·祭祀·皇族의 動靜 기타 宮廷의 記事를 포함하는 宮廷錄事, ⑫ 官廳事項·司法·警察·監獄·學事·産業·財政·交通·衛生·地方行政雜事 등을 수록한 彙報, ⑬ 觀象, ⑭ 廣告 등으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그후 舊韓國政府의 職制改正에 따라 1908년 3월 30일부터 驚視廳令·漢城府令을, 동년 12월 26일부터는 道令을 게재하게 되었다. 아울러 1906년 9월 12일자부터는 統監府法令類가 게재되었으며, 1908년 8월 21일부터 統監府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으나, 號數없이 발행된 1895년 4월 이전의 官報와 제 77호 이전의 것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를 底本으로 하고 여타 所藏本 가운데에서 누락부분을 보충하여, 1973년에 亞細亞文化社에서 『舊韓國官報』란 이름으로 1894년 6월 21일자 이후의 完帙을 영인·간행하였으며, 본 자료실에 비치한 것도 이 영인본인 것이다. 《임영정》

大韓每日新聞(대한매일신문)

도서번호 : 독도(N) 079.51 ㄷ242ㅎ
 저 자 : 배설(裴說; Bethell, E. T)
 발행기관 : 한국신문연구소(영인본)
 발행년도 : 1977년 (원본 1904~1910년)
 구 성 : 6권

위기일로의 국난을 타개하고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국가보존의 대명제를 실현하고자, 1904년 7월 18일 서울 전동(磚洞)에서 영국인 배설(裴說; Bethell, E. T)을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하고 양기탁(梁起鐸)을 총무로 하여 본 신문이 창간되었고, 주필은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진 박은식(朴殷植)에 신채호(申采浩), 최익(崔益), 장달선(張達善), 황희성(黃犧性) 등이 필진으로, 그밖에 신문사 경영면에서는 임치정(林蚩正), 안태국(安泰國) 등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창간 이듬해인 1905년 8월 11일부터는 국·영문 혼성발행에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분리 따로 발간하였다. 또 창간 당시 순수 한글판으로 만들었던 체제에서 국한문 혼용체제로 변경시켰다. 영문판은 The Korea Daily News라 하여 대내외 구독자를 겨냥하여 적지않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국한문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1907년 5월 23일에는 순한글판 대한매일신문을 새로 창간함으로써 결국 국한문판, 영문판, 순한글판

등 세 종류의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발행부수도 1만부를 넘겼다. 이처럼 신문이 널리 보급되게 된 것은 일본군의 검열을 받지 않은 유일한 신문이라는 점과 그 보도와 논평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것이란데 연유하였다.

당시 일본군과 싸우는 우리의 의병에 대하여 사전검열에서는 의병을 비도(匪徒) 또는 폭도(暴徒)로 표현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대한매일신보 계열의 세 신문은 한결같이 사실 그대로 의병이라 칭하고 의병활동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침울하기만 하던 당시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이러한 대한매일신보에 대하여 일제 통감부는 회유와 매수작전 등 갖가지 수법으로 그 논조를 꺾으려 하였으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일제는 소위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일부 고쳐, 내국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외국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등을 압수 및 판매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배설과 양기탁을 구속 또는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리하여 1907년 10월 9일 배설의 처벌을 요구, 1908년 5월 27일 배설이 제소(提訴)되어 제1종 경범죄라는 죄명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고 1908년 7월 12일 양기탁이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 기소 사유는 국채보상의연금을 횡령, 사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 5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석방되었다. 이러한 탄압과 싸우던 과정에서 배설이 물러나고, 비서였던 만함(萬咸: Marnham, A. W.)이 사장이 되었는데, 1910년 6월 11일 만함은 돌연 대한매일신보 판권 일체를 전 사원이었던 이장훈(李章薰)에게 금 4만원에 매도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버렸다.

따라서 이후로는 이 신문은 일본의 뜻대로 통감부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 해 8월 28일까지 지령 1461호로 발행되다가, 경술국치(庚戌國恥) 다음 날부터 ‘대한(大韓)’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낸 채 매일신보가 되어 총독부 기관지로 바뀌었다.

이 신문은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정론지(民族正論紙)이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주목되는 것은 1906년 5월 1일자 잡보(雜報)란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無變不有 鬱島郡守 沈興澤氏가, 內部에 報告하되 日本官員 一行이 來島本郡하야 本郡 所在獨島는 日本屬地라 自稱하고 地界潤狹과 戶口結摠을 一一히 錄去라 하얏는데 內

部에서 指令하기를 遊覽道次에 他界戶口之錄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曰 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啞然이라 하얏더라.

위 보도문에서 주목할 것은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沈興澤)이 본군소재독도(本郡所在獨島)라 명백히 밝히고, 보고를 받은 대한제국 내부대신은 ‘독도를 일본 속지라 한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하고 보고한 바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1906년 島根縣에서 파견한 독도 조사단 神西由太郎일행이 울릉도에 도착, 沈興澤郡守를 면담한 후, 沈郡守가 內部에 보낸 公文을 보고, 활자화한 기사이다. 일본측은 沈郡守의 보고서 원본이 없음을 기화로 그러한 보고가 없다고 하였지만, 이 기사와 더불어 梅泉野錄(매천야록)의 기록으로 미루어 沈郡守의 보고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양태진>>

星湖僊說類選(성호사설유선)

도서번호 : 독도 031.1 ㅎ255사

저 자 : 李瀾

발행기관 : 文光書林(影印本)

발행년도 : 1929년 (원본 1740년)

구 성 : 994면

본서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저자 이익(李瀾; 1681~1763년)의 저술이다. 성호 이익은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약(醫藥), 율산(律算), 경사(經史)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영조는 그에 대한 명성을 듣고 1727년(영조 3년) 선공가감역(繕工假監役)으로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저술에만 힘쓰는 한편, 서학(西學)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문략 천주실의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는 평생동안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경기도 광주 침성리(瞻星里)에 머물며 학문 연마에 힘썼다. 항상 국가 부흥을 위한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저술하여 불교와 세유(世儒)의 무실(無實)한 학풍을 배격하고 실증적인 사상을 확립시키는데 힘썼다.

성호사설은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詩文門) 등 다섯 문(門)으로 대분류하여 총 3,007편의 항목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이러한 분류의 미비점을 성호 이익의 제자인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자청하여 『성호사설류선(星湖僿說類選)』이라는 명칭으로 편찬하였는데, 여기에는 중복되는 것은 합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해 총 1,332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성호사설류선(星湖僿說類選)』에서는 ‘문(門)’을 ‘편(篇)’으로 바꾸고 편(篇) 아래의 구분으로 문(門)을 설치하였으며 만물문을 경사문 다음에 두었다.

본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자 이익의 일본의 침략근성의 경계와 방비책 및 대일관(對日觀)이다. 그는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니 만약에 침구하면 중국은 반드시 원군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중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일본은 울릉도와 그 주변해역으로의 잠행(潛行)과 이 지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대마도측에 해마다 식량을 주어 굶주리지 않는다면 함부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본서는 1929년 문광서림(文光書林)에서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선생이 교열하여 선장본 5책과 양장 上, 下 2책으로 동시에 출판하였다. 이 대본은 성호사설류선인데 여기에는 저자 이익의 자서와 위당 정인보와 변영만(卞榮晩)의 서문이 붙여져 있고, 부록으로 괘우록(藿憂錄)이 추가되어 있다.

1967년에는 이익의 조카이며 병휴(秉休)의 후손인 돈형(墩衡)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30책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을 경희출판사(慶熙出版社)에서 상, 하 2책으로 영인 출판한 바 있으며, 번역본으로는 1977년 이익성(李翼成)이 부분적으로 번역한 성호사설이 한국 사상대전집 제24권으로 동화출판공사(同和出版公社)에서 나왔다. 이것이 다시 1981년 삼성출판사에서 간행되고 1978년에는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국역 성호사설』로 발간되었다. 본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문광서림에서 출판된 판본이다. <<양태진>>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도서번호 : 독도 081 ㅈ2640
 저 자 : 丁若鏞
 발행기관 : 景仁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89년 (원본 미상)
 구 성 : 20책

여유당(與猶堂)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당호(堂號)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그의 문집명(文集名)이다. 자는 미용(美鏞), 송보(頌甫)이며, 시호는 문탁(文度), 본관은 나주이며, 부친은 진주목사를 지낸 재원(載遠)이고, 출생지는 경기도 양근(陽根)이다.

1789년(정조 13년) 문과에 급제, 벼슬이 부승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문장과 경학(經學)에 뛰어났으며, 수원성을 쌓을 때는 기중가설(起重架設)에 의한 활차축로(滑車轉軸)를 만들어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정조 말에 서교(西教)를 가까이한 탓으로 금정찰방(金井察訪)으로 좌천되었으나, 다시 소환되어 좌부승지 및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801년(순조 1년) 신유사옥(辛酉邪獄)이 일어나 형 약종은 장살되고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갔다. 귀양살이 19년동안 독서와 저술에 힘썼는데, 그의 대부분의 저서는 이 적소(謫所)에서 이루어졌고, 본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도 이곳에서 저술되었다.

다산은 조선조 학계에 전개된 진보적인 신학풍을 한몸으로 총괄, 정리, 집대성한 실학파의 대표자이다. 그러기에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는 선생(다산을 말함) 한 분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사의 연구요, 조선 근세사사의 연구이며, 조선 심혼(心魂)의 명예(明翳) 내지 전 조선의 성쇠존망에 대한 연구라고까지 하였다.

본서는 1883년(고종 20년) 왕명으로 여유당집(與猶堂集)을 필사하여 규장각의 별칭인 내각(內閣)에 보관하도록 한 바 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상고할 길이 없다. 이 문집은 1934년~1938년에 걸쳐 신조선사(新朝鮮社)에 의하여 154권 76책, 활자본으로 발행되었는데 이 책의 편자는 외현손(外玄孫) 김성진(金誠鎭)이고 정인보(鄭寅普)와

안재홍(安在鴻)이 교열(校閱)에 참여하였다.

전서(全書) 간행이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경세유표(經世遺表), 아언각비(雅言覺非), 이담속찬(耳談續纂), 강역고(疆域考), 마과회통(麻科會通) 등이 있다. 신조선사판(新朝鮮社版)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저본으로 한 영인본(影印本)에는 2종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문헌편찬위원회(文獻編纂委員會)에서 1962년에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라는 책명으로 간행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1970년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에 의하여 같은 책명으로 간행되었다.

전서의 내용을 편집 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모두 7집으로 분류되었는데, 제1집은 25권 12책의 시문집이며, 48권 24책으로 된 2집에는 경집(經集), 제3집은 24권 12책으로 예집(禮集), 제4집은 4권 2책으로 악집(樂集), 제5집은 39권 19책으로 정법집(政法集), 제6집은 8권 4책으로 지리집(地理集), 제7집은 6권 3책으로 의학집(醫學集)이다.

이 가운데 제6집의 지리집(地理集)은 강역고(疆域考)와 대동수경(大東水經) 2개분야로 나누어 서술되었는데, 강역고(疆域考)에는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강역을 논하였다.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卷之一에는 朝鮮箕子, 四郡總考, 樂浪, 玄菟, 臨屯, 眞番, 樂浪別考 春川, 帶方, 三韓總考, 馬韓, 辰韓, 弁辰
卷之二에는 弁辰別考, 迦羅, 沃沮, 濊貊, 濊貊別考 江陵, 靺鞨考, 渤海考
卷之三에는 卒本考, 國內考, 丸都考, 慰禮考, 漢城考 八道沿革 總叙 上, 下
涓水辯, 白山譜, 渤海續考, 北路沿革 續, 西北路沿革 續

즉, 주요 고대국가의 수도(首都)와 패수 및 백산 등의 산천과 팔도(八道) 설치의 연혁과 북서로(北西路)의 노정(路程)을 역사적 측면에서 논하고 있다.

大東水經 其一에는 涿水 一, 長白山 發源, 北靑, 三水, 厚洲
大東水經 其二 涿水, 禿魯水, 鹽難水, 潼水, 靉河水, 古津水
大東水經 其三 薩水 卽 淸川, 淀水 卽 大寧水
大東水經 其四 涓水 一

이상과 같이 대동수경(大東水經)은 주로 북서지역의 강역상의 산천 도리고(道里考)를 비롯하여 오늘날에는 그 명칭이나 연원을 알 수 없는 연원을 제기하는 등 폭 넓게 다루고 있어 우리나라 강역사 및 역사지리 연구에 참고가 되고 있다.

또한 본서 지리지 강역고 권2에는 우산국(于山國)을 우시산국(于尸山國)이라 표기하고, 이를 이사부에 의해 귀복시켰음을 삼국사기의 내용과 같게 언급하고 있다. 《양태진》

制憲國會速記錄(제헌국회속기록)

도서번호 : 독도 328.5102 7428자

저 자 : 제헌국회사무처

발행기관 : 선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1999년 (원본 1948년 5월 31일~1950년 4월 22일)

구 성 : 전 10권

『制憲國會速記錄』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루어진 議員들의 다양한 활동을 기록한 자료이다. 제헌국회는 1948년 5·10선거를 통해 구성된 후 대한민국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각종 입법활동을 벌인 곳이다. 따라서 제헌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활동을 수행하는 일반적 의미의 의회 성격을 뛰어 넘어, 해방 후 새로운 정부와 국가를 수립하는 역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곧 우리의 현대사에서 근대 민주주의 제도에 근거한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48년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좌우 대립에 따른 민족내부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남한의 좌우 정치 세력들은 새로운 민족통일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하였지만, 상호간의 대립과 함께 남북을 분할 점령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47년 9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에 이관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은 유엔에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TCOK)을 설치하여 남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兩軍은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48년 1월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이 입국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소련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

유엔은 이에 소총회를 열어 임시위원단 단장 메논이 제안한 ‘가능지역 선거(남한단독선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제헌국회의원선거는 남한 최초의 자유 보통선거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1948년 5·10선거에서는 모두 948명이 입후보하여 200명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5월말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6월 「大韓民國憲法」을 제정하기 위하여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의 주요 내용은 3권 분립제와 기본권 보장제의 채택, 대통령(간접선거)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사법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헌국회는 이를 기초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제헌국회는 의회정치를 구현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국가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제헌국회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활동하였는데, 크게 이승만과 한민당, 소장파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제헌국회가 구성된 뒤, 헌법제정과 내각 구성 과정에서 離合集散을 거듭하였다. 이는 제헌국회의 입법 활동이 계속되면서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헌국회는 국가수립 시기에 활동하였으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입법활동을 많이 하였다.

제헌국회의 이러한 활동을 속기록으로 정리한 본서는 국회가 개최된 1948년 5월 31일부터 폐회되는 1950년 4월 22일까지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제헌국회 전체 기간 가운데 제1회 국회(1948. 5. 31~12. 18) 시기에는 대한민국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헌법안·반민족행위처벌법안·국가보안법안·지방자치법안·미군 주둔에 관한 결의안·한미재정협정에 관한 동의안 등이 토의 의결되었다. 그리고 제2회 국회(1949. 5. 21~6. 19) 시기에는 남북평화통일에 긴급결의안·지방자치법안·농지개혁법안 등이 주요 의안으로 다루어졌다.

본서는 본 자료실에서 추구하는 독도영유권 연구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제헌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맥아더 사령부에서 취한 SCAPIN 677호 및 SCAPIN 1033호 등에 대하여 의원 개개인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를 추정함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임영정>

황성신문

도서번호 : 독도(N) 079.51 ㅎ267

저 자 : 皇城新聞社

발행기관 : 한국문화간행회(영인본) (원본 皇城新聞社)

발행년도 : 1984년 (원본 1898~1910년)

구 성 : 4×6배판 21권

본지는 1898년 9월 5일 사장 남궁억, 총무원 나수연 등이 국민지식의 계발과 외세 침입에 대한 항쟁의 기치아래 한성 중서 청등방 황토현(漢城中署 淸登坊 黃土峴)에서 창간한 신문이다. 남궁억은 대한황성신문의 판권을 물려받아 신문사상 최초로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하였다. 체제는 소형판 23×31cm 3단체로 하고 본문은 4호 활자로 사용하였다.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라고 하나 거의 한자에 한글로 토를 달 정도의 한문 위주의 문장으로 제작되어, 독립신문 이후 여러 신문이 순한글로 제작되던 것과 달리, 한문 전용으로 제작됨에 식자층의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지면의 기사배치는 대한제국시대의 다른 신문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논설, 별보, 관보, 잡보, 외보, 광고 등으로 구성하였다. 1899년 11월 13일자부터는 지면 크기를 확대하여 34.5×25.2cm의 4면 4단체를 채용하고, 기서(奇書), 고사사조(故事詞藻), 습유란(拾遺欄) 등을 신설하였다. 1900년 1월 5일자부터는 외신을 공급받아 게재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주필은 유근(柳瑾) 박은식 등이 활약하였으며 얼마 뒤 장지연(張志淵)

도 합류하였다. 창간 때부터 1902년 8월까지 만 4년간 사장직을 맡았던 남궁억은 두 번이나 구속을 당하였다.

1902년 8월 31일에는 2대 사장으로 장지연이 선출되었는데, 1904년 6월 17일 일본인의 한국에서의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해 오자 그 부당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설로써 제기하여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전국민중대회와 모임인 보안회(保安會)의 활동을 지지 상세히 보도하여, 배일애국사상을 고취하는 가운데 일본측의 요구를 철회케 하였다.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유명한 기사로 정간을 당하고, 사장 장지연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직원이 체포되었다. 1906년 1월 24일 장지연이 석방되고 발행정지도 동시에 해제되었으나, 장기정간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2월 12일에야 속간할 수가 있었다. 이렇듯 경영상 악화일로에서 있던 이 신문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이 이루어지자 신문제호를 한성신문으로 고치게 하여, 8월 30일자부터 9월 14일(제3470호)까지 발행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본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제의 독도침탈 시도에 대해 여러 형태의 항론을 제기하였는데, 그 하나의 예로 표제의 활자 크기를 갑자기 높이고, 잡보란(雜報欄)에 독도침탈 시도에 대한 기사의 표제 크기를 평상시의 4배로 나타내었다.

皇城新聞 1906年 5月 9日字 雜報에는 “鬱陵島郡守 沈興澤氏가 內部에 報告하되 本部所屬 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인대 本月四日에 日本官人一行이 來到官合하와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日本島根縣 隱岐島司 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由太郎과 稅務監督局長吉田坪五 分署長警部景山岩八郎及 巡查一人 醫師技手各一人 會議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인대 戶總人口와 土地生産多少와 人員及經費幾許와 諸般事務를 調査錄去하얏다더라”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1906년 대한매일신보의 보도 내용과 합치되는 것이었다. <<양태진>>

2. 동양자료

官報(明治編)

도서번호 : 독도 354.53 ㄱ 272
 저 자 : 太政官文書局, 印刷局
 발행기관 : 龍溪書舍
 발행년도 : 1984~1992년
 구 성 : 19권 467책

본서는 일본의 명치(明治)년간에 발행된 것으로 명치시대는 1868년부터 1912년 7월까지이다. 이 시기에 발행된 관보로서 명치관보는 1883년(明治 16) 7월 2일부터 발행을 시작하여 1912년(명치 45) 7월까지 발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관보가 高宗 31년(1894)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국정을 쇄신하던 시기인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에 시작된 데 반해 관보의 발행이 앞서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근대적인 세계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내각을 완성하면서부터 구상된 것이었다.

1868년 메이지천황(明治天皇:1852~1912)은 ‘신(神)에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신 정부의 정치방침(五箇條の御誓文)을 발표했다. 그 속에서 천황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정치와 경제를 번성하게 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지식을 받아들여 나라를 세우고자 함을 천명했다. 한편, 민중에 대해서는 반란과 기독교를 에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

이어서 이제까지의 에도(江戸)라는 지명을 도쿄(東京)로 고치고, 연호(年號)를 메이지(明治)로 칭하면서 수도를 교토(京都)에서 도쿄로 옮겼다. 그러나 구정부의 무사들 가운데 신정부에 반항하는 자가 있어서 우에노(上野:東京都), 아이즈(會津:福島縣) 등지에서 전투가 잇달아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은 약 1년 반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도 곧 신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후 메이지(明治) 신정부에 의한 일본통일이

완료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시기의 정치개혁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라고 한다.

새로운 정부는 1871년(明治 4)에 행정구역의 정비로써 이제까지의 번(藩)을 폐지하고 전국을 겐(縣)으로 나누어 중앙으로부터의 관리를 파견(廢藩置縣)하였다. 이리하여 세금은 전부 정부로 모이고, 관리들은 정부로부터의 봉급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천황의 일족은 황족(皇族)으로, 구계(公家)와 다이묘는 화족(華族)으로 무사는 사족(士族), 그리고 농민·직인·상인을 평민(平民)으로 하여 사민평등(四民平等)이라는 사상을 천명한다. 그로 인하여 평민도 묘우지(名字:姓)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직업과 살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구미제국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부국강병의 방침을 취했다. 부국책(富國策)으로는 정부가 직접 서양의 발전된 기계나 기술을 도입하고, 병기공장과 제사(製絲), 방적(紡績) 등의 관영공장(官營工場)을 세웠으며, 광산을 개발하여 근대산업으로 발전시켰다. 또 전신과 우편설비를 정비하였고 도쿄·요코하마간의 철도를 건설하였으며 엔(圓)·센(錢)·린(厘)의 새로운 화폐제도를 마련하였다. 강병책(強兵策)으로는 1873(明治 6年)년에 징병제를 마련, 20세 이상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였으며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882년에는 일본은행을 설립하여 일본의 근대화는 정부의 손으로 급속히 진전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과 법령 시행을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 관보의 발행은 현재 구성된 내용을 보더라도 방대한 양이다. 총 19권 467책으로 편집된 이 책에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비록 적지만 중요한 전쟁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명치관보』의 「영사관보고」는 그 내용이 상세하며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서술을 취하고 있다. 일본이 그들의 산업 생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 한국을 지목하였다가, 한국의 주요 생산물을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수탈을 일삼는 파렴치한 내용 및 한국 각지의 어장과 어업현황, 일본인의 어업진출상황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조선연해어업현황」과 같이 한반도 연해에서의 어종별 생산현황을 조사하고 어업명장을 받은 일본어선수를 통계하고 있으며, 「조선국에 있어서의 本邦人어업현상」과 같이 지역별, 어업보고가 있는가 하면 「한인의 본방어업자에 대한 감정」을 조사한 경우도 있어서 자료적인 가치가 높다.

이러한 『명치관보』의 각 권별 수록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수	책수	수록기간	서기년 환산	수록호수
1	30	明治 16년 7월 2일~18년 12월	1883~1885	1호~749호
2	24	明治 19년 1월~20년 12월	1886~1887	750호~1351호
3	24	明治 21년 1월~22년 12월	1888~1889	1352호~1952호
4	24	明治 23년 1월~24년 12월	1890~1891	1953호~2550호
5	24	明治 25년 1월~26년 12월	1892~1893	2551호~3152호
6	29	明治 27년 1월~28년 12월	1894~1895	3153호~3752호
7	26	明治 29년 1월~30년 12월	1896~1897	3753호~4349호
8	24	明治 31년 1월~32년 12월	1898~1899	4350호~4949호
9	25	明治 33년 1월~34년 12월	1900~1901	4950호~5548호
10	28	明治 35년 1월~36년 12월	1902~1903	5549호~6149호
11	26	明治 37년 1월~37년 12월	1904	6150호~6451호
12	34	明治 38년 1월~38년 12월	1905	6452호~6751호
13	33	明治 39년 1월~39년 12월	1906	6752호~7052호
14	23	明治 40년 1월~40년 12월	1907	7053호~7353호
15	22	明治 41년 1월~41년 12월	1908	7354호~7654호
16	21	明治 42년 1월~42년 12월	1909	7655호~7956호
17	19	明治 43년 1월~43년 12월	1910	7957호~8258호
18	19	明治 44년 1월~44년 12월	1911	8259호~8559호
19	12	明治 45년 1월~45년 7월 大正 元年 7월	1912	8560호~8734호 1호

《임영정》

シーボルト先生渡來百年記念論文集

도서번호 : 독도 041.3 S157ㄱ

저 자 : シーボルト先生渡來百年記念會 (편)

발행기관 : 藤木博英社

발행년도 : 1924년(大正13)

구 성 : 국판 218면

本書는 일본의 근세문화 확립에 기여하면서 幕末과 王政維新사이에 세계의 列強들

에게 朝幕의 관계를 알리고 勤王의 志士가 외국의 압박을 받지 않고 그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도와준 Siebold가 처음 28세에 和蘭商館의 醫官으로서 일본 長崎에 온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간된 논문집이다.

각각의 論文은 “先生の 略年譜”를 비롯하여 第3편 “醫學者シーボルト先生”에서는 Siebold자신의 醫學者로서의 인격이 갖추어 지는 과정을 고찰하고, 한편 日本에 醫學者로서 어떠한 功績이 있는가를 서술하였다. 第4편 “歐洲に於けるシーボルト先生”에서는 1826년(文政9년) 長崎에서 바타비아(バタビア)를 향하던 중 幕府의 輸出禁製品(地圖, 地誌, 戰記, 刀劍 등)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추방된 이후 귀국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그가 펼쳤던 활약을 상술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조를 받아 출판한 여러 종류 중 『日本(NIPPON)』이라는 著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책 안에 수록된 ‘隣國 屬國의 沿革 地圖’를 영국해군참모본부가 새로운 지도를 작성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하였다고 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지도는 伊能忠敬의 ‘伊能図’가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 개국운동에서 Siebold의 역할 및 영향을 상술하고, 日本 再渡來에 관한 진상과 歸國 후 死亡까지의 과정 및 Siebold의 家系도 서술하였다. 그리고 Siebold의 著書도 상술하였다. 第5편에는 ‘シーボルト先生より日本學生に贈りたる書翰’, ‘和蘭代表ドンケル, コルチオスより蘭領印度總督に宛てたる書翰’, ‘蘭領印度總督宛ドンケル, コルチオス書翰’, ‘出島商館長メイラン書翰ケ’이 소개 되어있다. 第6편에는 シーボルト先生採集日本産柑橘標本に就て 대하여 서술하였다. 第7편에서는 シーボルト先生渡來の目的と日本に於ける交友關係를 서술하였다. 第8편 “シーボルト先生と福岡藩人”에서는 福岡藩과 佐賀藩이 공동으로 長崎 警衛를 담당하기 때문에 확실한 因緣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シーボルト와 福岡藩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第9편에는 日本最初の商業學校創立計劃者としてのシーボルト先生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第10편에는 シーボルト先生の大阪芝居見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第11편에는 シーボルト先生 孫女 山脇タカ刀自の談話內容을 서술하였다.

本書는 Siebold의 의학수준에 영향을 준 유럽의 자연과학 발달정도를 알 수 있고, 당시 선생의 경험을 통하여 일본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임영정>>

倭漢三才圖會

도서번호 : 독도 031.2 ㄱ4940

저 자 : 寺島良安

발행기관 : 國學資料院(영인본)

발행년도 : 2002년 (원본 1712년)

구 성 : 12권

본서는 日本 에도(江戶)시대(德川幕府) 중기에 간행된 圖說 百科事典이다. 체재를 明나라의 王圻와 王思義가 편찬한 『三才圖會』를 모방하여 만들었으므로, 서명도 이같이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적 지식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데다가 圖說式으로 저작되어 사전으로서는 보기 드문 저서이다.

본서는 18세기 초반에 저술되어 간행된 이래 폭넓게 이용되어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縮刷 影印되거나(東京美術에서 간행한 것이 있다) 日本語로 翻譯되기도 하였다(東洋文庫本, 平凡社 간행). 3세기의 시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이 책은 일본인의 중세적 사회와 생활·의식을 이해하는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18세기 중엽 朝鮮에 수입되어 實證的 학문을 전공한 학자들에게 널리 읽혔다. 일본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데다가 博物學的 지식의 광범위하고 중국의 저서가 보여주지 못하는 圖說 등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일본인이 저술한 서책의 수준을 우습게 보아 넘기던 조선의 학자들에게, 이 책은 충격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책이 일본 특유의 문화와 사고를 폭넓게 수용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사회의 보편적 문화를 아우르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책은 18·19세기 조선 實學者들의 저작에 적지 않게 이용되었다.

이 책은 實證的인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圖版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계몽적 성격까지도 발휘하고 있다. 그러한 특성때문에 이 책을 깊이가 없는

淺近한 교양독서물의 수준으로 貶下하는 논자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이 책이 주는 가치를 감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17~8세기 조선시대의 식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일본에 관한 지식이란 겨우 朝鮮通信使를 통해 알려진 건문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일본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깊이 하거나, 18세기 이후의 실증적 학문의 저변을 이해하려고 할 때 『倭漢三才圖會』를 閱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3국의 학계는 실증적 학풍이 하나의 조류로 형성되면서 각국의 특성에 맞는 학풍과 학과가 만들어지는데, 본서도 그 같은 3국의 거시적 조류에서 제작된 저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로 향하는 일본의 문화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조선후기 동아시아 3국의 문화를 비교문화학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데 이 책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후기의 학술과 역사를 연구할 때 중국 쪽의 학술적 정보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현상을 반성하고 3국의 학문적 조류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를 지향함에 있어 이 책의 중요성이 제고되리라 하고 생각한다.

본서의 저자인 寺島良安에 관한 사적은 충분하지 않다. 그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사실을 통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는 大版 사람으로 이름은 尙順인데, 正德(1711-1715)으로부터 享保(1716-1735) 연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朝鮮의 肅宗朝가 그의 활동 범위이다. 寺島良安의 직업은 醫師였는데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를 직업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는 醫業에 만족하지 않고 醫術에 종사하는 한편, 중국의 『三才圖會』를 선망하여 30여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林信篤이 正德 3년(1713)에 쓴 다음의 서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浪速醫士法橋寺島良安，衛生家者流也。寄心文學，勵業仁術，追慕基跡，倣依基樣，舉示基部，分聚基類，欲正習俗之誤，以助多識之功，聊有所加，亦有所畧也。頃歲作『倭漢三才圖會畧』，凡百五卷」이 그것이다.

서문을 쓴 林信篤은 退溪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유학자 林羅山의 손자이다. 그런 그가 文學에 심취한 의사 寺島良安이 『三才圖會』를 좋아하여 그 책을 모방하되, 나름대로 체재를 수정하고 내용을 加減하여 『倭漢三才圖會畧』 105권을 편찬하였다고 저자와 책을 소개하였다. 이 책이 당시의 학자들에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寺島良安은 天地人 三才의 모든 것에 환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인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천지만물의 광범위한 사실을 집적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 책의 편찬이 사실은 의술을 이해하기 위한 것에 기초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저자가 강조하였다.

본책 105권과 附錄 1권을 합하여 모두 106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이 책은 천문에서부터 지리·인사·器用·時令·宮室·身體·衣服·文史·珍寶·禮制의 분야와 中國, 朝鮮, 五天竺 등의 지리류·家宅類·禽類·蟲類·草類·畜類·魚類·農具類·車駕類·船橋類·時候類·曆占類·藝能類·異國人物類·衣類·女工具類·土地類·刑罰具類 등 모두 96종류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세세한 설명과 그림을 수록하여 당시의 풍물과 각 분야의 전반적인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문학·미술·음악·의학·역사·지리·생물·철학·종교 등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특히 1700년대 일본사회는 물론 중국, 조선, 인도, 몽골 등의 근대 동양사회의 전반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17세기 중국에서 『三才圖會』가 간행된 이후 바로 수용하여 널리 읽었던 조선의 실학자들은 『삼재도회』보다 거의 100년 뒤에 제작된 본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이 언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18세기 중엽에는 조선의 식자들이 이 책을 접한 것 같다. 百科全書의 지식을 소유했던 李德懋의 저작에 10여 차례나 인용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적국의 간첩행위를 기록한 『蝨葉記』의 「南北敵將」조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장군의 동향을 『왜한삼재도회』 권13 「異國人物」항의 ‘朝鮮’조를 참조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또 「日本寄占城書」조에서는 ‘일본인이 占城國王에게 보내는 國書’의 문장과 사건이 기이하다고 소개하였다. 이 기사의 인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 역시 『왜한삼재도회』 권14 「外夷人物」항의 ‘占城’조를 인용한 것이었다.

朴齊家를 포함하여 李喜經이나 徐有渠, 李圭景, 韓致瀾 등 많은 학자들도 본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한치윤은 본서의 인용에 그치지 않고 식물이나 동물, 기타의 器用 분야까지 본서에 수록된 조선의 기물과 자연물을 조사함으로써, 조선의 물자가 일본에 수용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특히 본서에는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해산물채취에 관한 사항과 어로행위에 관한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이미 일본은 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기적인 犯境이 있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漂人領來臚錄』의 구체

적인 기사 내용과 함께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임영정>

朝鮮總督府官報

도서번호 : 독도 354.51 ㄱ538

저 자 : 朝鮮總督府

발행기관 : 아세아문화사(영인본) (원본 朝鮮總督府 印刷局)

발행년도 : 1985년 (원본 1901년 8월 29일~1945년 8월 30일(統號 10,450號))

구 성 : 국배판 전 142책

본서는 조선왕조시대의 대표적인 官撰史料라 할 수 있는 「承政院日記」와 1910년에 폐간된 구한국시대의 「舊韓國官報」, 그리고 일제 강점의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는 통감부시대의 「公報」와 같은 성격을 띤 관찬사료이나, 일제가 1945년 패망하기까지의 일제강점 36년간의 수탈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증빙자료이다. 그런 때문에 식민지시대의 독립운동사연구는 물론 식민지 政策史, 민중생활사 연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에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식민정책을 전개하였고, 바로 그날 發行紀年을 '明治'로 표기한 「조선총독부관보」 제1호가 발행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간행되어 왔던 「舊韓國官報」와 일제 강점의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는 통감부시대의 「公報」는 자동적으로 폐간되었다. 이 때로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본서는 統號 10,450호가 발간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일제가 패망하던 날까지 쓰여졌던 관보는 朝鮮總督府가 조직적으로 식민지 수탈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1호가 발행되는 날 일제는 통감부고시 제197호를 공포하여 관보의 간행과 발매에 관한 건을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관보는 印刷局에서 발행하고, 관보대금은 1 개월 분 40전에 1부 당 2전으로 하며, 관보를 구독하려는 사람은

관청을 제외하고는 미리 구독료를 인쇄국에 先納하고, 이미 납부한 「구한국관보」와 「통감부공보」 금액은 조선총독부관보를 구독하는 대금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한국관보의 폐간과 조선총독부관보의 발행을 정당화시켰다.

『조선총독부관보』는 일본어를 기본어로 표기하고 동일한 내용의 ‘朝鮮譯文’을 뒷부분에 전재하여 첨부하였다. 그러나 조선어 譯文을 전재한 것은 겨우 1개월 정도였으며, 10월 1일 조선총독부인쇄국으로 발행처 명칭을 변경하면서부터 조선어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관보』의 주요내용은 모두 일본어로만 게재하고 조선어는 광고 내지 훈시 정도에만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을 점차 기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광고 중에서도 정부의 토목공사 및 상업, 구매입찰공고 등과 주용 정책결정사항 등은 한글이 배제된 채 일본어 중심으로 공고하였다. 다만 학생모집공고, 교과서발행공고, 관보발매절차 등 한국인이 알 필요가 있는 사항과 식민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항만 선별해서 조선어 譯文을 달았다. 더욱이 1923년 총독부 내에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곳에서 관보를 취급하면서부터 한글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마침내 1924년 6월 12일 훈시를 끝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조선총독부관보』는 일본의 새로운 천왕이 등장할 때마다 호수를 1호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明治년대 578호에 총 6,765면, 大正년대에 4,305호에 총 65,620면, 昭和년대에 5,567호에 총 68,130면, 도합 10,450호에 140,515면에 달한다. 이는 35년 간 일간으로 연평균 298.5회를 발행한 것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호외를 포함하여 거의 매일 발행된 셈이 된다.

1927년 11월에 공포된 조선총독부 훈령 제57호의 관보편찬 규정에 의하면, 관보에 수록할 내용과 순서는 1) 조서·황실령·법률·칙령·군령·조약·예산·制令·부령·고시·각령·성령·훈령·훈시·통첩·경무총감부 공문·임시 토지조사국 공문·지방청 공문·회계검사관 2) 敍任 및 辭令欄 3) 휘보란 4) 광고란 등으로 되어 있다.

먼저 일본천왕의 勅語와 皇室 令, 법률은 관보 초두에 게재하였다. 예컨대, 관보 제1호 첫머리에는 국권강탈을 정당화하는 천왕의 조서부터 시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대신의 이름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서임 및 司令 欄에는 判任官 이상의 敍位·훈공·임·퇴·휴직·징계, 奏任官 이상의 근무, 과장 및 高等官 5등 이상의 출장, 委員級 委員附書記 命免, 기타 등재를 요하는 인물 등이 게재되었다. 이

러한 인사사항은 거의 매일 게재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관료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도 정확한 자료라고 평할 수 있다. 또한 彙報欄에는 긍정사항, 관청사항, 조사와 보고 및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광고란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게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기사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관보식 광고형식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광고자료는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 근대사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파란만장한 격변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894년 甲午更張을 필두로 일제에게 나라를 강점당했던 36년간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일제강점 36년간의 수탈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증빙자료인 『朝鮮總督府官報』는 식민지시대의 울릉도·독도, 그리고 독립운동사는 물론 식민지정책사, 민중생활사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임영정>

朝鮮總督府月報

도서번호 : 독도 354.5105 ㄱ538

저 자 : 朝鮮總督府

발행기관 : 國學資料院(영인본) (원본 朝鮮總督府 總務部 文書課)

발행년도 : 1999년 (원본 1911년 6월~1915년 2월, 1915년 3월,
1920년 6월, 1920년 7월~1944년 12월)

구 성 : 24권

본서는 일제 하에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침략정책 전반에 걸쳐 정세조사 및 施政을 비롯해서 산업 각 분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매달 20일에 발행한 기관지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高官들의 시정방향 및 모든 調查研究, 地方事情, 各種計劃 등 기타의 모든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5월 「朝鮮總督府月報에 관한 規程」(總訓 제41호)을 제정한 후 그 해 6월부터 「朝鮮總督府月報」를 발행하였다. 이 月報는 조선총독부 總務部 文書課에서 편찬하여 印刷局에서 1915년 2월호까지 모두 46호를, 1915년 3월부터는 「朝鮮彙報」로 改題하여 1920년 6월호까지 총 66호를, 다시 1920년 7월호부터는 「朝鮮」으로 이름을 바꾸어 1944년 12월 폐간될 때까지 총 345호를 각각 인쇄발행하였다.

「朝鮮總督府月報」에 실리는 내용은 대체로 농업 및 임업, 상공업, 광업, 수산업, 무역, 운수 및 교통, 理財 및 금융, 교육, 종교, 위생, 구휼, 지방행정, 사법, 조사자료, 통계 등 모두 15개 항목으로 나뉘어졌다. 본서에 실리는 기사 및 자료는 各部 및 所屬官署(道の 경우 內務部, 財務部)에 배치된 月報報告主任(奏任官 또는 判任官)에 의해 수집 보고된 것이다. 본서는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홍보용의 성격을 지니는 단점은 있지만, 조선의 통치에 관한 총독부의 시각 및 정책, 그리고 조선 산업 각 분야의 상황 및 통계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다.

1911년 6월호부터 1915년 2월호까지 모두 46호를 8책으로 합본 영인한 것이며, 1915년 2월 이후부터는 『朝鮮彙報』로 제호가 바뀌었다. 『朝鮮彙報』는 1915년 3월호부터 1920년 6월호까지 총 66호를 16책으로 합본하여 영인하였으며, 1920년 7월호부터는 『朝鮮』이라 제호가 바뀌어 1944년 12월 폐간될 때까지 총 345호를 47책으로 합본하여 영인한 자료이다.

여기에 있는 『月報』는 1911년 12월에 발행된 제1권 제7호이다. 농업 항목으로는 농업에 관한 장려사항, 수산업 항목으로는 水産費 장려 및 보조사항, 19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강원·평남·전남 水産 개황, 1911년 9월중 부산 부근의 어황, 함남 수산 통계 등이 실려 있다. 운수 및 교통에 관한 내용으로는 철도국 운수개황, 철도국 건설공사 개황, 道路改修 상황, 1910년도 조선 각도 통신사업 개황 도표 등이 실려 있다. 이재 및 금융 항목에는 1911년 10월의 경제개황, 長興 지방 금융조합원 관련 사항, 里洞의 收稅地 地略圖 제작 현황이 기사화되어 있다. 상공업에 관한 내용으로는 강원도 改良製炭 傳習 상황, 부산 製氷所 업무 개요 등이 실려 있다. 지방행정에 관하여는 鎭南浦府의 관내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무역에 관하여는 1911년 10월의 조선무역 개황이 실려 있다. 조사자료로는 독일 식민지의 民事畧, 독일 식민지의 재판관 지위, 일본어와 조선어의 용어 비교, 자주 쓰이는 한자일람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임영정>

朝鮮總督府調査月報

도서번호 : 독도(P) 330.5 ㄱ419ㄱ

저 자 : 朝鮮總督府

발행기관 : 高麗書林(영인본) (원본 朝鮮總督府)

발행년도 : 1985년 (원본 1930년 12월~1944년 2월)

구 성 : 4×6배판 전 28책

본서는 1930년 12월부터 1944년 2월까지 당시 朝鮮總督府의 施政과 집무를 참고하여, 각 분야별로 施政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調査月報』로 간행되었던 것을 년도순으로 편집한 자료집이다. 그 구성을 보면 조선총독부와 각 소속 관서에서 조사 수집한 각종 자료 중 종래 官報에 실렸던 것은 물론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본서에 실린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출산에서부터 砂防事業, 農墾, 蠶業, 果樹, 蠶業, 特用作物, 棉花, 火田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들을 엮어 조사서로서의 특성을 보이므로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침탈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5년 고려서림에서 이를 편집, 복사본으로 출판한 것이 본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임영정>

3. 서양자료

Encyclopaedia Britannica, 1st ed.

도서번호 : 독도 032 S678e
 저 자 : Society of Gentlemen(ed)
 발행기관 : Society of Gentlemen
 발행년도 : 1971년(원본 1771년)
 구 성 : 3권 2,659면

Encyclopaedia Britannica 발행 200주년을 맞아 1771년 제1판을 그대로 영인한 200주년기념 영인본이다. 제1권은 697면으로 A-B 부분이 수록되어 있고, 제2권은 1009면으로 C-L 부분이, 제3권은 953면으로 M-Z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1771년 발행된 백과사전 속에는 그 당시의 관심사항은 물론, 당시의 생활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풍부하다.

한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권 279면에 COREA로 나오며, 그 설명은 북위 36도에서 42도 사이의 중국 북동 해안에 있는 섬 혹은 반도 (an island or peninsula on the north-east coast of China, between 36° and 42° lat.)라고 간단히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1771년 당시 영어권 세계에서 한국에 관한 인식이 이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영어권에서는 당시 COREA와 KOREA가 혼용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COREA가 채택되었다. 《한상복》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도서번호 : 독도 341 A512i
저 자 :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발행기관 :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발행년도 : 1962~2000년
구 성 : 연 6회 발간

이 잡지는 발간초기인 1962년에는 연 2회 발간하였으나(초기의 편집자는 Richard W. Edwards, Jr.), 1963년부터는 격월로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2월 현재 독도자료실에는 1962년 제1호(Vol.1, No.1)부터 1992년 11월호(Vol.31, No.6)까지 수집되어 있다.

이 잡지의 발행기관은 국제법의 연구를 증진하고 법과 정의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수립, 유지하고자 1906년에 설립된 미국 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이다.

이 잡지는 국제법분야의 전문잡지로 특히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조약이나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수록하고 있어서 세계각국의 학자, 연구자, 정부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국제재판소 또는 국내재판소의 판결, 국제적으로 또는 미국국내에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회 보고서, 미국 및 미국과 관련되는 국가의 법령, 기타 국제적으로 또는 미국과 관련되는 주요 국제판결, 국제협약 및 사건 기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잡지는 그 대부분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법적인 문제에 관한 협약, 조약 및 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수록하고 있으나, 미국 또한 타국과의 영토분쟁이나 해양경계관련 분쟁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영유권문제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갑용》

II. 인문학자료

1. 한국자료 / 31
2. 동양자료 / 183
3. 서양자료 / 231

여 백

1. 한국자료

各觀察道去來案(각관찰도거래안)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外事局(朝鮮)

발행기관 : 議政府(朝鮮)

발행년도 : 원본 1906~1910년

구 성 : 필사본

1906년(광무 10년) 1월 17일로부터 1910년(융희 4년) 3월 5일에 걸쳐 각도 관찰사와 外事局 사이에 오고간 보고서 및 훈령을 外事局에서 모아 편집한 것이다.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주로 한 침략상과 군부대의 배치와 이동, 그리고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1에는 1906년 1월 17일부터 1907년 4월 1일에 걸쳐 평안남북도를 제외한 각도에서의 보고서 및 훈령이 실려있으며, 권2에는 1906년 1월 17일부터 1906년 8월 2일까지, 권3에는 1906년 8월 6일부터 1907년 11월 26일에 걸쳐 평안남북도의 보고서 및 훈령, 권3에는 1909년 12월 17일과 1910년 3월 5일의 훈령이 하나씩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침탈로 철도부지·군용지의 전선가설, 농사시험장 등의 토지·가옥의 수용 및 보상문제와 일인의 토지탈취, 그리고 日本 軍警의 鹽坂탈취문제가 실려 있고 (附 부동산사항 토지·초가간수가액), 산림채벌권의 日人관리문제, 장시에 日人상점 설치문제, 日인이 제주도에 어업기지를 건설하고 어물·어로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 일본군의 인명·재물조사 및 토지측량문제, 부동산법 조사확정(附 부동산사항 토지·가옥 증명규칙)문제, 영국인의 금광채굴권 탈취 및 사유전답 침탈로 인한 광부의 騷擾(附 韓人礦穴資本記)문제, 全南 長興에 창고를 건설하여 미국수출 및 일용잡화 수입 편리의 요구 등이 소개되어 있다.

둘째, 정치 사회적인 침탈에 관한 것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영토로의 주장문제, 舊 韓國 軍器庫 奪占의 문제, 일본군의 이동문제, 관세 감시소 설치문제, 프랑스 선교사와 교인에 대한 행패문제, 이사청사 설치의 문제(附 관찰부 건물지도), 일본 헌병 分遣所 병사의 借家문제(附 借家協議書), 국내용-일본군용 통신망 일원화 작업문제, 일본인의 한국인 살상문제(附 검시보고서 및 시체해부도) 등이 소개되어 있다.

셋째, 청·러시아 및 대외문제로서 한·청 국경상의 강 한복판에 있는 섬의 영토귀속문제, 청인·한인 살상 및 재물탈취에 대한 문제, 청에 대한 生牛 수출금지 요구문제, 러일 전쟁시 러시아로 넘어간 한인·어민포로 및 손해배상 문제, 미국인의 한인 살상문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주로 하는 침략의 양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책의 앞부분에는 채색한 각 도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현재 원본은 3책 및 채색지도로 구성,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그 복사본이 『奎章閣 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되어 있다. <임영정>

各觀察府照會存案(각관찰부조회존안)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東萊監理署 (編)

발행기관 : 東萊監理署(朝鮮)

발행년도 : 1904년

구 성 : 2冊 筆寫本

1904년(光武 8) 1월1일-12월 31일 사이에 경상남도관찰사와 東萊監理署 간에 서로 照會한 내용을 東萊監理署에서 彙輯한 것으로, 주로 在韓 日人들과 韓人 사이에 일어난 문제와 海稅, 鹽稅 등 개항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本 漁船이 우리 어민을 침탈 刺傷 한 일, 일본 철도회사 일꾼이 한인 일꾼을 도적으로 몰아 때려죽인 일, 철도회사 日人과 南砲軍 사이의 총칼싸움에 행인이 죽은 일, 日人이 韓人을 刺傷한 사건에 대한 처벌 문제, 日人과의 채무관계로 인한 日人의 억울한 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벌을 요구한 일, 평안도 의주철도 부역일꾼 700명을 경남 機張郡에서 모집한데 대한 불가함을 말하고 그 처리를 요구한 일, 山林·川澤·田畝·家畬의 소유권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니 모두 韓人 舊主를 찾아주라는 것, 火賊이 日人을 침해한 사건의 조사를 요구한 일, 日本 제일은행의 新造券을 발급하여 대조 사용케 하라는 내용, 公廨 소속문제, 일본 군용철도 전선 방해를 근하는 일로 沿道民이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 객주세력을 이용한 사기사건 등이 있다. 당시 東萊를 중심한 日本人의 침탈 및 횡포의 양태를 알 수 있고, 특히 日人의 경제적 침탈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본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그 가운데 울릉도·독도 영유권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하여 보관하고 있다. <임영정>

各司謄錄(각사등록)

도서번호 : 독도 951.57 7428 7
 저 자 : 京各司(朝鮮)
 발행기관 : 국사편찬위원회(影印本)
 발행년도 : 1987년
 구 성 : 4×6배판 전 22권

각사(各司)란 경각사(京各司)의 준말인데 이는 서울에 있는 관아(官衙)를 통틀어 칭하는 명칭이며, 등록(謄錄)이란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는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조선왕조시대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적 기관의 기록류를

망라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조선조의 정부기구는 중앙에는 의정부 아래 서정(庶政)을 관장한 육조(六曹)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 아문이 설치되고 지방은 8도의 감영(監營) 아래 부, 목, 군, 현(府, 牧, 郡, 縣) 등의 관아와 병영(兵營), 수영(水營) 등이 있었다. 이같은 관아들은 법전(法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사는 이러한 모든 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다.

등록의 종류도 다양하여 밀계(啓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초(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주본(奏本)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일조(日照)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으로 나뉘고, 때로는 같은 내용의 문서도 다르게 표기하기도 하였다.

각사등록은 각아문의 각종 서정에 따른 직접적인 기록으로, 승정원이나 비변사에서 논의된 안건의 대부분은 각사에서 올린 보고서에 의한 것이고, 그 밖에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많은 기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의 현존본은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1910년 조선조말까지의 기록인데, 임란이전의 것으로는 선조 10년~광해군 9년간의 것인 세선정탈등록(歲船定奪謄錄)과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다.

문서의 양식도 매우 다양한데 크기와 편철도 상이하고 그 기간과 쪽수도 다르다. 예컨대 황해감영계록(黃海監營啓錄) 18책은 6개월분이 300장인가 하면 함경감영계록(咸鏡道監營啓錄) 4책은 5년간의 기록이 32장에 불과하다.

오늘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을 각 도별로 나누어 영인 축쇄하여 발간함으로써 당해 시대의 정치, 사상, 사회, 경제와 지방사연구의 기본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14권인 경상도편 넷째권 동래항보첩(東萊港報牒) 제삼책(第三冊) 가운데 1897년(고종 34년)과 1901년(광무 4년) 6월 9일자의 보고 제26호에 울릉도 관련 사항을 동래감리서리 주사 김면수가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보고문을 비롯하여 보고 제27호이다. 그 내용은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포악한 행위에 관한 것, 도민의 개간토지의 크기, 도감(島監)의 관사문제, 그리고 조선인의 수 등이다.

또한, 보고 제27호에는 울릉도 왕래에 따른 소요경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판임관(判任官) 일비(日費) 3량 5전(三兩五錢), 고원(雇員) 일비(日費) 두 냥 오전(二兩五錢)

씩 합계 9개월분 여비가 54량인데 매양 비용이 부족함을 광무 4년 6월 9일자로 보고하고 있다. 《양태진》

各部請議書存案(각부청의서존안)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議政府(朝鮮)
 발행기관 : 議政府(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96~1904년
 구 성 : 28冊 筆寫本

본서는 1896년(建陽 1)~1904년(光武 8) 사이에 各部에서 議政府로 들어온 모든 請議書를 謄寫 合綴한 것이다. 公文 原本이 아니며 의정부에서 보관용으로 기록된 것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안건은 각양각색인데 앞에 제목이 있고 다음 請議書의 首文, 請議書의 부속내용 순으로 되어 있다. 단순히 請議書만 등재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러한 請議書에 따라 법률안이나 규칙이 제정된 경우도 있으며, 請議書에 따라 법률안이나 규칙이 결정된 경우에는 「勅令○號」하는 식으로 그 실제 내용이 수록되었다.

순차를 보면 請議書의 접수 일자 순이기보다는, 왕의 裁可 등 처리한 순으로 정리한 듯 하다. 따라서 冊의 順次를 볼 때 그 날짜가 뒤바뀌어 있다. 책별로 수록 년대는 다음과 같다.

제1책~제4책 : 1896년 후반에서 1897년 말,

제4책~9책 : 1898년,

제9책~13책 : 1899년,

제13책~18책 : 1900년,

제18책~20책 : 1901년,

제20~22책 : 1902년,

제23~27책 : 1903년,

제27~28책 : 1904년.

위의 기간은 이른바, 光武年間으로 수많은 문물제도가 개혁 정비되던 때였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모든 법령 및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두 본서에 수록되었으므로, 그 시기의 제도 문물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안건들이 많다. 이 밖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사항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그런 만큼 수록된 안건들이 매우 다양하고, 豫算外 支出 請議書의 등재가 빈번한데, 이는 이때에 신설되는 여러 機構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機械廠 수리비 지출 건, 1897년도 總豫算 請議書, 各道 丙申年 災結 請議書 및 명세서, 德商 世昌洋行과 礦山 合同 件, 木浦甑南浦口岸開辦件, 京仁鐵道地 段價 예산의 지출 件, 中樞院官制 報施件, 13道 丁酉年 災結 請議書, 作銃規則申明實施, 訶察 染匪竊盜事, 東萊絕影島의 各國租界劃定에 관한 請議書, 英國公使에게 礦山一處의 特准 件, 43郡 各礦 移屬 宮內府 件, 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定, 京釜鐵道の 日本會社와의 訂約 件, 中樞院 官制 改正件, 俄人 케셀닝과 鯨業基址訂約件, 各港市 監理署官制 및 규칙, 商務會議所規則 개정 건, 商工學校官制請議書, 仁川港清商租界內居民搬遷費 豫算外 지출 件, 13道 乙亥災結請議書, 平壤 殷山間電線新建件, 京仁鐵道犯入地段價 豫算外 支出 件, 陸軍法律, 結稅加排請議書, 農商工部蠶業課 設置 請議書, 貨幣條例 施行 請議書, 俄國人 森林合同展限 件, 度支部借款 合同 件, 法國에 礦山一處特准件, 城津形便, 地契衙門職員 및 處務規定, 摠惠民社 및 分惠民社 規定 件, 國內 臨時博覽會 事務所 設置 件, 日人 加藤增雄 顧問官 聘用 件, 各道 各府郡 加結 件, 중앙은행 설립 건, 各道 壬寅災結 請議書, 日使所求漁區 擴張 件, 昌原 馬山港 租界地 段稅頃 免 件, 龍川開港場 設立 件, 1904년도 歲入歲出 豫算表, 1905년 歲入歲出豫算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체신 및 전신 관계, 군사 관계, 개항장 관계, 대외 관계 등의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鬱陵島 삼림벌채에 관한 기록이 있어, 한말 울릉도의 목재벌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해당부분만을 발췌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하여 소장하고 있다. 《임영정》

江原監營關牒(강원감영관첩)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備邊司(議政府)
 발행기관 : 議政府(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59~1884년
 구 성 : 6冊 筆寫本

備邊司에서, 그리고 후기에는 의정부에서 江原監營에 보낸 關文을 모은 책이다. 備邊司(議政府)에서 편찬한 필사본으로 江原監營의 狀啓에 대한 결정사항의 회답을 모은 것이다. 모두 6책으로 되어 있으며, 각 책별로 수록 연대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859년 12월부터 1861년까지이며, 租稅와 그 掇弊에 관한 내용, 防納의 兪금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2책은 1866년-1868년까지이며, 斥邪, 堤堰과 私獻의 폐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3책은 1868-1875년까지이며, 1868년분은 7월부터 수록되어 있다. 書院의 철폐, 免稅의 嚴防, 科弊의 방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제4책은 1875년-1879년으로 1875년분은 12월의 것부터 수록되어 있다. 民亂 관계, 稅滯의 독촉, 外軍과 外人貿易관계 등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다. 제5책은 1879년-1882년까지이며, 1879년분은 10월부터 수록되어 있다. 戶布 民亂 武器 단속 등과 大同米 수송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6책은 1882년-1883년까지이며, 1882년의 것은 9월부터 수록되어 있다. 民瘼, 對外交涉 관계, 當五錢 通用의 독려, 江原道 고유의 人蔘 문제, 民刑事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로 보아 중앙정부에 속하는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의 민란과 외국침투, 그리고 대원군 섭정시의 여러 개혁정책이 지방에까지 미치는 일반적인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중간의 1862년-1865년분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일정 지역의 특수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말 울릉도 개척에 관한 기사가 들어 있다. 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해당부분을 발췌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 소장되어 있다. <임영정>

江原道關草(강원도관초)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議政府記錄局(朝鮮) (編)
발행기관 : 議政府(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86~1895년
구 성 : 3冊 筆寫本

본서는 1886년에서 1895년 사이에 江原道 각 지방과 議政府 사이에 오가던 關文을 초록하여 의정부 記錄局에서 편한 책이다. 조선시대에 각 監營과 守令은 전결 사항 이외에 기타 중요사항은 중앙관사에 稟伸하여 그 재가를 받아 처결하였다. 이 책에는 강원도 각 수령들이 의정부에 올린 관문과 의정부에서 회신한 것이 묶여 있는데, 제1책에는 1886년과 1887년분의 일부, 제2책은 1887년 5월 이후부터 1892년까지, 제3책은 1893년부터 1895년까지의 것이 각각 묶여 있다. 이중에서 1887년 8월에 울릉도에서 '영국인들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베어 가려 한다'는 등의 보고라든가, 1888년 3월 중국 군인들이 금화를 거두어 갔다는 보고,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동해에 출몰한다는 등의 보고는 韓末 어지러운 정세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江原道關草」에는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전복을 채취하고 商販을 행하며 도민이 가꾼 곡식을 절취할 뿐 아니라, 官庫와 민가를 때려부순 일 등이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말 일본 막부의 도해금지령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침탈이 19세기 중엽부터 재개되었다. 이들은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서 楸木을 무단으로 벌목하여 밀반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檢察使 李奎遠에 의해 적발되자, 조선 정부는 일본측에 서한을 보내 항의하고 그들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1883년(고종 20)에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을 모두 철수시켰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목재의 불법 벌채는 당분간 중지되었다. 그런 반면 1888년(고종 25)부터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근해에 출몰하면서 전복을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船團을 이루어 출몰하였는데, 그 규모가 어선 24척에 선원 186명에 달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道洞에 점포를 가설하여 상판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농촌을 다니면서 수확해 넣어놓은 곡물을 무단 수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본서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各司謄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현재 본 자료실에 소장된 것은 앞의 『各司謄錄』 수록분을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하였다. <임영정>

江原道來去案(강원도래거안)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外部(朝鮮) (編)

발행기관 : 外部(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96~1907년

구 성 : 2冊 筆寫本

1896년에서 1907년까지의 외국인과 관계되는 강원도의 公文書 綴이다. 문체는 국한문 혼용으로 外部에서 編하였다. 여러 책으로 分綴되어 있던 것을 2책으로 묶었다. 묶은 編次대로 하면 제1책은 1896년(建陽 1)에서 1899년(光武 3)까지, 제2책은 1901년(光武 5)에서 1907(隆熙 1)까지의 것이다. 해당 사항에 「江原道觀察使之章」, 「江原

道印」, 「外部之印」 등이 찍혀 있으며, 각 군 또는 觀察使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外部의 재가 또는 훈령이 첨부되어 있는 것도 있다. 주목되는 내용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96년 7월 金化에서의 天主教徒들의 비행에 대한 보고와 그 처분에 대한 문의, 1897년 8월 러시아인의 울릉도에서의 벌목 사항, 동년 11월 人蔘圃의 役事に 日本人이 관여하여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항, 1898년 2월 독일인이 경영하는 金城鑛山에서 인부가 일으킨 분쟁의 건, 1899년 4월 러시아인에게 고래잡이 기지를 조차하는 건, 동년 4월 杆城에서의 日本人 행상의 약탈과 그 배상에 관한 건, 1901년 9월 울릉도에서 日人이 侵漁하고 재목을 벌채하는데 대해 그 조치를 문의한 것, 1905년 3월 金化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이동하여 상경한다는 보고 등이다.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 천주교도를 자의로 처벌하지 않고 관계국 즉, 독일·프랑스 공관에 문의하여 처결한 점이라든가, 江原道 지방의 이권을 놓고 외국인들이 각축을 벌인 사례들이 보이는 것이다. 또 한일합병을 앞두고 일본군이 각지에 주둔하거나 이동한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서는 울릉도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광산과 풍부한 산림이 있는 지역에 대한 구한말의 외국인의 산업잠식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 기울어져 가는 구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살필 수 있는 문서이다. 특히 日本大使의 눈치를 보며 외교를 폈던 外部의 각종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본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그 해당부분을 발췌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 資料』에 합책 보존하고 있다. <임영정>

江原道誌(강원도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ㅎ155ㅎ
 저 자 : 江原道誌刊行委員會
 발행기관 : 韓國人文科學院(影印本)
 발행년도 : 1991년 (원본 1940년)
 구 성 : 2권(22권 690면, 23권 581면)

한국근대도지(韓國近代道誌) 제22-23권으로 영인되었다. 강원도는 산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탓인지 도지나 개별읍지의 편찬이 타도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편이다. 물론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에 강원편이 있고, 그 속에 각 군현의 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후기 영조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도 강원도 26개 군현의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종때 조령에 의하여 3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도지가 편찬되는데, 강원도는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관동읍지만 전해 오고, 그 후 1895년과 1899년에 편찬된 강원도지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원도지는 순조 26년(1826)부터 순조 31년(1831)사이에 편찬된 관동지가 타도와 다르게 전해온다. 그러므로 강원도에는 대부분의 타도에 6종 이상의 도지가 전해오는데 비하여 5종의 도지밖에 없다. 개별 및 사찬읍지는 인조 9년(1631)에 이식이 편찬한 수성지(守成誌), 인조 26년(1648)에 엄황(嚴愷)이 편찬한 춘천부읍지, 현종 3년(1662)에 허목(許穆)이 편찬한 척주지(陟州誌)등을 비롯하여 18세기에는 영조 9년(1733)에 평해군지, 영조 46년(1770)에 금화현읍지, 정조 12년(1788)에 강릉부지, 정조 14년(1790)에 현산지(峴山誌), 정조 16년(1792)에 회양현읍지(淮陽縣邑誌) 등이 편찬되며, 순조 26년(1826)에 평창군지, 횡성현지, 철원군지 등이 편찬되어 전해온다.

강원도지는 강원도 도의원이었던 김기옥(金基玉)이 주축이 되어 1938년에 도지간행 위원회가 구성되고, 금화군에 편찬소를 개설하였다. 이는 금화군이 강원도의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3년간 각고 끝에 1940년 9월 본문 10권 5책, 부록 1권 도합 11권 5책으로 도지가 완성되었다. 이 도지 편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황의민, 김용제, 하상락, 김병식, 권우상, 김육기 등 6명이고, 각 군별로 사재자(私財者), 간행자(刊

行者)를 두어 모두 238명이 이 도지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각 군의 군지를 취합하여 참고하였고, 동국여지승람, 고기(古記), 삼국유사, 동국통감, 고려사, 아방강역고, 문헌비고, 택리지, 팔도읍지, 연려실기, 전고대방, 국조방목, 동사강목, 동문선, 동학지(東鶴誌), 노릉지(魯陵誌), 장릉사보(莊陵史補), 사찰비고(寺刹備考),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제가문집(諸家文集) 등을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도지를 편찬하였다.

편찬체제를 살펴보면 권 1에서는 건치연혁·위치와지세·관직·성씨·풍속·형승 등의 항목으로 짜여있다. 대개의 편목이 다른 읍지나 도지와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다른 도지들은 각 군현별로 독립되게 지리지를 편찬한 후, 이를 감영에서 취합하여 묶어서 도지로 펴냈다. 즉, 타도의 도지들은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 각각의 군현지가 독립된 읍지이다.

강원도지는 각 군의 사실들을 모두 취합하여 각 군의 건치연혁항은 건치연혁항에 모두 묶어서 기술하고 있다. 즉, 원주군에서 시작하여 횡성군까지 3개 군의 건치연혁을 설명한 후 다음 항목인 위치항목으로 넘어가며 3개 군의 위치 설명이 끝난 후에 다음 항목인 관직항목으로 넘어간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인 책판항까지 일일이 3군의 해당사항을 모두 적고 있다. 타도지가 도지이면서 각 군현의 개별읍지로서의 독립성을 잃지 않고 있는 점과는 전혀 다르다. 그야말로 통일적이고 거도적인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편찬된 명실상부한 도지로서 이러한 도지는 타도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도지를 편찬했는가를 알 수 있다.

권 2는 산천항인데 금강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차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권 5의 목차에는 사찰·종교·교육·세거씨족 순인데 실제 내용은 사찰·세거씨족·종교·교육 순으로 편찬되어있다. 목차에 오류가 있는 셈이다.

권 11의 부록 항에는 울릉도 읍지가 수록되어있다. 울릉도의 연혁·위치·관직·풍속·산천·면동·토지·호구·도록·시장·단묘·수재항으로 되어있는데 당시의 울릉도 호수는 1,919호였고, 인구는 11,331명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항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단종에 관한 사실이다. 장릉지를 비롯하여, 단종입절제현(端宗立節諸賢), 노릉제영(魯陵題詠), 장릉시초(莊陵詩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강원도지는 도지간 행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군의 사실들을 모아 항목별로 편찬한 유일한 도지이며 명실상부한 도지이다. <<이상태>>

高麗史(고려사)

도서번호 : 독도 951.4 지194 ㄱ

저 자 : 鄭麟趾 外

발행기관 : 아세아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1972년 (원본 1454년)

구 성 : 국판 전 3권

본서는 139권 101책으로 엮어진 목판본으로, 고려시대 34왕 475년간의 정사(正史)이다.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가 개국(開國)후 정도전(鄭道傳)과 정충(鄭冲) 등에게 명하여 고려역대실록(高麗歷代實錄)과 민지(閔漬)의 강목(綱目), 이제현(李齊賢)의 사략(史略) 및 이색(李穡)의 금경록(金鏡錄) 등을 참고하여 편찬하였으나, 그 내용이 37권의 편년체로 된 조잡한 것이라 하여 태종이 다시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교정케 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세종 때에 와서 왕명으로 정인지, 김종서 등이 개찬(改撰)하여 문종 1년(1451년)에 완성, 단종 2년(1454년)에 출판되었다.

체제는 중국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본따 세가(世家)·지(志)·표(表)·열전(列傳) 등 4개항목으로 나누어 기전체(紀傳體)로 서술하였다. 그 중 세가는 46권, 지(志)는 39권, 표(表)는 2권, 열전 50권 그리고 목록 2권 등 총 139권으로 되어 있다.

고려사는 역사 서술의 이론이나 방법보다 고려시대의 근본 사료에 의거해 서술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기록을 보존해 주는 의미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본서의 세가(世家)에는 태조 13년 8월에 울릉도 독도관련 기사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고려사 권 1 세가 태조 13년(930년) 8월 병오조에 우릉도(羽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므로 백길은 정위(正位), 토두는 정조(正朝)의 직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음을 비롯하여 현종·덕종·인종·의종·세가에 울릉도 관계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지리지 권 58 울진현(蔚珍縣)조는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함으로써 동해 바다에 2개의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는 울릉도이고 하나는 독도로 볼 수 있

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주장이다. <양태진>

高麗史節要(고려사절요)

도서번호 : 독도 951.4 73187
저 자 : 金宗瑞 外
발행기관 : 韓國學文獻研究所(영인본)
발행년도 : 1973년 (원본 1451년)
구 성 : 국판 전 1권

본서는 고려시대에 관한 편년사로서 고려사와 함께 고려시대 연구의 필수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1451년(문종 원년) 8월 김종서 등이 고려사를 찬진하고 난후 편년체의 고려사 찬수(撰修)를 주청하여 이듬해에 본서가 완성되었다.

본서는 『고려사』와 달리 군주가 행한 사실과 언사(言辭)중 특별히 반성자료가 될 만한 것이거나 정치적 의미가 큰 것만 간추려서 실고 나머지는 삭제한 반면, 대신(代臣)과 현사(賢士)들의 정치적 행적과 직책·언사는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려사』와의 차이점을 든다면, 교훈적 차원에서 볼 때, 『고려사』는 군주의 입장에서, 본서는 신하의 입장에 두었으며,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랐다. 본서에서는 군주의 조교(詔敎)를 삭제하거나 국가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제사(祭祀)만 간추려서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고려사 세가에 기록된 문종때 종교행사 기록이 모두 135회나 되는데 비해, 절요에서는 20회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 그 뚜렷한 예이다. 그리고 외교문서의 경우 군주나 왕실의 사사로운 일과 관련된 것은 모두 삭제해 버리고 국가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만 가려 뽑아 기록하였던 것이다.

본서에서도 『高麗史』 세가편에 나오는 기록 이를 테면, 태조 13년(930년) 8월 병오 조에 우릉도(羽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므로 백길은 정위(正位), 토두는 정조(正朝)의 직을 받았다는 울릉도 지방 통치의 기록을 비

롯데, 현종(顯宗) 9년(1018년) 11월 병인조, 동왕(同王) 10년(1019년) 7월 기묘(己卯)조, 현종 13년(1022년) 7월 병자조, 덕종(德宗) 원년(元年:1032년) 11월 병자조, 인종(仁宗) 19년(1141년) 7월 기해(己亥)조, 10여년 후인 의종(毅宗) 11년(1157년) 5월 병자(丙子)조의 기록과 같은 시기에 같은 울릉도관계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양태진》

嶠南誌(교남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ㅎ155

저 자 : 金世鎬

발행기관 : 韓國人文科學院(影印本)

발행년도 : 1991년 (원본 1867~1875년)

구 성 : 6권(10권 495면, 11권 509면, 12권 503면, 13권 337면, 14권 389면, 15권 379면)

한국근대도지(韓國近代道誌) 제10-15권으로 영인되었다. 교남지는 경상도의 도지이다. 교남이란 “우뚝 솟은 산의 남쪽 고을”이란 뜻으로 조령 남쪽에 있는 지방의 지리 지란 말이다. 이 교남지는 고종 4년(1867)부터 고종 10년(1875)까지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던 김세호가 71개 군현지를 모아 편찬하였다. 이를 1937년 성주의 정원호가 김세호본에 증보, 첨삭을 가하여 전 76권 15책으로 편찬하여 인쇄 간행하였다. 이 지리지는 앞서 설명한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하여 편찬된 도지, 또는 사찬읍지 편찬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이 지지는 다른 지지와 賢媛項과 慈善項을 추가한 점이 특이하며, 日帝時代에 달라진 동명, 신식학교명, 새로 설치된 우체국, 도로와 철도명, 국세, 도세 등도 소개하고 있다. 교남지에 수록된 군현은 총 3부 73군 1도인데, 당시에 경상북도는 22군 1부 1도였으니 19개 군현이 없어진 것이고 경상남도는 2부 19군이니 12개 군현이 없어져 도합 31개 군현이 통합되었다. 경상도 지방에는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하여 일찍부터 많은 지리지가 편찬되었는데, 교남지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편찬된 도지로서 경상도읍지의 종합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태》

交渉局日記(교섭국일기)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外部交渉局(朝鮮)

발행기관 : 外部(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96~1905년

구 성 : 필사본

舊韓國의 外部 즉, 오늘날의 외무부에 해당하는 부처 산하 교섭국(交渉局)의 일기로서 建陽 원년(1896) 2월 5일부터 光武 9년(1905) 11월 8일까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부에는 교섭국 이외에도 通商局이 있었는데, 이 기구에서도 일기를 편찬하여 『通商局日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交渉局日記』는 통상국의 『通商局日記』와 더불어 외부에서 나오는 기관지인 셈이다.

外部의 전신은 外衙門이었다. 그러던 것이 1895년 칙령 제42호로 기구 명칭이 外部로 바뀌면서 당시 외아문에서 편찬되던 『外衙門日記』가 자연히 交渉局·通商局의 日記로 바뀌어 편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交渉局日記』를 보더라도 제1책부터 제4책까지의 시기인 1896년 2월 5일부터 1899년 8월 8일까지는 『외아문일기』와 중복되고 있는데, 이는 『외아문일기』와 병존하면서 기록되어 오다가 『외아문일기』의 서술이 단절된 후에는 『통상국일기』와 더불어 外部의 대표적인 기록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섭국은 外部 내에서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외교정무제반 조약의 해석·외교관의 직무 및 권한·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國人 및 外國人居留地犯罪人 인도·외국인의 內地旅行의 인·허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구였다. 그에 따라 자연히 『교섭국일기』의 내용도 소관업무의 성격상 주한 외국공관과의 교섭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정부 각 부처와의 업무처리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본 일기가 수록한 것은 열강의 이권 개입이 본격화되고, 이들 간에 대립이 첨예화하여 결국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권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 내용도 열강의 이권 개입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며, 특히 광무 4년

부터 6년 사이 울릉도에 도항, 무단으로 벌목하던 일본인에 대한 기사가 우리의 눈을 끄는 사료이다. 본 자료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奎章閣 所藏 獨島關聯資料』로 편책되어 있다. <임영정>

內部來去文(내부래거문)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議政府(朝鮮)

발행기관 : 內部(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95~1905년

구 성 : 필사본

본서는 1895년(고종 32) 4월부터 1905년(광무 9) 12월까지 외부에서 접수하거나 발송한 내부관계 문서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 국한문 혼용이며 각 책마다 표지명이 다른데, 1책부터 5책까지는 「內部文案」, 6책부터 9책까지는 「內案」, 10권과 15권에서 17권까지는 「內部案」, 11권부터 14권까지는 「內部來去案」이라고 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사실은 주로 범죄사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 주한 외국인의 행동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일 등인데, 그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에는 1895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난입하여 수목의 껍질을 벗기고 폐단을 일으키는 건과 일본군함의 연해안 측량을 각 지방관이 막지 말 것을 훈령한 일 등이 주목되는 내용이다.

제2책에는 1895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東萊府의 舊 讞大廳 기지를 일본 군부에서 잠시 빌리는 건, 江陵府에서 각 외교통상약장을 印刊 配付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책에는 189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평양에 있는 일본 인행상자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의 건, 일본 상인의 內地 왕래시 執照를 휴대하지 않는 일에 대한 내부의 照復文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4책에는 189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안악군 치하포에서 김창수김형진최창조 등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照會, 일본인 蛭子音三郎이 한국인 정해주 외 2인을 대동하고 內地로 다니며 質米한 건에 대한 조회·조복문 등이 그 내용이다.

제5책에는 1897년 1월부터 1898년 12월까지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黃海道 信川郡 斗羅坊 청계동의 안태훈은 안중근 父인데 그가 향장 유만현을 제거한 일, 일본인이 무리를 거느리고 금산 독산촌 삼포에 와서 探蓼하려다 圃主와 시비가 일어난 사건 등이 주목되는 내용이다.

제6책-10책은 제1책-제5책과 시기와 내용이 거의 같으며, 간혹 다른 문서가 보이고는 있으나, 거론할 정도는 아니다.

제11책은 「內部來去案」 제6호로도 표기되었는데 1908년의 사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인인 松谷安一郎과 神田健吉이 울릉도의 槻木을 무단 벌채하여 몰래 팔아먹으면서 島民에게 행패를 부리는 건에 대한 조회 등이 주목되는 내용이다.

제12책은 「內部來去案」 제7호로도 표기되었는데, 1899년의 사건을 수록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村落을 형성하고 島民을 凌虐하며 森林을 벌채한다는 건(照會·照覆) 등이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다.

제13책은 「內部來去案」 제8호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1900년의 사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울릉도재류 일본인을 조사하는 요령 드이 주목된다.

제14책은 「內部來去案」 제9호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1901년부터 1902년까지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鬱島郡에서의 일본인 벌목 건, 만주의 길림·토문·흑룡 이북 등지에서의 韓人寓居의 건, 함북 간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이범윤의 보고 등이 주목되는 내용이다.

제15책은 「內部來去案」 제10호로도 표기되어 있으며 1903년의 사건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인의 越界入淸 문제,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63戶의 무제한 벌목 등의 건 등이 주목된다.

제16책과 제17책은 각각 「內部案」 제11호와 제12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1904년과 1905년의 사건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간도 관리 이범윤의 請兵俄官一事, 日本軍糧 및 군수품 수송의 협조의 건, 伊藤博文 방문의 건, 거제도 일본군함 5척이 來泊한 일, 元山駐劄 日本聯隊의 我地方官에 대한 越權事, 통신사무 협정에 의해 일본으로 인계하는 건, 일본인의 토지강매의 건 등이 그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內部의 소관사항이 되는 외국인문제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으며, 특히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침탈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어 주목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서는 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부분만을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하였다. <임영정>

內部來去案(내부래거안)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內閣(朝鮮) (編)

발행기관 : 舊韓國 內閣

발행년도 : 원본 1906~1910년

구 성 : 4冊 地圖 筆寫本

본서는 1906년(光武 10) 2월부터 1910년(隆熙 4) 8월까지 各部와 內部 사이에 왕래된 공문을 모은 것이다. 특기할 만한 수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臨時帝室所有 及 國有財産調査局의 보고서(經理院 收租宮의 폐지, 驛屯土와 各宮 田畚園林의 收租는 度支部로 위탁), 경상남도 鎭海灣과 함경남도 영흥만을 군항으로 예정하여 일본정부에게 임시로 租借하도록 하는 일, 경상남도 東萊府, 釜山鎭의 海面 埋築工事に 대한 認可願·설계서·계약서·증명원과 지도, 마산 栗九周(전에 러시아 租借地였으나, 한러 조약의 폐기로 폐지됨)를 일본 어민의 어업기지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군용지로 수용하는 것, 진해만의 요새 방비상의 필요로 일본정부에서 昌原府의 加德島 및 부근 지역을 영구사용하는 일(昌原府의 並山列島, 牽馬島內의 內部所營 官有地 國有地 民有地 海軍省用地가 표시된 지도가 몇 장 첨부되어 있음), 통감부 間島 派出所의 폐지문제, 圖門江을 국경으로 하는 圖門江北帶墾地 間島地域에 대한 한청 사이의 협조 7개조에 관한 일, 鴨綠江 하류 龍岩浦 앞 바다의 申澤坪의 韓·淸간의 소속문제와 그 섬의 葦草刈取權 문제에 대한 자료 및 증거의 조사(지도 첨부) 등이

그 대표적 내용이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간도영유권과 관계되는 몇가지 문제점에서 주목된다.

본서의 내용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데, 특히 당시 외세의 침투로 인한 국내의 경제적 침탈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본서는 필사본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되어 있다. <임영정>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

도서번호 : 독도 912.51 7856ㄷ지

저 자 : 金正浩

발행기관 :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影印本)

발행년도 : 1991년 (원본 1861년)

구 성 : 지도 22첩

『대동여지도』는 『동여도』와 같이 가로 80리, 세로 120리를 한 개의 방안(方眼)으로 하여 한 개 면(面)으로 하고, 2개 면은 한 개 도엽(圖葉)인 목판 한 장에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대동여지도』의 전체 지도 도엽은 목판 121매이고 제책(製冊)이 되었을 때의 면수는 213면이다. 그러나 여기에 부록적인 지도유설(地圖類說)·도성도(都城圖)·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등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엽으로 126목판이고 전체 면수는 227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가로 70리, 세로 100리를 한 개 방안으로 한 개 면을 이루어 총 321면인 『청구도』와 비교할 때 94면이 줄어든 숫자이다. 『대동여지도』의 면수가 『청구도』의 면수보다 줄어든 것은 『대동여지도』가 『청구도』보다 가로 10리, 세로 20리를 한 개 방안에 더 수용하고 도서를 육지에 가깝게 배열하여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구도』는 동서 22판 남북 29층이고, 『대동여지도』는 동서 19판 남북 2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전체 거리로 환산하면 『대동여지도』는 동서가 1520리이고 남북은 2,640리이다.

『청구도』는 육지와 제주도 사이의 바다를 제26·27·28층으로 편성하였지만 공백(空白)과 여백층(餘白層)으로 되어 있다. 반면 『대동여지도』에서는 그와 같은 바다의 공간을 두지 않고 제주도를 별도의 지도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260리의 공간층이 없다. 그러므로 육지만의 남북 거리는 두 지도가 2400여리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엽을 재구성하여 100여 면을 줄인 이유는 보다 넓은 지역을 하나의 도엽에 수용하여 독면(讀面)에 도움을 주고 목판각이라는 제작상의 어려움도 덜고자 했기 때문이다.

도엽의 재구성으로 나타난 변화로는 경도 부분이 상당히 변했다는 것이다. 『청구도』 16층 14면과 『대동여지도』의 13층 12면을 면밀히 비교하면, 『청구도』는 한양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동쪽 경계선이 12면을 넘어가 있어 2개 면을 잇대어 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대동여지도』는 한양이 한 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여 한양을 둘러싼 경계(境界)가 모두 수용되었으며 북쪽과 남쪽 끝에 양주와 수원을, 서쪽과 동쪽에 양천과 광주, 그리고 동북쪽 지역의 능원(陵園)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구성은 당시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동여지도』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각 층의 도엽(圖葉)을 연폭(連幅)으로 동에서 서로 길게 잇고 이것을 병풍식으로 접어 모두 22층으로 하는 분첩절루(分帖折疊)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한 질이 되게 하였다. 이 때 책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30cm로서 당시 서지류(書誌類)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편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동여지도』는 개개 층별로 동에서 서로, 남북으로 22층을 계속 인접하면 가로 4m, 세로 8m의 거대한 우리나라 전도(全圖)가 된다.

『대동여지도』는 『청구도』·『동여도』와 마찬가지로 100리를 1척(尺)으로, 10리를 1촌(寸)으로 한 백리척(百里尺) 축척의 지도이다. 그러나 당시의 1촌(寸) 1보(步)가 현재의 몇 cm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쉽게 미터법에 의한 축척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들 지도에 적용한 주척(周尺)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동여지도』의 축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한 축척으로는 대체로 1 : 160,000과 1 :

216,000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조선시대의 10리가 현재의 10리와 마찬가지로 4km라는 거리 개념에서 출발하여 계산해 낸 축척이다. 그러나 이 축척은 문제가 있다. 『대동지지』에는 “주척(周尺)을 쓰되, 6척은 1보이고 360보는 1리이며 3600보는 10리로 된다” 는 기사가 있는데도 이를 유념하지 않은 채 계산한 축척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0리=4km 개념은 조선시대 거리 개념이 아니고, 일제가 토지 측량 사업에 사용한 거리 개념이다.

후자는 이우형(李祐炯) 등이 주장하는 거리 개념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터법은 원래 지도의 축척을 통일하기 위하여 탄생된 단위로 지구의 둘레가 4만km에서 비롯되었으므로 360도로 나누면 1도는 111.11km가 된다. 이를 당시 위도 1도는 200리라고 하였으므로 111.11km를 200리로 나누면 5.5km가 되어 10리는 약 5.5km가 되는 것이다.

둘째, 『속대전(續大典)』과 『대동지지』에는 “주척을 단위로 쓰되 6척이 1보이고 360보가 1리이며 3600보가 10리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주척의 길이는 31.24cm, 20.8cm, 25cm 등으로 다양하다. 순조 때에는 25cm를 기준으로 한 듯하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5\text{cm} \times 6 = 150\text{cm}$, $150\text{cm} \times 360\text{보} = 0.54\text{km}$, $0.54\text{km} \times 10\text{리} = 5.4\text{km}$ 가 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10리는 4km가 아니고 5.4km이다. 이러한 두 근거에 의해 『대동여지도』의 축척은 약 1 : 216,000이 되는 것이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걸작품인 동시에 우리나라 고지도를 집대성해 놓은 최고의 고지도이다. 이 지도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의 길을 터놓았다.

둘째, 지도표를 사용하여 지도의 주기 내용을 간결화하고 고지도를 근대화시켰다.

셋째, 분합이 자유롭게 22첩으로 만들어 상하를 연결하면 도별지도도 되고 전부 연결하면 전국도가 되도록 제작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접으면 책 크기만 하여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하도록 제작하였다.

넷째, 전통적인 고지도 제작 양식인 배수의 6체를 사용하고 방안도법을 이용하였으며, 확대 축소할 때에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가미하여 고지도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다섯째, 다른 어느 고지도보다 주기내용이 많아 풍부한 정보량을 담고 있다.
 여섯째, 10리마다 점을 찍어 여행할 때 이정(里程)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태>>

大東輿地圖의 研究

도서번호 : 독도 912.51 ○391ㄷ

저 자 : 원경렬

발행기관 : 성지문화사

발행년도 : 1991년

구 성 : 219면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최고의 전국지도인 『대동여지도』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서이다. 이 책은 고지도 및 『대동여지도』에 관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었던 저자의 박사학위논문(1991년)을 책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 책은 대동여지도 제작의 배경(제2장: 저술활동, 생애, 대동여지도와 관계 깊은 고지도), 대동여지도의 지도적인 특색(제3장: 제작목적, 제작방법, 형태, 좌표와 방위, 축척, 기호), 대동여지도의 내용 분석(제4장: 산맥과 하계망, 지명의 분석, 행정구역 즉 대동여지도상의 지방행정구역, 월경치, 속현, 계수관도 등, 역참과 봉수망), 대동여지도의 가치평가(제5장: 지도로서의 가치, 역사지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등으로 구성되었다. 목차와 구성에서 보듯이 당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의 지리사상이나 지도제작방법이 대동여지도상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외래적인 지리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고찰했다. 또한 대동여지도의 제작과정, 제작방법, 축척, 방위, 기호 등을 중심으로 지도적인 특색을 밝히고,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내용을 행정구역, 도로망, 봉수망 등 항목별로 분석해 현대지도에 옮겨 그린 후 당시의 지리적 상황을 복원했으며, 대동여지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김정호의 옥사설과 대동여지도 압수설이 사실이 아님을 재확인했으며, 최한기 외에 최성환, 신헌 등 후원자가 있었고, 대동여지도의 제작기법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충실히 지켰음과 경위도의 좌표와 같은 당대의 지리적인 지식을 활용했음을 밝혔다. 대동여지도의 특색을 분석한 결과 과학성과 정밀성이 현대지도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으며, 기호 사용에서 기호의 추상성이나 간결성이 조선시대의 지도 중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을 통해 지도에 나타난 산맥의 주향이나 명칭이 현재와 다르며, 하계망 분석을 통해 가항수로(可航水路)의 개념을 밝혔다. 행정경계도의 작성, 도로망이나 봉수망의 복원 등도 이 연구의 큰 성과이다. 부록으로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사상과 지도 제작 개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여도비지(輿圖備志)』의 ‘전국 주현의 경위도표’, 『청구도』의 ‘청구도제(靑邱圖題)’와 ‘청구도법례’, ‘지도식(地圖式)’, 『동여도(東輿圖)』 여백에 기입된 설명의 원문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는 울릉도는 그려져 있으나, 독도가 표시되지 않아 이 책에도 독도에 관한 분석이 없는 점이 아쉽다. <양보경>

大東地志(대동지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7856ㄷ

저 자 : 金正浩

발행기관 : 亞世亞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96년 (원본 1861~1866년)

구 성 : 639면

『대동지지』는 모두 30권 15책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평안도편의 일부와 산수고(山水考) 및 변방편(邊方篇) 등이 결본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지지』는 영남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동여도지』와 마찬가지로 고산자 김정호의 육필본이다. 그런데 『동여도지』에도 평안도편이 결본인 것처럼 『대동지지』에도 평안도편의 일부가 결본이며 또 남아 있는 일부도 고산자 김정호의 친필본이 아니고 누군

가에 의해서 깨끗이 정서된 지지이다. 언제 누구에 의해 첨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동지지』의 편찬 완료 연대는 지금까지 고종 원년(1864)으로 와전되어 있다. 이는 『대동지지』 첫 장에 “신라 시조 원년 갑자로부터 본조 철종 14년 계해까지는 무릇 1920년이며 32갑자에 해당된다(起新羅始祖元年甲子 止本朝哲宗 十四年癸亥 凡一千九百二十年三十二甲子)”라는 기사와 『대동지지』 권1 경도 국조기년(國朝紀年) 철종에 관한 기사 다음에 실려 있는 “주상 전하 원년 갑자(主上殿下元年甲子)”라는 기사를 근거로 고종 원년(1864)에 편찬 완료되었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 기사의 “신라시조 원년 갑자”로부터 32갑자에 해당하는 갑자는 고종 원년(1864)에 해당되며 뒤의 기사 주상전하는 고종을 가리키고 원년 갑자는 1864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주상전하 원년 갑자(主上殿下元年甲子)” 다음 줄에 기록되어 있는 “중궁전하는 민씨이며 본은 여주이고 부원군 민치록의 딸(中宮殿下閔氏 籍驪州 府院君致祿女)”이라는 기사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민씨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고종 3년(1866) 3월이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고종 3년(1866) 3월 초에 대왕대비가 빈청에 하교하여 첨정 민치록(閔致祿)의 여식과 대혼하기로 정하고 민치록에게 의정부 영의정과 여성부원군의 봉작을 내렸다. 3월 20일에 책비례(冊妃禮)를 행하고 3월 21일에 친영례(親迎禮), 3월 22일에 대왕대비가 왕비 민씨의 조현례(朝見禮)를 받았다. 이와 같이 『고종실록』과 『대동지지』의 국조기년 고종조의 기사를 고려해 보면, 김정호는 적어도 고종 3년(1866) 3월 이후까지 『대동지지』의 편찬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동지지』의 편찬 하한을 고종 3년(1866)으로 잡았을 때 상한선은 어디일까? 『대동지지』 권14 전라도 흥양군 연혁조에 “당저 10년 군으로 승격되었다(當宁十年陞郡)”는 기사와 『대동지지』 권18 황해도 문화현 연혁조의 “당저 2년 신해에 강등당하고 11년에 다시 승격되었다(當宁二年辛亥降縣監 十一年復陞)”는 두 기사가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당저 2년 신해”는 철종 2년(1851) 신해년과 일치하므로 김정호는 『대동지지』를 철종 재위년 기간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셈이다.

『대동지지』 권5 충청도 도세조에서 연혁을 설명할 때 철종 13년(1862)에 역적 김순성(金順成)의 태지가 청주이므로 충청도의 도명에서 청(淸)자를 빼고 공충도로 개칭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김정호는 철종 12년(1861)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후 곧 『대동지지』 편찬에 착수하여 고종 3년(1866) 이후까지 편찬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호는 철종 13년(1862) 김순성의 난 이후에 『대동지지』 편찬에 착수하여 고종 3년(1866) 죽는 날까지 편찬을 계속하였다.

『대동지지』는 『동여도지』를 근간으로 삼고 『여도비지』를 참고로 보완한 지지이다. 『동여도지』에는 역대 주현(州縣) 등 역대지가 별책으로 첫머리에 편찬되어 있는데 『대동지지』에서는 이를 맨 마지막에 『방여총지(方輿總志)』 편목으로 배열하고 있다.

「정리고(程里考)」는 『동여도지』와 마찬가지로 주현지(州縣地志) 뒤에 배열하고 있다. 『대동지지』의 총목과 『여도비지』의 총목 등을 비교해 보면 전국 주현 지지의 배열이나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동지지』는 『동여도지』의 체재를 근간으로 하여 『여도비지』에서 추가 보충한 내용들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책의 분량을 비교하면 『동여도지』가 22책 정도이고, 『여도비지』는 20책인데 『대동지지』는 15책으로 다소 그 분량이 줄어들었다. 문목을 비교하면 『대동지지』는 『동여도지』의 42개 문목보다 20개나 적은 22개 문목으로 각 도 주현의 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의 문목은 『여도비지』의 문목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동여도지』의 세분된 문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다만 풍속·재용(材用)·수리·장시 등의 문목이 생략되었을 뿐이다. 특히 장시항(場市項)의 생략은 종래의 상공업 발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상치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상태>

島嶼文化(도서문화)

도서번호 : 독도(N) 309.24 c313
저 자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발행기관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발행년도 : 1983~2000년
구 성 : 매년 1권 발행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서남해안의 도서 지역을 종합적으로 학술조사한 후 매년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로서 섬에 관한 최초의 전문 학술지이다. 1983년 제1집 간

행 이후 매년 1권씩 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간행되어 조사된 대상 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집 암태도 조사보고(1983년), 제2집 조도(1984년), 제3집 신안군 장산도·하의도(1985년), 제4집 신안군 안좌도(1986년), 제5집 신안군 지도(1987년), 제6집 신안군 흑산도(1988년), 제7집 완도군 보길도(1990년), 제8집 완도군 청산도(1991년), 제10집 완도군 평일도(1992년), 제11집 완도 소안지역의 사회문화적 성격 연구(1993년), 제12집 완도 약산지역(1994년), 제13집 완도군 고금도(1995년), 제14집 완도군 신지도(1996년), 제15집 완도군 노화도(1997년), 제16집 완도군 체도(1998년), 제18집 신안군 압해도(2000년) 등이다.

3,000여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이 지니는 의의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해양적, 사회적,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섬에 관한 관심이 연구성과로 집약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이 책은 섬에 관한 관심을 집성한 최초의 연구서이자 정기간행물로서, 지리·역사·언어·인류·민속·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유인도를 정해 함께 공동 학술조사한 후 보고서의 형태로 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 섬의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배경, 선사유적, 문화유적과 유물, 촌락구조, 전통민가, 방언과 어휘, 설화, 신앙민속, 가족, 농기구와 어로도구, 경제적 적응과 변화과정, 항일민족운동, 입도유형과 사회구성, 공동체 문화와 그 변용, 농지개혁과 토지이용 등이 조사되어, 해당 도서에 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양보경》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도서번호 : 독도 951.99 0888

저 자 : 이진명

발행기관 : 삼인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248면

이 책은 프랑스 리옹3대학교 교수인 이진명 박사가 동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발견에 관한 것들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를 2부로 나누어, 제1부는 독도를 찾은 서양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제2부는 동서양의 지도 및 해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787년 La Perouse의 울릉도 조사와 1849년 포경선 Liancourt호의 독도 발견으로, 서양의 수로안내기인 수로지(Pilot 혹은 Sailing Directions)에 나타나는 독도의 기술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로안내기 혹은 수로지는 매년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발행되고 있는데,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적으면 수정판이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고, 많으면 그 기간이 빨라진다.

해군이나 수로국에서는 수로연보라 하여 매년 단위로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로지와 구별이 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수로연보에 실렸던 사항들이 모여져서 수로지를 수정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책은 1849년 포경선 Liancourt호의 독도 발견에 대해서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영국해군성에서 발행한 수로지, 프랑스해군성에서 발행한 수로지 등을 중심으로 독도의 지리적 발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저자는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 『서양자료로 본 독도』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한상복》

독도와 동해

도서번호 : 독도 951.99 ㅎ158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350면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에서 1997년 9월 펴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의 후속편으로 8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전체의 요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논쟁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고 그 해결책으

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당사국들이 준수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동해의 국제적 고유명칭은 연안당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Orient Sea로의 개칭을 제1안으로 제시하고, 제2안으로는 Blue Sea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1899년 9월 23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 별보(別報)로 실린 「울릉도상황」과 1907년 출판된 장지연의 「大韓新地志」 卷二에 나온 울도의 설명, 1999년 3월 16일 발행된 관보 제14154호에 실린 독도등대 현황변경(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1999-5호), 1986년 국제수로기구에서 Limits of Oceans and Seas 제4판 발행을 위한 수정본 표지와 동해부분, 1797년 출판된 La Perouse 탐사도, 1798년 Aaron Arrowsmith가 출판한 북서태평양해도의 한반도와 일본부분, 1861년 영국에서 발행된 China Pilot 제3판 표지와 제11장의 목차 및 처음 두 쪽의 내용 등을 영인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2장은 1998년 4월 발행된 한수당연구자료집 제209권으로 1894년 8월부터 1907년 12월간 관보에 나타난 울릉도 사항을 정리했다. 제3장과 제4장은 동해의 명칭에 관한 자료집이고, 제5장은 보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88년 4월 이후에 발표된 저자의 글들을 정리하여 독도의 인식에 관한 것들은 제6장에, 배타적경제수역과 관련된 것들은 제7장에, 그리고 동해의 국제적 명칭에 관한 것들은 제8장에 실었다. 1988년 4월 이전의 글들은 1988년 출판된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속에 있다. 《한상복》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도서번호 : 독도 915.1 7348D

저 자 : 李荇 外

발행기관 : 書景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94년 (원본 1531년)

구 성 : 1016면

1530년 이형(李荇)등이 편찬하고 1531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을 고전간행회에서 1994년 영인(影印)한 것으로 서경문화사에서 발행했다.

조선왕조 창건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리지(地理志)가 편찬되었다. 이를테면, 세종 7년(1425)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편찬을 시작으로 세종 14년(1432)에는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가 편찬되었으며, 이 지지(地志)는 그 후 단종 2년(1454)에 약간의 손질을 거쳐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다. 그 후 예종 1년(1469)에는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가 만들어지며 성종 9년(1478)에는 양성지가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그 후 성종 12년(1481)에는 조선 전기 지리지 편찬의 완결편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었다. 약 60년간에 2개의 지방지와 3개의 전국지가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지지(地志) 편찬사업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통치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서 추진되었다.

1. 『경상도지리지』의 편찬

세종은 제도를 정비하면서 지리지 편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세종의 뜻에 따라 춘추관과 예조는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리지를 편찬하여 중앙에 바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령(朝令)에 의하여 각도는 지리지 편찬사업에 착수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경상도지리지』의 편찬사업은 지대구군사(知大邱郡事)인 금유(琴柔)와 인동현감(仁同縣監)인 김빈(金鎭)이 주관하여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고, 편찬된 지리지는 춘추관에 보내졌다. 그런데 경력(經歷) 남시지(南施智), 경주부윤(慶州府尹) 오공식(吳公湜), 판관(判官) 정시개보(鄭施介保) 등이 다시 한부를 만들어 경상도에 보관하자고 건의하였으므로, 경상감사 하연(河演)이 이를 허락하고 부본을 만들어 경상도 감영에 보관하였다.

이처럼 『경상도지리지』는 경상도 감영의 독자적인 지시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세종의 명에 의하여 예조와 춘추관의 협조로 통일된 규칙이 각도의 감영에 하달되고 그 규칙에 의하여 국가보고용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실록』이 편찬된 단종 2년(1454)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세종 14년(1432)에 편찬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실록지리지』 내용을 검토하면 이 지리지가 세종 때 작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태조부터 태종 때까지의 사실들은 모두 묘호를 써서 적고 있지만, 세종 때의 사항들은 ‘세종’이라는 묘호를 쓰지 않고 모두 ‘금상(今上)’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맹사성(孟思誠), 감관사(監館事) 권진(權軫),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 신장(申樞) 등이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올렸다는 세종 14년 정월의 기사는 춘추관이 중심이 되어 『팔도지리지』를 새로이 편찬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는 세종이 동왕 6년(1424) 변계량에게 지리지 편찬을 명한 지 8년만의 결실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 보면 특히 호구·군정·공부·전결·토산·조운 등 조세 수취에 필요한 경제사항과 명산·대천·군영·역관·성곽·목장·봉수·관방 등 국방에 관한 사항과 성씨·인물 등 주민들의 신분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대에 있어서 국가의 통치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왕조의 새로운 정치·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3. 『경상도속찬지리지』의 편찬

세조는 단종 1년(1453)에 계유정난을 일으킨 후 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통치행위에 들어갔다. 그는 단종 1년(1453) 10월에 정인지를 불러 옛날부터 지리와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는데, 이제 지리지를 편찬하고자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할지를 물었다. 정인지는 『고려사』 지리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는 양성지를 추천하여 그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양성지는 단종 2년(1454)에 『경기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다음 해인 단종 3년(1455)에는 『평안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이어 단종이 퇴위하고 세조가 즉위하자, 세조는 양성지에게 『팔도지리지』 편찬을 다시 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양성지는 8도 지도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지리지 편찬사업은 뒤로 미루어졌다. 예종이 즉위하자 또다시 양성지에게 『팔도지리지』 편찬사업이 맡겨졌고, 전국 8도에 지리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경상도속찬지리지』는 정월에 편찬 지시가 있었고 3월에는 편찬이 완료되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도지(道志)를 편찬한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렇게 빨리 『경상도속찬지리지』가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의 달라진 사항만을 보충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리지 편찬에는 경상감사였던 김겸광(金謙光)의 지휘하에 김해부사(金海府使) 이맹하(李孟夏), 경주교수(慶州教授) 주백손(朱伯孫), 성주교수(星州教授) 장계이(張繼池), 안동교수(安東教授) 조욱(趙昱) 등이 참여하였다. 한 질은 경사(京師)로 보내고 부분을 4질 만들어서 사계수관(四界首官)에 보관하여 후일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4. 『동국여지승람』의 편찬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은 조선 전기 지리지 편찬의 완결을 뜻한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 7년(1425)에 『경상도지리지』의 편찬을 비롯하여, 세종 14년(1432)에 『팔도지리지』가 편찬되고, 이를 보충하여 단종 2년(1454)에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되었다. 그 후 세조는 양성지에게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사업을 맡겼다. 양성지는 단종 2년(1454)에 『경기도지』를 편찬하였고, 단종 3년(1455)에는 『평안도지』를 편찬하였으나, 세조의 죽음으로 지리지 편찬사업은 일시 중단된다. 예종 즉위년(1468)에 양성지는 또다시 『팔도지리지』 편찬 지시를 받고 지리지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는 전국에 지리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작업의 일부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경상도속찬지리지』이다. 양성지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성종 9년(1478)에 『팔도지리지』 편찬을 완료하였다. 그 전에 양성지는 세조 13년(1467)에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을 편찬하였으며 서거정 등은 『동문선(東文選)』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편찬 작업의 기초 위에 『동국여지승람』이 성종 12년(1481)에 50권으로 완성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은 양성지의 『팔도지리지』와 『해동성씨록』,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문선』 등을 종합하여 송나라 축목(祝穆)의 『방여승람(方輿勝覽)』 체제에 맞추어 편찬된 조선 전기 지리지의 완결편이다. 이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바로 간행되지 않고, 초고본 상태로 보존되고 있었다. 성종 16년(1485)에 성종은 김종직(金宗直) 등에게 명나라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체제에 맞추어 『동국여지승람』을 개편하도록 지시하였다. 성종은 김종직 등에게 이 책을 내보이며, “이 책은 축목의 책을 모방하여 중요한 사적을 들고 곁하여 시문을 널리 찾아 뽑아서 기록하였으니 국가에 진실로 유익한 문헌이나, 그 중에 산천과 옛 사실이 더러 빠진 것이 있고 여러 사람이 지은 시문(詩文)에는 지저분하고 혼잡스러운 것이 자못 있을까 염려되니, 너희들

은 마땅히 교열하고 수정하여 정(精)하고 적당하도록 힘쓰되 그 범례는 한결같이 『대명일통지』를 법 삼으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찬체제를 바꾸라는 것이다. 종래 『동국여지승람』은 축목의 『방여승람』 체제인데 이를 『대명일통지』 체제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둘째, 산천과 옛 사적이 빠진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셋째, 시문의 번잡을 피하여 가려 뽑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종의 지시를 받은 김종직 등은 경복궁의 홍문관에 편찬국을 개설하고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은 한재(旱災) 때문에 곧 중단되었다가 이듬해인 성종 17년(1486) 8개월의 작업 끝에 12월에야 비로소 끝났다. 이 개편작업을 주관하였던 김종직도 “비록 감히 『대명일통지』에는 견주지 못하나, 『방여승람』에 비교하면 실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후세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 김종직 등이 교정한 『동국여지승람』은 더욱 다듬어져 이듬해인 성종 18년(1487) 2월에 조정에 바쳐진다. 성종은 이를 바로 인쇄하도록 명하였다. 인쇄본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8년(1487) 2월에야 초간되었다. 그러나 2개월 후 경연석상에서 김종직은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천의 위치 기록이 읍인들에게 물어서 적었을 뿐, 측량해서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토산물은 토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읍인들이 꺼려서 실상을 말해 주지 않아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성종은 토산물은 중국과의 조공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략해도 괜찮지만 산천의 위치가 잘못된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하므로 『동국여지승람』의 산천지를 각 도의 감사에게 배껴서 보낸 후 그 회답을 기다려 정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였다.

이후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산천의 위치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연산군 3년(1497)에 성현(成俔)·이덕승(李德崇)·임사홍(任士洪) 등에게 『동국여지승람』의 개정을 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정의 리수(里數)·제영(題詠)의 정확을 기하고, 산천 사적의 빠진 것을 보충하라는 것 등이었다. 성종 때 산천 위치의 시정은 연산군 때 개정하면서 보완된 듯하다. 이 개정 작업은 2년 후인 연산군 5년(1499)에 마치게 되었다. 아마 2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상당 부분 개정된 듯하지만 임사홍의 발문(跋文)을 제외하면 뚜렷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중종이 즉위한 후, 연산군 시절의 잘못된 관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방 군현의 연혁에 변화가 많았으므로 『동국여지승람』의 개편작업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 중종 23년(1528)에 중종은 이행(李荇) 등에게 하명하기를, “지난번의 혼란한 때(연산군 때를 지칭)에 관제를 경신하고 군현의 이동과 분할을 아직 개정하여 기록하지 못하였으며, 그 동안에 생긴 효자열녀의 행실과 아름다운 시문을 새로 가려 기록하지 못한 것이 많으니 그런 것을 상고하고 모아서 증보하여 바치라”고 하였다

교서관(校書館)에 편찬청을 설치하고 자료를 모았으나, 한재(旱災) 때문에 두 번 중지되었다가 중종 25년(1530)에 비로소 편찬할 수 있었는데 그 분량이 5권이였다. 편집책임자였던 이행은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별도의 책을 만드는 것보다 이전에 편찬된 책에 신증(新增)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그대로 시행되었다. 특히 책을 따로 만든다면 계통과 두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에 만든 기록에 첨가해 넣어서 전의 것을 계승하고 옛 것에 더하여 한 시대에 편집한 것 같고 한 솥씨에서 나온 것 같이 편찬하였다.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1530)에 개편작업이 완료되었으나, 간행은 중종 26년(1531) 6월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3차의 인출을 거듭한 『동국여지승람』은 민간의 소장을 금했기 때문에 수요가 넉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로는 더욱 희귀해져서 광해군 3년(1611)에 중종 때의 신증본을 그대로 복간하여 널리 보급시켰다.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게 된 필요성은 편목의 다음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연혁을 먼저 쓴 것은 한 고을의 흥폐를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며, 풍속은 한 고을을 유지하는 바이고, 형승은 사경을 공대(控帶)하는 바이므로 명산대천으로 경위(經緯)를 삼고 높은 성과 큰 보루로 금포(襟抱)를 삼기 때문이다. 묘사(廟祀)는 조종을 높이며 신기를 존경한 바이요, 궁실은 상하의 구분을 엄하게 하고 위엄과 무거움을 보이기 위함이며, 오부(五部)를 정한 것은 방리(坊里)를 구별한 것이고, 여러 관청을 설치한 것은 모두 사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능침(陵寢)은 조종을 길이 편안하게 하는 땅이며, 사(祠)와 단(壇)은 국가의 중요한 전례이기 때문이고, 학교는 한 나라의 인재를 기르기 때문이며, 정문(旌門)은 삼강의 근본을 표창하는 것이다. 사찰은 역대로 그 곳에서 복을 빌던 곳이며, 사묘(祠墓)는 선현을 사모하여 추송하는 곳

이다. 토산(土産)은 공부(貢賦)가 나오는 바요, 창고는 공부를 저장하는 곳이다. 누대(樓臺)는 때에 따라 놀며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요, 원우(院宇)는 행려객들을 쉬게 하고 도적을 금하기 위함이며, 관방(關防)을 웅장하게 한 것은 폭객(暴客)을 방비하기 위함이고, 참역(站驛)을 벌여 놓은 것은 사명(使命)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며, 인물은 과거의 어진 이를 기록한 것이요, 명환(名宦)은 장래에 잘 하기를 권장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제영(題詠) 항목을 설정한 것은 물상(物象)을 읊조리며 왕화(王化)를 노래하여 칭송함은 시(詩)와 문(文)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으로 8도의 지리가 마음과 눈에 환하여 문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도 손바닥을 보는 것 같아졌고, 이를 통해 반드시 장차 왕화(王化)가 만세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였던 것이다. 체제는 『대명일통지』대로 편찬하였는데 두 지리지의 편목을 비교하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뚜렷해진다.

『동국여지승람』의 전체 편목은 31개이고 『대명일통지』는 19개이다. 이 중 두 지리지의 공통되는 편목이 16개나 되며 그 명칭도 동일하다. 그렇지만 『동국여지승람』이 『대명일통지』의 단순한 모방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명일통지』의 체제를 원용했을 뿐이다. 『동국여지승람』과 『대명일통지』의 차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동국여지승람』의 총 편목수는 『대명일통지』보다 12개가 더 많다. 또 『대명일통지』에서 도교와 불교를 총칭하여 사관(寺觀)이라 한 것을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불교에 국한시켜 불사(佛寺)라고 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서원 향이 빠지고 성씨·역원(驛院)·봉수 향 등이 실려 있다. 이런 특징들은 편찬자들이 『대명일통지』의 체제를 단순히 따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 책을 편찬했음을 알려 준다.

『동국여지승람』은 세종 때 편찬된 『팔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성종 때의 『팔도지리지』 등을 종합하고 『대명일통지』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조선 전기 지리서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리서는 정치·경제·군사 등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총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인물·시문(詩文) 등을 수록하여 조선왕조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왕화(王化)가 만대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강렬한 의도를 담은 종합적 지리서인 것이다.

5. 『동람도(東覽圖)』의 제작

『동람도』는 『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는 『팔도총도(八道總圖)』와 팔도주현도(八道州縣圖)』를 가리키는데 지도의 판심(版心)에 ‘동람도’라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 지도는 판각된 지도로서는 가장 오래 된 지도이다. 이 지도의 정확성이나 정밀성 등은 태종 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역대제왕혼일강리도』의 『조선도』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이는 지도의 제작기술이 후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종직의 『동국여지승람』의 발문에서 밝혔듯이, 『동람도』는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악독(嶽瀆)과 명산대천 그리고 각 주현의 진산(鎭山)만을 표기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동람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동람도』는 산천사전제에 의한 중사처와 소사처를 표기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팔도총도』에 기재된 내용은 이러한 제사처를 제외하고 표기된 곳이 없고 단지 백두산만 예외적이다. 이는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조산(祖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지도에는 백두산이 반드시 그려져 있다.

둘째, 『동람도』에는 제주도가 순천 밑에 판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판각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측으로 옮겨 새긴 것이다.

셋째, 『동람도』에는 우산도(于山島)가 울릉도의 안쪽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산도는 독도를 뜻한다.

넷째, 『동람도』는 바다를 파도무늬로 판각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전기 고지도의 독특한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다섯째, 『동람도』에는 두만강이 압록강보다 위도상으로 낮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팔도총도’라는 제목의 판각 때문에 낮추어 그린 때문이다.

여섯째, 『동람도』에는 대마도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대마도에 대한 영토의식의 발로이다.

일곱번째, 『팔도총도』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도』나 『조선방역도』보다 매우 엉성하게 그려진 까닭도 『동람도』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한다. 이는 양성지가 성종 13년(1482)에 올린 상소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는 예로부터 지도는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의 소장을 금하고 춘추관사고에 비장하여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동람도』는

간행되어 널리 유포될 것이므로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 중사처와 소사처를 표기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동람도』보다 앞서 만들어진 『혼일강리도』의 『조선도』와 『조선방역도』를 『동람도』와 비교해 보면, 조선 전기의 지도 제작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동람도』가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은 국가기밀의 유지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상태>

東國通鑑(동국통감)

도서번호 : 독도 951.3 ㄱ213ㄷ

저 자 : 徐居正 外

발행기관 : 景仁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94년 (원본 1484년)

구 성 : 국판 전 2책

본서는 1458년(세조 4년)에 세조의 명을 받아 찬술이 시작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사서에 탈락이 많아 자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사의 체계가 서있지 못하고 편년체 통사가 없기 때문에, 상고이래의 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중국의 자치통감에 준하는 사서(史書)를 편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수찬작업은 이시애(李施愛)난으로 중지되고, 이듬해 9월 세조의 죽음으로 완전히 중지 되었다. 그후 성종대에 들어와 서거정(徐居正)의 발의로 다시 시작되어 고대사 부분은 1476년(성종 7년) 『삼국사절요』로 간행되었다가, 1484년에 동국통감(東國通鑑)이라는 서명으로 완성되었다.

본서는 서술체제가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를 외기(外紀), 삼국의 건국으로부터 신라 문무왕 9년(669년)까지를 삼국기, 669년에서 935년(고려 태조 18년)까지를 신라기, 935년부터 고려말까지를 고려기로 편찬하였다. 삼국 이전을 외기로 처리한 것은 자료부족으로 체계적인 왕조사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

이며, 신라기를 독립시킨 것은 신라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보여진다.

요컨대 동국통감은 신라 박혁거세에서 고구려, 백제, 고려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1400여년 동안의 국토의 이합(離合), 성쇠(盛衰), 명교(名教), 절의(節義), 난적(亂賊), 간유(奸諛) 등의 사적(史籍)을 쓰고 있는 가운데, 울릉도 관련기사는 동서 권지5 삼국기 신라와 고려편에 실려 있는데 내용은 역시 삼국사기의 수록 내용을 전재하다시피 하였다. 《양태진》

東萊港報牒(동래항보첩)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外部(朝鮮)

발행기관 : 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96~1905

구 성 : 10冊 筆寫本

1896년(建陽 元)에서 1905년(光武 9)까지 東萊監理署와 外部大臣간에 오고간 7책의 報告書와 3책의 訓令이다. 책별 수록 기간을 보면, 제1책은 1896.1-1897.11, 제2책은 1897.12-1898.12, 제3책은 1899.1-1900.12, 제4책은 1901·1902년, 제5책은 1903년, 제6책은 1904년, 제7책은 1905년의 公文綴이다. 제8책은 1896.1-1897.10, 제9책은 1897.11-1901.11, 제10책은 1901.12-1905.11까지의 訓令이다. 주요한 내용은 東萊監理署의 업무상황으로서 수세액과 그 細目報告, 관리의 부임 파견, 봉급지급 상황과 그 비용, 日本商人의 米粘運搬과 米稅, 이로 인한 무역상항 및 捕鯨稅와 捕鯨狀況, 외국인들의 토지 개간 및 매매금지와 暗賣狀況, 러시아군의 絶影島 石炭庫 설치요구, 韓人客主의 租界地안의 商社設立, 沿海, 江路의 船舶會社支店設置, 경부철로 공사의 관계기사, 통신업무의 일본위임 등이다. 그 당시의 개항장의 무역상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임영정》

同文彙考(동문회고)

도서번호 : 독도 327.515053 7428ㄷ

저 자 : 承文院(朝鮮) (編)

발행기관 : 國史編纂委員會(影印本)

발행년도 : 1978년 (원본 1881년)

구 성 : 국배판 전 4책

1636년(인조 14년)을 상한으로 하고 1881년(고종 18년)을 하한(下限)으로 하고 있으나 인조 14년 이전의 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본서는 주로 대외관계에 관련된 교섭문서의 원안을 집성한 것으로 承文院에서 편찬한 것이다. 특히 대청·대일관계 등을 주로 수록하였으나, 유구(琉球)와 개항(開港)직전의 구미각국과의 관계도 포함된 외교문서를 정리, 수록하여 간행한 기본적인 외교사료(外交史料)이며 그 밖의 부수기록(附隨記錄)도 있다.

즉, 조선조의 외교문서집으로 1785년(정조 12년)에 편찬하였는데, 초편(初編) 60책(冊)과 철종·고종대(哲宗·高宗代)에 편찬·속간된 속편(續編) 36책으로 총 96책 총 4백여만언(餘萬言)의 거질(巨帙)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버금가는 문적(文籍)이다.

인조 이후 대외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대교린의 문서가 많아져 승문원 등록의 열람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784년(정조 8년) 예조판서 정창순(鄭昌順)등에게 칙(勅)·유(諭)·표(表)·전(箋)·자(咨)·조회(照會)·사신(使臣)의 장계(狀啓)·견문별단(見聞別單)·역관수본(譯官手本)·국서(國書)·서계(書契) 등을 수집케 하여 사대문서를 본편으로, 교린문서를 부편(附編)으로 하여 승문원에서 간행하고 임금이 동문회고(同文彙考)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본서 편찬의 체재(體裁)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원편(原編)을 비롯하여 별편(別編)·보편(補編)·부편(附編)으로 되어 있으며, 앞의 삼편(三編)은 대청(對淸)관계이고 나머지 부편(附編)은 일본과의 관계이다.

원편(原編)은 1644년(인조 22년) 청에 입관한 후의 교섭문서를 분류하여 연대순으로 편찬하였으며, 원편(原編)은 편찬의 취지나 사료적 가치로 보아 본서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약 5천 건의 문서를 25개항으로 분류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별편은 인조 22년 이전 즉 청나라의 송덕연간(1636~1643)의 교섭문서로 원편과 구분한 것이며 보편(補編)은 청과의 교섭에 관한 부수기록(附隨記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장관견문사건(書狀官見聞事件), 역관수본(譯官手本)인 사신별단(使臣別單), 사행록(使行錄), 사대문서식(事大文書式), 조칙록(詔勅錄), 영칙의절(迎勅儀節)의 다섯 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는 인조 22년 이전의 문서도 약간 포함되어있고, 사행록(使行錄)과 조칙록(詔勅錄)은 이 책의 속편(續編) 부분에 해당하는 1881년까지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부편(附編)은 일본과의 교린문서(交隣文書)의 분류 편찬으로 인조 22년 이전의 것도 적지 않으며, 특히 오랜 것으로는 1443년(세종 25년)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세견선수(歲遣船數)를 약정(約定)한 문서도 있다.

본서는 철종(哲宗)때에 대제학(大提學) 조두순(趙斗淳)이 중심이 되어 개편, 이를 약 5분의 일로 절약(節略)하여 1851년(철종 2년)에 출간한 것이 동문고략(同文考略) 15책이다. 그 후 휘고(彙考)의 속편을 축소하여 고략(考略) 속편 3책을 출간하였고 1935년 일본인 학자 전보고결(田保橋潔)의 교정으로 12책으로 활인,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겨우 제2책과 제3책을 출간하는데 그쳤다. 본 자료실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을 저본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1978년에 한국사료총서 제24로 간행, 유포된 것이 소장되어 있다. 《양태진》

東史綱目(동사강목)

도서번호 : 독도 951.1 0171ㄷ

저 자 : 安鼎福

발행기관 : 景仁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87년 (원본 1778년)

구 성 : 국판 전 3책

본서는 조선후기 안정복(安鼎福)에 의해 저술된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를 통

사적으로 다른 역사서로 20권 20책의 필사본이다.

저자 안정복(1712(숙종38년)~1791(정조15년)은 자(字)가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이라 하는데, 한산병은(漢山病隱), 우이자(虞夷子), 연헌(櫟軒)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부친은 극(極)으로 일찌기 벼슬길에 나갈 생각을 앓고 성호 이익(李瀾)에게 수학하여 독서량이 많았다. 그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높아지자 영조 25년(1749년)에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임명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1772년(영조 48년) 왕세손(후에 정조)의 스승으로서 남다른 대우를 받았으며, 1781년(정조 5) 돈녕주부(敦寧主簿)가 되었다가, 헌릉령(獻陵令)으로 전근, 1789년(정조 13) 그간의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 이어서 첨지중추(僉知中樞), 이듬해에 동지중추(同知中樞)에 승진하여 광성군(廣成君)에 피봉되었고, 세자가 책봉되자 또 세자의 스승이 되었다가 병으로 사임하였다. 저서로 하학지남(下學指南) 희현록(希賢錄) 가례집해(家禮集解) 홍범연의(洪範演義) 천학고(天學考) 순암집(順菴集) 등이 있다.

본서는 저자가 1756년(영조 32년) 45세 때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3년 만에 본서의 초고를 완성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편찬에 착수하기 5년 전인 1751년 자치통감강목을 연구하면서 부터로 그 이전에 반계 유형원(柳馨遠)의 동사강목조례(東史綱目條例)의 초고를 본 뒤에 이 책의 집필을 결심한 듯 하다고 전해진다.

본서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점은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이다. 즉, 한족(漢族)의 지배역사를 부정하고 단군을 내세움으로써 한국사의 상한연대를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종래 중국중심의 역사에서 동국사 중심의 역사 내용으로 엮었으며, 끝으로 주변국가인 말갈, 거란, 여진 등과 일본 유구 등과 의 화친 및 침구(侵寇)에 대해 전거(典據)를 인용하여 후세의 자료가 되게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편찬 동기는 기존의 동국사서(東國史書)들의 서술과 동국사에 대한 연구에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존의 사서들이 사료수집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서술에 요령을 잃고 서술이 의례(義例)에 어긋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한데 있다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판, 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자치통감강목의 범례를 정법으로 삼아 서술하려 하였다.

본서가 주목되는 점은 본서 지리고(地理考) 서(序)에서 역사가는 강역을 먼저 알아야 역사의 성쇠를 알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의 첫 머리에는 범례와 서

두의 부록으로 동사강목도를 상중하로 신고 있다. 그 중 상편은 단군기자전세지도(檀君箕子傳世之圖) 부(附) 위씨(衛氏), 신라삼성전세지도(新羅三姓傳世之圖) 부(附) 가락국, 대가야국, 고구려전세지도(高句麗傳世之圖) 부(附) 부여국 발해국(夫餘國, 渤海國), 백제전세지도(百濟傳世之圖), 고려전세지도(高麗傳世之圖)를 신고 있다. 신라 이후 고려까지의 도표뒤에는 동국통감 찬자가 역대왕의 치적을 평가한 사론을 신고 있다.

동사강목도의 증편은 역사지도로서 조선, 사군, 삼한도, 삼국초기도, 고구려전성도, 백제전성도, 신라전성도, 신라통일도, 고려통일도 등의 지도를 신고 있다. 이는 이전의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착상으로 강역을 중시함과 아울러 역사는 지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관의 일단으로 보여진다.

안정복의 사학사상은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국가는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정통사상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상을 기저로 하여 지리적 바탕위에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의 발전과 쇠퇴를 강역(疆域)의 확장과 축소의 관계로 보았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삼면이 바다이고 한면이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진 최초의 사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된 것은 전략적 요충지인 요동지방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논하고 국내의 요충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요소가 역사에 작용하는 힘을 인식한 그는 역사지도의 작성과 지리적 고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통치제도의 중요성, 역사상의 인물평가, 삼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새롭게 조명하였는데, 예컨대 고구려는 주몽의 건국이전 즉, 한사군 설치 전에 이미 존재하여 역사가 9백년을 지속하였다고 보았고, 삼국은 이웃의 작은 나라를 정복, 강역을 넓혀 발전한 나라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역사서술에서 믿을 수 없는 자료를 배제하는 합리적인 역사관을 갖고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문제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본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황과 내정에 대해 언급, 왜구의 침략 가능성을 예견하였다.

동사강목에는 이전의 사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록으로 말미에 붙인 역사지도와 관직연혁도 등에서 근대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수집한 사료를 광범위하게 비교·검토하는 고증학적 역사방법을 통해 당시 역사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발전하던 역사지리

학을 수용함으로써 전통시대의 탁월한 역사서로 평가되고 있다.

본서에서는 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504년) 6월조에 우산국이 신라에 항복해 왔음을 밝히고, 우산국은 하슬라주 동해 가운데 있는데 일명 울릉도라 하며 그 지방이 백리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주기(註記)하기를 유사(遺事)에는 우능도(弓陵島) 또는 우능(羽陵)이라 하여 동해 가운데 있는데 편풍(便風)에는 2일간 걸리며 둘레는 2만6천7백30보라 하였다. 《양태진》

東興備考(동여비고)

도서번호 : 독도 016.91251 7284C

저 자 : 미상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출판부(영인본)

발행년도 : 1998년 (원본 1682년)

구 성 : 198면

동여비고(東興備考)라는 제목은 동국여지승람에서 따온 듯하다. 동국의 동(東)자와 여지승람의 여(輿)자를 취하고 “비고(備考)”라는 명칭은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도라는 뜻인 듯 하다. 동여비고의 구성과 체제를 살펴보면 32여종의 지도를 60면으로 나누어 한 책에 수록하였다. 이 지도집은 가로는 33cm-68cm이고 세로가 37cm-42cm인데 이와 같이 지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일종의 도별도이며 균현도이다. 앞부분은 역사지도이고, 그 뒤에 도성도 등의 특수 지역도가 있으며, 대부분은 도별도와 균현도로 되어있다.

본 지도의 편찬시기는 첫째, 도성도의 내용 중 경희궁을 경덕궁(慶德宮)으로, 소의문(昭義門)을 소덕문(昭德門)으로 표기하고, 1711년에 북한산에 축조되는 북한산성의 표시가 없거나 1712년에 백두산에 세워지는 정계비의 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이며, 둘째, 강화도의 돈대가 49개인데, 강화도의 돈대는 숙종

4년(1678)에 쌓기 시작하여 숙종 8년(1682)에 49개의 돈대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본 지도는 1682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셋째, 경상도 북부주현도에 영양현은 기록되어 있는데, 순흥부는 표시가 없다. 영양현은 숙종 7년(1681)에 설치되고 순흥부는 세조때 폐지되었다가 숙종 8년(1682)에 다시 설치된다. 위의 세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하면 본 지도는 숙종 8년(1682)에 제작된 듯하다. 본도에는 도별총도 다음에 각 군현별 지도가 남부, 중부, 북부 등으로 나누어 각 군현별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특색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군현의 명칭을 적고 붉은 선으로 둘러 읍치를 표시하였으며 강은 청색, 산맥은 녹색으로 그렸는데 조선시대 대부분의 고지도에 나타나는 도로 표시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본도가 다른 고지도보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각 군현의 명칭을 적고 그 군현의 별칭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모두 병기하고 있다.

셋째,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적었다. 예를 들면 삭령의 경우, ‘경백구십오(京百九十五)’라고 표시하여 삭령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195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산을 표기하고 그 산이 읍치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기록하였다. 적성현, 감악산의 경우, “동이십(東二十)”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읍치로부터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감악산이 위치한다는 표시이다.

다섯째, 강에는 나룻터인 도(渡), 탄(灘), 진(津) 등이 거의 표시되어 있다.

여섯째, 크고 작은 사원의 명칭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어 불교사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일곱째, 역, 원의 위치와 명칭이 일일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교통제도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여덟째, 각 현의 유명한 명소나 저수지, 저명한 지형지물 등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아홉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있었던 고현의 명칭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각 군현의 역사를 아는 데에도 좋은 자료가 된다.

열째, 역대 왕들의 왕릉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 명칭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열한번째, 연안의 섬 표기가 매우 자세하다. 참고적으로 죽도의 표시만 살펴봐도 14곳이나 된다.

동여비고는 조선초기에 제작된 동람도보다는 훨씬 자세하지만 조선후기에 제작되는 도별도나 군현도와는 다르게 도별도와 군현도를 복합하여 제작한 복합군현도인 셈이다.

동여비고는 32종 60면의 지도를 한 책에 수록한 지도집이다. 가로가 33cm-68cm 이고 세로는 37cm-42cm이므로 지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동여비고는 진한마한변한의 삼한 분계지도, 4군2부 한시분계지도 등의 16종의 역사지도와 도성도, 자도성지삼강도(自都城至三江圖), 강화전도, 제주도도, 평양전도, 일본도 등의 6종의 특수지역도와 10종의 도별군현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일본도도 수록되어 외국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다.

동여비고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도는 『강원도남부주현도』인데, 이 지도에서 무릉도(武陵島)는 울릉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태종 16년(1416)에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도처안무사로 삼아 피역자(避役者)들을 본토로 데려오도록 조치하면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며, 그 후 세종때에도 계속해서 울릉도 거주자들을 데려오면서 무릉도순심정차관(武陵島巡審敬差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세조때에는 울릉도에 새로 현(縣)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무릉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때에도 수로가 험하고 멀어서 현의 설치를 포기하였다.

무릉도란 칭호는 성종때에는 삼봉도(三峰島)를 수색하면서, 중종때에는 왜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용하였고, 명종때부터는 무릉도란 칭호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울릉도란 명칭만 사용하였다. 본도가 제작될 즈음에 안용복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때에도 울릉도란 명칭만 썼다. 본도에서처럼 독도(獨島)를 울릉도의 좌측인 연안 쪽에 표시한 고지도는 동람도에서부터 비롯되며, 조선전기에 제작되는 고지도의 표현방법이다. 안용복 사건이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져, 울릉도의 우측 바다 쪽에 독도를 ‘우산도’로 표현한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독도를 울릉도 좌측에 표시하고 ‘무릉도’라고 적고 또는 ‘우산도’라고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울릉도를 ‘무릉도’라고 하였지만, 독도를 본 도처럼 ‘무릉도’라고 하지 않았으며, 다른 고지도에도 그렇게 표시된 예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본지도는 다른 지도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독도라는 명칭이 무안군 앞 바다의 작은 섬에 표시되어 있는 점이다. 울릉도 옆의 우산도를 독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1900년에 울릉군을 설치하면서 울릉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도와 석도(石島)로 한다는 정부 고시에서 비롯된다. 석도가 독도로 변하게 된 것은 전라도 주민들이 울릉도에 많이 이주하여 살면서 그들은 석(石)을 “돌”, “독”으로 부르기 때문에 석도를 “독도”라고 부르고 이것이 한역(漢譯)되어 독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도에서 독도의 표기가 처음 사용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본다. 《이상태》

(국역)변례집요

도서번호 : 독도 327.51053 O259B

저 자 : 禮曹(朝鮮) (編) (홍사덕, 하우봉 共譯)

발행기관 : 民族文化推進會(影印本)

발행년도 : 2000년 (원본 1559~1755년)

구 성 : 국판 전 1책

본서는 임진왜란 후인 1559년(선조 32년)부터 1755년(영조 31년)까지 156년간 사신들의 왕래 및 조약 체결, 강화(講和), 무역과 왜구(倭寇)의 침략 방지 등에 관한 문서를 편집·수록한 것으로, 주로 부산 동래를 위시하여 기타 연안에서의 대외교섭에 관한 자료를 모아 편집한 관계로 조선시대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데 필독서라 하겠다. 이 책의 구성은 19권 18책(33.8×24.6cm)으로 엮어졌으나 2권 1책은 없다.

본서 권 17 1614년(甲寅) 6월조에는 울릉도 독도의 영유를 둘러싼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벌어진 소위 「竹島 一件」에 관계된 기록이 있어, 17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태진》

北路紀略(북로기략)

도서번호 : 독도 915.1 ㄴ433
 저 자 : 정윤용 (編 추정)
 발행기관 : 亞細亞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74년 (원본 1830년)
 구 성 : 455면

본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 국경지대의 사실을 모은 4권 4책의 필사본이다. 서(序), 발(跋)이 없고 편자 연대가 미상으로 전해져 왔으나, 이 책 관방조(關防條)의 안(按)에 “세조조 정유(丁酉)에 나의 12대조 익혜공(翼惠公)이 북로병마절도사로 있을적에 온성(穩城)의 장성 40리를 쌓았다”라는 기록과 “정원용(鄭元容)의 문집인 경산집(經山集)에 수록된 종제공조참의윤용묘지명(從弟工曹參議允容墓誌銘)에 지은 책으로 문사록(問思錄) 46권과 북로기략(北路紀略) 4권이 있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윤용(鄭允容)의 저술로 추정된다.

저자 정윤용(鄭允容)은 1792년 정조 16년 출생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가 1831년 의릉참봉(懿陵參奉)에 봉직, 이어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승진, 1846년(헌종 12년)밀양부사(密陽府使)에 이어 공주판관(公州判官)을 끝으로 사직하였다.

본서는 1829년(순조 29년) 정원용이 37세의 나이로 성균관 유생으로 있으면서 종형을 따라갔는데, 이때 함경도일대를 돌아보고 그 관방의 중요성을 느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편차 및 내용을 보면 권1에는 산천총요(山川總要)와 관방(關防)으로 나누어, 산천총요(山川總要)조에는 백두산의 지형과 정계비에 대한 전후사실을 적고, 백두산의 간지(幹支)와 강의 원류(源流) 및 압록강(鴨綠江) 두만강(豆滿江) 흑룡강(黑龍江)에 의해 구분되는 각 지방을 정상기(鄭尙驥)의 농포지도(農圃地圖)와 여지고(輿地考), 홍양호(洪良浩)의 삭방기(朔方記) 등의 여러 기록을 인용 설명하고 있다. 백두산정계비에 대해서는 건립 당시의 전후 사실을 기록하고, 입비(立碑) 후에 이 입비(立碑)지점이 잘못되었다고 이의 시정을 건의한 홍치중(洪致中)과 김진규(金鎭圭) 등의 상소 내용을 약기하고 있다. 중국칭장백산(中國稱長白山)항에서는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에 나오는 회령(會寧)이 만주의 회령(會寧)과 함경도의 회령(會寧) 등 두 지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 장백산 일대의 2백여리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관방(關防)조에는 경흥(慶興), 회령(會寧) 등 국경지대의 성지(城池), 진보(鎭堡), 영로(嶺路), 봉수(烽燧), 해로(海路), 도리(道里) 등에 관한 것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권2에는 성적(聖蹟), 주군지(州郡誌)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데, 성적(聖蹟)은 용흥구적(龍興舊蹟)인 성지(聖地)에 관한 것으로 조선 태조가 이 지방에서 출생하여 활동하던 상황과 태조의 선조인 목조 등 4조의 사적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성지라는 제목 아래 덕원, 함흥 등 8개군의 연혁과 전주이씨와의 관계를 적고 있다. 주군지(州郡誌)에는 북로(北路) 25부에 대해 긴치연혁, 관방, 인물 등 각 권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산천(山川), 이사, 호구(戶口), 전부(田賦), 총곡(總穀), 사원(寺院), 고적(古蹟), 인물(人物) 등에 관해 약술하고 있다.

권3 고실(故實)편에는 함경도 지방이 옛날 숙신씨의 고토이었다가, 고구려 신라 고려로 내려오는 동안의 주군(州郡)의 연혁과 변경개척 호족(胡族) 및 청의 내력, 해구(海寇)의 내침 등의 사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권4 부록으로 관제(官制), 풍속(風俗), 부역(賦役), 군제(軍制), 변금(邊禁), 학교(學敎) 등으로 나누어 이 지방의 군정, 행정, 교육,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변금조(邊禁條)에는 월경(越境)의 금지와 농민이 몰래 도강(渡江)하는 상황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서에는 많은 여타 자료에서 필요한 항목에서 적절히 인용하였고 저자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들을 안(按)이라 하여 덧붙이고 있다.

특히 군정(軍政)항목은 군제(軍制) 전반에 관한 내용과 오위복설사목(五衛復設事目), 친기위(親騎衛), 성정군(城丁軍), 그리고 군기(軍器), 권무(權務), 마정(馬政)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방에 있어서 군정의 중요성을 나타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양태진》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

도서번호 : 독도 951.5 74284
 저 자 : 備邊司 撰
 발행기관 : 國史編纂委員會(영인본)
 발행년도 : 1999년 (원본 1617~1892년)
 구 성 : 국판 전 27권

본서는 조선왕조 비변사에서 논의한 중요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으로 1617년(광해군 9년)부터 1892년(고종 29년)까지 276년 동안의 기록이다. 원본은 초서여서 읽기에 어려운 관계로 해서로 옮겨 쓴 후 이를 영인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하였다.

비변사는 일명 비국(備局), 주국(籌司)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1510년(중종 5년)에 일어난 삼포왜란의 대책으로 도체찰사가 설치되고 다시 병조(兵曹)안에 1사(司)를 두어 종사관에게 그 사무를 맡기면서 비변사라 칭한데서 비롯된다. 변경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하였지만, 이는 전시에만 설치된 임시적인 관청이었고 평시에 있어서는 관제상의 상설 관청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기구가 정규 상설기관이 된 것은 1554년(명종 9년)이며 이듬해 청사가 설치되어 도제조, 제조, 낭청이 정하여졌다. 비변사의 권한은 임진정유재란 이후 강화되어 변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 행정도 모두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결정하게 되니 의정부의 기능은 자연히 마비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864년(고종 1년) 대원군은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한계를 규정하여 비변사는 외교와 국방 치안 관계만을 종전대로 맡아 보게 하고, 나머지 사무는 모두 의정부에 넘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에 비변사가 폐지되고 그 대신 국초의 삼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만큼 이 비변사등록은 조선 후기의 정책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제1차 사료가 되기 때문에 숙종때 발생한 안용복 공초나 울릉도귀속문제(소위 竹島 一件)도 이를 통해 파악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핵심기간이 되는 숙종 22년 1월에서 24년 12월까지의 기록은 없다.

이후의 수토관련 기록은 비변사등록 1699년(숙종 25년) 7월 15일조 이후에 빠짐없

이 나오고 있다. 이는 속중실록 권 31 속중 23년 2월 을미조에 비변사의 회계한 내용과 동서 권 31 속중 23년 윤3월 무인조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대강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본서의 색인(備邊司臚錄 索引)에 의거해 울릉도·독도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도수토(鬱島搜討) 19권 P.584 下

울도외양치패대동미(鬱島外洋致敗大同米: 德積鎮) 24권 P.185 下

울릉도(鬱陵島) 4권 P.706 上

울릉도모민기간(鬱陵島募民起墾) 27권 P.627 下

울릉도범금인취초(鬱陵島犯禁人取招) 16권 P.941 下

울릉도법금(鬱陵島法禁) 16권 P.926 下

울릉도사(鬱陵島事) 4권 P.696 下

울릉도비선(鬱陵島備船) 13권 P.693 下

울릉도사차왜출래(鬱陵島事差倭出來) 4권 P.778 下

울릉도삼(鬱陵島蔘) 14권 P.888 下

울릉도소산향목(鬱陵島所産香木) 24권 P.702 下

울릉도수토(鬱陵島搜討) 4권 P.807 下 14권 P.105 下 P. 295 下 P.760 下 15권 P.667 上 16권 P.651 下 18권 P.450 上 P.502 上 19권 P.81 下 22권 P.330 上

울릉도수토고정(鬱陵島搜討姑停) 9권 P.728 下

울릉도수토정지(鬱陵島搜討停止) 7권 P.20 上 9권 P.956 上

울릉도수토정한(鬱陵島搜討定限) 24권 P.690 下

울릉도심시(鬱陵島審視) 4권 P.612 下

울릉도어복향죽채작(鬱陵島魚鯨香竹採斫) 16권 P.926 上

울릉도왕래선척(鬱陵島往來船隻) 4권 P.638 上

울릉도자단향상송(鬱陵島紫檀香上送) 18권 P.670 上

울릉도접위관(鬱陵島接慰官) 4권 P.612 下

울릉도지도(鬱陵島地圖) 4권 P.637 上 27권 P.627 下

울릉도피로회환인(鬱陵島被擄回還人) 4권 P.612 下

죽도표인문정(竹島漂人間情) 25권 P.687 上

비변사등록에는 이처럼 독도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주요 울릉도관계기사가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양태진》

(朝鮮時代)私撰邑誌(조선시대 사찬읍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ㅎ155사

저 자 : 李相泰 外(編)

발행기관 : 韓國人文科學院(影印本)

발행년도 : 1989~1990년

구 성 : 경기편 13권, 충청편 2권, 평안편 11권, 함경도 7권, 강원도 3권,
전라도 7권, 경상도 8권, 황해도 4권

조선시대 사찬읍지(私撰邑誌) 중에서 동국여지승람 간행 이후 1910년 사이에 편찬된 것들을 골라 한국인문과학원에서 총 55권으로 영인했다. 경기도는 1권에서 13권, 충청도가 14-15권, 경상도 16-23권, 전라도 24-30권, 황해도 31-34권, 강원도 35-37권, 함경도 38-44권, 평안도 45-55권 등으로 편집되었다. 읍지의 사찬(私撰)이란 관찬(官撰)에 대조되는 뜻으로, 후자가 대체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전국 또는 도 단위로 편찬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당해 목·부·군·현 하나의 지지가 개인 또는 지역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 개인은 당해 지역 거주 의 인사일수도 있으나 수령인 경우가 다수로, 수령이 스스로 편찬에 앞장선 경우도 있고, 지역 인사들의 열망으로 사업을 벌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사찬읍지는 15세기말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이 전국지로서 각 지방의 사정으로 자세히 반영하지 못한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아래 16세기에 각지의 사림들이 주도하여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서는 사회의 수난이 거듭하는 속에 사림세력 자체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아 읍지 편찬의 성과는 아직 소수에 그쳤다. 그 본격적인 발달기는 17세기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관찬 사업과는 별개로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편찬되는 경우가 꾸준히 이어져 지지로서의 본격적인 모습을 나

타내게 되었다.

1. 경기도편

조선왕조시대의 경기도는 관찰사제도가 두어진 것이 극히 짧은 기간에 한정되었듯이 중앙에의 예측도가 높았다. 그래서 다른 도의 여러 읍지들에 비해 개별적으로 읍지를 편찬하는 일도 드물었다. 여기에 수록된 읍지들은 현재 전해오는 이 지역의 사찬 읍지의 대부분으로, 각기의 편찬 내력은 다음과 같다.

- 1)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경기와 한성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지역의 조선후기의 상황을 어느 지보다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편찬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궁궐편 경북궁항에 「금상2년을축복중건」이란 기사가 있는데, 경북궁은 고종2년에 중건되었으므로 이 지리지는 고종대에 편찬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 2) 한경지략(漢京識略) : 순조 30년(1830)에 유본예(柳本藝)가 편찬한 것으로 필사본으로 전한다. 한성내의 궁궐을 비롯해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을 많이 다루었다.
- 3) 훈도방주자동지(薰陶坊鑄字洞志) : 광해군 13년(1621)에 권희(權愷)가 주동하여 편찬한 서울 주자동의 동지(洞志)이다.
- 4) 송도지(松都志) : 인조 26년(1648)에 유수 김욱(金堉)이 편찬하였다.
- 5) 송도지(松都志) : 정조 6년(1782)에 유수 정창순(鄭昌順)이 주관하여 편찬한 것이다.
- 6) 송도속지(松都續志) : 순조 2년(1802)에 유수 김문순(金文淳)이 편찬을 주관하였다.
- 7) 중경지(中京志) : 정조대에 이루어진 송도속지는 순조 24년(1824)에 유수 김이재(金履載)가 주관하여 다시 송도지와 합쳐졌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책이름도 색다르게 중경지(中京志)라고 하였다.
- 8) 고려고도징(高麗古都徵) : 한재겸(1775-1818)이 편찬한 것으로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으나, 편자의 생존연대로 보아 순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 9) 송경광고(松京廣攷) : 순조대 말엽에 임효헌(林孝憲)이 편찬하였는데, 서문은 순조 25년(1825)으로 되어있으나, 내용은 1832년까지 포함한다.

- 10)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 현종 12년(1846)에 광주부윤 겸 수어사이던 홍경모(洪敬謨)가 편찬한 남한산성에 관한 지지이다.
- 11) 화성지(華城志) : 순조 31년(1831)에 화성(수원) 유수 박기수(朴綺壽)가 주관하여 편찬하였다.
- 12) 견성지(堅城志) : 영조 34년(1758)에 이세욱(李世旭)이 편찬한 필사본으로 포천 읍지이다.
- 13) 장단지(長湍志) : 현종 15년(1849)에 군수 구성희(具性喜)가 편찬을 주관한 것으로 필사본으로만 전한다.
- 14) 강도부신지(江都府新志) : 정조 7년(1783)에 강화부 유수 겸 진무사 삼도수군 통어사 김노진(金魯鎭)이 편찬을 주관하였다.
- 15)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志) : 고종 7년(1870)에 강도 거주의 문사 박헌용(朴憲用)이 편찬한 것으로, 1932년 2월 신활자로 편찬되었다.

2. 충청도편

조선왕조시대에 충청도에서 편찬된 읍지는 통지(通志)와 개별읍지를 합하여 대략 110종 정도가 현존하고 있다. 충청도의 여러 읍의 읍지를 수집 합록한 통지는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등에 12종 129책이 남아 있다. 영조 시대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충청도읍지, 고종시대에 편찬된 호서읍지(湖西邑誌) 등이 그것이다. 개별읍지는 관찬과 사찬을 통털어 충청도 54개 읍에서 총94종 정도의 읍지가 남아 있다. 이 중 사찬읍지는 하삼도와 마찬가지로 16-17세기에 편찬된 공산지, 홍산현지, 충원지, 홍양지 등이 정구(鄭逋)와 이수광(李睟光)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나 거의 전하지 않고, 이 구지(舊志)를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읍지들이 19세기에 편찬되어 현존하는데 대륙지, 공산지, 신정아주지, 영성읍지, 청양읍지, 충주군읍지, 황간군읍지 등이 있다.

- 1) 충주군읍지(忠州郡邑志) : 조병로(趙炳老)가 충주목사로 부임한 후 5년이 지나 고종 7년(1870)에 구지에 근거하여 새로 달라진 공해, 사창, 누정, 역원 등의 건물들과 호구, 조적, 전결 등의 수를 실제에 맞도록 새로이 편찬하였다. 그러나 간행하지는 못하고 현재에도 필사본으로 전해 온다.
- 2) 영성지(寧城志) : 영성지는 천안군지의 별칭이다. 철종 3년(1852)에 군수로 부임

한 한여(韓瑬)가 사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사 이심순을 비롯하여 12명의 유생들을 참여시켜 영성읍지를 완성하였는데, 철종 14년(1863)에 군수였던 이연숙(李彦瀟)이 다시 보완하여 간행하였다.

- 3) 대록지(大麓誌) : 대록지는 목천현의 읍지인데 정조 3년(1779)에 안정복(安鼎福)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구지를 참고삼아 편찬하였다.
- 4) 황간군읍지(黃澗郡邑誌) : 정조 17년(1793)에 정은상(鄭殷祥)이 전해오던 구지를 참고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고, 순조 23년(1823)에 수령이었던 홍석모(洪錫模)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 5) 청양읍지(靑陽邑誌) : 이 읍지는 고종 43년(1906)에 읍재였던 이재신(李在信)이 편찬하였다.
- 6)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 순조 19년(1819)에 읍재였던 윤정식(尹鼎植)이 사림들과 의논하여 홍이도(洪履道) 등을 시켜 편찬하였다.

3. 평안도편

평안도편은 모두 21종으로 황해도 편에 비하면 다소 수가 많다. 편찬시기도 16세기 초의 평양지·성천지를 비롯해 고르게 퍼져 있는 편이다.

- 1) 평양지(平壤誌) : 제4책까지는 선조 23년(1590년)에 윤두수(尹斗壽)가 평안도 관찰사 겸 평양부윤으로 부임하여 편찬한 평양지가 들어 있고, 제5책에서 제9책까지는 후손 윤유(尹游)가 영조 3년(1727)에 부윤으로 부임하여 편찬한 속평양지가 속편으로, 마지막 제10책은 후속편으로 철종 6년(1855년)에 증보된 것이 들어있다.
- 2) 평양지(平壤誌) : 1905년(광무 9)에 평양군수 이승재(李承載)가 편찬하였다. 상하 2책의 편성으로, 상권은 일반 읍지의 체제를 갖추고 하권은 고사와 갑오신속(甲午新續) 등이 실렸다.
- 3) 용강읍지(龍岡邑誌) : 고종 13년(1876)에 현령 한장석(韓章錫)이 주관하여 편찬한 것이다.
- 4) 강서현지(江西縣誌) : 순조 29년(1829)에 현감 이현호(李玄好)가 쓴 서문이 있다. 그가 쓴 서문에 의하면, 1827년에 부임하여 이 현에 읍지가 없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나서 자료를 수집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다.

- 5) 강서현지 : 고종 32년(1895) 전국 읍지 편찬 시행 때 만들어진 것으로, 편찬자는 명기되지 않았다.
- 6) 안주목읍지(安州牧邑誌) : 편찬 연대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건치연혁이 1820년의 복호(復號) 조치까지 수록되어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7) 정주읍지(定州邑誌) : 고종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머리에 채색지도가 붙어 있다. 편찬 연대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정려 부분의 ‘上之二年 甲子’, ‘上之九年 辛未’라는 표기로 미루어 고종대인 것이 확인된다.
- 8) 숙천읍지(肅川邑誌) : 편찬 연대와 편찬자가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제언 항목에 이 고을의 10고(庫)의 제언이 정조 6년(1782)부터 규장각 수세지로 이속된 사실이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그 후에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
- 9) 청계지(淸溪誌) : 정조대에 편찬된 영유현(永柔縣) 읍지이다. 이곳 와룡사의 삼충화상(三忠畫像)에 대한 조정의 처분에 관한 기록에 정조대를 「금상(今上)」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편찬된 듯 하다. 선조 의주 파천 때 이곳에서의 일을 적은 임계행조일기(壬癸行朝日記)가 특별하다.
- 10) 용만지(龍灣誌) : 영조 44년(1768)에 서명선(徐命善)이 편찬한 읍지이다. 용만은 의주의 별호이다.
- 11) 용만지(龍灣誌) : 현종 15년(1849)에 의주 의회당(義會堂)에서 중간한 의주 읍지이다. 서명선에 의해 용만지의 첫 편찬이 이루어진 후에 있었던 중간이다.
- 12) 동산지(銅山誌) : 정조 10년(1786년)에 정지현(鄭趾顯)이 편찬한 철산읍지로 동산은 철산의 별호이다. 이 책 자체는 1920년에 극재 강응주(姜應柱)란 이가 전사(傳寫)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 13) 용성지(龍城誌) : 정조 20년(1796)에 차신용(車信用)이 편찬한 용천읍지이다.
- 14) 영변지(寧邊誌) : 표지에 영변부읍지(寧邊府邑誌), 박천영변읍지(博川寧邊邑誌) 등의 표기가 있다. 편찬자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편찬시기는 내용 중 흥경래 난에 관한 기록이 있어 순조대 이후로 짐작된다.
- 15) 태천현지(泰川縣誌) : 순조 34년(1834)에 편찬되었으며 지도가 첨부되었다. 뒷 표지 안쪽에 태천현감 김(金)의 수결(手決)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나, 내용은 자세한 편이 아니다.
- 16) 성천지(成川誌) : 성천지와 속성천지 둘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李尙毅)가 선

조 36년(1603)에 부사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읍지를 만들고, 효종 7년(1656)에 이동로(李東老)가 부임하여 다시 속지를 만들었으나, 후자는 미간 상태이다가 1842년에 서재순(徐載淳)이 부임하여 중간하게 되었다.

- 17) 자성속지(慈城續誌) : 고종 13년(1876)에 양진화(梁鎭華)가 편찬하였다.
- 18) 자산군읍지(慈山郡邑誌) : 편찬자와 편찬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군수조의 끝은 영조 21년(1745)에 부임한 이수풍(李遂豊)인 것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편찬된 듯하며, 내용은 자세하고 충실한 편이다. 暗路를 비롯해 군사관계가 자세하다.
- 19) 강계부읍지(江溪府邑誌) : 강계읍지는 숙종 21년(1695)에 부사 이인징(李麟徵)이 주관하여 편찬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책은 관청 건물조에 「當 佇三十一年庚寅」라는 구절이 있어 처음 편찬본을 토대로 순조 말년에 편찬된 것으로 짐작된다.
- 20) 강계지(江界誌) : 현종 5년(1839)에 증수된 강계읍지이다. 부사 이택원(李鐸遠)이 쓴 증수강계읍지(增修江界邑誌) 서문에 의하면 숙종 21년(1695)에 강계지는 처음 편찬되었고, 그 후 김정(金政)·이원조(李源祖) 등이 서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1839년에 증수하였다.
- 21) 초산군지(楚山郡誌) : 편찬자와 편찬시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내용상 19세기 이후 사실을 적은 것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18세기에 편찬된 듯하며 필사본이다.
- 22) 7군도경(七郡圖經) : 강계지(제1책), 위원지(渭原誌)·초산지(楚山誌)·삭주지(朔州誌) (이상 제2책), 용만지(龍漫誌) 등 7개 읍지의 합철본이다. 용만지에 1804년 서유구 증수본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연대가 내려온다. 초산지에는 지도가 첨부되었다.

4. 함경도편

함경도는 고려시대 우리의 통치구역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고려사 지리지에도 그 내용이 간단하며,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면서 비로소 각 주현의 사정이 소상히 기록되게 되었다. 그러나 함경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그 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사찬읍지가 편찬되지 못했다.

- 1) 속수함산지통기(續修咸山誌通紀) : 함산지는 함흥의 읍지이다. 현종 15년(1849)에 직장이었던 이반린(李攀麟)이 감사 박영원(朴永元)의 후원을 얻어 주자

- 가 편찬했던 함산지를 더욱 보완하여 6권으로 완성하여 비로소 간행하게 되었다. 속수함산지통기는 1938년에 함흥유림회의 한헌교(韓憲敎)가 주축이 되어 이반린의 함산지를 보유 편찬한 읍지이다.
- 2) 영흥부읍지(永興府邑誌) : 이 읍지는 정조 15년에 편찬된 『전국팔도주현 총읍지』의 일부인 듯 하다.
 - 3) 안변군읍지(安邊郡邑誌) : 이 읍지도 영흥부지와 마찬가지로 정조 15년에 편찬된 『전국팔도주현 총읍지』의 일부인 듯 하다.
 - 4) 춘성지(春城誌) : 춘성지는 덕원부지이다. 이 읍지는 고종 22년(1885)에 부사 정현석(鄭顯奭)이 편찬하였다.
 - 5) 북청읍지(北靑邑誌) : 이 읍지의 전안(田案)은 경종 2년(1722)에 조사한 내용과 영조 1년(1725)의 전안을 참고 있는데 영조 1년의 전안을 신양안(新量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6) 단천군지(端川郡誌) : 이 읍지는 숙종 28년(1702)에 영상이던 최석정(崔錫鼎)이 전국의 읍지를 편찬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여 조령에 의거하여 편찬된 듯 하다.
 - 7) 이원현읍지(利原縣邑誌) : 이원현은 원래 이성현(利城縣)이었는데, 정조24년(1800)에 개칭되었다. 이 읍지는 능침·진보·고적·목장·책판 등의 항목에 “무(無)”라고 표기한 점으로 미루어 조령에 의거하여 편찬된 듯 하다.
 - 8) 길주군읍지(吉州郡邑誌) : 이 읍지 공해(公廩)항 아사조를 살펴보면 목사였던 이규선(李奎璿)이 고종 19년(1882)에 아사를 신건하였으며, 선생안에는 목사 원익상(元益常)이 광무 3년(1899)에 부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9) 명천군지합편(明川郡誌合編) : 명천군은 세조때 이시애의 난으로 길주목을 분할하여 설치한 군현이다. 명천군지가 본격적으로 편찬된 것은 철종 5년(1854) 부사 이민덕(李敏德)에 의해서이다. 그 후 좌수였던 김용흡(金容洽)이 고종 23년(1886)에 새로이 읍지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읍지는 간행되지는 못하고 초고본 형태였다. 이를 보완하여 광무 4년(1900)에 읍사(邑士)였던 김성국(金聲國)이 선행항을 보완하여 이민덕본과 김용흡본을 합편하게 된다. 이 합편본을 광무 7년(1903)에 최상민(崔相敏)이 형승(形勝)·묘문(墓文)·관안(官案) 부분을 또 다시 보완하여 비로소 간행하게 된다.
 - 10) 속북관지증보(續北關誌增補) : 함경도의 대부분 읍지들이 현종 3년에 편찬된 이

단하의 관북지를 기초로 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읍지 편찬도 그와 예를 같이 한다. 읍지의 내용 중 아사항에 진변루(鎭邊樓)를 부사 이병무(李秉武)가 고종 15년(1878)에 창건했고 내아사를 부사 김기섭(金基燮)이 고종 26년(1878)에 개축하며 향계(鄉契)를 고종 20년(1883)에 부사 김의봉(金儀鳳)이 신설하며 관안에 부사 최명열(崔鳴烈)이 고종 27년(1890)에 부임했다가 이 해에 체임한 기사가 실려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읍지는 고종 28년(1891)에 조령에 의해서 편찬되었던 읍지인 듯 하다.

- 11) 경흥부읍지(慶興府邑誌) : 이 읍지의 고적항 공역기(工役記)에 「상지11년정미(上之十一年丁未)」라는 기사가 있는데 조선 후기 역대 왕 중에 재위년이 11년째로서 정미의 간지에 해당하는 왕은 정조뿐이다. 그러므로 이 읍지는 정조 15년 전국적으로 조령을 내려 편찬한 『전국팔도군현 총읍지』의 일부인 듯 하다. 그러나 기사 중에 신증항을 추가한 점으로 미루어 정조때 편찬한 읍지를 철종 때 부사 이민덕(李敏德)이 보완한 듯 하다.
- 12) 관북지(關北誌) : 이 읍지는 철종 10년(1859)에 함경감사였던 윤치의(尹致義)의 아들 윤정선(尹定善)이 편찬하였다. 편찬체제를 살펴보면 총14권인데 제1권에서 제4권까지는 함흥부영지이고, 제5권은 안변부지·덕원부지이며, 제6권은 문천군지·고원군지·영흥부지 상권이고, 제7권은 영흥부지 하권·정평부지, 제8권은 흥원현지·북청부지·이원현지, 제9권은 단천부지·갑산부지, 제10권은 삼수부지·후주부지·장진부지·길주목지 상권이고, 제11권은 길주목지 하권·명천부지·경성부지, 제12권은 부령부지·회령부지·무산부지, 제13권은 종성부지·온성부지·경원부지·경흥부지, 제14권은 행영사례·고산역지·거산역지·수성역지 등으로 되어 있으며, 7책으로 분책되어 있다.
- 13) 관북읍지(關北邑誌) : 이 읍지는 각 읍지의 서두에 동치(同治) 7년 곧 고종 5년(1868)에 편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편찬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관북지의 구성은 제1책이 고원군·문천군·덕원부·안변도호부, 제2책 정평부·영흥도호부, 제3책은 함산지, 제4책은 흥원현·북청부·이원현·단천부읍지, 제5책 삼수부·갑산부·원주부·장진부, 제6책 길주목·명천군·경성부·부령부, 제7책 무산부·회령부·종성부·온성부·경흥부·경원부읍지 등이다.

- 14) 북관지(北關誌) : 이 읍지는 수성지를 편찬한 이식(李植)이 광해군 8년(1616)에 북평사로 재직하면서 편찬을 시작하였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 후 숙종 19년(1693)에 북평사로 부임한 신여철(申汝哲)이 이단하가 물려준 북관지에 선생안을 보충하고, 호구전시의 증익(增益) 사실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숙종 10년(1694)에 설치된 무산부(茂山府)의 사실들을 보충하여 비로소 간행되었다. 경종 21년(1724)에는 신여철의 손자인 신대겸(申大謙)에 의해서 또 한차례 증수하여 간행된다. 이 북관지는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북병영 관할 주현만을 수록하고 있다. 상권은 경성부·길주목·명천부·부령부가 실려 있고, 하권은 회령부·무산부·종성부·온성부·경원부·경흥부지가 수록되어 있다.

5. 강원도편

강원도는 한반도 중부의 동부에 위치하여 대관령을 분수령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분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문물이 풍부하지 못했으며, 사찬읍지 역시 타도에 비하여 조금은 뒤떨어지는 편이다. 1632년 이식(李植)의 수성지, 1662년 허목(許穆)의 척주지, 1648년 엄황(嚴愷)의 춘천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개별읍지와 달리 통지 형식의 읍지는 조령에 의하여 여러 차례 편찬되며 그에 따라 강원도 읍지도 다수 편찬된다.

- 1) 강릉부지(江陵府誌) : 사찬읍지의 효시를 이룬 정구(鄭逵)가 편찬한 임영지가 있다는 기록이 경산지 서문에 나오지만 전해오지 않으며, 현존하는 강릉부지는 정조 12년(1788)에 현감 맹지대(孟至大)가 편찬한 읍지다. 강릉부지는 그 후 순조 31년(1831)에 부사 고시신(高時臣)에 의해서 증보되며 고종 8년(1871)에는 부사 윤종익(尹宗儀)가 재정리 편찬한다.
- 2) 척주지(陟州誌) : 척주지는 삼척군의 읍지이다. 이 읍지는 현종 1년(1660)에 삼척부사로 부임한 허목(許穆)이 편찬하였다.
- 3) 현산지(峴山誌) : 현산지는 양양읍지인데 언제, 누구에 의해서 편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조조에 처음 편찬되었고 순조조에도 계속 보완되어 편찬되었다. 선생안은 고종 34년(1897) 부사 오태경(吳台瓊)까지 수록하고 있다.
- 4) 평해군지(平海郡誌) : 이 읍지는 편찬자가 미상이다. 그러나 이 읍지의 선생안을 참고하면 영조 9년(1733)에 신유한(申維翰)이 1차로 편찬한 듯 하다. 실제

로 읍지에 수록된 제영(題詠) 부분 중 상당량을 그가 지은 시문으로 충당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 후 순조 26년(1826)에 강원 감영의 지시에 의하여 군수 채학영(蔡學永)이 증보하며 고종 8년(1871)에 역시 조령에 의하여 군수 이용익(李容益)이, 고종 32년(1895)에 군수 정현조(鄭賢朝)가 각각 읍지를 정리 상송한다. 내용의 증보는 없었던 듯하며 선생안만 추가한 듯하다.

- 5) 수성지(遼城誌) : 수성지는 간성읍지이다. 이 읍지는 이식(李植)이 편찬하였는데 그는 중종대에 동국여지승람을 신증한 이행(李荇)의 현손(玄孫)이다. 이 수성지는 영조 21년(1745)에 군수로 부임한 김광우(金光遇)가 영조 24년(1748)에 크게 증보하였으며 그 후 순조 26년(1826)에는 읍재 송재의(宋在誼)가 신증, 부록항을 추가하여 보완하였고, 고종 21년(1884)에는 군수 고영희(高永禧)가 교정(校正), 첨재(添載) 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크게 보충하였다.
- 6) 고성군지(高城郡誌) : 이 읍지는 순조 20년(1820)에 군수였던 윤광열(尹匡烈)이 김계온(金啓濶)의 권유에 의하여 편찬하였다. 윤군수는 그 이듬해인 순조 21년(1821)에 이 읍지의 보유편도 편찬한다. 그 후 순조 26년(1826)에 군수 유철조(柳喆祚)가 이 읍지를 감영에 보고하며 관동지 속에 수록 전해 온다.
- 7) 춘천읍지(春川邑誌) : 이 읍지는 엄황(嚴愷)이 인조 26년(1648)에 편찬하였다. 끝 부분의 선생안에는 고종 33년(1896)에 부임한 군수 정봉(鄭鳳)까지 수록하고 있다.
- 8) 평창군신지(平昌郡新地誌) : 이 읍지는 순조 26년(1826)에 감영의 요구에 의하여 현감 김원순(金源淳)이 편찬하였다. 그 후 고종 34년(1897)에는 조령에 의하여 현감 엄주항(嚴柱沆)이 보충 정리하며, 융희 3년(1909)에 군수 홍재영(洪在榮)에 의해서 다시 증보된다.
- 9) 횡성읍지(橫城邑誌) : 이 읍지는 순조 26년(1826)에 현감 유한종(俞漢宗)이 감영의 요구에 의해서 편찬했으며, 고종 8년(1871)에는 읍재 조기풍(趙基豐)이 다시 정리하였다.
- 10) 회양읍지(淮陽邑誌) : 순조 26년(1826)에 부사 홍의조(洪義祖)가 읍지를 보완하여 속지를 만들며 고종 8년(1871)에는 읍재 민창식(閔昌植)에 의해서 그리고 고종 34년(1897)에는 부사 박용덕(朴用德)이 선생안 등을 보완한다.
- 11) 철원군지(鐵原郡誌) : 영조때 철원지가 처음 편찬되며 순조 26(1826)에는 방어

사 원영인(元永麟)이 앞서의 읍지를 보완하며 고종 8년(1871)에는 방어사 홍언석(洪彦錫)이 또다시 보완 편찬하였다. 순종 1년(1907)에는 군수 김창현(金昌鉉)이 제영·읍사례 등을 더욱 보완하여 철원군지를 편찬하였다.

- 12) 금화읍지(金化邑誌) : 이 읍지는 영조 46년(1770)에 읍재 이학조(李學祚)가 선생 안과 동국여지승람을 참조하여 처음 편찬하였다. 순조 26년(1826)에는 읍재 한치회(韓致廻), 고종 8년(1871)에는 군수 한시동(韓始東)이 순종 1년(1907)에는 이창하(李昌夏)가 각각 읍지를 정리하여 조정에 바쳤다.

6. 전라도편

조선왕조시대에 전라도에서 편찬된 읍지는 통지와 개별읍지를 합하여 대략 270종 정도가 현존하고 있다. 전라도 여러 읍의 읍지를 수집 함록한 통지는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 등에 4차에 걸쳐 편찬된 156종이 남아 있다. 영조시대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여지도서, 고종시대에 편찬된 호남읍지 등이 그것이다. 개별읍지는 관·사찬을 통털어 전라도 60개 읍에서 총 114종 정도의 읍지가 남아 있다. 이중 사찬 읍지는 임란 이후 숙종조까지 승평지·용성지·탐라지 등이 전해 오고 영조때에 여지도서의 부분으로 작성된 무장·무주·순창·순천·여산·영암·익산·전주·홍양 읍지가 있으며, 정조때의 봉성지, 고종때의 전주·해남·곡성·나주 등의 읍지 등 14종을 포함하여 도합 27종의 사찬읍지가 전해온다.

- 1) 금마지(金馬誌) : 금마지는 익산읍지이다. 이 읍에는 일찍이 읍사(邑士)였던 선정정(蘇景鼎)·김즙(金澂)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편찬한 익산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읍지는 매우 소략하여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사(東史)에서 보충하고, 시문 등을 충분히 수록하여 속편을 만들고, 이 두 편을 합하여 금마지라 하였다. 이러한 합편 작업은 영조 32년(1756)에 읍재였던 남태보(南泰普)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 2) 부안지(扶安誌) : 부안지는 고종 24년(1887)에 사림 최봉환(崔鳳煥)과 그의 동지 2~3명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 3) 영광속수여지승람(靈光續修輿地勝覽) : 이 읍지는 영조 36년(1761)에 전국의 읍지를 편찬하여 상송하라는 조령에 의거하여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간행하지 못하고 초고본의 형태였다. 이 초고본을 고종 8년(1871)에 사림

- 강영관(姜永寬)·송정기(宋玼基)·신극희(辛克熙) 3인이 보완하여 상·중·하 3책으로 간행하였다.
- 4) 무장현읍지(茂長縣邑誌) : 이 읍지는 다른 읍지와 마찬가지로 읍선생안이 기초되어 편찬되었다. 그 후 영조 17년(1741) 읍재인 정권(鄭權)이 이 읍지를 증보하여 반포하였고, 철종 7년(1856)에는 수령으로 부임한 정기면(鄭基勉)이 더욱 보완하여 중간하였다. 이 읍지에는 노비안·군총군기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지방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가 된다.
- 5) 장흥부지(長興府誌) : 이 읍지는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어 편찬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읍선생안에 해당하는 관직향을 살펴보면 심봉순(沈鳳淳)이 정조 13년(1789)에 부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의 주도하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탐라지(耽羅誌) : 탐라지는 이원진(李元鎭)이 효종 2년(1651)에 제주부사로 부임하여 동국여지승람을 저본으로 하고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을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이 읍지는 다른 읍지와 달라 풍속항이 매우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원진이 김정의 제주풍토록을 상당부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이원진은 성천지를 편찬한 이상의(李尙毅)의 손자이며 이중환(李重煥)·이익(李瀾) 등은 그의 후손이다.
- 7) 용성지(龍城誌) : 용성지는 남원읍지이다. 숙종 25년(1699)에 좌의정 최석정(崔錫鼎)의 건의에 의하여 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고자 전국의 주현에 읍지를 편찬하여 상송하라는 조령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읍재였던 이구징(李壽徵)이 사림들과 의논하여 이도(李燾)와 최여천(崔與天)에게 읍지 편찬을 맡겼다. 이들은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의 남원읍지를 저본으로 하고 평양지와 승평지를 참고하여 새로이 읍지를 편찬하였다. 이 용성지는 영조 28년(1752)에 방두천(房斗天)에 의해서 중간된다.
- 8) 용성속지(龍城續誌) : 이 속지는 1921년 신유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1923년에 끝마쳤다. 김교우(金敎友)·황도현(黃道顯)·최병우(崔炳祐)가 찬수하고, 윤태건(尹泰建)이 교정을 맡았다. 용성지 편찬이후의 사실들을 보완하였고 특히 구지의 인물항에서 성씨만 기록하고 관향(貫鄉)을 기록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였다.
- 9) 옥천군지(玉川郡誌) : 옥천군지는 순창읍지이다. 이 읍지는 영조 34년(1758)에

전국의 읍지를 편찬하여 상송하라는 어명에 의하여 편찬된 읍지의 부분을 기초로 하여 보완한 읍지이다.

- 10) 적성지(赤城誌) : 무주군의 군지로, 고종 33년(1896)에 무주 군수로 부임한 조병선(趙秉璿)이 구문(舊聞)과 풍요(風謠)를 모아 두 책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전 현감이었던 박중호(朴重浩)와 유학 이해교(李海敎)가 찬수하고 김직현(金直鉉)·하태홍(河泰洪) 등이 교정을 보아 3년 후인 고종 35년(1898)에 상하 두 권으로 간행하였다. 이 읍지에는 현종 7년(1666)에 강화부 마니산 사고에서 산실된 280권의 실록을 등사하여 적상산 사고에 보관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적상산성실록등교동고록기서(赤裳山城 實錄 騰校 同苦錄記 序)」가 수록되어 주목된다.
- 11) 신증승평지(新增昇平誌) : 승평지는 순천읍지이다. 이 읍지는 광해군 10년(1618)에 이수광(李睟光)이 편찬하였으며 호남지방 읍지 편찬의 효시가 되었다. 이 승평지는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 영인하는 신증승평지는 영조 5년(1729)에 부사 홍중징(洪重徵)이 보완한 신증승평지이다.
- 12) 순천속지(順天續誌) : 이 속지는 고종 18년(1881)에 부사 김윤식(金允植)이 사림들의 도움을 받아 4개월만에 편찬하였다.
- 13) 봉성지(鳳城誌) : 봉성지는 구례읍지이다. 이 읍지는 정조 24년(1800)에 현감으로 부임한 김최행(金最行)의 주선으로 한준(韓俊)·고만권(高萬權) 등 8인의 향로장보(鄕老章甫)들에 의해서 6개월만에 편찬되었다.
- 14) 신증흥양지(新增興陽誌) : 흥양현에는 영조 16년(1740)에 유생 송래하(宋來夏)와 유동흥(柳東興)이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고 그 이후 사실들을 증보한 고흥지가 있었다. 이 읍지의 편찬 작업은 사림인 송동보(宋東輔)·박희석(朴禧錫) 등이 중심이 되어 구지인 고흥지를 증보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신증흥양지라고 하였다.
- 15) 동복지(同福誌) : 이 읍지의 편찬은 영조 33년(1757)에 전국의 읍지를 편찬하여 올리라는 조령에 의거하여 편찬되었으며,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읍지 편찬이 있었지만 서원·과환(科宦)·선생안 등을 첨가하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읍지가 매우 소략하였는데, 1915년에 송궁면(宋兢勉)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폭 증보한 동복지가 편찬된다.
- 16) 완산지(完山誌) : 완산지는 전주부의 읍지이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초기(肇基)이

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윤이 파견되었고, 상당기간 전라도의 감영이 있었던 조선시대 주요 군현이었다. 이 읍지도 조령에 의거하여 고종 32년(1895)에 편찬되었지만 이 시기에 편찬된 다른 읍지와는 달리 그 내용이 풍부하다.

- 17) 김제군읍지(金堤郡邑誌) : 이 읍지는 순조 11년(1811)경에 편찬되었다. 왜냐하면 이 읍지에 수록되어 있는 선생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선기파(蘇起坡)부터 이익회(李翊會)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익회는 순조 7년(1807)에 군수로 부임하였다가 순조 11년(1811)에 부친상을 당하여 체직된다. 그의 이임기사까지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뒤를 이은 군수 김사채(金思采) 때에 이 읍지가 편찬된 듯 하다.

7. 경상도편

조선왕조시대에 경상도에서 편찬된 읍지는 타도에 비하여 매우 풍부하다. 선초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하여 영조때의 여지도서, 순조때의 경상도읍지, 고종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편찬된 영남읍지, 광무 연간에 편찬된 경상도읍지 등이 규장각국립도서관·장서각에 남아있다. 또 사찬읍지도 정구(鄭逯)가 편찬한 함주지를 비롯하여 진양지·영가지·상산지 등 상당수의 읍지가 남아 있다. 이는 경상도가 사림세력들이 강했고 그들은 추로지향(鄒魯之鄉)에 살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의 결과이다. 경상도에는 통지와 개별읍지를 합하여 대략 320종 정도가 현존한다.

- 1) 동경잡기(東京雜記) : 경주는 신라의 고도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동경지가 있었다. 이 읍지를 현종 10년(1669)에 경주부사였던 민주면(閔周冕)이 진사 이채(李埰)를 비롯한 14명의 사림들과 함께 증보 간행한 읍지가 동경잡기이다. 그 후 숙종 37년(1711)에 부윤이었던 남지훈(南至薰)이 보충하여 재간하였고, 135년 후인 현종 11년(1845)에 부윤인 성원묵(成原默)이 또다시 동국여지승람 체재를 모방하여 더욱 자세하게 보충 간행하였다.
- 2) 울산읍지(蔚山邑誌) : 울산읍지는 영조 11년(1735)에 권상일(權相一)이 부사로 부임하여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는 고을 부모(父老)들의 요청에 의하여 진사 박망구(朴望久)와 사림 이원담(李元聃)으로 하여금 울산부지를 편찬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가 영조 14년(1738)에 체임하게 되므로 이 읍지 편찬 사업도 일시 중단된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후인 영조 25년(1749)에 부모들이 초본을

증보하여 권상일에게 보냈다. 그는 이를 「학성지」라고 하여 간행하였다. 그 후 이 읍지는 고종 31년(1894)에 유학 이용간(李容簡)이 집록하고 유학 이경권(李敬權)이 교정을 보아 재간하였다. 그 후 1933년에 김기찬(金琪燦)·서진규(徐縉圭) 등이 울산읍지를 증보·간행하였다.

- 3) 동래부지(東萊府誌) : 이 읍지는 광해군 3년(1611)에 부사 성진선(成晉善)이 처음 편찬하여 동래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동래지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숙종 6년(1680)에 부사 이서우(李瑞雨)가 동래승람서를 찬술하였다. 그러나 이 읍지는 내용이 너무 소략하고 착오된 부분이 많아 이를 참고로 영조 16년(1740)에 부사 박사창(朴師昌)이 증보한 동래부지가 편찬된다.
- 4) 영가지(永嘉誌) : 영가지는 안동읍지이다. 이 읍지는 선조 35년(1602)에 권기(權紀)가 유성룡(柳成龍)의 권유에 의하여 권행가(權行可)와 함께 편찬을 시작하였다. 고종 35년(1899)에 권기의 후손인 권상학(權相鶴)과 권상택(權相宅)에 의해서 이 영가지는 비로소 간행된다. 권상학은 이 영가지를 간행하면서 이전에 작성된 초고를 그대로 그 이후 사실들은 증보없이 간행하였기 때문에 17세기의 안동 사회를 생생히 알 수 있다.
- 5) 오산지(鰲山誌) : 오산지는 청도읍지이다. 이 읍지는 인조 5년(1627)에 읍민 이중경(李重慶)이 읍재 유진(柳珍)의 위촉으로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 읍지의 간행은 권일의 뒤를 이은 읍재 서문중(徐文重)에 의해서 숙종 3년(1677)에 간행되게 된다. 그 후 영조 13년(1737)에 읍재 서종벽(徐宗璧)은 이 읍지를 또다시 속수(續修) 간행하였다.
- 6) 상산지(商山誌) : 상산지는 상주읍지이다. 이 읍지는 광해군 9년(1617)에 읍재 강복성(康復誠)의 후원 아래 사림 이준(李俊)에 의해서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편찬 작업이 늦어져 강복성의 뒤를 이은 정호선(丁好善)에 이르러 비로소 두 권으로 편찬 간행되었다.
- 7) 성산지(星山誌) : 성산지 또는 경산지는 성주군의 읍지이다. 이 읍지는 일찍이 동강 김우옹(金宇顛), 서천부원군 정곤수(鄭昆壽) 등이 편찬을 시도하였으며, 한강 정구(鄭述)가 읍재로 부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강의 제자인 이원정(李元禎)에 의해서 현종 9년(1668)에 재편찬이 시도되어 9년 만인 숙종 3년(1677)에야 비로소 편찬이 완성되어 간행하였다. 이 이원정본은 1933년에 재

- 편찬이 시작되어 9년 만인 1936년에 마무리되어 간행하였다. 이 편찬작업은 군수 조정하(趙鏡夏)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 8) 일선지(一善誌) : 일선지는 선산읍지이다. 이 읍지는 성종 7년(1476)에 선산 읍재로 부임한 김종직(金宗直)이 강종할리(强宗猾吏)를 막고 읍민들에게 조용조를 균분시키기 위한 치정의 자료로 만든 선산지도를 기초로 하여, 인조 8년(1630)에 이준(李俊)이 인물지를 보완하여 편찬한 듯 하다. 그 후 계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정조 24년(1800)경에 비로소 간행된 듯 하다.
 - 9) 고령지(高靈誌) : 이 읍지는 융희 4년(1910)에 이두훈(李斗勳)이 편찬하였다. 그는 김택영(金澤榮)의 동사집략과 정약용(丁若鏞)의 아방강역고를 참고하여 강계와 연혁 두 편을 편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구지를 근간으로 보완하였다.
 - 10) 문경현지(聞慶縣誌) : 문경현지는 정조 13년(1789)에 유학 신만증(申萬增)이 편찬 간행하였다. 이 읍지의 내용중 「신증」항이 추가된 점으로 미루어 구지가 있었던 듯 하다.
 - 11) 진양지(晉陽誌) : 진양지는 진주읍지이다. 이 읍지는 광해군 14년(1622)에 성여신(成汝臣)이 동지 2~3명과 함께 편찬에 착수하여 꼭 10여년만인 인조 10년(1632)에 완성하였다. 그 후 영조 6년(1730)에 필사본이 반포되고 순조 2년(1802)에 또 다시 증보 간행되었으며 1932년에 활자본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 12) 천령지(天嶺誌) : 천령지는 함양읍지이다. 이 읍지는 효종 7년(1656)에 정여창(鄭汝昌)의 후손인 정수민(鄭秀民)이 동국여지승람의 함양읍지를 참고하여 편찬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고 전해오다가, 그의 후손인 정광연(鄭光淵)이 숙종 43년(1717)에 비로소 간행하였다. 그 후 고종 25년(1888)에 정수민(鄭秀民)의 9대손인 정환주(鄭煥周)에 의해서 활판으로 간행되었다.
 - 13) 함주지(咸州誌) : 함주지는 함안읍지이다. 이 읍지는 정구(鄭逵)가 선조 20년(1587)에 편찬하였다.
 - 14) 울진군지(蔚珍郡誌) : 이 읍지는 읍재 박성오(朴省吾)가 인조 9년(1631)에 사림 임유후(任有後)와 함께 처음 편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읍의 사실들을 백분의 일도 수록하지 못할 정도로 빠진 부분이 많았다. 그 후 숙종 39년(1713)에 읍재 이상성(李相成)이 상당부분을 보충하여 읍지를 편찬하였으나, 그도 이 읍지를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철종 즉위년(1849)에 남유주(南有柱)가 수

령으로 부임한 후 향로들과 상의하여 이상성분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간행하지는 못한 듯 하다. 그 후 1938년에 군수 박영빈(朴永斌)이 남유주본 이후의 사실들을 증보하고 1914년에 울진군에 편입된 평해읍지도 합본하여 간행하였다.

8. 황해도편

황해도의 사찬읍지는 연안을 비롯해 몇 곳에서는 16세기 말엽에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읍지는 영조·정조대에 초찬되었다. 이것은 18세기에 이르러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읍지 편찬도 활발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편찬된 것도 현전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후에 개편되거나 전하지 않는 것이 많다. 현전하는 읍지들은 대부분이 19세기 것들이다. 즉 순조 연간에 편찬된 것만도 시기가 빠른 것이며, 고종대 특히 광무(1897~1906) 연간에 마련된 것이 다수이다.

- 1) 황해읍지(黃海邑誌) : 책표지나 지질 및 필사 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 광무 3년(1899)에 중앙의 상송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확실하다.
- 2) 평산부읍지(平山府邑誌) : 도로·방리를 앞세운 편목이나, 재정관계의 항목이 많이 첨가된 점 등이 위의 황주읍지와 마찬가지로 정조대의 읍지가 원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한 시기는 위와 마찬가지로 광무 연간으로 추정된다.
- 3) 봉산군여지지(鳳山郡輿地誌) : 말미에 실린 양상우(梁相禹)의 발문을 통해 1899년에 중앙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읍지라는 것이 확인된다.
- 4) 봉산읍지(鳳山邑誌) : 앞의 「봉산군여지지」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5) 화산지(花山誌) : 화산은 신천군의 별호이다. 이 읍지는 말미에 「군지사실(郡誌事實)」의 항목을 두어 이전의 읍지 편찬의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영조 2년(1726)에 군수 이익형(李益炯)이 처음으로 「승산지(升山誌)」란 이름의 읍지를 편찬하고, 정조 13년(1789)에 군수 이의봉(李義鳳)이 다시 「화산군지(花山郡誌)」를 만들고, 이를 순조 6년(1806)에 군수 조진구(趙鎭球)가, 1825년에는 군수 원석범(元錫範)이 각각 개편하였는데, 이중 후자의 개편에서는 일을 향리들에게 맡겨 더하고 빼는 것이 너무 심해, 1832년에 군수 이용규(李容奎)가

다시 개편 교정하여 이 「화산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 6) 신계현읍지(新溪縣邑誌) : 표지 장정으로 보아 앞의 황주읍지와 마찬가지로 1899년의 중앙의 명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
- 7) 신계현읍지(新溪縣邑誌) : 고종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관안조에 오른 인물들이 앞의 신계현읍지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정동원 이하에 54인이 첨가되었다. 재임 기간이 고종 28년(1891)부터 고종31년(1894) 사이였던 김사국(金思國) 다음에 3인이 더 올라 있다.
- 8) 연안부지(延安府誌) : 고종 13년(1876)에 부사 정기석(鄭箕錫)이 주관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읍지에는 같은 연월에 쓴 감사 민태호(閔台鎬)와 정기석의 서문이 나란히 실리고, 이어서 선조 14년(1581)에 부사 윤두수(尹斗壽)가 쓴 구지(舊誌) 서문도 실렸다.
- 9) 용진부읍지(甕津府邑誌) : 표지에 광서 5년 곧 고종 16년(1879) 6월 초책이라고 적혀있다. 책의 끝에 본문과는 별개로 1177년에 월남인으로 고려에 와 이곳에 자리잡았다가 몽고 침입 때 강화도를 압박하는 몽고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이용상(李龍祥)에 관한 자료가 별지에 적혀 첨부되어 있다. 즉 1903년에 찬술된 수항문기속비(受降門紀續碑)·군세요람초록(郡勢要覽抄錄, 일본문)·화산군가초(花山君家抄) 등이 그것이다.
- 10) 은율현지(殷栗縣誌) : 표지명은 「황해도은율현」이라고만 되어있고, 채색지도가 첫머리에 실렸다. 편찬 연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선생안에 오른 최종 인물의 부임 연월이다. 즉, 김우근(金羽根)이 마지막 현감으로 부임 연월은 순조 27년(1827) 12월이다.
- 11) 장연현지(長淵縣誌) : 형식면에서 정조~순조 연간의 읍지 체제이면서, 건치연혁에 ‘당저2년경술(當宁二年 庚戌)’이란 연기 표시가 있는데, 이 경술은 철종 1년 경술의 착오로 보인다. 즉 즉위년을 포함하여 1년을 2년으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전본은 앞의 황주읍지와 마찬가지로 1899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 12) 황해도각군읍지(黃海道各郡邑誌) : 표지명은 해서읍지라고 하였다. 1899년에 각 지방으로부터 상송된 것을 도 단위 또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다시 필사 정리한 것이다. 《이상태》

三國史記(삼국사기)

도서번호 : 독도 951.3 7662사
 저 자 : 金富軾
 발행기관 : 景仁文化社(영인본)
 발행년도 : 1994년 (원본 1145년)
 구 성 : 4×6배판 전 1권

본서는 1145년(고려 인종 23년) 김부식(金富軾) 등에 의하여 찬진(撰進)된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에 관한 기전체(紀傳體)의 정사(正史)이다. 저자 김부식(金富軾)은 1075년(고려 문종 29년) 태어나, 1096년(고려 숙종 1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20여년 동안 한림원 등의 문한직(文翰職)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켰고,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면서 1130년 12월 정당문학겸수국사(政黨文學兼修國史)로 승진되어 수사공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守司空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직에 올랐다.

김부식은 묘청이 서경천도설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키자 원수로 임명되어 직접 중군을 거느리고 삼군(三軍)을 동원하여 1년 2개월만에 난을 진압하였다. 그 공로로 수충정난정국공신(輸忠定難靖國功臣)에 책봉되고 검교태보수태위문하시중판이부사(檢校太保守太尉門下侍中判吏部事)에 승진되었다. 이때 국왕이 그를 도와줄 여덟 명의 젊은 관료들과 함께 본서의 편찬을 명함에 심혈을 기울여 인종이 죽기 직전에 50권의 삼국사기를 편찬하여 바쳤다.

본서는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인 만큼 편찬 직후 곧 바로 출간하였을 것으로 유추되나 실제 고려때의 판본은 전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조초기인 태조 때에 와서 경주에서 간행된 것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서는 한국 고대사에 관한 현존 최고(最古)의 사서로서 이 시대를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서에는 총 30칙(則)의 논찬(論贊)이 실려 있는데 본기에 신라본기 10칙, 고구려본기 6칙, 백제 본기 6칙, 도합 22칙이 실려있다. 나머지 8칙은 열전 중에 수록되어 있다. 표에는 중국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으로 대조하여 마련된 연표가 있다.

본서의 신라본기 지증왕 13년(1145년)조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복귀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과,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칭하는데, 그 땅의 크기는 100리로 사람들이 지세 험한 것만 믿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이찬 이사부를 하슬라주의 군주로 삼아 이를 복속시키게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밖에 동서 열전 제4권 이사부조(異斯夫條)에도 “이사부의 성은 김씨로 내물왕의 4세손이며 지도로왕(智度路王) 때에 연변관(沿邊官)이 되어 거도(居道)의 꾀를 본떠 말놀이로써 가야국을 속여 빼앗았다”라고 하고, 앞의 본기의 기사가 중복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리 영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양태진》

三國遺事(삼국유사)

도서번호 : 독도 951.3 0985사

저 자 : 一然

발행기관 : 民族文化推進會(影印本)

발행년도 : 1995년 (편찬연대 미상, 最古本 1512년)

구 성 : 국판 전 1책

본서는 고려 충렬왕 때의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이 지은 것으로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함께 현존하는 우리나라 고대 사적(史籍)의 쌍벽(雙璧)으로 일컬어지며, 삼국의 역사를 주로 하고 있지만, 고조선 기자 및 위만조선을 비롯하여 가야(伽倻) 등의 역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본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 제일(卷 第一)은 왕력(王歷)이라 하여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및 후삼국의 연대표와 기이 제일(紀異 第一)이라 하여 고조선 이하 삼한, 부여, 고구려와 통일삼국(統一三國)이전의 신라의 유사(遺事)를 기록하고

있다. 권 제이(卷 第二)부터의 수록된 목차를 순차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第二：紀異 第二에는 신라 문무왕 이후 통일신라시대를 비롯하여 백제, 후백제 등에 관한 약간의 유사와 가락국에 관한 유사를 수록
- 第三：興法 第三에는 불교전래의 유래 및 고승의 행적과 塔像 第四에 寺記와 塔 佛像 등에 얽힌 僧傳과 사탑의 유래
- 第四：義解 第五에 高僧들의 行蹟
- 第五：神呪
- 第六：異僧들의 傳記 感通
- 第七：靈驗 感應의 靈異한 기록과 避隱
- 第八：隱遁한 逸僧들의 기록과 孝善
- 第九：孝行善行 美談의 기록

요컨대 본서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고기(古記)의 기록들을 원형대로 모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단군설화를 비롯하여 고대의 신화, 전설, 민속, 사회, 고어집(古語彙), 성씨록(姓氏錄), 지명기원(地名起源), 사상, 신앙, 일사(逸事) 등은 대부분 금석(金石) 및 고적(古籍)의 인용과 극소수의 견문(見聞)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인용된 서적은 당시의 전적(典籍)을 고증하는 데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본서의 간행연대는 서기 1281~1283년(충렬왕 8년 전후)으로 보는 것이 통설(通說)이다.

본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신라 제22대 왕인 지철로왕(智哲老王)조에 “하슬라주(阿瑟羅州: 오늘의 명주 溟洲) 동쪽 바다에 순풍(順風)으로 이틀 걸리는 곳에 우릉도(于陵島: 지금의 羽陵)가 있다. 이 섬은 둘레가 2만6천7백30步이다. 이 섬에 사는 오랑캐들은 그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몹시 교만하여 조공(朝貢)을 바치지 않았다. 이에 왕은 이찬(伊漣) 박이종(朴伊宗)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하였다. 이때 이종(伊宗)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에 싣고 위협하였다. ‘너희가 만약 항복 하지 않는다면 이 짐승을 풀어 놓아 버리겠다’하니 이에 오랑캐들은 두려워 항복하였다. 이에 이종(伊宗)을 상(賞)주어 주백(州伯)을 삼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이는 이사부(異斯夫)가 이찬(伊漣) 박이종(朴伊宗)으로 달리 표기되고 있을 뿐 여타의 내용은 같아 울릉도(鬱陵島)의 귀속(歸屬) 및 관할(管轄)

사실을 입증케하고 있다. <양태진>

順菴集(순암집)

도서번호 : 독도 811.081 0171사
저 자 : 安鼎福
발행기관 : 민족문화추진회(영인본)
발행년도 : 1996년 (원본 1740년경)
구 성 : 국판 전 5권

본서는 성호 이익의 제자로서 하학지남(下學指南), 잡동산이(雜同散異), 독사상절(讀史祥節), 임관정요(臨官政要), 가례주해(家禮註解), 열조통기(列朝通紀), 가례익전(家禮翼箋), 동사강목(東史綱目), 천학교(天學考), 관혼작의(冠婚酌宜), 상현수필(橡軒隨筆) 등의 저술을 남긴 실학자 안용복(安鼎福)의 문집이다.

저자인 안정복은 본래 주자의 학설을 독실히 신봉하면서, 오직 그것에 의한 실천공행(實踐躬行)을 힘쓸 뿐이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즐겨 하지 않았다. 그는 1746년 10월 처음 안산으로 성호를 찾아보고 가르침을 청하면서 사제간의 정의를 다졌으나, 학적(學的)인 태도에서는 차이점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호가 매양 지식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견(知見)을 통한 학문의 향상을 존중하고 있음에 대하여, 순암은 오직 선현의 학설을 성실히 믿고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마지막 작별시 성호는 다시 순암에게 지식에 대해 말하고 귀가후에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할 정도였다고 한다.

여하튼 안정복은 기본적으로 성호의 경세치용학(經世致用學)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의 사관 및 사론은 성호의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그가 집필한 『동사강목』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애국 사상으로 외래 침략자들을 격퇴한 역사적 사실들에 유의하여 충신과 명장들의 국권수호를 위한 활동

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안정복은 역대강역고 분야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고증을 가한 역작들을 남김으로서 실사구시학파의 선구가 되었고, 이후 계몽기(韓末)에 이르러 학문적, 사상적 영향은 애국주의적 민족사학의 창건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동사강목이 제공한 원천으로 순암집은 국학연구에 귀중자료가 되고 있다. 《양태진》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

도서번호 : 독도 951.59 □433스

저 자 : 承政院 撰 (民族文化推進會 譯)

발행기관 : 民族文化推進會(영인본)

발행년도 : 1994년 (원본 1402~1910년)

구 성 : 138권 3,245책

본서는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맡고 있던 승정원의 정7품 관리인 주서(注書)가 승정원에서 출납한 일체의 문서와 임금을 수행하며 발생한 모든 언동을 빠뜨리지 않고 수록해 놓은 일종의 일기체형식의 기록물이다.

조선초인 1402년(정조 2년)에 신설된 승정원은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1433년(세종 15년)대의 육승지체제를 갖추면서 확립되었으며, 이 일기도 이 시기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중간에 병란과 불의의 화재로 인해 오늘날에는 1623년(인조 원년)에서 1910년(융희 4년)까지의 288년간의 일기로 총 3천2백4십5책 만이 전해지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편찬물이 아니라, 국정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말하여지는 바와 임금에게 올려진 문자로 된 문건을 일체의 가감없이 보고 들은 대로 적은 기록물이다. 그러므로 어떤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일체 배제되어 객관적 자세에서 사실기록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인조대부터 경종 원년(1721년)까지의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때 전반부가 소실된 것이다.

1744년(영조 20년)과 1888년(고종 25년) 두 차례에 걸쳐 화재를 당하는 가운데 1747년(영조 23년)에 와서는 1623년(인조 1년)에서 1721년(경종 1년)까지의 361책이 원형과 달리 개수되었다.

갑오경장 뒤 승정원은 관제의 변경에 따라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비서원, 규장각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졌고, 이에 따라 그 일기도 명칭이 바뀌면서 일제강점시까지 계속되었다.

본서는 광복35주년을 맞이한 1961년부터 원본의 초서를 해서(楷書)로 고쳐 쓰고 구두점을 거쳐 축쇄하여 그 영인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되었으며, 다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이를 번역 간행하였다. 이 자료는 전반부의 소실된 것을 다시 개수한 것을 저본으로 한 탓에 원본에 비해 양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록보다는 내용면에서 훨씬 풍부하다.

본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1882년(고종 19년) 4월 초7일조에 울릉도 검찰사이규원의 보고사항이다. 이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국왕과 정신(廷臣)간에 울릉도·독도 문제를 논의하는 사항이 들어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양태진>>

鵝溪遺稿(아계유고)

도서번호 : 독도 811.082 □433ㅎ

저 자 : 李山海

발행기관 : 민족문화추진회(영인본)

발행년도 : 1996년 (원본 1539~1609년)

구 성 : 6권 3책(韓國文集叢刊 240권 中 Vol.47)

鵝溪 李山海(1539-1609)의 詩文集인데, 「箕城錄詩自跋」 이외에는 序跋, 附錄 등이 전혀 없어 책이 만들어진 시기와 목적, 그리고 연유를 알아 볼 방법이 없다. 다만, 「箕城錄詩自跋」은 1594년(선조 27) 직접 지은 것으로, 이에 의하면 「箕城錄」 가운데 詩 2권

만은 저자가 自編한 것이 분명하다. 「箕城錄」은 임진왜란 이후 저자가 정치에서 실각하여 謫居하는 3년 동안의 시문으로서, 대체로 제작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전 2권은 詩이고 후 1권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鐘峴錄, 乞歸錄, 雙門錄, 街隱錄, 奉使錄, 東門錄, 南郭錄, 省墓錄, 北山錄, 鷗浦錄, 木市田錄, 鷗浦後錄, 壘上錄, 露梁錄 등 14錄은 모두 詩로, 저자의 생애에 특정한 시기를 구획하여 그 시기에 제작된 작품을 모아 놓은 것들이다. 그 중에서는 불과 1, 2수의 시를 수록한 데 그친 것도 있다. 추측하건대, 이 13록도 「箕城錄」의 시문을 編次한 후에 掇拾한 諸篇을 李山海가 시기별로 구획 編次한 것으로 짐작된다. 권5, 6에 수록된 疏筭, 序跋, 記, 誌銘, 祭文, 賦는 그가 죽은 후 자손들이 정리, 追錄한 것으로 보인다.

李山海의 字는 汝受, 호는 鵝溪終南睡翁竹皮翁, 諡는 文忠, 韓山人이고 漢陽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季父가 土亭 李之菡이 된다. 5세 때부터 土亭에게 글을 배웠는데 6세 때 이미 신동으로 지목되었다. 1558년(明宗 13) 進士試에 급제, 1561년 登第, 翌年 弘文正字를 拜했다. 明宗이 인견하고 敬福宮의 大額을 쓰게 했다. 藝文應教로 累遷, 湖堂賜暇를 받고 그 후 諸職을 歷叙하여 영의정에까지 올라갔다. 그는 새 관직에 옮길 때마다 그 맡은 일에 적합한 인재를 얻기에 晨夜思度하고 마땅한 인물을 얻으면 매우 기뻐하였다. 이리하여 幸執이나 親舊들의 乞官 私請하는 일이 없어져 仕路가 날로 밝아 갔다. 臺官 중에는 그의 정치의 잘못을 찾아보려는 자도 있었으나, 摘論 할 바가 없어 宣祖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고, 그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疎怨이나 異辭가 없었다. 1588년 盧守愼의 천거로 우의정이 되었고, 同年 光國勳에 參하여 鵝城府院君에 봉해졌다. 翌年 좌의정에 올랐다가 다시 영의정으로 승임되었다. 임진왜란 때 守成과 北關避難 兩論이 대두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을 시에 柳成龍과 더불어 西狩論을 고집, 宣祖는 결국 그 논에 따랐다. 蒙塵行次에 끼여 扈駕하며 개성에 도달하였는데, 수도 포기를 주창하였다는 죄목으로 兩司의 탄핵을 받아 柳成龍과 함께 파직되고 白衣로 扈駕하여 평양까지 갔다. 이후 兩司에서 다시 重律을 가할 것을 奏請하기에 이르러 宣祖는 그를 平海로 付處하였고, 3년 후 放還되어 領敦寧府事를 拜하고 大提學을 겸하였다. 宣祖 32년에 다시 영의정을 拜했으나, 翌年 다시 모함으로 파직되어 한양에서 卒하였다. 그의 저술도 적지 않았으나, 兵燹에 灰燼되어 본서는 그의 殘稿를 수습한 것에 불과하다.

疏筭는 대부분 乞退, 辭職에 관한 것이다. 「陣弊筭」 3편은 모두 3,000言에 달하는 장문으로, 募兵 募粟에 효율적인 방법, 屯田 煮鹽策, 인재 선발책 등을 개진하고 있

다. 序跋, 記文, 墓祭文 등은 「箕城錄」의 산문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짙다. 「箕城錄」 권3에는 「鬱陵島說」이 소개되어 있는데, 謫所인 平海에서 보고들은 울릉도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獨島 영유권에 대한 사료로서 귀중하게 여겨진다.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에 전재되어 있다. 《임영정》

藥泉集(약천집)

도서번호 : 독도 811.082 □433ㅎ

저 자 : 南九萬

발행기관 : 민족문화추진회(영인본)

발행년도 : 1996년 (원본 1723년)

구 성 : 국판 280책

약천 남구만(1692-1711)의 시문집으로, 원래 1723년(景宗 3)에 草稿詩 900여수에서 270수만을 뽑고, 文 1,400여 수에서 726수만을 뽑아 300여부를 刊印했던 것인데, 그것을 대본으로 하여 후에 필사한 것이다. 남구만은 同春堂 宋浚吉의 문인으로 1651년(孝宗 2) 司馬試를 거쳐 1656년 別試文科에 급제, 正言, 大司憲, 承旨, 전라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1674년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북방의 유학을 진흥시키고 변경 수비를 튼튼히 하였다. 계속해서 형조판서, 한성부 좌윤을 지내고, 서인으로 남인인 尹鑄, 許堅 등을 탄핵하다가 남해로 유배, 이듬해 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都承旨, 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1863년 병조판서가 되어 廢四郡의 復置를 주장하여 茂昌·慈城 등을 설치, 이때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으며 영의정까지 올랐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들이 득세하자 강릉에 유배되었다가, 甲戌獄事때 다시 영의정에 기용되었다. 1701년 禧嬪 張氏의 처벌에 대해 중형을 주장하는 김춘택 등 노론에 맞서 輕刑을 주장하다가, 숙종이 賜死하려고 하자 사직하고 낙향했다. 그 후 付處, 파직 등 파란을 겪었으나, 다시 絀用되었으며, 1707

년 致仕하고 奉朝賀가 되었다.

특히 南九萬의 정치역정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일은 그가 숙종 19년부터 숙종 22년 사이에 영의정으로 있을 때이다. 이 때 그가 일본 대마도 島主와의 사이에 울릉도 領有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울릉도를 저들의 수중에 넣으려던 야욕을 분쇄한 것은 큰 업적으로 꼽힌다. 본서의 書 가운데 유성은 영의정에게 보낸 서간이 있는데, 이를 통해 「鬱陵島 爭界」(일본의 이른 바 竹島一件)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약천집의 내용을 보면, 詩·疏劄·書啓(疏劄와 書啓에는 당시 정국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히 있음)·疏·啓·議(啓·議에는 당시의 제도에 관한 내용이 풍부함)·應製錄·墓誌銘·神道碑銘·墓地銘·墓表·行狀·言行錄·家乘·祭文·序·跋文·記·雜著·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의 정국과 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藥泉集 전체에서 「鬱陵島 爭界」에 관련한 기록은 앞에 지적한 書 한편에 불과하며, 울릉도에 관한 그의 정치적 역량은 『肅宗實錄』과 『備邊司謄錄』, 그리고 『承政院日記』의 해당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약천집의 원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의 영인본이 경인문화사 간행한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되어 있다. <<임영정>>

輿圖備志(여도비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78560

저 자 : 金正浩(編)

발행기관 : 韓國人文科學院(影印本)

발행년도 : 1991년(원본 1850~1863년)

구 성 : 3권(1권 472면, 2권 477면, 3권 473면)

『여도비지』는 20책으로 1책이 1권씩 20권으로 되어 있다. 『동여도지』에는 평안도

편이 빠져 있는 데 비해 『여도비지』에는 모두 갖추어져 있다. 『여도비지』의 편찬에는 최성환의 물심양면에 걸친 후원이 있었다. 김정호가 『청구도』를 완성한 후 계속 보완해 온 『동여도지』의 보완 부분을 정서(整書)한 지지이기도 하다. 이 지지의 편찬 시기는 철종 2년(1851)부터 철종 7년(1856)까지의 6년 사이에 편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도비지』는 『동여도지』를 저본으로 김정호의 보완 내용을 정서한 것이므로 6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도비지』는 경도 및 팔도에 관한 지리지인데, 최성환이 휘집(彙集)하고 김정호가 도편(圖編)하였다. 총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책이 결본이고 현재는 15책만 국립도서관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여도비지』의 편목은 『동여도지』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도의 첫머리에 도세를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첨부하여 소개하고 있다. 즉, 각 도의 건치 연혁·순영(巡營)·진관(鎭管)·병영·방영(防營)·호구·전부(田賦)·강역표·극고표(極高表)·방위표·군전적표(軍田籍表)·도리표(道里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여도지』 42개 문목보다 훨씬 적은 12개 문목이지만 내용은 훨씬 풍부하고, 또 12개의 문목이 모두 철저하게 지도 제작에 필요하도록 작성된 점이 특이하다. 이 중에도 강역표·극고표·방위표·도리표 등은 전적으로 지도 제작을 위하여 작성된 항목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도 김정호는 이 『여도비지』를 『동여도』의 시방서로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주현의 편목은 건치 연혁·궁실·방면·고읍·산천·형승·풍속·토산·제언·창고·장시·성지·전략·역도·영로·교량·진도·원점·사전·재용·목장·봉수 등 20여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도의 서두에서 도내의 호구·전부·강역·극고·방위·양전·도리 등을 도표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여도비지』의 편목은 『동여도지』의 편목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다만 지도 제작을 위한 시방서로서 좀더 치밀하게 편찬되었다는 점을 차이로 들 수 있다.

또 『여도비지』에서는 『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한 항목으로 묶었다. 건치항에는 연혁·읍호·관원·방면을, 산천항에는 산류·수류·도서·형승을, 식화항(食貨項)에는 토산·수리·재용·창고·장시를, 무비항에는 성지·고성·영아·진보·고수·전략을, 도리항에는 역도·영로·진도·원점을, 사전항에는 단유·묘전·사원·서원 등을 통합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물·풍속항 등 지도 제

작에 불필요한 항목들은 생략하였다. 이렇게 유사 항목들을 한 항목으로 묶은 것은 최성환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성환은 여러 종류의 책을 편찬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편찬 체재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도비지』와 『동여도』 및 『대동여지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방면(坊面)·고읍(古邑)·산천(山川)·도서(島嶼)·창고(倉庫)·성지(城池)·고성(古城)·진보(鎭堡)·역도(驛道)·영로(嶺路)·진도(津渡)·원점(院店)·사원(祀院) 등이 『여도비지』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둘째, 『여도비지』 권1 동반부서(東班府署) 관상감(觀象監)조에 실려 있는 팔도 순영(巡營)의 북극고(北極高)를 정한 내용과 『동여도』 13규(糾) 여백란에 표기되어 있는 북극고 산정 내용이 똑같다.

셋째, 『대동여지도』 2규 여백란에 수록되어 있는 팔도의 주현수·대소영수·진보수·산성수·봉수수·역참수·방면수·전부수·민호수·인구수·군총수·목장수·창고수·곡총수가 『여도비지』 각 도의 도세를 총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통계표와 일치한다. <이상태>

읍誌(읍지)

도서번호 : 독도 915.51 ㅎ174

발행기관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발행년도 : 1982-1986년 (원본은 18-19세기)

구 성 : 총 20책

한국지리지총서 시리즈로 발간된 지리지 중 도별 읍지의 영인본 20책이다. 한국지리지총서(韓國地理志叢書)는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 읍지(邑誌), 지방지(地方志)의 세 유형별로 나누어 원본을 축소하여 영인하였다. 3권으로 구성된 전국지리지는 제1권에 『삼국사기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를, 제2권에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제3책에 『東國輿地志』 등 고려~조선 중기의 전국지리지(地理志)를 수록하였다.

읍지(邑誌)는 조선시대의 8도를 기준으로 각 도별로 공시성(共時性)이 뛰어나 지역사나 향토사 연구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도지(道誌)를 선별해 모았다. 도지는 도내 각 군현의 읍지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고종대에 편찬된 1871~1872년 도지와 1895년 도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경상도는 1832년, 충청도는 영조~헌종대, 경기도는 1842~1843년, 강원도는 1829~1831년의 도별읍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누락된 지역은 개별 군현읍지를 보완, 수록했다. 각 도별 구성은, 경상도(慶尙道) 4책(3,880면), 전라도·제주도(全羅道·濟州道) 3책(2,092면), 충청도(忠淸道) 3책(2,100면), 경기도(京畿道) 2책(1,764면), 황해도(黃海道) 1책(426면), 평안도(平安道) 4책(2,970면), 함경도(咸鏡道) 1책(720면), 강원도(江原道) 2책(1,124면)으로 되어 있다.

영인본에 수록된 원본 읍지의 제목과 책수, 편찬시기, 읍지에 포함된 군현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읍지(邑誌) 一 경상도(慶尙道) ① :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20책 · 1832년경
 大丘 · 慶州 · 安東 · 晉州 · 星州 · 靑松 · 東萊 · 昌原 · 尙州 · 咸陽 · 永川 · 金山 · 義城 · 盈德 · 固城 · 善山 · 仁同 · 漆谷 · 河東 · 蔚山 · 金海 · 寧海 · 密陽 · 巨濟 · 居昌 · 淸道 · 草溪 · 慶山 · 南海 · 順興 · 開寧 · 禮安 · 迎日 · 長鬐 · 靈山 · 醴泉 · 榮川 · 興海 · 豐基 · 梁山 · 咸安 · 昆陽 · 陝川 · 慈仁 · 英陽 · 漆原 · 聞慶 · 安義 · 鎭海 · 眞寶 · 咸昌 · 知禮 · 高靈 · 玄風 · 山淸 · 丹城 · 軍威 · 義興 · 新寧 · 昌寧 · 泗川 · 機張 · 三嘉 · 比安 · 熊川 · 宜寧 · 河陽 · 龍宮 · 奉化 · 靑河 · 彦陽

읍지(邑誌) 二 경상도(慶尙道) ② : 『영남읍지(嶺南邑誌)』 34책 · 1895년경
 安義(附事例) · 大邱(附事例) · 漆谷(附事例) · 淸河(附事例) · 興海(附事例) · 陝川(附事例) · 三嘉(附事例) · 金山(附事例) · 梁山(附事例) · 淸道(附事例) · 密陽(附事例) · 尙州(附事例) · 宜寧(附事例) · 蔚山(附事例) · 靈山(附事例) · 醴泉(附事例) · 順興(附事例) · 豐基(附事例) · 仁同(附事例) · 慈仁(附事例) · 善山(附事例) · 金海(附事例) · 山淸(附事例) · 昌

寧(附事例) · 新寧(附事例) · 高靈(附事例) · 昌原(附事例) · 彦陽(附事例)

읍지(邑誌) 三 경상도(慶尙道) ③ : 『영남읍지(嶺南邑誌)』 34책 · 1895년경
 安東(附事例) · 星州(附事例) · 東萊(附事例) · 聞慶(附事例) · 龍宮(附事例) · 咸昌(附事例) · 咸陽(附事例) · 河東(附事例) · 玄風(附事例) · 靑松(附事例) · 眞寶(附事例) · 寧海(附事例) · 榮川(附事例) · 巨濟(附事例) · 南海(附事例) · 熊川(附事例) · 慶山(附事例) · 永川(附事例) · 義興(附事例) · 義城(附事例) · 軍威(附事例) · 比安(附事例) · 草溪(附事例) · 咸安(附事例) · 晉州上 · 晉州下(附事例) · 漆原(附事例) · 固城(附事例) · 河陽(附事例) · 泗川(附事例) · 昆陽(附事例) · 盈德(附事例) · 禮安(附事例) · 英陽(附事例) · 奉化(附事例) · 開寧(附事例) · 丹城(附事例) · 知禮 · 居昌(附事例)

읍지(邑誌) 二十 경상도(慶尙道) ④ : 『영남읍지(嶺南邑誌)』 17책 · 1871년
 慶州(附事例) · 安東 · 陝川 · 金山 · 固城 · 南海 · 開寧 · 密陽 · 仁同(附事例) · 靑松 · 東萊(釜山鎮事例) · 多大鎮事例 · 西平鎮事例 · 金井鎮事例 · 漆谷(架山鎮誌) · 省峴驛誌 · 黃山驛誌 · 沙斤驛誌 · 召村驛誌(附事例) · 白知道 · 松羅驛誌 · 昌樂驛誌(附事例) · 宜寧 · 鎮海 · 咸昌 · 知禮 · 高靈 · 山淸(附事例) · 大邱 · 蔚山 · 寧海 · 盈德 · 義城 · 慶山 · 河陽(附事例) · 龍宮(附事例) · 奉化(附事例) · 丹城(附事例) · 泗川(附事例) · 三嘉(附事例) · 熊川(附事例) · 漆原 · 聞慶 · 安義(附事例) · 昌寧 · 機張 · 比安 · 慈仁 · 英陽 · 新寧 · 禮安 · 迎日 · 長鬢(附事例) · 靈山 · 草溪 · 咸陽 · 咸安 · 昆陽 · 安奇驛誌 · 幽谷驛誌(時行事例) · 長水驛誌 · 金泉驛誌 · 晉州一(牧場誌事例) · 蔚山牧場誌(附事例) · 釜山鎮誌(附事例) · 多大鎮誌 · 清河 · 彦陽 · 眞寶 · 玄風 · 軍威 · 義興 · 禮泉 · 榮川 · 興海 · 豐基 · 梁山(附事例) · 順興(附事例) - 驛誌(附事例) · 淸道(附事例) · 永川 · 晉州二

읍지(邑誌) 四 전라도(全羅道) ① : 『호남읍지(湖南邑誌)』 11책 · 1872년경
 羅州(智島鎮誌) · 長城(靑巖驛誌, 笠巖山城鎮誌) · 井邑, 玉果 · 昌平 · 同福 · 和順 · 綾州 · 南平 · 康津(兵營營誌), 南原(契樹驛誌) · 任實 · 谷城 · 求禮 · 光陽(蟾鎮誌), 全州(威鳳鎮事例, 南固鎮事例, 參禮驛誌) · 錦山(濟原驛誌) · 珍山 · 高山 · 礪山 · 益山 · 龍安, 興德 · 高敞 · 靈光(荏子鎮誌, 多慶鎮誌) · 茂長, 扶安(蝸島鎮誌, 黔毛浦鎮誌) · 古阜, 光州(景陽驛誌) · 潭陽 · 淳昌, 順天(湖左水營誌, 前營鎮誌, 曲華牧誌, 古突山鎮誌, 防踏鎮

誌) · 樂安 · 興陽(蛇島鎮誌, 呂島鎮誌, 鹿島鎮誌, 鉢浦鎮誌), 長興(碧沙道屬十驛誌, 會寧鎮誌) · 寶城 · 茂朱 · 鎮安 · 龍潭 · 長水 · 雲峰, 咸平(臨淄鎮誌) · 務安(木浦鎮誌) · 靈巖 · 海南 · 珍島, 咸悅 · 沃溝(群山鎮誌) · 萬頃(古群山鎮誌) · 金堤 · 金溝 · 泰仁

읍지(邑誌) 五 전라도(全羅道) ② : 『湖南邑誌』 18책 : 1895년경

靈巖(事例), 泰仁(事例) · 玉果 · 長興 · 綾州(事例), 益山 · 錦山(事例) · 同福(事例) · 求禮(事例) · 珍山(事例), 康津(事例) · 海南(事例), 長水(事例) · 龍潭 · 興德 · 井邑(事例) · 和順 · 谷城(事例), 扶安 · 咸悅 · 龍安 · 古阜(事例), 高敞(事例) · 淳昌, 光州(事例) · 羅州(事例) · 順天(事例) · 樂安, 南平(事例) · 雲峰(事例) · 潭陽(事例), 濟州(事例) · 大靜 · 旌義, 金堤(事例) · 臨陂(事例) · 萬頃(事例) · 礪山 · 高山(事例), 羅州(重 · 事例) · 興陽(重 · 事例) · 順天(重 · 事例) · 珍島(重 · 事例), 昌平 · 咸平(事例) · 任實 · 靈光 · 綾州(事例), 完山, 寶城 · 金溝 · 海南(重) · 務安(事例), 南原(事例) · 茂朱(事例) · 沃溝(事例), 光陽 · 興陽(重 · 事例) · 鎮安 · 谷城(重) · 茂長(事例), 長城(事例)

읍지(邑誌) 六 제주도(濟州道) :

『탐라지(耽羅誌)』 濟州牧 · 大靜縣 · 旌義縣

『제주읍지(濟州邑誌)』 濟州牧 · 大靜縣 · 旌義縣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牧 · 大靜縣 · 旌義縣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대정군읍지(大靜郡邑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읍지(邑誌) 七 충청도(忠淸道) ① :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51책:英祖~憲宗)
忠州 · 淸風 · 槐山 · 延豐 · 陰城 · 永春 · 堤川 · 淸州 · 天安 · 沃川 · 文義 · 稷山 · 木川 · 懷仁 · 淸安 · 鎮川 · 報恩 · 永同 · 黃澗 · 靑山 · 公州 · 林川 · 韓山 · 全義 · 定山 · 懷德 · 鎮岑 · 連山 · 尼城(魯城) · 扶餘 · 石城 · 燕岐 · 洪州 · 舒川 · 瑞山 · 泰安 · 沔川 · 溫陽 · 平薪鎮 · 鴻山 · 德山 · 靑陽 · 庇仁 · 藍浦 · 結城 · 保寧 · 牙州 · 新昌 · 禮山 · 海美 · 唐津

읍지(邑誌) 八 충청도(忠淸道) ② : 『호서읍지(湖西邑誌)』 (17책 · 1871년)

公州·牙山·忠州(連原驛)·林川·文義·堤川·永春·延豐·新昌·唐津·禮山·結城·藍浦·瑞山(平新鎮)·沃川·黃澗·靑山·懷仁·槐山·報恩·陰城·淸安·鎭川·木川·淸州(兵營·栗峯驛)·洪州(金井驛)·海美·稷山(成歡驛)·淸風·天安·庇仁(馬梁鎭)·鴻山·扶餘·靑陽·定山·石城·泰安(安興鎭·所斤鎭)·溫陽·韓山·魯城(尼城)·恩津·懷德·連山·保寧(水營)·鎭岑(薪島鎭)·丹陽·舒川(長巖鎭)·大興·沔川·燕岐·全義·平澤

읍지(邑誌) 九 충청도(忠淸道) ③ : 『호서읍지(湖西邑誌)』 (7책·1895년)

德山(附事例)·海美(附事例)·沔川(附事例)·唐津·瑞山·泰安(附事例)·扶餘(附事例)·石城(附事例)·林川(附事例)·鴻山(附事例)·韓山·全義(附事例)·木川·天安(附事例)·稷山(附事例)·舒川·庇仁(附事例)·藍浦(附事例)·保寧(附事例)·結城(附事例)·平澤(附事例)·牙山·溫陽(附事例)·懷德·永同(附事例)·靑山·黃澗·魯城(附事例)·恩津(附事例)·連山(附事例)·鎭岑(附事例)

읍지(邑誌) 十 경기도(京畿道) ① :

『경기지지(京畿誌)』 (1842~43년, 34邑, 3책)

楊州·驪州·坡州·喬桐·長湍·富平·仁川·竹山·南陽·利川·通津·高陽·安山·加平·安城·麻田·金浦·陽智·抱川·積城·漣川·砥平·果川·陰竹·永宗鎭·楊根·朔寧·交河·永平·陽川·振威·龍仁·始興·陽城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

『경기읍지(京畿邑誌)』 (1871년, 35邑, 6책)

喬桐(事例)-(注文鎭誌(事例)·長峯鎭誌(事例))·永宗·金浦·陽川·富平·安山·加平·漣川·朔寧·麻田·積城·坡州·高陽·長湍(事例)·豐德(事例)·交河(事例)·楊州(事例)·抱川(事例)·永平(事例)·安城(事例)·龍仁(事例)·驪州(事例)·陽智(事例)·砥平·利川(事例)·通津(事例)·楊根(事例)·始興(事例)·仁川(事例)·果川(事例)·陽城(事例)·南原(事例)·竹山(事例)·振威(事例)·陰竹(事例)

『강화부지(江華府誌)』

『광주부지(廣州府誌)』

『기전읍지(畿甸邑誌)』 (1894~95년, 9邑, 3책) 楊根(事例)-(附永宗鎭(事例))·竹山(事

例) · 富平(事例) · 安山(事例) · 南陽(事例) · 始興(事例) · 高陽(事例) · 喬桐(事例)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開城 · 江華 · 水原 · 廣州

『기전영지(畿甸營誌)』 水原(事例)

읍지(邑誌) 十一 경기도(京畿道) ② :

『송도지(松都志)』 (1책 · 1648년)

『송도지(松都志)』 (3책 · 1792년)

『송도속지(松都續誌)』 (2책 · 1802년)

『중경지(中京誌)』 (6책 · 1855년경)

『강화신지(江華新志)』 (1책 · 1783년경)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 (6책 · 1862년이후)

읍지(邑誌) 十二 황해도(黃海道) : 『해서읍지(海西邑誌)』 (7책 · 1871년)

白川 · 延安 · 金川, 新溪(附事例) · 兎山(附事例) · 瑞興, 載寧(附事例)(長壽山城誌 · 鐵峴鎮誌) · 鳳山(蒜山鎮誌事例), 豊山(附事例)(許沙鎮誌事例 · 椒島鎮誌) · 松禾 · 長淵 · 殷栗(附事例) · 康翎(登山鎮) · 甕津(附事例) · 水營(附事例), 象山(附事例)(文城鎮誌事例) · 黃州(附事例) (兵營誌 · 中營誌 · 鐵島鎮誌事例) · 遂安(文山鎮誌 · 位羅鎮誌), 安岳(附事例) · 信川(附事例) · 文化 · 長連, 海州(附事例)(靑丹驛誌事例 · 首陽山城誌事例 · 龍媒鎮誌事例)

읍지(邑誌) 十三 함경도(咸鏡道) :

『북관읍지(北關邑誌)』 (1872년 · 5책)

咸山, 吉州 · 明川 · 鏡城(附事例) · 富寧 · 茂山, 洪原 · 北靑 · 利原 · 端川 · 長津 · 三水 · 甲山, 會寧 · 鐘城 · 穩城 · 慶源(附事例) · 慶興(附事例), 安邊 · 文川 · 高原 · 永興 · 定平

『관북읍지(關北邑誌)』 (1894년 · 7책)

永興(附事例) · 定平(附事例), 利原(附事例) · 洪原(附事例), 安邊(附事例) · 端川(附事例), 三水(附事例) · 甲山(附事例) · 長津(附事例), 北靑(附事例), 文川(附事例) · 高原(附事例), 德原(附事例) · 咸興事例

읍지(邑誌) 十四 평안도(平安道) ① : 『관서읍지(關西邑誌)』 (1871년 · 21책)
 宣川(附事例), 鐵山(附事例)(宣沙鎮誌及事例 · 西林鎮誌及事例), 龍岡 · 附事例, 平壤一,
 平壤二, 平壤續一(附事例), 平壤續二, 義州(龍灣)(附事例), 三和(附事例)(廣梁鎮誌及事例)

읍지(邑誌) 十五 평안도(平安道) ② : 『관서읍지(關西邑誌)』 (1871년 · 21책)
 甑山(附事例) · 肅川(附事例) · 安州(附事例)(老江鎮誌及事例) · 遼源誌(德川, 附事例), 价
 川 · 熙川 · 寧邊(附事例), 郭山 · 龍川(附事例) · 朔州(附事例) · 昌城, 雲山(委曲鎮) · 泰
 川 · 博川(高城鎮) · 嘉山(附事例) · 龜城(附事例)(安義鎮) · 定州(附事例), 中和(附事例)(城
 山鎮) · 祥原(附事例)(續祥原誌), 三登(附事例) · 江東(附事例), 江西(附事例) · 永柔(附事
 例), 陽德(附事例) · 成都(成川, 附事例) · 殷山(附事例), 順川(附事例)(龍淵誌) · 慈山(附
 事例)(慈母城鎮事例) · 順安(附事例) · 咸從, 碧潼(附事例) · 楚山(阿耳鎮 · 牛峴鎮 · 車嶺
 鎮) · 寧遠, 江界(附事例) · (神光鎮誌及事例 · 平南鎮 · 滿浦鎮誌及事例 · 高山里鎮誌及事
 例 · 代登鎮誌及事例) · 厚昌(附事例) · 慈城(附事例), 渭原(附事例)(吾老梁鎮誌及事例 · 靛
 洞堡鎮誌及事例 · 芻軒洞堡鎮誌及事例) · 孟山

읍지(邑誌) 十六 평안도(平安道) ③ : 『관서읍지(關西邑誌)』 (1895년 · 26책)
 雲山(附事例) · 孟山(附事例), 嘉山(附事例) · 寧遠(附事例) · 三登事例 · 甑山(附事例), 价
 川(附事例) · 順天(附事例) · 慈山(附事例)(慈母鎮誌及事例), 龍川(附事例) · 順安(附事例),
 咸從(附事例) · 博川(附事例) · 祥原(附事例), 安州事例 · 慈城(附事例) · 厚昌(附事例), 郭山
 (附事例) · 鐵山(附事例), 德川(附事例) · 熙川(附事例), 肅川(附事例) · 江西(附事例), 成
 川(附事例) · 泰川 · 江東(附事例), 碧潼(附事例)(碧潼鎮誌及事例 · 林土鎮誌及事例), 朔州
 (附事例)(天摩鎮事例 · 幕嶺鎮事例) · 龜城(附事例), 渭原(附事例) · 江界(附事例) · 伐登鎮
 誌及事例 · 高山鎮誌及事例 · 滿浦鎮誌及事例 · 平南鎮誌及事例 · 神光鎮誌及事例, 平壤
 (附事例) · 保山鎮事例

읍지(邑誌) 十七 평안도(平安道) ④ : 『관서읍지(關西邑誌)』 (1895년 · 26책)
 三和(附事例)(廣梁鎮事例), 宣川(附事例)(劔山鎮事例 · 東林鎮事例), 泰川(附事例), 定州
 (附事例), 寧邊(附事例), 楚山(附事例)(車嶺鎮誌及事例 · 牛峴鎮誌及事例 · 阿耳鎮事例),
 陽德(附事例), 殷山(同昌)事例, 永柔(附事例), 中和(附事例), 龍岡(附事例), 昌城(附事例)
 『관서진지(關西鎮誌)』 (1895년 · 2책)

薪島(附事例) · 宣沙鎮事例 · 吾老梁鎮事例, 西林鎮事例

『관서역지(關西驛誌)』(1895년 · 2책)

大同驛誌事例 · 魚川誌, 魚川驛誌(附事例)

읍지(邑誌) 十八 강원도(江原道) ① : 『관동지(關東誌)』(1829~1831년 · 15책)

監營誌 · 原州, 莊陵事蹟上, 莊陵事蹟下, 寧越 · 平昌 · 旌善, 橫城 · 洪川 · 狼川, 楊口 · 麟蹄 · 平康 · 鐵原 · 伊川 · 安峽, 淮陽 · 金城 · 金化, 三陟 · 平海 · 蔚珍, 江陵上, 江陵(臨瀛誌)下, 高城, 襄陽 · 杆城(水城) · 通川 · 歙谷, 關東誌總錄上, 關東誌總錄下

읍지(邑誌) 十九 강원도(江原道) ② : 『관동읍지(關東邑誌)』(1871년 · 7책)

三陟(附事例)(鎮營事例 · 平陵道驛事例) · 蔚珍 · 平海 · 杆城(水城)(附事例) · 高城(附事例) · 通川(附事例) · 鐵原(附事例) · 伊川(附事例) · 平康(三防鎮誌) · 安峽(附事例) · 原州(附事例) · 寧越(附事例) · 平昌(附事例) · 洪川(附事例) · 橫城(附事例) · 旌善 · 春川(附事例) · 金化(附事例) · 麟蹄(附事例) · 狼川 · 江陵(附事例) · 襄陽(附事例) · 歙谷(附事例) · 淮陽(附事例) · 楊口(附事例) · 金城(附事例)

이 가운데 읍지(邑誌) 十八 『관동지(關東誌)』(1829~1831년 · 15책)에 수록된 「삼척(三陟) 읍지 「고적」 조에는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즉 “바다 가운데 있다. 수로로 천리가 된다. 파도가 매우 험하다. 우릉(羽陵) 또는 우산(羽山)이라고도 한다. 사방 백리이다. 삼봉(三峯)은 매우 높고 험하며, 바다가 맑은 날에는 산의 형세를 볼 수 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하루밤낮이면 건너갈 수 있다. 고려 태조 때 우산국(于山國)에서 백길토(白吉土)를 시켜 지방의 산물을 바쳤다. 고려 의종 때에 명주도감창사(冥州道監倉使) 김유립(金柔立)을 보내 가서 살피게 하니, 동북쪽에 마을의 옛 터들이 있었으며, 석불과 석탑, 쇠종 등이 있었다. 조선 태종 때 유민들이 섬 가운데에 많다 하여, 안무사(安撫使)로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파견하여 40여호를 쇠환하게 했다. 세종대에 또 만호(萬戶) 남호(南瀨)를 보내 섬사람 김구생(金九生) 등 70여인을 사로잡고 그 땅을 비웠으며, 그 도망자의 죄수를 죽였다. 강희 11년 임자년에 영장(營將)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다시 수토하게 한 후, 지금까지 영장과 월송(越松) 만호(萬戶)가 3년 마다 가서 살핀다”고 하였다. 읍지(邑誌) 十九

강원도(江原道) 『관동읍지(關東邑誌)』(1871년·7책)에 수록된 「삼척(三陟)」 읍지에
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양보경》

日省錄(일성록)

도서번호 : 독도 951.5 ○985

저 자 : 奎章閣(朝鮮王朝)

발행기관 : 서울大學校圖書館(影印本)

발행년도 : 1982년 (원본 1760~1910)

구 성 : 86권 637책

조선왕조 정조때부터 한말까지 역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정조가 1760년(영조 36년) 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왕위에 오른 후에는 국내의 준재(俊才)를 발탁하여 규장각을 설치하고 모든 기록을 각신에게 대편(代編)시킬 때, 왕 스스로 필삭(筆削)을 가하였는가 하면 왕 자신의 언행도 기록하게 한 것이 본서이다.

본서의 서문을 쓴 이복원(李福源, 1719~1792)은 자가 수지(綏之)이며 호는 쌍계(雙溪), 시호(諡號)는 문간(文簡), 본관(本貫)은 연안(延安)으로, 판서 철보(喆輔)의 아들이다. 문벌(門閥)로 양구(楊口)현감을 지내다가 1754년(영조 30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대제학, 이조판서를 거쳐 1782년(정조 6년) 우의정에 임명되고 좌의정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든 자이다. 사문(詞文)에 특히 뛰어나 규장각을 신설할 때 제학(提學)으로 활약하였으며, 김익(金熲)과 함께 재상이 되어 소박한 선비생활에다 지행일치(知行一致)적 행동을 실천함에 유상(儒相)이라 호칭되는 인물이다.

본서의 1760년에서 1776년(정조 즉위)까지의 부분은 이후의 것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 편이나, 기록의 출초(出草)는 입직(入直) 검서(檢書)가 맡았으며 검서는 매일의 초본을 매 5일마다 정서(正書)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순조(純祖)때부터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같이 매월분을 다음 달 20일에 입게케 하였고, 누락이 있어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해 정월에 출납해 보유(補遺)하였다. 이렇게 입게된 초본은 군주의 재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모아져 권질(卷帙)을 이루었다. 체재(體裁)는 상략(詳略)의 차이는 있으나 전시기가 대체로 같다.

매사(每事)마다 요목을 세워 간결하게 기술하였으며, 각 기사의 첫머리에 그 내용을 요약한 표제를 붙여 열람에 편하도록 하였다.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간결한 기술을 위주로 하나 국왕의 분부 재가는 전문을 수록하였고, 다만 신하들의 주(奏), 계(啓) 등은 산초(刪抄)하여 실었다.

기사들이 수록되는 순서는 소경위선(所敬爲先) 『범례』라 하여 천문(天文), 제향(祭享), 임어(臨御), 소견(召見)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일성록은 1910년(융희 4년)에 이르기 까지 15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다. 총 2,375권으로 엮여졌는데 중복 또는 결본이 있다.

본서의 사료로서 다른 기록보다 우월함은 그것이 축일(逐日)로 쓰여 졌다는데 있다. 이러한 일성록은 필사본(28.8x18.5cm)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 153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본서 가운데 울릉도 및 독도 관련 중요기사는 조선조 말기인 고종 18년~19년간의 관련건으로, 1881년 고종 18년 6월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면서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왕래하면서 멋대로 벌목해 가는데 대해 검찰하라’하였고, 이듬해인 1882년(고종 19년) 5월에는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로의 출발일정과 여정에 대해 하문한 일을 비롯해 ‘울릉도 옆에 있는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 혹은 송도와 죽도라 부르는 섬들의 지리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한 기록이다. 같은 해 6월 5일조에 이규원이 임무를 마치고 귀경한 후 복명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국왕의 하문에 답하기를 ‘울릉도에 진(鎭)을 두든 읍(邑)을 두든 그 적지는 나리동(羅里洞)이며, 개척(開拓)을 할 경우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개척사업에는 백성들이 즐겨 따를 것이나 먼저 입주를 허락하고 모이는 수효를 보아가며 조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활한 일본인들이 이 땅에 송도라는 표말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일본당국에 항의하여야 한다고 함에 국왕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비록 편토(片土)의 땅이라도 버릴수 없 다라고 하였다.

이 해 7월 19일 국왕은 울릉도 개척을 결심하고 관계 대신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 지시에 따라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은 이 해 10월 1일 울릉도 개척에 관해 상주하기를 “우선 모민(募民)하여 개간하되 5년후부터 세(稅)를 걷는다면 취락(聚落)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영호남(嶺湖南) 등지에서 건조하는 조선(漕船)업을 울릉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인중(人叢)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일할 만한 자를 선발하여 도장(島長)으로 임명·파견해서,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도장(島長)으로 하여금 미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원도관찰사에게 지시하도록 아뢰었다.

이후 정부의 울릉도 개척이 확정됨에 따라 이 해 10월 앞서의 건의에 따라 도장(島長)을 임명하였다. 1883년(고종 20년) 4월에는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겸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事)에 임명되었고 이후 본토인의 입거(入居)가 시작된 것은 이 해 5월경부터이다.

1884년(고종 21년) 4월에는 삼척영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하여 관수(官守)가 입주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게 하는 한편, 그 배설(排設)에 관한 것은 강원도관찰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할 것과 관수(官守)의 직명을 울릉도첨사겸삼척영장으로 발령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상주는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였다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몇차례 관수(官守)제도에 변화가 있었고 1895년 1월에는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 이중하(李重夏)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의 수토(搜討), 선격(船格), 십물(什物)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울릉도의 수토(搜討)는 수토실시 시기를 1694년(숙종 25년)으로 볼때 무려 198년간 지속해 온 셈이다. 1895년 10월에는 내무대신 박영효의 건의에 따라 도장(島長)이 도감(島監)으로 바뀌고, 도감(島監)에 울릉도인(鬱陵島人) 배계주(裴季周)를 판임관(判任官) 대우로 하여 임명하였다. 여하튼 이후 울릉도 관련기사는 1896년(建陽 元年) 2월 울릉도 별목권이 러시아인에게 특허되기까지 계속해 언급되고 있다. 《양태진》

全羅南道誌(전라남도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ㅎ155ㅎ

저 자 : 羅燾佑(編)

발행기관 : 韓國人文科學院(影印本)

발행년도 : 1991년

구 성 : 4권(16권 557면, 17권 361면, 18권 331면, 19권 557면)

한국근대도지(韓國近代道誌) 제16-19권으로 영인된 전라남도지는 1926년에 나도우(羅燾佑)가 9책으로 편집 간행하였다. 그는 동국여지승람 편찬이후 300여년이 지났고, 그 동안 전라도는 남·북도로 나누어졌으며, 또 행정구역의 개편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라남도지를 편찬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개국 505년(1896)에 완도군(莞島郡), 돌산군(突山郡), 지도군(智島郡)이 증설되었고 광무 4년(1900)에는 여수군(麗水郡)이 신설되었다. 또 전라남도 소속이었던 무장(茂長), 고창(高敞), 흥덕(興德) 등의 군현이 전라북도로 이속되었으며, 북도 소속이던 구례군(求禮郡)이 전라남도로 내속하였던 것이다. 또 많은 군현들이 병합되었는데 옥과군(玉果郡)은 창평군(昌平郡)에 병합되었다가 창평군이 다시 담양군에 합쳐지자 분리되어 옥과군은 곡성군(谷城郡)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화순군은 능주군에, 낙안군은 둘로 나누어져 순천군 및 보성군에 합쳐지게 되며, 무안군은 목포부로 개칭되게 된다. 또 돌산군은 여수군에, 지도군은 무안군에 합쳐지며, 능주군과 동복군은 화순군에 병합되며, 남평군은 나주군에 합쳐지게 되고, 제주도의 정의, 대정현은 제주군에 합쳐져 제주도가 된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지의 편찬이 필요 불가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라남도지는 1부(一府), 29군(二十九三郡), 1도(一島)의 군현에 관한 지리지이다. 그러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롭게 편찬한 도지가 아니라, 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시대 편찬된 지리지를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지의 각 군현 편찬 항목을 살펴보면 건치연혁·지세산천·도청·관원·향교·학교·불우·도로·철로·면명·호구·경작지면적·형승·산천·제언·교량·토거성씨·토산·시장·풍속·고적·군명·역원·공해·성곽·폐부곡·창고·사찰·진공·단묘·사우·영당·누

정·명신·인물·생진·문과·무과·음사·가자·증직·재학·문행·충절·효행·효부 등이다. 이러한 편목은 동국여지승람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 지지도 사찬이기 때문에 사찬지지의 특징인 인물항이 특별히 강조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편찬된 다른 지지도도 그러하다

전라남도지는 9권 9책으로 편찬되었는데 제1권은 광주군, 담양군, 창평군, 남평군이며, 제2권은 나주군, 제3권은 장흥군, 강진군, 구례군, 낙안군, 제4권은 능주군, 함평군, 제5권은 화순군, 동복군, 곡성군, 옥과군, 진도군, 지도군, 제6권은 보성군, 영암군, 고흥군, 제7권은 장성군, 영광군, 제8권은 순천군, 광양군, 여수군, 돌산군, 제9권은 해남군, 무안군, 제주도, 완도군 등으로 편찬되어 있다. 《이상태》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도서번호 : 독도 951.5 7428z

저 자 : 春秋館(朝鮮王朝)

발행기관 : 國史編纂委員會(영인본)

발행년도 : 1970년 (원본 1413~1885년)

구 성 : 국배판 48책 및 색인 1책

본서는 조선조 태조에서 철종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470여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편찬기록한 내용이다. 정확하게 말해 총 1893권 888책, 25대 472년간의 관찬사서(官撰史書)이다.

본서는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전왕(前王) 사후(死後) 다음 왕이 즉위하면서 실록청을 개설하고 관련왕대의 제반 기록을 수집하여 편찬하였는데 사체(史體)는 각 왕을 중심으로 일자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실록을 편찬하기는 1413년(태종 13년)에 태조실록 15권을 편찬한 것을 비롯하여 1426년(세종 8년) 정종실록 6권을 편찬하였으며, 그 후 꾸준히 실록편찬 작업이 계속

되어 한말 高宗때 哲宗實錄편찬을 끝으로 완성되었다(고종실록과 純宗實錄은 일제시에 편찬되었다). 이 역대왕의 실록은 편찬된 후 2질을 만들어, 1질은 춘추관에, 1질은 忠州史庫에 보관해 왔다.

그러나 2질의 실록만으로는 안심이 안되어 1445년(세종 27년)에 다시 2질을 더 등사하여 전주(全州), 성주(星州)에 사고를 신설하여 각 1질씩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역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출판하여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대사고에 각각 1질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춘추관에 보관하였던 실록은 1624년(인조 2년) 이괄(李适)의 난 때 전부소실되어 완전히 없어지고 묘향산 실록은 1633년(인조 11년)에 만주에서 일어난 후금(後金:淸으로 개칭)과의 관계 악화로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赤裳山)으로 이전하고 마니산 실록은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크게 파손되어 낙질(落帙), 낙장(落張)된 것이 많아졌다.

그후 현종 때에 마니산 실록은 보수 되었으나, 춘추관 실록은 복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니산 실록은 1660년(현종 1년)에 같은 강화도내의 정족산성(鼎足山城) 안에 사고를 신설하고 1678년(숙종 4년)에 정족산 사고로 이전하였다.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 후 정족산 및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종친부(宗親府) 자리에 설치한 소위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로 옮기고 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이왕직 장서각에 옮겼으며,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동경제국대학으로 가져갔는데 1923년 관동대지진시에 불에 타버리고,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 규장각 도서와 함께 현 서울대학교로 옮겨졌다.

이리하여 광복 당시까지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이 서울대도서관에 남아있다가 정족산본은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에 수장되어 있다. 구왕궁(舊王宮) 장서각에 있던 적상산본은 이후 도난사건이 발생, 낙권이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6.25 동란당시 부산으로 소개하였으나 그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오늘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년부터 1958년까지 4개년동안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쇄 영인하여 국배판(菊倍版) 양장본 48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본서의 태종실록, 세종실록, 광해군일기, 숙종실록, 정조실록 등 왕대별에 울릉도 독도관련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 왕대별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종실록(太宗實錄)

1403년(태종 3년) 8월 병진(丙辰)조에 강원도에 속해 있는 무릉도(武陵島) 거주민들에게 내륙으로 나와 살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왜구의 노략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강원도 관찰사의 품계에 의한 것이다.

4년 후인 1407년(태종 7년) 3월에는 대마도주 종정무(宗貞茂)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 주청하기를 무릉도가 비어 있으니, 대마도에 거주민들을 대동하고 그 곳에 들어가 살도록 하여 달라고 했으나, 태종은 이에 대하여 거부하였음에, 이러한 기록은 당시 울릉도를 비워두고 있기는 하나, 변경지에 대한 영토의식은 분명하였고, 또한 대마도인들도 이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1412년(태종 12년) 4월 기사(己巳)조에는 강원도 관찰사의 보고를 인용하여 언급하기를, 유산국(流山國) 섬사람 12명이 고성(高城)의 어라진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릉도에서 나서 그곳에서 성장하였는데 그 곳 실정을 고하기를 섬에는 11호의 가옥에 주민 남녀 60여명이 살고 있었고 섬의 크기는 사방이 각 2식(息:30리를 단위로 한 거리)에 둘레는 8식이라고 하고 있다.

우마와 논은 없고 오직 콩이 20~30석과 보리 50여석이 나고 큰 대나무와 해물 과목 등이 난다고 하였다. 이들이 섬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가 염려하여 통주 고성 간성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1416년(태종 16년) 9월 경인(庚寅)조에는 전 강원관찰사로 있다가 호조판서가 된 박습(朴翊)이 무릉도의 실정을 아뢰니 왕은 삼척출신 전 만호(前萬戶)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등처 안무사(武陵等處 按撫使)로 임명하고 병선 2척에 소요되는 인원과 총기 및 식량을 제공, 그 섬에 들어가 거주민의 두목을 설득해 데려오도록 명하고 김인우에게 의복과 갓, 신발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김인우를 무릉등처의 안무사로 삼았다고 하는 등처(等處)라는 의미는 분명히 무릉도 한곳만이 아닌 두곳 이상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1417년(태종 17년) 2월 임술(壬戌)조에는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로부터 돌아와 그곳 토산물로 대죽, 물소, 가죽, 생저, 금자, 검박목 등을 임금께 바쳤고, 그곳 거주민 3명을 대동해 왔는데, “섬의 가구수는 15호에 주민은 남녀 합해 86명이다”라고 보고하였다.

2.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원년(1419년) 4월 을해(乙亥)조를 비롯하여 같은해 10·11월조, 동왕 18년

(1436) 윤6월조, 동19년 2월 무진조 등에는 울릉도(鬱陵島)에 거주하는 도민을 쇠환하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동왕 20년(1438) 4월 갑술(甲戌)조와 7월 무술(戊戌)조에는 전호군(前護軍) 남회(南薈)와 전부사직(前副司直) 조민(曹敏)이 무릉도 순심경차관(巡審敬差官)으로 임명, 도민을 쇠환하는 기록이 있으며, 아울러 세종 27년(1445) 8월 무오(戊午)조에는 동해중 요도(蓼島)가 있다고 전해온다고 하고 산의 형태가 다양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이 섬에 파견할 사람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리고 갑사(甲士) 최운저(崔雲渚)가 말하기를 요도는 삼척 봉화고개에서 바라다 본 적이 있으며 그 후 무릉도에 갔을 때도 바라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남회 또한 동산현(洞山縣) 정상에서 바다 가운데 산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관리들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이 산은 예로부터 있는 것이라 함에 관리들로 하여금 종일 살펴본 결과 구름이 아닌 실제의 산 형태였다 라고 하는데 이 말대로라면 필시 해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은 작고 파도는 높아서 해안에서는 상세히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때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는데, 넓이가 1백리이며 섬사람들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항복하지 아니하므로, 신라 지증왕 12년에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이르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미련하고 사나와 위력으로는 항복시키기 어려우니 계교로 항복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나무를 깎아 맹수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닿아 속여 고하되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들을 풀어놓겠다고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겁내어 항복하여 왔다.

고려 태조 13년에 그 섬사람들이 백길과 토두를 시켜 특산물을 바쳤다. 의종 13년에는 심찰사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와 고하기를 섬 중에 큰 산이 있는데 산 정상으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1만여보이며, 서쪽으로는 1만 3천7보이고 간혹 돌부처, 쇠종, 돌탑이 있으며 시호(柴胡), 석남초 등이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 태조 때 떠돌이 백성들 중 그 섬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함을 듣고 다시 삼척인 김인우에게 명하여 안무사를 삼아서 사람들을 내몰고 그 땅을 비우게 하였다. 김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의 크기는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뒷박보다 크며 모든 물건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을 통해 주목되는 점은 동해 바다에 두 개의 섬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우산도와 무릉도의 크기 비교와 육지와와의 거리 등에 관해 확연한 지리적 인식이 결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상의 애매성은 이후에 제작된 지도상에 표기된 두 섬의 위치나 크기에 반증되고 있는데, 이는 고지도 제작상의 제약성에 따른 것으로 이 두개의 섬이 조선의 땅이라는 영토의식은 확고 불변하였다.

4. 成宗實錄(성종실록)

성종 원년(1470년) 12월 갑신(甲申)조에는 영안도 관찰사 이계손(李繼孫)에게 하서(下書)하여 삼봉도(三峰島)에 들어간 자들은 부역을 피하여 도망해서 나라를 배반한 자들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니 탐문해서 품계하기 바란다는 기사가 있다. 또한 성종 2년(1471) 8월 정사(丁巳)조에는 강원도관찰사 성순조(成順祖)에게 말하여 ‘영안도 거주민이 무릉도에 몰래 들어간 자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그들을 생포해 오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 3년(1472) 3월 임인(壬寅)조에는 왕이 일컫기를 “국토를 넓히고 백성을 늘이는 것은 국정수행상 최우위에 두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삼봉도는 강원도 관할지로 토지가 비옥하고 적지않은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거주한 바 있다하니 수탐케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 즉,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주케 할 것인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닷길이 험하여 토지를 활용한다 하여도 이익이 없어 방치함만 못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아뢰라”고 한 기사가 있으며, 다음달 4월 정묘(丁卯)조에는 삼봉도경차관 박종원(朴宗元)을 국왕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삼봉도는 바다 가운데 있어 내왕하기가 매우 불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부역을 피해 간 자들이 있어 쇠환해 오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이제 경을 그곳으로 파견하고자 하는데 경(卿)의 계책은 어떠한가?”함에 대답하기를 “신이 그곳에 나타나면 그들이 모두 도망하려 할 것이므로 먼저 정박되어 있는 배를 먼저 모

두 빼앗아 고립시키고, 명을 거역하는 자는 군벌으로 다스리도록 하며, 여타는 상황에 따라 적의 조치할 것입니다”하니, “경의 생각이 나의 뜻과 부합되니 그대로 행하라”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삼봉도는 우리의 영토로 그 곳에 부역과 조세를 피하여 도망해간 자들이 몰래 거주하고 있다. 명하노니 이들을 쇠환해 오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계기로 동해의 삼봉도를 찾는 일이 계속되어 성종 7년(1476)까지 계속되었다.

5. 光海君日記(광해군일기)

광해군 일기에는 광해군 6년(1614년) 9월 신해조에 비변사의 품계가 울릉도에 왜구의 왕래를 금지하고자 하는 뜻이 전일 예조의 서계속에 들어 있었음을 밝히고, “대마도의 왜가 울릉도에 또 다시 거주할 욕심으로 서계를 보낸것은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함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고 특산물을 거두어들이고 도민(島民)을 쇠환한 것이 서책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관해 회답서계(回答書契)에 낱낱이 기재하고 저들의 간교한 계책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두 번 다시 그 같은 계책을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감사와 부산의 지방 관아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긴 공문을 이첩하여 대마도주로 하여금 일본인들의 내거(來去)를 금지케 한 약조를 준수하도록 유시하는 것이 어떠할런지요”라고 아뢰니 왕이 이에 따랐다는 것이다.

대마도가 울릉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6. 肅宗實錄(숙종실록)

숙종실록에는 숙종 20년(1694년) 2월 신묘조로부터 안용복사건의 전말이 소개된다. 즉, 1693년(계유년) 봄 울산 어부 40여명이 배편으로 울릉도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왜선도 이곳에 머물고 있다가 이 곳에 출어하고 있던 박어둔(朴於屯) 안용복(安龍福) 두 사람을 꺾어 붙잡아갔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안용복·박어둔이 일본어부를 쫓아가다가 일본 땅에 이르렀고, 막부에까지 항의하고 대마도를 거쳐 귀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대마도주는 울릉도를 자기들의 영토화하고자 조선에 보낸 서계에서 ‘竹島에 앞으로 조선 어부들이 오지 않게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죽도가 울릉도인줄 알면서 명칭을 바꿔 부르자는 교활한 계책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죽도에는 가지 않지만, 울릉도는 엄연히 우리 영토인 것

을 알아줘야 된다'는 답서를 보냈었다. 대마도주는 이 울릉도라는 명칭이 답서에 들어있는 것을 빼달라고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이것이 이른 바, 「울릉도 爭界」 즉, 일본측에서 일컫는 「竹島 一件」인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마도주와 조선정부사이에 수십차례에 걸친 문서 왕복이 있었고, 한때 험악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덕천막부(德川幕府)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해결되었지만, 그 전말이 바로 숙종 19년부터 23년에 걸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정부는 울릉도에 3년에 1차 수토(搜討)할 것을 결정하고, 그 첫 번째로 삼척영장(三陟營將) 장한상(張漢相)이 파견되었다. 그는 수토 후,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장한상 일기이다. 장한상의 보고서는 본 실록에 없으나, 그후 3년마다 수토제는 한말까지 시행되었다.

7. 正祖實錄(정조실록)

정조실록(正祖實錄)에는 정조 18년(1794) 6월 무오조에 강원도관찰사 심지현이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울릉도 수토(搜討)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변방 장수들로 하여금 번갈아 시행하는것이 정례화 되어 있어, 금년 수토관인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공문을 보내 지시하였다는 보고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양태진>>

朝鮮湖南誌(조선후남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ㅎ155ㅎ

저 자 : 미상

발행기관 : 韓國人文科學院(影印本)

발행년도 : 1991년 (원본 1933~1935년)

구 성 : 2권(20권 514면, 21권 651면)

한국근대도지(韓國近代道誌) 제20-21권으로 영인되었다. 전라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도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실록지리지의 전라도편과 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편이 있고, 영조때 편찬된 여지도서의 전라도편이 있다. 여지도서의 전라도편은 전주를 비롯하여 결본된 군현지가 많다. 그 후 고종때 편찬된 1871년의 호남읍지 2책, 1895년에 15책 등 6종의 도지가 있다. 조선호남지는 1933-1935사이에 7책으로 편찬되었다. 이외에도 사찬읍지는 1618년의 승평지(昇平誌), 1699년의 용성지(龍城誌), 탐라지(耽羅誌), 1756년의 금마지(金馬誌), 1758년의 흥양지(興陽誌), 1760년의 옥천지(玉川誌), 1800년의 봉성지(鳳城誌), 1852년의 금산군지(錦山郡誌), 1855년의 동복지(同福誌), 1800년의 영주지(瀛州誌) 등이 있다.

조선호남지란 명칭은 전라도가 ‘전광도(全光道)’ 또는 ‘전라도’로 시기에 따라 다르게 호칭되었으며 또 좌·우도, 남·북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울러 부를 수 있는 조선호남지라고 명명한 것이다. 특히 고종시대 세 차례 편찬된 지리지가 모두 호남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들과도 구분시키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칭호를 더하게 되었다.

조선호남지에는 건양 원년(1896)에 완도, 돌산, 지도의 3개 군이 증설된 내용과 광무 원년(1897)에 여수군이 신설된 내용, 그리고 광무 10년(1906)에 북도의 구례군이 남도에 속하게 되고, 남도의 무장·흥덕·고창 등이 북도에 속하게 되며, 또 옥구·무안 2개 군이 부로 개칭된 내용을 담고 있다.

1914년에는 60개 군현 중 25개 군현이 폐지되고 35군 2부 1도도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편찬하였다.

조선호남지의 편목을 살펴보면 건치연혁·관원·성씨·풍속·형승·산천·성곽·방리·도로·철도·역원·단묘·관사·창고·시장·제언·교량·사찰·고적·물산·진공·군액·군기·지적·결액·호액·인구 등으로 짜여 있다. 이 편목은 조선시대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지 편목과 거의 일치하지만, 물산·진공·군액·군기·지적·결액·호액·인구·시장 등 경제적인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조선호남지가 호액, 인구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실들을 조선시대 편찬된 도지와 군현지를 참고하여 편찬했기 때문이다.

제1권에 편찬된 군현은 전주, 광주, 남원, 나주, 김제, 익산, 금산, 정읍, 옥구, 영암, 영광, 함평, 고창, 담양, 순창, 임실, 무주, 곡성, 진안, 장수, 순천, 부안, 여수, 보성, 광양, 구례, 고흥, 화순, 장성, 무안,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제주 등

35군 1도(島)이다.

제2권은 향교, 학교, 원우, 정여, 누정, 생진 등의 항목이고,

제3권은 문과, 무과, 상신, 문형, 호당, 남대, 계방, 청백리, 유일, 음사 등이며,

제4권은 수직, 증직, 유현, 유림, 학행, 행의, 문장, 서화 등이고,

제5권은 효행, 충의, 공신, 열행, 진흙, 명묘 등의 항목이며,

제6권과 제 7권은 장계문(狀碣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편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인물에 관한 사항으로 짜여있다. 이는 이 시기에 편찬된 도지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조선호남지는 1933-35년 사이에 윤종림이 동국여지승람 체제를 본 따 고종시대 편찬한 호남지에 일제시대의 호남사정을 첨가하여 편찬한 도지(道誌)이다. 《이상태》

朝鮮寰輿勝覽(조선환여승람)

도서번호 : 독도 915.1 ㅎ155자

저 자 : 이병연 (편)

발행기관 : 보문사

발행년도 : 1990년 (원본 1922~1937년)

구 성 : 16권

1936년 이병연(李秉延)이 편집하고, 안병태(安秉台)가 교열 발행한 전국 각 군 읍지의 영인본으로 제1권(충청도 1: 554면), 제2권(충청도 2: 544면), 제3권(충청도 3: 380면), 제4권(경상도 1: 504면), 제5권(경상도 2: 590면), 제6권(경상도 3: 452면), 제7권(경상도 4: 420면), 제8권(전라도 1: 594면), 제9권(전라도 2: 446면), 제10권(전라도 3: 584면), 제11권(전라도 4: 622면), 제12권(전라도 5: 602면), 제13권(강원도: 586면), 제14권(황해도: 402면), 제15권(함경도 1: 350면), 제16권(함경도 2: 38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2~37년 공주의 보문사(普文社)에서 간행하였는데 129개 군 가운데 26개 군의 내용만 발간, 보급되고, 나머지 103개 군의 것은 일제의 감시와 재정난으로 미결책(未結冊) 상태로 보관되어 온 것을 1980년대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장책해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군지」처럼 뒤에 속(續)이나 보유(補遺)를 첨부해 보완한 읍지도 있는데, 이들은 1958년에 석인본(石印本)으로 간행되어 광복 후에도 편자 이병연이 이 책의 보완에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위산인 윤용구(尹用求)와 규장각 학사 민경호(閔京鎬)의 서문이 있고 전임 내장원경(內藏院卿) 김윤환(金閏煥)과 이병연의 발문이 있다. 또한 경상도 함안군지 뒤에 안정려(安鼎呂), 청도군지 뒤에 예대희(芮大禧), 전라도 남평군지 뒤에 홍찬희(洪纘熹)와 정도홍(鄭燾洪), 광산군지 뒤에 현준호(玄俊鎬), 부안군지 뒤에 최재홍(崔在洪), 강원도 정선군지 뒤에는 송병훈(宋秉薰), 강릉군지 뒤에 정채화(鄭棗和), 평안도 삭주군지 뒤에 이홍린(李鴻麟), 함경도 함주군지 뒤에 김주성(金周聲)의 발문이 별도로 실려 있어 각 지역에서 도움을 주었던 인사들을 파악할 수 있다. 윤용구의 서문에 의하면 친적 조카인 이병연이 수삼(數三) 동지와 함께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 발문들을 통해 박태선(朴泰善), 이시준(李時俊) 등이 이 책의 편찬에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영인본 각 권에 수록된 군현읍지는 경기도 1군, 충청도 19군, 경상도 28군, 전라도 35군, 강원도 8군, 황해도 6군, 평안도 2군, 함경도 12군으로 총 111개 군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양주군은 충청도편에, 평안도 평원군은 황해도편에, 삭주군은 함경도편에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와 평안도 각 군 읍지의 편찬이 매우 부진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책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권 : 충청도 1 - 보령군, 서천군, 공주군, 부여군, 당진군, 양주군
- 제 2권 : 충청도 2 - 대전군, 연기군, 논산군, 청양군, 홍성군, 천안군, 예산군, 아산군
- 제 3권 : 충청도 3 - 충주군, 괴산군, 진천군, 영동군, 청주군, 음성군
- 제 4권 : 경상도 1 - 김해군, 창원군, 하동군, 固城郡, 통영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 제 5권 : 경상도 2 - 동래군, 울산군, 기장군, 양산군, 진주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 제 6권 : 경상도 3 - 김천군, 선산군, 안동군, 상주군, 문경군
 제 7권 : 경상도 4 -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의성군
 제 8권 : 전라도 1 - 남원군, 임실군, 순창군, 순천군, 낙안, 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제 9권 : 전라도 2 - 화순군, 함평군, 고흥군, 영암군
 제10권 : 전라도 3 - 광양군, 여수군, 돌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장수군
 제11권 : 전라도 4 - 나주군, 남평, 무안군, 광산군, 해남군, 완도군, 제주도, 영광군
 제12권 : 전라도 5 - 장수군, 전주군, 김제군, 부안군, 정읍군, 고창군, 금산군
 제13권 : 강원도 - 원주군, 삼척군, 춘천군, 정선군, 울진군, 강릉군, 高城郡, 평창군
 제14권 : 황해도 - 금천군, 평산군, 송화군, 은율군, 해주군, 연백군, 평원군
 제15권 : 함경도 1 - 삭주군, 부령군, 회령군, 성진군, 경성군, 명천군
 제16권 : 함경도 2 - 함주군, 홍원군, 안변군, 덕원군, 단천군, 정평군, 영흥군

책머리에는 「총목록」이 있다. 이어서 조선 전체의 지리를 설명한 「조선지리총설」과, 각 도의 전체 모습과 지리를 설명한 「각도지리총설」이 있다. 「조선지리총설」은 조선명의(朝鮮名義), 조선위치, 조선경계, 조선광무(朝鮮廣袤: 附山野, 畚, 田, 火田, 면적, 인구), 조선연혁, 조선인종, 조선방언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조선의 자연과 인문현상 전체를 개괄하였다. 「각도지리총설」에는 해당 도의 위치 및 경계, 연혁(沿革), 산악, 하류(河流), 해만(海灣) 및 도서가 기록되어 있다.

각 군 읍지는 크게 [지리부(地理部)]와 [인물부(人物部)]로 나누어지고, [지리부]는 ‘지지편(地誌篇)’내에 군사표(郡四標), 건치연혁(建置沿革), 신구속현(新舊屬縣), 군명, 산천, 군세(郡勢), 토산(土産), 기차역, 명소(附名勝), 교량, 형승, 고적, 교궁(校宮), 궁전, 「학교」, 원사(院祠, 附壇社 壇廟), 사찰(寺刹), 부조묘(不祧廟), 비전(碑殿, 附豎碑), 정려(旌閭), 능원(陵園), 석총(碩塚, 正卿 以上), 명묘(名墓), 누정, 제영(題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부]는 ‘도학편(道學篇)’, ‘덕업편(德業篇)’, ‘삼강편(三綱篇)’, ‘과환편(科宦篇)’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학편’은 선정(先正, 并無諸賢), 유현(儒賢, 道學於一世), 학행(學問德行百世師表), 은일(隱逸, 志高德博不臣王廷), 유일(遺逸, 遜世無憫文學純正), 유행(儒行, 學有淵源名重斯文), 문행(文行, 文名卓行)으로, ‘덕업편’에는 훈신(勳臣, 錄勳封君), 원종훈(原從勳, 附忠勳), 공신(爲國立功), 명신(名臣, 位躋正卿致君澤民), 명환(名宦, 歷敍清顯), 명관(名官, 莅官名政), 청백(清白, 莅本郡清政),

문장(附文苑 善文), 시가(詩家, 附善詩), 필원(筆苑 附善筆), 화가(附善畫), 행의(行誼, 附名望 善行), 진목(賑睦, 附慈善)의 항목이, ‘삼강편’에는 충신(爲國殉節 附節義), 효자(附효녀, 효부, 順孫, 友愛), 정렬(貞烈 附賢媛 閨媛 女行)이, ‘과환편’에는 문과, 사마(司馬), 무과, 음사(蔭仕), 수직(壽職), 증직(贈職), 명석(名釋)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 「울진군지」에 울릉도나 독도에 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함경도 「부령군지」에는 ‘토문강(土門江)’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양보경》

조선후기 지방지도

도서번호 : 독도 912.51 ㄱ219ㄱ

저 자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원본 미상)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규장각(영인본) (원본 삼군부)

발행년도 : 1996~2002년 (원본은 1872년)

구 성 : 9책 (원본은 459장)

조선 중기 이후 조선의 지도 제작에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상세하고 정확한 대축척지도 발달, 군현지도 제작의 활성화, 주제도 등 다양한 지도 제작의 증가, 목판본 또는 휴대용 지도의 보급, 방안지도(方眼地圖)의 이용, 회화식 지도의 발달, 서양의 지리지식과 서양식 지도의 유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지도의 내용과 형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군현지도(郡縣地圖)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지도 제작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군현지도는 통치의 기본 단위였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그린 지도로서 당시에는 ‘군현도(郡縣圖)’ 또는 ‘읍지도(邑地圖)’로 불리었다. 군현지도는 매우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18세기 영·정조대에 특히 많이 제작되었고, 현전하는 군현지도 역시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다.

또한 읍지에 군현지도(郡縣地圖)가 첨부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같이 지도(地圖)와 지지(地誌)가 결합된 읍지의 제작으로 군현지도의 제작이 활발해 졌다. 조선 후기의 군현지도의 발달은 내용의 정확함과 상세함은 물론, 수천 매에 달하는 군현지도의 양적 증가, 국가는 물론 민간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군현지도 제작 및 이용 체계의 확대, 그에 따른 지도 제작 기법이나 지도 형태 등 외형적인 변화 등에서 잘 드러난다.

18세기 이후 국가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전국에 걸친 군현지도를 다시 제작한 것은 1872년(고종 8)이다. 일부 지도 표지에는 지도를 완성하여 상송(上送)한 시기를 기록하여 놓았는데, 1872년 3월~6월에 걸쳐 있어서, 1872년 봄에 전국적으로 지도 제작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에 이어 1871년에 신미양요(辛未洋擾)를 경험한 중앙 정부는 각 군현에 먼저 읍지(邑誌)를 편찬하여 상송(上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화강읍지(花江邑誌)』(서울대 古4792-1)의 기록은 1871년 9월의 읍지 작성 명령에 따라 10월경에 읍지를 상송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 읍지들은 『호서읍지(湖西邑誌)』처럼 도지(道誌)의 형태로 전하고 있는데, 읍지에 지도(地圖)와 함께 특히 진지(鎭誌), 역지(驛誌), 목장지(牧場誌), 산성지(山城誌), 사례(事例) 등이 첨부되어 있어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읍지라는 특징을 지녔다. 읍지 편찬이 이루어진 이듬해 봄에 지도의 제작이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지도 제작의 주축을 이루었던 비변사(備邊司)가 1865년에 폐지된 후 군사 임무를 맡은 삼군부(三軍府)의 주관 아래 지도 제작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미국 등 외세(外勢)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겪은 조선은 서양의 동점(東漸)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국방과 치안을 위한 관제(官制) 개정, 군제(軍制)의 개편, 군사 시설의 확충과 경비 태세의 강화, 군기(軍器)의 정비와 실험 등과 함께 전국 각 지역, 특히 군사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파악을 필요로 하였고 이것이 이 시기의 읍지 편찬 및 지도 제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대원군 집정기에 만들어진 1872년의 지도는 군현지도 외에 군현에 소속된 영(營), 진보(鎭堡), 목장(牧場), 산성(山城)을 별도로 그린 지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87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 지도는 총 459매이다. 경기도 40매, 충청도 52매, 전라도 84매, 황해도 42매, 평안도 85매, 강원도 28매, 함경도 24매, 경상도 104매이며, 이 가운데 군현지도가 320매, 진보(鎭堡) 등의 지도가 139매이다(「표」 참조). 군현지도 중에는 경상도의 대구·경주·진주·안동·상주 등 10개 지역, 전라도의 부안, 충청도의 예산 등 3개 지역, 평안도의 평양·안주의 지도가 결본

(缺本)이다. 이는 제작 이후 보관 과정에서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관방시설을 그린 진보(鎭堡) 지도는 경기도 2매, 전라도 28매, 경상도 41매, 황해도 19매, 평안도 45매, 강원도 2매 등 총 139매이다. 충청도와 함경도 지도 중에는 진보(鎭堡) 지도가 남아 있지 않다. 이들 지도는 하천이나 해안 연변 특히 서남해안의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가 주축이 되어 있다.

고종대 군현지도들은 회화식 지도로서, 군현마다 지도의 크기가 조금씩 상이하여 일정한 축척이 적용된 오늘날의 측량지도와 같은 정확한 지도는 아니다. 그러나 지도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정밀하여 회화적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지역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산과 하천, 도로, 영애(嶺隘), 고개, 성곽, 포구(浦口), 진도(津渡), 능원(陵園), 명묘(名墓), 사찰, 서원, 향교, 누정(樓亭), 면(里), 역(驛), 점(店), 장시(場市), 임수(林藪)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습을 다른 어느 군현지도 보다도 상세하게 그렸다. 특히 읍의 중심지인 읍치(邑治)의 내부 구조와 관아 건물의 배치가 자세하여 옛 도시 구조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대원군의 개혁정치의 하나였던 사창제(社倉制)의 추진을 반영하듯 각 면(面)에는 사창(社倉)이 강조되어 있어, 지도에 수록할 내용에 관한 일정한 규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대 군현지도는 각 도별로 특징이 있다. 전라도, 황해도 지도는 지도의 크기, 내용, 채색, 표현방법 등이 통일, 정돈되어 있어 일부를 제외하면 감영(監營)에서 여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도 각 군현의 지도에는 각면(各面)의 호구수(戶口數), 소속 리(里)를 기록한 점이 독특하다.

이 지도들은 조선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전국 군현지도 제작 사업의 성과물로서 국가가 지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측면 특히 해방(海防)이 강조된 지도이지만, 개항 이후 전 국토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이전, 조선 후기의 전국 각 군현의 모습을 초상화처럼 보여 주는 지도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재, 고적, 지명, 경관 등 조선 후기 지역 사회의 이해와 복원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 이전 시기처럼 감영이나 중앙에서 화원들이 다시 정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군현에서 그린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획일적이 아닌 각 지방지도의 독창적인 솜씨와 지방의 정서, 지방에서 본 자기 고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강원도 『삼척부지도(三陟府地圖)』는 서쪽이 지도의 위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도의 아래쪽 즉 동쪽 바다에 세 봉우리의 모습을 한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 『울진현

지도(蔚珍縣地圖)』 동쪽에도 울릉도를 크게 그리고, “동쪽으로 천여리 떨어져 있다”고 섬 안에 기록해 놓았다. 또한 함경도의 『단천부지도(端川府地圖)』, 『무산지도(茂山地圖)』, 『평해군지도(平海郡地圖)』, 『경상도지도(慶尙道地圖)』 중의 「울산목장지도(蔚山牧場地圖)」 등 군현(郡縣) 및 진보(鎭堡) 지도에 ‘동해(東海)’라는 표기가 보인다. 《양보경》

「표」 1872년(고종 8년) 군현지도의 소장 상태 및 영인본 간행 연도

지역	郡縣地圖	鎭堡,山城,牧場地圖	총 지도수	간행책수	간행연도	중복 지도	누락 군현
전라도	56	28	84	1	1996		扶安
경기도	38	2	40	1	1997		
충청도	52	0	52	1	1998	文義	禮山,木川,槐山
경상도	61	43	104	2	1999	長木浦, 彌助項, 知世浦, 助羅浦, 玉浦	慶州, 金海, 大丘, 尙州, 星州, 安東, 蔚山, 晉州, 昌原, 河東
강원도	26	2	28	1	2000		
함경도	24	0	24				
황해도	23	19	42	1	2001		
평안도	40	45	85	2	2002		平壤, 義州
계	320	139	459	9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도서번호 : 독도 951.09 7348z

저 자 : 弘文館(編)

발행기관 : 國學資料院(影印本)

발행년도 : 1957년(원본 1770년)

구 성 : 국판 전 3책

우리나라 상고(上古)로부터 대한제국 말기 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분류 정리한 책으로 약칭 문헌비고(文獻備考)라 부르기도 한다. 최초의 편찬은 1770년(영조 46

년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에 의해 널리 공사(公私)의 실기(實記)를 참고하고 중국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본따 상위(象緯), 여지(輿地), 예(禮), 악(樂), 병(兵), 형(刑), 전부(田賦), 재용(財用), 호구(戶口), 시저(市糴), 선거(選舉), 학교(學校), 지관(職官) 등의 13고(考)로 분류하여 서명응(徐命膺), 채제공(蔡濟恭), 서수호(徐浩修), 신경준(申景濬) 등이 반년만에 1백권을 편찬, 그 해 8월에 인쇄하여 책명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약 반년동안에 급조한 까닭에 사실에 어긋난 점과 빠진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내려올수록 법령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1782년(정조 6년)에 이만운(李萬運)에게 명하여 이를 보편(補編)하게 하였다.

이만운은 자기의 사택(私宅)에 사자관(寫字官)을 두고 9년여에 걸쳐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3考 중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빠진 분야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물이(物異), 궁실(宮室), 왕계(王系), 씨족(氏族), 조빙(朝聘), 시호(諡號), 예문(藝文) 등 7考를 증보하여 146권으로 편성, 1790년에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 작업은 진행되었다. 이 증보사업은 1797년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徐命膺)의 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유구(有渠)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의 보완 작업이 이어졌으나 그 기본 골격은 종전대로 유지되었다.

이를 ‘증정’ 또는 ‘증보’ 하였다하여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라고 하였으나,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백여 년이 지난 고종(高宗) 광무(光武)연간에 와서 제3차의 보편(補編)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서양의 문물을 수입하여 사회의 모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 1903년(광무 7)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奎)의 건의에 따라 홍문관에 찬집청(撰集廳)을 두고 박용대(朴容大), 조정구(趙鼎九), 김교헌(金敎獻), 김택영(金澤榮), 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에 나섰고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만에 완성하였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증보동국문헌비고의 20고 중 물이(物異)는 상위(象緯)에, 궁실(宮室)은 여지(輿地)에, 시호(諡號)는 직관(職官)에 붙이고, 왕계(王系)는 제계(帝系)로 고쳐 씨족(氏族)을 붙이고 조빙(朝聘)을 교빙(交聘)으로 고쳐 상위(象緯) 12권, 여지(輿地) 27권, 제계(帝系) 14권, 예(禮) 36권, 악(樂) 19권, 병(兵) 10권, 형(刑) 14권, 전부(田賦) 13권, 선거(選舉) 18권, 학교 12권, 직관(職

官) 28권, 예문(藝文) 9권 등 총 16考 250권으로 엮었다.

편집 형식은 고별(考別)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增訂)에서 정조 14년(1790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고,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을 보충해서 쓴 것으로 광무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를 구별하도록 하였다.

이 책의 편찬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撰進)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하고, 광무연간의 찬진에서도 치세의 실용적인 면을 위하는데 두었으며, 1908년(융희 2년)에 간행하였다. 일제시 일본인이 일어로 번역·출판한 것이 있고, 1957년 동국문화사에서 상·중·하에 국판 3051면으로 이 책을 영인하였다.

본서의 「제14권 輿地考 2」 역대국계(歷代國界) 2 신라국 중에는 우산국(于山國)란이 있는데, 서기 512년(지증왕(智證王) 13년) 우산국 사람들이 험준함을 믿고 귀복(歸復)하지 않으므로 하슬라(河瑟羅: 三國史에는 何瑟羅라 함) 군주 이사부가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섬으로 가서 그들을 위협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침내 항복하고 해마다 토의(土宜)를 공물로 바쳤다고 되어있고, 또한 동서(同書) 여지고 24 부록에는 백두산 정계비 이후 불거진 청과의 북간도와 서간도 귀속문제를 논하는 등 강계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양태진>>

增正交隣志(증정교린지)

도서번호 : 독도 951.58 7498자
 저 자 : 金健瑞 外(編)
 발행기관 : 韓國學文獻研究所(影印本)
 발행년도 : 1974년 (원본 1802년)
 구 성 : 336면

본서는 조선시대에 중국을 제외한 일본 등 인접국과의 외교관계를 적은 책이다.

1802년(순조 2년) 사역원 당상역관 김건서(金健瑞)가 동료인 이은효(李恩孝), 임서무(林瑞茂) 등과 함께 편찬, 간행한 것이다. 그는 본서를 사비(私費)로 출간하여 진상함으로써, 그 공로로 가자(加資)되기도 하였다.

본서의 제명이 이렇게 된 것은 김건서의 증조부 김경문(金慶門)이 1720년(숙종 46년)에 편찬한 통문관지(通文館志)의 교린조(交隣條)를 증보, 정정(訂正)하였다는데 연유한다. 이같이 본서는 통문관지(通文館志)의 교린조를 대폭 증보하여 교린에 관한 기년사적(紀年事蹟)과 대소규제(大小規制) 물량환치(物量換價) 등 세목과 통문관지 이후의 새로운 조약(條約) 사례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았다. 책이 간행되기 전에 박종경(朴宗慶)의 산정(刪定)을 거쳤으며, 책명을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라 한 이는 이곡(履谷) 이종모(李宗模)이다.

조선시대의 외교는 중국에 대한 사대정책과 중국 이외의 나라에 대한 교린정책으로 대별된다. 교린의 대상은 일본의 막부와 여진, 대마도, 유구 등이었으나, 그 실상은 대마도를 중심으로 조·왜와의 외교관계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대마도인에 대한 예우와 그들과의 조약, 왜관(倭館)의 문제, 막부(幕府)와의 사행(使行)관계 및 교역관계가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의죽도변정전말(儀竹島辯正顛末)이 실려 있는데, 이는 울릉도 영유권문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양태진>>

勅 令(칙 령)

도서번호 : 독도 951.99

저 자 : 議政府(朝鮮) (編)

발행기관 : 議政府(朝鮮)

발행년도 : 원본 1894~1910년

구 성 : 26冊 筆寫本

본서는 1894년(고종 31) 11월부터 1910년 8월까지의 모든 칙령을 의정부(내각)에서

모아 만든 책이다. 대부분이 칙령의 호수·내용·날짜·印寶·奉勅者 명단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칙령』 이외에 『勅令存案』, 『勅令目錄』도 있는데, 內閣에서 편한 『勅令存案』은 본서의 謄寫本이며, 『勅令目錄』은 『勅令』에 실려 있는 내용의 제목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본서의 제4책까지는 謄寫本의 내용이 더 자세하나, 제5책 이하는 동일하며, 책별로 수록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책: 1894.11-1895.3, 제2책: 1895.3-4, 제3책: 1895.5-11, 제4책: 1896.1-9, 제5책: 1896.9-1897.12(以下 各冊 條文附, 印: 勅令之寶), 제6책: 1898, 제7책: 1899, 제8책: 1900.1-9, 제9책: 1900.9-12, 제10책: 1901, 제11책: 1902, 제12책: 1903, 제13책: 1904, 제14책: 1905.1-4, 제16책: 1906.1-7, 제17책: 1906.7-9, 제18책: 1906.9-12, 제19책: 1907.1-7, 제20책: 1907.7-12, 제21책: 1907.12, 제22책: 1908.1-7, 제23책: 1908.7-12, 제24책: 1901.1-3, 제25책: 1909.4-12, 제26책: 1910.1-8

勅令으로 된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내용은 다양하나, 대체로 법령과 조례·규정·규칙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 주종을 이루며, 시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개정 건이 많다. 갑오경장 이후 舊制度의 改革政案을 法令 中心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1900년에 발표된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郡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구역을 정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勅令 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는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호야 江原道에 附屬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야 官制中에 編入호고 郡等은 五等으로 호는 事

第二條 郡廳 位寘는 台霞洞으로 定호고 區域은 鬱陵 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호는 事

第三條 開國 五百四年 八月 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 十九字를 刪去호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 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 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호고 安峽郡下에 鬱島 三字를 編入호는 事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호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호고 庶事 初創호기로

該島 收稅中으로 姑先 磨鍊호 事

第五條 未盡호 諸條는 本島 開拓을 隨호야 次第 磨鍊호 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호 事

光武 四年 十月 二十五日 奉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 贊政 內部

大臣 李 乾 夏

위의 勅令 제41호의 규정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제2조이다. 鬱陵郡의 관할구역으로 「鬱陵 全島」와 竹島 그리고 石島를 들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울릉 전도」는 竹島와 石島를 제외한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섬과 암초까지 망라한 것이며, 죽도는 오늘날의 竹嶼, 즉 船板邱尾(섬목)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섬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석도는 울릉도 부근에서 앞에 나열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獨島밖에 없음을 감안하거나 石島를 혼동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라고 호칭되는데 이 ‘독섬’이 독도라고 다시 바뀌었던 것이라는 梶村秀樹·宋炳基 양인의 주장을 근거로 할때 獨島에 대한 국가에서의 행정적 조치가 일본에 비해 앞선다는 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石島=獨島說은 앞으로 方言에 대한 보다 적의한 해석과 사용된 유사사례의 보완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통용된다면 위의 자료는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확실성을 더욱 제고해 주는 자료로 인식될 것이다.

본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자료실에는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奎章閣所藏 獨島關聯資料』에 합책하여 보관하고 있다. <<임영정>>

通文館志(통문관지)

도서번호 : 독도 177 ㄱ428ㄷ
 저 자 : 金指南
 발행기관 : 民昌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257면

본서는 사역원(司譯院)의 내력과 고대로 부터 외국과의 통교(通交)에 관한 사적 및 의절(儀節) 등의 사실을 수록한 책으로 12권 6책이며, 조선 숙종때 역관(譯官)이던 김지남(金指南)이 그의 아들 경문(慶門)과 함께 편찬한 것이다.

편찬자인 김지남(金指南)은 1654년(효종 5년)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망 연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지남의 자는 계명(季明), 호는 광천(廣川), 본관은 우봉(牛峰)이다. 1672년(효종 12년) 역과(譯科)에 급제, 1682년(숙종 8년) 역관으로 일본 청나라에 다녀왔고, 1698년(숙종 24년) 청나라를 다녀 온 후 신전자초방(新傳灸硝方)을 저술하였으며, 벼슬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경문(金慶門)의 서(序)에 이어 목록(目錄), 인용서목(引用書目) 다음에 권별(卷別)로 내용(內容)이 수록되어 있다. 서(序)에서 김경문이 이 책의 편찬 동기와 경위를 밝히기를, “고대로 부터 우리나라는 인접한 중국 요(遼), 연(燕), 여진(女眞), 일본(日本) 등과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온 법례(法例)가 많았으나 이를 수록한 문헌(文獻)이 없어 고증(考證)할 길이 없으므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사역원제조(司譯院提調)로 있을 때 김지남이 전고(典故)에 밝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고대 이래의 고사(故事)를 수집 정리하여 찬수(纂修)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권1은 연혁편(沿革篇)으로 사역원(司譯院)의 관제(官制), 위직(衛職), 외임(外任), 등제(等第) 등의 연혁(沿革)과 현황(現況)이, 권2는 권장(勸獎)편으로 사역원의 입속(入屬), 승차(陞差), 과거(科擧), 원시(院試), 취재(取才) 등이, 권3은 사대편(事大編) 상(上)에 부경사행(赴京使行), 부경품역마(赴京品驛馬), 행중거행문서(行中舉行文書), 경

외노비(京外路費) 등이, 권4는 사대편(事大篇) 下로 칙사행(勅使行), 빈행차견(賓行差遣), 중강연형(中江宴享), 압록강영칙(鴨綠江迎勅), 각무차사원(各務差使員), 부마입파수(夫馬入把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중국에서의 사행절차(使行節次)와 사행(使行) 및 무역개시(貿易開市) 칙사(勅使)에 대한 영접(迎接), 의식(儀式)등을 살펴 볼 수 있다.

권5는 교린편(交隣篇) 上으로 접대일본인구정사례(接待日本人舊正事例), 접대대마도인신정사례(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연례송사(年例送使), 왜관(倭官), 다례의(茶禮儀), 진상물건간품식(進上物件看品式) 등이, 권6은 교린편(交隣篇) 下로 통신사행(通信使行), 도구전식(都口傳式), 경외노자(京外路資), 국서식(國書式), 삼사신사례단(三使臣私禮單), 아경사연(我境賜宴), 관진차비(關津差備), 수륙노정(水陸路程), 일광산치제의(日光山致祭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일본사신(日本使臣) 대마도인(對馬島人)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의 접대(接待), 조약(條約), 개시(開市) 등과 우리 사절이 일본에 갈 때의 정원(定員), 의식(儀式), 노정(路程), 노자(路資), 서계(書契) 등을 알 수 있다.

권7은 인물편으로 조선 초기 이래의 공적이 특기할만한 원임역관(原任譯官)의 행적을, 권8은 고사(故事), 솔속(率屬), 십물(什物), 서적(書籍) 등 4편으로 되어 있는데 고사편에는 개국이래 사역원의 고사를, 솔속(率屬)편에는 서리(書吏)이하의 정수(定數)와 임역부서(任役部署)를, 십물편에는 인장 교재 및 조판의 내력을, 그리고 서적편에는 서적목록과 찬수·간행의 연혁을 수록하였다. 권9는 기년편(紀年篇)으로 수록기간의 사대교린(事大交隣)상의 중요사항을 연차순으로 기록하였고, 권10~12는 기년(紀年)의 속편(續篇)이다.

본서는 조선시대 외교사관계의 기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정치·경제·제도·지리·문화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개항기에 외국과의 교섭상을 연차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그 가운데 강역문제와 관련해 빼 놓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저자 김지남이 백두산정계비 건립시 우리나라 대표측의 역관으로 아들 경문(慶門)과 함께 참석하여, 상대국인 청측의 대표인 목극등을 상대로 많은 활약을 하여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했음을 적고 있다. <<양태진>>

漂人領來謄錄(표인영래등록)

도서번호 : 독도 951.09 7467

저 자 : 禮曹 典客司(朝鮮)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규장각(영인본) (원본 禮曹 典客司)

발행년도 : 1993년 (원본 1641~1751년)

구 성 : 8책

본서는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의 귀국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책으로 朝鮮 禮曹 典客司에서 편찬한 것이다. 이러한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서이고, 또 하나는 『漂人領來差倭謄錄』이다. 그러나 이는 전승과정에서 분류되어 제목과 도서번호가 나누어지고 별개의 책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지, 원래는 일관되게 편집된 하나의 기록이다.

제목에 인용된 漂人領來差倭란 日本 對馬島 府中에서 江戸 幕府의 지시를 받들어 표류인을 인솔해 가도록 조선에 파견하는 使者였다. 본서에는 1641년(인조 19) 9월부터 1751년(영조 27) 9월까지의 기사가 날짜순으로 실려 있다. 각 책에 수록된 기사의 대상 시기를 보면, 제1책은 仁祖 19년(1641) 9월~顯宗 원년(1660) 2월까지, 제2책은 顯宗 원년(1660)~현종 15년(1674) 10월까지, 제3책은 肅宗 원년(1675) 윤5월~肅宗 12년(1686) 4월까지, 제4책은 肅宗 12년(1686) 4월~肅宗 18년(1692) 8월까지, 제5책은 肅宗 19년(1693) 6월~肅宗 21년(1695) 12월까지, 제6책은 肅宗 22년(1696) 1월~肅宗 25년(1699) 11월까지, 제7책은 肅宗 26년(1700) 1월~肅宗 28년(1699) 12월까지, 제8책은 肅宗 29년(1703) 1월~숙종 29년(1703) 7월까지, 제9책은 肅宗 30년(1704) 5월~肅宗 35년(1709) 12월까지, 제10책은 肅宗 37년(1711) 4월~숙종 39년(1713) 10월까지, 제11책은 肅宗 39년(1713) 12월~肅宗 42년(1716) 12월까지, 제12책은 肅宗 43년(1717) 3월~肅宗 44년(1718) 12월까지, 제13책은 숙종 45년(1719) 1월~景宗 3년(1723) 11월까지, 제14책은 景宗 3년(1723) 11월~英祖 2년(1726) 8월까지, 제15책은 英祖 2년(1726) 9월~英祖 7년(1731) 8월까지, 제16책은 英祖 8년(1732) 2월~英祖 9년(1733) 11월까지, 제18책은 英祖 13년(1737)~英祖 14년(1738) 11월까지, 제19책은 英祖 15년(1739) 6월~英祖 19년(1743) 12월까지, 제20책은 英祖 20년(1744) 8

월~英祖 27년(1751) 9월까지이다.

典客司에서 편집한 다른 謄錄들도 대개 1604년을 전후하여 시작되어 1750년대에 이르러 그치는 것을 볼 때, 지금 전해지는 『漂人領來謄錄』 및 『漂人領來差倭謄錄』이 조선시대 표류 조선인의 귀환에 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편집한 기록의 전부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책 중 제17책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본서의 기록 요령은 典客司에서 편찬한 다른 등록 자료와 일치한다. 즉 각 기사별로 날짜를 먼저 제시하고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같은 날짜 안에 독립된 기사가 여럿 있을 때는 행을 바꾸면서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였다. 독립된 기사마다 중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 頭註 형식으로 그 기사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다. 각 기사는 기록의 형식으로 볼 때, 東萊府使를 비롯하여 釜山僉使 慶尙道觀察使 등이 올린 보고문인 狀啓, 그것과 관계된 備邊司와 禮曹의 啓 등과 그것에 대한 朝廷의 처리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狀啓에는 別差 등 대일 교섭의 일선 담당자, 多大浦僉使 등 변방책임자, 梁山郡守 등 인근 지역 수령들의 보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시 그 보고에는 인근 고을의 倭學, 烽軍, 哨探將 등의 보고 내용도 실려 있다. 그 중에는 일본에서 돌아온 표류인의 招辭와 같이 독립된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기도 하다. 그 밖에 差倭가 禮曹參議 東萊府使 및 釜山僉使에게 가져온 書契와 別幅을 옮겨 놓았으며, 이쪽에서 差倭와 그 수행원들에게 제공한 예물의 목록과 수량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표류인의 귀환과 차왜의 접대에는 몇 가지 분란이 따르곤 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차왜가 정당하게 파견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1682년(肅宗 8) 尹趾完이 通信使로 갔을 때 「敗船殞命者」의 경우에만 특별히 차왜를 파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인편에 표류인을 돌려보내기로 약조를 맺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배가 부서진 동시에 죽은 자가 있을 경우를 차왜 출래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 각각의 경우에 차왜를 파견해 옴으로써 마찰이 빚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조선으로부터의 후한 접대를 바라고 일본 쪽에서 무리하게 차왜를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일본의 차왜가 3년간이나 귀국하지 않고 조선 정부에 접대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倭船이 규정 외로 거듭 출래한 경우, 교섭 문서의 字句를 삭제하거나 고치는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본서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원본 제5책[1693년(숙종 19) 6월~1695년(숙종

21) 12월]과 제6책[1696년(숙종 22) 1월~1699년(숙종 25) 11월]에 있는 安龍福 관계 기사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龍福은 일찍이 東萊水軍으로 1693년(숙종 19) 동래어민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고기를 잡기 위하여 침입한 일본어민을 힐책하다가 부하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잡혀갔다. 이때 호오키주(伯耆州) 태수와 에도(江戸) 막부에게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쌀의 두량(斗量)과 布(포)의 척(尺)을 속이는 등 중간에 농락이 심한 것을 밝히고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書契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나가사키(長崎)에서 대마도주에게 그 서계를 빼앗겼다. 대마도주는 울릉도를 차지할 계획으로 그 문서를 위조하여 같은 해 9월 차왜(差倭)를 東萊에 보내어 안용복을 송환하는 동시에, 예조에 서계를 보내어 조선의 어민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에서 고기잡이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竹島가 실은 울릉도인 것을 알면서 취한 교활한 행위였다. 그런데도 당시 좌의정 睦來善과 우의정 閔黯은 무사주의의 외교정책을 취하여, 비워 둔 땅으로 인하여 왜인과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하고, 멀리 떨어진 섬에 왕래를 금지하는 조선정부의 해금정책에 일본도 협조할 것을 권하는 예조복서(禮曹覆書)를 작성하여 동래의 일본사신에게 보내면서 그 내용 중에 울릉도가 우리의 영토인 것만은 분명히 밝혀두었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정부와 대마도 사이에는 울릉도 爭界問題가 일어나 한동안 외교문서의 교환 등 외교적 분쟁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德川幕府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 분쟁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본서에 게재되어 있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연구하기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서에는 표류자의 귀환과 漂人領來差倭에 대한 접대 기사가 여러번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朝鮮과 日本의 상호 교섭은 물론, 조선후기 국내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류인과 표류 경위를 분석한다면, 당시 상인이나 어부들의 활동 등을 재구성함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일한 주제의 내용을 일관된 체제로 싣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장점을 지니는 것이다. 《임영정》

한국 고지도 발달사

도서번호 : 독도 912.51 0733ㅎ

저 자 : 이상태

발행기관 : 해안출판사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264면

이 책은 한국의 고지도 발달사를 연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지도는 지구 표면의 전체나 일부를 지면에 그린 것으로 지역 공간의 투영일 뿐만이 아니라, 땅위에서 이루어진 정치, 사회, 문화적 모든 현상(現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새긴 그림이다. 그러므로 지도는 작성하는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수록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지도가 제작된 당시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지도는 한 지역의 박물관이며 훌륭한 역사적 고증자료인 셈이다. 우리나라 고지도에 관한 연구는 고지도의 양적인 풍부함이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연구자들이 고지도를 쉽게 접하기 어렵고, 또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서지학적인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접근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선전기의 지도」 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의 편찬과정과 그 책에 수록된 『동람도』에 관한 내용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천문과 지리를 중히 여겼고, 또 ‘左圖右書’ 라고 하여 지도와 지리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동람도』는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민간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지도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의 5도양계 영역에서 벗어나 북방 개척이 활발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국가에서 여러 번 전국도를 제작하였다. 이회의 『팔도도』, 정척의 『팔도도』,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등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도 등은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보 248호인 『조선방역도』가 남아 있어 조선 전기 지도 제작 모습을 알 수 있다. 『조선방역도』는 국

보로 지정되었다. 지도 중에 국보로 지정된 것은 이 지도뿐이며, 『대동여지도』도 보물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제2장에서는 조선후기의 지도를 다루었다. 조선후기에는 병자호란 등의 전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성 등이 많이 축조되며, 그에 따라 지도도 관방도가 많이 제작되었음을 밝혔다. 조선후기에는 지도 제작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상기가 발전시킨 백리척의 축척법을 이용한 지도 제작이다. 그가 만든 『동국대지도』는 조선후기 지도의 모델이 되며 과학적 지도 제작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제3장은 「현존하는 고지도의 실태와 그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고지도는 대단히 많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지도는 그리 많지 않다. 현존하는 고지도를 소장처별로 정리하여 제작 형식, 지도의 크기, 제작연대, 제작기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고지도는 고지도가 아니라 일종의 골동품으로 취급되어 매우 고가이고, 대부분의 소장처에서도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열람이 거의 안된다. 이를 담당자와 다루면서 열람하려면 “貴重本”이 아니라 “鬼中本”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제4장은 「군현의 변천과 지도의 제작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작시기를 알아보는 잣대로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군현의 변천이다. 군현의 변천은 여러 가지 민감한 사실이 있어 당시의 변천된 사실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지도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이를 『조선왕조실록』과 『여지도서』 그리고 『대동지지』등을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군현의 신설·폐지·병합·혁파·승강 등을 시대별로 조사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제5장은 『대동여지도』와 김정호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고지도를 집대성해 놓은 지도가 『대동여지도』이다. 『대동여지도』의 특색은 첫째, 목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의 길을 터놓았다. 둘째, 지도표를 사용하여 지도의 주기 내용을 간결화하고 고지도를 근대화 시켰다. 셋째, 분합이 자유롭게 22첩으로 만들어 상하를 연결하면 도별지도도 되고 전부 연결하면 전국도가 되도록 제작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접으면 책 크기만 하여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하도록 제작하였다. 넷째, 전통적인 고지도 제작 양식인 배수의 6체를 사용하고 방안도법을 이용하였으며, 확대 축소할 때에는 서양의 과학기

술을 가미하여 고지도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다섯째, 다른 어느 고지도보다 주기내용이 많아 풍부한 정보량을 담고 있다. 여섯째, 10리마다 점을 찍어 표시하여 여행할 때 이정(里程)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호는 조선초기부터 19세기까지 제작된 한국의 고지도 중에서 좋은 점만을 간추리고 19세기에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록하여 불후의 명작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서양의 과학기술까지 가미한 우리나라 고지도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훌륭한 『대동여지도』를 만든 분이 김정호이다. 그러나 김정호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과 전설만이 전해지고 심지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정호는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등의 3대 지지를 편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3대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그 외에 수선전도, 해좌 전도, 지구전후도 등을 제작하였다. 전설 속에 머물렀던 김정호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연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지도가 많이 제작되었고, 현존하는 고지도도 많으나, 이 지도들의 연구가 아직 미약하고, 이 고지도의 이용도는 더욱 떨어진다. 앞으로 고지도 연구와 고지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상태》

韓國近代邑誌(한국근대읍지)

도서번호 : 독도 915.1 ㅎ155 ㅎ

저 자 : 미상

발행기관 : 韓國人文科學院(影印本)

발행년도 : 1991년

구 성 : 64권

1910년 이후 1945년 사이에 편찬된 읍지(邑誌)를 골라 총 64권의 한국근대읍지(韓

國近代邑誌)를 영인했으며, 충청도가 1-6권, 경상도가 7-33권, 전라도가 34-52권, 황해도가 53-54권, 강원도가 55-56권, 함경도가 57-58권, 평안도가 59-64권 등으로 편집되었다.

식민지시대의 사찬읍지의 편찬 역시 지역유림들과 그 지역의 지방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림이 독자적으로 편찬사업을 진행시킨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관(官)과의 협조 속에 진행되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지방관이 발의하고 재정문제까지 부담한 경우도 있다.

식민지시대의 읍지 간행은 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식민지시대 이후의 제도변화, 특히 대정년간에 이루어진 지방제도의 변화(1914. 3.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3,000여 개의 면이 2,500개로, 240여 개의 군이 230개로 조정·개편되었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읍지들이 서문과 발문에서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읍지 개수(改修)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에 간행된 읍지는 대부분이 속수(續修)·증보(增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지(舊誌)를 토대로 식민지시대 이후의 변화사정을 보충한 것과, 그 이전에 편집된 필사본을 이 때에 간행하면서 얼마간의 새로운 사실을 보탠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식민지시대에 간행된 읍지는 식민지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지방사 연구에 더욱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각 도별로 중요한 근대 읍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안도

- 1) 강동지(江東誌) : 강동지는 평안도 강동의 읍지이다. 지명은 고려 인종 14년(1136)에 강동현이 되면서 유래한다. 1932년 조병원(曹秉源)이 강동에 와 있을 때 편찬논의가 있었다. 1934년에 새로 부임한 군수 송주순(宋柱淳)도 그러한 생각에 동감하자, 명륜회에 모여 조병원을 책임자로 하여 읍지 편찬에 착수, 1935년에 완성했다.
- 2) 강서군지(江西郡誌) : 강서군지는 평안도 강서의 읍지이다. 김종만(金鍾萬)과 당시 군수였던 조상만(趙尙滿)이 발의하여 강서군 유림회장 오희철(吳熙轍)과 상의하여 편찬에 착수한다. 도중에 김종만이 죽자, 그의 맏아들인 김봉하(金鳳河)가 작업을 이어 1936년에 완성하였다.

2. 함경도

- 1) 경성지(鏡城誌) : 1937년부터 2년여간의 자료수집을 거쳐 향인 안봉욱(安鳳郁)이 편찬한 것이다. 경성에는 이미 수 차례의 읍지 편찬이 있었다. 광해군 8년(1616)에 이식(李植)이, 또 현종 5년(1661)에는 이식의 아들 이단하(李端夏)가 경성을 포함한 관북 지방의 10개 군지인 관북지(關北誌)를 편찬한 바 있다. 이후 현종 15년(1849)에 군수 신응모(申應模)가 처음으로 경성지를 편찬하였으며, 고종 3년(1884)에는 안무사 조병직(趙秉稷)의 명령으로 장진행(張晉行)이 속지 2권을 편찬하기도 했다.

3. 황해도

- 1) 봉산군지(鳳山郡誌) : 1930년에 군수 고의준(高義駿)이 지역 사립의 의견을 모아 읍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택하여 읍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는데 책임자는 이동준(李東駿)이다.
- 2) 화산지(花山誌) : 신천의 옛 이름이 화산이다. 융희 3년(1909)에 신천과 문화가 통합되어 신천군으로 되었다. 1925년도 군세(軍勢)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1925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재령군읍지(載寧郡邑誌) : 군수 서인순(徐麟淳)이 부임한 후 치군(治郡)의 지침으로 삼고자 고문기(古文記)와 고로(故老)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편찬한 것이다. 편찬연대는 미상이다. 다만 인물편 등에 순조 연간 이후의 사실은 하나도 없고, 책의 앞머리에 '신축중간(辛丑重刊)'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 가운데 '상지7년 신축(上之七年 辛丑)'이라고 쓰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종 7년(1841, 신축)에 편집된 읍지로 여겨진다.
- 4) 평산군지(平山郡誌) : 1945년에 조천식(趙天植)이 편찬한 읍지이다. 3개의 서문 발문이 있으며, 책의 앞머리에 군지 범례가 나와 있어서 편찬목적과 내용·목차·서술방법 등을 잘 알 수 있다.

4. 강원도

- 1) 삼척군지(三陟郡誌) : 군수 심의승(沈宜昇)이 이미 1913년에도 리동(里洞)의 개항을

조사하여 찬집한 바 있으나, 간행치는 않고 있다가 1916년에 심지황(沈之潢)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2개월 여의 답사를 거친 후 군수의 사재를 투자하여 편집한 것으로 필사본이다.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였으며, 한글 옆에는 일어로 토를 붙여놓았다.

- 2) 평강군지(平康郡誌) : 편찬이 착수된 것은 1918년이다. 군수 오환태(吳煥台)와 지역 유지가 힘을 합해 군지 편찬 사무소를 설치하고, 최승현(崔升鉉)이 편집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했다. 그 후 1942년에 유림이 다시 모여서 군지의 간행을 발의하고 군수의 도움을 받아 최승현·김시경(金時景)에 의해 재편집되었으며, 유림의 공동 출자로 1943년에 간행되었다.
- 3) 임영지(臨瀛誌) : 임영지는 1933년에 편찬되었는데, 앞쪽에 강릉군 약도를 첨부해 두었다. 편찬자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다만 서문을 쓴 사람이 '동호노인(東湖老人)'으로 되어 있다.
- 4) 동호승람(東湖勝覽) : 두 권으로 편집되었으나, 현전하는 것은 2권짜 뿐이며, 수집인은 최창순(崔昌洵)이다. 편찬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사조에 1932년(임신) 2월에 전기회사가 설립된 사실을 적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1932년 이후에 편찬된 듯하다.

5. 전라도

- 1) 속수나주지(續修羅州誌) : 나주에는 300년 전 장유(張維)가 목사로 있을 때 편집하려다가 완성하지 못한 나주지가 있었으며, 광무 1년(1897) 군수 이우규(李祐珪) 재임 때에 임명을 받들어 이승욱(李承旭)이 편집·간행한 나주읍지가 있었으나, 행정이 크게 바뀌게 되자 유생 김면수(金冕秀) 등이 중심이 되어 읍지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들은 선생안의 경우 주사일기(州司日記)에, 생진·문무의 경우 사마재(司馬齋)의 연계방(蓮桂榜)에, 인물·문장·학생·행의·음자·삼강은 장유의 편찬본에 각각 의존하여 속수나주지를 편집하였고, 1920년에 간행하였다.
- 2) 남평읍지(南平邑誌) : 1928년 봄, 서봉열(徐鳳烈, 서문에는 서정열(徐正烈)로 되어 있음)이 읍지편찬을 발의하였고, 윤세창(尹世昌)·홍남식(洪南植)·최태원(崔泰遠)·홍승복(洪承復)·송해초(宋海初)·서광수(徐光洙)·정도홍(鄭燾洪)·임명재(任明宰) 등이 여기에 호응하였다. 1928년 여름에 읍지의 편집이 완성되었고,

1929년에 간행되었다.

- 3) 기성지(箕城誌) : 기성지는 함평의 읍지이다. 1926년 정내근(鄭乃根)·윤태홍(尹泰洪) 등이 광무 10년의 읍지를 바탕으로 1906년 이후 함평 경계의 변화와 세부, 민호의 변동사항 그리고 인물에서 더하거나 빼야할 것을 가려, 중간한 것이 본 읍지이다. 이때 읍지의 이름도 고칭(古稱)에 따라 함평지에서 기성지로 바뀌었다.
- 4) 함평지(咸平誌) : 함평지는 기성지(1926년 刊)와 함께 식민지 시대에 발간된 함평 읍지로서, 양자 모두 광무 10년(1906) 함평지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함평지는 광무 10년의 함평지에 대한 속수함평지라고 함이 마땅하며, 1930년 신지 편집의 논의로 이계화(李啓華)·윤계병(尹桂丙) 등 지방인사들에 의해 1931년에 간행되었다.
- 5) 전선원무장읍지(全鮮元茂長邑誌) : 여지승람의 속수를 위해 전라도 읍지 총간소(總刊所)를 설치하고 만든 읍지이므로 ‘전선(全鮮)’이란 말을 붙였으며, 1914년에 무장군이 고창군으로 합치되었기 때문에 ‘원무장(元茂長)’이라고 표현했다. 1923년에 간행된 전선원무장읍지는 구지를 토대로 그 이후의 변천사항을 증보한 것이다. 변경된 도로와 산천의 경계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군도 1본을 첨부하였다.
- 6) 포두면지(浦頭面誌) : 1929년 향인 정용수(丁龍秀)·송인숙(宋璘淑) 등이 간행한 면지(面誌)이다. 포두면은 고흥군에 속한다.
- 7) 곡성군지(谷城郡誌) : 1919년 향인 정봉태(丁鳳泰)가 그의 부친 정율헌(丁栗軒)의 뜻을 받들어 편찬하였으며, 정율헌의 친우였던 장지연(張誌淵)의 서문이 있다.
- 8) 옥과읍지(玉果邑誌) : 옥과에는 정조 10년(1786)과 광무 3년(1899)에 읍지가 편찬된 적이 있다. 그러나 구지는 누락되거나 미비한 점이 많으며, 또한 1899년 이후의 인물과 연혁의 변화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인 허두(許斗)·심상원(沈相諫)·여규상(呂圭相) 등이 1936년에 새로이 편찬한 것이다.
- 9) 광양읍지(光陽邑誌) : 1924년 황승현(黃承珪) 등 지역의 유력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빠뜨린 것을 보충하고, 소략한 것을 상세히 하고, 또 그 이후의 사실들을 증보하여 만든 읍지이다.
- 10) 광주읍지(光州邑誌) : 1925년 지역인사인 강세영(姜世永) 등이 편찬한 읍지로 1926년에 간행되었다.

6. 경상도

- 1) 청기지(靑己誌) : 청기지는 청송읍지이다. 청기는 고구려 때의 이름으로, 1914년 진보군을 폐하고 청송이란 이름을 얻었다. 조광규(趙廣奎)·심상태(沈相台)·심상광(沈相光)·조용우(趙鏞禹) 등이 1936년 봄에 발의하여 편찬하였다.
- 2) 청송군지(靑松郡誌) : 청송군지는 경상북도 청송군의 읍지이다. 신상기(申相祺)·민오식(閔五植) 등이 다른 군에서 신읍지들이 발간됨을 보고 발의하여 2책을 작성하였다.
- 3) 취산군지(鷲山郡誌) : 취산군지는 경상북도 창녕의 읍지이다. 취산이란 명칭은 신라 말에 쓰였다. 이전의 읍지가 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고을의 인사들이 1928년 읍지 발행에 뜻을 모으고, 신규식(辛圭植)·이대기(李大期) 등이 1934년 구지를 증수하여 2책을 편찬하였다.
- 4) 수정오산지(修正鰲山誌)·오산지속편(鰲山誌續編) : 오산지는 청도의 읍지이다. 청도는 고려 초에 불린 이름이다. 현종 14년(1673)에, 이중경(李重慶)이 군수 권일(權侁)의 위촉으로 오산지 1본을 작성하였던 적이 있는데, 간행되지 않아서 쉽게 구하지 못하다가, 이중경의 후손이 칠곡에 사는 이성로(李成魯)가 1943년 봄에 빌려줌으로써 김재화(金在華) 등이 1943년 수정·편찬하였다. 후에 다시 1958년 가을과 1959에 재편찬하였다.
- 5) 진양속지(晉陽續誌) : 진양속지는 진양지속수가 발간된 해인 1927년에 곧바로 후속 읍지를 다시 만들자는 의논에 따라 편찬된 것이다.
- 6) 군위군지(軍威郡誌) : 군위의 옛이름은 적라(赤羅)로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승격되고, 1914년에 의흥군과 합해짐으로써 그 경계가 확대된다. 군위군지는 적라지 이후 180여 년 동안의 변동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지방 인사들과 군수 황진성(黃鎭晟)이 1935년에 편집을 시작하여 1937년에 출간하였는데, 김익현(金翼鉉)이 검열을 이치균(李致均)이 편집을 맡았다.
- 7) 김천군지(金泉郡誌) : 김천군지는 1914년 부·군폐합시 김산·개녕·지례 3군과 성주군 신곡면이 김천으로 병합된 후, 1928년 백송계(白松溪)가 구지를 보완하여 발간한 것인 듯하다. 이 군지는 연역·성씨·풍속·호구전시 등을 자세히 적었는데, 전부 호구는 1926년 3월을, 기타 제 사항은 1928년 1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 8) 동경통지(東京通誌) : 동경통지는 1933년 정인보(鄭寅普)·최남선(崔南善)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서, 최준(崔浚)이 고금서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글을 수집하고, 이어 정인보가 정치·교육·산업의 변천을 서술하였으며, 최남선이 역사적 사실을 적고 보정(補訂) 작업을 함으로써 완성되었다.

- 9) 자인읍지(慈仁邑誌) : 자인읍지는 황기식(黃基式)이 옛 자인 관아의 것을 등초(謄草)한 구지를 저본으로 하여 1932년에 편간한 것이다.
- 10) 경산읍지(慶山邑誌) : 경산읍지는 1914년 3월 부·군폐합이 있는 후 이 지방인사 서회수(徐會洙)와 서상효(徐相孝)가 상의하고, 이종수(李鍾洙)에 위촉하여 1933년에 간행되었다.
- 11) 화성지(花城誌) : 화성은 원래 하양의 옛 이름으로 동으로는 영천, 서로는 경산, 남으로는 자인, 북으로는 신령에 접하고 있다. 하양은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에 자인과 함께 경산으로 합쳐졌다. 이에 손종락(孫鍾洛) 등 이 지방 인사들이 폐합되기 이전의 사실들을 구지(舊誌)에 의거하여 연혁·인물·풍속·산물·과세·사원·사찰 등으로 나누어 증보하고, 옛 읍명을 따라 화성지라 하였다.

7. 충청도

- 1) 서산지(瑞山誌) : 서산에 대한 기록은 고경명(高敬命)이 처음 편찬하고 한경춘(韓慶春)이 완성한 호산록(浩山錄)과 구군지(舊郡誌: 1901년에 편집된 군지를 말함)가 있었다. 군수 이민녕은 후인들의 이목을 넓히고, 권선징악의 뜻을 깨우치고자 이 지역의 사림들에게 지리·인사·물산·정치 등을 보고들은 그대로 상세히 기록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사료들을 채집한 후에 읍지의 편집을 완성하고, 김병모(金炳牟)에게 교열하도록 하여, 1927년에 간행하였다.
- 2) 부여군지(扶餘郡誌) : 군수인 홍한표(洪漢杓)는 자기의 선조들이 대대로 이 지역의 관리를 지냈던 까닭에 부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치형(俞致亨) 등 여러 선비들과 함께 구지를 수정하고 교감(校勘)하여, 가장 먼저 부여현을 그리고 그 다음은 홍산현·임천현·석성현 등 세 읍을 신고, 맨 뒤에는 군의 병합 이후의 보충내용을 차례대로 실었으며, 1929년 간행하였다.
- 3) 공산지(公山誌) : 공주에는 철종 10년(1859) 목사였던 김응근(金應根) 등에 의해 간행된 공산지 2권이 있었는데, 박현규(朴顯圭) 등 이 지역의 선비들이 함께 의논하고 군수의 도움을 받아 1922년에 읍지를 편집하였고, 1923년에 간행하였다. 《상해》

韓國文集叢刊(한국문집총간)

도서번호 : 독도 811.082 □433ㅎ
 저 자 : 민족문화추진회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
 발행년도 : 1986~2001년
 구 성 : 국판 240책

한국문집총간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고전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학술사상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위에 현대문화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위해 고전 국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원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이루어 낸 결과이다. 한국의 고전 문집을 망라하는 작업은 시기상으로는 삼국시대에서 구한말에 이르는 시기의 문집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적 가치를 지닌 660여 종의 문집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영인 및 표점 작업을 통한 간행사업으로 발간된 것이다.

본 『한국문집총간』에는 울릉도,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문집총간 제24책 『漁村集』

『어촌집』은 沈彦光이 저술한 13권 4책(316판)의 활자본으로 심언광은 세조 3년(1487)에 태어나 중종 35년(1540)에 죽었으며, 자(字)는 사형(士炯)이고 호(號)는 어촌(漁村)이다. 본관은 삼척이며 시호는 문공(文恭)인데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김안로(金安老)를 등용시킨 일로 논척받아 파직되었다.

저본은 저자의 손주 사위인 홍춘년(洪春年)이 수합하여 선조 5년(1572)에 활자로 간행한 초간본을 바탕으로 5대손 징(澄)이 수집한 신원(伸冤) 관계 사실, 후손 홍수(弘洙)가 편찬한 세계, 연보 및 재차 수집한 시문과 함께 후손 승택(升澤) 등이 재편하여 고종 26년(1889)에 간행한 중간본이다. 울릉도 관련 내용이 「어촌집」 136면에 보인다.

2. 한국문집총간 제79책 「九畹集」

이춘원(李春元)이 저술한 문집으로 원집 4권·부록·보유를 2책으로 모아 놓은 목판본이다. 저자인 이춘원은 선조 4년(1571)에 태어나 인조 12년(1634)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초명은 신원(信元)이고, 자는 원길(元吉)이며 호는 구원(九畹)으로 본관은 함평(咸平)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으로 정유재란 때 참전하였고, 충청도 관찰사에 이르렀으나, 광해군 때 벼슬에서 물러났다. 저본은 저자의 아들인 초노(楚老)가 수집·편차하여 효종 7년(1656) 초간한 뒤, 보유가 추가로 판각되었다. 울릉도와 관련한 詩 2수가 본서 146면에 실려 있다.

3. 한국문집총간 제122책 「葵窓遺稿」

이건(李健)이 저술한 문집으로 12권 7책(457판)으로, 광해군 6년(1614)에서 현종 3년(1662)의 생을 살았다. 자(字)는 자강(子強)이고 호는 규창(葵窓), 명모당(命慕堂)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봉호는 해원군(海原君)이라 하였고,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종실(宗室)로서 시(詩), 서(書), 화(畵)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칭해졌다.

영인한 저본은 1712년 저자의 아들이 간행한 인본과의 대교내용(對校內容)이 부첨(附簽)되어 있는데, 이를 활자로 조판(組版)하여 광곽좌우(匡郭左右)에 이기(移記)하였다. 울릉도와 관련되는 내용은 21면에 실려 있다.

4. 한국문집총간 제165책 「三淵集」 1

김창흡(金昌翕)이 저술한 문집으로 원집 36권과 습유 32권을 합하여 34책(2727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김창흡은 효종 4년(1653)에서 경종 2년(1722)까지 살았던 인물로 자(字)는 자익(子益)이고 호는 삼연(三淵)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시호는 문강(文康)으로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였던 김상헌의 후손이고, 석실서원과 자운서원에서 이단상(李端相)에게 수학하였다. 성리학에 밝아 형 김창협과 더불어, 이이(李珣) 이후의 대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저본은 저자의 문인인 유척기(俞拓基) 등이 산정·편차하여 영조 8년(1732)에 초간한 원집에, 편집 경위가 불분명한 습유를 합부하였다. 원집 구성에서 시(詩)는 권 1~16에 실려 있고, 문(文)은 권 17~36에 실려 있다. 습유의 구성은 권 1~12까지가 시(詩)이고, 권 13~31까지는 문(文)이며 권 32는 부록으로 행장이 실려 있다. 울릉도와

관련된 사항이 176면에 있다.

5. 한국문집총간 제182책 『希菴集』

채팽윤(蔡彭胤)이 저술한 문집으로 29권 14책(1025판)의 목판본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인 채팽윤은 현종 10년(1669)에서 영조 7년(1731)까지 활동하였다. 자(字)는 중기(仲耆)이고 호는 희암(希菴), 은와(恩窩)이며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저본은 저자의 종손(從孫) 채제공(蔡濟恭)이 가장초고(家藏草稿)를 산정·편차하여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영조 52년(1775)에 간행한 초간본이다. 권1~20은 부(賦)·시(詩)이며, 권21~29는 문(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문집에는 울릉도의 지리와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긴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집의 25면에 실려 있다.

6. 한국문집총간 제187책 『訥隱集』

저자인 이광정(李光庭)은 현종 15년(1674)에 태어나 영조 32년(1756)에 沒하였다. 자(字)는 천상(天祥)이고 호는 늘은(訥隱)이며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저본은 저자의 손자인李宗勛과 문인들이 가장초고(家藏草稿)를 수집·편차하여 채제공(蔡濟恭)과 이상정(李象靖)의 교정을 거친 후, 손자인 이사훈(李師勛) 등이 부록을 첨가하여 순조 8년(1808)에 간행한 초간본이다. 문집의 구성에서 권1~3은 사(辭)·부(賦)·시(詩)를 수록하였고, 권4~21은 문(文), 권22는 부록으로 행장·묘지명이 실려 있다. 울릉도와 관련하여 문집의 148면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7. 한국문집총간 제232책 『豐墅集』 1

저자인 이민보(李敏輔)는 숙종 43년(1717)에서부터 정조 23년(1799)까지 살았으며, 자는 백눌(伯訥)이고 호는 상와(常窩), 풍서(豐墅), 회심와(會心窩)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본서는 18권 9책(730판)의 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저본은 저자의 자편고를 바탕으로 편차되었으나, 그 서사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문집 구성은 권1~5는 시(詩), 권6~18은 문(文)으로 구성되었으며 소(疏)·기(記)·제문(祭文)·묘지명(墓誌銘)·묘표(墓表)·시장(諡狀) 등이 실려 있다. 본서에 실린 문집 수록본은 권1~15까지의 시(詩)부분으로, 울릉도와 관련한 내용이 338면에 실려 있다.

8. 한국문집총간 제234책 『艮翁集』

저자인 이헌경(李獻慶)은 숙종 45년(1719)에서부터 정조 15년(1791)까지 활동하였던 인물로 초명은 성경(星慶)이고 자(字)는 몽서(夢瑞), 호는 간옹(艮翁), 백운집(白雲亭), 현포(玄圃)이며 본관은 전주(全州) 담양군파(潭陽君派)이다.

문집은 24권 12책(993판)의 목판본으로, 저본은 저자의 자편고를 아들인 정년(延年)과 손자 승진(升鎭)이, 1795년경 영천(永川)의 불사(佛舍)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다. 문집의 구성은 권1~9는 시(詩), 권10은 부(賦)와 여문(儷文)·상량문(上樑文) 등이며, 권11~23은 소(疏)·서(書)·제문(祭文)·갈(碣)·기(記) 등의 문(文)이며, 권24는 가정문견록(家庭聞見錄)을 부록으로 실었으며, 서와 발이 함께 있다. 울릉도와 관련한 내용은 문집의 11면에 실려 있다.

『한국문집총간』에는 南九萬의 『藥泉集』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해설을 첨부하였다. <임영정>

韓國의 古地圖

도서번호 : 독도 912.51 0892ㅎ

저 자 : 이찬

발행기관 : 범우사

발행년도 : 1991년

구 성 : 419면

한국의 대표적인 고지도들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채색으로 수록하고, 논문과 상세한 해설을 덧붙인 타블로이드판 대형 지도책이다. 총 243종의 고지도를 정리한 '채색 도판'과, 논고인 「한국의 고지도」, 「도판 해설」 등 삼부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 고지도의 대표적인 지도들을 유형별로 망라하고, 한국 고지도 발달에 관한 종합적인 논고를 수록하였다. 도판은 천하도(天下圖) 26점, 관방지도(關防地圖) 13점, 조선전도(朝鮮全

圖) 및 도별도(道別圖) 117점, 도성도(都城圖) 23점, 군현도(郡縣圖) 50점, 회화지도(繪畫地圖) 11점, 산도(山圖) 5점 등 고지도의 유형별로 여러 기관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고지도를 선별하여 시원스런 사진판으로 수록하였다.

논고는 조선시대 이전의 지도, 조선전기의 지도, 조선후기의 지도 등 3장으로 나누어 한국 고지도의 발달사를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정리하였다. 도판해설은 도판에 수록된 각 고지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수록하여, 수록 고지도의 서지, 제작시기, 제작자, 내용과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리학은 물론 미술, 건축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학 전반에서 폭넓게 이용되어 한국 고지도 연구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서 및 고지도의 간행으로 특히 외국에서의 한국 고지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카고 대학에서 1994년에 발행한 『지도의 역사(The History of Cartography)』 시리즈의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Volume 2 Book 2)의 한국편 서술 “Cartography in Korea”도 이 책의 출간에 의해 새롭게 쓰여질 수 있었다.

고지도는 목판본보다 필사본이 많고, 이들 필사본은 대체로 유일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지도 소장처에서는 자료의 보존상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본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열람자는 마이크로필름이나 복사본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도는 채색이고 대형이어서 복사본이나 마이크로필름 이용에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도의 영인본 간행, 전시회 개최 및 도록 출간, 지도책과 연구 편집서의 간행 등이 이루어져야 고지도의 연구와 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

단일 지도를 영인하여 간행할 경우 지도 자체에 대한 이해, 나아가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지역의 상세한 사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지도의 제작과 발달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지도들을 모아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전문 연구자의 작업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 책의 간행으로 한국 고지도의 풍부함과 독창성,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용으로,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책이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조선전도 및 도별도에 수록된 100여점의 지도, 군현지도 중 ‘울릉

도의도(鬱陵島外圖)' 등 지도는 동해, 독도, 울릉도에 관한 시대별 상황과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양보장》

韓國의 옛 地圖

도서번호 : 독도 912.51 0257 ㅎ
저 자 : 영남대학교 박물관 (편)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박물관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2권(도판편 222면, 자료편 199면)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고지도 140여 종 840점을 대형타블로 이드판에 축소 수록한 영인본 지도집이다. 제1권은 도판편이며, 제2권은 자료편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는 일본에서 제작된 한국 고지도 200여점도 포함되어 있다. 제1권 도판편에는 「천하지도(天下地圖)」 9점, 「조선전도 및 도별도」 120점, 「도성도(都城圖)」 13점, 「군현도(郡縣圖)」 73점, 「관방도(關防圖)」 11점, 「산도(山圖)」 및 경승도(景勝圖)」 8점, 「외국도」 10점, 「일제의 한국지도」 50점이 채색도판으로 수록되어 있다.

도판편과 자료편에 실린 세계지도 즉, 천하도를 통해 한국의 형태와 윤곽의 변천을 살필 수 있으며, 조선전도 및 도별도를 통해 동해, 울릉도 및 독도의 표시 여부 및 그 변화를 고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개항기에서 식민지강점기 초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조선 관련 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한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지도는 우리만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지도를 그리듯 외국에서도 여러 목적에서 우리 국토를 그렸다. 그 중 일본인들이 그린 다양한 지도들이 이 책에 제시되어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 지도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 일본에서의 한국 고지도 제작의 발달 과정을 보여 주며, 특히 동해·울릉도·독도의 표기 변화를 통해 동해 바다와 울릉도와 독도

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피게 해 준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조선문화를 배우려는 일본 지식인들의 지향성은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모사하여 「삼한세표(三韓世表)」(1747년)와 같은 지도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여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9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다수 제작하였으며, 그들의 목적에 맞게 여러 지도를 제작했음을 수록된 지도들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이 지도들은 18세기 중엽부터 1910년대까지의 지도가 대부분이다. 일본에서는 침략을 위한 조선지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며, 통치와 수탈을 위한 지도를 제작하려 했다. 명치유신(明治維新)과 더불어 일본은 중간 단계를 생략한 채 제국(帝國)으로의 길에 들어섰다. 유신 직후 정한론(征韓論)의 소용돌이는 조선의 지도에 대한 각계의 수요를 일으켰다. 일본은 급히 임진왜란때에 일본에 전해진 조선 전기의 지도를 모사하였는데, 대표적인 지도로 일본식의 극채색 목판화로 변용시킨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染崎延房, 1873년)가 있다. 따라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에서 표현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일본의 독자적 조선지도인 『참모국 조선전도(參謀局 朝鮮全圖)』(1894년, 초판 1876년 간행)는 중세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근대적 서양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전략용(戰略用) 지도로서 기능을 했을 이 지도는 민간에도 전파되어 작은 축적으로 편집되어 보급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범위는 조선과 요동반도(遼東半島) 서남단,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이르는데, 수심(水深)을 표시한 대동강·한강구·부산포·영흥만(大同江·漢江口·釜山浦·영흥(ヨンヒン)灣) 지도가 삼도로서 그려져 있어 조선에 대한 침투 전략을 엿 볼 수 있게 한다. 1874년 지도에 황기(皇旗)라는 국수적 연호를 쓴 참모국이 여기서 명치(明治)연호를 사용하면서 경도(輕度)도 동경(東京)이 아니라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축척에 일본리척(日本里尺)과 조선리척(朝鮮里尺)을 나란히 표시하였고 지명에 한자와 더불어 현지 발음을 표기한 편가명(片假名)을 기록한 것은 현장중심적 실용성의 추구를 보여준다.

육군참모국(陸軍參謀局) 또는 참모본부(參謀本部)가 추진한 지도제작 사업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하고 집요한 군사용 지리 정보수집, 즉 병요지지(兵要地誌) 작성의 주춧돌이자 상부 구조물이었다. 군부가 조선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조

사를 먼저 실시했으나, 이들 정보는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에야 학계나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주체는 협회(協會)라는 이름을 가진 각종 민간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상인들의 조사단체로서의 성격부터 학술단체적 성격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결국 단체들은 종합적 지역연구단체(地域研究團體)로 성장해 가는데, 조선지도(朝鮮地圖)들을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동경지학협회 조선전도(東京地學協會 朝鮮全圖)』(1894년)는 참모본부의 지도를 참조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흑룡회 만한신도(黑龍會 滿韓新圖)』(1903년) 역시 발행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참모본부의 지도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군부와 상인과 학계의 조사·연구가 단절되지 않고 유착되어 식민지를 비롯한 이웃 나라와 먼 나라에 접근하는 지지(地誌)조사가 이른바 일본 동양학(日本 東洋學)의 바탕이 되었다.

육군 참모본부의 첩보활동이 군사적인 것이었다면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은 보다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동경지학협회는 나중에 ‘동양학(東洋學)’을 발전시키는 데에 토대를 마련한 지역 연구단체들 중 가장 이른 1879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지학(地學)에 있어 경제·군무(軍務), 기타에 관한 유익한 사건의 발명이나 본회(本會)의 견문(見聞)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간편한 방법으로 이를 편찬·출판하여 사원의 강구(講究)에 제공하고 아울러 공중에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간기(刊記)에 의하면 당시까지 실측된 지도가 없어 기존의 몇 가지 지도를 절충하고 이미 수행한 바 있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내륙을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이 규격에 맞추어 편집한 것인 만큼 아쉬운 대로 쓸만한 지도가 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해안선은 각국의 해도에 의거하고 지명은 「조선관판팔도도(朝鮮官版八道圖)」를 따랐다고 하였다.

「흑룡회 만한신도(黑龍會 滿韓新圖)」는 러일전쟁(路日戰爭)이 벌어진 지 한 달 만인 1904년 3월 25일에 간행되었다. 이 지도는 동북(東北)아시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30년 전 강화도조약을 앞두고 참모국에서 간행한 「아세아동부여지도(亞細亞東部輿地圖)」와 대비를 이룬다. 참모국(參謀局)의 그 지도는 유신 직후의 지도인 만큼 일본 국토를 포함시켰으며 조선과 청국의 중심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대결하는 국면에서 이 지도는 한반도와 만주와 요동반도(遼東半島), 그리고 흑룡강(黑龍江) 건너 동(東)시베리아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 단위를 담아낸 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항이전 일본지도에서 울릉도(鬱陵島)의 명칭 표기는 울릉도(鬱陵島) 혹은 죽도(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 「증보개정 조선국지도(增補改正 朝鮮國地圖)」에는 조선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진 섬에 울릉도(鬱陵島)와 천산국(千山國)을 표기하여 울릉도(鬱陵島)가 천산국에 속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세아동부여지도(亞細亞東部輿地圖)」에는 울릉도(鬱陵島)를 죽도(竹島)로 기록하였으며, 독도(獨島)를 지나치게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 송도(松島)라 써 놓았다. 동아시아를 한 장의 지도에 담은 대축척 지도이면서 울릉도(鬱陵島) 뿐만 아니라, 독도(獨島)도 크게 표시된 점이 군사지도로서의 성격을 보인다.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에는 울릉도(鬱陵島)라 표기한 뒤 일본의 명칭 ‘죽도(竹島)’를 부기하였으며, 독도(獨島)는 ‘우산도(于山圖)’라 하였다.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의 두 섬을 강원도의 속도로서 황백색의 강원도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하여 울진현 옆에 그려 넣고 있다. 지도의 하단에 “울릉도(鬱陵島)는 일명 궁송도(弓嵩島)라 한다. 강원도의 속도로 삼척에서 수로(水路) 일천리이며 섬의 주위는 9백 4~5 십리이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오기팔도 조선국세견전도(五畿八道 朝鮮國細見全圖)」에는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를 각각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로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는 염기연방(染崎延房)의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의 표기도 동일하다.

「개정신휴 조선전도(改訂新鑄 朝鮮全圖)」는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로 보이는 섬의 윤곽만 나타나 있을 뿐 명칭 표기는 없다.

「동각 조선여지전도(銅刻 朝鮮輿地全圖)」에는 울릉도(鬱陵島)를 ‘죽도 일명 울릉도(竹島一名鬱陵島)’로 표기하고 독도(獨島)를 ‘송도(松島)’라 표기하였는데 울릉도(鬱陵島) 서쪽에 ‘우산도(于山島)’라는 도서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서양에서 울릉도(鬱陵島) 서쪽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을 표시한 지도를 모사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서 울릉도(鬱陵島)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었고, 「견원 조선팔도지도(桴原 朝鮮八道地圖)」에서는 울릉도(鬱陵島)로 보이는 섬 옆에 “일본에서는 죽도(竹島)라 부른다”라고 적어 놓았다. 이것은 조선식 지명을 위주로 한 것이다.

개항이 이루어진 1876년 전후는 국내외적으로 변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울릉도(鬱陵島)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군부에서는 울릉도(鬱陵島)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민간에서는 울릉도(鬱陵島)를 좋은 어장이라 여겼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불러오던 울릉도(鬱陵島)의 명칭을 ‘죽도(竹島)’라고 했으며, 새로운 섬(우리나라의 獨島)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이곳에 죽도라는 명칭을 붙여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에 명칭의 혼용을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지도에도 나타난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의 명칭 표기에서도 볼 수 있다. 개항이전에는 울릉도(鬱陵島)의 명칭에 ‘일명죽도(一名竹島)’ 혹은 ‘일본에서는 죽도(竹島)라 부른다’고 부기되어 있던 것이 울릉도(鬱陵島)는 ‘송도(松島)’로 독도(獨島)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도판해설에서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표기하였다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울릉도의 동쪽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설명이라 생각한다. 서양의 지도에 독도가 알려진 것은 1849년 이후이며 서양의 지도에서는 아르고노트가 다즐레의 서쪽에 위치한다. 지도를 모사하면서 서양의 지도에 있는 다즐레섬과 아르고노트섬을 송도(松島), 죽도(竹島)라고 표기한다. 그러나 그후 다즐레섬과 동일한 섬이라하여 지도상(地圖上)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르고노트섬은 그 결과 서양(西洋)의 지도에서는 아르고노트와 함께 죽도(竹島)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다즐레=송도(松島), 즉 울릉도(鬱陵島)가 송도(松島)라고 불리우게 된다. 막부 말기(幕府末期)부터 이러한 서양(西洋)의 지도(地圖)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죽도(竹島), 송도(松島)의 명칭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1880년 울릉도(鬱陵島)를 측량한 아마기호는 보고서에서 ‘송도 일명 울릉도(鬱陵島)’라고 하면서 울릉도(鬱陵島)에 송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1880년부터 수년간 일본 외무성(外務省)과 내무성(內務省)은 울릉도(鬱陵島)를 ‘죽도(竹島)’, 우산도(獨島)를 ‘송도(松島)’라고 부르고, 해군성에서는 울릉도(鬱陵島)를 ‘송도(松島)’, 우산도(獨島)를 ‘리앙코르드島’라고 불러 명치정부(明治政府) 내에서 울릉도(鬱陵島)에 대한 명칭에 혼란이 있던 시기가 있었다.

「대촌 조선전도(大村 朝鮮全圖)」에서는 울릉도(鬱陵島)를 ‘송도(松島)’로 독도(獨島)를 ‘죽도(竹島)’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세도(朝鮮國細圖)」에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독도(獨島)를 ‘우산도(于山島)’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1882년 제작된 것이나 조선초기의 지도를 저

본으로 한 지도로 울릉도(鬱陵島), 독도(獨島)의 명칭도 조선지도의 명칭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수 조선여지도(淸水 朝鮮輿地圖)」와 「참모국 조선전도(參謀局 朝鮮全圖)」에서는 울릉도(鬱陵島)는 ‘송도(松島)’로, 독도(獨島)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송도(松島)’는 오른쪽 외곽선에 닿아 있다. 「동경지학협회 조선전도(東京地學協會 朝鮮全圖)」에는 ‘울릉도(鬱陵島)’만을 표기하였다. 「조선해륙전도(朝鮮海陸全圖)」와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에는 울릉도(鬱陵島)는 ‘송도(松島)’로 독도(獨島)는 ‘죽도(竹島)’로 표기하였다.

「일청한신지도(日淸韓新地圖)」에는 울릉도의 명칭을 울도(鬱島)로 표기하였는데, 이전의 지도들과 다른 표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독도는 표시하지 않았다.

개항 후 19세기 후반까지 울릉도(鬱陵島)는 ‘송도(松島)’로, 독도(獨島)는 ‘죽도(竹島)’로 표기되던 명칭이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울릉도(鬱陵島)는 다시 ‘울릉도(鬱陵島)’로, 그리고 독도(獨島)는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죽도(竹島)’로 혼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찬 조선전도(新纂 朝鮮全圖)」, 「Korea」, 「송산당 한국대지도(嵩山堂 韓國大地圖)」에는 독도는 표기하지 않고 울릉도만 울릉도(鬱陵島)라 표기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를 행정구역 개편으로 울도(鬱島)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지도에는 아직도 울릉도(鬱陵島)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흑룡회 만한신도(黑龍會 滿韓新圖)」에는 울릉도(竹島), Ullneung I 등 국문, 일문, 영문 표기 등으로 이 시기의 지도제작이 청일전쟁과 다른 세계로의 진출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항 전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 지도에 울릉도, 독도를 우리의 고유명칭인 울릉도(鬱陵島), 우산도(于山島)로 표기하거나 일본의 명칭인 죽도(竹島), 송도(松島)라고 표기하였다. 그 중 2종에서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를 병기하고 있다.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를 병기한 지도에는 “울릉도(鬱陵島), 일본에서는 죽도(竹島)라 부름”, “죽도일명울릉도(竹島一名鬱陵島)”라고 표기하여 울릉도가 조선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기가 보인다. 한편 개항 전 지도에 표현된 독도의 명칭은 4종에서만 보이는데, 그 중 송도(松島)가 2종, 우산도(于山島)가 2종으로 나타난다. 또한 울릉도는 표기되어 있으나 독도는 없는 지도들이 많은 것으로 일본도 개항 전에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항 후에 일본에서 제작된 조선지도에는 울릉도(鬱陵島)의 명칭 표기가 모두 되어 있으며, 독도(獨島)의 명칭도 개항 전에 비해 많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지도에 울릉도의 명칭이 울릉도(鬱陵島)로 표기된 것이 7종이며, 죽도(竹島)로 표기된 것이 2종이다. 이 중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를 병기한 것이 1종 있다. 한편, 울릉도(鬱陵島)의 명칭이 송도(松島)라고 표기된 것이 6종으로, 개항 전에 울릉도(鬱陵島)를 죽도(竹島)라고 부르던 일본의 명칭이 송도(松島)로 혼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개항 후 한국에서 만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울도(鬱島)의 명칭이 표기된 지도도 2종 있다. 독도는 개항이전에 총 9종의 지도 중에서 4종에만 표기되었던 것이, 개항 후에는 총 17종 중 9종에 독도의 명칭을 표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죽도(竹島)로 표기한 것이 8종이며, 우산도(于山島)로 표기한 것이 1종 있다.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 지도에서 울릉도·독도(鬱陵島·獨島)의 명칭은 울릉도(鬱陵島), 죽도(竹島), 송도(松島), 울도(鬱島) 등 국문표기와 일문표기가 모두 혼용되고 있으며, 독도의 경우에도 송도(松島), 죽도(竹島)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항 전에는 울릉도의 명칭이 주로 울릉도(鬱陵島), 죽도(竹島)로 표기되던 것이 개항 후에는 울릉도(鬱陵島), 송도(松島)의 명칭으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명칭이 죽도(竹島)에서 송도(松島)로 전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의 명칭도 개항 전에 송도(松島)가 지배적이던 것이 개항 후에는 죽도(竹島)의 표기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이 혼용되는 것은 이 시기에 일본은 울릉도·독도(鬱陵島·獨島)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며, 지도 제작에서도 조선지도나 외국의 지도를 모방한 지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명칭에 혼란을 보인 것으로 본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표시를 보면,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일본에서 제작한 한국지도의 울릉도·독도의 위치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개항 전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에서 울릉도 외에 섬을 표시한 지도는 총 9종 중에 5종이다. 이 중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표기한 지도는 4종이 있다. 울릉도에 대한 독도의 상대적 위치는 남동쪽이 2종, 남쪽이 1종, 남서쪽이 1종으로 주로 남쪽, 남동쪽에 표시되어 있다. 개항 후 지도에서는 총 17종 가운데 울릉도 외에 섬에 독도의 명칭을 표기한 지도가 9종으로 울릉도 북서쪽에 독도를 표시한 지도가 6종으

로 가장 많고, 서쪽에 1종, 남서쪽에 2종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에서 독도(獨島)를 울릉도(鬱陵島)의 서쪽에 표시한 지도는 『오기팔도(五畿八道 朝鮮國細見全圖)』와 「조선국세도(朝鮮國細圖)」가 있으며, 울릉도(鬱陵島) 북서쪽에 독도(獨島)를 표시한 지도로는 「참모국 조선전도(參謀局 朝鮮全圖)」, 「조선해륙전도(朝鮮海陸全圖)」,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등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와는 달리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에 독도(獨島)의 위치가 서쪽 혹은 북서쪽에 많이 위치하게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 지도를 제작할 때 타국의 지도를 모사하거나 서양의 지도들을 옮겨왔기 때문이다.

독도(獨島)를 울릉도(鬱陵島)의 남쪽 혹은 남동쪽에 표시한 지도로는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 「아세아동부여지도(亞細亞東部輿地圖)」, 「동각 조선여지전도(銅刻 朝鮮輿地全圖)」, 「대촌 조선전도(大村 朝鮮全圖)」, 「청수 조선여지도(淸水 朝鮮輿地圖)」 등이 있다. 지금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독도의 위치와 유사하게 표현된 지도는 1905년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양보경》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도서번호 : 독도 910.01 ㅎ155ㅎ
 저 자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발행기관 : 민음사
 발행년도 : 1991년
 구 성 : 334면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가 1987년부터 개최했던 ‘한국전통지리학 연속강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이 강좌는 문화역사지리학에 관심을 지녔던 지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으나, 역사·건축·조경 등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공개연속강좌로 진행되어 일반 교양인도 다수 참여했다. 그 결과 풍수

등 한국의 전통지리학과 전통지리사상, 한국의 역사지리적 전통 문화에 대한 전문인과 일반인의 관심을 확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전통지리학 연속강좌는 서양 기원의 현대지리학 위주의 우리나라 지리학계의 현실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지리학을 찾아 보려는 운동이었고, 또 한편 현재가 중심인 평면적 지리학에서 역사적인 전통에서 이룩된 문화·역사·지리적인 지리학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지리학을 가치중립적인 사회과학의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투영된 국학연구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 지리학을 중·고등학교나 대학의 교과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유익한 지적 양식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학문으로 들어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개강좌의 형식을 취한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였다.

이 책의 기본 논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국토가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 문화와 역사적인 과거가 새겨진 문화·역사적 산물이라는데 있다. 이 책의 편집 목적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표의 사물과 현상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분석하며 또 우리가 의미를 미처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면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 실학 지식인의 한역 서학지리서 이해’(이원순)는 유교적인 한국 지성에게 새로운 충격을 준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지리서의 내용과 전래에 대한 연구이며, ‘다산 정약용의 지리사상’은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의 지리사상을, ‘한국 풍수사상의 이해를 위하여’(최창조)는 풍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실제를, ‘조선시대의 지도책’(이찬)과 ‘개항이전까지 외국에서 출판된 지도’(한상복)는 조선시대 지식인의 공간지식과 국토에 대한 인식을 한국의 지도책을 통해,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을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서양의 지도를 통해 살펴본 글이다. 또한 ‘기후와 문화’(김연옥)는 우리 조상들이 기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용했는가를 살피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역사기후학적 입장에서 고찰한 글이다. ‘유교적 촌락경관’(김덕현)은 한국 촌락경관에 깊은 영향을 준 유교적 지리사상과 가치관이 실제 문화경관에 반영된 모습을 고찰한 연구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서울의 교통수단과 교통로’(이은숙)는 역사교통지리학적인 입장에서 조선시대의 서울의 교통을 분석한 연구이며, ‘조선시대 곰소만의 수산업과 어촌’(김일기)은 근대화 이전 한국 어촌의 발달과 성쇠, 그리고 전통적인 어로법과 어구, 제염법 등을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복원한 연구이다.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이문중)은 태안반도 촌락발달의 역사에서 씨족집단

의 역할을 족보와 읍지, 현지답사를 통해 밝힌 논문이다. 이 책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국토를 변모시켜 온 한국인의 지리사상과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가 투영된 문화경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역사지리학과 전통지리학의 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일반인에게 확산시킨 최초의 대중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책에 수록된 ‘개항이전까지 외국에서 출판된 지도’ 논문은 ‘나홍선의 조선도’(1555년)부터 서양의 고지도들, ‘일본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1875년) 및 ‘사와이의 조선국전도’(1875년)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대표적인 36종의 지도를 소개하고, 그 지도들에 표현된 한반도 모습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 글이다. 이 글을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발달과정과 지도의 계열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글 속에 제시된 지도에는 동해, 울릉도, 독도 지역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다. <양보경>

韓末外國人記錄

도서번호 : 독도 951.59 B622k, 독도 951.59 S194u

저 자 : 헐버트 外 (신복룡外 역)

발행기관 : 집문당

발행년도 : 1999~2000년 (초판 1973년)

구 성 : 18권 21책

본서는 구한말 당시 조선에 주재하던 선교사, 의사, 여행가, 영사관 직원, 외국인 교수, 목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 외국인들이 견문한 조선에 관한 기록들을 번역하여 1973년에 초판을 냈고, 다시 1984년에 재판출간을 출간한 후 전체를 총서로 엮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순차적으로 출간한 것이다.

총서의 대표 역자는 신복룡이고, 장우영, 최수근, 김운경, 정성자 등이 공동으로 번역에 참가하였다. 각 책마다 성격에 맞는 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서의 연속물로

간행되고 있다. 10·11·12책이 한 권으로 묶였으며, 13·14책이 역시 한 권으로 묶여서 모두 18권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급박하던 구한말의 정세와 연관된 글이 많으며 국가론, 독립운동, 풍물, 지리, 외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음이 특징이다. 각 권별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韓末外國人記錄 1 : Homer Bezaleel Hulbert, 『대한제국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 1906.

Homer Bezaleel Hulbert가 지은 이 책은 1906년 영국 런던의 William Heinemann 출판사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어 알려졌다. 필자인 헐버트 교수가 본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1860년대부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까지의 역사이다.

책의 구성은 모두 6편 35장으로 이루어졌다. 제1편 서설, 제2편 역사, 제3편 산업, 제4편 문화와 예술, 제5편 사회제도, 제6편 결론의 형태를 취하면서, 각 편마다 한국의 중요한 사건과 역사, 재정 및 교육제도 장례절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소재를 엮고 있다. 특히 제2편의 역사에서는 한국이 처한 현실과 일본과 러시아의 음모를 소개하고 러일전쟁 및 국모시해사건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치밀한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 48장에 이르는 당시의 사진을 함께 실고 있다.

2. 韓末外國人記錄 2 : Frederick Arthur McKenzie, 『대한제국의 비극』 The Tragedy of Korea, 1908.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1860년대부터 을사보호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가 음울한 식민지 지배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저자인 맥켄지가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원저자인 매켄지(Frederick Arthur McKenzie)는 1869년 3월 캐나다의 퀘벡에서 태어나 장성하여 영국으로 건너가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해외특파원으로서의 이름을 날렸다. 그는 특히 1904년에는 런던의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극동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러일전쟁을 종군한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러일전쟁의 종식과 함께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였다.

매켄지가 2차에 걸친 방한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쓴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은 그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1907년 제천 일대의 의병활동과 제천의병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히 밝히는 등 의병중군기로서는 벽안(碧眼)의 제3국 사람이 쓴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쓰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이 일본에 병탄된 이후의 시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Korea's Fight for Freedom, Fleming H. Revell Co., New Jersey, 1920)』을 저술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 책의 구성은 총 21장의 본문 구성과 부록 및 수십 장의 사진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본문은 ‘청일전쟁(淸日戰爭)’, ‘을미사변(乙未事變)’, ‘아관파천(俄館播遷)’, ‘조약의 체결과 위반’, ‘일본의 만행(蠻行)’, ‘의병과 더불어’ 등의 항목을 통해 급박하게 진행되던 대한제국 말기의 정치·외교상황과 의병항쟁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서는 「한국관계조약집(1876~1905)」의 내용을 통해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상호조약의 전말을 소개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하와이 교민의 청원서(1905)」 전문을 소개하였다.

3. 韓末外國人記錄 3 : William Elliot Griffis, 『은자의 나라 한국』 *Corea : The Hermit Nation*, 1907.

William E. Griffis가 지은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 The Hermit Nation)』은 헐버트(Homer B. Hulbert)교수의 『대한제국멸망사(The Passing of Korea)』와 함께 서구 선교사들이 쓴 한국사 중에서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소 다르다. 헐버트 교수가 한국에서 거의 반생을 보내면서 한국 측의 사료에 의해 기술한 반면, 본서는 필자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측 사료에 의거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서술에는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서는 전 53장의 3부작으로 되어 있다. 애당초 1882년의 초판에서는 전 48장이었던 것이 1907년의 제8판에서는 1906년 가을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사실 중에서 한국의 경제적 조건, 국제관계, 중국인과 일본인, 청일전쟁, 대한제국,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 을사조약 등의 역사적 사건들의 전말을 엮어 구성한 5장이 추가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1부는 고대·중세사이며, 제2부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제3부는 근현대사이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제1부는 진부한 내용이 많은 반면, 제2부와 제3부는 이 분야에 관한 특징들을 잘 가려 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3부에 수록되어 있는 한말외교사에 관해서는 필자가 직접 목격했거나 근거리에서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진 도판이 있는데, 한국의 강역과 관련되는 국경 도판과 신미양요, 병인양요 관련 사진 및 오페르트 도굴사건 등의 도판이 눈에 띈다.

4. 韓末外國人記錄 4 : Horace Newton Allen, 『조선견문기』 Things Korean, 1908.

본서는 1884년 7월 20일 조선에 입국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부상당한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의술에서 외교관으로 변신한 알렌의 저술이다. 그는 1887년 주미전권공사 박정양(朴定陽)의 고문이 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894년부터는 인술(仁術)과 선교(宣敎)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주한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본격적인 외교관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알렌은 공사(1897), 총영사(1898), 전권공사(1901)를 역임하였으며, 문화적으로는 1892년에 『코리언 리포지터리(Korean Repository)』를 발간하고 1900년에는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한국지부를 결성하였다. 그는 정치·문화·종교·상업은 물론 의학 측면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다가 1904년 을사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이듬해에 귀국하여 고향에서 조선 관계 저술과 의술로 여생을 보내었다.

본서는 총 16장의 본문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갑신정변과 조선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견문록의 서술 형태를 빌어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의 한미관계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채무」라는 글을 통해 외교관과 전권공사로서의 그의 생각을 서술하였다.

5. 韓末外國人記錄 5 : James Scanth Gale, 『전환기의 조선』 Korea in Transition, 1909.

본서는 토론토대학을 졸업한 후 1888년에 한국에 와서 서울, 송도, 평양, 의주, 봉천, 동만주 고려촌(高麗村), 함흥, 원산 등지에서 순회 설교를 했으며, 성서뿐만 아니라 『천로역정(天路歷程(The Pilgrim's Progress))』, 『사과지남(辭課指南)』 등을 번역 출판하는 한편, 『한영대사전(A Korean English Dictionary)』을 편찬함으로써, 우리

나라 어문학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게일의 저술이다.

본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리적인 연혁과 민족의 특징 및 조선의 현재 상황을 중점적으로 그리면서 선교활동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의 미래에 대한 서술도 담고 있다.

6. 韓末外國人記錄 6 : Calton Waldo Kendall,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 The Truth about Korea, 1919.

본서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난 1919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판된 것으로 세계의 여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를 위해서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를 겨냥하여 쓰여진 것이다.

저자인 켄달(Calton Waldo Kendall)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대학을 졸업한 후 런던, 파리, 로마, 마드리드 등지를 여행하며 세상의 견문을 넓혔으며, 학업을 마친 이후에는 언론인으로서의 일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래드네크(Odlaw Ladnek)라는 필명으로 문필가의 삶을 살았다. 특히 그는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 했고, 전쟁의 본질을 연구하였다.

본서는 총 7장의 본문과 부록 및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의 독재적 지배에 관한 내용과 3·1운동 및 외신보도와 제암리 학살사건을 다루었으며, 정부공문과 선언서를 모아 구성하였으며, 부록으로 한일합병조약과 105인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다.

특히 3·1운동 전사(前史)와 전개과정은 그 사건 자체를 가장 근거리에서 바라본 객관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히 가치 있는 것이며, 신한청년회(新韓靑年會) 대표 김구식(金奎植)의 명의로 파리 평화회의에 제출된 청원서와 각서, 당시의 외신보도, 그리고 임시정부 제반문서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7. 韓末外國人記錄 7 : Frederick Arthur McKenzie, 『한국의 독립운동』 Korea's Fight for Freedom, 1920.

본서의 저자인 매켄지(Frederick Arthur McKenzie)는 1869년 캐나다의 퀘벡에서 태어난 스코틀랜드계 영국인으로서 영국에 건너가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해외특파원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그는 특히 1904년에는 런던의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극동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러일전쟁을 종군한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러일전쟁의 종식과 함께 일시 귀국하였으나, 한국에 관한 관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 1906년에서 1907년까지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멸망해 가는 한국의 현실을 목격, 이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쓴 것이 앞에서 소개한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 1908)』이었다. 이 책이 의외로 서구인들의 찬사를 얻어 재판(再版)을 요청 받자 1919년의 3·1운동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한국사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본서이다.

본서는 한국의 개항을 필두로 하여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갑신정변, 을미사변, 독립협회, 을사보호조약, 의병 등 『대한제국의 비극』과 부분적으로 중복하면서 대한제국의 멸망, 일본의 철권정치와 고문정치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3·1운동은 5장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술하였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저서들이 본 총서를 구성하고 있다.

- 韓末外國人記錄 8 : Owen Nickerson Denny, 『청한론(외)』 China and Korea ; Owen Nickerson Denny Documents on Korea.
- 韓末外國人記錄 9 : Paul Gerog von Moellendorff, 『뮐렌도르프 자전(외)』 P. G. von Moellendorff : Ein Lebensbild ; A Reply to Mr. O. N. Denny's Pamphlet entitled : China and Korea, 1930.
- 韓末外國人記錄 10 : Hendrick Hamel, 『하멜표류기』 Narrative and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1813.
- 韓末外國人記錄 11 : Jean-Baptiste Du Halde, 『조선전』 Kingdom of Corea in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1741.
- 韓末外國人記錄 12 : Basil Hall, 『조선서해 탐사기』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1818.
- 韓末外國人記錄 13 : Emily Georgiana Kemp, 『조선의 모습』 The Face of Manchuria, Korea, Russian Turkestan, 1911.
- 韓末外國人記錄 14 : Ellasure Wagner, 『한국의 아동생활』 Children of Korea, 1911.
- 韓末外國人記錄 15 : Lillias Horton Underwood, 『상투의 나라』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1904.
- 韓末外國人記錄 16 : William Richard Carles, 『조선풍물지』 Life in Corea,

- 1888.
- 韓末外國人記錄 17 : George William Gilmore, 『서울풍물지』 Korea from its Capital : with a Chapter on Mission, 1892.
 - 韓末外國人記錄 18 : William Franklin Sands, 『조선비망록』 Undiplomatic Memories, 1930.
 - 韓末外國人記錄 19 : Arnold Henry Savage-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Corea or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95.
 - 韓末外國人記錄 20 : Ernst Jacob Oppert, 『금단의 나라 조선』 A Forbidden Land : Voyage to the Corea, 1880.
 - 韓末外國人記錄 21 : Isabella Bird Bishop,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rs, 1897. <임영정>

海東繹史(해동역사)

도서번호 : 독도 951.1 ㅎ165 ㅎ

저 자 : 韓致齋

발행기관 : 景仁文化社(影印本)

발행년도 : 1973年(원본 1823년)

구 성 : 국판 전 2책

본서는 조선 후기 한치윤이 찬술한 기전체의 한국통사이다. 본편 70권과 그의 조카 한진서(韓鎭書)가 보충한 속편 15권을 합쳐 모두 85권이다.

저자 한치윤(韓致齋)은 1765년(영조 41년)에 헌납(獻納:사간원 정5품 직) 벼슬을 지낸 덕량(德良)의 손자로 태어나 1814년(순조 14년) 까지 살았던 인물로, 자를 대연(大淵)이라 하였으며, 본관은 청주이다. 1789년(정조 13년) 진사에 합격한 후 대과(大科)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함으로써, 그 결실로 만년에 해동역사(海東繹史) 71권을

남기게 되었다.

본서는 한치윤이 죽기 10여년전부터 착수하여 본편 70권만 이루고 죽자,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지리고 15권을 제자인 동시에 혈족인 조카 한진서(韓鎭書)가 속편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의 찬술 동기는 종래의 한국사가 영성하고 조잡하게 편찬되어 이를 바로 잡고 객관적인 한국사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객관적인 찬술을 위하여 550여종의 인용서를 동원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중국의 사서 523종, 일본의 사서 22종 외에 한국의 기본서를 참고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체재는 정사체(正史體)인 기전체(紀傳體)를 따랐으나 표(表)는 생략하였고, 편찬 방법은 고대에서 고려까지의 왕조를 세기(世紀)로 삼고, 지(志)와 전기(傳記)를 덧붙였다. 전기를 인물고(人物考)라 하였다.

방대한 인용서에서 한국관계의 기사를 모조리 발췌한 뒤 이들을 세기, 지, 전기로 유취하여 편찬하고, 그들 기사에 잘못이 있으면 안서(按書: 저자의 견해)를 병기하여 바로잡거나 자기의 의견을 곁들이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원문은 모두가 외국의 사료(史料)를 취하여 엮은 한국의 통사이고, 여기에 편찬의 의견과 교감(校勘)을 붙이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지(志) 부분은 한국의 문화사적인 발달상황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편찬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속편의 지리고는 고증(考證)면에서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료적 비판이 제대로 되지 못한 외국의 자료를 그대로 뽑아서 실은데서 온 잘못된 서술 내용이 많고 한국사의 기년(紀年)까지도 중국중심으로 삼았다는 약점 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있는 자료를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취하여 한국의 역사를 귀납적으로 객관화시켰으며, 특색이 있고 저자 나름의 역사해석과 고증을 시도하였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본편 70권 보다는, 그의 조카 한진서(韓鎭書)가 보충한 속편 15권 1책인 해동역사속(海東繹史續), 일명 해동역사지리고(海東繹史地理考) 부분이다. 특히, “文獻備考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島即倭所謂松島也(문헌비고에 울릉우산이 모두 우산국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다)”라고 하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헌비고(文獻備考)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로 보이는데, 일본

인들이 우산도를 송도라고 지칭한다는 것을 1770년 이전에 이미 조선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인들이 우산도를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어 독도 명칭연구에 참고가 될 만하다. 《양태진》

海東地圖(해동지도)

도서번호 : 독도 915.51 ㅎ174

저 자 :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원본 미상)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규장각(影印本) (원본 미상)

발행년도 : 1995년 (원본 18세기 중엽)

구 성 : 3권(상 273면, 하 233면, 해설·색인 509면, 원본은 8첩)

18세기 중엽에 8첩으로 편찬된 채색필사본 전국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를 2권으로 축소 영인하고, 별도의 해설·색인집을 1권으로 작업하여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든 대형 지도책이다. 단일종의 고지도를 영인한 최초의 사례가 된 영인본 지도집으로, 이후 규장각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고지도를 영인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상권에는 「천하도(天下圖)」, 「(중국)십삼성도(十三省圖)」, 「황성도(皇城圖)」, 「북경궁궐도(北京宮闕圖)」, 「유구도(琉球圖)」, 「왜국전도(倭國全圖)」,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真分界圖)」,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 경기도 도지도 및 42개 군현의 각 군현지도·진지도, 충청도 도지도 및 54개 군현의 각 군현지도·진지도, 경상도 도지도 및 70개 군현의 각 군현지도·진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하권에는 전라도 도지도 및 56개 군현의 각 군현지도 「제주삼현도」, 「황해도 도지도」 및 23개 군현의 각 군현지도와 「해서일로영애」 지도, 강원도 도지도 및 26개 군현의 각 군현지도 및 「울릉도」 지도, 함경도 도지도 및 24개 군현의 군현지도와 「함관령」, 「마운령」, 「마천령」 지도, 평안도 도지도 및 42개 군현의 각 군현지도

와 「폐사군」·「관서일로영애」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해설 및 색인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해설」로 5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고지도의 발달」(이찬), 「조선시대 관찬지도 제작의 역사적 배경」(한영우·배우성), 「고지도와 과학기술」(전상운), 「한국의 고지도와 회화」(안휘준), 「군현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양보경) 등으로 한국 고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의 의의, 역사학·과학사·미술사 입장에서 한국 고지도의 특성 등을 접근한 논문들이다. 제2부는 「색인」으로 370장의 지도에 쓰인 지도 속의 지명과 주기 및 설명에 나타난 지명들을 ‘음순색인’과 ‘유형별색인’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유형별 색인은 지명의 유형을 행정, 자연, 경제, 교통, 군사, 문화 등 6개의 대항목으로 나누고, 다시 6~13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군현지도 단위의 상세한 색인 작성은 최초의 일로서, 조선시대의 지명 파악에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3부는 「통계」로서 『해동지도』에 수록된 호구(戶口) 즉 인구, 전결(田結) 즉, 토지면적, 곡물총수, 군병(軍兵)총수에 관한 자료를 별도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18세기 중엽 지방 각 군현의 지역별 실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국지도인 「대동총도(大東總圖)」(세로 257.7cm 가로 157.7cm), 조선의 북부와 만주 일대를 그린 「서북피아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세로 181.1cm 가로 229.3cm)는 크기가 대형이어서 별도의 낱장지도로 영인, 첨부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는 군현지도의 발달이 매우 활발하여, 지도 제작의 발달을 주도했다. 군현지도란 조선 시대 지방 행정의 기본 단위였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대상으로 하여 그린 지도로서, 군현도(郡縣圖) 또는 읍지도(邑地圖)로도 불렸다. 전국 각 군현의 지도를 모아 지도책이나 지도첩으로 만든 군현지도집은 방대한 분량, 내용의 상세함, 전국의 모든 지역을 한 종의 지도책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세기 군현지도집 중 『해동지도(海東地圖)』는 여타 지도들과 여러 점에서 상이하여 주목되는 지도집으로서, 유사한 지도가 남아 있지 않은 유일본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해동지도』 원본은 각 군현별로 그린 370종의 지도를 8첩에 수록한 필사본 군현지도집이다. 세로 47.5cm 가로 30cm의 지도책에 일정한 규격의 지도들이 그려진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이라 할 수 있다. 원본의 각 첩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첩(金) : 경기도(京畿圖), 경기전도(京畿全圖), 경성도(京城圖), 송도도(松都圖), 강도도(江都圖), 남한도(南漢圖), 각읍도(各邑圖), 영종도(永宗圖), 덕적도(德積圖)
- 제2첩(石) : 해서전도(海西全圖), 각읍도(各邑圖), 영애도(嶺隘圖), 관서전도(關西全圖), 각읍도(各邑圖), 폐사군도(廢四郡圖), 영애도(嶺隘圖)
- 제3첩(絲) : 관동전도(關東全圖), 각읍도(各邑圖), 울릉도도(鬱陵島圖), 북관전도(北關全圖), 각읍도(各邑圖), 함관령도(咸關嶺圖), 마운령도(磨雲嶺圖), 마천령도(磨天嶺圖),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
- 제4첩(竹) : 서북피아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
- 제5첩(發) : 영남전도(嶺南全圖), 각읍도(各邑圖), 조령산성도(鳥嶺山城圖), 통영도(統營圖), 조령전도(鳥嶺全圖)
- 제6첩(土) : 호서전도(湖西全圖), 각읍도(各邑圖), 서천포도(舒川浦圖), 수영도(水營圖), 안흥도(安興圖), 마량도(馬梁圖), 평신도(平薪圖), 소근도(所斤圖), 십삼성도(十三省圖), 천하도(天下圖), 황성도(皇城圖), 북경궁궐도(北京宮闕圖), 유구도(琉球圖), 왜국전도(倭國全圖)
- 제7첩(革) : 호남전도(湖南全圖), 각읍도(各邑圖),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 제8첩(木) : 팔도총도(八道摠圖)(내제內題 : 대동총도大東摠圖)

『해동지도』는 「천하도(天下圖)」와 같은 세계지도로부터 십삼성도, 황성도, 북경궁궐도, 유구도, 왜국전도와 같은 외국지도, 조선여진분계도·요계관방도와 같은 국경 지역 지도, 팔도의 도별 지도, 330여 군현지도, 영종도(永宗圖)·덕적도(德積圖)와 같은 진보지도(鎭堡地圖), 그리고 영애도(嶺隘圖)·함관령도(咸關嶺圖)와 같은 군사도 로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8첩에는 「대동총도」, 제4첩에는 「서북피아양계전도」 등 대형 낱장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지도, 경도(京都), 송도(松都), 강도(江都), 남한산성(南漢山城) 등 주요 도시와 주요 성곽, 그리고 도지도(道地圖) 및 규모가 큰 군현의 지도는 양면에 걸쳐 그려져 있다. 또 주기의 내용이 많은 경우 지도 여백에 주기를 모두 기록하지 못하여 설명만 기록된 면도 있다. 예를 들면, 도지도에 이어지는 설명만 기록된 면이 대표적이

다. 군현지도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경도·송도·강도(江都), 경상도의 진주, 전라도의 전주, 함경도의 삼수·종성·무산 등은 지도에 이어 설명면이 계속되고 있다.

『해동지도』의 도지도와 군현지도는 지도와 주기(註記)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군현지도의 지도에는 산천(山川), 면(面), 관아(官衙), 역원(驛院), 진도(津渡), 제언(堤堰), 교량, 서원, 향교, 누정(樓亭), 능묘(陵墓) 등 고적(古蹟), 단묘(壇廟), 강계(疆界), 창고(倉庫) 등이 그려져 있다. 가장 간략하게 기록된 충청도의 주기의 경우, 호구(戶口), 전답(田畝), 곡물총수(穀物總數), 군병총수(軍兵總數), 면명(面名)이 적혀 있다. 경기도·경상도·전라도와 같이 풍부한 주기(註記)를 기록한 지역에는 연혁, 산천, 고적, 영애, 강계, 누정, 불우, 사묘, 서원, 토산, 제언, 역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지도의 구성과 체제 상의 특징으로 첫번째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으로는 크기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타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처럼 주기를 지도 이면에 기록하지 않고, 지도의 여백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지적인 내용을 지도와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에 대한 파악이 한 면에서 한 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편리한 체제이다. 또한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군현지도집이지만, 넓게는 세계지도로부터 지방 군현에 소속된 진보(鎭堡)의 지도까지 포함한 시야가 매우 넓은 지도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 일본, 유구와 함께 중국 수도의 지도인 ‘북경궁궐도’, ‘황성도’ 등의 지도도 수록하여, 외국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다.

『해동지도』는 도별로 작성된 원본을 일차 정서한 지도로 보인다. 전체 지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색과 산지의 표현 등 지도를 그릴 기법, 주기의 내용과 형식 등을 볼 때 도별(道別)로 다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경상도·전라도 일부 지역·함경도의 군현지도들이 상세한데 비하여, 충청도·강원도·평안도의 군현지도들은 소략한 편이다. 그리고 도별로 작성된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에 다시 주기를 쓰고 장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호구(戶口) 통계이다.

도지도(道地圖)는 지도 여백, 또는 도에 관한 설명면에 도의 총인구를 기록하였으며, 군현지도의 주기에 군현인구를 기록하였다. 도인구는 당연히 그 도에 소속된 군현의 인구를 합한 수치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동지도』의 인구는 도인구 자료와 군현인구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 충청도·경상도·전라도는 도지도의 호수가 더 많으

며, 경기도·황해도·강원도·함경도·평안도는 군현지도를 합한 호수가 더 많다.

도지도(道地圖)에 기록된 도별 호수는 1729년 자료이다. 그러나 군현지도에 기록된 인구는 편차가 심하여 기준 시기를 찾기가 어렵다. 『해동지도』 중 군현지도에 기록된 호구는 1740년대의 자료라고 추정된다.

이 지도의 여러 도폭 중 특히 함경도, 충청도 등에는 거의 모든 군현에 ‘비도(備圖)’와 비교를 한 첨지(添紙)가 붙어 있다. ‘비도’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해동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을 첨가하여 그려 놓았다는 것이 첨지의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도’는 비변사(備邊司)에 소장되어 있던 군현지도일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비변사인(備邊司印)’이 찍혀 있는 지도들이 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1리 방안 위에 그려진 도별(道別) 군현지도첩들이 『해동지도』에서 말하는 ‘비도’로 추정된다. 그것은 첨지에 쓰여진 내용을 『호서지도(湖西地圖)』 등 ‘비변사지도’에 기록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비변사지도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동지도』가 현재 모습의 책으로 엮어진 것은 ‘비변사지도’가 편찬된 이후, 즉 1747~1750년 이후라고 추정된다.

군현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730년대 후반~1740년대 초까지 군현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반영되어 있다. 즉, 1735년 평안도 희천(熙川)의 구인령의 축성, 1737년 경상도 거창의 민충사 건립, 1740년 경기도 덕적도진(德積島鎭)의 설치와 첨사(僉使) 배치, 1741년 경기도 영종포진(永宗浦鎭)이 수군첨사(水軍僉使)로 승격된 사실들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내용 중에서는 특히 도로와 영애(嶺隘)가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다른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들이 가진 중요한 단점 중의 하나가 도로 표시의 미비였다. 도로를 그리지 않은 지도가 대부분인데 비하여 『해동지도』는 세로(細路)까지도 표시하였다. 특히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에서 현저하다. 황해도와 평안도에는 ‘해서일로영애도(海西一路嶺隘圖)’, ‘관서일로영애도(關西一路嶺隘圖)’를 수록하여 대신하였으며, 함경도에는 마천령·마운령·함관령 등 고개의 지도를 별도로 수록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덕적도 지도에는 해로(海路)를 대중소(大中小)로 구분하기도 하여 이 시기의 육로, 수로 교통의 활발한 개척과 이용, 상업 유통 경제의 증가와 관련시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내용이다. 즉 「해동지도」는 내용상으로 18세기 전반에 일어난 중요한 지역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동지도』는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이지만, 이 유형의 군현지도집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지도집이다. 상세한 전국지도와 관방지도의 수록, 지도와 주기의 동시 수록, 도로(道路)·영애(嶺隘) 등의 상세한 표시 등 소형 군현지도집에서 진전된 형태를 보여 준다. 내용으로 볼 때 이 지도집은 18세기 중엽의 사회경제상을 잘 반영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도로(道路), 봉산(封山) 등의 상세한 표시 등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 지도는 1750년대에 장책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지도(道地圖)와 군현지도(郡縣地圖)의 내용은 1730~1740년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지도로부터 진보(鎭堡) 지도까지 당시까지 만들어졌던 다양한 유형의 지도를 한 책에 정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지도 학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도 발달의 전환기에 제작된 지도로서, 18세기 전반 이전의 지도를 정리하고 18세기 중엽 이후의 새로운 지도로 발달해 가는 전환기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는 지도이다.

또한 경상도 흥해(興海)군에는 ‘동해’, 경상도 도지도와 강원도 도지도에는 ‘동대해(東大海)’라 기록되어 있는 점도 중요한 측면이다. 특히 울릉도를 별도로 독립시켜 「울릉도」 지도를 그린 점도 매우 주목된다. 울릉도는 특별히 군사시설이 설치된 곳이 아니므로 별도로 그릴 당위성은 없었다. 그러나 숙종대에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외교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선왕조의 관심이 이렇게 독립 지도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울릉도」 지도의 동해안에 독도를 그리고 “소위 우산도(所謂 于山島)”라고 섬 안에 표시해 놓아, 우산도가 독도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양보경》

2. 동양자료

甲午戰前釣魚列嶼歸屬考
兼質日本奧原敏雄諸教授

도서번호 : 독도 915.2 0299 7

저 자 : 吳天穎

발행기관 : 社會科學文獻出版社(中國)

발행년도 : 1994년

구 성 : 137면

중국의 역사학자 吳天穎은 1970년대 초부터 1993년말 까지 근 20여 년 동안 많은 사학자료에 대한 고증과 조사를 거쳐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明清時期 釣魚列嶼가 중국판도에 귀속되어 있던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고찰하였으며, 자료가 풍부하고 상세하며 서술이 유창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 책에는 최초로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책의 제1장 서언에서 저자는 1895년 4월 15일 당시 청나라의 李鴻章과 일본정부 대표 伊藤博文이 일본의 시모노세끼에서 체결한 시모노세끼조약의 조항을 둘러싸고 벌인 담판을 계기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사를 회고하면서, 일본은 일찌기 갑오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조어도를 전쟁발판으로 삼을 목적에서 차지하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1960년대에 와서는 台灣海盆의 大陸架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또 다른 목적에서 ‘끓주린 야수’처럼 이들 도서를 노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은 이렇하다.

첫째,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은 일본은 응당히 조어도 등을 포함한 釣魚列嶼를 대만섬과 함께 중국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釣魚列嶼를 사사로이 미국정부에 넘겨주어 미국정부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施政權을 선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1961년에 미국의 해양지질학교수 Shepard Emery가 일본 동해대학 지질학 교수 新野弘과 합작하여 『中國東海及南海淺水區의沉績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해역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7년 발간된 『朝鮮海峽及中國東海의地層與石油展望』이라는 보고서는 대만의 동북방향으로부터 釣魚列嶼를 거쳐 일본의 규슈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67년 9월 新野弘은 『日本科學과 技術』이라는 정기간행물에 논문을 발표하여 釣魚列嶼의 해역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일본정부는 중국 정부보다 앞서 지질을 탐사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셋째, 1968년 5월 일본 석유재벌, 관료, 정치인 및 일부 학자들은 협력하여 沖繩問題等壘談會專門委員인 高岡大輔이 앞장서서 44명으로 구성된 ‘尖閣列島視察團’을 조직하였다. 시찰단은 7월 7일 조어도로 항행하여 탐사와 측량을 시도하였다.

넷째, 1970년 9월 17일 류구정부는 「尖閣列島의領有權에 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명치 28년(1895) 1월 14일에, 각의의 정식비준을 거쳐 八重山群島의 서북에 위치해 있는 釣魚島와 久揚島(黃尾島)는 오키나와현의 관할지역이 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1일에 지령을 내려 각의의 결정을 전달하고 縣知事으로 하여금 관할권 표지를 세우게 하였다”고 하였다.

다섯째,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가짜 지도를 만들어 조어도에 항구적인 기상관측소 또는 신호탑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고 한다.

책의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 저자는 중국 사람들이 조어도를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釣魚列嶼란 명칭을 붙였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왕래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학 Bodleian Library Oxford도서관에 보존하여 있는 『順風相送一書』에는 조어도의 航海指南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조어도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福建往琉球」라는 제목아래 처음으로 釣魚嶼, 赤嶼(赤尾嶼)라는 섬 명칭을 보여주고 있다. 『順風相送』의 출판년도에 대해서는 1403년과 1430년이라는 상이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 명나라 홍무5년(1372년)에 사자 楊載를 파견하여 류구국왕을 책봉하면서부터 청나라 광서5년(1879년) 일본이 류구국을 멸망시켜 오키나와현으로 개칭하기까지 중국은 책봉 사신을 24차례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1543년 명조의 11번째 冊封史 陳侃이 편찬한 『使琉球彙』에는 그들이 류구의 사자와 함께 배를 타고 류구로 항행하는 정경이 묘사되어 있다. 使琉球彙의 기록에 의

하면 그 당시 류구 사람들은 조어도를 지나 久米島에 도착하여야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하였으니, 釣魚島, 黃尾島, 赤尾嶼 등의 섬들은 류구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하였다는 것이다.

1562년 명조의 절강성 제독 胡宗憲이 편찬한 『籌海圖編一書』 중의 「沿海山沙圖」에는 중국 복건성의 羅源縣, 寧德縣에 속해있는 沿海島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의 釣魚島, 黃尾山과 赤嶼 등의 섬들이 포함되어 있다. 1562년 冊封史 郭儒霖이 편찬한 『重編使琉球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중국은 조어군도 중 류구와 가장 가까운 赤嶼(현재 赤尾嶼)를 분계의 표지로 삼았던 것을 알게 한다고 하였다.

청조시기에 와서는 조어도 남쪽 海溝지대가 중국과 류구의 분계선이라는 것이 중국 항해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상식이 되었다고 한다. 청조의 두 번째 冊封史 汪楫가 편찬한 『使琉球雜錄』의 제5권에는 그가 釣魚島, 赤尾嶼를 지나면서 해난을 모면하기 위해 제를 지낼 때 배의 사람들이 배가 지나는 해구가 “中外之界”라고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791년 청조의 강희제가 책봉한 사자 徐葆光이 편찬한 中山傳信錄은 당시 일본과 류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책에는 류구의 변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들어있다. 1893년 10월 갑오전쟁 일년 전 청나라 慈禧태후는 조서를 내려 조어도를 郵傳部의 尙書 盛宣懷에게 상으로 주어 약재를 캐는데 사용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석용>

三國通覽圖說

도서번호 : 독도 950 ㄱ194
 저 자 : 林子平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1973년 (원본 1785년)
 구 성 : 106면, 지도 5매

이 책은 1973년 경인문화사에서 발행한 영인본으로, 원본은 1785년 일본에서 발행

되었다. 일본의 경세가중 한 사람인 林子平이 저술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인접국가에 대한 정치지리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삼국(三國)이라 함은 일본과 국경을 접한 조선, 유구, 하이(지금의 北海道)를 일컫는다. 5매의 지도는 삼국접양지도, 조선국지도, 유구국지도, 하이국전도, 무인도지도 등인데, 삼국접양지도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지도이기에 1780년대 일본의 선각자가 생각하고 있던 일면이 엿보이고 있다.

林子平은 1738년 江戸(지금의 동경)에서 출생한 사무라이인데 1757년 센다이로 이사했으며, 1767년 다시 江戸로 유학와서 식산흥업과 학제개혁을 주장한 일본사회의 선각자중 한 사람이다. 그는 1775년 나가사키에 가서 화란인들로부터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관하여 들은 다음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리학 및 병학(兵學) 연구에 뜻을 두었으며, 난학자들과 자주 만나 해외사정을 익히고 1785년 삼국통람도설을 펴냈다. 이 책은 1832년 Klaproth에 의해서 불어(佛語)판으로 번역되어 서양사회에 소개되었다.

본문에서 조선은 북위 35도에서 43도에 위치하며, 부산포(釜山浦)가 36도, 왕도(王都)가 38도에 위치한다고 했다. 조선팔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언문(諺文)이라 하는 일자일음(一字一音)인 한글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에는 위도만이 1도 간격으로 선을 그려놓고 있는데, 북위 39도의 강릉 동쪽에 큰 섬을 그려놓고 이를 鬱陵嶋 千山國이라 하였다. 크기가 너무 크고, 연안에 가깝지만 이는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이다. 嶋자는 島와 같은 의미이다.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에서는 북위 38도, 경도 155도 20분에 섬을 이름 없이 그려 놓고, 또 북위 38도 30분, 경도 159도에 竹嶋를 위치시키고 조선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부정확하나마 경도가 나타나 있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한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아마도 북도(福島)를 염두에 둔 것 같다. 한반도 동해안 가까이 있는 이름 없는 섬은 조선팔도지도를 보면 울릉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竹嶋 즉 竹島 역시 울릉도인데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죽도에 해당하는 섬까지 그려져 있다.

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은 1832년 Julius Heinrich Klaproth에 의하여 불어로 번역되어서 서양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지도도 알려졌다. 조선지도(Carte des Huit Provinces du TCHAO SIAN)에서는 북위 39도의 Kiang Ling 동쪽 바다에 있는 큰 섬을 Thsian Chan Koue ou Tyu Ling Tao라고 했다. 삼국지도(Carte des TROIS ROYAUMES)에서는 북위 38도 30분, 경도 160도에 있는 섬을

Takenosima 라 하고 「a la Coree」 라는 설명이 있으며, 북위 38도, 경도 156도 20분에 이름 없는 섬이 나타난다.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이 Takenosima라는 이름으로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1832년인 셈인데, 이보다 앞서 1827년 러시아의 Krusenstern은 Taka-Sima의 위치를 북위 37도 48분, 동경 131도 10분으로, Matu-Sima의 위치를 북위 37도 40분, 동경 131도 30분으로 기록해서, Taka-Sima가 Argonaut이고, Matu-Sima가 Dagelet일 것으로 생각했다. 《한상복》

シーボルト關係書翰集

도서번호 : 독도 836 S517사

저 자 : 大鳥蘭三郎(翻) (재독일베를린 日本學會, 日獨文化協會 編輯)

발행기관 : 大井久五郎

발행년도 : 1941年(昭和16年)

구 성 : 국판 138면

본서는 시-볼트에게 관계가 되는 서한을 묶어 이를 통해 그의 진면목을 살피자는 취지에서 제작된 자료집이다. 시-볼트는 화란인으로서 1823년(文政6년) 長崎에 처음 渡來하여 1826년(文政9년) 長崎에서 바타비아(バタビア)를 향하던 중 幕府의 輸出禁製品(地圖, 地誌, 戰記, 刀劍 등)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추방되었다가, 1859년(安政6년) 막부의 필요(日蘭條約 締結의 중재자 역할)에 의하여 來日하여 1861년(文久元年) 江戸에 나아가 外國事務 顧問으로 일하면서 일본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Siebold의 일본에 대한 연구가 廣範圍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일본에서 미흡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Siebold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一種의 資料로서 그를 둘러싼 各種의 書翰을 集録한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총 143통의 서한 대부분은 伯林(베를린) 日本學會 所藏本이지만, 本書를 Siebold관계 문서집으로서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일본에 당시 존재하였던 關係 書翰을 採録하였다. 書翰掲載의 순서는 Siebold가 쓴 書翰을 가장 앞에 수록하였고,

다음은 연대순으로 各人別로 掲載하였고, 또 한 사람이 여러 통의 서한이 있을 경우는 年·月·日을 생략하고, 존재한 시점보다 뒤로 빼서 수록한 것도 있다.

本書에 등재된 書翰은 제 I 장 Siebold 편에 (1) Siebold가 어머니에게 보낸 2편 (2) Siebold가 宇田川格庵에게 보낸 1편 (3) Siebold가 高良齋에게 보낸 4편 (4) Siebold가 二宮敬作에게 보낸 1편 (5) Siebold가 자식인 오이네(おいね, Oine)에게 보낸 10편 (6) Siebold가 杉山三八에게 보낸 1편 (7) Siebold가 보낸 편지이지만 수취인 불명인 2편이 수록되었고, 제 II 장으로 美馬順三이 Siebold의 어머니에게 보낸 1편이 수록되었으며, 제 III 장으로 少西吉兵衛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수록되었다. 제 IV 장으로 高良齋가 Siebold에게 보낸 11편이 수록되고, 제 V 장으로 石井宗謙이 Siebold에게 보낸 7편이 수록되었다. 제 VI 장에는 戸塚靜海가 Siebold에게 보낸 3편이 수록되고, 제 VII 장에 豊吉이 Siebold에게 보낸 편지 2편이, 제 VIII 장으로 吉雄權之助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IX 장으로 卯三郎이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장에 松村直之助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I 장에 石橋助左衛門, 石橋助十郎이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II 장에 傳之進이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II II 장에 廣淵武七郎이 Siebold에게 보낸 2편이, 제 XII V 장에 아내인 소노기(そのぎ, Zonoki)가 Siebold에게 보낸 5편과 소노기(そのぎ, Zonoki)와 오이네(おいね, Oine)가 함께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수록되었다. 제 X V 장에 오이네(おいね, Oine)가 Siebold에게 보낸 4편이, 제 X VI 장에 橋本榮左衛門이 Siebold에게 보낸 27편이, 제 X VII 장에 三瀬周三이 Siebold에게 보낸 36편이, 제 X VIII 장에 戸田龜之助가 Siebold에게 보낸 1편과 발신인 불명 1편이, 제 X IX 장에 ギスケ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장에 町田くわん助より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I 장에 伊藤權之助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II 장에 中村かめかわより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III 장에 北村元助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IV 장에 大庭けいさい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V 에 若菜三男三郎과 星野金吾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VI 장에 譯詞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VII 장에 團吉이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VIII 장에 河野禎造가 Siebold에게 보낸 2편이, 제 X X IX 장에 八右衛門이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X 장에 魚住順方이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XI 장에 栗林態次郎이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제 X X XII 장에 폼페(ポンペ, Pompe)가 Siebold에게 보낸 1편이 수록되어 본서를 구성하고 있다. 本書는 Siebold 및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심정 및 학문적 역량, 그들의 활동상황을 자세히 살필 수 있기 때

문에 당시의 일본을 이해하고 동시에 당시 『NIPPON』 제작의 배경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資料라 할 수 있다. <<임영정>>

シボルトと鎖國・開國日本

도서번호 : 독도 953 □383나

저 자 : 宮崎道生

발행기관 : 思文閣出版

발행년도 : 1997년 3월(平成 9년)

구 성 : 국판 361면

本書는 시-볼트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한 일본 자체의 평가와 유럽에서의 그의 평가를 다룬 논고이다. 시-볼트는 鎖國日本을 開國日本으로 전환시키고 개국후의 정신적 혼란과 通商條約締結 및 경제적, 외교적 위기의 극복에 있어서 일본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돌아가서는 일본에서 파견된 사절단과 프랑스 정부와의 연결에 도움을 주고,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國際的 産業貿易會社의 설립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본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序論에서는 Siebold의 생애를 개관하였고, 그가 러시아 스파이로 알려지게 된 배경을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다. Siebold 訪日の 최대 목적을 그의 著書인 『日本』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럽에서의 自費出刊을 위하여 그가 한 노력의 실례를 들고 있다. 그리고 日本의 開國 상황에서 미국의 페리와 Siebold가 취한 일본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립시켜 비교하고 있다. 또한 그의 著書 『日本』에 대하여는 ① 著作의 계기 ② 일본관찰의 태도 ③ 완성을 위한 집념과 노력 ④ 내용 ⑤ 史的役割이라는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第一部에서는 Siebold와 鎖國日本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Siebold가 유럽의 근대과학, 특히 醫學을 일본에 移植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점과 江戸參府의 意義와 학술적 성과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가 불행히도 幕府로부터 스파이의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再檢討하였고 일본에서 추방된 후 유럽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유럽인들에게 계몽한 활동 상황과 日本의 장래를 위하여 네덜란드와 러시아를 작용시켜서 일본을 개국시키려고 하였던 활동상황을 재검토하면서 그를 일본의 정신적 개국을 유도한 선구자이면서 공로자로서 평가하였다.

第一部の 付篇一에서는 幕府의 六代將軍 德家'家宣의 정치적 顧問이었던 新井白石과 Siebold와의 (時空을 超越한) 관계를 白石의 著書인 『本朝寶貨通用事略』, 『蝦夷志』와 Siebold의 著書 『日本』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付篇二에서는 最上德内와 Siebold와의 관계를 ① 만나게 된 동기와 과정 및 공동학습한 내용 ② 德内の 쿠릴열도(千島)·사할린(樺太)탐험과 그것에 대한 인식 ③ 德内の 에조(아이누족의 옛 이름)지 인식이 Siebold에게 미친 영향으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그들이 공동 연구한 地理學, 民族學, 博物學, 아이누어에 관한 것 과 그들의 만남이 북동아시아의 정확하고 새로운 지리학적 인식을 개척하고 유럽의 학계에 강한 자극을 주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第二部에서는 Siebold와 開國日本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시도하였다. 즉 추방령이 풀려서 再來日 하였을 때 구미열강의 압력에 고통을 받고 있던 일본을 위하여 兩者사이에 있었던 居中調整의 노력상황과 본국 네덜란드(ホランダ)정부와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幕府의 外交顧問에서 해임된 후 부득이 유럽으로 돌아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일본에 대한 원조와 근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全力을 傾注하였던 것을 새로운 자료를 통하여 명확히 하였다.

第二部の 付篇 “日本國産業および商業開發のための國際的會社の企劃”에서는 同社 의 주요목적은 일본과의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유럽의 학문을 현지 日本人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것, 耕作作物 土壤産物·일본내의 산업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고 한 Siebold가 이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① 豫備的事業- 학문적인 조사, 연구, 실험, 現地人 教育 ② 실천적 사업-實業活動, 本來意味의 製造會社와 商社로 세분하여 실시한 것을 상술하였다.

附錄 “ヨ-ロッパにおける-シボルト・コレクション”에서는 ① 룰-大學所藏 コレクション ② 라이덴 國立民族學 博物館·라이덴大學圖書館 コレクション ③ 뮌헨國立民族學博物館 コレクション ④ 大英博物館·圖書館 コレクション ⑤ 파리 國立圖書館 コレクション ⑥ 코펜하-겐 國立民族學博物館 コレクション

⑦ 베를린 國立圖書館 컬렉션 ⑨ 하그 國立中央文書館 컬렉션 ⑩ 브란덴슈타인=인츠에페린家 컬렉션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後記로는 저자의 개인적인 Siebold연구사를 회고하면서 그의 저서 『日本』은 일본과 일본인들에게 가장 큰 거울이라고 평가하고 本書의 부록에 제시된 “Siebold 컬렉션”을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할 것을 제안하였다.

Siebold의 생애와 업적을 추적할 때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과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개국과정과 지리학 분야 및 유럽의 근대 과학, 특히 醫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Siebold의 『日本』에 삽입된 日本図-文政11년(1828년) 天文房의 高橋景保는 Siebold(1796~1866)에게 國禁의 일본지도(伊能図를 기초로 편집한 지도)를 증여하여서 그는 사형되고 Siebold는 국외 추방이 되었다. 추방된 Siebold가 홀랜드에서 간행한 『日本』에 게재되었고 그것이 일본국토가 세계에 소개된 최초의 것이다. 伊能図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伊能忠敬(1745~1818)이 살았던 시기 일본인들의 영토관념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에 나타난 영토 인식범위는 이후 일본의 영토 인식범위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서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영정》

シーボルト研究

도서번호 : 독도 920 L322人

저 자 : 岩波茂雄(編著者: 日獨文化協會)

발행기관 : 岩波書店

발행년도 : 1938年(昭和13年)

구 성 : 국판 712면

徳川幕府는 1637년 島原의 亂이래 엄중한 鎖國政策을 실시하면서 중국과 和蘭(네덜란드)외의 다른 나라와의 통교를 엄금하였다. 당시 長崎 出島에 있었던 荷蘭의 商館에는 醫官1명의 滞在가 허용되었다. 이 의관이 Siebold였는데, 그는 1823년(文政6년)

長崎에 처음 渡來한 후 1826년(文政9년) 長崎에서 바타비아(バタビア)를 향하던 중 幕府의 輸出禁製品(地圖·地誌戰記刀劍 등)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추방되었다가, 1859년(安政6년) 幕府의 필요(日蘭條約締結의 중재자역할)에 의하여 來日하여 1861년(文久元年) 江戸에 나아가 外國事務顧問으로 일하면서 일본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Siebold는 醫官으로서 처음 일본에 입국하였던 것이다. 그는 일본에 滞在하는 동안에 門生の 教授, 患者의 診療 이외에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하였다. 즉 動植物, 歴史, 地理, 人種, 風俗, 制度, 文物, 아이누語 등이 그것이다. 그 내역이 본서의 서론에 Siebold의 著書와 관련하여 出刊狀況과 소장내역, 그리고 당시 論文의 制作過程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本書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각 논문에 앞서 Siebold의 略年譜를 기술하여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言語學史上におけるシーホルト先生」은 新村 出이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Siebold의 言語學 上の 공적을 그의 著書 중 東洋學과 言語學 관계의 典籍을 통하여 印度語 페르시아어 그리고 南洋語로서 西藏語·일본어·支那語, 우랄알타이어계인 만주어·몽고어·터키어, 아이누語學, 그리고 훨씬 더 먼 濠洲와 墨國(멕시코)의 土語까지 취급하여 比較言語學上 경탄할 만한 수준이라고 극찬하였다. 아울러 佛語로 간행된 Siebold의 文庫書目은 幕府末期의 西洋學術 渡來 史料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大全早引節用集」은 入澤達吉이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大全早引節用集 1卷에서 3卷까지의 소장처 및 그것의 수집 경위를 略述하였다.

「鳴瀧塾」은 黒田源次の 집필로서 여기에서는 ①Siebold가 1823년 7월 일본에 와서 그 해 가을에 약간의 학생들에게 萬有學 및 醫學에 관한 강의를 하였음을 그의 叔父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② 歐洲의 學術을 신봉하는 일본인의 집회소인 鳴瀧塾의 설립경위와 日本教育史上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③ 吳秀三 博士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Siebold의 門人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鳴瀧屋敷의 매입시기와 Siebold의 自費구입 여부, 鳴瀧屋敷 買入의 목적 등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또한 ④ Siebold가 문하생을 지도한 교육법이 歐洲 近世 대학교육 방법론에 기초하였음과 ⑤ 논문의 작성 방법과 보고에 관하여서도 略述하였다.

「門人がシーホルトに提供したら蘭語論文の研究」는 緒方富雄·大鳥蘭三郎·大久保利謙·箭内健次の 공동집필인데, 여기에서는 시-볼트의 제자들이 그의 연구에 기

여한 점을 들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學會所藏 Siebold 門人 蘭語論文目錄을 첨부하였다.

「シーボルトの第一回渡來の使命と彼の日本研究 特に日蘭貿易の檢討について」는 板澤武雄의 집필인데, 여기에서는 Siebold의 第一回 渡來 목적의 배경으로 19세기초 복잡한 هول란드 政情을 설명하고 日蘭貿易이 필요하였던 هول란드 정부의 특명에 의하여 일본의 국민, 제도, 정치, 국토, 산물 등의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어서 Siebold의 일본연구를 상술하고, Siebold의 日蘭貿易을 檢討하였다.

「シーボルト先生のアイヌ語研究」는 黒田源次の 집필로 여기에서는 Siebold가 아이누語 연구에 참고한 서적 종류를 소개하면서 그 서적들의 편제에 대하여 상술하고, 『NIPPON』에 게재된 아이누語 語彙를 분석하였다.

「シーボルト先生とアイヌ語學」은 金田一京助의 집필인데, 여기에서는 ① 총론-Siebold가 歐洲에 아이누語學을 移植한 공적 평가, ② 시-볼트의 아이누語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最上德内の 아이누어 사전의 검토, ③ 이도리(イドリ)의 日蝦語彙 검토, ④ 라이덴(ライデン)大學本 日蝦蘭言語集 검토, ⑤ 德内手澤本 아이누 小語彙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シーボルト作成の地圖」는 蘆田伊人和 箭内建次の 집필인데, 여기에서는 『日本帝國図』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형태와 내용, Siebold와 高橋景保와의 교섭, 이른바 「Siebold사건」, 本図의 原據가 되는 高橋景保와의 교섭을 통하여 얻은 一緯度十二仙迷로 縮尺된 『日本図 謄寫本』·同 高橋景保가 著作한 『天文學的地點測定圖表』·다른 일본의 가장 뛰어난 原地圖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蝦夷島와 日本領千島(쿠릴 열도)의 圖, 樺太島(사할린)와 망고(マンコー)河口圖를 最上德内の 樺太 調査와 間宮林藏의 間宮海峽 探險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シーボルトと日本に於ける西洋醫學」은 大鳥蘭三郎의 집필로, 여기에서는 Siebold의 渡日목적, 의학자로서의 인간상, 그의 渡日 당시 일본의 의학 수준과 서양의학의 정황, 일본에서의 활동 상황, 일본에서 추방된 후의 활동 상황, 再渡來의 원인 및 그 후의 활동 상황 등을 기술하고 Siebold의 醫學者로서의 의미를 당시 일본에 직접 西洋臨床醫學을 전한 第一者로서 평가하였다.

「Plantae Sieboldianae A Reviewed Enumeration of the Japanese Plants Collected and Described by Dr. PH. FR. VON SIEBOLD」는 MASAZI HONDA의 집필로서 여기에서는 Siebold가 수집하고 묘사한 식물들을 분석하였다.

「シーボルトと動物學」은 小野嘉明이 집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Siebold의 자료 중 日本産 동물에 관한 것을 분석하고, 세분하여 제목 혹은 분류 번호를 부여하였다.

「シーボルトと本邦の鯨」은 小川鼎三의 집필인데, 여기에서는 『日本』의 鯨(고래)에 관한 기사와 Siebold와 함께 일본인 門人들이 鯨(고래)의 조사에 노력하였던 것을 소개하고 그들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3·4책의 鯨書を 기술하였다. 또한 슈레게루(シュレーゲル)가 어떻게 「日本動物志 海獸部」에 취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아울러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래를 本書가 제작된 時點의 동물학에 비추어서 관찰한 바를 略述하였다.

「日本學會所藏 筆者不明の昆蟲類の和名・獨名・學名對照表に就いて」는 吉川晴男가 집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日本學會所藏 筆者不明의 昆蟲類의 和名・獨名・學名對照表를 작성하였다.

本書는 Siebold의 來日 當時 일본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本書의 450쪽에 제시된 第5圖 高橋景保의 日本邊界略圖에 동해가 朝鮮海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울릉도 및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일본인들의 인식범위 속에 울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하겠다. <<임영정>>

シーボルト參府旅行中の日記

도서번호 : 독도 915.3 s573jz
저 자 : 田中周二 (譯者: 齊藤 信)
발행기관 : 思文閣出版
발행기관 : 1983年 10月1日
구 성 : 211면

本書는 1823년(文政6년) 長崎에 처음 渡來한 후 1826년(文政9년) 長崎에서 바타비아

(バタビア)를 향하던 중 幕府輸出禁製品(地圖, 地誌, 戰記, 刀劍 등)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추방되었다가, 1859년(安政6년) 막부의 필요(日蘭條約締結의 중재자역할)에 의하여 來日하여 1861년(文久元年) 江戸에 나아가 外國事務顧問으로 일하면서 일본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Siebold의 『1826년 參府旅行中の日記』, 原名 “Journal während meiner Reise nach dem kaiserlichen Hofe Jedo im Jahre 1826”의 전체를 번역한 것이다. 長崎의 네덜란드 商館長이 江戸에 부임하는 소위 參府旅行 중의 기록은 외부에 폐쇄적인 일본에 관한 온갖 것을 기술하고 있다. 編著者の 序文에서는 Siebold의 參府旅行에 관한 원고 중 놀라운 2종류가 베를린의 日本學研究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參府旅行中の日記』의 간행사를 개관하고 편집의도를 서술하였다.

이 책의 本文을 보면 第1章에는 長崎에서 下關까지의 여행, 第2章에는 下關에서 室까지의 여행, 第3章에는 室에서 大坂까지의 여행, 第4章에는 大坂에서 京都까지의 여행, 第5章에는 京都에서 江戸까지의 여행, 第6章에는 江戸滞在, 第7章에는 江戸에서 京都까지의 歸路, 第8章에는 京都滞在, 第9章에는 大坂으로 향한 출발, 第10章에는 大坂滞在, 第11章에는 下關으로의 歸路, 第12章에는 下關에서 長崎까지의 歸路,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本書의 解説에는 1단원은 Siebold의 略伝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의 가문의 내력 및 日本長崎에 부임하게 된 배경과 그가 일본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경위와 연구방법 및 독일어로 서술하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Siebold가 일본에서 추방된 사건-文政11년(1828년) 天文房의 高橋景保가 독일의사인 Siebold에게 國禁의 일본지도(伊能図)를 기초로 편집한 지도를 증여하였다가 그는 사형되고 Siebold는 국외추방 되었다-과 일본에서 추방된 후의 행적 및 再入國의 과정 및 幕府의 정치외교고문으로 활동한 후 유럽으로 돌아가서 사망할 때 까지의 행적을 略述하고 있다. 2단원은 네덜란드(オランダ)인의 參府으로 參府의 목적 및 參府史를 개괄하였다. 3단원에서는 參府旅行 중의 코스와 所要日數를 코스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Siebold가 선택한 코스와 所要日數를 서술하였다. 4단원의 여행의 동반자에 관련하여서는 Siebold의 參府旅行은 事前에 치밀한 준비가 있어서 일본연구의 각 분야 전문가로서 동행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귀중한 연구자료 수집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였다. 5단원의 「參府紀行」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江戸參府紀行日記”가 그의 大著 『日本』의 어느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가와 출간 경위 및 變遷史를 서술하고 있다. 6단원에서는 Siebold라는 人名

의 日本式 발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本書는 당시 일본각지에 대한 객관적인 事實敘述과 아울러 주관적 입장에서의 일본에 대한 관찰 기록이 수록되어있는 日記이므로 당시 일본연구의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Siebold의 『NIPPON』의 오류로 인하여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지에 혼란이 왔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임영정>>

新考 伊能忠敬

도서번호 : 독도 920.053 06370

저 자 : 伊藤一男

생산기관 : 嶺書房出版株式會社

생산년도 : 2000년

구 성 : 국판 200면

본서는 1800년(寬政12) 막부의 명에 의하여 北海島를 시작으로 전국각지의 해안선을 3,737일간, 거리는 3만 3천700km를 측량하여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인 『大日本輿地全圖』를 완성한 伊能忠敬(1745~1818)의 전기이다. 그의 『大日本輿地全圖』는 이 시기의 과학적 지도로서 일본 지도 제작의 기초적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생애와 업적에 관하여는 明治30년대(1897~1906)이래, 幸田露伴·大谷亮吉·保柳陸美·小島一仁 등에 의해 약 140점이 넘는 연구문헌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伊能忠敬의 소년 시절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연구문헌이 적게 언급하였고, 대체로 그의 소년 시절은 불우하였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本書는 그들과 달리 소년 시절을 불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忠敬 봄에 편승하여 그의 청춘시절을 재조명하려는 의도로 저술되었다.

그리하여 제 I 장에서는 종래 「偉人伝」에 묘사된 불우한 시절이라는 사실에 대한 비판 작업을 통하여, 九十九里에서 大利根까지 이사하면서 살았던, 소년 忠敬의 생활

과 학습의 실상에 접근하고 있다. 또 小堤村의 神保家を 戰國時代 말기로부터 지속된 土豪의 末裔라고 소개하고 神保家의 전통과 교양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忠敬의 인간성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勉學을 위한 知的遍歷 과정에서 맺어진 平山家와 伊能家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伊能家門을 계승한 이후 약 30여 년간 伊能家門의 부흥에 전력을 기울이고 난 후 49세에 江戸에 나와 高橋至時에게 師事하면서 고난 끝에 연해측량에 의한 史上 최초의 일본지도를 완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II장에서는 佐原시대로부터 전국측량까지의 既存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근년의 새로운 지식을 첨가하면서 忠敬의 생애와 九十九里 지방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장에서는 忠敬등이 江戸에 出付하여 幕府의 增稅政策에 대하여 佐原村의 권리를 확보한 것과 天明년간의 飢饉을 구제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忠敬은 은퇴한 후 50세부터 曆法연구에 전력을 투구하여 寬政9년(1797년) 대낮에 金星의 南中을 일본최초로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고, 子午線의 길이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과학적 수준에 비추어도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文化 13년(1818년) 이후 忠敬은 『大日本沿海輿地全圖』의 제작을 개시하지만, 그의 사후 文政 4년(1821년)7월 『大日本沿海輿地全圖』와 『大日本沿海實測錄』이 완성 되어(그의 사후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그의 실측기록이 지도제작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高橋景保(高橋至時の 嗣子)를 거쳐서 막부에 上呈되어 史上최초로 日本列島の 윤곽이 명확하여지고, 근대 일본지도의 기본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文政11년(1828년) 天文房의 高橋景保는 독일의사인 Siebold(1796~1866)에게 國禁의 일본지도(伊能圖를 기초로 편집한 지도)를 증여하였다가 사형되고 Siebold는 국외 추방이 되었다. 그 지도의 복사본이 Siebold의 『日本』에 게재되었고, 그것이 일본국토가 세계에 소개된 최초의 것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본장의 부록으로 忠敬의 生父인 神保貞恒의 一代記 및 그가 남긴 작품(大位牌와 仙像)에 대하여도 서술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忠敬을 교육시킨 黑潮文化”라는 제목 아래 온후한 기후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풍부한 物産생산 및 好學的 풍토가 少年 忠敬의 인간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또한 忠敬의 성장과정과 같이 하였던 戰國時代 이래로 「旧家」(近世 村落内部의 身分秩序에 있어서 特權的 地位를 占有하고 있는 階層)로 알려진 神保家(俳諧의 東上總에 있어서 芭蕉門俳諧의 據點 家門-이 가문은 俳諧를 통하여 그 지역의 유력가문인 海保飯高 상호 통혼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와 平山家(本草學을 연구하였던 가문, 忠敬의 영향으로 지도제작에도 참여함)와 佐元の 伊

能家(특히 忠敬 이전부터 지도제작의 전통을 지니고 있음)의 가문의 전통 및 學藝의 계보를 추적하여 偉人 忠敬의 知的 根源을 탐구하였다. 地元의 연구자인 吉川 力은 忠敬을 연구실의 연구자가 아닌 당면한 과제를 냉철히 관찰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열적인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九十九里 浜의 風潮에 단련된 진취적 기상이 事象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는 과학자적인 자세라고 평가하였다.

제IV장에서는 어린 忠敬이 청춘시절을 보낸 上總의 小關村·小堤村, 下總의 南中村 등 忠敬이 偉人으로서 성장하는데 관련된 촌락들의 自然·歷史·文化·生産 등 지역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그 지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던 「地曳網」, 「稻作」, 「城下町」, 「栗山川」, 「日蓮宗」 등을 整理·概觀하고 있다. 특히 모친의 他界 후 伊能家로 婿養子로 갈 때까지의 약 10년간의 忠敬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復元·考察을 시도하여, 그의 삶은 神保家·伊藤家·海保家·飯高家·平山家·伊能家 등 戰國 武士의 末裔를 칭하는 해당 지역의 유력가문과 더불어 土豪層의 상층부를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전통과 교양을 體得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이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특히 意志力的 지속성 등은 佐原時代의 시련을 극복하고 훗날의 偉業을 達成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10살까지 七里法華宗의 풍토에서 성장하여 그의 정신세계에는 법화경=日蓮宗이 크게 투영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제V장에서는 “忠敬에게 배울 「進取의 氣象」 ”이라는 제목으로 앞 단원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大谷亮吉(1917)·小島一仁(1978)·川村優(1994)의 名著를 기본문헌으로 하고, 새로 발굴된 史料를 더하여 「伊能忠敬關係 年表」를 작성하였다.

17세기 일본막부와 조선은 竹島(鬱陵島)를 조선의 고유영토로 확인하고 있지만, 松島(獨島)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伊能忠敬이 살았던 시기, 18세기에서 19세기초반의 일본 최고의 지리학자인 그의 인식범위, 즉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를 완성한 그가 어디까지 가 보았으며 또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선행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의 전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忠敬이 어린시절을 보낸 九十九里町의 地曳網어업의 발달은 그가 해양의 두려움 없이 성장하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인식범위와 대동소이한 그의 인식으로 볼 때, 竹島(鬱陵島)와 松島(獨島)가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었다면 實測을 반드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본이 자랑하는 伊能忠敬의 실측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 하

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임영정>

伊能忠敬の科學的業績

도서번호 : 독도 920.053 ㅎ2280

저 자 : 東京地學協會伊能忠敬記念出版編輯委員會

발행기관 : 古今書院

발행년도 : 1974년 11월

구 성 : 4×6배판 511면

본서는 地圖 製作者로서 잘 알려져 있는 伊能忠敬에 대한 연구서 및 분석적 고찰을 한 종합논문집이다. 그가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은 明治21년(1889년) 당시 東京地學協會 사람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本書는 밝히고 있다. 이들 東京地學協會 員들은 遺功表 재건과 관련하여 伊能忠敬의 科學的 業績에 관해서도 出版을 행하기로 하고 遺功表 재건과 동일한 목적으로 編輯委員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 出版물을 고심 끝에 논문과 자료를 기본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미 伊能忠敬의 傳記는 大谷亮吉이 編著한 『伊能忠敬』에 거의 언급되었기 때문에 忠敬伝을 편집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調査 研究를 신중하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료도 隱居한 시점부터 여생을 日本 全國 測量과 소위 伊能図 제작에 봉사하고, 일본 근대지도 제작의 기초를 닦은 忠敬과 관련되어 남아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서 엄선하여 이 책의 서술에 활용하였다. 또한 『測量日記』에 있는 매일 매일의 時刻은 당시 民間에서 사용하였던 時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앙 標準時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忠敬이 방문한 지역의 계절과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에서 일어나는 해뜨는 시점과 해지는 시점을 추산하여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위와 같은 방침 하에 본서를 구성하였다고 하였다. 本書에서는 논문의 방향을 忠敬伝에 없는 그의 科學的 業績에 관하여, 伊能図에 관하여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明治以後 日本社會에 미친 공헌의 광대함을 調査 연

구하고 있다. 본서에 실린 다른 논문들과는 달리 増村, 壙瀬의 논문은 忠敬의 작업을 원조하였던 여러 藩의 태도를 명확히 다루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서의 第 I 編은 論文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伊能図の意義と特色에서는 (1) 忠敬의 全國測量의 意義, (2) 伊能図의 特色-繪畫的인美, (3) 伊能図의 特色-精密度와 方位線, (4) 伊能図의 特色-經緯線 記入法과 經度の 誤差, (5) 經度の 誤差原因, (6) 忠敬의 科學技術的 教養①, (7) 忠敬의 科學技術的 教養②를 다루었다.
2. 伊能忠敬の全國測量の概要と陰の功勞者에서는 (1) 忠敬의 勉學, (2) 伊能隊의 測量旅行距離, (3) 全國測量地域中-北海島, 本州東海岸, 奥羽西半部, 東海-北陸沿岸測量, (4) 全國測量地域中-中國沿岸, 四國・大和路 測量, (5) 全國測量地域中-九州 제1차 測量, (6) 全國測量地域中-九州 제2차 測量, (7) 陰의 功勞者인 高喬景保, (8) 남아 있는 몇 가지 疑問, 부록1, 부록2를 게재하였다.
3. 大谷亮吉編著「伊能忠敬」の日本測量について에서는 (1) 大谷씨의 설명, (2) 東北地方・越後の 事例, (3) 北陸地方의 事例, (4) 鹿兒島島津藩의 事例를 서술하였다.
4. 伊能忠敬における緯度1度の距離測定と新投影法考察에서는 (1) 여러 種類의 緯度1度の 里數, (2) 緯度1度の 里數의 確認, (3) 伊能折衷尺은 傳說, (4) 伊能図上의 經線과 當時의 曆學上의 重要地帶, (5) 새로운 投影法의 高찰을 실었다.
5. 伊能忠敬の全國測量と經度問題에서는 (1) 忠敬의 全國測量의 萌芽, (2) 당시의 측량술의 배경, (3) 忠敬의 測量法과 經緯線, (4) 四國図, 九州圖의 經度問題를 서술하였다.
6. 伊能特小図と特殊中図에서는 (1) 최초의 特小圖에 대한 諸論議, (2) 日本輿地圖에 있어서 究明할 必要가 있는 2점, (3) 완성된 特小 日本圖의 概況, (4) 이 지도가 수행한 중대한 역할, (5) 伊能特小中圖의 출현을 서술하였다.
7. 伊能圖とシーボルトの日本國地圖에서는 (1) 日本列島의 外形과 シーボルト(시볼트)의 日本國地圖, (2) 내용으로 본 シーボルト의 日本國地圖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8. 伊能圖に基イギリス製日本沿海島에서는 (1) 일본측의 자료, (2) 遠海圖를 중심으로, (3) 영국측의 당시 측량 사정, (4) 현대 영국학자의 伊能圖觀을 실었다.

9. 世界の地圖作製史上における伊能図地位에서는 (1) 유럽 先進諸國의 지도와의 비교, (2) 아메리카 아시아 諸國 지도와의 비교
10. 明治以後の日本社會と伊能図の存在에서는 (1) 江戸時代의 伊能図 이용, (2) 海圖制作의 基礎資料로서, (3) 伊能図의 面影을 멈추게 한 明治以後의 日本全圖, (4) 輯製 20만분의 1圖로의 발전
11. 伊能忠敬と東京地學協會에서는 (1) 贈位申請의 件, (2) 旧 遺功表의 建設, (3) 의무교육교재속의 채택, (4) 長岡博士의 講演과 大谷亮吉 編著: 伊能忠敬

第II編에서는 資料와 그 해설이 실려있다. 附錄에는 年表와 解説이 기록되어 있다. 그 뒤에는 영문요지와 圖版, 表目次, 索引을 수록하고 있다.

여하간 本書의 내용을 통하여 최초로 일본 국내를 직접 답사하여 제작한 伊能圖에서 울릉도는 물론, 獨島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伊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鬱陵島·獨島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伊能圖에 빠져있고, 이들 학자들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伊能忠敬의 生存기간에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實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영정》

伊能圖に學ぶ

도서번호 : 독도 912.53 c328o
 저 자 : 伊能忠敬記念出版物編輯委員會
 발행기관 : 朝倉書店
 발행년도 : 1998年
 구 성 : 4×6배판 266면

본서는 1800년(寬政12년) 막부의 명에 의하여 北海島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해안 선을 3,737일간, 거리는 3만 9,000km를 측량하여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인 『大日本

『輿地全圖』를 완성하여 일본지도 작성의 기초를 수립한 伊能忠敬(1745~1818)에 대한 전기적 연구서이다. 伊能忠敬 死後 150년을 맞아 東京地學協會(伊能忠敬紀念出版物編輯委員會)에서 기념 출판을 계획, 伊能圖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伊能忠敬의 업적을 전하고, 지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희망하여 편집, 출간한 책이 本書이다.

第1章 「伊能圖に學ぶ 視點, 石山洋書」에서는 ‘世界地圖學史 중의 伊能圖’, ‘忠敬의 全國測量背景’, ‘伊能圖의 意義’, ‘平價와 顯彰’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古地圖史書로서의 세계적인 가치와 明治 이후 제2차대전까지 근대적 기법으로 측량이 안된 지역에 있어서 伊能圖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실용적인 幕府가 撰한 日本圖에 대하여, 순수한 과학적 입장의 伊能圖 성립을 大洋을 향한 日本社會의 지도 작성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伊能圖의 顯彰과정은 약간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第2章 「伊能忠敬人間像, 小島一仁書」에서는 ‘偉人·忠敬’, ‘佐原商人·忠敬’, ‘家訓’, ‘忠敬과 伊能景利’, ‘惡妻傳説’, ‘推步先生’, ‘糸魚川事件’, ‘天命’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戰前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忠敬에 대한 재평가를 하였던 論文들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를 합리적이고도 실리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그에게 測量과 관련하여 영향을 준 伊能景利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忠敬의 전국측량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의 他界 후 지도 제작과정을 서술하고 忠敬의 유언을 인용하였다.

第3章 「伊能忠敬のと全局測量現地對應, 渡辺孝雄書」에서는 伊能忠敬에 의한 全國測量을 10차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측량에 대한 현지의 대응에 대한 연구의 미비를 지적하고, 제1차 측량은 忠敬의 社費였고, 제3차부터는 幕府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히고 제5차 측량부터는 幕府의 御用測量이 되었다고 하면서 5차부터는 측량의 본연의 자세가 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第4章 「伊能圖の諸狀, 齊藤仁·渡邊一郎書」에서는 伊能圖의 특징을 서술하고, 측량과 관계없는 지역의 지도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작성 시기별로 伊能圖의 종류를 56쪽의 표에 소개하고 있다. 알려진 것 만 하여도 440種에 달하고 그 외에 약 230種의 副本이 존재하는 伊能圖 중에서 伊能測量의 확실한 증인이 있는 現存 伊能圖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第5章 「伊能図の読み方, 鶴見英策 書」에서는 과거에 작성된 지도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 후 伊能図를 읽을 때 과거의 여러종류의 지도 중 伊能図에 있는 事象과 그것에 묘사된 부분을 조사하고, 伊能図를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第6章 「伊能図-『大日本輿地全圖』-の後裔, 清水靖夫 書」에서는 伊能図의 이용 상황 및 변천에 대한 설명과 伊能図이후 일본에서 간행된 대표적인 지도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伊能図등을 참고로 일본국내의 업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840년 만들어진 『官版實測日本地圖』 및 明治政府의 參謀本部가 전략적 필요에 의하여 제작한 西南戰爭以後의 諸図와 日本全図, 輯製20萬分の 1図와 内務省系の 諸図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伊能図의 歴史的, 地理學的 의미를 서술하였다.

第7章 「日本測量士における伊能図-(a)國會図と伊能図の測量技術比較- 川村博忠 書」에서는 日本總圖와 伊能図의 편집방법의 차이와 伊能忠敬의 측량법 및 諸國의 國繪圖制作과 測量術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b)伊能図と近現代の地図との違い. 清水靖夫 書」에서는 伊能図는 沿岸과 路線측량에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平面의 地部와 地物에 대하여 一切 測量을 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근현대지도와의 차이 점을 ‘地球의 형상에 관하여’, ‘經度の 측정에서’, ‘距離에 관하여’, ‘지형에 관하여’, ‘해안에 관하여’, ‘측량기구에 관하여’, 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伊能図가 당시 일본 국내의 기술로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수준으로는 1세기 가량 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第8章 「世界測量史における伊能図, 金窪敏知」에서는 伊能忠敬이 孤長測量기술을 갖게 된 배경이 되는 스승 高橋至時에 대하여 서술하고, 忠敬의 방법을 상술하였다. 또한 高橋至時가 라란데(ううンデ)曆書(홀랜드 曆書)의 영향을 받아 성취한 학문적 업적도 기술하였다. 또한 일본에 내향한 서양인에 의한 초기의 경위도 측정, 러시아 海軍中佐 구루젠시아의 경위도 측정, 독일인 Siebold의 경위도 측정과 伊能忠敬의 經緯度 測定을 비교하여서 그 의의를 밝혔다. 또한 Siebold의 연안측량도와 개항 후 영국 군함 ACTEON호가 일본과의 대대적인 통상교역을 위하여 측량한 연안지도와 伊能図와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第9章 「伊能図の平價と今後の課題, 羽田野正隆 書」에서는 伊能図가 만들어진 과정과 목적·형태를 다루고 앞으로의 과제로는 明治6년의 皇居火災, 關東大地震등으로 燒失된 이후 現存하는 伊能図(伊能家 所藏本, 忠敬이 藩主와 知己에게 기증하였던 寄贈本, 뒷날의 模寫本)의 애석하게도 빠진 부분들의 樣態, 來歷, 그것들 간의 상화관계를

현재 조사 중임을 박히고, 또한 伊能忠敬 연구의 基本史料인 『測量日記』의 전체의 3분의 1이 강제로 간행되지 않았고, 書簡 등의 史料도 一部 活字가 빠져있으나 『測量日記』가 현재 간행 중에 있어 새로운 伊能図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第10章 「伊能忠敬の顯彰史再考, 西川治 書」-伊能図と地磁氣の人脈-에서는 그의 顯彰史에 대한 개요를 서술하였다. 또한 伊能図가 기여한 부분을 예시(佐野常民-元老院議長-を感動させた, 幕末における日英和親の仲立ち)하고, 長岡半太郎(物理學의 大家로서 文化勳章 제1号受賞者)과 伊能忠敬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忠敬을 顯彰한 大谷亮吉의 학문적 성취과정과 업적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地磁氣의 人脈(伊能忠敬에서 今道周一까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伊能忠敬의 事業史에 있어서 중심적이지 않았던 인물에 대하여도 명확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책의 앞부분에서 伊能図 관련 지도를 수록하였고, 뒷 부분에는 資料1 伊能図 總目錄, 資料2 伊能忠敬研究文獻目錄, 資料3 測量日記(抄), 資料4 地方史에 伊能忠敬, 그것의 事例的 表示라는 자료를 제시하여 伊能図의 이해를 넓히고 있다.

伊能図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伊能忠敬(1745~1818)이 살았던 시기 일본인들의 영토관념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데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임영정>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도서번호 : 독도 953 L324L

저 자 : 日本 大藏省 理財局

발행기관 : 高麗書林(영인본) (원본 日本 大藏省 管理局理財局)

발행년도 : 1985년 (원본 1946년)

구 성 : 2책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전까지 일본이 국외에 남기고 온 국가 또는 개인의 재산상태를 조사 정리한 자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외라 함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과 중국의 만주지역 등의 식민지와, 중국 대륙 및 남태평양의 여러 섬 가운데 점령지였던 곳, 그리고 그 밖의 구미지역을 말한다.

이 조사는 日本 大藏省 管理局의 주도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다음해인 1946년에 착수되었지만, 그 후 조직 개편으로 理財局에 의해 완성되었다. 일본 패망 당시 일본 및 해외재산 상태와 그 평가에 관한 조사는 연합국에 대한 배상관계 혹은, 개개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관계에 대처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표면상으로 이 조사는 일정 시기, 일정 장소에 이뤄진 사업의 청산과 그 통계 처리를 평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통계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이 조사의 기초를 이루는 사고방식은 일본인의 해외 경제활동이 침략 혹은 약탈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인이 해외에서 다년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쳐서 얻은 성과였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까지의 기간에 군의 행동에 편승해서 이뤄진 거래는 침략 혹은 약탈에 의해 획득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이 조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일본인의 해외활동은 일본인 고유의 경제행위이자 상거래이며 문화활동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바로 이러한 입장을 일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외기업체의 청산, 배상, 보상 등 해외재산에 관한 모든 일들은 스스로 뒤돌아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조사의 목적은 연합국에 대해 변명할 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일본 및 일본인의 해외재산에 관한 역사적 생성과정을 일본 본토와 외지(식민지)의 경제적 관련성 속에서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인구의 동향, 무역의 발전, 문화의 향상, 현지산업의 생성 등에 관해 정확히 기록하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일본 및 일본인의 해외활동, 특히 이를 통해 획득된 해외재산이 정당하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밝힘으로써 연합국 혹은, 구 식민지 국가들의 배상 요구에 대처할 목적으로 수행된 만큼, 그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조사에서 통계자료를 중시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조사보고는 총 11편 37책(총목록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 총론에서는 근대 일본경제의 발달, 極盛期の 일본, 일본 및 그 식민지역에서 인구의 발달 등을 다

루었으며, 2편부터 11편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과 만주 등의 식민지와, 중국 대륙 및 남태평양의 여러 섬 중 점령지, 그리고 그 밖의 구미지역에 대한 일본인의 해외활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第2篇 朝鮮」 항은 총 10책인데, 그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책 서 장 조선의 概貌

제1장 舊來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특성

제2장 조선개국부터 일한병합으로 가는 길

2책 제3장 조선통치의 최고방침

제4장 조선정치기구의 근대화

제5장 경찰행정과 그 실적

제6장 사법 및 행형과 그 실적

3책 제7장 교육문화정책과 그 실적

제8장 위생행정과 그 실적

4책 제9장 산업 및 경제정책

제10장 농업의 발달

5책 제11장 임업의 발달

제12장 수산업의 발달

제13장 광업의 발달

6책 제14장 공업의 발달

제15장 무역 및 상업의 발달

7책 제16장 금융의 발달

제17장 재정의 발달

8책 제18장 교통통신의 발달

제19장 토목 및 치수

9책 제20장 재외조선인의 보호

제21장 전쟁과 조선통치

10책 부록

-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
- 「독립」 조선경제의 장래

목차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조선편은 일본의 국권강탈 후 한국이 정치·경찰·사법·교육·문화·경제·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이른바 근대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요컨대, 이 조사는 일본 및 일본인의 해외재산 형성과정의 제국주의적 발전사나 국가 혹은 민족의 침략사이기는커녕 식민지조선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고 강변함으로써, 결국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배상 요구를 반박할 근거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 조사보고가 모두 일본에서 ‘極秘’ 혹은 ‘取扱注意’의 비공개문서로서 다루어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임영정》

朝鮮地誌略

도서번호 : 독도 915.1 L324z
 저 자 : 일본 육군참모본부
 발행기관 : 龍溪書舍(影印本)
 발행년도 : 1981년 (원본 1888년)
 구 성 : 1권(709면), 2권(740면)

1888년에 일본 육군참모본부가 간행한 조선의 지리서를 복각한 영인본이다. 제1권 첫머리에는 村上勝彦이 쓴 해설 「隣邦軍事密偵と兵要地誌」가 실려 있어, 이 책의 편찬과정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설에는 “조선주재 및 파견 참모장교 일람”, “『조선지지략』에 기재된 호수, 인구, 전포” 등 상세한 도표도 포함되어 있다. 제1권에는 경기도, 충청도, 함경도가, 제2권에는 평안도, 강원도, 전라도 각 군현의 지지가 수록되었다. 원본은 8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981년의 복각판(復刻版)은 이를 2권으로 합책해 발행했다. 원본 8권은 권1: 경기도지부(京畿道之部) 권2: 충청도지부 권3: 함경도지부 권4: 평안도지부 권5: 황해도지부 권6: 강원도지부 권7: 경상도지부 권8: 전라도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권7 경상도지부는 1977년에 조선도서복각

회(朝鮮圖書覆刻會)에서 재일사학자 이진희(李進熙)씨의 해설을 붙여 먼저 1권으로 간행된 바 있으며, 권5 황해도지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해 누락되었다.

이 책은 구 일본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작성한 지리서의 일종인 병요지지서(兵要地誌書)이다. 참모본부가 주관해 작성한 대표적인 병요지지서는 1887년 11월에 간행된 『지나지지(支那地誌)』 6권을 비롯해 1888년 11월 간행으로 추정되는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 8권, 1889년 10월 간행의 『지나지지(支那地誌)』 15권, 1893년 12월 간행의 『서백리지지(西伯利地誌)』 2권, 1894년 1월 간행의 『지나지지(支那地誌)』 15권의 5종류이다. 지나지지 중 1887년의 것은 중국 전체에 관한 것이고, 1889년의 것은 만주지지이며, 1894년의 것은 몽고지지이다. 이처럼 19세기에 간행된 병요지지서는 모두가 일제(日帝)의 1차적 전쟁대상국이었던 한국·청국·러시아 등 인접국에 관한 지리서였고, 군비확장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이 책의 편찬은 권1의 앞머리에 있는 범례의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술형식은 일본 태정관정원(太政官政院) 지지과(地誌課) 편찬의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와 거의 동일하다. 『일본지지제요』의 내용은 강역(疆域), 형세, 연혁(沿革), 군수(郡數), 호수(戶數), 인구, 전포(田圃), 조세, 현치(縣治), 군진(軍鎭), 학교, 각읍(各邑), 역로(驛路), 산악, 하거(河渠), 호소, 폭포, 신사(神社), 불사(佛寺), 물산(物産)의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조선지지략』도 각 지역별로 강역, 연혁, 면명(面名), 호수, 인구, 전포, 읍치(邑治), 관직(官職), 성지관방(城址關防), 창고, 학교, 명승고적, 시장, 역원(驛院), 산악, 하천, 온천, 봉수, 교량, 도서항만(島嶼港灣), 사사(社寺), 물산의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관계없는 항목은 누락시키거나 불명한 항목은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 읍치(邑治) 항목의 경우, 시가지 인구 기록난에 여백을 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해진 시한 내에 조사가 완료되면 기입할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참모조직 결성은 1871년 7월 이른바 ‘대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병무성 내에 설치된 육군참모국의 임무는 기밀탐지를 비롯한 첩보활동과 지도제작 및 지지서의 편찬에 있었다. ‘간첩대’로 불리웠던 정보원들의 평상시의 주된 임무는 지리 조사와 지도작성이었다. 1873년 3월에는 병무성이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됨에 따라 육군성의 조례가 개정되어, 참모조직은 ‘제6국’으로 개칭되고 지도측량, 회화조각, 병사병가정지(兵史兵家政誌)의 수집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일본 국내정세가 어지럽던 1874년에 참모국의 명칭이 부활되고 그 업무가 확장되었다. 참모국의 하부조직으로 제1과에 아세아병제과(亞細亞兵制課)를 두고, 제5과에 지도정지과(地圖政誌課)를 두었다. 1878년 12월에 육군성내에 참모본부가 설립되었다. 참모국의 기존 조직만으로는 인접국에 대한 첩보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모본부의 설립으로 참모조직의 개편은 물론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하부조직으로 관동국(管東局)과 관서국(管西局)을 두었는데, 전자는 사할린, 만주, 캄차카반도, 시베리아를 첩보업무의 대상으로 했고, 후자는 한반도 및 중국 연해주를 그 대상으로 했다. 그 이듬해인 1879년에는 만주와 한반도의 관할이 바뀌어 관동국의 관할로 넘어 갔다.

일본은 이른바 ‘대조선처리방침’을 결정하여 1872년 9월에 외무대승(外務大丞) 花房義質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그의 수행원이었던 北村重頼 중좌와 別府晋介 소좌는 육군참모국의 지시를 받아 첩보활동을 개시하였다. 당시 한국내에서 외국인의 활동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인으로 위장하여 삼남지방을 정찰하고 귀국 후에 결과보고를 하였다. 海津三雄 소위는 1877년 개항장 교섭차 한국으로 파견되는 대리공사 花房義質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의 정황탐색을 명령받았다. 참모본부의 「역사초안」에는 이것이 한국에 대한 첩보활동 명령의 시작으로 기술되어 있다. 1878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해군의 군함 ‘천성(天城)’이 한반도 각지의 해안을 돌며 개항장을 물색하였다. 참모본부가 설립된 후 인접국에 대한 밀정체제확립의 일환으로서 1880년 2월에는 어학연수생 10명이 한국에 파견되었다. 1885년 2월에 海津이 다시 서울에 부임하였고, 三浦自孝 중위가 부산주재장교로 임명되었다. 원산에는 1884년 5월부터 부임해 있던 岡泰郷 중위가 있었다. 참모본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3명의 파견장교는 1886년 봄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였다. 三浦와 岡은 어학연수생 출신인 2명의 군속을 대동하였다. 그러나 1887년 봄부터는 三浦가 海津의 뒤를 이어 서울 주재 장교가 되었고, 부산에는 柄田鑑次郎 소위가 임명되어 전국 각지를 순회했다. 三浦와 柄田은 각각 서울과 부산을 출발해 전국을 누볐는데, 그들의 2년간에 걸친 첩보활동은 주로 서해안의 정밀조사에 초점이 두어졌다. 무엇보다 1886-1887년의 2년간에 걸친 조사시기가 사실은 『조선지지략』의 편집 교정 시기와 중복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2년에 걸친 그들의 첩보활동은 이 책의 간행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한 편찬 시점의 상황을 기술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동일한 항목을 설정해 조사한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일제가 편찬한 외국의 병요지서 중 가장 방대한 최초의 지서라 할 수 있다. 둘째, 풍속적인 면보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 선전포고하기 직전에 일본군이 재빨리 점령한 아산(牙山) 항목에는 그 곳이 군사거점의 후보지로 쓰여 있다. 특히 거리, 고저 등과 같이 군사작전상 유념할 필요가 있는 내용일수록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제의 한반도침략은 물론 중국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 경제적 측면의 설명이 지형 등의 자연환경의 상세함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넷째, 읍치(邑治)항목은 파견장교의 첩보활동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사회사적 연구의 소재가 된다. 이 항목에는 시가지의 경관, 굴뚝 수, 도시풍경의 인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강화부의 읍치에는 성벽의 높이, 두께, 길이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동문과 남문 사이의 경비상황이 파악되어 있다.

강원도지부 울진현(蔚珍縣) 「도서항만」 조에는 “울릉도”와 “간산도(干山島)”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기재 내용은 조선시대의 울진현 읍치에 수록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우산도를 간산도로 잘못 표기했다. <양보경>

朝鮮策略

도서번호 : 독도 951.59 ㅎ272ㄷ
저 자 : 黃遵憲(趙一文 譯註)
발행기관 : 建國大學校出版部(影印本)
발행년도 : 1977년 (원본 1880년)
구 성 : 154면

1880년(고종 17)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귀국할 때 가져온 당시

청국 주일공사관 참찬관(參贊官)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지은 외교 서적이다.

이 책략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방아책(防俄策)으로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親中國)과 결일본(結日本), 연미방(聯美邦)”함으로써 자강책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등 서구 열강과 국교를 맺을 것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미국은 강대(強大)·공명(公明)·정의(正義)의 나라로 조선에 대해서 침략의 욕심은 없고, 오히려 조선을 이롭게 할 것이므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할 것을 권하였다. 나아가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여러 나라와 공평한 조약을 체결해 문호를 개방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산업과 무역의 진흥을 꾀하고 기술을 습득해 부국강병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방략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략의 내용은 당시 보수적인 조선인의 생각보다는 확실히 한 걸음 앞선 이론이었다. 그러나 책략이 부분적으로는 청국의 대한간섭정책(對韓干涉政策)을 지원하며, 일본의 대한침투전략(對韓浸透政略)을 시인하는 경향이 다분해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을 경계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수호통상을 적극 추진하려고 권유된 외교정책이었다.

이는 당시 청국의 이홍장(李鴻章)이 배후에서 조선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과의 조약 체결을 유도한 것과 관련해 볼 때, 조선책략의 내용은 오직 저자인 황준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청국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이었던 셈이다.

이른 바, 제국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역사상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상, 미국 만은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 등과 다른 이질적인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정책의 내용은 극히 이상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바가 없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이 책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중국인이 본 국제적 안목에 불과하였다.

한편, 이 책략의 내용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개화혁신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쇠국보수의 척사론(斥邪論)을 주장하던 유림(儒林)층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론이 일어나 경향 각처에서 수많은 반대 상소가 있었다.

이 척사론은 더욱 치열해져 국내의 유림들의 궤기로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구미(歐美) 여러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었으며, 점차 구미 열강과 쇄국(鎖國)의 문호를 개방하고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이상태>

釣魚島 관련자료 I

도서번호 : 독도 915.2 z443

발행년도 : 2002년

구 성 : 58면 (복사본)

조어도 관련 중국 측 자료를 모아놓은 이 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

1971년 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어도 등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明清시대부터 이 섬은 중국의 海防區域에 속하는 대만도의 부속도서이며 류구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둘째, 중국과 류구지역의 분계선은 赤尾嶼와 久米島사이에 위치한다. 셋째,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어민들은 옛적부터 이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해 왔다. 넷째, 일본은 1895년 갑오전쟁시기에 시모노세끼조약을 통해 이 군도를 강제로 점령하였다.

2. 釣魚島관련문제

여기에는 조어군도가 중국영토에 속한다는 몇 가지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어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찌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부터 중국은 조어도에 관한 역사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이 조어도는 오키나오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약 125년 전까지 오키나와는 독립된 류구왕국이었다고 한다. 둘째, 명나라 永樂年(1403)의 『順風

相送一書』에는 조어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 셋째, 중국은 명태조 때부터 류구에 冊封史를 파견해 왔다. 1543년 명나라의 11번째 冊封史 陳侃이 편찬한 『使琉球象』에는 그들이 류구의 사자와 함께 배를 타고 류구로 항행하는 정경이 묘사되어 있다. 넷째, 『使琉球象』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류구 사람들은 조어도를 지나 久米島에 도착한 이후에야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釣魚島, 黃尾島, 赤尾嶼 등 島嶼는 류구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과거 중국에서 출판된 지도 중에 尖閣列島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사람들이 주권을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한 그 시기 상해에서 출판된 지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군국주의가 만들어낸 왜곡된 역사의 산물이므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3. 조어도의 연혁과 전략적 가치

여기에서 저자는 중국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부터 조어도에 대해 관할을 실시하여 온 역사를 설명하고, 이 군도가 가지는 군사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였다.

4. 조어도의 근황

2000년 4월 20일 일본의 우익단체 日本青年社 회원들이 조어도에 상륙하여 ‘神社’를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2000년 7월 중국의 科學技術考察船이 조어도 해역 부근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군함에 가로막히자 중국 해군이 전투기를 출동시켜 풀려나게 한 사실도 수록되어 있다.

5. 조어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관한 등소평의 생각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수교할 때 양국은 조어도 문제는 잠시 미루어 놓고 나중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978년 8월 일본외상 園田直이 조어도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중국정부의 총리 등소평은 중일관계의 진전이라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후 1984년 이후 중국은 조어도의 경제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석용》

釣魚島 관련자료 II

도서번호 : 독도 915.2 ㄱ443

발행년도 : 2002년

구 성 : 94면 (복사본)

이 책은 조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에는 주로 중국과 류구 간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16편의 논문과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 실려 있는 자료로는 길림대학 일본연구소 교수가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일본정치의 우경화와 조어도 문제」라는 논문, 1998년 발간된 文史精華라는 잡지에 실린 「일본이 조어도 주권을 탈취하려는 음모와 경과」에 관한 글, 명나라 때 류구국왕을 책봉하는 조서가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글, 청나라와 류구와의 무역에 관한 글이 있다.

새로 발견된 중국과 류구에 관한 중요한 역사학적 자료, 청나라 때 중국과 류구간 무역에 대한 논문, 청나라 때 류구국의 조공에 관한 글, 청나라 때 중국의 류구에 대한 책봉에 관한 글, 청나라 때 국자감의 류구관학에 관한 글, 泉州와 류구간의 민속 관계에 관한 논문, 청나라 때 류구국의 사은문서, 새로 발견된 청나라 때 류구관련 관방문서 당안의 가치에 관한 문헌조사에 관한 글도 수록되어 있다. 《이석용》

釣魚島-歷史與主權

도서번호 : 독도 952 0622ㄱ

저 자 : 井上 清 (賈俊琪 外 역)

발행기관 : 第三書館出版社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신국판 151면

본서는 1972년 일본의 現代評論社에서 간행한 『尖閣列島-釣魚群島の歴史解釋』의

제1부인 『釣魚島：歴史と主權』을 동일한 이름으로 번역 간행한 것이다. 본서의 원저자인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는 일본 1913년 日本 高知縣에서 출생, 1936년 東京 大學校 문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京都大學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본서 이외에도 『條約改正』·『日本現代史 第1卷—明治維新』·『日本軍國主義』·『部落問題研究』·『日本婦女史』·『現代日本婦女史』·『日本歴史 上中下』·『戰後 日本史』·『日本帝國主義の研究』·『西郷隆盛』 등 다수의 著書와 論文을 발표한 일본 유수의 근대사학자이다.

본서가 일본에서 첫 출간하던 때는 釣魚島列島를 일본측이 「尖閣列島」로 이름을 부치고 무단 점거하면서 臺灣과의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던 때였다. 이런 시기에 釣魚島列島는 사료의 엄밀한 고증을 통해 볼 때, 그 귀속이 중국측에 있다는 본서를 간행,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현재 그 섬을 강점하고 있는 터에 이 일련의 논저가 일본에서 이노우에 등에 의해 발표된 것은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香港에게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비를 들여 본서를 번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그 섬들을 오래 전부터 尖閣列島라고 호칭하였다는데, 그런 호칭은 明治年間 이전에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釣魚島列島라는 중국 측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기록은 林自平의 『三國通覽圖說』의 付圖인 「琉球三省 並 三十六島之島」라든가 琉球人인 羽地按司朝秀의 『琉球國中山世鑑』, 그리고 程順則의 『指南廣義』 등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이나 琉球에는 明治 이전에 독자적으로 尖閣列島는 물론 釣魚島諸島에 관하여 언급한 문헌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섬이 琉球人에게는 중국의 福州로부터 琉球의 那覇에 이르는 항로상에 위치한 중국의 섬의 하나일 뿐, 다른 어떤 의미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尖閣列島에 대한 認知는 중국이 단연 앞섰다고 할 것이며,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라는 일본의 주장도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효용가치가 없어 사람의 거주를 제한한 것이므로 이는 無主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尖閣列島, 즉 釣魚島列島의 법적 權原은 당연히 중국에게 있다는 것이다.

본서에서 지적한 이 같은 내용은 곧 우리의 독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의 인지는 한국 측이 앞섰을지 모르나 조선초기부터 공도정책이라는 이름의 시책을 취해 영토를 포기하고 있는 동안 일본이 경영하였으므로 무주지 선점의 논리에 따라 일본에게 법적 權原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서에 따르면, 한국은 認知만 앞선 것이 아니라, 이 섬이 효용가치가 없어 거주를 제한한 것이므로 법적 권원이 당연히 한국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본서가 지닌 가치가 나타난다. <임영정>

竹島考證 (上) · (中) · (下)

도서번호 : 독도 951.99 ㄷ162

저 자 : 北澤正誠

생산기관 : エムテイ出版

生産年度 : 1996년 (원본 1881년)

구 성 : 294면(복사본)

본서는 일본인들이 개항 이후 울릉도에 불법으로 도항하여 와서 목재를 도벌하는 등 불법을 행하자 조선정부가 1881년 5월 외무성에 항의문서를 보내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불법채류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鬱陵島, 즉 松島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모험상인들의 개발요청 등으로 일본 내의 世論이 비등해지자 일본 外務省이 울릉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北澤正誠이 이 임무를 맡아 작성한 조사한 보고서이다. 北澤正誠은 당시 광범위하게 문헌을 섭렵, 이 조사결과를 통해 본서를 먼저 서술하고, 다시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竹島版圖所屬考』를 외무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본서의 (上)권과 (中)권에는 울릉도에 대한 간단한 연혁이 실려있다. 松浦武四郎의 『竹島雜誌』·『北史』 卷14 倭傳·『竹島渡海免許拔書控』·江石梁의 『竹島考』·『竹島圖說』·『東國輿地勝覽』·『高麗史』 등 中國과 한국·일본의 사료를 섭렵, 울릉도에 관한 사료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肅宗 때의 이른 바 「鬱陵

島爭界」의 전말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본서에서 우리의 관심이 가장 크게 집중되는 것은 (下)권에 나와 있는 松島, 즉 울릉도의 개척 논의이다. 이 松島 개척논의를 통해 明治 초기 일본정부의 울릉도 독도 인지 여부를 조감할 수 있다.

松島의 개척논의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陸奥 지방의 士族, 즉 武士인 武島一學(혹은 武藤平學)인데, 그는 明治 6년(1873)부터 7년경에 블라디보스톡에 왕래하다가 鬱陵島(松島)를 보고 明治 9년(1876) 7월에 일본 외무성에 그 섬을 개척할 것을 건의하는 「松島開拓之議」를 제출하였다. 이 사람은 모험상인으로서 그가 낸 「松島開拓之議」를 보면, ‘松島와 竹島가 따로 있고 竹島가 조선에 가깝고 松島가 일본에 가깝다고 한 후 松島에는 폭이 수백간에 달하는 폭포수가 있고, 농경지로 개척할만한 땅이 있으며 수목이 울창하고 광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그가 말한 松島는 鬱陵島를 잘못 안 것 같다. 그리하여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를 무주지로 오인하여 「皇國에의 裨益」을 내세워 森林伐採로 일확천금을 노리자는 생각에서 이 「松島開拓之議」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 「松島開拓之議」가 건의된 다음 해에는 島根縣 출신 士族인 戶田敬義가 家藏書인 『竹島渡海記』와 지도 두 장을 첨부하여 東京府 知事 앞으로 「竹島渡海之願」을 제출하였으며, 武島一學의 「松島開拓之議」가 알려지자 兒玉貞易이란 자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개척인의 집을 짓고 별목하며 등대를 설치한 후 토지를 개간하자는 「建白書」를 제출하였다. 또한 같은 해인 1876년 12월에는 상업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하던 齋藤七郎兵衛가 블라디보스톡 주재 日本貿易事務官 瀨協壽人 앞으로 松島의 개발을 청원한 「松島開島願書並建書」를 제출하였으며, 瀨協壽人은 다시 이를 「浦潮港日記抄」와 함께 外務卿 寺嶋宗則과 外務太輔 앞으로 보내었다. 이 같이 논의가 일반에 알려져서 여론이 비등해지자 외무성은 松島가 한국의 울릉도일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혹시 다른 섬이며, 이를 러시아에서 먼저 점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서 조사단을 구성, 답사하기로 하였다. 일본 해군은 이에 1880년 9월 天城艦으로 하여금 송도에 가서 측량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본서에서는 「明治13년 天城艦이 松島에 回航하고 그 땅을 측량하여 처음으로 松島는 鬱陵島이며, 竹島라는 것은 일개의 암석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사실이 확연하여졌다. 그러므로 금일의

松島는 곧 元祿 12년(1699, 조선 肅宗 25)에 말하던 竹島로서 고래로 我國의 版圖 이외의 곳을 알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松島의 開拓問題」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였던 明治 초년의 「松島開拓論議」를 종합한 資料로서 鬱陵島와 獨島 영유권에 관한 한 중요한 사료인데, 원본은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본 도서관에는 그 복사본이 있다. 《임영정》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제7권 제2호

도서번호 : 독도 951.99 ○198ㄷ

저 자 : 山辺健太郎

발행기관 : 코리아評論

발행년도 : 1965년

구 성 : 11면

이 논문은 독도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독도의 귀속문제, 죽도와 송도(松島)와의 혼동문제,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역사적인 측면과 그 근거자료에 대하여 주요 핵심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편입조치가 정당한가와 명치시대 당시 편입을 고시하였던 도근현의 지사 中井養三郎이 영토로서 취득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시도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타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갑용》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도서번호 : 독도 951.99 7223ㄷ

저 자 : 川上健三

발행기관 : 古今書院

발행년도 : 1966년

구 성 : 국판 296면

본서는 일본이 獨島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역사·지리학적 이론을 서술하여 국제 법적 해석의 배경을 이루게 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서이다. 본서의 저자 川上健三은 명치 42년(1909) 台北에서 출생하여 경도대학문학부 사학과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후 臺灣에서 잠시 교편생활을 하다가 參謀本部 大東亞省에서 근무하였으며 戰爭後 外務省 條約局 참사관, 蘇聯公使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정년 이후에는 외무성의 촉탁으로 영토문제 조사관의 역할을 전담하다가 1995년 일생을 마쳤다. 외무성 재직 중에 그는 본서 출간 이외에도 일본의 연해지역의 영토문제, 이를테면 독도를 비롯하여 尖閣列島, 북방 4개열도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영토분쟁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내용을 보면 1952년 이후 한국에 보낸 일본외무성의 각서 내용과 흡사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저자가 그 각서 작성에도 참여하였으며 또 尖閣列島 영유권 주장의 이론도 그의 작품으로 보인다. 본서는 서두의 概說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3장으로 나누어 서술했는데, 제1장 「歴史的 背景」, 제2장 「竹島の 島根縣編入後の經營」, 제3장 「竹島の認知開發と自然環境」이 그것이다. 본서의 주요한 내역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제1절의 島名の 혼란이란 제목으로 川上健三은 오늘의 竹島=獨島가 明治 초기까지는 松島로 불리고 鬱陵島가 竹島로 호칭되다가, 1700년대 말엽에 유럽 선박의 잘못된 측량을 시-볼트가 두 섬에 比定함으로 인해 島名の 혼란이 일어나 오늘의 호칭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18세기 말엽까지 두 섬에 대한 인지의 혼란을 시-볼트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그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시-볼트

의 『NIPPON』에 나타난 두 섬에 대한 위치 比定은 당시 일본인의 두 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 즉 당시 일본인들은 두 섬을 서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는 등 호칭 자체가 혼란하였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시-볼트가 고의로 날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李鉉淙, 『鬱陵島·獨島學術調查研究』 1976) 역시 梶村秀樹도 이러한 혼란 자체가 일본인의 獨島 인지가 한국보다 그만큼 늦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 제2절 「竹島に關する知見とその經營」에서는 각종 문헌과 지도를 통해 일본은 17세기 중엽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인지하고 경영해 왔다고 하고 그 증거로 내놓은 것이 1667년에 편찬된 『隱州視聽合記』이며, 이를 底本으로 한 大西教保의 『隱岐古記集』(1823)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독도의 상황이 소개된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經緯度를 투영한 가장 오래된 지도인 長久保赤水의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와 그 이후에 그려진 지도 등에 울릉도와 독도가 분명히 그려진 점으로 보아 17세기 후반 이후 독도를 확실하게 인지하였다. 동시에 1618년 伯耆國 米子の 町人인 大谷甚吉·村川市兵衛가 울릉도에 대한 渡海免許를 획득, 울릉도 경영 途次에 독도를 경영하였는데, 그 반면에 한국이 『世宗實錄地理志』(1432)와 『新增東國輿地勝覽』(1531)에 나타난 于山島 기사를 독도로 비정하여 독도에 대한 認知가 훨씬 앞섰다고 하나, 이는 사실 울릉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世宗實錄地理志』보다 훨씬 후대에 편찬된 『東國輿地勝覽』에는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 하여, 于山이 鬱陵島의 異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므로 독도에 대한 認知는 일본보다도 훨씬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또한 三峰島로도 알려졌다고 하나, 『성종실록』의 기사로 보면 이 역시 鬱陵島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獨島에 비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대체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梶村秀樹와 堀和生은 이것이 川上健三의 「于山島非存在說」 「于山島抹消陰謀」라고 비난하면서 『世宗實錄地理志』의 인식이 가장 앞섰고, 그 후 조선왕조가 空島政策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인식은 흐려지나, 강원도 연해지방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결국 安龍福의 渡日사건을 일으켰을 정도이므로 한국의 獨島 認知가 일본보다 2세기나 앞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三峰島 說도 한국의 「獨島 認知」 주장을 말살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成宗實錄』에 보면 金自周가 다녀와서 한 보고 내용에는 鬱陵島가 아닌 獨島를 다녀왔던 내용도 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려 하였음이 드러난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제3절 「竹島一件」에서 저자는 일본의 大谷·村川 兩家が 막부로부터 부여받은 도항면허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지속적으로 경영해 왔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竹島一件」이란 朝鮮 肅宗 19년(1693) 東萊 어부 安龍福이 울릉도에 갔다가 大谷·村川 兩家が 德川幕府로부터 渡航免許를 획득하여 벌목과 魚採를 무단히 하고 있는 일본인의 행위에 분개하여 그들을 좇아 일본의 鳥取藩에 이르러 藩主에게 항의한 바, 藩主가 이를 德川幕府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安龍福은 對馬島를 거쳐 귀환한 일이 있었는데 대마도주는 이 틈을 타서 울릉도를 손에 넣고자 조선정부에 외교서한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동해상의 竹島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앞으로 朝鮮어부들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저들이 竹島가 鬱陵島인줄 알면서 해본 짓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朝鮮정부는 竹島가 울릉도임을 확인시켜 이후 2년여에 걸친 외교담판의 결과 幕府에서 조선영토로 인정, 그곳에 도항을 금하면서 일단락이 된 사건이다. 그런데 川上健三은 이때의 도항면허를 경영권의 인정으로 교묘히 위장하면서 이로써 獨島가 지속적으로 일본에 의해 경영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山辺健太郎·梶村秀樹·堀和生 등 일본학자들이 일본의 고문서 등을 조사검토했던 바, 이는 어디까지나 외국에 대한 도항면허이지, 자기나라 영역 내의 지역에 대한 경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었다. 오히려 이 도항면허로 말미암아 德川幕府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타국영토, 즉 조선의 영토인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었다고 반박하였던 것이다.

제2장 「竹島の島根縣 編入後の經營」의 제1절 「明治時代以後の竹島經營」에서는 鬱陵島·獨島에 대한 일본의 본격적인 경영이 시작된 것이 明治 38년 이후이며, 隱岐島 島民인 中井養三郎 등에 의해서였다. 그는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강치(물개의 일종)를 잡으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독점하고자 內務·外務·農商務省에 「らんこ島領土編入並に貸下願」을 제출하였다. 일본정부는 이후 이를 근거로 獨島の 명칭을 松島에서 竹島로 바꾸어 1905년 島根縣에 편입하였다. 이 편입조치는 일본의 관행대로 소관 府縣에서 공시하는 방법을 취해 島根縣의 고시로 일반에 공시하였다. 고시를 발한 이듬해인 1906년 3월 島根縣 제3부장 神西由太郎 등 45인의 조사단이 獨島를 시찰하고 귀로에 울릉도에 들러 郡守 沈興澤을 면담, 竹島의 영토편입을 알리고 그 곳에서 잡은 강치 한 마리를 주었더니 군수가 원로에 들른 것을 사례하였다고 하고 이는 당시 울릉군수가 독도를 자기의 관할 밖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이 같은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의 李漢基나, 일본의 山辺健太郎·梶村秀

樹·堀和生 등이 일제히 비난하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山邊은 中井養三郎이 처음 제출한 願書에 韓國領인 것을 알고 3부 대신에게 한국으로부터 빌려서 줄 것을 요청한 것, 이 문제의 논의석상에서도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韓國領으로 인식하였음을 들어 외교적으로 취약한 한국에 대한 침략의 일환이라 하였다. 島根縣 편입과정에 대하여 堀和生은 이것이 단순히 中井의 貸下願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러일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략상 필요하여 취한 행위임으로 국제법상 고시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비난하였다. 또 梶村은 타국과 영토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편입조치를 일개 地方縣에서 공시한 것,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약식으로 취한 공시여서 이는 한국이 모르는 사이에 취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 하였다. 또한 군수의 은근한 응대가 독도에 대한 무관심 내지 자국영토가 아님을 보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梶村은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일본관헌에게 모든 권한을 상실한 국가의 일개 지방관이 어떻게 반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튿날 江原道 觀察使를 통해 外部에 독도의 처리방침을 자문하였던 사실을 들어 그 주장을 일축하였다.

이상 본서에 나타난 주장의 대강을 살펴보았으며, 그밖에 가장 유치한 논쟁거리로 들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즉, 鬱陵島에서 獨島가 보이느냐 하는 문제이다. 제3장 「竹島의 認知開發と自然環境」에서 저자는 世宗實錄地理志 등 한국의 地誌에 나와있는 울릉도에서 바람불고 청명한 날 于山島가 보인다는 구절을 부정하고자 수확공식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道洞 앞의 배 위에서 볼 경우 보이지 않음을 예시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당시 鬱陵島는 밀림으로 덮여 높은 곳은 오르지도 못할뿐더러, 올라가도 숲에 가려 于山島를 볼 수 없으므로 地誌에 보이는 기록의 于山島는 곧 鬱陵島의 異稱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가 李漢基에 의해 호된 추궁을 당하였고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된 주장이었다.

본서에 보이는 많은 주장들이 이처럼 부정되고 반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무성을 비롯하여 몇몇 극우파 학자와 인사들은 아직도 본서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반박할 자료와 대응할 내용의 조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겠다. <임영정>

中國海疆歷史與現狀研究

도서번호 : 독도 952 0252주

저 자 : 呂一燃 등

발행기관 : 黑龍江教育出版社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4×6 배판 196면

본서는 중국 연해지방, 그 중에서도 변방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연구논문 모음집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연해지방의 역사적 연원과 현재의 위치에 대하여 부쩍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 같은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한 변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장려할 뿐 아니라, 직접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中國邊疆史地中心이 그것이며, 그 밖에 각省外에서도 이에 준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흑룡강성에서도 이러한 논문집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본서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臺灣研究 篇에 「臺灣人民的 항일투쟁과 中華民族의 凝聚力」(필자; 呂一燃) 등 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南海諸島研究 篇에는 「日本商人 西澤吉次の 東沙群島 강점과 中日交涉」(필자; 呂一燃) 등 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 北部灣研究 篇에는 「北部灣問題 爭議」(필자; 肖德浩) 등 2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香港問題 篇에는 「九龍半島, 九龍巡檢司, 九龍城史事考略」(필자; 劉蜀永) 등 3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특히 본서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臺灣研究 篇에 게재되어 있는 杜繼東의 논문 「釣魚島等島的歷史和現狀(釣魚島 등 섬의 역사와 현상)」이다. 中國 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助理研究員인 필자의 이 논문은 사실상 논문이기보다는 문제제기 수준의 연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글이라고 하겠다. 그저 중국 일본 사이에 벌어진 영유권분쟁을 연도순으로 정리한데 불과하며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최근 한중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東北工程의 경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일이지만,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역사관계 논문과 저서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발표된 해당사항에 관한 일체의 글을 무시하고 있다. 거의 인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국의 사료만을 가지고 서술하며 이전에 발표된 기성의 글을 참고조차 하지 않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井上 清의 『尖閣列島—その歴史と主權』이 그것이다. 이 책이 간행된 것은 1972년경이었으며, 그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상정되었고, 1997년에는 사회과학원에서 번역까지 되었다. 중국에 유리한 논리를 제공하여 준 그 책조차 인용하지 않고 있는 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임영정>

韓國開化期史料集成

도서번호 : 독도 951.59 7428호

저 자 : 岡庸一, 徳永勳美, 小松悦二

발행기관 : 國學資料院(영인본)

발행년도 : 1999년 (원본 1903~1909년)

구 성 : 전 6책

본서는 岡庸一·徳永勳美·小松悦二 등의 저술을 토대로 하여 구성 편집되었는데, 한국개화기 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도서를 종합하였다. 우선, 岡庸一의 『最新韓國事情』(상·하 2책, 1903년 간행)은 저자 스스로가 일명 『한국경제지침』이라고 칭하였듯이, 한일무역의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경제사정에 관련된 사항 중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것이었다. 저자인 岡庸一은 和歌山實業新聞社 주필로서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뒤, 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의 초빙으로 그곳에서 한일무역을 조사하는 데 종사하였기 때문에 한일무역은 물론 한국사정에 매우 밝았다. 저자는 한국을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종교·문학보다도 경제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한·일간의 무역을 중시하였다. 그

리하여 한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상인들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이한 문체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일본영사관과 일본인상업회회의소, 신문과 잡지사, 회사, 은행, 航海業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당시로는 가장 최근인 1901~1903년간의 무역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일무역의 기원과 연혁으로부터 明治維新과 한일관계·생산·화폐·무역·물가·신용·내국상업·교통운수·재정·조약 및 기타 제 규약·한일무역 경영론 등을 10편 36장으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다음 『韓國總攬』(상·하 2책, 1907년 간행)은 을사조약 후 한국경영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통감부 설치 후 일본인의 도향이 점증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상기한 도서의 저자인 德永勳美는 일본 농상공부 상공국 직원으로서 조선의 대체적인 상황이나 교섭·지리·농업상황·농업경영·해양수산업 등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저술된 기존의 서적과 농상공부와 농사시험장 및 외무성·대장성과 통감부에서 간행된 각종 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개황을 집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상공 및 광산·수산·삼림·도량형 등은 대부분 농상공부 각 국에서 실지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운수·교통·금융·화폐 등은 외무성·체신성·대장성의 보고서와 일본우선 및 경부철도회사 등에서 자료를 구하였다. 아울러 각종 통계는 대부분 1905년 이전 5년 간을 대조해서 작성되었다.

이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서는 한국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망라했던 것이다. 그 내용은 총론을 필두로 하여 역사·행정·재정·교육·사회조직·風俗·習尚·농업·상업·공업·수산업·광업·산림·교통운수·통화·도량형·조약 및 규약 등 각 부분에 걸쳐 있다. 특히 그는 한국경영의 핵심이 산업 개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농상공 및 일반 경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또 小松悅二의 『新撰韓國事情』(1909년 간행)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어 한국을 마치 일본의 内地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한국의 사정을 알고 보호·지도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저술되었다. 小松悅二는 동아시아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회

를 조직하고, 1908년 한국으로 건너와서 여러 차례에 걸친 여행과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는 한국에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서술해서 크게는 일본 발전의 자료로 삼고, 작게는 개인적인 조사에 참고할 의도로 일단 『韓國事情』을 편찬하고, 좀더 많은 자료를 보충한 다음 『新撰韓國事情』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동아시아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한국을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저자는 한국정부와 통감부, 각 지역의 거류민단과 상업회의소 등의 조사보고, 한국의 고문서, 직접 답사를 통해 획득한 관청의 서류 등을 참고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 중에서 광업과 농업은 당국자의 조사보고에 대부분 의존하였고, 경찰제도 등은 관련기관의 조사를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서는 총론·정치·재정 및 경제·농업·삼림·어업·광업·교육과 종교, 都府 및 항만 등 총 9편에 걸쳐 한국에 관련된 세세한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서술되었으며, 뒷부분에는 한국의 법령과 규칙을 모두 모아놓은 법규편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韓國紳士錄』(1909년 간행)은 일본의 한국지배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을 비롯해서 한국인과 구미인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에는 통감부인사과, 각 도 관찰부, 그 외 서울주재 각 국 영사관, 각지의 거류민단 및 상공회의소를 조사해서 자료를 모은 다음 5천 여명에 이르는 인물의 성명·주소·직업이 기술되어 있다.

이상의 도서를 국학자료원에서 편집하여 제1권은 『最新韓國事情』(上)을, 제2권은 『最新韓國事情』(下)을, 제3권은 『韓國總覽』(上)을, 제4권은 『韓國總覽』(下)을, 제5권은 『新撰韓國事情』을, 제6권은 『韓國紳士錄』을 실었다. 본서는 한국이 일본에 강점된 이후 울릉도·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체의 경제사정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서가 개화기라 명명된 시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풍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일방적인 역사시대의 규정인 관계로 참고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임영정>

韓海通漁指針

도서번호 : 독도 639.20951 ㄱ193 ㄱ
 저 자 : 葛生修吉
 발행기관 : 史芸研究所(영인본) (원본 黑龍會)
 발행년도 : 1999년 (원본 1903년)
 구 성 : 국배판 1책

본서는 葛生修吉이 발행도 겸한 책으로 1903년 黑龍會에서 발간하였다. 특히 이 자료는 188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의 바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드러낸 『大日本水産會報』와 『朝鮮通漁事情』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건이 된다. 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隱岐國은 이즈모(出雲)의 북쪽 바다에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남쪽에 있는 3개의 섬인 知夫島·中ノ島·西島를 島前이라 하는데, 그중 西島와 知夫島는 知夫郡에 속하며, 中ノ島는 海士郡에 속한다. 그 동북쪽에 있는 나머지 한 개의 섬을 島後라 하는데, 周吉, 隱地 두 군에 속한다”(『隱岐國水産ノ景況ヲ述ヘ併テ改良ノ意見ヲ陳ス』, 「大日本水産會報報告」第65號, 1887. 13쪽)

“海馬는 울릉도를 지나 十餘里(일본의 十里는 우리나라의 百리에 해당됨)쯤에 一小島가 있는데, 여기에 떼를 지어 살고 있으며, 배를 타고 다가가도 도망하지 않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한다”(『韓海出漁者の通信』, 「大日本水産會報」第158號, 1895. 75쪽)

“강원도에 속하는 양꼬섬(獨島)은 울릉도 동남방 約三十里쯤에 있으며,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것을 볼 수 있으며, 韓人과 日本 漁夫는 이 섬을 양꼬라 부른다”(『韓海通漁指針』, 1903. 123쪽)

“어업은 농업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본인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八道 중 五道이며, 충청도·황해도·평안도는 아직 구역 밖에 있다. 차제에 이 三道에도 확장해야 할 것이다”(『大韓施設綱領決定ノ件』, 『日本閣議決定書輯錄』, 1904.)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공히 우리의 바다를 朝鮮海(韓海)라 불렀다.

둘째, 出雲의 북쪽 바다 즉, 朝鮮海에 산재하는 隱岐島의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억지임을 그들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이 당시 독도는 분명히 隱岐島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울릉도 주위의 바다 즉 韓海에 출어한 일본어부가 강치가 서식하는 一小島(獨島)의 존재를 전하는 내용으로부터 일본의 無主地 先占 主張이 또한 억지임을 그들 스스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또 독도는 분명히 강원도에 속하고 있음을 일본은 알고 있었으며, 맑은 날에는 독도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넷째, 일본이 제국주의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본토 침략을 위한 사전조치로 우리의 바다에 관한 強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본서를 간행한 곳이 黑龍會였다는 것이다. 이 흑룡회는 일본의 한반도의 침략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일본의 극우파 집단이며, 본서의 간행을 도운 것도 한국 연해에 일본의 어민의 진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 기관에서 간행된 본서에 상기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우리의 영유권 연구에 오히려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은 독도를 '다께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불법으로 편입한 1905년, 소위 「島根縣告示」 제40호 이전에 이미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부속 도서도 아니며,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우리의 바다 조선해에 있는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일본의 억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자료이며, 일본 어민의 韓海通漁 상황과 수산단체, 韓海通漁의 연혁과 諸 규칙, 한국연해의 지리 및 기상, 수산자원, 주요어업의 종류와 어구 및 어업, 한해에서의 고래잡이 상황 한국수산업 일반 등 당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바다를 둘러싼 한일관계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 본서는 1903년 간행된 뒤 절판되어 1999년 사회연구소에서 복사본을 펴으며, 본 자료실에는 이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임영정>>

PH. Fr. von Siebold 研究論集

도서번호 : 독도 920 G232p
 저 자 : 法政大學 Ph.Fr.Von Siebold 研究會
 발행기관 : 法政大學
 발행년도 : 1985년 11월
 구 성 : 국판 301면

본서는 1861년(文久 元年) 江戸에 진출하여 外國事務 顧問으로 일하면서 일본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Siebold의 업적을 기려 蘭學史 및 對外交渉史 학자들이 연구회를 결성, 그간 學界에 알려지지 않았던 史料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Siebold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구성원들의 연구성과는 『Siebold研究』 창간호와 제2호에 소개된 바 있고, 本書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第I 편 「1934~5年, シーボルト文獻の來た頃」은 箭内健次가 서술하였는데, 1985년(昭和60년) Siebold研究會 第12回 公開 研究發表會에서 발표된 昭和初期 Siebold研究의 회고라는 강연을 정리한 것이었다.

第II 편 「シーボルトの門人 漆長安・美馬順三に関する若干の史料」는 沼田次郎이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1985년(昭和60년) Siebold研究會 第13回 公開 研究發表會에서 발표된 강연을 기초로 出島商館長 Blomhoff의 種痘實驗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일본에서 種두예방접종의 최초 시도자가 Siebold로 알려진 것은 잘못 된 것임을 밝혔다.

第III 편 「伊藤圭介からシーボルトに贈られた腊葉標本について」는 大森 實의 연구로, 여기에서는 伊藤圭介가 Siebold에게 贈與한 日本産植物腊葉標本集 14冊 中 前半의 7冊 즉 제1군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伊藤圭介가 自筆한 「シーボルト(江所贈)腊葉目錄」과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한 實地 檢証과정과 그 결과를 포함한 前半 7冊의 腊葉群의 現狀을 보고하였다.

第IV 편 「シーボルトと日本の犬」는 久我光雲의 연구로, 여기에서는 1984년(昭和59

년) Siebold研究會 第8回 公開 研究發表會에서 발표된 강연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Siebold編「日本動物誌」中 개(犬)를 묘사한 것이 있는데, 그 圖版을 근거로 현존하는 일본개의 혈통과 순수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第V편「オランダにおける徳川昭武」는 宮永 孝의 연구로서 여기에서는 1984년(昭和59년) Siebold研究會 第11回 公開研究發表會에서 발표된 강연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1866년(慶應2년) 프랑스 정부가 萬國博覽會를 개최하면서 일본의 참가를 촉구하자, 徳川昭武를 대표로 하여 박람회에 파견하였다. 그 후 대표단은 유럽 각국을 방문하고 修學하였는데, 그 중 Siebold와 관련이 있는 네덜란드 방문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第VI편「シーボルト旧蔵『樺太風俗圖』」는 佐ヶ木利和의 연구로서 그는 1984년(昭和59년) Siebold研究會 第7回 公開研究發表會에서 발표된 강연한 것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樺太(사할린)風俗圖』에 관하여 예전에 몇 편의 원고가 있었지만, 各圖의 검토와 Siebold의 해설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였던 부분의 旧稿를 보충하는 의미로 개작 서술되어있다.

第VII편「Von Siebold's Role in Europe Orientalism and Siebold Studies in Europe Past and Present」는 Ebehard Friese의 집필로, 여기에서는 1984년(昭和59년) Siebold研究會 第9回 公開 研究發表會에서 발표된 강연한 것을 기초로 집필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Siebold보다 앞서서 일본을 탐험하였던 유럽인을 분석하고 일본과 관계 있는 유럽인의 Orientalism 발전에 있어서 Siebold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또한 1868년이래 유럽에서의 일본에 대한 연구의 발전상황을 설명하였고 유럽에서 Siebold와 관련된 연구 발전상황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Siebold 평가에 대한 상황을 서술하였다.

本書의 앞머리에는 口繪를 통하여 本書의 방향을 암시하였다. 부록으로는 史料(伊藤圭介からシーボルトに贈られた腊葉標本中の411番~627番の腊葉群中見られる圭介自身による記事)와 資料(法政大學シーボルト研究會蒐集史料, 圖書論文等目録)가 실려 있고, 會報와 會誌第2号 正誤表가 수록되어있다.

본서를 통하여 일본의 시-볼트연구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의 『NIPPON』에서 잘못 알려졌다고 하는 울릉도 독도 호칭의 혼란의 변명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임영정>

3. 서양자료

Corea: The Hermit Nation

도서번호 : 독도 950 ㄱ219 ㄱ
 저 자 : William Elliot Griffis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2000년 (원본 1907년)
 구 성 : 544면 (원본 512면)

경인문화사의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제31권으로 영인되어 나온 책으로, 원본은 1907년 New York에서 발행되었다. 초판본은 1882년 출판되었고, 1907년 출판된 것이 8판본에 해당한다. 조미통상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미국에서 나온 조선에 관한 역사책으로, 초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인이나 영어문화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책 중의 하나로, 1882년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 발행된 조선에 관한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가치는 제3편의 근대사 부분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근대화해 가는 과정의 하나로 외국세력 침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함께 지도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어서 참고할만하다. 원문을 보아야 할 경우 원문은 희귀본으로 구해보기가 어려운데, 영인본이 나와서 편의를 돕고 있다. 출판사는 New York의 Charles Scribner's Sons이다.

필자인 William Elliot Griffis(1843-1928)는 Rutgers대학교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870년 일본으로 와서 그의 동양학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明新館에서 이화학을 가르쳤고, 1872년에는 南校에서 이학, 화학, 지리학, 생물학을 가르쳤으며, 그 후에는 東京帝國大學의 전신(前身)인 開城學校에서 화학을 가르치면서, 화학과를 창설하는데 크게 관여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는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기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집문당에서 발행한 『한말 외국인 기록 3』으로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

으로 신복룡교수가 번역한 번역본이 1999년 발행되었다. 그러므로 1907년 발행된 영문 영인본은 번역본보다 원문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상복》

Ⅲ. 사회과학자료

1. 한국자료 / 235
2. 동양자료 / 253
3. 서양자료 / 288

여 백

1. 한국자료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대한제국기정책사자료집)

도서번호 : 독도 340.9151 ㅂ327ㄷ
 저 자 : 박지태 (편)
 발행기관 : 선인문화사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4×6배판 전 8책

본서는 대한제국 시기의 정책관계 사료를 분류별로 나눈 자료집으로 모두 8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별로 일정한 주제로 묶여져 있다. 제1책은 政治 분야의 자료들을 모아 구성하였고, 경제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2책과 제3책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4책에서는 軍事 분야와 警察에 관련된 사항을 한데 묶고 있다. 제5책은 法律 부분을 모았고, 제6책에서는 教育 부분을 모아 구성하고 있다. 한편, 地方·外務·위생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제7책에서 모아 구성하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은 마지막 8책으로 구성하였다. 본서를 간행한 곳은 선인문화사이다.

본서를 통해 우리는 대한제국기 정국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본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하여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일본의 침탈과정을 살펴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임영정>

독도논쟁

도서번호 : 독도 341.13 7644ㄷ c.3

저 자 : 김병렬

발행기관 : 다다미디어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433면

이 책은 국방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가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주장을 소개하면서도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우선 독도분쟁이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주장논거를 서술적으로 이끌어 내어, 독도문제에 관한 우리와 일본의 주장 논점을 소개하고, 독도의 생성, 지질, 지형 및 기후, 생태, 해류 및 어업환경 등 자연적 환경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양법협약과 독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도가 섬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독도주변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 독도에 대한 명칭의 변화과정, 독도에 관한 한국 및 일본의 기록 및 실행 등을 설명하고, 한일간의 영유권 논쟁으로 조선시대 및 광복 이후의 영유권논쟁의 약사(略史), 역사적 사실 및 국제적법 측면에서의 영유권 논쟁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및 일본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측의 삼국사기, 태종실록, 안용복의 활동, 고지도, 공도정책 등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일본측의 독도 인지에 관한 기록과 1836년 아유에몽(八右衛門)의 울릉도 도해금지와 관련한 사형판결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으로는,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에 관하여 국제법상의 선점의 요건인 무주지와 대외적 공표라는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독도문제와 유사한 도서분쟁판례로서 팔마스 섬 사건, 클리퍼튼섬 사건, 동부 그린랜드 사건 및 망끼에 및 에끄레오제도 사건을 소개하고 국제판례의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결정적 기일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

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에서 독도가 한국령임을 보여주는 일본측의 고문서 및 고지도와 독도에 관한 한국 및 일본에서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1909년 일본이 간도협약에 의하여 중국에 넘겨준 간도문제, 1861년 중국이 북경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에 넘겨준 녹둔도문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압록강 하류의 비단섬, 영유권이 불분명한 백두산 천지,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대마도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립영토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밖에 독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실효적 점유 강화 이후에 미래 해결과제로 유보하는 방안,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 등을 제안하고 독도 영유권에 관한 신문이나 언론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독도에 상비군을 배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 및 결론에서, 일본이 독도를 빼앗기 위한 음모를 착착 진행해 오는 동안, 우리는 데모나 하고 고함만 질러대면서 내실을 기하는 데는 너무나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료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제3국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평소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확인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감용>>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도서번호 : 독도 341.13 7644ㄷ c.3

저 자 : 김병렬

발행기관 : 다다미디어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203면

이 책은 국방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1996년부터 독도영유권과 관련

하여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법학회, 역사학회 등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 보완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독도에 대하여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및 논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1장은 한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 제2장은 일본의 역사적 권원 주장, 제3장은 국제법적인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의 근거로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 및 권원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박논리를 담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 세종실록지리지 및 동국여지승람에 대한 한국측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한국측이 주장하는 우산도나 삼봉도 및 가지도 등이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한국의 주장은 틀렸다는 일본인의 주장, 독도와 관련한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등이 소개되고 있다.

제2장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 및 권원에 대한 일본인들의 논리를 담고 있는데, 1667년에 사이토(齊藤豊仙)가 저술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81년 규우에몽(九右衛門騰信)이 일본 막부의 순검사에게 보낸 청원서, 16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 도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호키슈태수에게 질문한데 대한 1월 23일 태수의 회답서, 1740년 제4대 규우에몽(九右衛門騰信)이 사사봉행에게 제출한 서류, 1741년 제4대 규우에몽(九右衛門騰信)이 나가사키 봉행소로 보낸 문서, 1751년-1763년간에 기타구니가 구술한 것을 기록한 죽도도설(竹島圖說), 1801년 야마다(矢田高當)가 지은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 오오니시(大西教保)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를 바탕으로 은주지방의 어부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보완하여 지은 1823년의 은기고기집(隱岐古記集), 요시쿠라(因府江石梁)가 1828년에 지은 죽도고(竹島考), 1836년 야우에몽(八右衛門)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밀무역을 한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된 기록인 사형판결기록 등이 소개되고 있다.

제3장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는 국제법상의 주장논리를 담고 있는데, 1905년 도근현(島根懸)의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에 대한 선점 또는 권원이 강화되었다는 일본의 주장,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일본은 1618년 울릉도 및 독도에 도해면허를 받고 어로활동을 하는 등의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점, 한국이 주장하는 SCAPIN 677호와 1033호는 영토의 처분에 관한 최종적인 조치가 아니며, 영토의 처분에 관한 최

중적인 내용은 1951년 미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에 실려 있고, 이에 의하면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일본인의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동안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연구가 우리의 주장에만 치우쳐 있고 상대방인 일본 주장의 주요내용을 찾아내어 그 논리적 근거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데에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 책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저서란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학술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 및 결론에서,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독도영유권 연구에 있어서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임을 밝히고 있다. 《정갑용》

독도연구

도서번호 : 독도 951.99 7621ㄷ c.3

저 자 : 김명기

발행기관 : 법률출판사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338면

이 책에서 저자는 독도가 1904년의 한일의정서 및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도근현(島根懸) 고시 제40호 등 구한말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침략의 제1차적 거점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에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오는 것은 과거의 침략주의를 포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7개의 장으로, 제1장은 독도의 명칭과 지리, 제2장은 독도의 역사, 제3장은 독도와 일본의 선점 주장, 제4장은 독도와 도서분쟁에 관한 국제판례, 제5장은 독도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제6장은 독도와 영유권 문제의 발단, 제7장은 독

도자료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먼저 독도의 명칭 및 지리에 관한 것으로, 독도의 역사적 명칭에 대하여 신라시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시대의 동국여지승람 및 고려사지리지,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대한제국시대의 칙령 제41호, 심홍택의 보고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독도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과정, 독도가 고려의 영토가 된 과정, 조선시대에 실시한 공도정책의 내용 및 독도에 대한 영향, 안용복의 활동과 독도문제에 대한 영향, 대한제국시대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정으로 독도가 울도군수의 관할지역으로 통치권이 계속 행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 1905년 일본이 도근현(島根縣)의 고시 제40호에 의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사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의 항복문서, SCAPIN 677호, 대일강화조약 등 국제적 문서에 의하여 독도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문제, 독도에 대하여 한국령임을 표시한 일본의 문헌, 지도, 문서 등의 사료, 독도에 대한 실효적 경영의 증거로서 주거조건, 인지 및 실제적인 경영사실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배선희, 김종하의 논문으로, 독도와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법상 선점에 관한 요건, 효과 및 범위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독도에 관한 일본의 선점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독도와 도근현(島根縣)의 고시 제40호와의 관계에 대하여 당시의 주변정세, 독도편입의 경위, 도근현(島根縣) 고시의 국제법상 성격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4장은 최원석, 최재현, 이덕행, 김명기의 논문을 모은 것으로, 독도와 도서분쟁에 관한 국제판례인 1928년 미국과 네덜란드간의 팔마스섬 사건, 1931년 멕시코와 프랑스간의 클리퍼튼섬 사건, 1933년 영국과 아이슬랜드간의 동부그린랜드 사건,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 및 에그레오 제도 사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5장은 김개영(金煥永) 및 김명기의 논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문서에서 독도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도와 연합국최고사령부훈령(SCAPIN) 제677호, 독도와 1951년 미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제2조를 검토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국제문서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침략한 한국의 영토에 대하여 한국이 원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이는 연합국 등 국제사회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로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6장은 이형태의 독도와 영유권문제의 발단에 관한 논문으로, 독도의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과정, 평화선 및 일본의 주장 등에 관하여 논술하고 있다.

제7장은 독도자료 목록으로, 독도에 관한 한국측 단행본, 논설, 신문기사와 일본측 단행본, 논설, 독도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서양문헌, 독도에 관한 지도목록 및 부록으로 독도에 대한 고지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고찰에 그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사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독도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리, 독도에 관련된 국제문서, 역사적 사료, 한국 및 일본의 자료목록 및 독도에 관한 지도목록 등 독도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독도연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갑용》

독도의용수비대와 국제법

도서번호 : 독도 951.99 7621ㄷ

저 자 : 김명기

발행기관 : 도서출판 다물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160면

이 책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민간차원에서 결성되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경비정에 의한 독도영해의 불법침범을 격퇴하여 우리의 영토를 보존하고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하는데 기여한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자료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과정, 편성과 장비,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법적 지위,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의 시효취득 등에 관하여 논술하고 있다.

먼저,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용수비대를 주도한

이는 울릉도 태생의 홍순칠(洪淳七)인데, 그는 6.25전쟁에 특무상사로 참전하였으며, 휴전후 군에서 명예제대하여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와 독도를 지키려는 결심을 하고 1952년에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의 한일관계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고, 1952년에는 우리나라가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평화선)을 선포하자, 이에 일본이 외교적 항의를 하여 독도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즈음인 1952년 8월 15일 울릉군이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행사를 계기로 홍순칠이 재향군인 울릉연합분회장에 선출되는 등의 과정에서 독도를 지키려는 의병을 규합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독도의용수비대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임명한 정규군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전시에 소집된 민병대도 아니며, 국가의 인가로 조직된 의용병도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경비정 격퇴사건 이후에 홍순칠 대장을 연행하는 등 독도의용수비대를 불법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비록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전적, 명시적으로 인가한 바가 없으나, 독도의용수비대의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당국이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사후적, 묵시적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전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주민의 집단으로, 이는 국제법적으로 “군민병”의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독도에 적용하면 국가기관인 독도경비대가 1956년 12월 25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수비의 임무를 인수받은 시점을 독도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거나,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시점인 1953년 4월 20일로 시효취득의 기산점을 소급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은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이론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국제법상 영토의 시효취득이란 “남의 영토”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자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원래의 주권국가 대신에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6년 12월 25일이나 1953년 4월 20일을 독도에 대한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보는 견해는 마치 그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으로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이 지니고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 논리설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과정이나 활약에 사실적 자료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갑용》

독도특수연구

도서번호 : 독도 341.13 7621ㄷ c.4

저 자 : 김명기

발행기관 : 법서출판사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437면

이 책은 독도조사연구학회에서 주관하여 명지대에 재직중이던 김명기 교수와 석, 박사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학회회원들의 논문을 책으로 묶은 것으로, 독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독도영유권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증자료를 통하여 일본을 승복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도의 개황, 역사상 조선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도, 독도에 대한 일본 무력행사시 제기되는 제문제, 독도와 해양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독도의 개황으로 독도의 지형 및 지세, 기상 및 기후, 토양 및 토질, 식생 및 경관, 독도의 해양 등 자연환경과 독도의 명칭변화, 접근체계, 토지이용, 기반시설, 거주실태, 어업실태 등 인문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독도의 개발방안으로 4단계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단계 개발방안으로 리프트카의 확충, 주접안시설 및 접근로의 건설 및 보강, 어민대피소의 유인화 및 선가장치의 설치, 해수담수화시설 등 용수의 확보 등을 제안하고, 제2단계 개발방안으로 독도를 국민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선박의 접안시설 및 호안시설의 축조, 관광산책로 및 동도

와 서도를 잇는 구름다리 건설, 해상관광 및 수중관광시설의 건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3단계 개발방안은 독도를 어업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동도와 서도의 일부를 매립하여 선원의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방파제를 건설하여 선박의 대피시설을 확보하며 대형 디젤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4단계 개발방안으로 독도에도 최전방 전초기지로써 군사력을 배치하고 조직적인 방공망과 공군의 항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은 독도유인도화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법상 유인도의 조건을 검토하여 독도의 유인도화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정책을 살펴보고, 1997년부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도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1997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999년 독도개발특별법」 등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소개하면서, 독도개발문제는 외교적 측면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독도개발의 찬반론과 타법률과의 관계 및 개발의 정도와 개발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후반부는 독도에 대한 역사자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주요 국제문서와 독도문제, 일본의 무력행사시 문제점, 해양법과 독도문제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대부분이 『독도연구』(김명기, 법률출판사, 1997년)에 나타난 설명과 유사하다. <<정감용>>

섬의 국제법상 지위

도서번호 : 독도 341.13 0737 ㅅ

저 자 : 이석용

발행기관 : 진성사

발행년도 : 1988년

구 성 : 177면

현재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 교수로 재직 중인 이석용 교수가 저술하여 1988

년 출간한 책이다. 책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국제법상 섬제도의 발달과정과 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섬이 창설할 수 있는 해양수역, 해양경계획정시 섬의 지위 등 섬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해양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면서 섬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2장 「섬제도의 발달과정과 섬의 정의」에서는 섬제도의 연혁과 섬의 정의를 고찰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상 섬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국제법 이론과 실제에 비추어 섬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제3장 「섬의 해양수역」에서는 섬이 가질 수 있는 해양수역들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우선 섬 주변에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찰하였으며, 이어서 섬의 영해에 대한 권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대륙붕과 경제수역 등 국가의 경제적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 대한 섬의 권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해양법협약 121조가 3항에서 그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제한한 암석(rock)에 관한 규정을 염두에 두고 섬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권원을 고찰하였다.

제4장 「경계획정과 섬의 지위」에서는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면서, 각 단계에서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면서, 실제사례를 근거로 섬의 효과를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해양경계선에 대해 섬이 완전한 효과를 갖는 경우,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분적 효과를 갖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도 실제사례를 들어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섬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과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앞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책은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국제법에서 어떤 지형이 섬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으며, 어떤 섬이 어떤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경계획정시 섬이 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이 책은 섬을 둘러싼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과 그 해결방법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은 독도의 법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권원과 경계획정시 경계선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는 활용될 수 있지만, 섬의 영유권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석용>>

統監府法令資料集(통감부법령자료집)

도서번호 : 독도 340.9151 ㄱ363ㄷ

저 자 : 宋炳基 外

발행기관 : 국회도서관

발행년도 : 1972년

구 성 : 국판 3책(上·中·下)

본서는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서 1970년부터 한말근대법령자료집 간행에 착수하여 1972년 5월까지 9권까지의 간행을 마치고 1973년의 10권 색인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이 법령자료집은 1894년(開國 503년) 6월부터 1910년(隆熙 4) 8월까지의 한말 각종 법령류를 빠짐없이 수록한 것으로 입법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한국근대사를 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자료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일제(日帝)가 1905년(光武 9) 11월에 한국정부를 강요하여 제2차 한일조약(乙巳保護條約)을 체결한 뒤, 칙령(勅令)으로 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그리고 서울·인천·진남포·목포·마산 등과 기타 필요한 곳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는 건을 결정 공포하고, 곧이어 12월에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를 공포하였으며, 다음해 2월부터 사무를 개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많은 법령류가 쏟아져 나왔다. 통감부나 이사청 법령은 일본법령이어서 당시의 한국법령과는 당연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법률생활을 규제하였으며, 1909년(隆熙 3) 이래 사법권·감옥사무·경찰권이 일제에 이양됨에 따라 한국의 법률에 관한 모든 것이 일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에서 간행한 자료집의 특성은 과거 한국의 법제사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법적 토대를 흔들었던 통감부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시 편저자 대표인 宋炳基는 한말법령자료집을 수집해오던 작업을 토대로 하여 본서의 편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어려움은 물론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직접 검색하여 정리한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편자의 지적처럼 1907년까지의 이사청 법령류는 수록하지 못한 점이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上·中·下의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에는 1905년(光

武 9) 11월부터 1907년(光武 11, 隆熙 元年, 明治 40)까지의 법령류를 수록하였다. 주된 내용은 통감부의 설치와 이사청의 설치 및 재판사무, 주요 지역에 대한 우편·전신사무, 경찰권에 관한 내용들과 한국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법령,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 등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간섭으로 보이는 법령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중권에는 1908년(隆熙 2, 明治 41) 1월부터 1909년(隆熙 3, 明治 42) 6월까지의 법령과 이사청령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청진항의 개항 건, 우편·전신 사무, 광업, 삼림, 운송, 전매사업은 물론 어업권에 관련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와 관련한 내용이 통감부 법령과 이사청의 고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전방위에 걸쳐 탈취행위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하권에는 1909년(隆熙 3, 明治 42) 7월부터 1910년(隆熙 4, 明治 43) 7월까지의 법령과 고시를 수록하였는데, 기본 산업에 대한 권리 내역에 관한 내용과 학교조합의 설립 건 및 선박, 경찰사무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수록의 원칙을 보면 각 법령류를 년, 월, 일순으로 기록하되, 우선 법령의 종류를 밝히고 이어서 법령의 건명과 인용자료를 부기하고 있다. 아울러, 통감부 및 이사청 법령류는 물론 이에 관계되는 일본법령류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統監府公報, 日本官報, 統監府法規提要 등을 토대로 법령의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임영정>

解放前後 美國의 對韓政策史 資料集

도서번호 : 독도 951.7 ㄱ275ㅎ

저 자 : 鄭容郁, 李吉相

발행기관 : 다락방(영인본)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국배판 전 13책

본서는 1945년 해방 전후의 시기에 對韓政策 담당자들이 지닌 정세인식이나 정책적

태도, 정책의 입안과 작성과정을 반영하는 자료들을 모아 편집한 자료집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주로 미국의 주요 정책가가 모여있는 워싱턴 주위에서 작성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지만, 그 중에는 워싱턴 이외의 장소에서 작성되어진 미소공동위원회 문서나 웨드 마이어 사절단 문서와 같이 정책 입안과 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자료들도 포함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에 관한 구상이 본격화하는 태평양전쟁 시기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편집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해당 시기의 소련, 중국 측의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일부 첨가되었고, 일부 남·북한 정세 분석 자료들은 1950년대 후반까지도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1950년 이전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 가운데 본 자료집에서 누락된 것으로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이후 미국 측의 한국문제 취급을 알려주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 문서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문서철이 국내에서 이미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집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본서는 이미 발견된 『해방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의 자매편 격에 해당한다. 『해방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은 한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동향을 주제로 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지의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작성하거나 이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자료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자료집에 실린 자료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서는 독도영유권 연구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이후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일본간의 영토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본다. <임영정>

(국역)해행총재

도서번호 : 독도 327.51 ㅎ174

저 자 : 鄭夢周 등

발행기관 : 민족문화추진회(영인본)

발행년도 : 1986년 (원본 1764년)

구 성 : 국판 총 12책

고려·조선시대 통신사, 사신이나 포로 및 표류 등으로 일본을 내왕한 자들의 기행록을 모은 책이다. 넓은 의미로 일본에 다녀온 기행록을 총칭해 해행총재라고도 한다.

체재와 내용을 보면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각 저자별 저술들을 28책으로 엮은 본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나 저작별 서열순서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

수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책은 鄭夢周의 奉使日本作詩, 申叔舟의 海東諸國記, 金誠一의 海槎錄, 申維翰의 海游錄 上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몽주의 奉使日本作詩는 일본에 파견된 사행의 최초 기록으로, 우왕 3년(1377)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보고들을 짓을 시로 적은 것으로 고려 때의 유일한 日本往還記錄이다. 이 사행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일본측의 협조를 얻는 데에 목적이 있었으며, 귀환 때 많은 고려인(高麗人)을 데리고 왔다. 신숙주의 海東諸國記는 성종 2년 왕명에 의해 찬진한 일본국, 대마도 및 琉球國의 제도와 풍속 등을 자세하게 적은 조선초기와 室町幕府시대의 한일 관계 기본사료로 가치를 지닌다. 일본의 지세·국정, 교빙 내왕의 연혁, 조선 사신들에 대한 접대 등의 절목을 담은 것으로, 양이나 내용 면에서 볼 때 사행록의 표본이 된다. 김성일의 海東諸國記는 선조 23년(1590) 그가 일본에 통신부사로 다녀온 이듬해 지은 것이므로 紀行詩와 上使 黃允吉, 일본의 접반사 玄蘇 등과 주고 받은 서찰 등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직전의 양국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신유한의 海東諸國記는 숙종 44년 일본 關白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행에 製述官의 신분으로 가서 지은 詩文으로 지리·풍속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고증하여 기록한 것이다.

2책에는 신유한의 「海游錄」 下, 姜沆의 「看羊錄」, 慶暹의 「海槎錄」, 吳允謙의 「東槎上日錄」이 수록되어 있다. 姜沆의 看羊錄은 정유재란 때 의병으로 활약하다 왜구의 포로가 되어 4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보고들은 정황을 기록한 자료로 일반에 널리 유포된 것이다.

3책은 李景稷의 「扶桑錄」, 姜弘重의 「東槎錄」, 林統의 「丙子日本日記」, 李志恒의 「漂舟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李景稷의 扶桑錄은 광해군 9년 오윤겸의 일본 사행 때 종사관으로 따라간 저자가 그곳의 物産·人情·服制·飲食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백여일 간의 일기이다. 姜弘重의 東槎錄은 仁祖 2년(1624) 回答副使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기록한 기행문으로 일본의 지리·職制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특히 이 사

행에서 일본의 지도를 작성하였다.

4책에는 金世濂의 「海槎錄」, 「槎上錄」, 황감의 「東槎錄」이 수록되어 있다. 金世濂의 海槎錄은 인조 14년(1636) 통신부사로 일본에 간 2백여 일 간의 일을 기록한 일기체의 기행문이다. 부록인 「見聞雜錄」에 일본의 軍兵·收稅·막부장군의 가문 내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槎上錄은 이때 얻은 시를 모아 만든 별책이다. 황감의 東槎錄은 인조 14년(1636) 任統·金世濂에 따라 종사관으로 일본에 간 저자가 일본에서 보고들을 내용을 기록한 사행록으로 부록 〈見聞摠錄〉에는 일본의 刑法·嫁娶喪葬祭祀 등에 대해서 상세히 고찰되어 있다.

5책은 趙綱의 「東槎錄」, 申濡의 「海槎錄」, 작자미상의 「癸未東槎日記」, 南龍翼의 「扶桑錄」으로 구성되었다. 趙綱의 東槎錄은 인조 21년(1643) 일본의 關白의 아들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통신부사로 일본에 간 趙綱의 기행 시문으로, 관백설·日本姓氏錄題·倭國三都說 등이 서두에 실려있다. 특히 작자미상의 癸未東槎日記는 인조 21년(1643)에 파견된 통신사 尹順之의 일행을 따라간 일행이 기록한 것으로 작자는 알 수 없다. 문장이 간결하고 일본의 명승고적에 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며, 일본의 국력을 조선보다 우월한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6책은 南龍翼의 「聞見別錄」, 洪禹載의 「東槎錄」, 金指南의 「東槎日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南龍翼의 聞見別錄은 남용익이 扶桑錄과는 별도로 일본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일본천황의 세계, 관백의 서열, 官制·州界·道里·人物·風俗·兵糧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리를 설명부분에 일본 隱岐州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그 기준을 울릉도로 잡고 있다. 東槎日錄은 숙종 7년(1681) 역관으로 통신사를 따라 가서 기록한 기행문인데, 역관 신분으로 박학하여 의서인 『新傳煮硝方』과 조선시대 외교관계의 귀중한 자료인 『通文館志』를 찬술한 金指南의 저술이다.

7책은 趙曦의 『海槎日記』를 수록하고 있는데, 영조 39년(1763)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적은 일기와 시문이다. 일본과 왕래한 문서·書契·路程日記 등 많은 자료와 3백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이 사행에서 고구마 종자를 얻어와 재배법과 저장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고 한다.

8책은 宋希慶의 「日本行錄」, 黃愼의 「日本往還記」, 鄭希得의 「海上錄」을 수록하고 있다. 宋希慶의 日本行錄은 대마도 정벌로 일본과의 국교가 험악해지자 그들을 회

유할 목적으로 回禮使로 파견되었는데,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일본에서 국서의 연호 문제로 그들의 청을 거절, 구류까지 당했으나, 굴복하지 않고 국교를 회복한 조선 초기의 대일 관계 사료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黃愼의 日本往還記는 정유재란 때 영광 앞 바다에서 저자의 일가족이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본국에 돌아오기까지 일본의 풍토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9책은 魯認의 「錦溪日記」와 任守幹의 「東槎日記」로 구성되어 있다. 魯認의 錦溪日記는 저자가 정유재란 때 남원싸움에서 분전하다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압송, 옥중생활을 하였는데, 3년 5개월만에 탈옥하여 명나라를 거쳐 귀국하기까지의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의 생활상 등을 확인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10책은 曹命采의 「奉使日本時間見錄」, 柳相弼의 「東槎錄」, 金綺秀의 「日東記游」로 구성되어 있다. 曹命采의 奉使日本時間見錄은 英祖 24년(1748) 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에 갔을 때의 견문을 일기체로 적은 것이다. 특히 부록인 「見聞摠錄」에는 일본 주요 주군의 연혁·지리·물산 등을 기술하였으며, 조세·음식 등의 각 분야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金綺秀의 日東記游는 高宗 13년(1876)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직후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오면서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근세 한일관계사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회상 등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사건별로 시말을 적은 기사본말체 형식의 기록이다.

11책은 이현영의 「日槎集略」, 박영효의 「使和記略」, 朴載陽의 「東槎漫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영의 日槎集略은 高宗 18년(1881) 일본에 파견된 신사유람단의 일원이던 저자의 기행문이다. 그가 조사 연구하기로 된 일본세관부분에 대한 고찰인 〈海關摠論〉를 비롯한 일본 대신 및 주일중국공사와의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박영효의 使和記略은 壬午軍亂 직후인 高宗 19년(1882)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견문기록이다. 이 사행때 박영효가 태극기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태극기의 제작경위와 유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근대 對日政治外交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朴載陽의 東槎漫錄은 高宗 21년(1884) 갑신정변 수습을 위해서 일본에 파견된 欽差大臣 徐相雨의 종사관이었던 박재양이 쓴 일본 기행시문이다. 당시 한일 간에 감돌던 정치기류와 事大黨·開化黨을 위시한 淸日간의 갈등상을 밝히는 자료가

풍부하다. 특히 내용 중에는 乙酉年 2월 14일 일기에 울릉도 나무대금을 추심하려는 기사가 수록하고 있어, 조선의 울릉도 관리정책에 대한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해행총재에는 여러 종류의 기행문이 수록되어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적고, 그 이후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1607년 대일 국교정상화로 통신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되면서 이들에 의한 문건록이 대부분이다.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선인의 일본관, 일본의 문물제도, 일본인들이 조선을 보는 시각 등을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임영정》

2. 동양자료

孤島の歸屬に關する法理

日本法學 제35권 제3호

도서번호 : 독도 341.13 ㅎ279ㄷ

저 자 : 深津榮一

발행기관 : 日本法學

발행년도 : 1970년

구 성 : 26면

이 논문은 독도의 귀속과 관계된 분쟁 원인과 관련 국제법판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국제법상의 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저자는 독도의 귀속문제의 법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1929년의 팔마스섬 사건(Palmas Island Case), 1931년의 클리퍼튼섬 사건(Clipperton Island Case), 1953년의 망끼에·에크레오 사건(Minquiers and Ecr hos Islands Case)을 주요 관련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팔마스섬 사건에서는 발견의 효과와 선점의 통고의무, 근접성 이론이 쟁점이 되었는데, 발견은 결정적인 영역주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한 권원(inchoate title)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영토권원은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사되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동 사건을 통해 선점에 대한 통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소위 근접성(contiguity) 이론도 전면적으로 부인되었다.

클리퍼튼섬 사건은 실효적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선점을 주장하는 선언의 유효성에 대한 내용이며, 망끼에·에크레오 사건은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결정과 영역주권행사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문제로서, 독도가 무주지였는지의 여부와 선점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

저자는 독도분쟁에 있어서 분쟁의 개시일이며, 원고국가가 당해지역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여, 문제가 구체화된 날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언제로 결정할지에 대하여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1905년 일본의 독도영유의를 밝힌 도근현 고시가 이루어진 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 날,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분쟁을 부탁하기로 정식으로 합의한 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만약 독도문제를 분쟁지역이라는데 합의하고, 이의 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 결정적 기일의 결정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답용>>

島根縣竹島の新研究

도서번호 : 독도 327.51053 C195 사 비

저 자 : 田村清三郎

생산기관 : 報光社

생산년대 : 1965년(昭和 40년)

구 성 : 활자본 국판 160면

본서는 저자가 1954년에 편찬 간행한 바 있는 『島根縣竹島の研究』를 수정 증보한 연구서이다. 저자 田村清三郎은 島根縣 總務部 總務課 사무관으로서 일찍이 앞에 소개한 논고를 발표한 바 있고, 이 사실을 알게된 당시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 川上健三이 사학자 田川孝三과 더불어 島根縣에 출장, 독도에 관한 사료를 조사할 당시 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집필에 기여하였던 인물이다.

본서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竹島と松島との歴史的な沿革

竹島という名の起源

竹島と松島との名前が入れ替ったこと

竹島の領土編入と管理

竹島に關する漁業行政
 竹島經營の實態
 竹島の鑛業權
 いわゆる竹島問題の經過
 韓國の主張とその批判
 あとがき

그런데 이 목차만을 가지고는 그 상세한 내용을 미루어 알 수 없다. 실제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분히 억지주장과 사료에 대한 견강부회로 점철되어 있다. 그것은 저자가 역사학을 전공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기에 지나친 감이 있다. 이는 그가 도와준 川上健三의 저서에서도 보이는 바이지만, 일본의 팽창주의를 지향하는 극우파 인물들의 논조에서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 저서류들은 사료에 대한 고증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사료 중에서 저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택한 관계로 그가 인용한 사료를 재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다만 본서를 통하여 그 당시 島根縣 縣民의 일반적인 獨島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데는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임영정》

世界の領土・境界紛爭と國際判例

도서번호 : 독도 341.13 7131사 c.3

저 자 : 金子利喜男

발행기관 : 明石書店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371면

이 책에서는 영토 및 경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사법적 해결 방법을 견지하고 있는

국제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인 金子利喜男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부탁함과 동시에 외교교섭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5개의 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목차는 제1부 일본의 영토문제의 연혁, 제2부 분쟁이 계류된 제도(係爭諸島)의 평화지대화, 제3부 영토·경계분쟁의 해결방법, 제4부 영토·경계분쟁의 판례연구, 제5부 세계시민법정의 창설이다.

제1부 일본 영토문제의 연혁에서는 제1장에서 러·일간 영토문제인 북방영토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중·일간 영토문제인 첨각열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하여서는 제3부 한·일간 영토문제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과 한국간의 영토문제에 대하여는 저자가 작성한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양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양국의 주장을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견해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측이 1954년 10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다른 일본측 논문에서의 주장과 달리 독도문제를 세계시민법정에 부탁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갑용》

領土歸屬の國際法

도서번호 : 독도 341.13 c227ㄹ c.2

저 자 : 太壽堂鼎

발행기관 : 東信堂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248면

교토대학 교수였던 저자 太壽堂鼎은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정부 옵서버로서 활동하

는 등 일본에서 다양한 국내의 학술활동을 하였으며, 1997년 8월 사망시까지 국제법의 기본문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였다.

이 책은 서장을 포함하여 7개 장과 보장(補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에서는 영토의 구조와 그 특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1장은 선점원칙의 성립과 전개, 제2장은 극지귀속의 실행과 법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3장은 죽도분쟁, 제4장은 개국기 당시의 영토교섭과 국제법, 제5장은 일본을 둘러싼 영토문제, 제6장은 공간의 법질서를 설명하고 있다. 보장(補章)은 교토대학 국제법 교수인 Kanae Tajudo가 「초기 일본의 영토경계획정 관행」(Japan's Early Practice in Fixing Its Territorial Limits)을 영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1868년 메이지 유신 시대부터의 주요 영토경계획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서장에서는 영역의 특질에 관한 국제법 일반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바, 영역취득의 원인으로는 할양, 병합, 정복, 선점, 시효, 침부의 6가지의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제1장을 살펴보면 국제법상 선점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가지고 당해 토지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점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이어야 하고, 선점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점의 객체는 국제법상 「無主의 土地」(*terra nullius*)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선점의 요건을 정신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선점의 정신적 요건으로는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가져야 하는 바, 영유의사의 선언, 타국에 대한 통고, 국기 또는 표장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선점의 실체적 요건으로는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하며, 실효적인 점유는 자국민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그 토지에 정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토지를 지배하는 권력이 확립될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독도문제와 관련이 있는 제3장과 제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965년의 韓日諸協定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분쟁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저자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인쇄된 韓日諸協定에서 다른 문제는 해결을 보았으나, 독도의 귀속문제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정부는 당초 독도문제를 포함하여 일괄타결을 방침을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일교섭을 타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1954년 이후 한국이 실력을 행사하여 독도를 점거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일단 협정이 정식 조인된 이후에는 독도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당시 일본정부의 방침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교섭과정에서 이러한 기존 방침에서 후퇴하여, 독도의 해결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독도문제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자, 1965년 이후 한일교섭과정에서 독도문제는 일본정부의 일방적 양보로 끝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국내에서 독도문제를 방기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기술한다.

저자는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즉 독도의 역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독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독도의 도명(島名)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는 초보적인 지식만을 가진 채 독도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질타하면서, 독도는 과거에는 울릉도의 별명으로 불렸으며, 오늘날 독도는 송도(松島)로도 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한일간 교섭의 타결을 전후하여 어떤 것은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고, 어떤 것은 조선령으로 하는 고지도가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그것은 도명을 착각하여 오해한 것으로 독도를 조선령으로 하는 지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독도문제를 일본의 영토문제 가운데 가치가 작은 섬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비판하였는데, 독도의 가치는 일본해에 있어서 중요한 수산자원 부존지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끝으로 저자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제법상의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분쟁이 된 시점을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이승만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광대한 수역에 이라인(Lee Line)을 설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동월 28일 항의를 표명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일본은 이 라인의 설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측 주장과 한국이 부여한 명칭과 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반박하였고, 양국은 문서를 통해 독도문제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1953년 7월에 일본 해상보안

청 순시선이 독도에서 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사건이 발생한 후에 한국은 독도에 영토표지를 세우고, 1954년 6월경부터는 연안경비대를 주둔시켰으며, 7월에는 포대를 설치하고, 8월에는 관계국정부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교섭을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도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고, 공정하게 제3자의 재판에 의한 평화적인 분쟁해결방법을 도모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실력에 의한 지배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의 입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볼 때,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제3자의 중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독도가 일본에 귀속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또한 근대 국제법의 영토취득 요건에도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은 양국 정부가 원용한 근거와 사실을 국제법규에 따라서 평가하고, 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지지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제5장에서 일본을 둘러싼 영토문제를 다루면서, 양국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명치시대에 이르러 은기(隱岐) 섬 주민이 강치와 전복 등의 어족을 남획한 결과 강치가 멸종될 위기에 처하자 1905년 1월 각의를 통해 독도를 도근현 은기도사(島根縣 隱岐島司)의 소관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동 2월에 도근현 고시에 이를 공시하였다. 이후 일본은 독도를 토지대장에 게재하고, 어업취제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어업을 허가제로 하고, 어업권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계속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상 2가지 이유로 그러한 일본의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일본의 조치는 무주지에 대한 선점의 행위에만 적용이 되는데,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령이었으며, 둘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의사는 지방청에 의해 비밀리에 표명됨으로써, 한국정부에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때문이다.

저자는 일본의 조치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905년 당시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법상 영토편입행위에 일정한 형식은 없고, 통고를 필요로 하는 규칙도 없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1905년의 조치는 근대 국제법상 요구되는 영토취득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영유권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법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우리나라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갑용》

日本國竊土源流 釣魚列嶼主權辨(上·中·下)

도서번호 : 독도 953 74270

저 자 : 鞠德源

발행기관 : 首都師範大學出版社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신국판 748면 및 圖版

본서는 日本의 琉球(오끼나와=沖繩)와 臺灣, 그리고 釣魚列嶼(日本名 尖閣列島) 침략의 역사적 경과에 대하여 서술한 연구서이다. 저자인 鞠德源은 특히 본서에서 그 초점을 釣魚列嶼에 맞추어 이 섬들의 주권이 중국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본이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고 그 근원을 밝히는데 치중하였다.

본서는 총 3篇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上篇은 「日本國竊土源流」, 즉 日本의 中國領土 竊取의 原流라는 제목 아래 일본군의 여러 가지 탐욕과 영토의 절취, 침략과 확장의 역사적 과정을 계통적으로 논술하였다. 서론으로 日本國的 ‘新竊土論’ 與 ‘翻案風潮’ 즉 일본의 새로운 영토 절취 이론과, 제1장 日本 軍國主義的 竊土開端, 즉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영토절취의 발단, 제2장 中國與日本關於琉球歸屬問題之爭, 즉 중국과 일본의 琉球 귀속문제를 둘러싼 분쟁, 제3장 日本軍國主義侵略朝鮮與竊取臺灣, 즉 일본 군국주의자의 朝鮮 침략과 臺灣의 절취, 제4장 日本國竊占中國東北四省的歷史背景與根源, 즉 일본국의 중국 東北四省 점취의 역사적 배경과 근원, 제5장 日本國侵奪竊土事略 즉 일본국의 침탈과 영토절취 事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中篇은 「釣魚列嶼主權辨」, 즉 釣魚島列島의 주권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아래 臺灣의 부속도서로서의 釣魚島列島를 중심으로 東北諸島의 영토주권, 역사와 지리를 전면 계통적으로 고찰 논증하여 일본의 사실왜곡과 역사와 지리에 대한 改纂의 구체적 사실과 진상을 밝혔다. 緒論 格으로 臺灣附屬島嶼東北諸島古地圖考, 즉 대만의 부속도서인 동북제도에 대한 고지도 고찰, 제2장 中國琉球海上自然疆界考, 즉 중국과 琉球의 海上自然 疆界 고찰, 제3장 臺灣附屬島嶼東北諸島考, 즉 臺灣의 부속도서인 동북제도 고찰, 제4장 琉球久場島久米赤島考, 즉 琉球 久場島 久米赤島 고찰, 제5장 琉球人與臺灣附屬島嶼釣魚列嶼沒有直接機緣關係, 즉 琉球人は 臺灣 부속도서인 釣魚列嶼와 직접적인 機緣關係가 없다는 제목으로 나누어 논술하였다.

下篇은 「鐵案如山證據說」, 즉 굳은 案이 산처럼 많은 증거의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釣魚島列島가 중국 고유영토이며,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圖錄으로 제시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영토를 절취하는 歷程을 비판하는 각종 圖籍과 사료를 제시하여 일본의 竊土者들이 조작한 尖閣列島·南西諸島 領土紛爭論을 비판하였다. 본 장에서는 특히 대만과 그 부속도서, 그리고 琉球國, 즉 오키나와(沖繩)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지도도 제시되고 있다. 圖 25에 제시된 『坤輿全圖』·圖 57의 『內地·沖繩·支那·朝鮮之圖』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 釣魚島列島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이 우리나라 獨島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도 우리의 영유권 주장에裨益되는 점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본서를 읽으면, 또 한가지 관심을 모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釣魚島列島를 둘러싸고 중일간에 분쟁이 야기된 이래 중국 측은 국가기관인 사회과학원의 「邊疆史地研究中心(센타)」이 직접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수많은 논문과 저서가 간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연구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임영정>

日本の領域問題(一)

國際問題 No. 45

도서번호 : 독도 341.13 ㄷ117L v.1

저 자 : 高野雄一

발행기관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발행년도 : 1963년

구 성 : 6면

저자인 高野雄一은 저서 『日本の領土』를 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를 통해 독도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해 온 국제법학자이다. 저자는 일본의 영역문제에 대하여 잡지 『국제문제』에서 4차례의 논문기고를 통해 일본영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연합국의 「영토불확대원칙」(領土不擴大原則)은 국제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카이로선언, 알타협정, 샌프란시스코 조약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일의 영토문제와 통합적인 관련성에 대한 원리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영토불확대원칙’만이 아니라, ‘비민주적 영토변경금지의 원칙’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법질서의 변화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만, 한국, 小笠原, 독도 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규정은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포츠담선언에는 카이로선언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알타회담의 합의사항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영토처리에 있어서 ‘영토불확대원칙’도 연합국이 일본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일본의 무조건항복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감용》

日本の領域問題(二)

國際問題 No. 46

도서번호 : 독도 341.13 C117L v.2

저 자 : 高野雄一

발행기관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발행년도 : 1964년

구 성 : 13면

이 논문은 高野雄一의 일본의 영역문제에 대한 2차 분석이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영토불확대원칙의 법적 의미와 무조건항복의 내용, 무조건항복의 조건으로서의 영토 불확대원칙, 독일의 무조건항복과 일본의 항복의 법적 의미에서의 차이, 무조건항복에서의 ‘조건’의 특수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연합국의 ‘영토불확대원칙’은 카이로선언에 대한 표명이며, 포츠담선언(제8항)을 거쳐서 일본의 항복에 대한 ‘조건’의 일부로서 일본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일본의 영토처리에 관해 연합국이 일본에 약속한 원칙이라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카이로선언에 표명되었던 ‘영토불확대원칙’에 따르면, 일본이 박탈했던 조선의 독립을 회복시키고, 일본이 청일전쟁당시 중국으로부터 빼앗았던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며, 제1차대전 후에 일본이 취득하였던 남양위임통치령(南洋委任統治領)을 박탈하였다. 즉, 일본이 전쟁과 실력을 통해 빼앗았던 영역을 회복, 반환, 박탈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여기서 무조건항복의 의미에 대하여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연합국에 대해 항복하며,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방침에 대하여 어떠한 교섭도 없이 일본이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무조건항복의 내용은 항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모든 일본군대 및 일본의 지배 하에 있는 모든 군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의미한다. 일본의 항복문서는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연합국의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항복문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연합국

모두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일본과 연합국 양자간에 합의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포츠담선언의 수락, 항복문서의 조인에 의한 일본의 항복을 ‘무조건 항복’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은 법적으로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한 조건을 일본이 수락하여 항복한 것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유조건항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포츠담선언에 대해 일본이 천황제유지를 추가조건으로 요구하고, 그것이 묵살된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츠담선언 제3항과 항복문서 제2항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일본 군대의 무조건항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항복이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한편, 저자는 독일의 무조건항복과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비교하면서 법적인 의미가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국은 일본과 독일을 공동의 적으로 보고,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공동선언에서 “적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였다. 과거 제1차대전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승리한 평화’를 천명하면서 독일에 대하여 ‘명예로운 휴전’을 부여한 것이, 이후 나치독일의 출현을 가져왔다는 경험은 연합국의 ‘적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 선언을 결의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에 연합국은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소위 무조건항복 방침을 정하였는 바, 그것은 1943년 1월 카사블랑카회의에서의 루즈벨트와 처칠의 발표에 포함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의 영국·미국·소련·프랑스간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12월 27일의 일본에 대한 카이로선언에도 포함되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의 군대는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항복하였으며, 이튿날인 5월 8일 베를린에서 독일과 연합군간에는 무조건항복조항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항복은 독일에 대해서만 철저히 실행되었다. 즉, 독일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독일에 종전의 기회를 선택하고, 그 조건하에 항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연합국은 6월 5일에 「독일의 패전 및 영국·미국·소련·프랑스 정부에 의한 독일 최고권력 장악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고, 8월 2일에 「연합국의 관리기간에 있어 패전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조정정책에 관한 정치적·경제적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독일문제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와 달리 독일이 무조건항복한 5월 2일에 발표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의 성명에 따르면, 일본의 무조건항

복은 일본의 육·해군의 무조건항복이며, 그것은 일본국민에 대해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본국민의 절멸이나 노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연합국의 무조건항복 방침이 적국 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적국이나 적국의 국민 전체에 대한 무조건항복이 아니라는 해석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무조건항복은 연합국이 일정한 조건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이므로, 독일의 무조건항복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연합국은 무조건항복이라는 대원칙을 독일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군대의 무조건항복만을 요구한 것으로 상대국의 무조건 굴복을 요구한 독일과는 다르다. 독일의 경우에 연합국은 의식적으로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하고 수행하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이를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저자의 논리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일본이 그대로 수락함으로써 성립한 항복으로 유조건 항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포츠담선언에 포함된 “영토불확대의 원칙”에 대하여도 독일과 일본의 법적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비민주적인 영토변경금지의 원칙은 독일과 일본 모두 항복조건으로 약속하였고, 항복선언과 방송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포함한 대서양헌장이 발표되었지만, 일본이 수락한 조건 가운데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는 “영토불확대의 원칙”이 연합국간에 약속되거나 협정된 원칙으로서, 일본의 영토처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실행될 것을 기대한다는 언급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감용>

日本の領域問題(三)

國際問題 No. 47

도서번호 : 독도 341.13 C117L v.3

저 자 : 高野雄一

발행기관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발행년도 : 1964년

구 성 : 6면

이 논문은 高野雄一의 일본의 영역문제에 대한 3차 분석으로서, 북방영토문제의 배경인 미·소관계, 일·소공동선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c항은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천도열도(千島列島) 및 1905년 9월 5일 포츠담조약의 체결로서 주권이 박탈되었던 화태(樺太)의 일부 및 근접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즉, 일본령이었던 남화태(南樺太)와 천도(千島)의 포기이다. 이러한 남화태(南樺太)와 천도(千島)의 포기는 당시 일본과 중립관계에 있었던 소련이 알타비밀협정에 의해 대일침전의 약속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패전후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미·영에게서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포기규정에서 소련에 대한 양도 또는 소련에 의한 취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저자는 북방영토의 문제는 결국에는 미·소간 대립의 소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화태(南樺太)와 천도(千島)에 대하여는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의 남화태(南樺太)와 천도(千島)에 대한 규정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간의 정치적인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의 조약해석은 일치하였으나, 조약체결 당시와 그 이후 특히 일·러교섭이 진행됨에 따라서 조약에 대한 해석이 변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러간 영토분쟁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미국의 해석을 볼 수 있는 1958년 9월 7일의 「대일각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동각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에 의해 포기된 영토의 주권적 귀속을 결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 동 조약과는 별개의 국제적 해결절차에 부탁하는 것으로 남겨져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일본이 포기한 남화태(南樺太)와 천도(千島)의 귀속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적인 해결절차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감용》

日本の領域問題(最終回)

國際問題 No. 48

도서번호 : 독도 341.13 C117L v.4

저 자 : 高野雄一

발행기관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발행년도 : 1964년

구 성 : 6면

이 논문은 高野雄一의 일본의 영역문제에 대한 4차 최종분석으로서, 미·일간의 소련에 대한 영토 반환, 北千島를 둘러싼 법과 정치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남화태(南樺太)와 천도(千島)의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알타협정의 경우, 일본이 항복조건으로서 직접 수락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수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방영토의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기준은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 중에서 카이로선언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통한 알타협정도 일본의 영토처리의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카이로선언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카이로선언 후에 전후 일본의 수뇌부에서 영토문제가 무엇보다 중시되어, 남樺太와 千島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왔지만, 千島는 北千島로 간주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남樺太 北千島의 양도도 고려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감용>>

日本の領土

도서번호 : 독도 341.13 ㄷ227ㄹ c.2

저 자 : 芹田健太郎

발행기관 : 中公叢書

발행년도 : 2002년

구 성 : 258면

이 논문에서 저자 芹田健太郎은 일본의 영토문제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영공 등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책은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일본 영토의 역사적인 변천을 살펴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북방영토문제, 제3장은 첨각열도(尖閣列島), 제4장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제6장에서는 한·일, 일·중간 배타적경제수역, 제7장에서는 동아시아 안정과 공생을 위한 제안, 제8장에서는 영공과 방공(防空) 식별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장은 막부말기와 명치시대에 일본이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과 제1,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의 영토문제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었던 포츠담선언과 대일평화조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북방영토에 대하여 소일평화조약과 소일간 외교관계의 복교 및 공동선언, 신미일안보조약, 소·일, 러·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독도와 관련하여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과 근거를 비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책에서 저자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파악하고, 양국의 주장을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은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여타의 기존 논문과 동일하다.

일본측 주장은 1905년(명치 386년) 1월 28일 각의를 통해 섬 이름을 죽도로 명명하였고, 도근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는 훈령을 내리고, 이를 1905년 2월 22일에 고시함으로써 죽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역사적으로도 일본이 주장하는 시기보다 200년 이상 이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는 자료가 있으며, 무주지가 아닌 독도에 대하여 1905년 일본측이 영토편입고시를 공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제5장부터는 영해, 공해, 배타적경제수역, 영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해양경계 획정문제, 일본과 주변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공생을 위하여 현재 대립하고 있는 첨각열도와 독도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독도에 대하여는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독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독도자연보호구역의 설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였다. <정갑용>

日本の領土處理における二つの盲點 -千島と沖繩

國際外交雜誌 제54권 1·2·3합병호

도서번호 : 독도 341.13 C117L

저 자 : 高野雄一

발행기관 : 國際法學會(日本)

발행년도 : 1955년

구 성 : 17면

이 논문은 일본이 전후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의 영토처리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제2조 영토규정을 통해, (a) 조선, (b) 대만 및 땡호도(澎湖島), (c) 천도열도(千島列島) 및 남화태(南樺太), (d) 남양제도(南洋諸島), (e) 남극지역, (f) 신남군도(新南群島) 및 서사제도(西沙諸島)에 대한 영유권역에 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와 별도로 제3조에서는 유구열도(琉球列島)를 포함한 소립원제도(小笠原諸島)를 포함한 남방제도, 기타 태평양의 제도에 대하여 장래 미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수락하며, 동지역에서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전권을

인정하였다.

저자는 제2조의 천도열도(千島列島)와 제3조의 오키나와의 처리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영토처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타협정의 내용이 천도(千島)에만 적용되고, 미·영·소의 3국과 연합국공동선언의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승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국 중 알타협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국가인 엘살바도르, 레바논 등의 국가가 존재하며, 영토불확대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천도(千島)를 연합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포츠담선언 제8항과의 관계에서 연합국 내부에서 공동결정의 채택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를 평화조약 제3조의 신탁통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 두 지역의 처리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일본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영토처리였다고 지적한다. 《정감용》

日本外務省 特殊調査文書

도서번호 : 독도 953.6 0984

저 자 : 日本 外務省

발행기관 : 고려서림(영인본)

발행년도 : 1990년 (원본 1872~1910년)

구 성 : 전 62책

본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민족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間島地域을 비롯하여 미주, 국내에서의 우리 민족해방 투쟁에 관련된 「極秘文書」를 추려서 체계화한 사료집이다. 그리하여 본서에는 1872년부터의 「外務省 警察史-한국의 部와 間島の 部-」를 비롯한 「日韓交涉略史」와 杉村濤의 「明治27・8年 在韓苦心錄」, 조선정부고문 데니의 「청한론」, 「전사편찬준비서류 1894-1895」, 「청일전역 시 淸國 上

海 및 한국 인천항에서 각국의 거류지 국외중립에 대한 교섭 일건」, 「日露戰役 時 북한방면에서 露國兵의 행동정보」, 「한국황제의 불국공사관 파천 등에 관한 불국공사관의 행동보고 일건」, 「京城 洪州간 및 경성 義州간 철도부설 일건」, 「조선에서의 전선관계 잡건」, 「압록강 가교에 관한 日淸覺書」, 「한국 馬山砲隊 제국군대주재」, 「재한제국수비대관계 잡건」, 「한국군비축소 일건」, 「통감부에서 시행 또는 계획했던 주요사무의 개요조사」, 「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파견 및 동국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체결 일건」 등 강화도조약 이전부터 1910년 한국국권강탈까지 일본의 한국침략과정을 조감할 수 있는 각종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제의 조선통치의 방침으로써는 「支那官憲의 不逞朝鮮人不取締의 指令」, 「間島에 있어서의 不逞朝鮮人の 狀況」, 「露國過激派와 間島不逞朝鮮人과의 關係」, 「美國 및 하와이 지방에 있어서의 不逞朝鮮人の 狀況」, 그리고 「滿洲, 上海, 其他 在外不逞朝鮮人の 概況」 등을 비롯한 1,100쪽에 이르는 1922년도판 「朝鮮治安狀況」은 朝鮮總督府警務局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치안대책 자료이며, 抗日民族獨立鬪爭에 관한 各道警察部의 抗日運動狀況을 정리 통합한 상세한 자료들도 수록되어 있다.

동시에 본 사료집에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전반에 걸쳐 勞動組合, 農民組合, 靑年 學生團體 기타 많은 思想團體, 社會團體가 생기면서 民族主義社會主義운동으로 발전하여 국내외와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한 점, 1930년대 전후의 「頭道溝 馬賊 襲擊事件 및 共產黨暴動事件」과 1930년의 「間島地方 共產黨暴動事件-滿州事變 前後」의 상황에 관련한 문서가 무려 6,500쪽에 달하고 있으며, 5,000여 쪽에 이르는 「總領事館：朝鮮民族運動(未定稿)」 등 현대사 연구에 필요한 생생하고 상세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보다 치밀하게 작성된 문서는 1945년 8월 일본 패전 당시 자기들의 가혹한 침략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거의 소각하였다고 하는데, 이 『極秘 日本 外務省 特殊調査文書』는 다행히도 소각을 면하여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발굴되어 영인된 것이다. 본서에는 특히 간도지역의 독립운동과 이주민의 실태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장차 있을 간도 영유권문제를 파악 분석하는데 긴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1990년 고려서림에서 제작한 영인본이 본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임영정》

日韓外交資料集成

도서번호 : 독도 327.51053 77980

저 자 : 金正明

발행기관 : 國學資料院(영인본) (원본 日本 巖南堂書店)

발행년도 : 1999년 (원본 1962~1967년)

구 성 : 8권 10책

본서는 編者가 1876년 韓日修好條規(丙子修護條約)로부터 1910년 庚戌國恥(한일합방)까지 한일외교상의 관계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구성상의 특징은 일본 외교문서 중 한일외교의 관련사항을 전재(全載)하였고, 흑전(黑田), 화방(花房) 등 당시 한·일 간에 있어서 외교 실무에 관계하였던 日人의 私文書와 調書 등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문서 이외에도 보고서·의견서·서한·일기 등의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한 자료이다.

따라서 그 내용도 제1권에는 開國外交編을 모두 모아 정리하고 있으며, 제2권에는 壬午事變과 관련된 외교문서 등을 모아 편성하였고, 제3권에는 甲申政變과 天津條約에 관계되는 기록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또 제4권에서는 일본과 청나라간의 전쟁에 관한 기록과 외교문서 등을 편성하였고, 제5권은 일본과 러시아간의 전쟁 중에 수집된 자료로 편성하였다.

나머지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모은 것으로, 모두 5권의 정본과 함께 별책 1권으로 묶어 놓았다. 한일합병에 관한 기록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6권을 상·중·하의 3편으로 구성하여, 「제6(1)권 日韓併合編 上卷」, 「제6(2)권 日韓併合編 中卷」, 「제6(3)권 日韓併合編 下卷」으로 편성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제7권은 일본과 한국간의 교섭에 관한 사건들을 모아 놓은 기록이며, 제8권은 병자수호조약과 한일합병에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하고 있다. 별책이 1권이 있는데 조선에 주둔하는 朝鮮駐劄軍 歴史를 정리하였다.

주목되는 내용은 일본과 러시아간의 전쟁 중에 입수된 외교문서와 6권 이하에 나타나는 기록들로, 동해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기지, 해저통신선의 구축 등 중요한 내용들이 보인다. 울릉도·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1905년 전후 일본은 이들 섬에 해저통신선을 깔아 러·일전쟁에 대비하였다. 이 전쟁에 대비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가 島根縣

告示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 관한 자료가 본서에 게재되어 있어 참고에 편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와 함께 본서에는 한일외교사의 기본자료가 편성되어 있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조선독립운동(민족주의운동편, 공산주의운동편) 관계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어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임영정>

朝鮮通漁事情

도서번호 : 독도 951.6 ㄱ252ㄷ

저 자 : 關澤明清, 竹中邦香

발행기관 : 史芸研究所(영인본) (원본 東京 團團社書店)

발행년도 : 200년 (원본 1893년)

구 성 : 국판 1책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려고 서두르는 한편 西歐諸國들에게 당한 그대로의 상황을 조선의 식민주의에 실행코자 하였다. 그 첫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 1876년 2월 26일 이른바 朝日修好條規 즉 江華島條約이다. 이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 조선은 부산 이외의 항구 2곳을 20개월 이내에 개항하고 통상을 허락하며, 제7조에서는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항해자의 자유로운 해안 측량을 허용하고, 제11조에서는 양국 상인의 편의를 피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하는 것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강화도조약은 일본이 釜山에 이어 仁川과 元山을 개항시키고 조선 연안의 자유로운 측량권을 확보함으로써, 통상업무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둔 해안지리의 탐색까지도 실행할 수 있는 일제의 식민주의 침략의 시발점이 되는 조약이었다. 그리고 1883년 7월 25일에는 전문 42조의 「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우리의 朝鮮海에 出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捕鯨 및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발판까지도 만들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890년 1월 9일 일본은 한·일간에 체결된 최초의 어업협정인 「日本朝鮮兩國通漁規則」 즉 '朝日通漁章程' 전문 12조를 官報(제1956호)에 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조선침탈의 외교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우리의 바다는 서서히 일본에 의해 강점되어 갔으며, 이러한 조약들은 한반도 강점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朝日通商章程」의 공포 3년 후인 1893년에, 大日本水産會 水産傳習所 소장이었던 關澤明清과 수산전습소 이사인 竹中邦香은 「朝鮮通漁事情」을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본서이다.

본서의 출간은 朝鮮海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드러내는 최초의 「水産誌」라 말할 수 있다. 특히 본서에는 “1883년의 通商章程에 의해 경기도 해안에는 일본인이 출어할 수 없어서 인천이 개항할 때 일본영사가 인천 소재 일본거류민 380명의 수산식품 조달을 위해 朝鮮海關長과 협의, 어선 15척에 한해서 인천 앞 바다의 조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지난 1893년에는 거류민의 수가 2,500명을 웃돌아 기존 어선 15척으로는 도저히 식료를 조달할 수 없으니 경기도를 일본의 어로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고 있다. 결국 일본은 이러한 구실을 부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7년 후에 일본의 農商務省은 「韓國京畿道沿岸附近の漁業」(大日本水産會報 第222號, 1893)과 같은 보고를 하면서 ‘외무성고시 제44호’를 통해 「韓國京畿道漁業權」(大日本水産會報, 第222號, 1893)과 같은 취지의 고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서에는 조선 8도 사회상의 단면을 알려주는 많은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바다를 둘러싼 한·일간의 어업을 최초로 정리한 기록이다. 일본인들의 조선해 通漁연혁과 규칙, 조선해 어장의 지리·기상·중요 수산물 및 당시 우리나라 어업의 상태뿐만 아니라, 각종 어업서식 및 법령 등을 담고 있어서 수산학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새롭고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 자료실에는 2000년 史芸研究所에서 번각한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임영정>>

竹島(獨島)領有に關する若干の考察

도서번호 : 독도 341.13 7885D

저 자 : 金普根

발행기관 : 大阪經濟法學科大學

발행년도 : 1977년

구 성 : 20면

이 논문은 大阪經濟法學科大學의 조교수인 김보근(金普根)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그 명칭, 안용복사건, 도근현 편입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논쟁추이 등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문제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동 선언은 본래 어업자원의 보존조치로 인정되었으나, 소위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에 독도를 포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양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대일강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된 도근현(島根縣) 죽도를 한국이 선언을 통해 독자적으로 한국주권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까지 독도는 영유권 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 있어서도 죽도와 독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자는 독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여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일 양국이 직접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직접교섭안, 둘째, 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 셋째, 국제사법기구에 부탁하는 방안, 넷째, 한일공유론 및 파괴론의 네 가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든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매듭짓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름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근거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와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정갑용>

竹島=獨島問題と日本國家 朝鮮研究 182

도서번호 : 독도 951.99 7247ㄷ

저 자 : 梶村秀樹

발행기관 : 日本朝鮮研究所

발행년도 : 1978년

구 성 : 65면

이 책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과 그 근거를 비교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자연환경과 양국 국민의 인식, 양국정부간 논쟁이 되는 문헌을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독도의 항공사진과 면적, 자연조건, 독도의 인지와 귀속, 독도의 일본편입, 전후 독도문제,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측 주장과 한국측 주장, 북한의 주장, 언론을 통해서 본 일본국민의 독도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독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함께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고찰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한 여타의 논문과 차이점을 보인다.

이 책에서는 일본국민의 대부분은 독도를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일간신문 투고란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국민은 한국측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저자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일본측 주장을 홍보해 온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한국측 주장의 근거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독도는 논의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 책에 의하면 북한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종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왔으나, 얼마 전부터 “광의로 해석하면 전통적으로 조선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1977년 2월 11일자 노동신문의 사설은 이러한 북한의 관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정부가 독도 귀속 근거를 삼고 있는 논리들이 상당부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측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며, 첨각열도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5 대 5 정도의 논리가,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 주장이 설득 논리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답용>

竹島歸屬をめぐって(一)

歴史教育 1965년 10월호

도서번호 : 독도 951.99 7327ㄷ v.1

저 자 : 小林高壽

발행기관 : 日本書院

발행년도 : 1965년

구 성 : 9면

저자 小林高壽는 「역사교육」 1965년 10, 11, 12월호의 3회에 걸쳐서 독도의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독도의 일본 귀속을 합리화하는 논리, 즉 독도의 발견과 유지, 영유권 논쟁, 국제법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부탁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小林高壽의 연재 중 첫 번째 논문으로서, 역사적으로 독도가 발견된 배경과 관련된 사료와 지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가 발견된 이후 근대 이전까지 일본인이 독도를 이용한 사례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에 귀속되는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도의 발견에 대한 일본측의 역사자료와 한국의 역사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양국의 문헌중 어느 것이 오래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1681년 일본의 「인부연표(因府年表)」에 松島(현 독도)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으며, 한국이 독도가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근거로 주장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성종실록에 대하여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우산도(于山島)가 독도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안용복이 순검하면서 독도에 대해 언급한 발언밖에 없으며, 영토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영유하고자 하는 의사와 국가기관의 선언이 뒤따라야 영토의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안용복의 행동은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도의 발견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감용》

竹島歸屬をめぐって(二)

歴史教育 1965년 11월호

도서번호 : 독도 951.99 7327ㄷ v.2

저 자 : 小林高壽

발행기관 : 日本書院

발행년도 : 1965년

구 성 : 9면

저자 小林高壽는 이 논문에서 고지도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일관되게 영유방침을 유지하여 왔고, 그러한 점은 지도와 명치36년에 中井養三郎의 죽도경영(竹島經營)에 대한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영토편입고시는 1905년(명치 38년) 2월 22일 도근현 고시(島根縣 告示) 제40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中井養三郎은 영토편입에 대한 고시를 내무, 외무, 농상성의 3성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의 영토편입고시 이후에 독도에 대한 지도화를 통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측 주장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가가 전쟁(러·일전쟁)중인 상태에서 영토편입고시는 국제법상 효과가 없으며, 한국이 일본의 영토편입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편입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결국 독도분쟁은 명치 38년 2월의 영토편입고시의 정당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1905년 영토편입고시의 부당성을 확실히 밝히기 위하여 관련 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갑용》

竹島歸屬をめぐって(三)

歴史教育 1965년 12월호

도서번호 : 독도 951.99 7327ㄷ v.3

저 자 : 小林高壽

발행기관 : 日本書院

발행년도 : 1965년

구 성 : 7면

저자인 小林高壽는 독도귀속에 대한 논문을 3회에 걸쳐서 역사교육에 게재하였는 바, 마지막 회에 해당하는 이 논문은 일본의 패전에 따른 독도의 문제와 독도분쟁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영유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평화조약 체결 후 독도는 당연히 일본에 귀속한다고 생각하는데, 1945년 8월 16일 포츠담선언 제8조는 “일본의 주권은 본도와 북해도, 규슈, 四國 및 제소도(諸小島)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평화조약 제2장 제2조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며 조선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50년 7월 26일 SCAPIN 2160에 의해서 독도는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어 평화조약 후에도 미군의 훈련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국제문서에서 나타난 독도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입장표명에 대하여 어떤 것은 한국과 어떤 것은 일본과 교섭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제3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쌍방의 의견일치가 이뤄진다면, 그 제3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자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고시에 대해 한국은 당시 한국이 일본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고, 외교권도 일본이 행사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독도문제의 조기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양국이 독도문제

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과거 사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제3자를 통한 판단만이 독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정갑용>

竹島論争の問題點 現代코리아 제383호(1998년 7·8월호)

도서번호 : 독도 951.99 ㅅ531ㄷ
저 자 : 下條正男
발행기관 : 現代코리아研究所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18면

이 논문은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장을 사항별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논리를 파악하게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명치정부에 의한 독도의 도근현(島根縣) 편입과 대한민국의 속령 제41호, 둘째, 1954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항의에 대해 반박한 독도영유의 근거, 셋째, 안용복사건, 넷째, 동국여지승람의 해석, 다섯째, 고지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 여섯째,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착각과 오보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下條正男은 한국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그 역사적 근거로 열거하고 있는 “동국여지승람”의 해석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4년 한일간 독도논쟁이 본격화되던 당시에 한국정부는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부분에서 독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저자에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 한국은 동쪽 영토범위를 울진~울릉도까지라고 하였으나, 독도문제가 대두된 후부터, 울진~독도까지로 확대 해석하였다

는 것이다.

저자는 무인도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1905년(명치 8년)에 도근현고시 제40호를 통해 도근현의 일부로 편입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의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의 「속령41호」를 공포하였다. 이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였고, 행정구역을 “울릉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한국은 「속령41호」가 공포된 5년 후인 1905년에 일본이 도근현고시를 통해 독도를 도근현의 일부로 편입한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속령41호는 독도가 석도(石島)라는 전제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며, 그것이 명치정부가 독도를 강탈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속령41호」에는 석도(石島)의 위치에 대한 명기가 없기 때문에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실증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이 영유권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대하여도 저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906년 6월 4일에 도근현 관리가 독도를 시찰한 후에 울릉도에도 입도하였다. 당시 일행을 맞이하였다는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는 이후 예상치 못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심흥택은 “본군 소속의 독도는 외양 백여리에 위치하고, 6월 초사일에 (중략) 일본관인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스스로 독도가 일본영지라고 하였으며, 시찰한 이후에 울릉도에 내도하였다고 하였다. 그 일행은 (중략) 총인구토지의 다소를 물었으며, 인원 및 경비에 대하여 묻고,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돌아갔다”고 관할관청인 강원도부(江原道府)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에는 중대한 사실착오가 존재한다고 하여, 울릉군수 심흥택이 말한 “본도소속의 독도”라는 것에 대하여는 대한제국은 자국의 극동을 동경130도 3~40분 정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동경131도 55분에 위치한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저자는 강원도 관찰사서리인 이명래(李明來)를 소개하면서 심흥택의 보고서가 중앙에 올라가자, 중앙정부에서는 “독도영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무근(無根)에 속한다. 해당 도서의 형편과 일본의 행동여하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군소속의 독도”라고 한 울릉도 군수 심홍택이 울릉도에서 90km나 떨어진 독도를 본군의 외양 백여리(약 40km)에 위치하였다고 한 점, 대한제국정부가 독도의 영지의 설명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 점, “해당 도서의 형편”을 보고하도록 훈시한 사실은 도근현 관리 일행이 내방하기 직전까지 대한제국측이 독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심홍택의 “본군소속의 독도”라는 보고는 안용복이 “우산은 즉 왜의 소위 송도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 한국 측의 독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저자는 울릉군수 심홍택의 보고가 「대한매일신보」(광무10년 5월 1일자 기사), 「황성신문(皇城新聞)」(광무10년 5월 9일자 기사)과 같은 신문보도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알려졌는데, 이러한 기사는 오보기사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황성신문」의 주간이었던 장지연(張志淵)을 언급하면서 심홍택의 보고는 장지연의 독도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이전인 1906년 3월 8일에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증보를 위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편찬위원회에 임명된 바 있는 장지연은 개정과정에서 안용복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의 저서인 「일사유사(逸士遺事)」에서도 안용복의 실적을 소개하고, 공로를 높이 평가한바 있다는 장지연의 전력을 문제 삼아, 저자는 신문보도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울릉군수인 심홍택의 보고도 독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보고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저자는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한국의 불충분한 역사적인 이해와 일본의 외교적 노력의 부족이 만들어낸 공동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독도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나 문헌에 대한 비판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쌍방의 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논리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수집과 상대국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감용》

竹島分爭

國際法外交雜誌 제64권 4·5호

도서번호 : 독도 951.99 ㄷ227ㄷ

저 자 : 太壽堂鼎

발행기관 : 國祭法學會(日本)

발행년도 : 1964년

구 성 : 32면

이 논문은 독도분쟁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경과와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 평가, 해결방안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간의 역사적 사료에 대한 상호 반박과 논리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그 경과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통치지역이 아니며, 제3국의 영토도 아니고, 귀속미정의 무주지도 아니며,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국가도 언급을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양국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점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역사적 근거에 있어서 양국은 옛날부터 독도가 자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고, 둘째, 명치 38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영토편입조치 노력에 대한 양국간의 대립된 시각이며, 셋째, 제2차 세계대전의 카이로 선언으로부터 전후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일련의 조치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양국의 주장의 근거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독도에 대해 분쟁지역이 아님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저자는 국제분쟁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한국의 일방적인 비분쟁지역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감용>>

「竹島紛爭」再考 - 領土權原をめぐる國際法の觀點から 龍谷法學 제32권 제2호

도서번호 : 독도 341.13 ㅎ146ㄷ

저 자 : 河鍊洙

발행기관 : 龍谷法學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60면

이 논문은 독도분쟁과 관련하여 그 영유권의 권원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독도의 지리적 상황과 분쟁의 존재, 둘째,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경위, 셋째, 국제법상의 평가이다.

저자는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동안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독도분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분쟁 일방 당사국이 과거 역사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는 이 문제의 해결에서 정치적·역사적인 혼란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의 법적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는 독도가 양국의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어 독도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작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가 극히 적고,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독도의 원시취득과 실효적 유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일본은 원시적 권원의 존재와 함께 자료의 비교고증을 통해 상대적으로 '실효적 지배'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영역취득의 권원은 선점(occupation), 시효(prescription), 할양(cession), 정복(conquest, subjugation), 침부(accretion)의 5가지의 형태가 있다. 독도의 영유권분쟁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태고부터의 원시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서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독도분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즉 이라인(Lee Line)이 공포된 시점이다. 일본은 바로 열흘 뒤인 28일에 항의서를 통해 한국측에 정식 항의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동년 10월 28일자 서신을 통해 “독도는 태고부터 한국의 영토이며, 오늘날에도 이는 변함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권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현재 양국간에 독도의 귀속에 대한 ‘법률적 견해의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국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모두 국제연맹 이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독도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분쟁의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선택문제, 독도에 대한 영토취득의 의도 또는 의지의 존재여부, 평온하고 지속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인 실효적 지배의 판단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양국정부의 입장과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설명하고 있으며, 영토분쟁이나 경계획정과 관련한 국제법판례들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정갑용》

竹島の歸屬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 제54권 제1호

도서번호 : 독도 951.99 0382ㄷ

저 자 : 植田棲雄

발행기관 : 多賀出版

발행년도 : 1965년

구 성 : 15면

이 논문의 구성은 1910년 한일병합 이전의 독도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독도의 지위, 독도의 귀속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간 분쟁의 논점, 국제법에 입각한

독도문제의 분석으로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죽도도설』(竹島圖說)(1751-63년)에 ‘隱岐の國松島’라는 표현과 1904년(명치37년) 9월 29일 은기도민(隱岐島民)인 中井養三郎이 내무, 외무, 농상무 대신에게 제출한 영토편입고시문서를 제시하면서, 한일병합 이전에 이미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유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의 귀속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은 죽도를 최초로 자국의 영토로 인정한 국가가 누구인가하는 문제와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인가의 여부, 안용복의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한 것으로 압축된다고 한다. 그 중 우산도(于山島)와 독도와의 관계에 대해 저자는 한국이 주장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우산도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우산도가 독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래 무주지였던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토로 하는 명확한 국가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섬에서 어업을 실시하는 점유 및 효과적인 지배를 계속하였으므로, 국제법상 ‘선점’의 법리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이미 확립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에 귀속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끝으로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감용>>

平和條約と竹島(再論)

レファレンス 제518호

도서번호 : 독도 341.13 ㄱ375ㅎ

저 자 :塚本孝

발행년도 : 1994년

구 성 : 26면

이 논문은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독도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대일평

화조약이 독도영유권 분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아래 평화조약의 체결과정과 평화조약안의 세부내용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측 견해와 1947년부터 1949년까지의 제3차 초안에서 제20차 초안까지의 미국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구체적 내용과 주일 정치고문의 의견서 및 관계규정의 개정사항, 한국정부의 조약안 수정요구와 미국의 거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평화조약 조약문성안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초기 평화조약 초안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1949년 11월 시볼트 주일 정치고문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도록 국무성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후 한국측은 평화조약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평화조약에 근거한 독도의 한국령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전쟁을 종료한 1945년 9월 2일의 강화문서에 서명하였는바, 동 선언 제8항은 “일본의 영토는 본토, 북해도, 사국(四國), 제소도(諸小島)”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강화조약 체결에 따라서 일본정부의 국가통치권은 연방최고사령관 아래 두며, 연방최고사령관은 정부에 대해 각종 지령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가 1946년 1월 29일에 발효되었는데, 이의 정식명칭은 “일정 외곽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각서”(일명 SCAPIN 677호)이다.

저자는 SCAPIN 677호 뿐만 아니라, 이후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측이 미국에 대해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령에 포함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점도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갑용》

3. 서양자료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 341.4 H647c
저 자 : R. Y. Jennings
발행기관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발행년도 : 1963년
구 성 : 130면

이 책은 출판 당시 영국 캠브리지(Cambridge) 대학교 국제법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제닝스(R. Y. Jennings)의 저술이다. 제닝스교수는 국가에 의한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에 관하여 5회에 걸쳐 강의를 하였는데, 이 책은 그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제1장에서 저자가 직접 밝혔듯이, 이 책은 국제법상 영토문제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강의에 참석하였던 청중들이 영유권 관련 국제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몇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책은 5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영토변경, 제2장은 영토취득의 방식, 제3장은 승인, 묵인, 금반언, 제4장은 권원과 불법적 무력행사, 제5장은 법적주장과 정치적주장이라 되어 있다. 부록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간 팔마스섬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문이 실려 있다.

제1장 영토변경에서는 영토주권의 성격, 권원의 의미, 영토변경의 절차, 국경분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법에서 영토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국가영토는 항상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으니, 전통국제법의 주요 임무는 영토에 근거하여 주권행사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정의 속에는 그 필수적인 요소로서 어느 정도 분명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다. 국제법에서 가장 분명한 규칙의 하나는 그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었다.

제2장 영토취득의 방식에서는 할양, 선점, 시효 등 영토취득의 주요 원인들을 설명하였으며, 권원의 역사적 응고, 시제법, 결정적 시점과 같은 영토취득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할양과 관련해서는 할양에 의해 어떤 지역에 대한 주권을 취득하는 국가의 권리는 그 유효성이 할양하는 국가의 권리에 의존하다는 점에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팔마스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미국은 스페인이 이 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던 권리들을 자국에게 이양하기로 한 1898년 파리조약을 근거로 팔마스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중재를 맡았던 후버(Max Huber)는 “스페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선점과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 중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실효적 점유에 관한 부분이다. 제닝스는 18세기 중반이후 국제법이 점유의 실효성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실효성은 권리의 획득은 물론 권리의 유지를 위해서도 요구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영토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토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영토주권의 행사이며, 영토주권의 행사는 권리와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고 하였다. 경우에 따라 주권의 적절한 표현의 결여는 주권을 행사할 권리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토의 속성상 적합한 최소한의 주권적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원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영토에 대해 권원을 획득한 국가는 경쟁국가와 동등한 정도의 활동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권원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닝스의 견해이다. 일단 영토에 대한 권원을 취득한 국가는 그 권리의 묵시적 포기나 묵인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에 대해서는 선점과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과 선점에 의한 영역취득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과 유사점이 함께 발견된다. 가장 큰 차이는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은 다른 국가에 속하는 영토가 대상인데 반하여,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은 무주지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을 위해서는 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이전에 영토를 소유하였던 국가의 묵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실효적 점유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제도라는 데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으나, 저자는 영토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일정한 사실상태를 근거로 실질적인 권리가 창설되고, 이전 소유자의 권리는 사라지는

취득시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은 시효기간에 관한 아무런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만간 그러한 기간이 확정되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시제법(intertemporal law)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지 청구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의 하나라고 하였다. 국제법에서의 시제법 원칙은 크게 보아 법률불소급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보편적 법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제법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팔마스섬 사건에 대한 후버(Max huber)의 판정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스페인이 이미 16세기에 팔마스 섬을 발견하였으며, 자국은 그러한 스페인의 권리를 할양을 통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주장에서 시제법 원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답변서에서 시제법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영토에 대한 권원과 그 법적가치는 법발전의 상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후버는 이러한 네덜란드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시제법에 관한 원칙은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모든 법률행위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권원을 유지하려면 그 후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원칙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닝스는 영토주권에 관한 주요사례들을 보면, 국제적인 재판기관들은 당해 사건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결정적 시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이란 용어는 팔마스섬 사건에서 후버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1898년 12월 10일 파리조약에 의해 이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당연히 할양 당시 스페인이 이곳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후버는 매우 자연스럽게 조약이 체결된 이날을 ‘결정적 순간’(critical moment)이라 말하게 된 것이다.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는 노르웨이가 동부그린란드를 점령하였다고 주장한 1931년 7월 10일이 결정적 시점이 되었다.

그렇지만 결정적 시점을 정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사건이 중재에 부탁된 날, 어떤 당사국이 처음으로 일정한 청구를 제기한 날, 또는 영토분쟁이 구체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 결정적 시점이 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형성된 이론에 의하

면, 어떤 식으로든 일단 결정적 시점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당사국들의 행위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결정적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결정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당사국간에 상당한 논쟁거리가 된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에크레오 사건(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프랑스는 어업협정이 체결된 1839년을 결정적 시점으로 정하기를 원하였고, 그 이후에 활발히 주권행사를 한 영국은 결정적 시점이 가능한 늦게 잡히기를 원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결정적 시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였다. 재판소는 프랑스가 1880년대 이전에 이들 섬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부탁합의서가 작성된 1950년이 결정적 시점이 되기를 원하였던 영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제4장 권원과 불법적 무력행사에서는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 문제를 검토하였다. 정복(conquest)에 의한 영토취득은 한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여 기존의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빼앗는 것으로 옛날에는 합법적으로 행하여졌었다. 그러나 전통국제법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 영토를 단순히 점령하는 것으로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첫째는 전쟁기간 중에는 점령자가 영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러나 분명한 국제법 규칙으로,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강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거나 적대행위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나 인정되었다. 둘째는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위해서는 영토를 물리적으로 점령함과 동시에 이를 병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차대전 중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후 연합국이 독일을 점령하였으나, 그들은 독일을 병합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전후 점령국들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국가성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등장으로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불가능해 졌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들어 무력행사를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들이 연달아 등장하였고, 유엔헌장은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무력사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70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가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도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한 국가가 정복에 의해 다른 국가에게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복에 의해 다른 국가의 영역을 취득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제5장 법적 주장과 정치적 주장에서는 영토에 대한 법적 주장과 정치적 주장, 지리적 고려사항, 역사적 연속성, 자결권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닝스는 기존의 국제법은 영토문제에 있어서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법은 현재상태의 유지와 현재의 실효적 점유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적인 재판기관들은 “잠자고 있는 개를 깨우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국경선의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이러한 입장은 세계평화를 생각할 때 타당한 것이며,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국제평화는 잘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평화를 위하여 국제법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합하게 영토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제닝스의 이 책은 당시 국제법의 권위자답게 국제법상 영토취득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주요 쟁점은 매우 자세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법학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효적 점유, 시제법, 결정적 시점에 관한 그의 언급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석용>

The Aegean Sea 2000 :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egean Sea

도서번호 : 독도 341.14 O99a
저 자 : Bayrum Öztürk(ed)
발행기관 : Turkish Marine Research Foundation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262면

이 책은 2000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터키의 Bodrum에서 개최된 2000년도 에게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된 프로시딩이다. 편집자는 Bayrum Öztürk이다.

당시 세미나는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듯 하며, 따라서 프로시딩도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환경관련 주제에는 모두 7편의 논문이 들어 있으며, 역사적 주제에는 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또한 지질학적 주제에는 2편의 논문이, 법적주제에는 모두 1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 프로시딩에는 모두 25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들 중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국제법 분야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은 다음의 6편 정도라고 생각된다. 역사적 주제 분야에서는 일본 아이찌대학 Miyoshi 교수의 「The Aegean Sea and the Aegean Islands in Historical Perspective」 라는 논문이, 지질학적 주제에서는 Arpat의 「Elements of an Equitable Solution of the Aegean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이 참고할 만하다. 법적주제에서는 Kurumahmut의 「A New Greek-Turkish Dispute : Who Owns the Rock」 와 Valvo의 「The Aegean Sea between Greece and Turkey」, Pratt와 Schofield의 「Cooperation in the Absence of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 The Purpose and Value of Joint Development」, 그리고 미국 하와이대학교 법과대학 Van Dyke 교수의 「The Problem of Delimiting the Territorial Waters between Greece and Turkey in the Aegean Sea」 가 주목을 끈다.

Miyoshi 교수는 그리스와 터키 양국간 해양문제는 1923년 로잔느협정에 따라 에게 해에 존재하는 섬들 중에서 다르다넬스 해협 근처의 일부 섬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섬들이 그리스에 귀속되게 된 데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미요시 교수는 양국이 교섭을 통해 해양경계획정을 시도해 온 과정과 그리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사건을 제소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제기되는 ‘자연적 연장’주장과 형평원칙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형평에서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미요시 교수는 그리스와 터키가 양국간 해양분쟁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교섭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으며, 중재재판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공동개발을 추진하거나 터키에게 그리스 소유 섬들 사이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해주는 소위 ‘fingers solution’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Valvo는 그리스와 터키 간 Kardak 섬 영유권 분쟁에 관한 논문에서, 1932년 양

국간에 체결된 구상서(Proc s Verbal)는 터키의회 등 당사국들에 의하여 비준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이 섬은 터키에 속한다고 하였다. 영국 더럼대학교 IBRU의 Pratt와 Schofield는 해양경계선이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방안과 다양한 국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오래전부터 에게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반다이크 교수는 양국의 주장을 요약한 후, 문제의 수역을 남북으로 3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해양경계선을 긋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쪽에서는 중간선을 사용하되, 중간부분과 남쪽 부분에서는 경계선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그리스에게 유리하게 하며, 대신에 터키에게는 해양통로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반다이크 교수는 해양경계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도 형평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다이크 교수는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영해의 너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들로 하여금 영해 너비를 12해리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협약 제300조는 그런 경우에도 권리의 남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다이크 교수는 다른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해너비가 제한된 사례들을 소개해 가면서, 그리스도 영해너비를 적당한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다이크 교수는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직접교섭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조정이란 방법을 사용해 보며, 그것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동개발과 공동소유권(condominium) 방식의 사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터키와 그리스 간 에게해 분쟁은 터키해안에 인접해 있는 그리스 소유의 섬들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문제와는 주변상황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게해 분쟁에 대해서는 그 복잡한 분쟁의 성격만큼이나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에게해 분쟁의 내용과 제시되는 갖가지 분쟁해결 방안들은 독도주변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석용》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 341 M237a7

저 자 : Peter Malanczuk

발행기관 : Routledge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449면

이미 고인이 된 Michael Akehurst 교수가 직접 저술한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는 1970년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그 후 이 책은 6판을 거치면서 국제법학도들 사이에 가장 즐겨 읽히는 책이 되었으나, Akehurst 교수의 서거로 1987년 이후 새로운 판을 출판하지 못하였다.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은 암스테르담(Amsterdam) 대학교 국제법 교수 Peter Malanczuk가 1997년에 출간한 것이다. Malanczuk는 Akehurst 교수의 명료한 문체와 법이론과 정치현실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독특한 시각은 계승하되, 책의 내용과 구조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재구성하였으며, 새로운 국제법 영역에 관해서는 장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법학도들이 보기에 적합한 국제법 교과서로, 국제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법의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국제법의 역사와 법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관할권과 면제, 조약, 영토취득, 해양법, 인권법, 국제경제, 환경보호, 국가책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충돌법,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기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제법 분야를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영토문제에 대한 설명은 영토취득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먼저 영토취득의 원인으로서는 할양, 선점, 시효, 자연의 활동, 사법적해결, 정복을 차례로 설명하였으며,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묵인, 승인, 금반언 문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시제법의 문제를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영토에 대한 법적 주장과 정

치적 주장 간의 구분 문제도 다루었다. <이석용>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P) 341.05 A512

저 자 :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발행기관 :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발행년도 : 1907~1999년

구 성 : 연 4회 발간

이 잡지는 1907년부터 연 4회씩 발간하는 영문잡지로, 편집인이나 저자들의 면면으로 보나 발표되는 논문의 질적인 수준으로 보아 국제법의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독보적인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는데, 주로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관련된 주요사건에 대한 미국의 국내 및 국제재판소 판결과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실행을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잡지는 국제법분야의 전문잡지로 특히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주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어서, 세계각국의 학자, 연구자, 정부관계자들에 의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잡지의 구성은, 미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국제법 학자의 논문, 국제적으로 또는 미국과 관련되는 주요한 국제판결, 국제협약 및 사건, 최근 발행한 논문이나 도서에 대한 서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잡지의 발행기관은 국제법의 연구를 증진하고 법과 정의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수립, 유지하고자 1906년에 설립된 미국 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이다. 이 기관은 1951년 미의회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는 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고, 그 구성원은 세계적으로 국제외교분야의 전문가 4,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잡지는 영토분쟁을 포함한 국제법 전반에 관한 주요 논문 및 국제동향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정리하는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잡지에 수록된 논문들중에서 우리의 독도문제와 관련되는 국제분쟁사건들은,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육지 및 해양경계사건(Vol.97, 2003. 4),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리기탄 및 시파단 분쟁사건(Vol.97, 2003. 4),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 분쟁사건(Vol.96, 2001. 1),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육지 및 해양국경 분쟁사건(Vol.92, 1998. 10)에 관한 것으로, 국가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에 관한 국제판결의 평석들을 통하여 국제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태도를 알 수 있다. 《정갑용》

The Bolivia-Chile-Peru Dispute in the Atacama Desert Boundary & Territory Briefings Vol. 1 No. 6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Ronald Bruce St John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32면

이 보고서의 저자 Ronald Bruce St John 박사는 녹스(Knox) 대학과 덴버대학을 졸업한 제3세계 국가 정치경제와 외교정책 전문가이다. 그는 1968년 처음으로 볼리비아, 칠레, 페루를 방문한 이래 안데스 지역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아타카마(Atacama) 사막은 남아메리카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궁벽하고 황량한 지역의 하나이다. 아타카마 사막은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불모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국경선 및 영토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Ronald Bruce St John 박사의 이 보고서는 19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타카마사막 분쟁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영토변경과 영토변경에 대한 제안은 특별히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며, 주요 사건과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 지루하고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분쟁을 분석하였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매우 많은 영토분쟁을 겪어 왔으나, 이 아타카마사막 분쟁은 볼리비아, 칠레, 페루의 상충되는 지정학적 야망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아타카마사막 분쟁이 이처럼 독특한 양상을 보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특히 볼리비아의 입장이 중요한데 독립이후 이 나라 정치가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국가생존이 걸린 문제로 생각해 왔다. 무해안국인 볼리비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대외정책 목표가 되었다. 더구나 이 지역의 중요한 자원인 구아노와 질산광상의 발견은 칠레와 페루의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아타카마사막 분쟁은 광범위한 영토적, 경제적, 정치적 쟁점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분쟁으로 전개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시도들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저자 Ronald Bruce St John 박사 역시 아타카마사막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과 내용이 크게 바뀌어 분쟁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다. 본래 이 분쟁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국경선에 관한 분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른 남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볼리비아, 칠레, 페루도 분쟁지역의 국경선획정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타카마사막과 같이 황량한 지역에 경계선을 그을 때 이 원칙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들은 이 원칙의 적용을 포기하게 되었다.

더구나 1842년에 구아노 등의 광물자원이 분쟁지역에서 발견된 데에다 지역적인 주도권 싸움과 경제개발 경쟁까지 겹쳐지면서, 이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게 되었다. 결국 볼리비아, 칠레, 페루 등 분쟁당사국들은 법적인 주장보다는 점령 및 개발과 같은 사실상의 주장에 더욱 치중하게된 것이다. 특히 소위 태평양전쟁이후 칠레는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데 치중해 온데 반하여, 볼리비아와 페루는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국가적 명예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이 보고서에서 아타카마사막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며, 나름대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볼리비아에게 출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칠레와 페루가 각자 자국영토의 일부를 이양한다는 것이 실제로 실현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석용》

Boundary Problems and the Formation of New States

도서번호 : 독도 341 B885b

저 자 : Ian Brownlie

발행기관 : The University of Hull Press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20면

영국 헐대학교(University of Hull)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공부를 하던 중 항공기사고로 사망한 학생을 기리기 위해 1984년 The Josephine Onoh Lectureship이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매년 저명한 국제법학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는데, 본 논문은 199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국제법교수인 브라운리(Ian Brownlie)가 이곳에서 강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브라운리 교수는 강연에서 국제공공질서로서의 국제법의 입장에서 국경선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국가라는 개념은 영토에 대한 권원이란 개념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영토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에서 다루어지는 분쟁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토에 대한 권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국경선은 영토의 분할, 국가관할권의 분리, 경찰과 군대의 물리적 활동의 격리를 통하여 국제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경선에 관한 국제질서는 신생국 창설과 관련하여 한 국가 내에서 내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크게 위협받게 되며, 분리 움직임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한 예는 1948년 이스라엘 국가창설과 크로아티아 등 구 유고연방에 속하였던 지역들이 독립해 가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주권변화가 있을 경우 국제적인 경계선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브라운리 교수는 국제법에서는 주권변화가 있어도 국제적인 경계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프레아비헤어사원 사건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권변경 또는 신생국 창설이 이전의 주권자가 스스로 과거 자국의 식민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을 검토하였다. 식민시대의 행정상 분계선을 국가간 경계선으로 전환시키는 이 원칙에 따라 과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1821년, 나머지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1810년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획정하였었다. 브라운리 교수는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Uti Possidetis 원칙은 보편적으로 수락되었다고 하였다. 아프리카 단결기구(OAU)는 1964년 카이로결의에 의하여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간 국경선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이 원칙의 보편성을 인정하였으며, 유럽국가들은 1991년 12월 16일의 신생국승인에 관한 지침에 대한 유럽공동체 결의와 유고관련 선언에서 이 원칙을 받아들였다.

국경선과 관련하여 국제질서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은 역사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경우 비식민화와 함께 국가로 등장한 단위들이 과거의 헌법상 동등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구소련의 경우에는 구성단위의 헌법상 지위가 상이하여 해체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서 자연히 자결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법에서 자결권(self-determination) 원칙의 역사는 매우 오래지만, 민족국가의 등장과 함께 강화되어 베르사유조약, 유엔헌장, 각종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런데 브라운리 교수는 자결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975년 「헬싱키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 of 1975)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는 이전에도 자결권의 원칙은 법원칙이기는 하지만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지금도 일부 국제법 교수들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원칙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브라운리 교수의 입장이다.

브라운리 교수는 자결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자결권 인정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자결권의 인정으로 인하여 내전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안정을 깨뜨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자결권의 인정은 결국 신생국 승인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브라운리가 말하는 자결권 행사단위 인정 문제는 결국 신생국에 대한 승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진다.

신생국 등장에 따른 국경선 문제를 다룬 본 논문은 브라운리 교수의 강연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어서 체계적인 학술논문이나 서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법분야 석학의 한 사람인 브라운리 교수의 학문적인 권위와 통찰력은 논문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본서는 주로 국경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Uti Possidetis* 원칙과 자결권 문제에 대한 그의 언급은 영토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석용》

The Brunei-Malaysia Dispute over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International Law Maritime Briefing Vol. 1 No. 3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R. Haller-Trost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4년

구 성 : 63면

이 보고서의 저자는 영국 캔터베리의 켄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R. Haller-Trost이다. 그녀는 이 글에서 국제법 학계에서 거의 관심을 가

저오지 아니한 동남아시아의 소국 브루나이(Brunei)의 영토와 해양에 대한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의 영토문제를 고찰하였다.

브루나이와 주변국 특히 말레이시아 사이에는 두 가지 영역의 분쟁이 존재한다. 하나는 영토에 관한 것으로 식민지시대 때에 시작되었으며, 만일 이 문제가 브루나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게 되면 브루나이 만에서의 해양수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수역에 관한 것으로, 브루나이가 주장하는 해양수역은 주변 다른 국가들이 주장하는 해양수역과 중복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 Haller-Trost는 역사적으로 브루나이의 영토와 해양에 대한 주장들을 고찰하고, 그러한 분쟁의 국제법상 지위를 분석하였으며, 그 최종적인 해결가능성을 조망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이제까지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던 브루나이의 영토 및 해양관할권과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간 분쟁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깊이 있는 이론의 소개나 적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석용》

Ceuta and the Spanish Sovereign Territories : Spanish and Moroccan Claims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vol. 1 No. 2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Gerry O'Reilly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4년
구 성 : 36면

이 보고서의 저자인 Gerry O'Reilly는 더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본서를 저술할 당시 University College Dublin에서 정치지리학 강의를 하고 있었

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지브롤터해협에 면한 북아프리카의 Ceuta, Melilla, Penon de V lez de la Gomera, Penon de Alhuc mas, Chafarinas제도를 둘러싼 스페인과 모로코간의 영유권 분쟁을 역사적, 지리적, 인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주장과 법적인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들 5개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Ceuta 이다. Ceuta는 넓이가 19km²이며, 영국령 지브롤터를 마주보고 있는 북아프리카 북단의 반도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1514년 포르투갈의 후앙 1세가 무력으로 점령하였으며,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합병되었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스페인 영토로 남게 되었다. Melilla는 Ceuta 동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 넓이는 12km²이다. Melilla는 1497년 스페인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현재도 군사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enon de V lez de la Gomera는 면적이 15에이커에 달하는 조그만 섬이고, Penon de Alhuc mas는 Melilla 서쪽 Ajdir만에 위치한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면적 2.5km²의 Chafarinas는 모로코와 알제리간 국경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을 정당화해주는 사유 중의 하나는 이곳 주민의 다수가 스페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6년을 기준으로 볼 때 Ceuta의 주민 숫자는 70,000명 이었는데, 그중에서 55,000명은 스페인사람이었고, 나머지 15,000명은 회교도이었다. 비슷한 시기 Melilla의 주민은 80,000명이었으며, 그중에 17,000내지 27,000명이 회교도이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수비대를 제외하면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스페인인 이들 지역이 역사적으로나 인구학적으로 스페인 영토라고 주장한다. 스페인은 이 지역과 관련하여 자신이 로마제국, 비잔틴제국, 비시고트(Visigoth) 왕국의 영토를 계승하였다고 하면서, 스페인이 모슬렘 국가이었던 때에도 이들 지역은 스페인 모슬렘국가의 일부이었다고 한다. 한편 모로코의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비식민화와 관련하여 유엔이 설정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모로코는 아직 스페인령으로 남아있는 이들 5개 지역은 물론 서사하라, 모리타니아를 포함하는 대모로코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는 과거 스페인이 여러 차례 영국에게 지브롤터와 Ceuta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곳에 대한 스페인의 연고를 부인하고 있다. 모로코는 스페인이 주장하는 정복과 무주지 원칙을 부인하면서, 이미 8세

기 이래 이곳은 이슬람 왕국의 영토의 일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euta는 지브롤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통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브롤터해협은 너비는 동쪽 입구는 12.5해리이고 서쪽 입구는 24해리이지만, 가장 좁은 곳에서는 7.6해리 밖에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모로코와 영국은 3해리 영해를 주장하여 왔으며, 스페인은 6해리 영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협의 너비를 감안하여 국제사회는 관습적으로 지브롤터해협에 3해리 영해를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해협 중간에 국제통항로가 존재하게 되었다. 터키해협이나 덴마크해협, 마젤란해협과 달리 지브롤터해협에는 단일의 조약이나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해협의 통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근거에 의하든 외국선박들에게 해협통항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스페인과 모로코간의 Ceuta 및 Melilla 영유권 분쟁은 도서가 아닌 육지영토에 대한 분쟁이고, 상당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독도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석용>>

Claims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도서번호 : 독도 341.4 H647c

저 자 : Norman Hill

발행기관 :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년도 : 1945년

구 성 : 248면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출판되었으며, 당시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교(University of Nebraska)의 국제법 및 국제관계 교수이었던 Norman Hill이 저자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나폴레옹 전쟁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난제로 제기되어 온 영토문제에 관

한 전반적인 고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영토분쟁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지 아니하며, 영토에 관한 다양한 분쟁들을 분석하여 분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는 데 기여하였다.

저자 Norman Hill은 이 책의 제1장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영토문제」에서 영토의 중요성과 영토를 둘러싼 국가간 충돌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거 세력균형정책이 유행하던 시대에 국가들이 영토를 확장하고자 경쟁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국가간의 경제적 분쟁이라 생각되는 분쟁들도 실제로는 영토의 경제적 사용에 관한 분쟁인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영토확장에 대한 경제적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나치스 독일은 생존영역(Lbensraum)을 그리고 파시스트 이태리 역시 유사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국 영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특히 Friedrich Ratzel, Rudolph Kjellen, Haushofer 장군으로 이어지는 독일 사람들은 지정학이론(theory of geopolitics)을 전개하여 독일의 영토확장을 정당화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이론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만, 독립이후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도 '자연적 권리'라는 미명하에 국토방위를 위하여 가능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제2장 「영토분쟁」에서는 먼저 영토분쟁의 역사와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국가간에 확정된 국경선이 필요해진 것은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시작되면서부터이며,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확정된 국경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였다. 저자는 또한 경계획정(delimitation)과 경계선 획선(demarcation)을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하였으며, 섬과 배후지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영토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영토분쟁의 원인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토주권 주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설명하였다. 국가의 일정한 영토에 대한 주장은 당시 국제관계에서 지배적인 이론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19세기 이전의 각국의 영토에 대한 주장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못하였다. 프랑스의 앙리14세는 산맥과 강으로 이루어지는 자연경계선(natural boundaries)을 지지하였고, 러시아의 피터대제는 영토주장에 지리를 이용하여 출해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19세기부터 이 책이 출판된 20세기 중반까지의 영토주장은 상당히 세련되

어졌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1815년 비엔나회의에서는 물론이고 그 후 상당한 기간동안 가장 보편적인 영토주장의 근거로 주장되어온 것은 합법성(legitimacy)이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법성이란 상속에 근거한 것이었다. 합법성은 절대주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영토주권의 근거이었던데 반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은 역사적 권리(historic claim)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간의 경계선은 전략적 고려와 세력균형 및 보상을 근거로 조정되기도 하였으며, 지리적 주장도 제기되었다.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민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는 민족성의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국제무역이 자유화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는 영토주장의 근거로서 경제적 필요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주장되었다.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하기를 원하였던 국가들은 이를 위해 보다 넓은 면적의 국토를 원하였던 것이다.

저자 Norman Hill은 이 책의 제4장부터 10장에서는 갖가지 영토주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주장, 제5장에서는 지리적 주장, 제6장에서는 역사적 주장, 제7장에서는 경제적 주장, 제8장에서는 혈통적 주장, 제9장에서는 비법적 주장, 제10장에서는 영토에 대한 법적인 주장에 대하여 논하였다.

전략적 주장에서는 과거에 섬들은 그 전략적 가치 때문에 중요시 되었다는 설명이 관심을 끄는데, 미국이 카리브 해의 도서들과 하와이를 중요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었다고 한다. 경제적 주장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무해안국이 항구시설이나 출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볼리비아는 출해권 확보를 위하여 파라과이와는 Gran Chaco 지방에 대하여, 그리고 칠레 및 페루와는 Tacna-Arica 지역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가들의 영토주장은 종종 어떤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장되기도 하였다. 혈통적 주장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14개조에 자결권을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제10장 법적인 주장에서는 국가들이 일정한 영토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기한 갖가지 법적인 주장들과 관련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저자는 처음 근대국가가 탄생하던 시기 영토취득은 대개 상속, 결혼, 정복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1492년 교황이 내린 칙령의 법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발견의 법적의미도 분석하였다. 실제 점유가 곤란한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징적 행위

(symbolic acts)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단순한 발견만으로는 영토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등장한 이러한 상징적 행위의 법적인 효과는 클리퍼튼 섬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 외에 본 장에서는 지리적 근접성과 Uti Possidetis, 시효, 할양, 정복 등도 검토하였다.

이 책은 제11장에서 비법적분쟁의 해결방법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영토주권 주장의 논리를 분석하고, 그러한 주장들을 평가하였다. 제12장에서는 영토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법적분쟁과 비법적분쟁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외교적 방법에 의한 영토분쟁해결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영토분쟁을 사법적 방법에 따라 해결하는 문제도 검토되었다. 특히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의한 영토분쟁해결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심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즈음하여 출판된 것으로 과거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제기된 각국의 영토주장 근거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의 시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주요 국가들의 영토주장의 근거와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석용>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P) 341.05 A512
 저 자 : Carnegie Institution
 발행기관 : William S. Hein(영인본)
 발행년도 : 1906년~1917년
 구 성 : 총 22호

이 책들은 국제법의 역사 및 발달과 관련된 고전적인 저작들을 1906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카네기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지원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일련의 번역서

들이다.

이 책들의 구성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로 되어 있고, 각호는 제1권 및 제2권으로 되어 있는데(단, 제4호는 제3권까지,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9호 및 제21호는 제1권만 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는 초기 국제법학자인 영국의 Zouche가 1650년에 저술한 「국제법」을 Thomas Erskine가 재발행하고 J. L. Brierly가 번역한 것이다.

제2호는 스페인의 재판관인 Ayala, Balthazar가 저술한 3권으로 된 「전쟁법 및 전쟁과 무력사용의 원칙과 관련된 의무」를 John Westlake가 재발행하고 John Pawley Bate가 번역한 것이다.

제3호는 네덜란드의 Hugo, Grotius가 저술한 3권으로 된 「전쟁과 평화의 법」을 James Brown Scott가 재발행하고 Francis W. Kelsey가 번역한 것이다.

제4호는 Vattel의 「국가간의 법 및 자연법원칙」을 Albert de Lapradelle이 재발행하고 Charles G. Fenwick가 번역한 것이다.

제5호는 Rachel Samuel의 「자연 및 국가간의 법에 관한 논설」을 John Pawley Bate가 번역한 것이다.

제6호는 Jahann Wolfgang의 「국가간의 법 개요」를 John Pawley Bate가 번역한 것이다.

제7호는 Victoria, Franciscus의 저작중에서 법의 정의와 도덕이론에 관한 저술을 모아 John Pawley Bate가 번역한 것이다.

제8호는 교회법학자인 Legano가 수집한 강제나포면허장 등 불로냐필사본을 J. L. Brierly가 번역한 것이다.

제9호는 영국에 주재하였던 스페인왕의 상설대리인 Gentli가 영국에서 스페인을 위해 활동한 2권의 사례집을 Frank Frost Abbott가 번역한 것이다.

제10호는 영국에 주재하였던 스페인왕의 상설대리인 Gentli가 영국에서 스페인을 위해 활동한 2권의 사례집을 Frank Frost Abbott가 번역한 것이다.

제11호는 국제법에 있어서 초기 법실증주의자이자 연안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주권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 ‘착탄거리설’을 주장한 빈케르슈크(Bynkershoek)가 16세기의 관점에서 저술한 『해양의 지배권』을 James Brown Scott가 재발간한 것이다.

제12호는 초기 국제법학자이자 스페인왕의 상설대리인이었던 Gentli가 그의 외교활동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외교권에 관한 3권의 책』을 Grodon J.가 번역한 것이다.

제13호는 독일의 Christian Wolff(1679-1754)가 일반철학적 관점에서 정치분야에 관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작으로, 저자의 사상적 기저는 초기 국제법학자이자 자연법학자인 Grotius 및 Pufendorf와 일맥 상통하고 있다. 본 책은 3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윤리적 관점에서 본 자연법, 국제관계에 관한 원칙을 다른 국가간의 법, 국가에 관한 이론을 다룬 정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라틴어로 쓴 원본을 재발간하고 Joseph H. Drake가 영어로 번역한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제14호는 국제법에 있어서 초기 법실증주의자인 빈케르쉬크(Bynkershoek)가 저술한 3권의 책인 『공법의 문제점에 관하여』를 Tenney Frank가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빈케르쉬크는 전쟁법관계에 있어서 전투원이나 민간인, 또는 국가재산과 사유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적국민과 적국재산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로티우스와 달리 빈케르쉬크는 전쟁은 그것을 행하는 국가들의 권리이며 전쟁에 있어서 정의 또는 부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개전선언도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제법규칙의 주요원천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국가 자신이 선포한 법령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느 것이 최종적이고 변치 않는 법원칙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제15호는 Pufendorf가 저술한 『보편적인 법리학의 제요소』를 Willam Abbot Oldfather가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제법을 수학적 관점에서 보아 특히 법리학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Pufendorf는 그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분야에서는 예언가적인 통찰력을 발휘하여 국제법의 발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의 업적이 국제법의 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제16호는 1588년에 Gentli가 페르기아대학에서 시민법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로마법을 강의하면서 저술한 3권으로 된 『전쟁법』을 John C. Rolfe가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유럽에 있어서 국제법의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Gentli는 국제관계는 그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문제와 그러한 문제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은 서로 구별하여야 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교황이나 황제의 권위를 떠나서 따져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제17호는 Pufendorf가 저술한 『자연법과 국가법』을 C. H. Oldfather과 W.A. Oldfather가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자연법을 기초로 법리학, 사법 및 공법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8권으로 된 방대한 저술이다. 칸트는 Pufendorf를 그로티우스의 최고신봉자로 인정한 바 있는데, 칸트는 비록 그의 저술이 그의 당대에는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그의 저술은 국제법을 보다 높은 철학의 단계로 승화시킨 업적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제18호는 사보이공국의 귀족이었던 Belli, Pierino가 저술한 『군사 및 전투에 관한 논술』을 Herbert C. Nutting이 번역한 것이다. Belli는 사보이공국의 공작으로 1502년 피드몽의 알바에서 출생하여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프랑스의 찰스 5세 및 스페인의 필리페 2세 아래에서 군사 및 외교분야의 고위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보냈다. 이 책은 1558년에 저술되었는데, 그로티우스 이전에 만들어진 뛰어난 저작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의 저술이 순수하고 이상적으로 치우쳐 있으며, 국가간의 법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기초를 형성하는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제19호는 Henry Wheaton의 『국제법의 제요소』를 George Grafton이 편집하고 Arrigo Cavaglieri가 소개한 것으로, Wheaton의 외교적 경험과 공직자로서의 경험이 잘 나타나 있는 저작이다. 그는 자연법의 기초원칙은 국가들의 실행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20호는 Francisco Suarez의 저술중에서 추출한 3가지의 저작을 Gwladys L. Willams, Ammi Brown, John Brown Scott가 번역한 것이다. Suarez는 스페인의 초기국제법학자로 국가주권을 자연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에 자연법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및 철학적 탐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1호는 국제법에 있어서 초기 법실증주의자인 빈케르쉬크(Bynkershoek)가 저술한 『시민법 및 형사법 사건에 있어서 대사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고찰』을 Gordon J. Laing이 번역한 것이다. 그는 로마법의 탐구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제22호는 근대국제법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인 Hugo Grotius가 저술한 『노획물 및 전리품의 법에 관한 고찰』을 Gwladys L. Willams가 번역한 것이다.

그는 법적 정의야말로 국제사회가 공존공생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최선의 공동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책들은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카네기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국제법의 역사 및 발달과 관련된 고전적인 저작들을 원문과 영문으로 소개한 방대한 저작들이다. 이는 선진제국들이 국제관계에 관한 규범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국제법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독도문제에 관한 주요 국제법적 쟁점들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적인 기초이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갑용》

Developments in the Technical Determination of Maritime Space

Maritime Briefing Vol. 3 No. 4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Chris Carleton, Clive Schofield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2002년

구 성 : 68면

이 보고서는 Chris Carleton과 Clive Schofield가 공동저자이다. Chris Carleton은 영국 수로국 해양법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경계선 협상에 참가한 바 있으며, Clive Schofield 박사는 영국 더럼대학교 IBRU의 책임자이었다.

Carleton과 Schofield는 서론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그간의 해양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해양법협약은 해양관할권과 해양경계선에 관한 기본구조를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양법 일부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연안국간 분쟁은 계속 남아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 성

격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arleton과 Schofield는 이 보고서에서 해양경계획정 특히 섬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새로운 해양공간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어서 해양경계획정과 해양경계선 관련 분쟁해결 방법을 개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경계선협상에서 기술전문가들의 역할을 다루었다.

특히 제3장 해양경계획정 방법에서는 등거리선, 방위각과 기타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경계획정을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등거리선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등거리선 이외에 단순화된 등거리선, 수정된 등거리선의 사용방법을 실제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해안선에 수직인 선을 사용하는 등 방위각을 사용한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4장 섬 제도에서는 섬의 정의, 암석의 지위,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섬의 정의에서는 섬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오키노토리 시마를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과 알래스카 근해 Dinkum 섬의 지위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면적을 기준으로 섬을 구분하자는 취지의 과거의 제안들을 검토하였다. 암석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해양법협약의 암석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영국이 Rockall 섬을 암석으로 지정하여 그 해양수역을 축소시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간출지(low-tide elevation)의 지위와 섬이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해양경계획정에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해양경계획정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7장에서는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들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들이 협상 이전에 수행할 역할, 협상 과정에서 수행할 역할, 협상 이후에 수행할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등거리선 등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섬 제도와 암석의 지위에 대한 분석은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에 GIS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기술전문가를 활용하는데 관한 언급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석용》

The Eastern Greenland Case in Historical Perspective

도서번호 : 독도 341 S968e
 저 자 : Oscar Svarlien
 발행기관 : University of Florida Press
 발행년도 : 1964년
 구 성 : 74면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의 50배에 달하는 84만 평방마일의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나, 기후와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주민은 그리 많지 않다. 9세기말 아이슬란드가 발견되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이후, Gunnbjorn of Storme 이라는 사람이 바람과 해류에 밀려 그린란드에 도달함으로써 그린란드는 처음으로 유럽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이어서 10세기말 노르웨이 출신으로 아이슬란드에 거주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오게 된 Eric the Red가 등장하여 이 섬을 그린란드라 부르고, 이곳에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정착촌을 건설하였다.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많아져 몇 년 되지 않아 주민 숫자는 3,000명 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노르웨이와는 무역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린란드는 250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하였다. 1261년 그린란드는 전성기를 맞고 있던 노르웨이 왕국의 속령이 되었으나, 노르웨이의 쇠퇴로 무역이 축소되면서 양측의 관계도 약화되다가, 1397년 양자간의 공식적인 관계는 종식되었다.

비록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그 후에 노르웨이와 그린란드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것은 교회이었다. 기독교는 대략 1,000년경 Lief Eriksson에 의하여 그린란드에 도입되었으나,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18세기 초 노르웨이 왕에 의해 이곳에 파송된 Hans Egede이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바이킹 후손들에 대한 전도사명을 안고 그가 이곳에 도착한 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에스키모인들이었으나, 그는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하는데 기여하였다.

17세기에 걸쳐 노르웨이인들은 그린란드 해안에서 대규모 사냥과 어로를 하였으며, 1721년에는 베르겐에 '그린란드회사'(Greenland Company)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그린란드 무역의 중심은 베르겐에서 코펜하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1721

년부터 1814년 킬조약(Treaty of Kiel) 체결 당시까지의 그린란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양국간에 이견이 있었다. 노르웨이 학자들은 이 기간동안 그린란드는 계속 노르웨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1814년 이전에 그린란드는 이미 노르웨이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린란드는 노르웨이 영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체결된 킬조약에서 덴마크의 프레데릭 4세는 노르웨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으나, 여기에서 Faroe 군도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는 제외되었다. 이는 노르웨이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버크(Edmund Burke)의 활약에 힘입은 것이었다. 노르웨이에서는 킬조약 체결 이전에도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별개의 국가이었으므로 덴마크가 국제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덴마크는 이전에는 양국은 하나의 국가이었으며 1814년부터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가 되었다고 하였다.

노르웨이의 동부 그린란드에서의 활동은 주로 Scoresby 만 북부에 집중되었다. 노르웨이는 이 지역을 Eirik Raudes Land(Erik the Red Land)라 불렀는데, 노르웨이는 1931년 국왕포고령을 통해 이곳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1814년 킬조약 이후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점유는 확대되었다. 덴마크는 1894년 Angmagssalik에 무역거래소를 설치하였으며, 1919년에는 동부그린란드회사를 설립하고 Scoresby 만 북쪽에 8개의 상설 사냥기지를 설치하였다. 저자 Svarlien은 영토에 대한 소유권 획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면서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영유의사를 밝히는 공식적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오펜하임의 말을 인용하면서, 19세기와 20세기 초 이들 양국의 영토주장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덴마크는 일부 강대국들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미국은 덴마크로부터 서인도의 Antilles를 매입하면서 “미국정부는 덴마크정부가 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그린란드 전체에 확장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노르웨이는 미국의 이러한 선언의 의미를 크게 평가하지 않았으나, 덴마크는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승인이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1919년 7월 14일 덴마크 외무장관 Kammerherre Krag는 노르웨이 외무장관 Ihlen을 만나 미국의 선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르웨이 정부가 덴마크에 의한 그린란드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 Ihlen은 구두응답을 통해 노르웨이 정부는 그린란드 문제 해결에 아무런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덴마크는 노르웨이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승인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노르웨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덴마크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서면 선언을 얻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1921년 7월 22일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Ihlen 선언의 의미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을 진행하여 1924년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그 명칭이 무색하게도 동부그린란드의 법적지위에 관한 양국정부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물렀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노르웨이는 그린란드에서 점유되지 아니한 지역은 무주지라는 견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모두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을 수락한 관계로, 덴마크의 1931년 7월 11일 제소로 재판소가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덴마크는 자국이 오랫동안 그린란드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자국의 권원이 특별한 점령행위 보다는 섬에 대한 평화롭고 지속적인 국가권한 행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덴마크가 점유하고 있던 그린란드 남동해안 및 남서해안에 국한되며, 나머지 지역은 무주지(terra nullius)라고 하였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은 1931년 7월 10일이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그린란드는 1261년 노르웨이 영토가 되었으며 당시 노르웨이의 영유권은 섬 전체에 대하여 인정되었으나, 초기 거주지가 폐쇄되면서 영유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그린란드 관련 입법조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은 가장 분명한 형태의 주권행사이며, 그러한 조치가 그 섬의 일부지역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1814년 킬조약과 1826년 미국과의 조약 등을 증거로 제시한 덴마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그러한 조약들은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지의와 의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동부그린란드 사건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12대 2로 결정적 시점인 1931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볼 때 덴마크왕국이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영유권에 관하여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덴마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는 1919년 7월 22일 당시 노르웨이 외무장관 Ihlen의 선언이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그 선언은 노르웨이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 선언으로 인하여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린란드의 일부를 점유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저자 Svarlien은 이 책에서 국제법상 영토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그는 팔마스섬 사건에서 후버(Max Huber)가 제시한 시제법(intertemporal law) 원칙을 검토하였다. 영토문제에서 시제법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위의 타당성은 그 시대의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단 정당하게 창설된 권리도 법의 변화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영토취득에 있어서 실효성의 원칙은 초기 학자들도 인정해온 국제법상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는 새로운 땅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어 실효성의 원칙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던 15, 16세기에도 발견은 이를 발견한 국가에게 불완전한 권원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어서, 적당한 시간 안에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15세기 말 발견된 지역에 십자가를 세우거나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의 상징적 행위(symbolic acts)를 취하는 경향이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바텔의 말대로, 현실적인 점유가 없이는 그러한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실효성 원칙의 강화를 지적하였다.

이 책에서 Svarlien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영토취득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클리퍼튼섬 사건(Clipperton Island Case)에서도 선점을 위해서는 명목상의 점유가 아닌 실질적인 점유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어떤 국가가 등장하였고, 그 국가가 그곳에 처음 등장하였을 때부터 그 지역에 대해 절대적이고 다툼이 없는 처분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면, 그 국가의 그 지역에 대한 선점은 그 때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토에 대한 권원은 국제법의 변화과정 가운데에서 파악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영토취득을 위해서는 입법이나 행정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가주권이 당해 지역에서 적절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었다.

Svarlien은 소위 근접성(contiguity)이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이론은 지리적 단일성에 관한 다른 표현인 연속성(continuity) 이론과는 유사하나, 오늘날 국제법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배후지(hinterland)에 관한 이론과는 구분되어야 한

다. 국제법에서 근접성이론은 미국이 트루먼선언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러시아와 캐나다가 선형이론을 통해 북극의 해양과 도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때 이미 원용되었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다. 본토 주변의 섬들은 본토의 종물이므로, 적극적인 소유행위가 없어도, 본토에 대한 소유나 점유에는 주변의 섬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팔마스섬 사건에서 후버는 영토주권의 기초로서의 근접성에서 나오는 권원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였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근접성이론은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곳에서 영토주권 취득의 중요한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었다.

동부그린란드 사건은 극지에 대한 영토주장을 다룬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사법기관의 결정이란 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실효적 점유를 영유권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였으나, 극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조건을 다소 완화하였다. 특히 저자가 노르웨이가 이 사건에서 패배한 이유로 1819년 당시 자국의 이익을 지킬 힘이 없었던 노르웨이의 비극적 상황과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 하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한 부분이 주목을 끈다. 《이석용》

The Ecuador-Peru Boundary Dispute : The Road to Settlement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vol. 3 No. 1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Ronald Bruce St John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65면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와 외교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Ronald Bruce St

John의 저술인 이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국경선 문제의 복잡함과 함께 해결 방향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 제목에서 보듯이 그 초점은 에콰도르와 페루간의 국경선 분쟁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국경선 분쟁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이후 엄청나게 많은 국경선분쟁을 경험하였다. 이는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식민통치하고 있을 때 그 행정상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다.

사루미야-마라논(Zarumilla-Maranon) 분쟁이라 불리는 에콰도르와 페루 간 국경 분쟁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영토분쟁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분쟁으로 지난 2세기 동안 양국 관계를 파멸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와 페루간의 국경분쟁도 우여곡절 끝에 1998년 10월 브라질리아협정(Brasilia Agreements)이라 불리는 일단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이 보고서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국가창설에서부터 브라질리아협정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브라질리아협정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해진 배경을 세밀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에콰도르와 페루 양국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법적인 근거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온 Uti Possidetis 원칙을 분석하여, 원칙의 적용을 둘러싼 견해차와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을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이석용》

Essays in Honour of Wang Tieya

도서번호 : 독도 341 M135e

저 자 : Ronald St. John Macdonald(ed)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1994년

구 성 : 964면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46년 동안 북경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교수로 재

직하면서 끊임없는 국제법 연구와 교육을 통해 중국 국제법의 기초를 다져온 왕티에야 교수를 기리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1913년 타이완 맞은편 푸젠성 푸조우에서 태어나 두 번의 세계대전과 중국내전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봉사와 중국 국제법 발전에 대한 이상을 지켜온 왕티에야 교수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책을 만든 것이다.

이 책에는 모두 5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그 중에서 영토주권이나 해양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독도연구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만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자결권과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에 관한 Antonio Cassese 교수의 글이다. 둘째는 대안국간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Hungdah Chiu 미국 매리랜드대 교수의 논문이다. 셋째는 주권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Oscar Schachter 컬럼비아대 교수의 글이다.

이 책에는 국제법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들이 쓴 모두 58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들은 어떤 특정한 국제법 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저자 각자의 관심분야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도서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이 책을 보기를 원한다면, 위에 소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관련 있는 글들을 선택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석용>

Estoppel, Acquiescence and Recognition in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 Settlement

Boundary & Territory Briefings Vol. 2 No. 8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Nuno Sérgio Marques Antunes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42면

이 글의 저자는 포르투갈 해군 소령으로 당시 포르투갈 수로국에 근무하던 Nuno

S rgio Marques Antunes 이다. 그는 포르투갈 해군사관학교와 리스본대학교 법과 대학을 나왔으며,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국가간 경계선 문제를 공부하였다.

‘어느 정도 확정된 영토’는 국가구성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의 하나인 동시에 모든 국가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이므로, 영토 및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은 당해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국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영토변경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당사국들의 의사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반언(estoppel), 묵인(acquiescence), 승인(recognition)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묵인, 승인, 금반언을 간략하게 정의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묵인, 승인 및 금반언을 그 판결이나 판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거나 어떠한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토 및 해양에 관한 국제분쟁 사례들을 인용하였다. 인용된 사례들은 노르웨이와 스웨덴간 그리스바다르나(Grisbadarna) 중재사건, 노르웨이와 덴마크간 동부그린란드 사건,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사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간 중재사건, 태국과 프랑스(캄보디아) 간 프레아비헤어사원 사건,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 팔레나(Palena) 중재사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쿠치(Rann of Kutch) 사건, 네덜란드-덴마크와 독일 간 북해대륙붕 사건, 영국과 프랑스 간 대륙붕사건, 미국과 캐나다 간 메인만 사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 육지도서해양경계선 분쟁사건,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얀마옌 사건, 리비아와 차드 간 영토분쟁 사건이다.

제4장에서는 영토 및 해양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증거들 가운데 중요한 증거들과 그 외의 증거들을 구분하여 보았으며, 묵인, 승인, 금반언이 실제 해양영토분쟁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에 해당된다.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등장으로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이 금지되고, 무주지의 소멸로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현재 상황에서, 당사국들의 의사는 영토변경과 영토분쟁해결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영토분쟁과 국경선 분쟁에서 금반언, 묵인, 승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며,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과 불리한 증거들을 선별하며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석용>>

The Falkland Islands and their Adjacent Maritime Area

Maritime Briefing Vol. 2 No. 3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Patrick Armstrong, Vivian Forbes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43면

이 보고서는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지리학과에서 생태지리와 환경관리를 가르치는 Patrick Armstrong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도연구자 Vivian Forbes에 의해 공동으로 저술되었다. 저자들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보고서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분쟁의 역사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전개되어 온 이 섬을 둘러싼 양국간 협력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들어있지 않다.

포클랜드 군도는 지리적으로 남미대륙에서 480km 떨어진 남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는 외딴 섬이나, 지질학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이 군도는 두 개의 큰 섬인 동포클랜드 및 서포클랜드와 수백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총면적은 13,000km²에 달한다. 포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은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이 섬 주변에는 대륙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고래와 오징어 등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다.

포클랜드 군도는 16세기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그 중에 영국선박 Welfare호의 선장 John Stornng은 동포클랜드와 서포클랜드 사이를 향해하면서 이를 포클랜드만이라 명명하였다. 그 후 이 군도는 이를 Isles Malouines라 불렀던 프랑스 사람들에 의하여 경략되어, 1764년 이후 Antione de Bougainville은 이곳에 새로운 프랑스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활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국선장 John Byron과 John McBride는 1765년과 1766년 포클랜드에 도착하여 포클랜드에 대한 영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Bougainville은 1767년 4월 1일 이 군도를 스페인에 매각하였다.

1770년 스페인은 포클랜드에 5척의 프리깃함과 1,600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스페인이 건설한 Puerto de la Soledad 거주지는 남미대륙에서의 혁명으로 1806년 스페인이 철수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 후 United Provinces는 스페인의 모든 남미 영토를 승계하였으나, 정부기관은 1820년에야 설치되었다.

영국은 외교채널을 통하여 포클랜드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1832년에는 군함 Clío호와 Tyne호를 파견하여 Egmont항의 영국인 주거지와 Soledad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주권주장을 위한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곳을 떠났으나, 다음해인 1833년 3월 비글(Beagle)호가 이곳에 항해하였다. 다분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곳에 파견된 비글호와 이 배에 승선한 과학자 다윈(Darwin)은 포클랜드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심각한 분쟁 대상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 후 영국의 포클랜드에 대한 지배권은 확고해졌으나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이 섬에 대한 평가와 영유권 주장은 시대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다.

이 보고서는 1982년 포클랜드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쟁은 포클랜드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으며, 이 섬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섬의 경제적 가치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과 해저광물자원이다. 영국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1986년 이 섬 주변에 보존관리 수역을 설치하였으며, 1989년에는 포클랜드군도 영해법을 제정하여 영해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1991년 11월에는 대륙붕을 설치하였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직후 몇 년 동안 양국간의 관계는 냉랭하였으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1990년 2월 영국과 아르헨티나 대표는 마드리드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의체제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수산자원보존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하여 남대서양에서의 수산자원보존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1995년 9월 양국은 「남서대서양에서의 해양활동에 관한 협력선언」을 발표하여 남서대서양에서의 해양활동 장려에 협력하고 그러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이러한 일련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군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분쟁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협상들은 영유권과의 관련을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에는 빠짐없이 그러한 배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분쟁에 관한 이 보고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위한 영국의 전략에 관한 것이다. 영국은 군사적 노력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당대 최고의 과학자 다윈을 파견하여 과학조사에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는 양국은 참여한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남서대서양 해저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국간 합의에는 어김없이 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석용>

The Falklands/Malvinas Case : Breaking the Deadlock in the Anglo-Argentine Sovereignty Dispute

도서번호 : 독도 341.5 L399f

저 자 : Roberto C. Laver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311면

포클랜드(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는 남미대륙 아르헨티나 동남쪽에 위치한 군도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어 온 지역이다. 포클랜드군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이 책의 저자는 아르헨티나출신이나 스스로 영국적인 것이 강한 집안출신인 Roberto C. Laver이다. 저자가 포클랜드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6년 버지니아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을 때이며, 그의 박사학위 논문 역시 포클랜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 책의 저자 Laver에 의하면 처음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던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이었으나, 1833년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반대

를 무릅쓰고 포클랜드를 자국영토에 편입하였다. 그 후에도 아르헨티나는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바 없으며, 유엔체제하에서 비식민화가 진행되는데 고무되어 오히려 영유권주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2년 아르헨티나 군사정부가 포클랜드를 침공하였다가 패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쟁이 시작된 1982년 까지 포클랜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목양과 양모의 수출이었으나, 그 후에는 어업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포클랜드는 어획쿼터 판매로 매년 2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포클랜드 해역에서 특히 중요한 오징어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연안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1999년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당국 간에는 어류자원 보호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영국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 대한 포클랜드 군도 입도제한도 해제하였다.

이 책의 저자 Laver는 1982년 포클랜드전쟁 이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공동주권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에는 그러한 노력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양국에게 기능적 접근방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적 방법이란 주권을 시간에 따라서 또는 공간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 책은 제1장에서 포클랜드 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분쟁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군도의 지리와 자원, 인구, 정치적 지위 그리고 경제상황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400년간의 포클랜드군도의 역사를 개관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검토하였다. 특히 영국이 포클랜드 군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1833년 당시 군도의 지위와 영국의 군도 점령으로 아르헨티나가 그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자결권 원칙에 비추어 영국의 영유권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183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2년 포클랜드전쟁 때까지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진행된 협상과정을 소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쟁이후 양국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영국에 의한 포클랜드군도 개발과 양국간 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장을 평가하고, 포클랜드군도에 유연한 주권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영국보다는 아르헨티나 입장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포클랜드군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들러싸고 제기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이 책은 독도영유권 및 주변해역 해양 경계획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어류자원 관리체제의 분리가능성 문제와 주변해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석용》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Diplomatic Papers, 1948, Vol. V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도서번호 : 독도 327.73 U58f
 저 자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발행기관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발행년도 : 1974년
 구 성 : 1379면

미국의 대외관계 외교문서를 모아놓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Diplomatic Papers, 1947, Vol. IV, The Far East』에는 버마, 프랑스령 인도지나, 일본, 한국, 네델란드령 동인도, 필리핀에 관한 기록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국에 관한 기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령 인도지나에 관한 문서들은 주로 베트남에 관한 기록들이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기록들은 당시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프랑스가 식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호치민이 영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등장도 경계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도움과 정치적 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괴뢰정부의 수립을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인 네델란드령 동인도 부분에서는 네델란드 당국과 인도네시아 독립운동단체 간의 갈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필리핀 관련 부분에는 미국과 필리핀간의 우호협력 관계에 관한 문서들이 들어 있다.

이 책에는 400여 쪽에 달하는 일본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점령과

통치, 전쟁배상, 평화조약 체결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미국은 평화조약 준비를 위하여 관련 11개국이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으나, 소련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이 참가하는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일본관련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의 대 일본정책에 관한 권고들이다. 여기에는 당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던 케난(George F. Kennan)의 보고서와 국가안보회의(NSC)의 보고서가 들어 있다.

이 책에는 290쪽에 달하는 한국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1945년 모스크바에서의 합의에 의하면 독립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한국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7년 당시 북한은 소련의 통제아래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단독으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한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장군과 그의 정치자문관 제이콥스(Joseph E. Jacobs)가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점이다. 이 책에는 당시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 스미스(Bedell Smith)가 소련 외무부에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석용》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Diplomatic Papers, 1961-63, Vol. XXII, Northeast Asia

도서번호 : 독도 327.73 U58f
저 자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발행기관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823면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Diplomatic Papers, 1961-63, Vol. 22, Northeast Asia』는 1960년대 초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정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직 외교관계

가 수립되지 아니한 중국 및 몽고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들도 일부 포함되어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 관한 부분은 1960년대 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세분석과 그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1961년 5.16 군사혁명이후 우리나라의 정세를 분석한 자료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및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1962년 10월말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미국방문에 관련된 기록이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방문 길에 올랐는데, 그는 자신이 일본에서 오히라 외상 및 이케다 수상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하게 미국국무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오히라 외상 및 이케다 수상과 청구권자금의 액수와 지급방법, 그 명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양국간의 어업문제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오히라 외상과의 면담에서는 평화선은 일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니, 일본은 평화선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후” 또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라앉은 후” 논의하자는데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독도폭파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 《이석용》

Geographical Information in Delimitation Demarcation and Management of International Land Boundaries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vol. 3 No. 4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Ron Adler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78면

이 보고서의 저자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와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Center for Mapping에서 사무총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았던 Ron Adler이다.

저자 Adler는 1945년 S. B. Jones의 저서 『Boundary Making』은 국경선설정에 관한 기술적인 측면들을 국경선 교섭담당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현재에도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컴퓨터, 인공위성, 원거리탐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국경선 획정과 설정, 관리에 커다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소련 및 유고에서 목도한 국가분리와 신생국들의 독립에 따라 국제분쟁의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경선 획정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저자는 국경선 획정의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그에 관련된 각종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을 국경선획정에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이라크-쿠웨이트 국경선과 이스라엘-요르단 국경선을 분석하였다.

국제적인 경계선획정 및 경계선 설정과 관련해서는 경계획정합의의 구조와 제3자에 의한 경계획정, 국경선설정의 원칙과 실제, 각 단계에서의 경계획정 관련 공학도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경선 경계획정 및 국경선 설정 관련 기술에 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선의 좌표, 지도, 원거리탐사결과, 지구위치정보시스템(GPS)의 사용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지도와 관련해서는 관련기술과 오류의 유형, 경계획정과 경계선설정에 지도를 사용하는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국경선획정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장점과 시스템 구축문제를 설명하였다.

저자 Adler는 마지막 결론에서 국경선 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경선획정을 위한 협상 팀에는 기술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경선관련 합의는 지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디지털 자료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위치조사에는 GPS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효율적인 국경선관리를 위해 전산화된 국경선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석용>>

Historic Titles in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 341 B658h
 저 자 : Yehuda Z. Blum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1965년
 구 성 : 360면

이 책의 저자는 1965년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헤브루(Hebrew)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었던 Yehuda Blum이다. 그는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Bergen-Belsen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그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가족들은 나치스 독일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저자 Blum이 1961년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출하였던 논문을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책의 전문에서 D.H.N. Johnson이 밝힌 바와 같이, 당시 국제법 학계에서는 국제법상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제법상 역사적 권리 문제는 팔마스(Palmas)섬 사건, 동부그린란드 사건, 폰세카(Fonseca)만 사건, 프레아비헤어(Preah Vihear) 사원 사건 등 국가영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이어,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사건 등을 통해 해양관련 분쟁에서도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Blum의 이 책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 책의 제1장은 서론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국제법에서 영토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영토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법상 시효제도를 고찰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효가 역사적 권원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각국 국내법에서의 시효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국제적인 사법기관과 국내법원의 판결 및 국가 실행에 비추어 국제법상 시효제도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역사적 권리의 법적인 기초로서의 묵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국

제관습법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조건을 분석하였으며, 역사적 권리의 법적인 기초로서의 묵인을 국제적인 사법기관과 국내법원의 판결 및 국가실행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의한 판례로는 1903년 미국과 영국 간 알라스카 국경선 분쟁, 1909년 그리스바다르나(Grisbadarna) 중재사건, 1928년 팔마스(Palmas) 사건, 1917년 폰세카(Fonseca)만 사건, 1953년 망기에에끄레오 사건, 1951년 어업사건, 1960년 인도영토통행권 사건, 1962년 프레이비헤어사원 사건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역사적 권리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과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권한의 효율적인 표시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가권한 행사의 한 형태로서 묵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역사적 권리의 형성에 있어서 항의(protest)가 가지는 의미와 항의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으며, 항의가 없는 경우 묵인이 추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역사적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해석과 증거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시제법과 결정적 시점 이론의 적용문제 및 역사적 권리의 입증책임 문제가 검토되었다. 제6장에서는 해양에서의 역사적 권리의 형성에 관련된 법적인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역사적 만을 비롯하여 역사적 수역으로서의 확대된 영해와 내수 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전통적 어업권과 해저자원 및 정착성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역사적 권리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지금도 국제법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역사적 권리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 책이 오래전에 출판된 관계로 최근의 사례에 대한 분석들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위치한 동아시아 국가간 영토와 해양문제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해양영토문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영토문제와 해양관할권 분쟁에 내재해 있는 역사적 권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론서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석용》

How to Prove Title to Territory : A Brief Practical Introduction to the Law and Evidence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vol. 2 No. 4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John McHugo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23면

국가에 의한 영토획득 방법과 영토관련 분쟁해결 시 증거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인 동시에 관련 사례들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의 저자는 법률회사의 파트너로 있으면서 국제적인 경계선 문제를 연구해 온 John McHugo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할양, 정복, 선점, 시효 등 영토에 대한 주권변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여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영토에 대한 주권변동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서 선점과 관련하여 정치적 조직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의 변화와 과거 식민주의시대 열강의 세력범위 내에서의 영토획득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어떤 국가의 일부가 분리되어 독립하거나 식민지가 독립을 얻는 경우 그 경계선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Uti Possidetis* 원칙도 검토하였다.

영토에 대한 주권의 획득과 상실에 관한 몇 가지 사례도 분석되었다. 영국의 영유권 포기 1713 유티레히트 조약에 의해 프랑스의 영유권이 확인된 세인트루시아(*St Lucia*), 금반언 논리에 따라 영국의 영유권이 인정된 수단, 국경선에 관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작성하고 타방이 받아들인 지도로 인하여 국경선이 바뀐 프레아비헤 어사원 사건이 검토되었다.

저자는 영유권 분쟁에서 국가들이 제시하는 증거에 관한 문제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그는 영유권 분쟁에서 재판기관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위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 이론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시점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경향이 등장하게 된 보다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증거의 발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각종 문서와 협약은 물론 각국의 정부문서와 사인과 사기업

의 문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지도는 증거로서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영유권 분쟁에 관심이 없는 제3자가 작성한 지도의 증거력은 상당히 약화된다고 하여, 지도의 증거능력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증거는 당사국들의 주권적 행위나 행정권 또는 통제권의 행사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저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미국간 팔마스섬 사건과 영국과 프랑스 간 망끼에-에끄레오 사건을 인용하였다. 이 두 가지 분쟁에서 섬에 대한 영유권의 향방은 분쟁당사국의 섬에 대한 주권적·행정적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영토분쟁관련 국제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시 중요하게 인정되는 증거를 발견하는 방법과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석용>>

Internation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Past, Present and Future

도서번호 : 독도 341.5 P451i

저 자 : International Bureau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발행기관 : Kluwer Law International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242면

1899년 헤이그평화회의의 결과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설립되었다. 이 책은 상설중재재판소 창설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있었던 갖가지 행사에서 발표된 연설문과 논문 등을 수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활동을 검토하고, 재판이외의 분쟁해결절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적 경향을 감안하여 상설중재재판소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글이 실려 있다.

1999년 상설중재재판소 행정위원회 100주년회의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그룹을 대표하는 5명의 대표들의 발표문과 재판소 사무총장의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재판소 사무총장 Jonkman은 1996년 이래 재판소가 6개 중재사건의 기탁 장소로 지정된 사실과 중재관 선정과 관련하여 40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한 실적을 소개하였다.

1999년 5월 13일의 Hague Appeal for Peace Conference 회의에서 발표된 3개의 논문들은 주로 대안적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상설중재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Sven Koopmans는 「The PCA in the Field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에서 중개, 조정, 심사와 같은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상설중재재판소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특히 1966년 선택적조정규칙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1999년 5월 17일에 있었던 상설중재재판소 2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7명이 주로 중재문화와 상설중재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연설하였다. 동년 5월 18일과 19일에 개최된 정부간회의에 관한 기록 역시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4명의 발표문을 싣고 있다.

이 책은 제목이 보여주듯이 중개, 주선, 심사, 조정 등 국제분쟁해결의 대안적 방법들을 검토하고 상설중재재판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할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쟁해결 절차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석용>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도서번호 : 독도(UN), ICJ/092/R3P
 저 자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발행기관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발행년도 : 1947~1990년
 구 성 : 해당사건별로 발간

이 책들은 1946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그 동안 국제사법재판소가 행

한 판결, 권고적 의견 및 명령을 각 해당사건에 대한 연도별로 구분하여 영어 및 불어본으로 수록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집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22년 설립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법인격을 승계하여 1946년에 유엔의 6개 주요기관의 하나로 설립된 국제적인 사법기관으로, 그 본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동 재판소의 기능은 재판소의 규정당사국이나 유엔 회원국이 부탁한 분쟁을 국제법에 의거하여 해결하거나 적절한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기관에서 제출한 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행하는 것이다.

동 재판소는 9년 임기의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동일 국적이면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재판관이 될 수 없으며 정치·행정상 직무 기타 전문적 성질을 갖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재판관의 재판활동은 본국과 독립하여 행하며 외교관과 동등한 면제를 향유한다. 재판관의 선출은 해당 국가에서 최고법원의 법관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세계각국의 주요법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서구 및 기타 5명, 동구 2명, 미주 2명, 아시아 3명, 아프리카 3명의 비율이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책들은 1947년에 최초로 판결한 코르푸해협사건(영국과 알바니아)을 시작으로 1949년 2건, 1950년대에 20건, 1960년대에 6건, 1970년에 9건, 1980년대에 13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4건 등 모두 64건에 대한 판결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중에서 독도의 영유권문제 또는 해양경계확정에 있어서 독도의 법적지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판결은, 2001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 영해 및 해양 분쟁사건, 1999년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카리브해에서의 해양경계 분쟁사건, 1991-1995년 기네비소와 세네갈간 해양경계 분쟁사건, 1988년 덴마크와 노르웨이간 그린란드 본토와 얀마엔섬간의 해양경계 분쟁사건, 1986년 엘살바도로와 온두라스간 육지, 도서 및 해양의 국경확정 분쟁사건, 1982년 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사건, 1981년 캐나다와 미국간 메인만 해양경계확정 사건, 1978년 튀지니아와 리비아간 대륙붕 사건, 1976년 그리스와 터키간 에게해 대륙붕 사건, 1962년 캄보디아와 태국간 프레아비헤아사원 사건, 1953년 프랑스와 영국간 망끼에 및 에끄레오제도 사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쟁점은, 섬의 영유권에 있어서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 재판에 있어서 지도의 증거력, 이전의 협정이나 조

약 등 국가간 합의의 시간적, 인적 및 물적 효력범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은 섬의 효과 또는 법적 지위 등 영유권문제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책들은 국가간 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권고적 의견 및 결정 등을 수록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문이므로, 국제분쟁 해결절차 및 영유권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때 꼭 필요한 참고자료이다. <정감용>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 341 S535i4
 저 자 : Malcolm N. Shaw
 발행기관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939면

영국 Leicester 대학교 법학교수인 Malcolm N. Shaw가 쓴 「International Law」 제7판인 이 책은,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국제법에 관한 일반적인 서적이며 법대학생들의 국제법 교재로 적합한 책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영토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Shaw 교수는 이 책에서 영토문제에 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Shaw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제7판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넓어져 가는 국제법의 지평과 국제법의 변화이다. 특히 그는 국제인권법의 중요성과 관련 관행의 증가로 국제인권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국제환경법과 국가승계, 승인, 평화적 분쟁해결 분야를 대폭 수정하였다고 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유고연방의 해체, 독일통일 등 최근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승계 분야를 대폭 손질하였다는 것은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영토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책은 법대학생들의 교재로 적합한 국제법에 관한 일반서적이므로, 국제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법의 총론적인 내용으로서 국제법의 역사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국가승인, 영토문제, 국가승계, 국가관할권과 면제, 국제기구, 평화적 분쟁해결 등을 다루었으며, 각론적인 내용으로서 국제인권보호, 해양법, 국가책임, 국제환경법, 조약법, 무력행사 등을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Shaw 교수는 제9장 영토에 관한 부분에서 국제법상 영토문제를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는 영토가 없이는 그 어떠한 실체도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말로 국제법상 영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영토주권과 영토에 대한 권원을 설명하고, 국내법과 비교하여 국제법에서 발견되는 영토문제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신생국의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이론을 검토하면서, 승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나아가 영토와 자결권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경선확정과 관련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을 검토하였으며, 포클랜드와 극지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는 갖가지 영토취득 원인들도 분석하였는데, 선점 및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과 관련하여 실효적 점유의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특히 영토취득 과정에서 묵인과 항의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드비셔(De Visscher) 교수의 역사적 응고(historical consolidation) 이론을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과 관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는 소위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속성상 권원의 상대적 비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영토분쟁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국가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가의 영유의사 문제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영토분쟁에 있어서 국가들의 동의의 형태인 승인과 묵인, 금반언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그 법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영토문제에 관한 전문서적이거나 보다는 대학생들이 즐겨보는 국제법 교과서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국제법상 영토문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학설이나 사례분석을 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다만 영토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Shaw 교수의 견해에 비추어 오늘날 국제법상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라 판단된다. 《이석용》

International Law and Self-Determination

도서번호 : 독도 341 C348i
 저 자 : Joshua Castellino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286면

이 책은 『국제법과 자결권』이라는 책 제목과 「영토점유의 정치와 식민시대 이후 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상호작용」이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국제법상 민족의 자결권과 영토주권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을 서술한 것이다. 저자 Joshua Castellino는 국제법에서 자결권이 인정되어 온 역사와 자결권 행사의 주체인 인민(people)의 의미, 그리고 자결권과 영토주권 간의 관계를 서술한 후, 방글라데시와 서사하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이론과 현실을 연결해 보고자 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결권 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인권선언에서 표명된 자결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식민주의에 대한 무력항쟁을 이론적으로 합법화한 월슨의 자결권 개념에 이르기까지 자결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다음에는 자결권 행사의 주체인 인민(people)의 의미를 규명하고 자결권 행사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책은 자결권과 영토주권 간의 이념적 충돌을 다루었다. 국가라는 존재는 전통국제법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영토보전의 원칙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영토주권은 어떤 국가에서 억압받고 약탈당하는 인민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자결권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게 되었다. 유엔 감시 아래 국민투표를 통하여 독립한 에리트리아와 일부 민족해방운동단체에게 읍서버 지위

를 부여한 국제기구들의 결정에서 보듯이, 국제사회가 자결권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리독립 운동으로 진행되는 자결권 행사는 아직 그 취지를 인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이 이론적 측면에서 자결권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다룬 주제는 자결권과 국경선획정에 관한 Uti Possidetis 원칙 간의 관계이었다. 식민지시대 행정상의 경계선을 독립국가의 국경선으로 변화시키는 이 원칙이 국제질서의 안정에 기여해 온 공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키워가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었다.

자결권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제1부에 이어, 제2부는 앞에서 검토한 자결권에 관한 이론을 방글라데시와 서사하라에 실제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담고 있다. 저자는 방글라데시는 민족해방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한 사례에 속하는데 반하여, 서사하라는 아직 문제의 해결방향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례에 속하므로 이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월슨대통령이 1차대전이후 제시한 자결권에 관한 모델은 21세기에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월슨이 주창한 자결권은 2차대전이후 식민지들이 독립해가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식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사하라와 같은 곳에 그러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석용》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1,2

저 자 :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s)

도서번호 : 독도 341.13 C483i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1181면(vol.1), 958면(vol.2)

이 책은 포드재단(Ford Foundation), 멜론재단(Mellon Foundation), Amoco 재

단, Exxon 재단, Mobil 재단의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 미국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가 수행한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자료와 연구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미국학자들은 물론 당시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춘호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외국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당시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 법과대학의 국제법 교수이었던 Jonathan Charney 이고, 미국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대학교 지리학과 Lewis Alexander 교수도 크게 공헌하였다.

1993년 처음으로 발간된 이 책은 본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권에는 연구 책임자인 Charney 교수의 서문, 주제별 전문가들이 작성한 해양경계선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주제에 대한 주제별 보고서, 지역전문가들이 작성한 10개의 지역별 보고서가 실려 있다. 다음에는 각 지역별 해양경계선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 문서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제1권에는 북미지역 관련 6개 협정, 중남미와 카리브해 관련 16개 협정, 남미관련 9개 협정, 아프리카 관련 7개 협정, 중부태평양과 동아시아 관련 21개 협정이 실려 있다.

제2권에는 나머지 다른 지역의 지역별 해양경계선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 문서들이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관련 20개 협정, 페르시아만 관련 10개 협정, 지중해와 흑해 관련 13개 협정, 북유럽과 서유럽 관련 17개 협정, 발틱해 관련 16개 협정이 실려 있다.

미국국제법학회는 해양경계선에 관한 국가간 합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어떤 패턴이 발견되면, 그를 통하여 해양경계선에 관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국제법학회에서는 우선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전문가에게 각자 맡은 지역의 해양경계선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각 지역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북미 : Lewis M. Alexander

중미와 카리브해 : Kaldone Nweihed

남미 : Eduardo Jim nez de Ar chaga

아프리카 : Andronica O. Adede

중부태평양과 동아시아 : Choon-Ho Park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 J. R. Victor Prescott

페르시아만 : Robert F. Pietrowski Jr and Lewis M. Alexander

중동과 흑해 : Tullio Scovazzi

북유럽과 서유럽 : David Anderson

발틱해 : Erik Franckx

위의 각 지역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해양경계획정에 국가간 합의문서는 물론이고,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도를 첨부하였으며, 몇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각 지역별로 해양경계선 획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9가지 사항을 분석하였으니, 그 내용은 이 책의 제1권에 실려 있다. 그러한 9가지 사항이란 정치적·전략적·역사적 고려사항, 법제도적 고려사항, 경제적·환경적 고려사항, 지리적·고려사항, 섬과 암석, 환초 및 간출지에 관한 고려사항, 기준선관련 고려사항, 지질학적 지형학적 고려사항, 경계획정 방법에 관한 고려사항, 기술적 고려사항이다.

이 책의 제1권에는 지역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는 별도로 주제별 전문가들이 적성한 주제별 보고서가 함께 실려 있다. 주제별 전문가들은 지역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특히 9가지 사항에 대한 지역전문가들의 분석을 기초로 그들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각 주제와 주제별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전략적, 역사적 고려사항 : Bernard H. Oxman

법제도적 고려사항 : David Colson

경제적, 환경적 고려사항 : Barbara Kwiatkowska

지리적 고려사항 : Prosper Weil

섬과 암석, 환초 및 간출지에 관한 고려사항 : Derek Bowet

기준선관련 고려사항 : Louis Sohn

지질학적 지형학적 고려사항 : Keith Highet

경계획정 방법에 관한 고려사항 : Leonard Legault, Blair Hankey

기술적 고려사항 : Peter Beazley

주제별 보고서에서 Oxman은 해양경계선을 획정할 때 정치적, 전략적, 역사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므로 상황증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해양경계획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소에는 단순히 경계선을 확정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부터, 미래의 분쟁가능성을 차단하고, 양국간 관계를 증진시키며, 개발을 억제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Colson은 해양경계획정과 법제도적 고려사항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는 새로운 해양수역의 등장으로 새로이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경우, 기존의 해양수역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경계선을 새로운 해양수역의 경계선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긋고자 할 때 기존의 대륙붕 경계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Kwiatkowska는 해양경계획정과 경제적 환경적 고려사항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녀는 전통적 어업과 같은 어업에 관한 이익, 해저광물자원의 존재와 같은 경제적 이익, 통항에 관한 이익은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의 동기인 동시에 해양경계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Weil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지리가 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법을 따라야 하는 국제적인 재판기관이나 중재재판소의 입장과 당사국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고려할 수 있는 국가간 협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고려사항 중에서 지리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히 연안지리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양국간 합의에서 지리가 고려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규범적인 규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Bowett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섬과 암석, 환초 및 간출지의 역할을 다루었다. 그는 이러한 지형들이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니, 이들 지형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과 이들이 해양경계선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를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는 섬과 같은 지형들이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은 본토에서의 거리, 해안선의 길이, 정치적 지위, 인구,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암석과

환초 및 간출지 등도 기준선의 기점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Sohn은 해양경계획정과 기준선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는 경계선에 대한 국가간 합의를 분석해 보면 경계선을 긋는데 어떤 기점이나 기준선을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계선으로 연결될 지점만을 명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또한 등거리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의 실제 기준선이나 기점과는 다른 기준선이나 기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Highet는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정점에 달한 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와 리비아-몰타 사건을 계기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지구물리학적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Legault와 Hankey는 해양경계획정시 등거리선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안국간에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등거리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국간의 경계선획정에서도 등거리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한 표준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이란 등거리선에서 시작되며,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거나, 위요지(enclave)를 설정하며, 해안에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획정하여 경계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Beazley는 해양경계선을 획정할 때에 부딪히는 기술적 문제들, 특히 지리적, 측지학적, 수로학적, 지도학적 사실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는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나서는 사람들과 국제적인 사법기관들이 경계선을 그을 때 일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 점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서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가간 합의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합의들을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규범과 경향을 찾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섬의 영유권 문제와 독도주변 해양관할권 문제로 나누어 볼 때, 본서는 독도의 해양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서는 한일어업협정과 새로이 체결될 해양경계 협정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며, 섬과 암석의 국제법상 지위를 알아보고, 해저지형이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경계획정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용》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3

도서번호 : 독도 341.13 C483i

저 자 : Jonathan I. Charney, Lewis M. Alexander(eds)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475면

이 책은 1993년 처음 출간된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제1권과 제2권의 속편이다. 따라서 미국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의 이 연구사업을 총괄한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 법과대학의 국제법 교수 Jonathan Charney와 미국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Lewis Alexander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그간 고인이 된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1993년도 당시의 필진은 물론 책의 체제도 제1,2권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책을 준비하고 출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제1권과 제2권의 인세에 의해 충당되었다고 한다.

제1권과 제2권이 출간된 때로부터 5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제3권을 출간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우선 제1권과 2권이 출간된 것은 1993년이지만, 원고는 대부분 그 몇 년 전에 완성된 것이고, 그 연구계획은 그때로부터 또 몇 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제1권과 2권은 출간될 때부터 이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 유고연방의 해체로 인한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는 세계의 국가간 해양경계선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효력발생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 역시 세계해양질서를 바꾸어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진전에 따라 해양경계선에 관한 최근의 정보와 변화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제3권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제3권에는 국가간에 이루어진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합의와 간단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1993년에 출간된 제1권에서 처럼 지역전문가들이 분석하여 보고한 자료와 주제별 전문가들의 글은 찾아

볼 수는 없다. 제3권에 수록된 협정들은 모두 34개 이다. 여기에는 북미지역 관련 협정 1개, 중남미와 카리브해 관련 협정 7개, 아프리카 관련 협정 3개, 중부태평양과 동아시아 관련 협정 6개,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관련 협정 2개, 페르샤만 관련 협정 2개, 지중해와 흑해 관련 협정 5개, 북유럽과 서유럽 관련 협정 6개, 발틱해 관련 협정 2개가 실려 있다.

이 책은 최근에 체결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가간 합의에 관한 자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최근의 경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독도주변 해양관할권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영토나 섬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서는 아니므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석용》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도서번호 : 독도 341.4 E35i
저 자 : Gudmundur Eiriksson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387면

1982년 채택된 해양법협약이 효력발생에 들어간 이후 협약에 따라 출범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Gudmundur Eiriksson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구조에서부터 관할권, 절차, 판결과 효력 등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이 책은 제1장에서 유엔해양법협약과 재판소 구성단계에서 재판소가 채택한 3가지 문서들을 소개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근거와 규범구조를 전반적으로 설명하

였다. 그 3가지 문서란 1997년 채택된 「재판소규칙」(Rules of Tribunal)과 1997년 10월 28일 채택된 「Guidelines concerning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Cases before the Tribunal」이라는 지침, 1997년 10월 31일 채택된 「Resolution on the Internal Judicial Practice of the Tribunal」이라는 결의이다.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협약에 평화적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들을 두었다. 해양법협약에서 분쟁해결제도는 협약 제15부에 들어있으며, 보다 상세한 규정은 제5부속서부터 제8부속서 사이에 들어 있다. 그중에서 제6부속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소규정」(Statute of the Tribunal)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능을 규율하는 많은 규칙들이 협약 자체 특히 재판소규정에 포함되었으나, 그곳에 모든 필요한 규칙을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재판소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소는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특히 절차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에 따라 재판소는 1997년 10월 28일 국제사법재판소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재판소규칙을 채택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재판소규칙 제50조에 따라 1997년 10월 28일 재판소에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는데 참고가 될 지침인 「Guidelines concerning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Cases before the Tribunal」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에는 서면변론 형식에 관한 지침 등 형식적인 성격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제40조는 재판소 내부에서의 절차는 재판소가 채택하는 결의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경험이 있는 앤더슨(Anderson) 재판관이 준비한 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 10월 31일 재판소내부 사법절차에 관한 결의인 「Resolution on the Internal Judicial Practice of the Tribunal」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는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의 제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데,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 관련 규범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본 재판소 위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설

명한 후, 협약당사국회의, 국제심해저기구,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3장은 재판소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재판관, 임시재판관, 재판소장, 특별재판소, 언어, 특권과 면제, 재정문제에 대한 설명들을 담고 있다. 제4장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재판소의 쟁송사건에 대한 관할권과 권고의견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제5장은 준거법에 관한 것으로, 국제법, 공해어류협정에 따른 준거법, 공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른 결정 등을 검토하였다.

제6장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서면절차와 구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제7장은 특별재판부에서의 심리절차에 관한 것이며, 제8장은 심해저분쟁 특별재판부에서의 쟁송사건 절차에 관한 것이다. 제9장은 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 제도와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제10장은 부수적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잠정조치와 선결적 항변, 제3자 개입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권고의견에 관한 절차를 다루었다.

제12장은 판결과 권고의견, 명령 기타 재판소 결정에 관한 것이며, 제13장에는 재판소 결정의 중국성과 강제성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다. 제14장은 재판소 판결과 기타 결정의 수정 및 해석에 관한 부분이며, 제15장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다. 제17장에서는 사이가호사건(The M/V Saiga case)에서부터 Camouco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판결한 사건을 설명하였다.

이 책은 그 구성에서부터 관할권과 재판절차, 판결의 효력에 이르기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는 출범이래 한동안은 주로 어업문제와 선박의 신속한 석방 문제만이 부탁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MOX Plant 사건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간척사건에서 보듯이 해양환경보호에 관련된 사건이 부탁되어 해결된바 있다. 더구나 머지않아 해양경제계획에 관한 사건도 부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재판관할권의 행사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해양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절차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해 두는 것은 독도에 관련된 해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석용》

Island Disputes and the Law of the Sea : An
Examination of Sovereignty and Delimitation Disputes
Maritime Briefing Vol. 2 No. 4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Robert W. Smith, Bradford L. Thomas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27면

이 보고서는 Robert W. Smith 박사와 Bradford L. Thomas씨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Smith 박사는 당시 미국 국무성 Office of Ocean Affairs에 근무하던 지리학자이며, Thomas씨는 이 보고서의 출간 당시까지 미국 국무성 Office of the Geographer and Global Issues의 지도제작 담당자이었다.

이 보고서는 제1장에서 과거 미국 국무성에 근무하였던 하지슨(Robert D. Hodgson) 박사의 말을 화두로 인용하면서 해양법상 섬의 중요성과 섬을 둘러싼 국제분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세계의 주요 도서분쟁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국제적인 도서분쟁으로는 중국과 일본간의 센카쿠/조어도 분쟁,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독도문제, 일본과 러시아간의 소위 북방도서 분쟁, 남중국해 6개국간의 남사군도(Spratlys) 분쟁,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Pulau Pisang 과 Pulau Batu Puteh 분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시파단과 리기탄 섬 분쟁,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Harnish 등 홍해 도서분쟁, 그리스와 터키간의 무인도 Imia(Kardak) 분쟁,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페르샤 만의 Abu Musa와 Tonbs 섬 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분쟁이 소개되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간의 Machias Seal 섬 분쟁도 소개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1783년 파리조약 등 과거의 조약에 대하여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으며, 1814년 겐트(Ghent)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미국과 영국간의 중재에 대해서도 각자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도서영유권 분쟁과 해양법협약 간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특

히 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 따라 자체의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게 된 ‘암석’(rock)의 의미를 둘러싼 갈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서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일 먼저 시도되는 것은 양자교섭이나,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등 제3자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제5장부터 제8장에서는 섬이 관련된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고찰하였다. 6장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으며, 7장에서는 실제 경계선을 획정할 때 섬에 부여되는 ‘완전한 효과’(full effect)와 ‘부분효과’(partial effect)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8장에서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섬들에게 부여될 효과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법상 섬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분쟁, 즉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하고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이 두 가지 문제를 한편의 소책자에 실으려다 보니,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 깊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도서관련 국제분쟁의 유형과 사례들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석용>>

The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n Relation to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aritime Briefing Vol. 2 No. 5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Masahiro Miyoshi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54면

이 보고서는 1978년 이래 일본 아이찌 대학교 국제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요시

(Masahiro Miyoshi) 교수가 쓴 해저광물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글이다. 미요시 교수는 1989년 영국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동서문화센터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막스프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생활을 한 바 있다.

국경선 근처의 부존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간 합의의 역사는 보다 오래되었지만, 해양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이다. 해저자원 공동개발의 필요성은 석유자원이나 천연가스과 같이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 자원의 개발을 둘러싸고 더욱 부각되는데, 공동개발제도는 자원의 단일화(unitization)와 단일 조광권자 선정 및 개발이익의 적정한 분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 미요시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1974년 체결된 한일대륙붕협정을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자원의 공동개발 방식에 가장 부합하는 최초의 협정으로 보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제1장에서 해양자원 공동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공동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공동개발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례들은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의 공동개발과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곳에서의 공동개발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해양경계선이 합의되지 아니한 곳에서의 공동개발 사례로는 1965년 7월 7일의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협정, 1971년 이란-Sharja 간 양해각서, 1974년 1월 30일 한일대륙붕협정, 1979년 2월 21일 말레이시아-태국 양해각서, 1989년 12월 11일 호주-인도네시아 조약, 1992년 6월 5일 말레이시아-베트남 양해각서, 1993년 11월 12일 콜롬비아-자마йка 조약, 1995년 9월 27일 아르헨티나-영국 공동선언을 예로 들었다. 그중에서 이란-Sharja 간 협정은 양국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인 Abu Musa 섬 주변 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것이었고, 말레이시아-태국 간 합의는 공동관리기구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호주-인도네시아 간 조약에서는 수역을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아르헨티나-영국 간 공동선언은 석유와 가스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특별구역을 설치하였다. 미요시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고찰하였다.

해양경계선이 확정된 곳에서의 해양자원 공동개발 사례로는 1958년 2월 22일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협정, 1974년 1월 29일 프랑스-스페인 협정, 1974년 5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수단 협정, 1981년 아이슬란드-노르웨이 협정, 1988년 리비아-튀니지 협정, 1993년 10월 14일 기니비소-세네갈 협정을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수단 협정은 수심 1,000미터 너머의 수역을 공동구역으로 설정하여 공동위원회로 하여금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아이슬란드-노르웨이 협정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였다. 기니비소와 세네갈은 중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960년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체결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협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동안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양국간 국경선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방위각 268°에서 220° 사이의 수역을 공동해양구역으로 삼았던 것이다.

미요시 교수의 이 보고서는 해양경계획정과 해양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해양자원 공동개발제도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해양경계선 획정이 곤란한 경우, 특히 당사국간 도서영유권 분쟁이 관련되어 있어 해양경계선 획정이 곤란한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서영유권 분쟁의 해결가능성이 낮거나 해양자원의 보존 및 개발 필요가 절실한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가 진행될 경우 참고할 만한 자료라 생각된다. <이석용>

The Land Boundaries of Indochina: Cambodia, Laos and Vietnam

Boundary & Territory Briefings Vol. 2 No. 6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Ronald Bruce St John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51면

이 보고서의 저자 Ronald Bruce St John 박사는 녹스(Knox) 대학과 덴버대학을 졸업한 제3세계 국가 정치경제와 외교정책 전문가이다. 그는 이 글을 쓰기 이전까지

30여 년간 동남아시아 문제의 자문역과 연구자로 일해 왔으며, 볼리비아, 칠레, 페루 등 안데스 지역에 대해서도 꾸준히 글을 발표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과거에 프랑스령 인도지나에 속하였던 오늘날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지역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오늘날의 영토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 이전 이 지역의 역사와 국경선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프랑스가 이 지역을 식민지화 해가는 과정과 2차대전이 이 지역의 민족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4장부터 제6장 사이에서는 이 지역 국가간의 그리고 이 지역 국가와 주변국가간의 국경선 문제를 다루었다. 4장에서는 캄보디아-베트남, 라오스-베트남, 중국-베트남 국경선에 대하여, 제5장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 라오스-태국, 캄보디아-태국 간의 국경선, 제6장에서는 라오스-버마, 라오스-중국 간의 국경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9세기 동남아시아에 존재하였던 전근대적 국가들의 지배세력들은 서구 열강의 근대화된 군사력과 유럽의 패권적인 정치공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1862년 사이공조약을 시작으로 스스로 인도차이나나 불려온 이 지역에 대한 점령을 시작하였고, 1893년 라오스를 여기에 추가함으로써 인도차이나 점령을 완료하였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의 이전의 통치자들은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여 그들 간의 국경선을 유동적인 것으로 남겨두었으나, 프랑스 당국은 지도에 선을 긋고 땅에 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행정상 경계선을 획정하였던 것이다.

20세기 들어 이 지역에도 불명확한 국경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경선을 조정하는 문제가 등장하였으나, 지리와 주권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이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쉽게 해결될 수 없었다. 서구국가에 의한 장기간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이곳에도 민족주의가 크게 일어났으나, 식민시대에 그어진 경계선은 그러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분쟁을 더욱 악화시킨 면도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 간의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현재의 국경선은 식민지 시대의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그어진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석용》

Marine Policy

도서번호 : 독도(P) 387 M347
저 자 : Butterworth-Heinemann
발행기관 : Butterworth-Heinemann
발행년도 : 1977~2001년
구 성 : 연 6회 발간

이 잡지는 주요 저자들이 국제법, 정치사회학, 해양경제학 및 해양자원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해양정책분야의 연구자, 분석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학술잡지로, 2003년 12월 현재 독도자료실에는 1977년 제1호부터 2001년 11월호까지 수집되어 있다.

이 잡지가 다루는 주요 분야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해양정책, 어업 및 해운과 관련된 해양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의 각종 조약, 해양관련 분쟁해결, 해양오염 및 환경문제,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 등이다.

이 잡지의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현안이 되는 있는 국제사회의 해양문제와 관련된 서문을 게재하고, 국제적·지역적·국가적 해양정책, 어업 및 해운업과 관련된 해양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의 각종 조약, 해양관련 분쟁해결, 해양오염, 환경문제,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 논문 및 각종 보고서, 국제회의와 관련된 동향, 서평 및 국제회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잡지는 영국의 Rockall섬에 대한 태도(Vol.2, Issue 3, 1978. 7), 국가간 어업협정과 어업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의 태동(Vol.3, Issue 2, 1979. 4), 국가간 해양분쟁의 해결제도(Vol.5, Issue 3, 1981. 7),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 및 말비나스 분쟁(Vol.7, Issue 1, 1983. 1), 미국과 캐나다간의 메인만 해양경계 분쟁사건(Vol.9, Issue 2, 1985. 4), 동해의 해양자원 및 협력방안(Vol.14, Issue 6, 1990. 11),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의 어업문제(Vol.17, Issue 1, 1993. 1) 등과 같이 어업, 해운, 해양오염, 분쟁해결 등 해양이용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세계각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논문들

은 우리의 독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및 어업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는데 대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감용》

**Maritime Boundaries in the Baltic Sea : Past,
Present and Future**
Maritime Briefing Vol. 2 No. 2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Erik Franckx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25면

이 보고서의 저자는 현재 벨기에 Vrije Universiteit Brussel 국제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Erik Franckx이다. 그는 미국국제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사업에 발탁해 분야 지역전문가로 참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1994년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저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이 지역의 최근의 정치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시대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넷째는 독일통일과 러시아의 해체로 인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독립이 해양계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발틱해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제2장 배경에서는 소련의 해체로 인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의 독립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 기존의 해양경계선에서는 1945년부터 1990년대 까지를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이루어진 해양경계선에 대한 합의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 최근의 정치적상황과 그 영향에서는 소련의 개

방정책과 독일의 통일, 발트3국의 독립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이다. 《이석용》

The Maritime Boundaries of the Adriatic Sea Maritime Briefing Vol. 1 No. 8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Gerald Blake, Dusko Topalovic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67면

이 보고서는 영국 더럼대학교(University of Durham)의 Gerald Blake가 1993년 9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을 때, 그곳의 한 연구소에서 Dusko Topalovic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더럼대학교의 IBRU와 크로아티아의 이 연구소 간에는 여러 차례 교환방문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는 1995년 Topalovic가 Visiting Fellow로 더럼을 방문하였을 때 작성되었다고 한다.

아드리아 해의 길이는 783km, 평균너비는 170km이며, 총면적은 138,595km²에 달한다. 섬을 포함한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7,912km이며, 평균수심은 252미터이다. 아드리아 해는 해안선은 복잡하지만, 이태리와 유고는 이미 해양경계획정에 관해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유고의 분열은 아드리아해 연안국들의 숫자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아드리아 해를 둘러싼 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합의들을 살펴보고 아드리아해 연안국들의 해양관련 주장들을 검토하였다.

해안의 굴곡이 심하고 주변에 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복잡한 해안선을 감안할 때 이 지역 국가들이 직선기선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과거 유고

의 직선기선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유고와 이태리는 대륙붕에 관한 협정과 트리 에스테 만 영해에 관한 협정에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를 거치면서 아드리아 해에는 4개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였으 니, 해양경계선에도 일대 혼란이 우려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이태리와 유고 간에 합의된 해양경계선이 대체로 존중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해양경계선 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좁은 Klek-Neum 만과 Klek 반도를 거쳐 바다로 나가야 하 는 지리적불리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출해통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로 남아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 Gerald Blake와 Dusko Topalovic는 결론부분에서 아드리아 해 국가간에는 앞으로 보다 원활한 해양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국가간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석용》

Parting the Red Sea : Boundaries, Offshore Resources and Transit

Maritime Briefing Vol. 3 No. 2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Daniel J. Dzurek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37면

이 보고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홍 해지역의 해양경계선, 자원, 통항에 관한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 는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의 Research Associate 및 미국 국무성 지리국 과장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석유회사와 법률회사에서 국제경계선 관련 자문역을 맡고 있는

Daniel Dzurek과 영국 더럼대학교 IBRU 소장인 Clive Schofield이다.

이 보고서는 홍해의 지리, 도서 등 영토의 영유권문제, 홍해에 대한 각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아카바만과 홍해에서의 해양경계선, 해양자원, 환경문제, 안보 및 통항문제를 여러 장의 지도를 곁들여 차례로 다루고 있다.

홍해지역에서 국가간에 영토분쟁이 있었던 곳은 모두 4곳이다. 그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간의 도서영유권 분쟁은 양국간의 1998년 협정에 의하여, 에리트리아-예멘간의 도서영유권 분쟁은 중재재판소에 부탁되어 1998년 10월 내려진 판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와 수단 간의 Halaib Triangle 지역 영유권 분쟁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간 Tiran 및 Senafir 섬 영유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홍해지역의 해양관할권 문제는 1993년 에리트리아의 에티오피아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예멘의 통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기준선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부티가 Babal-Mandeb 해협을 연결하여 그은 직선기선과 이집트의 일부 직선기선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양경계선 문제는 아카바만과 홍해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아카바만은 폭이 좁아 영해의 해양경계획정 만이 문제가 되므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없으나, 아직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1996년 해양경계선협정이 유일한 합의로 남아 있다.

홍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은 연안의 도서들과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도서영유권 문제, 직선기선문제로 인하여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은 1974년 수심 1,000미터 이원 수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은 2000년 6월 12일 서명된 협정을 통하여 양국간 육지와 해양경계선 문제를 해결하였다. 에리트리아-예멘간의 해양경계선은 1999년 중재재판소 판정을 통하여 해결되었는데, 당해수역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본토연안 중간선'(mainland-coastal median line)을 사용하였으며, 중앙수역에서는 엄격한 중간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수단, 에리트리아-수단, 에리트리아-사우디아라비아, 지부티-예멘 간에는 아직 해양경계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분계선에 위치한 홍해는 일부 영토와 도서의 영유권 문제,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국가간 갈등이 심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세계 간의 갈등이 영토 및 해양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남아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및 해양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에리트리아-예멘간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소 판정,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간 도서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간 공동개발협정의 내용이 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석용》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도서번호 : 독도 333.72 P355

저 자 : Gerald H. Blake, William J. Hildesley, Martin A. Pratt, Rebecca J. Ridley
Clive H. Schofield

발행기관 : Graham & Trotman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513면

이 책은 1994년 4월 영국 더럼(Durham)에서 개최되었던 더럼대학교 IBRU 주최 국제학술회의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국가들은 식량자원과 원자재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BRU는 초국경적자원의 평화적 관리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에는 모두 33편의 국제적인 자원관리에 관한 논문들이 수록되게 되었다.

이 책의 제1부는 석유자원과 광물자원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초국경적 석유자원에 관한 법적문제, 천연자원과 국경분쟁, 해저석유와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논문 등 모두 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수자원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동수자원과 국제법,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이론적 논문과 슬로바키아-헝가리 간 다뉴브 문제와 중동지역 국가간 수자원 분쟁 및 갠지스강, 메콩강 관리에 관한 사례 연구 등 모두 12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제3부는 환경과 보존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해 해양환경 관할권에 관한 연구 논문 이외에 메인만 행동계획과 아프리카 국경선과 국립공원에 관한 사례연구 등 모두 6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제4부는 수산업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수산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유엔의 역할, 공동어업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쟁점에 관한 연구 논문 이외에, 메인만, 오호츠크해, 서태평양, 남태평양 어류자원 관리에 관한 논문 등 모두 8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석용》

Peaceful Resolution of Major International Disputes

도서번호 : 독도 341.3 D131p

저 자 : Julie Dahlitz(ed)

발행기관 : United Nations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310면

이 책은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와 네덜란드의 윌헬미나 여왕에 의하여 소집되었던 1899년의 제1차 국제평화회의(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백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되었다. 다양한 국제분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판된 이 책은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계의 우수한 학자와 실무가들이 기고한 총 16편의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제1부의 제목은 「유엔관련 주제들」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4개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제2부에는 「국경분쟁에서 얻은 교훈」 이란 제목아래 6개의 글이 실려 있다. 「무기통제합으로부터의 교훈」 이란 제목의 제3부에는 5개의 논문이, 「상사분쟁해결로부터의 교훈」 이란 제목의 제4부에는 1개의 글이 실려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책의 제2부에는 영토문제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다. J. G. Merrills는 「International Boundary in Theory and Practice」 라는 논문에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과 국경분쟁(boundary dispute)을 구분하였으며, 국경분쟁이 발생하는 4가지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경분쟁의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중개와 주선의 도움을 받는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중요시 하였으며, 최근의 사례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중재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검토하였다. 중국 외무성의 Su Wei는 논문 「Confidence Building and Efficient Methods for Border Dispute Resolution」에서 국경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에 있어서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하였다.

Vladimir S. Kotliar는 「The Elements of a Model Negotiation for the Settlement of Major Border Disputes between States」라는 논문을, 그리고 영국 Durham 대학교 IBRU 소장인 Gerald Blake는 「Is the Time Ripe for a Voluntary Register of Boundary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측지전문가인 Dennis Rushworth는 「Geographic Support to Courts and States Involved in Boundary Dispute Settlement」에서 국경분쟁 해결에 있어서 지리전문가의 조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제적 연구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석용>>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Reports

도서번호 : 독도 341.37 P451h

저 자 :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발행기관 :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발행년도 : 1931~1937년

구 성 : 해당사건별로 발간

이 책은 1922년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그 동안 동 재판소가 행한 판결, 권고적 의견 및 명령을 각 해당사건에 대한 연도별로 구분하여 영어 및 불어본으로 수록한 보고서이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규약 제1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최초의 상설적인 국제적 사법재판소로, 처음에는 네덜란드의 발의에 의하여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국제연맹의 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1939년 말부터 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자 1940년에는 제네바로 그 본부를 옮기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인격을 국제사법재판소가 승계하였다.

이 재판소는 1923년 워블턴호사건(프랑스 및 영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1940년 소피아 및 불가리아의 전력회사사건까지 1922년부터 1940년까지 모두 29건의 판결과 27건의 권고적 의견을 내림으로써, 국제법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권고적 의견에서 우리의 독도문제와 관련되는 사건으로는 1925년 상부실레지아지역에서의 일부 독일인의 이익에 관한 사건, 1926년 및 1928년 호르쥬공장 사건, 1927년 로터스호 사건이 있었다. 특히 1932년 상부사보이 및 켈스자유지역 사건 등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주된 쟁점이고, 1932년 및 1933년 동부그린랜드 영토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건은 영토권 분쟁에 있어서의 조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 주된 쟁점으로, 독도문제에 있어서 예상되는 주요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갑용》

Positioning and Mapping International Land Boundaries

Boundary & Territory Briefings Vol. 2 No. 1

도서번호 : 독도(P) 341.7 B765

저 자 : Ron Adler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60면

이 보고서의 저자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와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Center for Mapping에서 사무총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았던 Ron Adler이다.

국가간의 국경선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국경선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정치가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외교관과 법률가는 물론 정치, 법률, 역사, 경제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저자는 국경선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가들과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대표들은 잠재적인 경계획정지역에 관해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실제 국경선 설정에 참여할 지리학, 측지학, 제도법, 컴퓨터과학에 익숙한 경계획정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일은 아직까지는 드문 현상이었으며, 협상 참여자들이 ‘기술적 문제’(technical issues)라고 하여 간과해 버린 문제들이 나중에 심각한 정치적 마찰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다고 하였다. 하나는 오늘날 경계획정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경계획정 과정에 접목 시킴으로서, 실제로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정치가들과 경계획정 관련 공학도들을 연결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저자 Ron Adler는 국경선 획정과 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식들이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국가간의 국경선 획정시 공학지식의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는 국경선획정을 위한 협상 팀에 기술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경선에 관한 협정이나 합의는 지도보다는 최근에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의존해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경계선은 측지학적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모든 위치조사는 GPS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국경선 관리를 위해서는 컴퓨터화 된 경계선 정보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 국경선 교섭자와 경계선 공학도 간의 간격을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Ron Adler는 이 보고서에서 국경선 설정에 관한 최근의 기술적 성과들을 설명하고, 그러한 집적된 기술을 실제 경계선 획정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좁게는 국가간 경계선획정에, 그리고 넓게는 국경선의 안정을 통한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는 섬의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헌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경계선 획정시 전문가들의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경계획정 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어,

독도주변 해양경계선 획정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석용》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 341 B885p5

저 자 : Ian Brownlie

발행기관 : Clarendon Press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743면

1966년 초판을 출판한 이래 1998년까지 5판을 발행한 이 책의 저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브라운리(Ian Brownlie)이다. 오늘날 국제법 권위자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브라운리 교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제5판을 출간하면서 환경보호에 관한 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장을 새롭게 정리하였다고 하였다.

이 책은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법에 관한 일반적인 서적이며, 법대학생들의 국제법 교재로 인기있는 책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제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라운리 교수는 이 책에서 영토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이 책은 국제법에 관한 일반서적답게 국제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부는 국제법의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국제법의 법원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제2부 인격과 승인에서는 국제법의 주체, 국가승인, 정부승인 문제를 다루었다. 제3부는 영토주권에 관한 것인데, 영토주권의 의미, 영토주권의 창설과 이양, 영토의 지위 문제를 설명하였으며, 제4부 해양법에서는 영해, 접속수역, 경제수역,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공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다. 제5부는 공동영역과 자원사용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 극지와 국제하천 그리고 환경보호 문제를 주로 검토하였다.

제6부는 국가관할권에 관한 것으로 주권과 국가평등, 관할권, 외국의 특권면제, 외교관계와 영사관계 등이 주요 주제이었다. 제7부에서는 국적과 기업, 선박과 항공기

의 국적문제를 다루었으며, 제8부 책임법에서는 국가책임과 국가청구의 수리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설명하였다. 제9부는 개인과 집단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과 외국인 재산의 보호, 개인의 인권보호 그리고 자결권 문제를 설명하였다. 제10부는 조약법에 관한 것이고, 제11부에서는 국가승계를 주로 다루었다. 제12부는 국제기구와 재판소에 관한 것으로 국제기구와 평화적분쟁해결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브라운리 교수는 제3부의 제7장 영토주권의 창설과 이양에서 국제법상 영토문제를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는 시제법의 문제와 결정적 시점의 이론을 비교적 상세히 검토하였다. 갖가지 영토취득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과 관련하여 실효적 점유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특히 영토취득 과정에서 묵인과 승인, 금반언의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권원의 역사적 응고(historical consolidation) 이론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브라운리 교수가 저술한 이 책은 국제법상 영토문제에 관한 전문서적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국제법상 영토문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학설이나 해결책을 만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적용할 특이한 이론이나 사례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제법상 영토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용한 책이라 판단된다. <<이석용>>

The Sino-Vietnamese Approach to Managing Boundary Disputes

Maritime Briefing Vol. 3 No. 5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Ramses Amer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2002년

구 성 : 80면

이 보고서의 저자는 스웨덴 읍살라대학교(Uppsala University) 평화와 분쟁연구학

과 조교수이며 동남아시아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Ramses Amer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육지경계선과 해양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간의 국경선은 라오스와 tripoint부터 대략 1,300km 정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해양경계선은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톡깡만과 남중국해로 이어져 있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국경선과 해양경계선 모두에 관련된 해묵은 분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남사군도)와 파라셀군도(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톡깡만에 대한 해양관할권 주장의 중복으로 오랫동안 분쟁상태에 있었다. 더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수역’(historical waters)이라 주장하는 바다는 베트남이 주장하는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주장과 중복되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과 베트남이 육지와 바다에 대한 그들 간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다음의 두 가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하나는 국경분쟁이 양국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국이 그들 간의 국경분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영해주장과 해양관할권 주장의 범위 및 관할권 주장의 중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1975년부터 1991년까지의 양국간 영토분쟁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양국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 국경분쟁이 양국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간 국경분쟁에 관한 외교교섭의 과정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중국과 베트남 간의 국경분쟁은 1991년 11월 양국간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긴장은 1997년 까지 유지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점차 완화되었다. 특히 양국은 1999년 12월 30일 「국경조약」(Land Border Treaty), 그리고 2000년 12월 25일에는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협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파라셀군도(서사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남사군도)에 대한 양국간 영유권 분쟁 해결에는 거의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 Ramses Amer는 중국과 베트남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육지 및 해양에서의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하였다. 점차 확대되어가는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이따금씩 발생하는 영토와 해양문제로 지체되었던 것을 교훈삼아, 양국은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이석용>>

Small Islands and Big Politics : The Tonbs and Abu Musa in the Gulf

도서번호 : 독도 341.13 A517s
 저 자 : Hooshang Amirahmadi(ed)
 발행기관 : Macmillan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200면

이 책의 편저자는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교 도시계획과 정책개발 학부장인 동시에 중동학 연구프로그램 책임자인 Hooshang Amirahmadi 이다. Amirahmadi 교수이외에 이란 테헤란의 Imam Sadegh 대학교 법학교수인 Davoud Bavand, 국제 변호사로서 미국 터프츠(Tufts) 대학교 Fletcher School의 겸임조교수인 Guive Mirfendereski, 영국 런던대학교 객원연구원 Pirouz Mojtahed-Xadeh 박사가 이 책을 위해 기고하였다.

이 책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위치한 섬인 Great Tonb, Little Tonb, Abu Musa의 영유권을 둘러싼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분쟁에 관한 것이다. 이들 섬의 영유권 문제는 이들이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 중에 Abu Musa는 4평방마일 넓이에 주로 이란인들인 700에서 1,000명 사이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란 연안의 Great Tonb와 Little Tonb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섬이다.

이 책은 주로 이란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정치적 상황, 역사적 과정, 그리고 섬을 둘러싼 논쟁의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장별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제1장은 이 책의 편저자 Hooshang Amirahmadi 교수가 직접 쓴 것으로 과거 식민지시대 이란과 영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정치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 페르시아 만에서의 영국의 대이란 정책에 비추어 영토문제의 법적·외

교적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정책도 과거 영국의 외교정책과 동일한 기초위에 있다고 보았다.

제2장은 Tonb와 Abu Musa 섬의 영유권 관련 역사에 관한 것으로, Pirouz Mojtahed-Xadeh 박사가 쓴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이들 섬에 대한 영유권 관련 역사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몇 가지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들 섬의 지리와 경제활동, 페르시아 만에서의 이란의 세력범위, 영국이 이란의 섬들을 점령하였던 전략적·정치적 이유, 1971년 협상에 의해 분쟁해결에 합의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Davoud Bavand 교수는 이란이 주장하는 Abu Musa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란이 이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1903년부터 1904년 까지 영국과 Sharja가 이 섬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1904년부터 1971년까지 관련 국가들이 Abu Musa 섬에 대해 취한 조치들을 간략하게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양국간 양해각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 Guive Mirfendereski는 Tonb 섬의 영유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Great Tonb와 Little Tonb 영유권과 관련하여 이란과 Sharja의 법적인 주장을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와 내용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추어 이들 섬은 이란의 소유라고 결론지었다.

이 책은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Abu Musa와 Tonb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기술하였으나, 주로 이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편저자가 서문에서 밝힌데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 출신의 아랍 학자들에게도 기고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독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강요한 질서가 현재의 영토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석용》

Some Problems Relating to the Definition of Insular
Formations in International Law : Islands and
Low-Tide Elevations
Maritime Briefing Vol. 1 No. 5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Clive Symmons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32면

이 보고서의 저자 Clive Symmons 박사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국제법과 해양법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집필당시에는 더블린 트리니티대학의 Research Associate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Maritime Zones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라는 책을 저술하는 등 국제법상 도서문제와 해양법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섬과 같은 지형에 관련된 국제법상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저술된 것으로, 목차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제법상 섬의 정의와 섬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섬의 요건 중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 남태평양의 Tokelau와 아이슬란드 근해의 Kolbeinsey,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를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들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Dinkum Sands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섬과 간출지(low-tide elevation)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간출지와 섬의 정의를 비교해 가면서 국제법상 간출지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암석(rock)과 환초(reef)의 국제법상 지위를 검토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등장한 암석은 학자들 사이에 그 정의에 관해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으며, 특히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장이 개진되어 왔다. 제5장에서는 섬에 미치지 못하는 해저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합의하여 섬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였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프랑스와 호주는 경

계획정을 하면서 Middleton 환초에, 피지와 프랑스는 Cera-i-Ra 라는 환초에 대해 섬의 지위를 부여하였었다. 반면에 영불대륙붕사건에서 Eddystone rocks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 사실상 섬으로 대우를 받았다.

제6장에서는 국제법상 섬이 되려면 '수면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 조위데이타(tidal datum)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제법에서는 어떤 지형이 섬이 되려면 항상 수면위에 있어야 한다는 오랜 관행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1930년 국제법성문화회의와 제1,2차 해양법회의를 거치면서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경계계획에 관한 조약이나 합의에서는 섬이 되기 위한 조위조건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저자는 1990년과 1991년 벨기에와 프랑스 간 해양경계계획에 관한 합의를 그 예로 들었다.

제7장은 섬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조위를 선택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8장에서는 섬의 항구성 문제를 설명하였으며, 제9장은 이 글의 결론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조위데이타 선택에 관한 제언들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이 보고서는 국제법상 섬의 정의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법학적인 것과 함께 해양학적인 것을 함께 다루고 있다. 우리의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섬의 정의에 관한 부분과 암석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섬과 암석이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라 생각된다. <<이석용>>

Sovereignty over the Paracel and Spratly Islands

도서번호 : 독도 341.2 C517s
저 자 : Monique Chemillier-Gendreau
발행기관 : Kluwer Law International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265면

이 책은 남중국해의 파라셀군도(서사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남사군도)를 둘러싼 중

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 파리 7대학 국제법교수인 Monique Chemillier-Gendreau 인데, 이들 군도를 둘러싼 분쟁사실을 분석하고 관련 국제법이론을 적용하여 분쟁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배경이란 제목아래 이들 군도의 지리적 상황과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군도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의 제목은 시원적 권원의 취득이라 되어 있는데, 19세기 후반까지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규범과 18세기 이전 이들 군도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들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권원의 후속적 발전이라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19세기 후반 이후 제국주의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전개된 이 지역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이들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4장의 제목은 결론과 분쟁해결의 기초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베트남과 중국이 주장하는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분쟁해결 전망과 방법도 고찰하였다.

제1장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의 배경에서는 먼저 이들 군도의 지리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서 분쟁에 관련된 갖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법적인 쟁점 중에서는 제일 먼저 베트남과 중국의 주장에 비추어 이들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분쟁해결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규범으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시제법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시제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토취득의 권원으로 인정되던 발견에서부터, 1885년 베를린회의를 기점으로 확립된 실효적 지배의 원칙,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주권행사, 자결권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영토취득에 관련된 국제법원칙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에 관한 연대기가 실려 있다. 식민시대 이전과 프랑스 식민지시대부터 2차대전 종료 시점까지, 그리고 2차대전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여 이들 군도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제목이 시원적 권원의 취득이라 되어 있는 제2장에서는 먼저 19세기 후반까지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15세기에는 발견, 그리고 17세기에는 주권의 공적인 확인은 나중에 점유를 완료할 불완전한 권원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요소로서 베트남과 중국의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지식과 주권행사 사실들을 검토하였으며, 심리적인 요소로서 영유의사의 의미를 갖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의하였다. 이어서 역사와 고문서 등 갖가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들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권원의 후속적 발전이라 되어있는데, 19세기 후반 이후 최근까지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이들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일먼저 검토된 것은 1887년 6월 26일의 프랑스와 중국 간 협정이다. 중국에서는 이 협정을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문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이 협정은 톤킹과 중국 간의 육상경계선 확정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저자는 베를린회의가 있었던 1884년 이후 수립된 영토에 대한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 규칙은 이전의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이제 국가는 가능한 문제가 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하였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통치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Monique Chemillier-Gendreau는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주장을 소개하고 평가하였으며, 국가승계와 무력사용 문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결정적 시점과 분쟁의 구체화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1887년 조약체결 당시를 결정적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가 완료된 1937년 또는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가 종식된 1954년을 결정적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소개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제4장은 결론과 분쟁해결의 기초라고 되어 있다. 저자는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쟁해결 전망과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파라셀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은 물론이고 2차대전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군도는 베트남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중국(대만)은 카이로 선언과 대일강화조약을 통해 파라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중국이 일부 섬을 무력점령하고 있는 사실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스프래틀리군도의 경우에는 과거 중국의 주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섬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했었다. 영국 등 열강들도 당시 프랑스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했었다는 것이 프랑스의 영유권 주장

을 승계한 베트남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은 물론 중국과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자는 이 군도에 대해서도 베트남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군도 전체에 적용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분쟁해결 방법과 전망에 대한 고찰이다. 이 책의 저자 Monique Chemillier-Gendreau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우선 교섭과 지역기구를 통한 해결을 검토하였으며, 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 전망도 제시하였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와 관련하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이외에, 콘도미니엄(condominium) 방식과 각자 통제아래 두고 있는 섬을 중심으로 군도를 분할하는 방식도 검토하였다.

파라셀군도(서사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조망한 이 책은 독도영유권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20세기 들어 구체화된 도서영유권에 관한 분쟁이고, 역사적 권원과 국가주권 행사에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이 당사국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분쟁이 도서 자체의 영유권은 물론 주변 해양수역 관할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가 깊이 있게 다룬 결정적 시점 및 분쟁의 구체화 문제,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고찰은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석용》

The Spratly Islands Dispute : Who's on First?

Maritime Briefing Vol. 2 No. 1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Daniel J. Dzurek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67면

이 보고서의 저자는 과거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와 미국 국무성 지리국에 근무하였

으며, 보고서 저술 당시에는 석유회사와 법률회사에서 국경선 관련 자문역을 맡고 있던 Daniel Dzurek이다.

이 보고서의 대상인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는 남중국해 남쪽에 위치한 일단의 소도, 환초, 산호초, 모래톱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곳에는 영어지명을 가진 지형이 170개 정도 있지만 대부분 물속에 위치하며, 단지 36개의 조그만 섬들만이 수면위에 솟아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크다는 이투아바(Itu Aba)도 길이 1.4km에 너비 400미터인 소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해서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이 그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이처럼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군도의 복잡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자원의 부존가능성 이외에 섬의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미비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발한 해상활동, 특히 명나라 시대의 활동을 감안할 때, 중국의 항해자들이 이 군도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사람들에 속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섬에 대한 중국의 권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베트남은 자국이 17세기 이후 이 군도에 대해 실효적점유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랑스와 중국간의 1884년 협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지만, 역시 증거로 충분하지는 않다.

20세기 들어 일본과 프랑스는 남중국해에서의 과학조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프랑스는 1930년 4월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1928년 파라셀군도가 중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토라는 정부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중국외교부는 1933년 9월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같은 해 12월 이 군도는 프랑스령 인도지나의 Ba Ria 지방에 편입되었으나, 1939년 3월말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원을 수세기 이전에 있었던 발견에서 찾지만, 실제로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것은 제2차대전 이후 일본과 프랑스 군대가 이곳에서 철수한 이후이다. 이와 관련하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이 중요하다. 이 회담에서 필리핀은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은 일본의 스프래틀리군도 포기로 인하여 이 군도는 무주지가 되었다고 보아, 1950년대 중반 Morton F. Meads와 1956

년 필리핀인 Thomas Cloma의 이들 섬에 대한 권리주장을 수용하였다.

프랑스의 후원아래 회담에 참가한 베트남 대표는 파라셀과 스프래틀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베트남은 주장한다. 중국 대표권 문제로 회담에 참가하지 못했던 대만은 별도로 일본과 평화조약을 교섭하여 1952년 4월 28일 서명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대만과 핑호도는 물론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군도가 명기되어 있어, 이 조약은 대만의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주은래 외상은 대일평화조약에 대해 평가하면서 스프래틀리군도는 언제나 중국의 영토이었다고 하였다.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이사회(ECAFE)의 황해와 동중국해 탐사보고서 발표와 대륙붕 및 경제수역 제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스프래틀리군도 영유권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중국은 1958년 직선기선과 영해를 선포하였으며, 대만은 이투아바 섬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고, 통일이후 베트남은 스프래틀리군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면서 군도의 일부 섬들을 점령하여 중국과 분쟁을 빚었다. 필리핀은 지리적 근접성과 실효적점유, 무주지 이론에 입각하여 Kalayaan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말레이시아는 Swallow Reef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한편 1988년 3월 Fiery Cross Reef에 군사기지 공사를 시작한 중국과 이를 제지하려는 베트남 군대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온 국가들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분쟁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는바, 이는 Fiery Cross Reef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이 안보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된 결과 이루어진 정책변화라는 해석이 있다. 스프래틀리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들은 외국 탐사회사들로 하여금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수역을 탐사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각시키는 한편,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95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동쪽 끝에 있는 Mischief Reef를 점령하였다. 필리핀은 무력대응은 삼간 채 문제를 아세안 등을 통해 국제화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199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직선기선을 그었다. 그러나 스프래틀리군도 주변에는 직선기선을 긋지 않았으며, 파라셀군도 주변의 기준선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 Dzurek은 갖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의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평가하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유권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로 대만을 들었다. 대만은 이 군도에서 가장 커다란 섬인 Itu Aba를 점령하고 있으며, 일본과 체결한 평화조약도 대만의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1988년 들어서야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그 영유권 주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지만, 금반언의 원칙상 베트남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은 군도에 대한 각종 역사적 기록들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의 계승자로서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 외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영유권 주장은 군도의 일부에 국한되며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스프래틀리 군도에 관한 이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부분은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서 역사적 증거들의 한계, 대일평화조약과 같은 관련 조약의 중요성,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서 실효적지배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석용>>

State Practice Regarding State Succession and Issues of Recognition : The Pilot Project of the Council of Europe

도서번호 : 독도 341.2 S797

저 자 : Jan Klabbers, Martti Koskenniemi, Oliver Ribbelink,
Andreas Zimmermann(eds)

발행기관 : Kluwer Law International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521면

국가승계와 승인은 국제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으나, 일

부 관련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승계와 승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 책의 발간을 목표로 추진된 「The Pilot Project of the Council of Europe on State Practice Regarding State Succession and Issues of Recognition」 사업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국제공법임시법률자문관위원회」(CAHDI)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에는 유럽평의회 16개 회원국의 국가승계와 승인에 관한 실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1989년 이후 새로운 유럽구도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들어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국제공법임시법률자문관위원회」(CAHDI)의 후원아래, 독일의 「막스프랑크비교공법국제법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네덜란드의 「앗세르연구소」(T. M. C. Asser Institute), 핀란드의 「에리카스트렌국제법인권연구소」(Erik Castre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연구소들의 이러한 국제적인 공동작업으로 인하여 국가승계와 승인에 대하여 유럽 각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 연구사업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하였다.

이 책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기본적인 정보와 일시, 사건 및 일반적인 서론을 담고 있다. 제2장에는 국가승계와 국가승인 그리고 정부승인에 관한 각국의 관행이 수록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제4장에서는 그 외의 국가승계 문제 즉 국가재산, 국가문서, 국가채무의 국가승계 문제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분석되어진 정보를 요약하였다.

이 책은 국가승계에 관한 것으로 독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승계와 관련해서는 영토문제도 제기되므로, 분단국가로서 통일 후 우리의 영토문제를 고찰하는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석용》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도서번호 : 독도 341 S531t
저 자 : Surya P. Sharma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353면

이 책의 저자 Surya Sharma는 서문에서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의 국제법 교수이었던 맥두갈(Myres S. McDougal) 교수의 정책중심 접근방법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맥두갈 교수로부터 받은 그러한 영향은 이 책에도 많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1990년 자신이 미국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 이 책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두 가지 정책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영토취득의 전통적 기준들을 고찰하고,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그 적합성과 약점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영토취득에 관한 오늘날의 이론과 분쟁사례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법은 영토에 대한 배타적 권원을 수립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규범을 수립해 왔으며, 그러한 규범들은 영토취득과 영토이전을 규율해 왔다. 이 책은 상기한 정책적 관점에서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 확립에 관한 국제법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전통적 영토주권 취득방식, 제3장은 전통적 방식에 대한 재검토, 제4장은 오늘날 영토취득절차의 구조이고, 마지막 제5장은 전반적인 평가이다.

제1장 서론은 영토와 영토주권, 국제법 간의 관계 특히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웨스트팔리아 체제라 부르는 국가주권 중심의 전통적 국제법질서와 자결권과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법질서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저자는 영토에 기초한 전통국제법이 아직 우위에 있는 것은 현실이나 두 가지 입장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국경선분쟁과 영토분쟁의 구분 문제를 논하

였으나, 이 두 가지 분쟁의 엄격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법적분쟁과 정치적 분쟁의 구분에 관한 논의도 있으나 역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고 하였다.

제2장은 전통적 영토주권 취득방식에 관한 것이다. 영토에 관한 이론은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와 사람들의 영토에 대한 태도와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이론과 영토취득 방식이 현재의 국제영토분쟁 분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발견, 상징적 활동, 근접성, 선점, 시효, *Utī Possidetis* 원칙, 형평, 할양, 첩부, 정복 등과 같은 영토주권의 권원과 취득방식을 검토하였다.

영토에 대한 권원으로의 발견의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소개되었다. 팔마스섬 사건에서의 후버의 판정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으나, 발견이란 기껏해야 불완전한 권원일 뿐이라는 견해가 다수의 학설이고 국제적인 사법기관의 입장이라고 하였다. 상징적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소개되었으나, 클리퍼튼섬(Clipperton Island)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에서 보듯이 조그만 섬이나 격리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상징적 행위만으로는 배타적 영토취득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영토에 대한 권원으로의 근접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제판례와 학설이 소개되었다. 특히 동부그린란드 사건과 관련하여 왈독(Waldock)은 지리적 근접성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반하여, 라우터팍트(Lauterpacht)는 근접성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학설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근접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토취득 원인으로의 선점은 국제영토분쟁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자세히 다루어졌다. 선점에 관한 논의는 실효적 점유에 집중되었다. 실효적점유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점유를 강조하는 견해와 정부기능의 행사를 중요시하는 견해가 소개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검토되었다. 이어서 팔마스섬 사건, 동부그린란드사건, 클리퍼튼섬 사건, 망끼에-에끄레오 사건, 쿠치(Rann of Kutch) 사건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실효적 점유를 위해서는 점유가 평화적이어야 하며, 실제적이어야 하고, 충분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검토되었다. 평화적이어야 하는 것은 취득이 시원적이고 강탈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충분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영토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자 저자의 생각이다.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과 관련해서도 그 의미와 요건을 설명하였으며, 국제법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Uti Possidetis 원칙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설명하면서 원칙의 국제법상 지위를 검토하였다.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영토주권이 이양되는 할양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와 당사국간의 합의, 매매, 교환에 의한 할양 사례를 검토하였고, 할양이 선점에 대신하여 열강의 식민지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설명하였다.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의 합법성은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 원칙이 도입된 시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려는 견해가 있는바, 저자는 정복의 타당성 문제와 비승인원칙에 대한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고 국가실행을 검토하였다.

제3장 전통적방식에 대한 재검토에는 제2장에서 다룬 전통적 영토취득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접근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전통적인 영토취득 방식은 과거 식민시대의 산물이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요구에 맞춰 고안된 장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권력구조가 바뀌고 전통적인 국제법 규정과 정책도 바뀌었으므로 전통적 영토취득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곳 제3장에서 이러한 전통적 영토취득 방식의 결점들을 설명하였다. 그러한 결점이란 전통적 영토취득 방식은 수많은 신생국과 자결권 원칙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마련된 것이며, 선점과 시효제도 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선점과 역사적 권원간의 관계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 마지막 절에서는 대안으로 드비셔(Charles de Visscher) 교수가 제안한 역사적 응고(historic consolidation) 이론, 뭉크만(Munkman)의 Multiple Consideration Theory, 쇼(Shaw) 교수의 영토적실효성이론(Territorial Effectiveness Theory)을 검토하였다.

제4장 오늘날 영토취득절차의 구조에서는 현재의 영토취득절차를 다루었다. 오늘날 영토취득 절차의 특징적인 모습과 영토취득의 권원을 살펴본 후 국제적인 사법기관에서 적용하는 기준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자결권의 원칙과 영토문제 간의 관계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자결권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자결권 행사가 영토이전의 주요 사유로 등장하면서 자결권이 영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결권의 형태와 합법성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 장의 마지막 절에는 오늘날의 주요 영토분쟁들이 소개되어 있

다. 영토분쟁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계기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영토취득 방식과 권원을 기준으로 영토분쟁을 구분하여 분쟁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 책은 독도나 어떤 섬의 영유권에 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간된 영토문제에 관한 전문서적으로서, 영토문제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근의 학설과 판례들을 풍부하게 동원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실효적 점유에 관한 부분과 섬이나 격리된 지역과 같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분석은 참고할 만하며, 역사적응고 이론 등 새로운 학설에 대한 분석도 주목할 만 하다. <이석용>

Third Party Dispute Settlement in an Interdependent World

도서번호 : 독도 341.3 B912t
 저 자 : Marcel M. T. A. Brus
 발행기관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262면

이 책에서 저자 Marcel M. T. A. Brus는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국제관계에 비추어 전통적인 국제법의 변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저자는 세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데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환기 가운데에서 국제법이 직면하게 될 구조적 변화를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세계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에 크게 변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소련이란 두개의 초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세계의 경제제도 역시 두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소련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의 소멸이란 현상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산물일 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변

화는 그간 국제시스템에 축적되어 온 긴장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인데, 현재의 그러한 도전을 헤쳐 나가려면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가 처음 이 책을 쓰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 그 목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규정들을 분석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가는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해양법협약에 포함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즉 양자간 합의에 의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익숙해온 국가들이 어떻게 해양법협약에 제3자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분쟁해결제도를 해양법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으로 인하여 이 책의 목표는 크게 수정되고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유엔해양법협약이 이러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해양법협약이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 채택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해양경계선이나 군사적 문제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된 것도 그 배경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해양법협약이 이렇게 혁명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 것을 이러한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가들이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등장에 강력한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국가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는 의식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이 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의 등장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 상호의존이 존재하면 그 결과 국제법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그러한 상호의존이 존재하는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그러한 상호의존은 해양법이외에 경제협력, 군사관계, 환경보호 등의 영역에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책은 제1장 「전환기의 국제분쟁해결」에서 해양법협약은 물론 남극해양광물자원협약, GATT 등의 분쟁해결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2장 「상호의존적 세계사회」에서는 상호의존과 국제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체계적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4장 「합법성」에서는 사회제도와 국제법에서의 합법성 문제를 검토하였고, 제5장 「국제법공동체」에서는 인류의 공통법과 객관적 국제법 문제를 설명하였다. 제6장 「원칙과 절차」에서는 국제법의 성립과 감독 및 분쟁해결 문제를 다루었고, 제7장 「합법성과 참여의 다양성」에서는 초

국가성과 NGO 및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결론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제3자적 분쟁해결」에서는 방법론적 개념적 틀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법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제3자적 분쟁해결제도의 미래를 예측해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제법상 분쟁해결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는 전환기에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방향을 상호의존의 강화라는 방향에서 찾았고, 그러한 상호의존으로 인하여 분쟁해결에 제3자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보다 넓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던 것이다. <이석용>

Undelimited Maritime Boundaries of the Asian Rim in the Pacific Ocean

Maritime Briefing Vol. 3 No. 1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Victor Prescott, Clive Schofield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2001년
 구 성 : 68면

영국 더럼대학교 IBRU에서 2001년 발간한 Maritime Briefing Vol.3 No.1은 호주 멜버른대학교 지리학과 석좌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뒤 명예교수로 있는 Victor Prescott와 IBRU의 Deputy Director인 Clive Schofield가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Undelimited Maritime Boundaries of the Asian Rim in the Pacific Ocean』이라는 보고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고서에서 그들은 태평양 연안 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양경계선 분쟁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쟁들을 소개하고, 그들 나름의 기준을 사용하여 가상경계선을 그어 보았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 타이만, 캄보디아-태국, 캄보디아-베트남, 중국-일본, 중국-북한, 중국-베트남,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일본-러시아, 한국-일본, 한국-북한, 남사군도에 관한 것이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서는 1958년 영국이 그어놓은 해저경계선의 지위, 캄보디아

-태국에서는 경계획정시 도서의 효과와 해저석유 및 가스자원의 부존가능성, 캄보디아-베트남에서는 1939년 프랑스 총독 Jules Brevi 가 획정한 Brevi 라인의 지위를 특별히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일본에서는 센카쿠섬(디아오유다오)의 현황과 이들이 해양경계선에 미칠 영향, 중국-북한에서는 압록강구 양국간 해양경계선의 정확한 출발점, 중국-베트남에서는 서사군도(Paracel 군도)의 영유권 문제가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 일본-러시아에서는 남쿠릴열도(북방도서) 영유권 문제가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 한국-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이 양국간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영향, 한국-북한에서는 서해5도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상세히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지면에 20여개 사례를 소개하려다 보니 분석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피상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경계획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정되는 선이고 대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중간선과 등거리선을 모든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등거리선과 중간선을 지나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여 직선기선의 적용을 배제한 채 국가간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결과를 제시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임이 너무도 명백한 서해5도를 남북한 간에 영유권 다툼이 있는 지역으로 보고 가상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이 보고서가 가지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석용》

The Verdict of the League : China and Japan in Manchuria

도서번호 : 독도 341. 12 H886v
저 자 : Manley O. Hudson
발행기관 : World Peace Foundation
발행년도 : 1933년
구 성 : 102면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 교수로 있었던 허드슨(Manley O.

Hudson)이 저술한 것이다. 이 책에는 1931년대 초 만주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맹의 노력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다.

이 책은 허드슨 교수의 서문과 국제연맹의 공식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허드슨 교수는 서문에서 국제연맹이 중국과 일본간의 만주문제를 다루면서 취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양국간의 관계를 만주사변 이전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연맹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1932년 창설된 만주국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연맹이 취한 비승인주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중국과 일본간의 화해를 위한 국제연맹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맹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국제연맹의 공식기록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실려 있다. 1933년 2월 24일 국제연맹 총회가 채택한 「연맹규약 15조 4항 보고서」(Report Provided for in Article 15, Paragraph 4 of the Covenant)는 양국간 분쟁의 경과와 분쟁의 특징, 권고에 관한 성명을 담고 있다. 그 외에 1933년 2월 24일 「특별총회결의」(Resolution of the Special Assembly)와 「국제연맹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장관 간의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도 실려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영토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책에는 제국주의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가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국제연맹의 공식문서 또는 그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만주국의 독립에 이은 일본의 승인과 관련하여 국제연맹이 중국과 만주간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도 우리에게서는 관심대상이다. <<이석용>>

The Verdict of the League : Columbia and Peru at Leticia

도서번호 : 독도 341.12 H886v
 저 자 : Manley O. Hudson
 발행기관 : World Peace Foundation
 발행년도 : 1933년
 구 성 : 88면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의 국제법 교수이었던 허드슨(Manley O. Hudson)이 저술한 것이다. 허드슨은 이 책에서 1930년대 초 Leticia 지방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였던 콜롬비아와 페루간의 분쟁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맹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1920년 이래 국제연맹에는 다양한 국제적인 분쟁들이 부탁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 이사회나 총회가 해결에 실패한 분쟁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었다. 저자 허드슨은 만주에 관한 중국과 일본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1933년 2월 24일 총회가 채택한 보고서가 국제분쟁에 대한 국제연맹의 첫 번째 평결이며, Leticia 영유권을 둘러싼 콜롬비아와 페루 간 분쟁과 관련하여 연맹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가 두 번째 평결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허드슨이 이 책의 서문 형식으로 저술한 것으로, 이 사건의 배경과 역사, 국제연맹의 분쟁해결 노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둘째 부분은 국제연맹 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와 결의 등 이 사건에 관련된 국제연맹의 공식기록들이다. 이 책에 게재된 공식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1933년 국제연맹 이사회가 채택한 「연맹규약 15조 4항 보고서」(Report Provided for in Article 15, Paragraph 4 of the Covenant)에는 분쟁사실과 이 사회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1933년 3월 18일 「이사회결의」(Resolution of the Council), 「미국과 브라질의 협력」(Cooper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Brazil)에 관한 문서,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용된 각종 국제협정의 관련 규정들이 실려 있다.

오래전부터 남미대륙에서는 국가간의 국경선 문제가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었다. 콜롬비아와 페루간의 Leticia 분쟁도 일반적인 정서나 공통된 전통의 결여로 “미주대륙의 공허한 심장”이라 불려온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접경 아마존 계곡의 분할을 둘러싼 주변국가간 분쟁의 하나이었다.

1922년 콜롬비아와 페루는 리마에서 조약에 서명하여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페루정부가 전복되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Leticia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932년 8월 31일 일단의 무장한 페루 사람들이 Leticia를 점령하여 페루기를 게양하고 콜롬비아 사람들을 축출하면서, 양국간 분쟁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저자 허드슨 교수는 분쟁사실과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Leticia를 둘러싼 콜롬비아와 페루 간의 분쟁은 만주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의 분쟁과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된다고 하였다. Leticia 분쟁에서 국제연맹 이사회가 취한 조치는 만주분쟁에서 이사회와 총회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Leticia 분쟁에 관한 이사회 보고서는 만주분쟁에 관한 특별총회 보고서를 따랐고, 보고서 채택에 이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유사하다. 그러나 Leticia 사건의 당사국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였다는 점에서 만주분쟁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석용>

When is an 'Island' Not an 'Island' in International Law? The Riddle of Dinkum Sands in the Case of US v. Alaska Maritime Briefing Vol. 2 No. 6

도서번호 : 독도(P) 341.13 M341
저 자 : Clive Symmons
발행기관 : IBRU, University of Durham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32면

영국 더럼대학교 IBRU가 1999년 발간한 Maritime Briefing 제2권 6호는 Clive Symmons가 저술한 『When is an 'Island' Not an 'Island' in International Law? The Riddle of Dinkum sands in the Case of US v. Alaska』이다.

저자 Clive Symmons는 이 보고서에서 'Dinkum Sands'라는 Beaufort해의 조그만 지형의 법적지위에 관한 미국연방정부와 알래스카 간 분쟁에 비추어 국제법상 섬의 정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Dinkum Sands 문제는 국가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Symmons는 이 사건에 비추어 국제법상 섬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 즉 섬이 되기 위

한 조건으로 ‘만조시 수면위 존재’(above water at high tide)라는 조건과 ‘조수기준’(tidal datum)과 ‘땅’(land)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저자는 ‘Dinkum Sands’를 둘러싼 미국 연방정부와 알래스카 간의 견해차를 소개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앞으로 섬의 정의에 관한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국제법상 섬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만조시 수면위 존재’(above water at high tide)라는 조건과 관련하여 어떤 조수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도 영유권이나 독도의 해양수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법상 섬의 중요성에 비추어 섬을 정의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석용>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도서번호 : 독도(UN) A.CN.4/SERA

저 자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발행기관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발행년도 : 1849년-1989년

구 성 : 연 2회 발간

이 책은 1947년 유엔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그 법전화작업을 위하여 설립한 유엔의 국제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법전화작업에 관한 보고서로, 2003년 12월 현재 독도자료실에는 1949년 제1회기부터 1993년 제45회기까지의 보고서가 수집되어 있다.

국제법의 법전화작업은 일찍이 18세기부터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전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는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처음으로 법전화작업을 시도한 것은 1924년 11월22일 국제연맹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법의 점진적인 법전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것이었

다. 동 전문가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문명 및 법계를 대표하는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법전화작업을 위한 준비를 거쳐 1930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47개국이 참여하여 헤이그 법전편찬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국적, 영해 및 국가책임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졌으나, 국적에 관한 약간의 문제만 다루고 영해나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전화작업을 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국제법의 법전화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 의하여 비로소 본격화되었는데, 유엔총회는 1947년 1월 31일 결의 94(I)를 채택하여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제법위원회는 5년 임기의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자체 또는 유엔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정한 국제법상의 주제에 관하여 법전화작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책은 1949년 국제법위원회의 제1회기부터 2001년 제53회기까지 수행해온 국제법분야의 법전화작업에 의한 작업결과 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49년 국가의 권리의무
- 1950년 뉴른베르그원칙의 공식화
- 1996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범죄초안
-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규정
- 1961년 무국적감소협약
- 1958년 중재재판절차규칙모델
- 1978년 최혜국대우조항초안
- 1989년 외교전서사에 의해 운반되지 않는 외교행랑 및 외교전서사의 법적 지위
- 1991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
- 1997년 국제적 수자원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 1958년 공해협약
- 1958년 공해어족자원의 보존협약
- 1958년 대륙붕협약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61년 국적취득에 관한 선택의정서
- 1961년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63년 국적취득에 관한 선택의정서
- 1963년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
- 1969년 국적취득에 관한 선택의정서
- 1969년 조약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인물의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83년 국가재산, 공문서 및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99년 국가승계와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에 관한 협약 초안
- 2001년 국제적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협약 초안
- 2001년 유해한 행위에 의한 월경피해의 방지협약 초안

이 책은 유엔총회 산하의 국제법위원회가 국제법상의 주요문제에 대하여 법전화작업을 한 결과보고서이므로, 독도문제 및 기타 국제법상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영유권문제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상의 쟁점, 주요법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견해, 일반국제법상의 협약이나 조약의 동향에 관하여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갑용>

IV. 자연과학자료

1. 한국자료 / 39
2. 동양자료 / 40
3. 서양자료 / 41

여 백

1. 한국자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도서번호 : 독도 951.99 ㅎ158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7년
 구 성 : 557면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에서 1996년 4월 펴낸 『동해의 울릉군 독도 연구자료집 (Research Notes on Dokdo of Ullung County in the Orient Sea)』의 후속편으로 10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울진의 죽변항에서 132km 거리에 울릉도가 있고, 일본 지조자끼에서 67km에 오끼섬이 있다. 오끼섬은 일본 연안의 섬인데, 울릉도는 한국 동해 연안의 섬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한국의 유인도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90km 거리이고, 일본의 유인도인 오끼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160km에 이른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무인도에 해당하는 독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육지는 오로지 울릉도뿐이다.

그러므로 제1장에서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밝히면서, 참고로 1402년 권근이 편집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나타난 울진포 동쪽의 울릉도, 1481년 완성되고 1531년 목판인쇄된 동람도의 일부인 팔도총도에 나타난 우산도와 울릉도, 1721년 중국에서 목판인쇄된 조선도 속의 千山島(천산도)와 甌陵島(울릉도), 1747년 영국에서 발행된 조선지도 속의 Chyan-shan-tau와 Fang-ling-tau, 1855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조선지도 속의 Oulangto와 Ousan, 1890년 8월 National Geographic 제2권 4호에 소개된 조선지도 속의 울릉도와 자산(子山), 1775년 제작되고 1779년 일본에서 발행된 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 속의 竹島와 松島, 1798년 발행된 북서태평양해도중 울릉도가 I. Dagelet로 표시된 부분, Krusenstern이 1807년

작성하고 1813년 출판한 한반도 동해안의 초기 탐사 항적, 1827년 Krusenstern이 발행한 태평양해도집 속의 일본도에 울릉도가 I. Dagelet로 나타나고 그 북서쪽에 I. Argonaut가 나타나는 부분, 1840년 출판된 Siebold의 일본도 속의 Matsusima(I. Dagelet), Takasima(I. Argonaute)가 나오는 부분, 1854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조선동해안해도 속의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섬들, 1864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해도, 1867년 일본에서 목판인쇄된 大日本國沿海略圖에 나타난 섬들, 1876년 일본해군수로료에서 발행한 朝鮮東海岸圖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울릉도 북서쪽에 있는 Argonaut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제7장 울릉도와 삼봉도는 한수당연구자료집 제184권을 소개한 것으로, 조선 성종 때에 탐문했던 삼봉도가 과연 어느 섬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삼봉도의 탐문과 수토에 관해서 성종실록에 21회나 기록되어 있지만, 여지승람의 강원도 울진현의 산천(山川) 조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를 설명하면서 삼봉(三峰)을 울릉도의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삼봉도의 수토에 관심을 보인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어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므로, 삼봉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성종 시대의 삼봉도 탐색은 알려지지 않은 섬의 탐색이기는 하지만, 유인도의 기본개념이 뚜렷하기에 울릉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여 부른 것이라고 하면서, 성종실록의 원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10장 일본수로지에서는 독도를 한반도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역시 한수당연구자료집 제191권을 소개한 것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면서 1911-1930년간에는 조선연안수로지를 일본수로지속에 포함시켜서 발행했다. 1916년 발행된 일본수로지 제4권은 제1편 本洲北西岸과 제2편 本洲北岸을 다루고 있는데, 독도는 竹島라는 이름으로 제1편 本洲北西岸 隱岐列島 離島로 나오며, 총 10행(行)의 간단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나 1917년 발행된 일본수로지 제10권에서는 독도를 죽(竹)도(島)라는 이름으로 총 28행(行)에 걸쳐 島上의 평지, 담수, 위치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인들은 이 섬을 獨島라 쓰고, 일본어부들은 리양꼬島라 한다는 기사와 함께, 隱岐에서 대략 86해리, 울릉도에서 약 50해리 되는 곳에 있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물개 사냥하러 울릉도에서 건너오는 수 십명의 사람들이 임시거처를 짓고, 약 10일간 머무른다는 사실을 적었다.

제11장과 12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독도에 관한 문헌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영인(影印)했다. 한국측 문헌으로는 1954년 1월 발행된 용광로(부산공업고등학교 교지) 제4호에 실린 박병주의 「독도의 측량」 전문(全文)과 그가 작성한 1:2,000 독도지형도 사진이 소개된 한국산악회 회보인 산 제27호(1977년 4월 발행) 일부를 소개하고, 1954년 12월 제출된 황상기의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獨島問題研究』의 목차, 1956년 6월 발행된 해무 제1권 2호에 실린 민한식의 「동해안풍설해복구상황 부독도시찰기」 전문, 1992년 1월 중판 발행된 金明基의 「獨島와 國際法」 머리말과 목차 그리고 1904-1954년간 독도에 관한 자료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12장의 일본측 독도문헌으로는 1966년 8월 발행된 川上健三(가와까미켄조)의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목차와 개설, 1970년 12월 재판으로 발행된 中村榮孝의 『日鮮關係史の研究』 下卷에 수록된 「竹島と鬱陵島」 전문과, 1987년 3월 발행된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호에 발표된 堀和生の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전문을 실었다. <한상복>

독도측량 지도제작 사업보고

도서번호 : 독도 915.1 7277ㄷ

저 자 : 건설부 국립지리원

발행기관 : 건설부 국립지리원

발행년도 : 1981년

구 성 : 75면

이 보고서는 1980년 5월 국립지리원에서 독도의 대축척 지형도 1:1,000 및 1:5,000을 제작하기위한 측량성과와 분석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서론, 독도, 사업의 개요, 기준점측량, 지도제작 결론 등으로 되어있고, 측지기준점측량(천문측량)자료가 부록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당시 사업의 책임자는 측지부장 최재화박사였다.

1980년 지형도 제작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한상복》

동해안 항로지

도서번호 : 독도 387.524 ㅎ174e

저 자 : 국립해양조사원

발행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208면

한반도 동해안의 항해 안전을 위한 항로지로, 제1편 총기, 제2편 연안 항로기, 제3편 항만기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반도의 동해안 수로지가 독립된 책자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이며, 이것이 1952년 발행된 것의 제2판에 해당한다. 2000년 12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동해안항로지(East Coast of Korea Pilot)』는 제11판이 되고, 여기에 실린 중요한 동해안의 해역 명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곳은 대표적인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는데, 이 좌표는 Tokyo Datum 좌표계에 의한 것이다.

동해안(東海岸): 두만강 하구에서 부산항 입구 송두말까지의 한반도 동쪽 해안.

조산만(造山灣): 북위 42도 17분, 동경 130도 32분. 오포단과 취진단 사이 바다.

대진만(大津灣): 북위 42도 19분, 동경 130도 30분. 조산만내 적도와 대단 사이 바다.

웅기만(雄基灣): 북위 42도 18분, 동경 130도 26분. 조산만내 대단과 비파도 사이 바다.

창진만(倉津灣): 조산만내 비파도와 곽단 사이 바다.

가이대만(駕以岱灣): 조산만내 곽단과 취진단 사이 바다.

나진만(羅津灣): 북위 42도 09분, 동경 130도 14분. 성정단과 방진만 사이 바다.

- 낙산만(洛山灣): 노세단과 화단 사이 바다.
 이진만(梨津灣): 화단과 가진단 사이 바다.
 기동만(基洞灣): 갈단과 명산단 사이 바다.
 경성만(鏡城灣): 북위 41도 35분, 동경 129도 50분. 고말산단과 어랑단 사이 바다.
 임명해(臨溟海): 유진단과 사진단 사이 바다.
 동한만(東韓灣): 마양도와 수원단 사이 바다.
 함흥만(咸興灣): 외양도단과 영어단 사이 바다.
 영흥만(永興灣): 북위 39도 21분, 동경 127도 30분. 호도반도 남단과 이라리각 사이 바다.
 송전만(松田灣): 북위 39도 09분, 동경 127도 30분. 호도반도 남서각과 주항말 사이 바다.
 영일만(迎日灣): 달만갑과 장기곶 사이 바다.

이 항로지에 수록한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이 간행하는 각종 해도(海圖), 수로서지 및 항행통보와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 등에서 얻은 자료는 물론, 해양, 항만, 해운, 수산, 기상 등의 관계기관과 국내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연안의 자료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오래된 자료도 상당수 있어서, 실제 이용시에는 주의를 요한다고 머리말에 당부하고 있기도 하다. 독도에 관한 기술은 82-83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독도(獨島): 독도는 화산 폭발로 인하여 생긴 섬으로 동도(東島: 일명 암섬, 높이 98m)와 서도(西島: 일명 숫섬, 높이 168m) 등 2개의 큰 섬과 그 주변해역에 산재한 약 34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경도 2-24, 2-25 참조). 위치는 대략 북위 37도 14.9분, 동경 131도 52.5분으로 울릉도 도동에서 남동쪽 약 92km, 죽변항에서 동쪽 약 217km의 거리에 있으며, 일본의 오키섬(隱岐島)에서 북서쪽 약 158km에 있는 동해의 고도이다. 독도의 면적은 서도가 91,740㎡, 동도는 64,698㎡ 정도이며 34개 도서를 모두 합치면 약 186,000㎡ (약 56,400평)에 이른다.

독도는 약 2,000m 깊이의 해저에서 분출한 화산섬으로 동도의 깊은 웅덩이를 분화구라고 여겨왔으나 실제의 분화구는 그 북동쪽에 있으며, 현재의 독도는 거대한 화

산체의 남서쪽 측면부로 추정된다. 동도에는 독도등대(등고 128m)가 설치되어 있다. 동도와 서도는 약 150-200m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섬 주위는 파식애(波蝕崖)와 동굴 또는 바위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지는 전혀 없다. 해안의 수심은 급격히 깊어지고 서도의 일부는 파도에 깎인 크고 작은 괴석이 깔려있는 좁은 해변 외에는 모두가 절벽과 단애, 동굴 및 바위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모래나 자갈은 찾아볼 수 없다.

독도에서는 지하수나 지표수를 얻기 어려우나 서도 서편의 해변 동굴에서 바위틈으로 약간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다. 독도를 형성하는 화산암은 대체로 현무암, 조면암, 안산암, 부석(浮石)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멀리서 보면 흑갈색, 적갈색, 회백색 등으로 보이며, 대한해협으로부터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또는 러시아의 Vladivostok 및 Nakhodka로 향하는 항로 중앙에 위치하여 좋은 목표가 된다.

동해의 고도인 독도는 그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가치는 물론 국방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지리적인 영향 등으로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1997년 11월, 동도에 500t급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길이 80m, 폭 12m(하단 21m)의 물양장이 완성되고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어 우리 국민과 더욱 가깝게 되었으며, 사랑받는 섬으로 가꾸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 3월에는 법정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서도: 1반산 1-26, 동도: 2반산 27-37)로 부여함으로써 독립적인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다.

기상: 독도의 기후는 울릉도와 흡사한 해양성기후의 특색을 보인다. 섬의 규모가 작아 섬 주변을 흐르는 해류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되어 대체로 안개가 많고 바다 가운데 외롭게 솟아있는 섬이어서 바다의 상황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도하며 일반적으로 파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태풍 계절에 동해 방면으로 진행되는 태풍은 빠짐없이 독도를 강타한다. 기온은 울릉도와 비슷하여 연교차와 일교차가 크지 않으며, 연중 비가 많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린다.

이 내용은 1993년의 제8판의 것과 비슷하면서 약간 새로운 사실들 즉 500톤 급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물양장과 새로운 행정구역 주소 등이 첨가되었다. 《한상복》

동해의 울릉군 독도 연구자료집

도서번호 : 독도 951.99 ㅎ158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328면

이 책은 독도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으로, 제1장 「동해와 울릉군 독도」에서는 동해, 울릉군 독도, 독도 소속에 관한 연대기를 다루었다. 동해의 항목에서는 그 생성 기원, 크기, 해수의 특징, 지리적 특징,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고유명칭의 정착과정,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역 구분 등을 정리했다. 울릉군 독도 항목에서는 지리학적 요소, 도면(圖面)으로 본 울릉군 독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울릉도와 독도, 일본에서의 竹島와 松島, 1900년 石島로 나타나는 독도, 독도라는 명칭이 최초로 나타나는 한국 문헌,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A 및 A'선 해양관측점, 1990년 5월의 독도 해양자료 특별전시회 내용, 1991년 11월의 울릉도 및 독도 탐사 자료전 내용과 독도 학술발표 초록, 1996년 2월 독도 토론회 발표 초록 등을 정리했다. 독도 소속에 관한 연대기는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항복하여 신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에서부터, 1981년 10월까지 67건의 자료를 정리했다.

제2장 「중요한 수로지」에 기술된 독도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지에서 발행된 수로지 속에 기술된 독도를 소개하고, 중요 수로지에 기술된 독도의 개요를 정리하고 있으며, 1987년 11월 12일 한수당연구자료집 제40권으로 정리된 바 있다. 제3장 「지구과학에서 인식된 독도의 역사」에서는 옛지도 또는 해도(海圖)에 나타난 한반도 동쪽의 두개 섬,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최근의 지도, 독도 지형도 제작의 역사, 독도근해의 해저지형도, 독도의 위치가 해도상에 정확히 표정되는 과정, 독도의 정밀지형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1940년 이후의 독도 자연환경 조사활동 등을 정리했는데, 이들은 1987년 11월 16일 한수당연구자료집 제41권으로 나온바 있다. 제4장 「한국의 동해에 있는 독도」에서는 중요수로지의 서문에 나타난 한국근해의 조사활동(1861-1911),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 속의 독도, 한국문헌에 나타나는 독

도의 이름, 독도근해의 해류도, 한국의 동해에 있는 독도 등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1988년 3월 1일 발행된 한수당연구자료집 제61권으로 나온 바 있다. 제5장 「Understanding Dokdo Controversy(독도 논쟁의 이해)」에서는 영문으로 나온 1996년 2월 22일 발행 한수당연구자료집 제165권을 실었다. 제6장 「독도의 해양자료」에서는 1919-1921년간 울릉도-독도 해양관측자료, 1945-1954년간 독도 출어상황 및 어획고, 1969년 4월부터 9월간 측정된 일일수온관측자료, 독도 남서쪽 30해리 관측점(104선 11점) 평균해양자료(1961-1990)들을 정리했다.

한반도 근해의 수로지는 1861년 영국해군성 수로부의 J. W. King이 편집한 『CHINA PILOT』 제3판이 발행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으며, 일본해군 수로부에서는 1876년(明治9년) 1월 『朝鮮水路誌』를 긴급히 발행했지만 내용은 충실하지 못했다. 1883년(明治16년)에는 『환영수로지』 제2권에 조선부분이 포함되었다. 환영수로지란 큰 바다 즉 세계적인 수로지란 의미인데,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해역을 다루어, 제1권 日本(上 1885, 下 1886), 제2권 朝鮮及黑龍江沿岸州(1883), 제3권 支那東岸(1881)으로 하였다. 1886년 12월에 환영수로지 제2권의 개정판이 나왔으나, 한반도 부분이 아직 한 권의 책으로 되기에는 내용이 풍부하지 못했다. 1894년(明治27년)부터 단행본으로 된 수로지가 발행되기 시작하는데, 11월에 환영수로지 제2권 개정판에서 조선부분을 독립시키고, 내용을 보충해서 『朝鮮水路誌』라는 명칭의 단행본으로 발전했다. 1899년(明治32년) 2월에 제2판(제1개정판)이 나왔고, 1907년(明治40년) 3월 제3판(제2개정판)이 나왔다. 1911년(明治44년) 12월에는 『朝鮮水路誌』가 『日本水路誌』 제6권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17년(大正6년) 3월에 다시 『日本水路誌』 제10권으로 바뀌어 간행되었다.

1920년(大正9년)부터는 내용이 더 풍부해져서 두 권의 책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1920년 4월 『日本水路誌』 제10권 중에서 총기, 동안, 남안 등을 제10권 上으로 개칭하여 발행했고, 7월에는 서안을 제10권 下로 개칭하여 발행했다. 1930년(昭和5년) 12월에는 이들 두 책이 『朝鮮沿岸水路誌』 제1권과 제2권으로 개칭 발행되었고, 1933년 1월 제1권이 개판 되었고, 1934년 8월 제2권이 개판 되었다. 1945년(昭和20년) 6월에는 『簡易水路誌 朝鮮沿岸』 제1권이 나왔고, 1947년 7월에 제2권이 나왔다. 1952년부터는 우리 글로 된 수로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즉 1952년 1월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韓國沿岸水路誌』 제1권(總論, 東岸, 南岸)과 제2권(西岸)을 간행했고 1961년부터는 『韓國沿岸水路誌』가 3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여, 제3권(西岸)이 1961년에 나왔

고, 제2권(남안)이 1962년에, 제1권(동안)이 1964년 수로국(水路局)에서 간행되었는데 이들은 각기 제2판이 된다. 1995년까지 『韓國沿岸水路誌』라는 명칭으로 간행되던 3권의 책이, 1996년에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즉 제1권이 『동해안수로지』로 바뀌었고, 1998년에는 『동해안연안항로지』로 되었다가, 2000년부터 『동해안항로지』가 되었다. <한상복>

섬 연구회 논문집, 독도 특집호

도서번호 : 독도 915.99 s235

저 자 : 섬연구회(편)

발행기관 : 섬연구회

발행년도 : 1992년

구 성 : 157면

부산수산대학교의 섬연구회 논문집 제1권으로 독도특집호이다. 발간사에 이어 특별기고로 독도와 평화선(지철근), 한일회담의 일화(김용식) 두 편이 있고, 논문으로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그 인식과정(한상복),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세균의 분포(이원재, 강원배, 성희경, 임월애, 김무찬, 김동원), 초여름 독도 근해에서의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기초생산력(강용주, 강형구), 독도의 해조군락에 관한 예보(손철현, 박찬성, 황은경), A Catalogue of Marine Molluscs of Dogdo Island(Min Ho Song and Sung Yun Hong), Geology of Dogdo Island(Sun Yoon), 독도의 지질과 화산활동: 주성분 및 미량원소 지구화학(송용선, 박계현, 박맹언, 김희준, 류호정), 독도에서의 대기 Background 농도에 관하여(이동인), 독도의 조류상(우용태, 홍순복), 독도의 로마자 표기(장선덕) 등 10편이 있으며, 자료로는 Cairo Declaration, Yalta Agreement regarding Japan, Potsdam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일본과의 평화조약,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등이 있다. <한상복>

울릉도해역의 일일수온변화

도서번호 : 독도 551.4601 74270

저 자 : 한상복, 안유환, 강청미, 서영상, 진현국, 전경암, 하성학

발행기관 : 국립수산진흥원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97면

이 책은 울릉군 울릉읍에서 1952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측정한 수온(水溫)과 기온(氣溫)의 평균값과 그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정리해서 몇 월 몇 일에는 대략 표면온과 기온이 얼마정도 될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매일의 평균치와 그 표준편차를 보면 표준편차의 범위 안에서 온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평균치는 자료의 기간에 따라서 약간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 길면 길수록 더 정확한 평균치를 얻게 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 전체 구간인 1952-1995년의 44년간 평균자료, 1966-1995년의 최근 30년간 평균자료, 1981-1995년의 최근 15년간 평균자료, 1986-1995년의 최근 10년간 평균자료, 1991-1995년의 최근 5년간 평균자료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울릉도 부근 해역에서의 개략적인 수온의 예측에 참고가 되도록 평균수온의 계절변화도와 1952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계절변화도를 도면으로 그려놓았다. 《한상복》

韓國沿岸水路誌(한국연안수로지)

도서번호 : 독도 387.524 ㅎ174

저 자 : 해군본부 수로관실

발행기관 : 해군본부 수로관실

발행년도 : 1952년

구 성 : 2권(1권 367면, 6도면, 2권 302면)

1952년(단기 4285년) 1월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간행한 韓國沿岸水路誌는 한국전쟁 중 급히 발행하느라 鬱陵島及竹島(獨島)라고 하였으며, 제1권에 있는 독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竹島: 이 섬은 東海上의 한 小群嶼로서 鬱陵島에서 東南東方 約 50해리에 위치하며, 1련餘의 狹水道를 사이에 두고 東西로 相對하는 두 섬과 그 周圍에 碁布하는 幾多의 小嶼로서 이루고 있다. (제 92쪽 대면 대경도 제25와 제26 참조). 그 西方島는 海面上 높이 약 157m로서 棒糖形을 이루며, 東方島는 비교적 낮고 그 頂上에 平坦한 場所가 있으며, 또 주위의 諸小嶼는 대개 편평한 岩으로서 僅僅히 水面에 露出하여 그 中에서 큰 것은 수 십 평에 이른다. 두 섬은 모두 瘠瘦(척수)의 秃岩(독암)으로서 海風に 暴露되어 한 그루의 樹木도 없고, 東方島에 있어서 겨우 野草가 자라날 뿐이다. 또 島岸은 斷崖絕壁으로서 軟質의 石層으로 되어 奇觀의 洞窟이 많으며 거의 攀(반제)치 못한다. 그리고 이 洞窟과 小嶼는 海驢의 群棲所이다. 이 섬 附近은 水深이 깊고, 東方島의 南端에서 北西方 約 9련의 곳에서 106m의 水深이었다고 한다. 然而나 이 섬은 그 位置가 東海를 향해하는 선박의 航路에 가까움으로써 夜間에는 危險하다.

島上의 平地: 島上은 平地가 적고 두 섬 간의 兩側에 狹隘(협애)한 平坦의 餘地가 2-3個所 있으나 모두 海濤의 侵襲을 不免한다. 東方島는 그 頂上에 平坦한 곳이 있으나 여기에 올라가는 徑地가 없으며, 다만 섬의 南端에서 北西風을 遮蔽하는 10-13 평방미터의 小平地가 있을 뿐이다. 西方島는 그 東西에 山崖가 있는데 그 上半부는 거의 直立하여 있으나, 下半부는 경사가 약간 완만함으로서 그 반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그 부근의 堅岩을 開鑿하면 東風이외의 諸風을 遮蔽할 수 있는 平地를 獲得할 수 있을 듯 하다. 島上에는 前記와 같이 家屋을 建築할만한 地域이 극히 稀少하다. 每年 夏季가 되면 海驢獵을 爲하여 鬱陵島에서 渡來하는 者가 수 십 명이라 하며, 또 春季로부터 和布(미역)及 전복 등의 採取로 수 십 명의 漁夫가 渡來하여 島上에 小屋을 만들어 每回 約 10일간 假居한다고 한다.

淡水: 西方島의 南西隅에 한 동굴이 있는데 그 天蓋를 이룬 岩石으로부터 摘出하는 물은 그 量이 若干 많으나 雨水의 滴下에 比等함으로써 汲取에 困難하다. 其他 山頂에서 山腹에 따라서 數個所에 適瀝하는 물과 湧水가 있으나, 그 徑路는 海驢의 糞尿로 因하여 종종 汚染되어 一種의 惡臭를 가지며, 도저히 음료수로는 적당치 않다. 海

驢獵을 위하여 渡來하는 漁夫는 島中의 물을 汲取하여 煮炊(자취)함에 사용하나 飲料로선 他地方에서 渡來하는 것을 使用한다고 한다.

位置: 竹島의 東方島 南端은 1908년(檀紀 4241年)의 측정에 의하면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33초에 있다.

우리말로 출판된 최초의 수로지 속에 담겨진 내용이지만,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긴급히 작성되어야 했기에, 내용은 거의 1933년 판을 우리말로 옮기는 수준이며, 중요 항구의 단면도가 추가되었다. 1952년 1월 1일 인쇄에 1월 5일 발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일은 1950년에 완료되었다. 1952년 1월 대한민국 해군본부 수로관실에서 발행한 韓國沿岸水路誌 第1卷과, 第2卷의 목차에는 다음과 같은 한반도 속의 소규모 해역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 韓國東岸: 水營灣, 蔚山灣, 迎日灣, 花母灣, 竹邊灣, 湖山灣, 墨湖灣, 韓國海灣, 永興灣, 松田灣, 咸興灣, 退潮灣, 松嶺灣, 陽化灣, 新昌灣, 遮湖灣, 臨溟海, 黃津灣, 大良化灣, 多津灣, 梨岩灣, 鏡城灣, 淸津灣, 基洞灣, 龍渚灣, 沙津灣, 梨津灣, 洛山灣, 造山灣, 雄基灣, 大津灣.
- 韓國南岸: 加德水道, 釜島水道, 行巖灣, 鎮海灣, 長江水道, 統營海灣, 欲知水道, 蛇梁海峽, 東島灣, 固城灣, 紫蘭灣, 三千浦水道, 晉州灣, 露梁水道, 彌助灣, 彌助水道, 木島灣, 鶯江灣, 麗水海灣, 易基洞灣, 光陽灣, 麗水海峽, 駕莫洋, 金鰲水道, 汝自灣, 早發水道, 島內海, 居金水道, 金塘水道, 生日水道, 長鼓島水道, 得糧灣, 馬島水道, 橫看水道, 牛島水道.
- 韓國西岸南部: 馬路海, 長竹水道, 丁嶝海, 時牙海, 綿島水道, 咸平灣, 庇仁灣, 沙長浦, 官長項水道.
- 韓國西岸北部: 筏海, 蒼浦內, 德岩浦, 海州灣, 大東灣, 宣川灣, 宣沙水道, 宣沙灣.

1952년 발행된 한국연안수로지는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수로지(水路誌)이면서 전쟁 중에 발간된 책으로, 1933-34년 발행된 수로지와 비교하면 약간의 변화만 있다.

《한상복》

韓國沿岸水路誌(한국연안수로지), 제1권(동해안편)

도서번호 : 독도 387.524 c242g

저 자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기관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년도 : 1984년

구 성 : 184면

한반도 동해안의 항해 안전을 위한 항로지로, 제1편 총기, 제2편 연안기, 제3편 항만기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반도의 동해안 수로지가 독립된 책자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이며 이것은 1952년 발행된 것의 제2판에 해당한다. 1984년 12월 수로국에서 발행한 韓國沿岸水路誌 제1권(동해안편)은 1952년 발행된 수로지 이후 제5판이 되고, 이 곳에서 설명한 독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獨島(제23圖 對景圖 參照): 東海의 작은 섬으로서 鬱陵島의 南東쪽 約 89 km (37도 14.9분 N, 131도 52.5분 E) 地點에 位置하는 約 110-160 m 의 좁은 水道를 사이에 두고 東島 및 西島의 두 개의 섬으로 되어있다. 섬의 周圍는 數個의 露出岩과 暗岩이 있으며, 西島는 높이 157 m 로서 그 頂上은 狹窄하며, 東島는 比較的 낮은 頂上에는 燈臺(燈高 128 m)가 있다. 周圍에 있는 露出岩은 大概 편평한 바위로서 海面에 약간 露出되며 그 중에서도 수 십 평에 達하는 것도 있다.

東島와 西島는 모두 草木이 없는 바위로 이루어졌으며, 島岸은 險한 絕壁이고, 軟質의 石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奇異한 洞窟이 많다. 섬 附近은 水深이 깊으나, 東島의 南端에서 北西쪽 約 16.7 km 되는 곳에는 水深이 106 m 되는 곳도 있으며, 섬의 位置가 大韓海峽 方面으로부터 日本 北海道 또는 Vladivostok로 向하는 航路에 가까이 있어, 좋은 目標가 된다.

島上의 平地는 적으며, 두 섬 사이의 兩側에는 약간 平坦한 자갈밭이 있으나 파도의 侵入이 심하다. 東島는 그 頂上에 평평한 곳이 있어 燈臺와 警備哨所가 있으며, 下半部는 傾斜가 약간 緩慢하다. 西島의 南西쪽 모퉁이에 洞窟이 있어 이 洞窟 岩石

의 사이로 약간의 물이 나온다.

1984년 발행된 제5판의 내용은 1976년 발행된 제3판의 내용과 거의 같다. 1980년 발행된 제4판의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한상복>

한일어업관계 조사자료

도서번호 : 독도 951.6 c327ㄷ

저 자 : 이종학(편)

발행기관 : 독도박물관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722면

독도박물관 연구자료총서 1권으로,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이 일본의 대일본수산회에서 발행한 대일본수산회보고와 그 후신인 대일본수산회보 중에서 한일어업관계 자료를 1882년 3월에서 1911년 1월까지 273개 발췌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했으며, 부록으로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일본 도쿄수산대학도서관 소장의 어업 및 수산관계 문헌목록 등 3가지를 실었다.

자료의 중요한 내용은 한반도 주변의 수산자원, 한국 어업의 형태, 일본 어민의 통어(通漁)상황, 일본인 어업의 종류와 어구어법, 일본인 수산단체 등에 관한 것이다. 대일본수산회보고가 창간된 것이 1882년 3월이므로, 그 이후 일본 어업이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 일본수산회의 기록으로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서, 독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의 어업활동 역사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본어로 되어있으며, 그 문장에는 한문(漢文)이 많이 섞여있다. <한상복>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도서번호 : 독도 951 ㅎ158ㅎ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해조사

발행년도 : 1988년

구 성 : 538면

해조사에서 1988년 11월 펴낸 『海洋學에서 본 韓國學』은 1980년 5월부터 1988년 3월에 이르기까지 월간잡지 『현대해양』에 발표한 글 84편을 모은 것이다. 1787년 프랑스의 La Perouse의 한반도 조사에서부터 1791년 영국의 James Colnett의 한반도 남동해역 조사, 1797년 William Robert Broughton의 동해안 조사 등을 비롯해서 한반도의 지리적 지식이 서양에 어느 정도로 인식되었는가를 탐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우리 나라 근대화는 바다를 통해서 온 서양의 문물제도를 익히는데, 이들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옛날의 해도나 지도 속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우리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현대해양』 1980년 11월호에 실렸던 「해양지리사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에서 1861년 출판된 King 편집의 China Pilot 제3권 속에 나타나는 Matusima, Liancourt Rocks, Takosima등에 관한 설명에서 원본을 소개하고 있으며, 1787년 La Perouse의 울릉도 근해 항적도, 1917-1922년간 구룡포-울릉도-독도간 해양조사점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12월 이후에는 수로지(水路誌)속에 기술된 독도, 독도와 내쇼날지오그래픽지(誌), 독도 지형도와 면적 결정의 역사, 독도 위치결정의 역사 등이 1988년 3월까지 연속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1988년 4월 이후에도 월간 현대해양에 저자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다. <한상복>

Korea Review

도서번호 : 독도 951.05 K84
저 자 : Homer B. Hulbert(편)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1984년 (원본 1901~1906년)
구 성 : 6권 3,264면(1권~4권 각 576면, 5권~6권 각 480면)

RAS Korea Reprint Series로 경인문화사에서 1984년 영인본으로 발행했으며, 원본은 1901-1906년간 Methodist Publishing House, Seoul에서 매월 발행한 영문 월간잡지이다. Korean Repository 다음에 나타나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영문판 잡지로, 우리나라 사정을 서양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잡지에서도 그 명칭에 KOREA를 사용하고 있다. Korea Review에서는 Korean Repository에서 처럼 기상 관측을 크게 다루지 않았고, 단지 제1권 제8호(1901년 8월호)에 1887년부터 1900년까지의 연간 총 강우량과 강설량이 인치 단위로 소개되고 있으며, 연간 안개낀 시간, 비 온 시간, 눈 온 시간 등이 정리되어 나타나는데, 이들은 F. H. Moersel이 정리했다. 《한상복》

Korean Repository

도서번호 : 독도 951.05 K84
저 자 : F. Ohlinger(편)
발행기관 : Trilingual Press, Seoul
발행년도 : 2002년 (원본 1892년, 1895-1898년 영인본)
구 성 : 5권 2,327면(1권 380면, 2권 484면, 3권 502면, 4권 480면, 5권 481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들 중심으로 서울에서 발행된 최초의 영문판 월

간잡지로, 조선을 소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892년에 제1권이 나왔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제2권은 1895년에 계속되었으며, 1898년의 제5권 이후에 발행이 중단되었다. 잡지의 명칭에 1892년부터 KOREA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항장(開港場)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소개되고 있는 것도 이 잡지의 중요한 특색으로 나타난다.

1892년부터 『The Korean Repository』가 월간잡지로 발행되면서 Moersel에 의해서 제물포(인천)를 비롯하여 원산과 부산 해관에서 관측된 기상보고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Korean Repository에는 vol. 1(1892), vol. 2(1895), vol. 3(1896), vol. 4(1897) 등에 월별 기상자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면 당시 어떤 기상관측이 행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기온은 화씨(°F)로 나타냈으며,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에 관심이 많았다. 일평균기온은 3회 관측의 평균치를 취했다. 기압은 수은기압계의 인치 단위를 사용했다. 비가 올 때는 강우량을 인치 단위로 나타냈고, 눈이 올 때는 강설량으로 별도로 나타냈으나, 기록 방법은 눈을 녹여서 빗물처럼 인치로 했다. 강우량과 강설량을 합해야 강수량이 된다. 1896년 1월부터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1896)에 제물포의 Quarterly Climatological Report가 체계적으로 실리기 시작하면서 기상요소의 월별 평균치들이 체계적으로 알려졌으며, 1897년 6월까지 18개월의 월평균 기상자료들이 정리되어있다. 《한상복》

2. 동양자료

簡易水路誌 朝鮮沿岸

도서번호 : 독도 951 ㄱ447ㄷ

저 자 : 일본수로부

발행기관 : 일본수로부

발행년도 : 1945년(1권), 1947년(2권)

구 성 : 2권(1권 285면, 2권 248면)

일본수로부에서 간이수로지(簡易水路誌) 형태로 발행했으며, 서지(書誌) 제1006호 A가 조선연안(朝鮮沿岸) 제1권 朝鮮東岸及南岸(조선동안급남안)이 1945년(昭和 20年) 6월에 나왔고, 제2권 朝鮮西岸(조선서안)은 1947년(昭和 22年) 7월 서지 제1006호 B로 나왔다. 한반도 연안의 수로지를 간단히 살펴보기에 적합하게 편집되어 있으며, 이것이 일본수로부에서 직접 작성한 조선수로지로는 마지막이 된다. 이 간이수로지는 1933-34년간 발행된 조선수로지의 기사(記事) 부분 즉 본문 부분을 정리한 것이기도 하다.

1871년 9월 발족된 일본 해군부 수로국에서는 1873년 1월 대만수로지(臺灣水路誌)를 간행하기에 이르렀고, 1876년 1월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를 완성했다. 이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당시에 대만과 조선의 수로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1876년 1월 완성된 조선수로지는 긴급히 사용되어야했던 관계로 인쇄되지 못하고 사본으로 공급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정보로서의 가치가 긴급을 요하였고, 당시 인쇄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생긴 일이다. 1876년 1월 완성된 조선수로지는 거의 대부분이 영국해군성에서 발행한 수로정보를 가지고 꾸몄다.

1881년 10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에서는 1883년 4월 발행된 제2권에 조선부분의 수로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어 1886년 12월에는 환영수로지 제2권 제2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884년 발행된 China Sea Directory 제4권 제2

판 내용을 참고했다. 제2편 조선 서안에서는 1882년 9월 天城艦 조사결과와 1884년 6월 孟春艦 조사결과, 1884년 12월 강화도에서 양화진에 이르는 조사, 1866년 프랑스 해군의 조사결과 등을 가지고 정리했다. 제3편의 조선 남안에서는 1885년 8월 海門艦 조사결과, 1884년 6월 孟春艦 조사결과 등이 활용되었다. 제4편의 조선 동안에서는 1880년까지 조사된 자료가 이용되었다. 우리 나라 지명(地名)에 관해서는 조선 팔역지(朝鮮八域誌)가 참고되었다. 1886년(明治 19년) 12월에 발행된 환영수로지 제2권 제2판에서부터 비교적 자세한 조선수로지 역할을 하기에 이것을 조선수로지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1894년 11월 일본 수로부에서는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를 단행본으로 발행했는데, 이것이 단행본으로 발행되는 첫 출판물이다. 조선해역에 관한 지리적 지식이 많아지면서, 1886년 발행된 환영수로지 제2권, 제2판에서 조선 부분을 따로 독립시킨 것이다. 제1편 조선연안 총기(總記)는 1894년 발행된 China Sea Directory 제4권, 제3판을 참고했고, 제2편 조선서안(朝鮮西岸)은 1889년 磐城艦 조사결과까지를 정리했다. 제3편 조선남서안 남안 급 남동안(朝鮮南西岸南岸及南東岸)은 1892년 6월의 日進艦, 1893년 7월의 高雄艦 조사결과까지 정리했다. 제4편의 조선동안(朝鮮東岸)은 1881년 淸輝艦 조사결과까지 정리했다. 기타 자료는 1894년판 영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와 1894년 10월까지의 수로고시 등을 가지고 개정 증보했다. 1894년의 조선수로지 이후 일본 수로부 발행의 수로지가 더 권위가 있게 되었다.

1899년 2월에는 조선수로지 제2판이 발행되었다. 1894년 제1판의 개정판이다. 제1편 조선연안 총기는 1894년의 초판과 비슷하지만, 제2편 조선서안은 1894년 조사결과까지, 제3편은 1896년 조사결과까지, 제4편은 1898년 조사결과까지를 정리했다. 기타 자료는 1894년판 영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와 1898년 11월까지의 수로고시 등을 가지고 개정 증보했다. 1907년 3월에 조선수로지 제2개판이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수로지 제3판에 해당한다. 제1편 총기(總記)는 1899년 이후 약 8년간의 새로운 자료로 보충했고, 제2편 조선서안 북부는 1900년의 磐城艦, 1901년의 海門艦 조사결과까지 정리했다. 제3편 조선서안 남부는 1903년 海門艦 조사결과까지, 제4편 조선남안은 1899년 筑波艦과 天龍艦 조사결과까지, 제5편 조선동안은 1905년까지의 조사결과들을 정리했다. 기타 자료는 1904년 판 영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와 수로고시 등을 참고하여 개정했다. 이 책에서는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계를 뚜렷이 조선

반도의 남서단(南西端)에 있는 해남각(海南角)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도에 관한 기사도 종전의 것과 달리 편집되었다.

1911년 12월 개정된 조선수로지가 출판되었는데, 책의 제목이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 제6권으로 변화였다. 1910년 대한제국이 문을 닫고,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조선수로지가 일본수로지에 포함된 것이다. 이 책은 1894년의 조선수로지 제4판에 해당한다. 제1편은 조선연해의 일반사항으로 1910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했으며, 제2편 조선동안 즉 부산항에서 두만강까지의 기술은 1908년까지의 자료가 정리되었다. 제3편 조선남안 즉 부산항에서 해남각까지의 기술은 1907년 판과 거의 같다. 제4편 조선서안 남부와, 제5편 조선서안 북부도 1907년 판과 거의 같다. 1917년 3월에는 명칭만 일본수로지 제10권으로 바뀌어서 나왔다.

1920년에는 조선에 관한 수로지가 내용이 많아져서 두 권의 책으로 나왔다. 즉 1920년 4월 간행된 일본수로지 제10권 상에서는 총기, 동안, 남안 등을 다루고 있으며, 7월에 간행된 제10권 하에서는 서안을 다루고 있다. 1918년 조선연안 육지의 1:50,000 지형도가 완성되면서, 지명(地名)이 많이 보충되었다. 조선남안은 1916년 수로조사까지를, 조선 서안은 1918년 수로조사까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1918년 조선총독부 발행의 朝鮮地誌資料와 大正八年 朝鮮事情要覽, 水路告示 등이 이용되었다. 서양식 명칭도 병기되어 있어서 地名 연구에 중요한 책이다. 1930년 12월에는 일본수로지 제10권 上과 下가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과 제2권으로 개칭되었다.

1933년 1월에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의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는 1932년 9월까지의 수로고시와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개정증보 한 것이다. 제1편 총기, 제2편 항로기, 제3편 조선동안, 제4편 조선남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4년 8월에 조선연안수로지 제2권의 개정판이, 1934년 3월까지의 수로고시와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증보하여 나왔는데, 제1편 조선서안남부, 제2편 조선서안북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5년 6월에는 간이수로지로 朝鮮沿岸 第1卷 朝鮮東岸及南岸이 발행되었는데 이는 1933년 1월 발행된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제1편 총기, 제2편 조선동안, 제3편 조선남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이수로지 朝鮮沿岸 第2卷 朝鮮西岸은 1947년 7월 간행되었으며, 1934년 8월 발행된 조선연안수로지 제2권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제1편 조선서안남부, 제2편 조선서안북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상복》

朝鮮水産開發史

도서번호 : 독도 639.20953 03
 저 자 : 吉田敬市
 발행기관 : 朝水會(일본)
 발행년도 : 1954년(영인본)
 구 성 : 496면, 영문요약 14면

조선의 수산개발 역사를 일본사람의 시각에서 다룬 책으로, 조선근해의 자연환경과 수산업의 개략적인 상황, 조선 고래의 어업과 염업, 명치시대 이전의 일본인의 조선해 출어의 성격, 한말 일본인 개발 초기의 수산업 실태, 통어시대의 조선해 어업개발, 이주어업의 건설과 그 소장(消長), 자유발전시대의 어업개발, 수산제조공업의 획기적 발전, 어획물의 운반과 수산무역의 발전, 어업제도의 확립과 수산조장기관의 충실, 조선 수산업의 개발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 분석 등이 있고, 부록으로 조선주요이주어촌 연표, 조선수산개발관계 각부현 수산시험장 사업일람,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에 관한 통계 표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문 요약이 14면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상복》

寰瀛水路誌 제2권 제2판

도서번호 : 독도 387.10953 72
 저 자 : 일본해군수로부(편)
 발행기관 : 일본해군수로부
 발행년도 : 2002년 (원본 1886년)
 구 성 : 729면

일본 해군수로부에서는 1886년 12월 환영수로지 제2권의 제2판을 발행했으며, 제1

편 총기(總記), 제2편 조선서안급 조선총도, 제3편 조선남안, 제4편 조선동안, 제5편 흑룡연안주, 화태도(樺太島)급 캄차카해안(堪察加海岸)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 영인본은 부산시민도서관에 소장된 원본으로부터 복제한 것이다. 제4편 조선동안(朝鮮東岸) 첫 부분 즉 397-398쪽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リアンコール트列岩」(리앙꼬루도 열암)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リアンコール트列岩(리앙꼬루도 열암): 이 열암은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꼬루도」 호가 처음 발견하고, 배 이름을 따서 「리앙꼬루도 열암」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의 프리기트형 함선 「팔라즈」 호는 이 열암을 「매나라이」와 「오리우짜」 열도라고 칭했다. 1855년 영국함정 「호르넷도」 호는 이 열암을 탐험하고 「호르넷도 열도」라고 명명했다. 이 함정의 포르시즈 함장은 이 열암이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는 두 개의 불모(不毛) 암서(岩嶼)로, 새 똥이 쌓여서 하얀 색을 하고 있다. 서북서쪽에서 동남동쪽으로 길이가 약 1리이고, 두 섬 간의 거리는 4분의 1리 정도이고, 초맥(礁脈)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쪽 섬은 표고 410척으로 모양이 당탑(糖塔)처럼 생겼다. 동쪽 섬은 이에 비해 낮고 평평한 정상으로 되어있다. 이 열도 부근은 수심이 깊은 하지만, 그 위치가 하꼬다데(函館)를 향해 일본해를 향해하는 선박의 직수도(直水道)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위의 내용은 1884년 영국해군성에서 발행한 China Sea Directory vol. IV 의 Liancourt Rocks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일본말로 번역한 것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1899년 2월 발행된 조선수로지 제2판에서도 같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초기 일본 해군수로부의 조선해역에 관한 수로지 발행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71년 9월 발족된 일본 해군부 수로국에서는 1873년 1월 대만수로지(臺灣水路誌)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876년 1월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를 완성했다. 이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당시에 대만과 조선의 수로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했으며, 1876년 1월 완성된 조선수로지는 긴급히 사용되어야 했던 관계로 인쇄되지 못하고 사본으로 공급되었다. 그만치 정보로서의 가치가 긴급을 요했었기도 하고, 당시 인쇄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생긴 일이다. 1876년 1월 완성된 조선수로지는 거의 대부분이 영국해군성에서 발행한 수로정보를 가지고 꾸몄다.

1881년 10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에서는 1883년 4월 발행된 제2권에 조선부분의 수로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어 1886년 12월에는 환영수로지

제2권 제2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884년 발행된 China Sea Directory 제4권 제2판 내용을 참고했다. 제2편 조선 서안에서는 1882년 9월 天城艦 조사결과와 1884년 6월 孟春艦 조사결과, 1884년 12월 강화도에서 양화진에 이르는 조사, 1866년 프랑스 해군의 조사결과 등을 가지고 정리했다. 제3편의 조선 남안에서는 1885년 8월 海門艦 조사결과, 1884년 6월 孟春艦 조사결과 등이 활용되었다. 제4편의 조선 동안에서는 1880년까지 조사된 자료가 이용되었다. 우리 나라 지명(地名)에 관해서는 조선 팔역지(朝鮮八域誌)가 참고되었다. 1886년(明治 19년) 12월에 발행된 환영수로지 제2권 제2판에서부터 비교적 자세한 조선수로지 역할을 하기에 이것을 조선수로지의 시작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1894년 11월 일본 수로부에서는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를 단행본으로 발행했는데, 이것이 단행본으로 발행되는 첫 출판물이다. 조선해역에 관한 지리적 지식이 많아지면서, 1886년 발행된 환영수로지 제2권, 제2판에서 조선 부분을 따로 독립시킨 것이다. 제1편 조선연안 총기(總記)는 1894년 발행된 China Sea Directory 제4권, 제3판을 참고했고, 제2편 조선서안(朝鮮西岸)은 1889년 磐城艦 조사결과까지를 정리했다. 제3편 조선남서안 남안 급 남동안(朝鮮南西岸南岸及南東岸)은 1892년 6월의 日進艦, 1893년 7월의 高雄艦 조사결과까지 정리했다. 제4편의 조선동안(朝鮮東岸)은 1881년 淸輝艦 조사결과까지를 정리했다. 기타 자료는 1894년판 영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와 1894년 10월까지의 수로고시 등을 가지고 개정 증보했다. 1894년의 조선수로지 이후 일본 수로부 발행의 수로지는 더 권위가 있게 되었다.

1899년 2월에는 조선수로지 제2판이 발행되었다. 1894년 제1판의 개정판이다. 제1편 조선연안 총기는 1894년의 초판과 비슷하지만, 제2편 조선서안은 1894년 조사결과까지, 제3편은 1896년 조사결과까지, 제4편은 1898년 조사결과까지를 정리했다. 기타 자료는 1894년판 영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와 1898년 11월까지의 수로고시 등을 가지고 개정 증보했다. 1907년 3월에 조선수로지 제2개정판이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수로지 제3판에 해당한다. 제1편 총기(總記)는 1899년 이후 약 8년간의 새로운 자료로 보충했고, 제2편 조선서안 북부는 1900년의 磐城艦, 1901년의 海門艦 조사결과까지 정리했다. 제3편 조선서안 남부는 1903년 海門艦 조사결과까지, 제4편 조선남안은 1899년 筑波艦과 天龍艦 조사결과까지, 제5편 조선동안은 1905년까지의 조사결과들을 정리했다. 기타 자료는 1904년 판 영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와 수로고시 등을 참고하여 개정했다. 《한상복》

3. 서양자료

서양자료로 본 독도

도서번호 : 독도 951.99 ○888

저 자 : 이진명

발행기관 : 민속분석회

발행년도 : 1998년

구 성 : 243면

프랑스에서 한국학 강의를 하고있는 이진명 교수가 1998년 저술한 책으로, 프랑스 Paris에 있는 민속분석회에서 펴냈으며, 전체적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어로 쓴 논문 5편과 불어 논문 1편을 수록하였고, 제2부는 프랑스 해군성 고문서로 독도 발견에 관한 사항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수로지에 정리된 독도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했고, 제3부에서는 중요한 지도와 해도의 사진과 함께 해설을 하고 있다. 저자는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같은 내용의 책을 펴냈다.

프랑스의 포경선 Liancourt호 선장 de Souza(일명 Jean Lopez)는 1849년 1월 27일 Dagelet Is. (울릉도)가 NE1/2N 방향으로 보이는 곳에서 동쪽에 큰 암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위치를 북위 37도 02분, Paris 기점 동경 129도 26분(London 기점 동경 131도 46분)으로 정했다. 이 사실은 1850년 4월 19일 Le Havre항에 도착하여 항해보고서를 제출해서, Annales Hydrographiques 제4호(1850년 하반기)에 발표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포경선 Liancourt호는 1847년 10월 25일 건조된 361톤급 포경선으로 Dover해협에 위치한 Le Havre항에 선적을 두었고 선장은 de Souza(혹은 Jean Lopez)였다. Liancourt호는 1847년 10월 26일 승무원 33명으로 고래잡이를 위해 출항해서 1848년 5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오호츠크해에서 포경을 했다. 그 후 10월 28일 홍콩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한 후, 12월 24일 홍콩을 출항해서 1849년 1월 24일 대한해협을 통과하였고, 1월 27일 독도의 위치를 표정했

다. 1849년 8월 30일 어로활동을 마치고 하와이로 떠났으며, 10월 16일 하와이에 도착했고, 1850년 4월 19일에는 선적항인 Le Havre에 입항했다. 프랑스에서 발행한 Annales Hydrographiques는 1년에 두 번씩 발행되는 항해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정기간행물이다. 1849년에 창간되었으며, 1850년 하반기의 제4호는 실질적으로 1851년 상반기에 독자들이 접할 수 있었다. 1849년 1월에 발견된 사항이 2년 후에 공표된 것이다. 《한상복》

The China Pilot, 3rd ed.

도서번호 : 독도 950 ㄱ219 ㄱ

저 자 : John W. King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2000년 (원본 1861년)

구 성 : 470면 (원본 459면)

경인문화사의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제17권으로 영인되어 나온 책으로, 원본은 1861년 London에서 발행되었다. 1861년 영국해군성 수로부에서 발행한 CHINA PILOT 제3판의 제목은 『The CHINA PILOT. The Coasts of China, Korea, and Tartary; The Sea of Japan, Gulfs of Tartary and Amur, and Sea of Okhotsk; and the Babuyan, Bashi, Formosa, Meiacó-Sima, Lu-Chu, Ladrones, Bonin, Japan, Saghalin and Kuril Islands.』이며, 동해와 독도는 제 11장 「Sea of Japan; Gulf of Tartary; Gulf and River Amur; Saghalin Island; La Perouse Strait; and Sea of Okhotsk」에 나타난다. Sea of Japan과 Gulf of Tartary가 나뉘고; 울릉도를 Matusima, 독도를 Liancourt Rocks라 하였으며, Takosima 혹은 Argonaut Island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 Chapter I. Monsoons, Typhoons, Gales, and Tides in the China Sea, and on the East Coast of China; and General Remarks on Making Passages.
- Chapter II. Approaches to Canton River, including Hong Kong, Chu Kiang or Canton River, and Si Kiang or West River.
- Chapter III. East Coast of China, Hong Kong to Amoy.
- Chapter IV. East Coast of China, Amoy to the White Dog Islands, including the Pescadores.
- Chapter V. East Coast of China, White Dog Islands to Nimrod Sound.
- Chapter VI. East Coast of China, Nimrod Sound to the Yang-tse Kiang, including the Chusan Archipelago.
- Chapter VII. East Coast of China, Whang-Hai or Yellow Sea; Gulfs of Pe-chili and Liau-tung; and West and South Coasts of Korea.
- Chapter VIII. Pratas Island and Reef: North Coast of Luzon; and Babuyan, Bashi, Formosa, Meiaco-sima, and Lu-chu Islands.
- Chapter IX. Islands South-East, East, and North of the Lu-chu Group; and off the South-East Coast of Nipon.
- Chapter X. Japan and Kuril Islands, and South-East Coast of Kamchatka.
- Chapter XI. Sea of Japan; Gulf of Tartary; Gulf and River Amur; Saghlin Island; La Perouse Strait; and Sea of Okhotsk.

제7장에서 황해(黃海, Yellow Sea)와 발해만(渤海灣, Gulf of Pe-chili), 요동만(遼東灣, Gulf of Liau-tung) 등을 분류하였다.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에서는 Chodo Island, Joschim, Caroline and Deception Bays, Daniels Island, Sir James Hall Group, Marjori-Banks Harbour and Shoal Gulf, Basil Bay, Korean Archipelago, South Coast of Korea,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등이 pp. 250-265에 기술되어 있다. 제11장에서는 Sea of Japan과 Gulf of

Tartary가 북위 46도를 경계로 나뉘어지고 있다. Sea of Japan 속에 Sentinel Island, Tsus sima, Matsu sima, Liancourt Rocks, Tako sima or Argonaut island, Waywoda Rock 등의 섬들이 있는데, Matsusima가 울릉도를 나타내고, Liancourt Rocks가 독도를 가리킨다. Takosima 혹은 Argonaut Island는 해도에 존재가 의문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852년 Capricieuse호의 탐사로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3분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독도가 중요하게 기술된 것은 항해에 위험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었다. 제2판에서는 독도를 Hornet Islands로 적고 1855년 4월 25일 Hornet호에서 측정한 위치를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으로만 간단히 기록했으나, 제3판에서는 Liancourt Rocks로 적고 Hornet호 함장 Forsyth의 측정위치와 함께 1849년 Liancourt호에 의해서 알려졌고, 1854년에는 Olivutsa호에 의해서 Menalai and Olivutsa로도 불린다는 사실도 적어놓았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명칭과 해역 범위를 비롯하여 해만 명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괄호 속의 면수는 원본의 것이다.

1) 바다 명칭과 해역

- Whang Hai or Yellow Sea (황해): 서쪽으로 양자강(Yang-tse kiang)과 산둥갑(Shan Tung promontory), 동쪽으로 조선해안(Coast of Korea)에 둘러싸임. (p. 217).
- Gulf of Pe-Chili (발해만): Miao-tau strait에서 황해와 갈라짐. (p. 231).
- Gulf of Liau-Tung (요동만): Gulf of Pe-Chili의 북부로 요동반도 사이의 만. (p. 237).
- Sea of Japan (동해): 동쪽과 남쪽이 일본열도에 둘러싸이고, 서쪽과 북쪽이 조선해안(Coast of Korea)과 달단해안(Coast of Tartary)으로 둘러싸임. 길이가 약 900해리, 폭이 약 600해리가 됨. 남쪽으로는 Korea strait(대한해협)을 통하여 China sea(중국해)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Gulf of Tartary(달단만)에 접함. (p. 376).
- Gulf of Tartary (달단만): 북위 45도 41분 이북의 달단 연안과 사할린으로 둘러싸인 해역. (p. 400).

2) 만의 명칭과 해역

〈서해안〉

- Joachim Bay : 북위 36도 53.5분, 동경 126도 18분. (p. 251).
- Caroline Bay (가로림만): 북위 37도 1.5분, 동경 126도 25분. (p. 251).
- Deception Bay (덕압포): 북위 37도 3분, 동경 126도 33분. (p. 251).
- Shoal Gulf (천수만): (p. 255).
- Basil or Chu-Ying Bay (비인만): 북위 36도 7분 39초, 동경 126도 42.5분. (p. 258).

〈동해안〉

- Unkofsky Bay (영일만): 북위 약 36도 6분. (p. 381).
- Broughton Bay (Korea gulf) (동한만): 남쪽의 Cape Duroch(수원단)에서 북쪽의 Cape Petit Thouars를 동쪽 경계로 하는 해역. (p. 382).
- Yung-Hing Bay (영흥만): 남쪽의 Ilary or Perier point에서 북쪽의 Desfosses point로 둘러싸인 해역으로 Broughton Bay 안에 있음. (p. 384).
- Goshkevich Bay (조산만): Avvakum group의 북동단과 Casy or Sisuro point를 연결하는 해역. (p.390).

한반도 부분은 제7장 중에서 pp. 250-265, 제11장 중에서 pp. 376-391에 기술되어 있으며, 각 연안의 기술은 주로 다음 탐사자료들에 의했다.

서해안과 남해안: Voyage of the Alceste and Lyra in 1816. Lord Amherst in 1832. H. M. Ships Blonde and Pylades in 1840. French frigate Virginie in 1856. H. M. S. Samarang in 1845.

동해안: Capt. Broughton in 1797. French corvette Capricieuse in 1852. Russian frigate Pallada in 1854. Commander John Ward in 1859.

1861년 발행된 China Pilot 제3판은 발행 당시 가장 정확한 지리적 지식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지식 축적 연구에 중요한 문헌이고, 특히 독도에 관해서 1861년 당시에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동해에 있는 3개의 섬이 제11장(Sea of Japan; Gulf of Tartary; Gulf and River Amur; Saghalin Island; La Perouse Strait; and Sea of Okhotsk)의 page 379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울릉도를 Matusima, 독도를 Liancourt Rocks라 하였으며,

Takosima 혹은 Argonaut Island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MATU SIMA(Dagelet island of the French and Dajette of the Russian charts) is by the Russian frigate Pallas in lat. $37^{\circ} 22'N.$, long. $130^{\circ} 56'E.$ It is of circular form, about 20 miles in circumference, and its peak, rising from the centre of the island, is 2,100 feet above the sea level. Its shores are cliffy and almost inaccessible.

LIANCOURT ROCKS are named after the French ship Liancourt, which discovered them in 1849; they were also named Menalai and Olivutsa rocks by the Russian frigate Pallas in 1854, and Hornet islands by H.M.S. Hornet in 1855. Captain Forsyth, of the latter vessel, gives their position as lat. $37^{\circ} 14'N.$, long. $131^{\circ} 55'E.$, and describes them as being two barren rocky islets, about a mile in extent N.W. by W. and S.E. by E., and a quarter of a mile apart, and apparently joined together by a reef. The western islet, elevated about 410 feet above the sea, has a sugar-loaf form; the easternmost is much lower and flat-topped. The water appeared deep close-to, but they are dangerous from their position, being directly in the track of vessels steering up the Sea of Japan for Hakodadi.

TAKO SIMA or Argonaut island, marked doubtful on the charts, does not exist in the position assigned to it, in $37^{\circ} 52'N.$, and $129^{\circ} 53'E.$ In the year 1852, the French corvette Capricieuse twice crossed this position without perceiving any land."

이들 세 섬은 SENTINEL ISLAND, TSUS SIMA, WAYWODA ROCK 등과 함께 6개 섬 중의 일부로 설명되어 있다. 이 영어 원문은 이미 1980년 발표된 바 있다. 설명에 나오는 러시아 군함 Pallas는 Olivutsa의 잘못이며, Pallas는 Pallada이다. 군함 Olivutsa는 Pallada 함대의 일원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했으나, 기함 Pallada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탐사활동을 했다. <<한상복>>

China Pilot, 4th Edition

도서번호 : 독도 952 K53c4
저 자 : John W. King
발행기관 : Admiralty, U.K.
발행년도 : 2002년 (원본 1864년)
구 성 : 661면

영국해군성 수로부에서 1864년 발행한 China Pilot 제4판은 China Pilot라는 이름으로 1855년부터 발행된 마지막 수로지이다. 「China Pilot」이니 「중국수로지」라고 번역되는데, 그 내용은 Hong Kong에서 Kamchatka까지의 동북아시아 해역 전체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을 전부 쓰면 「The CHINA PILOT, comprising the Coasts of China, Korea, and Manchuria; the Sea of Japan, the Gulfs of Tartary and Amur, and The Sea of Okhotsk; also the Babuyan, Bashi, Formosa, Meiacosima, Lu-chu, Mariana, Bonin, Japan, Saghalin, and Kuril Islands.」로, 다루고 있는 해안과 해역 그리고 섬들을 제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내용은 총 15장으로 제1장에는 태풍과 폭풍, 해류, 조류 등의 자연환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제8장이 광둥과 홍콩에서 아모이, 양자강을 거쳐 황해북부해안, 제9장이 직예만과 요동만, 제10장이 조선의 서해안, 남서해안, 남해안, 제11장이 대만과 유구등 여러 도서, 제12장-14장이 일본열도, 제15장이 Sea of Japan에서 Sea of Okhotsk를 다루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한반도 동해안의 설명은 제15장에 나타나고 있다. 15장 전체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hapter I. Monsoons, Typhoons, Gales, Currents, and Tides in the China Sea, and on the East Coast of China; and General Remarks on Making Passages.

Chapter II. Approaches to Canton River, including Hong Kong. The Chu

- Kiang or Canton River; the Si Kiang or West River; and the Western Channels of Canton River.
- Chapter III. East Coast of China, Hong Kong to Amoy.
- Chapter IV. East Coast of China, Amoy to the White Dog Islands, including the Pescadores Islands.
- Chapter V. East Coast of China, White Dog Islands to Nimrod Sound.
- Chapter VI. East Coast of China, Nimrod Sound to the Yang-tse Kiang, including the Chusan Archipelago.
- Chapter VII. East Coast of China, The Yang-tse Kiang
- Chapter VIII. East Coast of China, From the Yang-tse Kiang to Pe-chili Strait, The North Coast of the Yellow Sea.
- Chapter IX. Gulfs of Pe-chili and Liau-tung.
- Chapter X. West, South-West, and South Coasts of Korea.
- Chapter XI. Pratas Island and Reef, North Coast of Luzon, Babuyan, Bashi, Formosa, Meiacosima, and Lu-chu Islands; and Islands S.E., East, and North of the Lu-chu Group.
- Chapter XII. Japan Islands; Comprising the South Coasts of Kiusiu and Sikok; the South-East and East Coasts of Nipon; and the Seto Uchi or Inland Sea.
- Chapter XIII. Japan Islands. The West Coasts of Nipon and Kiusiu; and Directions from the Yang-tse Kiang to Nagasaki, &c.
- Chapter XIV. Japan Islands, Tsugar Strait, and South Coast of Yezo, The Kuril Islands, and South-East Coast of Kamchatka.
- Chapter XV. Sea of Japan; Gulf of Tartary; Gulf and River of Amur; Saghlin Island; La Perouse Strait; and Sea of Okhotsk.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해와 독도는 제15장에 나타난다. Sea of Japan과 Gulf of Tartary가 나뉘고; 울릉도를 Matusima 혹은 Dagelet, 독도를 Liancourt Rocks, Argonaut Island는 Dagelet Island를 잘못 표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총 11장이던 것이 제4판에서 총15장으로 늘어났다. Hong Kong에

서 Kamchatka반도에 이르기까지의 해역에 관한 설명을 한 권의 수로지(水路誌)에 담은 것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주변 해역의 경계구분에 대해서는 이 책이 가장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제3판의 7-11장(章)이 확장되어서, 7-15장(章)으로 되었다. Hong-Kong에서 양자강 입구에 이르기까지는 전과 거의 같으나, 양자강 입구에서부터 그 이후 부분이 많이 개정되어서 각 章의 제목에 중요한 바다 명칭이 거의 포함되고 있다. 다음은 제4판에 나타난 한반도 주변해역의 명칭과 그 경계를 정리한 것이다.

- (1) Tung-Hai(東海) or Eastern Sea of the Chinese: 黃海와 태평양 사이에 있음. 양자강과 조선 그리고 규슈를 지나 류구열도와 대만을 잇는 곳으로 둘러싸인 해역.
- (2) Whang Hai(黃海), or Yellow Sea: 양자강에서 山東高角에 이르는 곳을 서쪽으로 하고, 동쪽은 조선 해안으로 둘러싸인 해역.
- (3) Gulf of Pe-chili(渤海灣): 남쪽이 Miao-tau group으로 되어 있는 Pe-chili strait를 경계로 黃海頭 서쪽의 남부에 위치함.
- (4) Gulf of Liau-tung(遼東灣): Pe-chili strait를 경계로 黃海頭 서쪽의 북부에 위치함.
- (5) Sea of Japan(日本海): 동쪽과 남쪽은 日本列島와 접하고, 서쪽과 북서쪽은 조선과 달단 해안에 접함. 북북동에서 남남서쪽의 길이가 약 900해리에 이르고, 동쪽과 서쪽의 가장 넓은 폭은 약 600해리에 이름.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Korea strait를 통해서 China sea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La Perouse 해협과 Tsugar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과 통하며, 북쪽으로는 Gulf of Tartary를 통해서 Sea of Okhotsk와 연결됨.
- (6) Gulf of Tartary(달단만): 북위 45도 40.5분에 위치한 Cape Disappointment 이북의 만주연안과 사할린 서부 사이의 해역.
- (7) Seto Uchi, or Inland Sea of Japan: 일본 本州와 九州, 四國 등으로 둘러싸인 內海.

동해의 세 섬은 제15장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LIANCOURT ROCKS are named after the French ship Liancourt, which discovered them in 1849; they were also called Menalai and Olivutsa rocks by the Russian frigate Pallas in 1854, and Hornet islands by H.M.S. Hornet in 1855. Captain Forsyth, of the latter vessel, gives their position as lat. $37^{\circ} 14' N.$, long. $131^{\circ} 55' E.$, and describes them as being two barren rocky islets, about a mile in extent N.W. by W. and S.E. by E., and a quarter of a mile apart, and apparently joined together by a reef. The western islet, elevated about 410 feet above the sea, has a sugar-loaf form; the easternmost is much lower and flat-topped. The water appeared deep close-to, but they are dangerous from their position, being directly in the track of vessels steering up the Sea of Japan for Hakodadi.

MATSU SIMA, or Dagelet island, is a collection of sharp conical hills, well clothed with wood, supporting an imposing peak in the centre, in lat. $37^{\circ} 30' N.$, long. $130^{\circ} 53' E.$ It is 18 miles in circumference, and in shape approximates a semicircle, the northern side, its diameter, running nearly E. by N. and W. by S. 6.25 miles. From each end the coast trends rather abruptly to the southward, curving gradually to the east and west, with several slight sinuosities until meeting at Seal Point, the south extreme of the island, off which is a small rock.

There are several detached rocks along its shores, principally, however, on the north and east sides, some reaching an elevation of 400 to 500 feet. They are all, like the island, steep-to, and the lead affords no warning, but none of them are more than a quarter of a mile from the cliffs, except the Boussole rock, the largest, which is 7 cables from the east shore of the island. Hole rock on the north shore is remarkable, from having a large hole, or rather a natural archway through it, while nearly abreast it on the shore is a smooth but very steep sugar-loaf, apparently of bare granite, about 800 feet high.

The sides of the island are so steep, that soundings could only be obtained by the Actaeon's boats, almost at the base of the cliffs, while in the ship at 4 miles to the southward no bottom could be found at 400 fathoms, and 2.25 miles north none at 366 fathoms. Landing may be effected in fine weather, with difficulty, on some small shingly beaches, which occur at intervals, but the greater part of the island is quite inaccessible. During the spring and summer months some Koreans reside on the island, and build junks which they take across to the mainland; they also collect and dry large quantities of shell-fish. Except a few iron clamps, their boats are all wood-fastened, and they do not appear to appreciate the value of seasoned timber, as they were using quite green wood.

ARGONAUT ISLAND. H.M.S. Actaeon in June 1859 passed over the position given to Argonaut as nearly as, from the want of observations, it was possible to judge; the weather was rather thick, but a radius of 5 miles, at least, could be commanded, and nothing was seen. This island has been searched for by both French and Russian ships of war, but has not been found; whalers also ignore its existence; it may therefore with confidence be expunged from the charts. Its supposed discoverers, probably, owing to current, were much out in their reckoning, and sighting Dagelet re-named it. The Actaeon experienced a weak current setting to the northward. A Russian gunboat at an earlier period of the year visited Dagelet, and after obtaining observations left, under sail, in a light breeze, to pass over the supposed position of Argonaut. A dense fog ensued, and about the time when, if Argonaut existed, it might have been expected to be seen, land was made; fortunately an opportunity offered of obtaining observations, w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island was still Dagelet, a proof of her having experienced a strong south-westerly current.

독도인 Liancourt Rocks의 기술은 1861년의 제3판과 동일하지만, 울릉도인 Matsusima 혹은 Dagelet는 많이 보완되었다. Argonaut Island의 존재에 관해서는 1859년의 H.M.S. Actaeon 조사결과 보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그 위치를 없애버렸다. 제3판의 기사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독도와 관련해서는 1861년의 제3판을 더 중요한 문헌으로 취급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 《한상복》

Discovery of Australia

도서번호 : 독도 912.94 P465d

저 자 : T. M. Perry

발행기관 : Nelson

발행년도 : 1982

구 성 : 159면, 85도면

Australia의 발견에 관한 역사를 고지도와 고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책으로, 제1장 알려지지 않은 대륙(Terra Incognita, Unknown Land), 제2장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남방대륙(Terra Australis Nondum Cognita, Southern Land not yet known), 제3장 첫 발견(First Discovery), 제4장 Tasman or Bonaparte Map, 제5장 Hollandia Nova, 제6장 New Holland, discovered 1644, 제7장 New South Wales, 제8장 Additions to the Charts, 제9장 The Great Expeditions, 제10장 Filling the Gaps, 제11장 Evolution of an Admiralty Chart, 제12장 Problems of the Rivers, 제13장 Way North, 제14장 Across the Desert, 제15장 Changing Map of Australia 등 총 15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Australia 발견의 역사 중에서 처음 1700년대까지 발행된 동인도지도 혹은 해도가 제1장에서 제5장에 이르기까지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5장에는 John Seller의 1670년 발행한 동인도해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해도는 1666년

Pieter Goos가 발행한 해도의 복사본에 해당한다. 이 해도에 한반도는 COREA라고 나타나 있고, 일본은 IAPAN으로 되어 있다. 1680년 Pieter Goos와 Joannes van Keulen이 발행한 동인도해도에도 한반도가 COREA로, 일본이 IAPAN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상복》

Japan Pilot, vol. I, 7th ed.

도서번호 : 독도 623.89 H995J7

저 자 : J. L. Aldridge

발행기관 : Admiralty, U.K.

발행년도 : 1982년

구 성 : 379면

영국해군성 발행의 일본수로지 제7판으로 혼슈 북서해안(2-4장), 쓰가루해협(5장), 혼슈동부해안(6장), 홋카이도(7-9장), 쿠릴열도(10장) 등으로 기술되어있다. Japan Pilot 제1판은 1904년에 발행되었고, 제2판이 1914년, 제3판이 1926년에, 제4판이 1938년에, 제5판이 1952년에, 제6판이 1966년에 발행된바 있다. 1904년 영국해군성 수로부에서는 C. H. Langdon 정리로 『Sailing Directions for Japan, Korea, and adjacent Seas, from Yalu River, the Boundary between Korea and China, to the Komandorski Islands; also the Ogasawara(Bonin) Islands, southward of Japan, and the Kuril Islands. Formerly published as China Sea Directory vol. IV.』 라는 이름의 수로지를 1903년까지의 일본과 러시아 수로지들을 참고하여 발행했다. 제목에서 밝힌 대로 이 수로지는 China Sea Directory 제4권 제4판에 해당하지만, 명칭이 바뀌었고, 일본열도 부분에 대한 기술이 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Japan Pilot 제1판이 되어버렸다. 1904년 발행된 수로지 『Sailing Directions for Japan, Korea, and adjacent Seas』 에서 1913년 일본열도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이 1914년에는 Japan Pilot 제2판으로 나오게 되었다.

제2장의 Honshu 북서해안 Kanda Misaki에서 Kyoga Misaki까지를 기술하는 내용중에 77면에 독도가 Take Shima로 나오는데, 그 위치를 37도 15분 N, 131도 52분 E로 표시하면서, 동도(East Islet)를 일본인들은 Me Shima라 부르고, 한국인들은 Dok To라 부른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등대 명칭은 Dok To Light 로 나타내고 있다. 《한상복》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도서번호 : 독도 950 ㄱ219ㄱ

저 자 : Edward Belcher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2000년 (원본 1848년)

구 성 : 2권 1,038면(1권 448면, 2권 590면)

경인문화사의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제15권과 제16권으로 영인되어 나온 책으로, 원본은 1848년 London에서 발행되었다. 영국의 Edward Belcher는 Samarang호를 지휘하여 중국의 개항장에 이르는 항로의 정밀탐사를 위하여 1843년 1월 13일 영국을 떠나서 9월 15일 홍콩에 도착했다. 출발 때와는 정치적인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그는 청(淸)나라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광둥 이북의 중국 해안에 접근하지 말라는 훈령을 받았다. 이에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싱가포르, 보르네오, 필리핀, 유구, 제주도 일대 등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1845년 6월 25일 제주도의 우도(牛島)에 도착해서 이 곳을 기지로 삼아 7주동안 제주도와 거문도, 거금도 일대를 정밀측량하기에 이르렀다. 즉 Belcher는 중국의 개항장을 정밀 측량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으나, 중국 정세의 변화로 우리나라 제주도를 정밀탐사 하게 되었다.

Belcher 일행은 중국인 통역을 대동해서 7월 14일까지 계속된 제주도 해안선 측량 시 우리 나라 관리들과 의사소통을 한 바 있다. 7월 15일 우도를 떠나 거문도에 도착해서 4일간 측량한 다음 다시 북상하여 거금도 일대를 조사한 다음, 우도로 회항했다가 1845년 8월 1일 일본 나가사키로 향했다. 일행중의 Arthur Adams는 군의관으로서 박물학에 조예가 깊어서 제주도의 박물학적 기술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Belcher는 1846년 영국으로 돌아가서, 1848년 두 권으로 된 『사마랑호 탐사항해기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를 출판하였다. 다음은 Belcher에 의해서 명명된 서양식 별칭 중 중요한 것 들이다.

Beauford Island: 우도

Mt. Auckland: 한라산

Port Hamilton: 거문도 도내해(島內海)

Auckland Island: 거금도

Franklin Island: 소록도

Douglas Island: 평일도

Herschel Island: 외나로도

Peel Island: 초도

Flower Island: 화도

Deception Bay: 제주만

Anderson Island: 비양도

Barlow Island: 가파도

Giffard Island: 마라도

Walker Island: 문도

Hooper Anchorage: 서귀포

Barrow Island: 지귀도

Foul Bay: 성두포

Cape Dundas: 성산포

제주도의 서양식 별칭인 Quelpart Island는 이미 1668년 Hamel의 표류기가 출판된

이후 널리 알려졌다. 제주도는 1787년 La Perouse도 측량했고, 1797년 Broughton도 측량했다. 그러나 그들은 항해도중 중요지점을 측량했을 뿐이고, 정밀측량에는 이르지 못했다. 1845년 Belcher가 지휘한 Samarang호의 탐사 결과는 우리 나라 해안선을 정밀 측량한 최초의 결과물이 된다. Port Hamilton은 거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섬으로 둘러싸인 섬 안의 바다가 항구의 구실을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한상복》

Sailing Directions (Enroute) Coasts of Korea and China

도서번호 : 독도 623.89 U58s8

저 자 :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U.S.A.

발행기관 :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U.S.A.

발행년도 : 2000년

구 성 : 183면

미국에서 발행한 수로안내기 제157호에 해당하고, 한국과 중국해역을 총 9개 해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남부 해안이 제일 먼저 설명되었고, 그 다음이 한반도 동부해안, 한반도 서부해안, 압록강에서 산동반도 간 중국해안, 산동반도에서 長江 등으로 나온다. Sector 2가 Korea-East Coast로, Busan Hang(부산항)에서 Tumen River(두만강)까지를 다루고, 외딴 섬으로 독도를 Liancourt Rocks(Dok To) (Take Shima) (37도 15분 N, 131도 52분 E)로 나타냈고, 울릉도를 Ullung Do(Ulleung Do)(37도 30분 N, 130도 50분 E)라고 나타내고 있다. 각 Sector가 시작하기 전에 설명할 범위와 필요한 해도 번호를 알려주기 위한 그림이 있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영어권 국가의 권위기관에서 발행한 한반도 해역의 수로지(水路誌)로 동, 서,

남해안 전부가 한 책에 포함되고, 또 2-3년 이내에 출판된 것으로는 미국판 수로지가 가장 최신의 것이다. 2000년에 미국의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에서 발행한 이 수로지는 『Pub. 157 Sailing Directions(Enroute) COASTS OF KOREA AND CHINA, 8th edition』이다. 이 책의 제1판은 1972년 발행된 바 있으며, 2000년 발행된 것은 제8판이 된다. 한국과 중국의 수로지로 총 9 Sector인데, 처음의 3 Sector가 한반도의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Sector 2에 나타난 한반도 동해안의 중요 해역 명칭이다.

East coast of Korea(한국 동해안): from Busan Hang(부산항) to Tumen River(두만강)

Chosan Man(조산만): entered between Chwijin Dan(취진단) and Opo Dan(오포단)

Naksan Man(낙산만): entered between Hwa Dan(화단) and Nose Dan(노세단)

Ijin Man(이진만): entered between Piso Dan(비소단, 비봉단) and Hwa Dan(화단)

Ssangpo Man(쌍포만): about 4 miles N of Kal Tan(갈단)

Kidong Man(기동만): entered W of Kal Tan(갈단)

Kyongsong Man(경성만): lies between Orang Dan(어랑단) and Komalsan Dan(고말산단)

Tajin Man(다진만): lies about 3.5 miles NNE of Taeryanghwa Man(대량화만)

Taeryanghwa Man(대량화만): about 6.5 miles N of Poksuk Tan(복숙단)

Hwangjin Man(황진만): entered N of Poksuk Tan(복숙단)

Pohang Man(포항만): about 3.3 miles NNW of Unmandae Dan(운만대단)

Songnyong Man(송녕만):

Toejo Man(퇴조만): about 7.5 miles NE of Oeyangdo Dan(외양도단)

Songjon Man(송전만): entered between Mangdok Kot(망덕곶) and Wonchu Gak(원추각)

Yonghung Man(영흥만): entered between Irari Gak(이라리각) and Taegang Got(대강곶)

Changjon Man(장전만): entered between Changadae Kkut(창아대끝) and Gyegan Mal(계간말).

Tongjoson Man(동조선만, 동한만): usually defined as lying between Suwon Dan(수원단) and Mayang Do(마양도)

Jugbyeon Man(죽변만): on the SW side of Yongchu Gap(용추갑)

Yeongil Man(영일만): entered between Janggi Gab(장기갑) and Dalman Gab(달만갑)

Ulsan Man(울산만):

Suyeong Man(수영만): entered between Dongsaeng Mal(동생말) and Godu Mal(고두말)

미국판 수로지에서는 부산항에서 두만강 쪽으로, 즉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기술했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수로지 기술 순서와 맞추어서 정리했다.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 관한 수로지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담당 기관에서 발행한 수로지이다. 외국의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발행한 책자를 가지고 편집하여, 널리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영어권 수로지는 국제적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다음은 Sector 1에 나타난 한반도 남해안의 중요 해역 명칭이다.

South coast of Korea(한국 남해안): from Haenam Gag(해남각) to Busan Hang(부산항)

Nagdong Po(낙동포): E of Gadeog Do(가덕도), is shoal

Cheonseong Man(천성만): the only bay on the W coast of Gadeog Do(가덕도)

Gadeog Sudo(가덕수도): lies between islets E of the NE extremity of Geoje Do and Gadeog Do(가덕도)

Budo Sudo(부도수도): entered between Jam Do(잠도) and Ung Do(웅도)

Haengam Man(행암만): NE of Bu Do(부도)

Chinhae Man(진해만): a large landblocked bay formed by the NW side of Geoje Do(거제도) and the mainland

Tongyeong Haeman(통영해만): lies between Miruk Do(미륵도) and the

mainland on the W, and Hansan Do(한산도) and Geoje Do on the E
Yeosu Haeman(여수해만): an extensive inlet between Dolsan Do(돌산도) and
Yeosu Bando(여수반도) on the W side, and Namhae Do(남해도) on the E side
Yeoja Man(여자만): lies between the E side of Goheung Bando(고흥반도) and
the W side of Yeosu Bando

Geogum Sudo(거금수도): lies between Geogum Do(거금도) and Goheung
Bando

Geumdang Sudo(금당수도): lies between Keumdang Do and Geogum Do

Deugryang Man(득량만): lies between Joyag Do(조약도) and Goheung Bando
Donae Hae(도내해): lies among Dong Do(동도), Seo Do(서도) and Go Do(고도)
of Geomun Do(거문도)

Hoenggan Sudo(횡간수도): lies between the N island of Soan Gundo(소안군
도) and the islands E of Haenam Gag(해남각)

Jeju Haehyeob(제주해협): lies between the N side of Jeju Do(제주도) and
Chuja Gundo(추자군도)

다음은 Sector 3에 나타난 한반도 서해안의 중요 해역 명칭이다.

West coast of Korea(한국 서해안): from Haenam Gag(해남각) to Yalu River(압록
강), forming E side of the Yellow Sea

Maemul Sudo(매물수도): lies between Heugsan Jedo(흑산제도) and the islands
and islets off the SW end of Korea

Maenggol Sudo(맹골수도): lies between Maenggol Gundo and Geocha Gundo
(거차군도)

Maro Hae(마로해): lies between the coast N of Haenam Gag and the E side
of Jin Do(진도)

Jangjug Sudo(장죽수도): lies between SW side of Jin Do and the NE side of
Doggeo Gundo(독거군도)

Jeongdeung Hae(정등해): lies between the NW coast of Jin Do and the SE
islands of Naju Gundo(나주군도)

Sia Hae(시아해): lies between Hwaweon Bando(화원반도) and the SE islands

of Naju Gundo

Myondo Sudo(면도수도): lies between N islands of Naju Gundo and Hujeung Do(후중도)

Cheonsu Man(천수만): a narrow bay lying between the mainland and Anmyon Do(안면도)

Asan Man(아산만): lies at the head of the narrow gulf which extends about 20 miles SE from Pung Do(풍도)

Haeju Man(해주만):

《한상복》

Sailing Directions (Enroute) Japan, volume II

도서번호 : 독도 623.89 U58s7 v.2

저 자 :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U.S.A.

발행기관 :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U.S.A.

발행년도 : 1999년

구 성 : 203면

미국에서 발행한 수로안내기 제159호에 해당하고, 일본열도의 북서해역을 총 11개 해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일본열도의 남동부에 해당하는 것이 제1권으로 Pub. 158이다. Sector 1이 Hokkaido 서부해안과 Tsugaru 해협, Sector 2가 Honshu 북서해안 Tappi Saki에서 Rokugo Saki까지로 외딴 섬을 포함하여 다루며, Sector 3은 Honshu 북서해안(남서부) Rokugo Saki에서 Murasaki Bana까지로 외딴 섬을 포함하고, Sector 4에서는 Tsushima를 다루고 있다. Sector 3에서는 외딴 섬으로 Oki-Gundo가 36도 10분 N, 133도 10분 E에 위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각 Sector가 시작하기 전에 설명할 범위와 필요한 해도 번호를 알려주기 위한 그림이 있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상복》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도서번호 : 독도 951 H995s6

저 자 : R. A. F. Heap

발행기관 : Admiralty, U.K.

발행년도 : 1983년

구 성 : 360면

이 수로지는 NP 43으로 1983년 영국해군성에서 발행한 제6판이다. 초판은 1913년 발행되었고, 2판이 1927년, 3판이 1937년, 4판이 1952년, 5판이 1966년 발행된 바 있다. 총 13장에서 제1장은 총론으로 항해규칙과 해양의 자연환경 등이 기술되어 있고, 제2장이 한국 남해안 서부의 해남각에서 가막양까지, 제3장이 남해안 동부의 여수해만에서 부산항까지, 제4장이 한국 동해안 남부의 부산항에서 봉수반도까지와 의단섬, 제5장이 동해안 북부의 마양도에서 두만강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6장은 Russian Maritime Province로 두만강에서 Ostrov Askol'd까지를, 제8-9장은 Gulf of Tartary, 제11-13장은 Sea of Okhotsk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한국식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러시아 해역에서는 러시아식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항이 Busan Hang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울릉도는 Ulleung Do로 제4장 134-135면에 4.165 - 4.180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독도는 Take Shima로 Japan Pilot Volume I에 설명되어 있다고 120면의 제4장 일반정보에서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East Coasts of Korea and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는 한반도의 남해안과 동해안 연안이 포함된 수로지(水路誌)로, 1913년 제1판이 발행된 이래 1983년에 이르기까지 제6판이 발행되었으며, 1937년 발행된 제3판부터는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로 표지의 제목이 약간 바뀌었을 뿐이다. 1913년의 제1판부터 1983년의 제6판까지 자세한 表紙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1판: East Coasts of Korea and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from the south-west extreme of Korea along its south coast, including Quelpart and other islands off it, and the east coasts of Korea and Siberia, with the Sea of Okhotsk and Kamchatka to Cape Shipunski. (compiled by Staff-Commander J. R. H. MacFarlane). London, 1913.
- 제2판: East Coasts of Korea and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including the Eastern Coast of Asia from the south-west extreme of Korea to Cape Shipunski on the East Coast of Kamchatka. Second edition. (prepared by Commander J. C. Roughton). pp. xxxiii. 388. London, 1927.
- 제3판: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including the Eastern Coast of Asia from the south-west extreme of Korea to Cape Shipunski on the East Coast of Kamchatka. Third edition. (prepared by Commander F. C. Hanning-Lee). pp. xxxiv. 658. London, 1937.
- 제4판: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comprising the Coast from the south-western extreme of Korea to Mys Shipunskiy on the East Coast of Kamchatka; and Quelpart, Tsu Shima and Sakalin. Fourth edition. (prepared by Captain F. M. Hodgson). pp. liii. 666. London, 1952.
- 제5판: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comprising the Coast from the south-western extreme of Korea to Mys Shipunskiy on the East Coast of Kamchatka; and Cheju Do, Tsushima and Sakalin. Fifth edition. (prepared by Captain G. A. French). pp. xv. 689. London, 1966.
- 제6판: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Jeju Do; the Coast from the south-west point of Korea to the South Point of Kamchatka; including Ostrov Sakhalin. Sixth edition. (prepared by R. A. F. Heap and J. E. Smallwood).

pp. xv, 360. London, 1983.

1900년대 이후 영국해군성에서는 연안국에서 출판되는 수로지(水路誌)를 중심으로 편집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책의 크기는 1966년의 5판까지는 종전처럼 21.3x14cm였으나, 1983년 발행된 6판에서는 23.5x20cm로 변했다. 1966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근해의 해역 명칭이나 지명들을 한국식으로 고쳐나가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 고유명칭의 영문자를 한 번 정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한상복》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

도서번호 : 독도 950 ㄱ219 ㄱ

저 자 : William Robert Broughton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2000년 (원본 1804년)

구 성 : 444면 (원본 393면)

경인문화사의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제10권으로 영인되어 나온 책으로, 원본은 1804년 London에서 발행되었다. 1797년 10월 13일 부산 용당포 앞 바다에 닻을 내리고 1주일동안 머물면서 부산항 항박도를 만든 서양 사람이 바로 영국의 William Robert Broughton 함장이다. 그는 400톤급의 Providence호 선장으로 스스로의 결심에 의하여 동북아시아해역 탐사를 한 사람으로, 1797년 5월 Providence호가 류구열도에서 난파되는 불운 속에서도 동북아시아 탐험의 의지를 살려, 87톤급의 부속선인 소형범선을 가지고 일본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홋카이도 서해안으로 들어와 계속 북상하다가 9월 15일 북위 51도 45분에 이르러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서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탐사했다. 그

는 사할린과 연해주 사이가 막힌 것으로 생각해서 이곳을 달단만(Gulf of Tartary)으로 명명했다. La Perouse는 수로가 있음을 알고 달단해협(Channel of Tartary)이라고 한 것과 크게 달랐지만, 크림리아전쟁의 일환으로 영국극동함대의 해상작전에서 영국은 Broughton의 결과를 믿고 이곳을 봉쇄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Broughton은 스스로 우리나라에 찾아온 최초의 탐험자이기도 하며, 부산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는 부산에 정박한 1797년 10월 13-21일간 부지런히 부산 항박도를 스케치하고, 26종의 식물과 38종의 우리말 어휘도 조사했다. 그의 조사결과는 1804년 북태평양 탐사항해기(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로 출판되었으며, 조선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Broughton은 부산항을 Thosan Harbour(조선항)로 적고 있는데, 그는 주민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항구 이름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영국의 Broughton은 1793년 10월 3일 400톤 급의 Providence호 함장으로 임명되었고, 1795년 2월 15일 탐사항해의 길에 올랐다. 1796년 6월에 이르러서 스스로 동북아시아 해역 탐험을 결심하였으나, 1797년 5월 Providence호가 유구열도에서 난파되는 불운을 가지게 되었다. 1797년 6월 27일 Broughton은 87톤급의 소형범선을 가지고 마카오를 출항하여 일본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왔다. 그는 홋카이도 서안을 따라 계속 북상하여 9월 15일에는 북위 51도 45분 7초 지점까지 와서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반대편 대륙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 곳을 『Gulf of Tartary』라고 명명했다.

Broughton은 대륙을 따라 남하하면서 해안선을 조사하였고, 10월 3일에는 우리나라 영역에 이르렀다. 그리고 10월 13일 밤 부산 용당포에 닻을 내리고 1주일간 머물다가 떠나갔다. 이 때 Broughton 일행이 부산항을 약측 하였고, Chosan Harbour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Broughton 일행은 일본어 혹은 조선어 통역을 가지지 못했기에, 그들이 용당포에 정박해 있을 동안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었다. 그가 물려든 구경꾼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손짓 발짓으로 물어볼 때, 주민들은 조선이라고 말 한 것이, 항구 이름이 조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Chosan Harbour란 이름이 생겨났다.

동래부에서는 Broughton 일행을 조난자로 취급하여 음식과 식수를 주고 뿔나무도 주었다. Broughton은 1주일간 정박하면서 아치섬(朝島)을 「Mudge Island」, 승두말을 「Cape Young」, 상이말을 「Cape Vashon」, 망미말을 「Magnetic Head」, 오륙도를 「Black Rocks」 등으로 불렀다. Broughton은 동해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3번째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정박하기는 그가 처음이다. La Perouse나 Colnett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정박하여 주민들과 접촉을 가진 적이 없다. Broughton은 상이말의 위치를 북위 35도 2분, 동경 129도 7분 7초로 조사했다.

Broughton은 1797년 11월 27일 마카오에 무사히 도착하여 동북아시아 탐험항해를 성공리에 마감했으며, 1799년 2월 영국으로 돌아왔다. 1795년 탐사항해를 떠난 지 4년만에 귀국했으나 모함인 Providence호를 좌초시킨 책임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만 했다. 다행히 그의 동북아시아 해역 탐사항해가 성공적이었기에 그 공으로 인하여 사면되었다. 그는 1804년 5월에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을 출판하여 우리나라를 서양세계에 소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한상복>>

V. 지 도

1. 한국자료 / 441
2. 동양자료 / 451
3. 서양자료 / 474

여 백

1. 한국자료

대한민국

도서번호 : AJ001126
 저 자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기관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년도 : 1995년
 구 성 : 1매 96.7x70.1cm(109x79cm)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해도는 1995년 5월 수로국 해도번호 제101호로 발행되었으며, 축척이 1:1,500,000이다. 북위 30도 40분-43도 30분, 동경 122도 20분-134도 00분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동해의 영문표기가 East Sea 이고, 황해는 Yellow Sea, 대한해협은 Korea Strait, 제주해협은 Cheju Haehyop 등이고, 울릉도가 Ullungdo, 독도가 Tokto로 나타난다. 한반도 전체를 조감하기 편리한 해도의 하나다. 《한상복》

大韓全圖(대한전도)

도서번호 : AJ001205
 저 자 : 대한제국학부편집국
 발행기관 : 대한제국학부편집국
 발행년도 : 1899년(光武3년)
 구 성 : 1매 33.8x23.5cm

이 지도는 1899년 발행된 대한제국 전도(全圖)로, 전국을 13도(道)로 나타내고 있

다. 위도의 범위는 33도에서 43도까지이고, 경도의 범위는 122도에서 131도까지인데, 지도에는 123도가 23도로 나와 있다. 울진 동쪽의 먼 바다에 울릉도를 표시하고, 그 북동쪽에 조그맣게 우산(于山)을 나타내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이 있고, 13도의 도계(道界)도 잘 나타나고 있다. 관찰사, 목사, 부윤, 군수, 부윤 겸 감리가 있는 곳을 기호로 표시했고, 당시 건설 중 또는 건설 예정인 철도도 표시되어 있다. 서양의 지리지식을 일본에서 수용한 것을, 다시 대한제국에서 수용하여 제작한 지도로, 서양의 지리적 지식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지도제작 기법이 약간 첨가되어 있다. 《한상복》

대한해협 및 부근

도서번호 : AJ001121

저 자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기관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년도 : 1994

구 성 : 1매 96.2x67.2cm

대한해협 및 부근(Taehan Haeyop (Korea Strait) and Approaches)은 1994년 9월 수로국 해도번호 F-139로 발행되었고, 축척 1: 500,000이다. 1993년까지 자료를 이용했고, 북위 33도 26분-36도 30분, 동경 128도 15분-133도 35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대한해협의 영문명칭을 Taehan Haeyop (Korea Strait), 서수도를 So Sudo (Western Channel), 동수도를 Tong Sudo (Eastern Channel), 동해를 Tong Hae 등으로 표기했다. 어업용 해도로 대한민국 전관수역, 일본국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어업자원 보호수역 등이 나타나 있다. 《한상복》

독도

도서번호 : AJ001667
 저 자 : 국립해양조사원
 발행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발행년도 : 2002년(제2판)
 구 성 : 1매 55x39.5cm

2000년 국립해양조사원 측량으로, 2001년 7월 해도번호 제179-1번, 축척 1:5,000으로 발행했으며, 2002년 2월 제2판이 발행되었는데, 소장된 자료는 2002년 2월 발행된 제2판이다. 해도의 범위는 북위 37도 13분 40초에서 15분 15초까지와, 동경 131도 51분 30초에서 53분 00초까지 이다. 독도의 영문 표기를 Dokdo로 했으며, 동도를 Dongdo, 서도를 Seodo라고 했다. 세계측지계(WGS-84)에 의거한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얻은 위치는 녹색으로 표시된 좌표를 읽도록 표시한 해도이기도 하다. 세계측지계(WGS-84)에 의한 위성항법장치로 얻은 좌표는 종래의 좌표보다 위도는 남쪽으로 0.17분, 경도는 동쪽으로 0.15분 이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상복》

독도(獨島)

도서번호 : AJ001246
 저 자 : 국립지리원
 발행기관 : 국립지리원
 발행년도 : 1981년
 구 성 : 1매 74.0x104.5cm

독도(獨島) 지형도는 국립지리원에서 1980년 5월 측량하고, 1981년 축척 1:1,000의 정밀 지형도로 발행했다. 발행 당시까지 가장 정밀한 지형도로 평가 받았다. 동도(東

島)의 독도등대에 오르는 길이 남서쪽과 북동쪽으로 나뉘어 계단길이 있고, 해안(海岸)에는 선착장(船着場) 표시는 되어 있으나, 별다른 시설은 없다. 서도(西島)에는 남동쪽 해변에 어민보호소가 나타나 있다. 《한상복》

東海及黃海(동해금황해)

도서번호 : AJ001136

저 자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기관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년도 : 1965년

구 성 : 1매 67.5x97.5cm

동해 금 황해(東海 及 黃海, Tong Hae(Sea of Japan) and Yellow Sea)는 1965년 대한민국수로국 해도번호 849번으로 발행되었는데, 196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했다. 북위 31도-45도, 동경 117도-144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해를 Tong Hae (Sea of Japan), 동중국해를 Eastern China Sea, 황해를 Yellow Sea, 대한해협을 Korea Strait 등으로 영문 명칭을 부여했다. 《한상복》

동해 및 황해

도서번호 : AJ001089

저 자 : 수로국

발행기관 : 수로국

발행년도 : 1990년

구 성 : 1매 67.5x97.5cm

동해 및 황해(Tong Hae(Sea of Japan) and Hwang Hae(Yellow Sea)는 1990년 12월 대한민국 수로국 해도번호 849번, 제7판(1965년 6월 초판)으로 발행되었으며, 축척 1:2,500,000이다. 196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북위 31도-45도, 동경 117도-144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동해를 영문으로 Tong Hae (Sea of Japan), 동중국해를 Eastern China Sea, 황해를 Hwang Hae (Yellow Sea), 대한해협은 Taehanhaehyop(Korea Strait) 등 명칭으로 나타냈다. 《한상복》

최신판 우리나라전도

도서번호 : AJ001230

저 자 : 경화사

발행기관 : 경화사

발행년도 : 1980년

구 성 : 1매 73.4x48.9cm(78.8x54.5cm)

최신판 우리나라전도는 1980년 5월 서울에 있는 경화사(京和社)에서 발행한 지도로, 울릉도, 독도, 동해, 황해, 동한만, 서한만, 대한해협, 쓰시마해협 등 명칭이 있다. 대마도의 서쪽 수로를 대한해협이라 하였고, 대마도 동쪽 수로를 쓰시마해협이라 하였으며, 전라남도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 바다를 다도해라 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를 분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상복》

한국근해(일본서부)

도서번호 : AJ001120

저 자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기관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년도 : 1983년

구 성 : 1매 97.1x64.9cm (109x79cm)

한국근해(일본서부)(Adjacent Seas of Korea(Western Portion of Japan)는 1983년 12월 대한민국 수로국 해도번호 2509번으로 발행되었다. 197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북위 14도-42도, 동경 119도-140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동해의 영문 명칭이 Japan Sea, 한국해협이라는 이름으로 Korea Strait, 제주해협이 Jeju Haehyob, 황해가 Yellow Sea, 울릉도가 Ulreung Do, 독도가 Dog Do 등 영문명칭으로 나와 있다. 이 해도는 1978년 8월 발행된 일본해도 INT 509를 복제 수정한 것이다. 《한상복》

한국남부해역 해저지형도

도서번호 : AJ001241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국해양개발연구소
발행년도 : 1979년
구 성 : 1매 55.0x84.0cm

한국남부해역 해저지형도(Bottom Topography of Southern Sea of Korea)는 1979년 한상복 작성, 한국해양개발연구소 발행으로 1978년 자료까지 이용해서 제작하였다. 대한해협의 영문 명칭을 Korean Channel이라고 했다. 《한상복》

한국동부해역 해저지형도

도서번호 : AJ001235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국해양개발연구소
발행년도 : 1979년
구 성 : 1매 72x46cm

한국동부해역 해저지형도(Bottom Topography of Eastern Sea of Korea)는 1979년 한상복 작성, 한국해양개발연구소 발행으로, 1978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했다. 북위 34도-43도, 동경 127도-135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해를 Orient Sea, 울릉도를 Ulleung Do, 독도를 Dok Do 등 영문명칭으로 나타냈다. 동해에 관한 새로운 영문 명칭 부여의 시도이기도 했다. 《한상복》

한국동안

도서번호 : AJ001095
 저 자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기관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년도 : 1996년(제3판)
 구 성 : 1매 101.6x72.1cm

한국동안(Korea East Coast)은 1996년 4월 수로국 해도번호 S-428의 제3판으로 발행되었고, 축척 1:500,000 이다. 1996년까지 자료를 이용했으며, 북위 36도 55분-39도 30분, 동경 130도 40분-131도 20분의 범위를 가진다. 동해의 영문 명칭을 East Sea, 동한만을 Tonghan Man, 영흥만을 Younghung Man, 영일만을 Yong-il Man 등으로 표기했다. 만(灣)을 영문으로 Bay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말 식으로 Man 으로 나타내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부분은 분도(分圖) 형식으로 해도의 좌하단에 실고 있으며, 울릉도를 영문(英文)으로 Ullungdo, 독도를 Tokto로 표기했다. 제1판은 1992년 6월 발행되었다. 대한민국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어업자원 보호수역 등도 표시되어 있다. 《한상복》

韓國東海(日本海)及 日本諸島 南方諸島

도서번호 : AJ001097
저 자 : 해군수로국
발행기관 : 해군수로국
발행년도 : 1955년
구 성 : 1매 98.8x67.8cm (106x70.3cm)

한국동해 급 일본제도와 남방제도(韓國東海(日本海) 及 日本諸島, 南方諸島, Korea East Sea(Japan Sea) and Japanese Islands including Nanpo Shoto)는 1955년 대한민국 해군수로국 해도번호 501번으로 발행되었으며, 1955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편찬하였다. 북위 24도-47도와 동경 126.5도-146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해를 Korea East Sea (Japan Sea), 울릉도를 Ullung Do, 독도를 Tok To 등으로 영문 명칭을 부여했다. 《한상복》

한국에서 타이완

도서번호 : AJ001125
저 자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기관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년도 : 1994년
구 성 : 1매 110x79cm

한국에서 타이완(Korea to Taiwan)은 1994년 9월 수로국 해도번호 F-836으로 발행되었으며, 축척이 1:2,532,440이다. 199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했고, 북위 20도-41.5도, 동경 113.5도-132도 범위를 가진다. 요동만이 Liaodong Gulf, 발해가

Bo Sea, 황해가 Yellow Sea, 동중국해가 East China Sea, 제주해협이 Cheju Haehyop, 대한해협이 Korea Strait, 동해가 East Sea 등 영문명칭으로 나와 있다. 울릉도는 Ullungdo, 독도는 Tokto라고 영문표기 되어 있다. 어업자원 보호수역, 한일 공동규제수역, 일중 어업협정선 등이 표시되어 있다. 《한상복》

Korean World Map compiled by K. Kwon and H. Lee in 1402

도서번호 : AJ001607

저 자 : Sangbok D. Hahn

발행기관 : Hahnguk Academy of Hydrographic Nature

발행년도 : 1990년 (원본 1402년)

구 성 : 1매 37x23.5cm

1402년 원도면이 작성된 한국판 세계지도를 영문으로 소개한 것으로, 지도의 중요 부분에 영문 명칭을 삽입하고 있다. 1402년 권근(權近)과 이회가 편찬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아프리카대륙이 실제 모습과 같이 나타나 있는 최초의 세계지도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으며, 동서문화 교류의 뚜렷한 증거자료이기하다. 지도 원본의 크기는 세로가 164cm이고, 가로가 171cm이며, 아래 부분에는 권근이 쓴 발문이 있다. 이 발문으로 인해서 지도의 제작연대가 1402년임이 확실해진다. 권근의 발문은 그의 개인문집인 양촌집(陽村集)과 서운관지(書雲觀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속에 있는 우리나라 부분은 이회가 작성한 것으로 울진포 동쪽 바다에 울릉도(鬱陵島)라고 뚜렷한 섬으로 나타내고 있다. 울진현은 육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울진포는 해안선에 맞물리게 타원형으로 표시해서 육지 근처의 섬으로도 오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사정에 밝으면 이것이

섬이 아니고 울진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냥 지도만을 보아서 는 포구가 육지에 가까운 섬으로 오해할 수 있기도 하다. 이 지도는 1400년경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식이 동해안에 있는 울진현 울진포 동쪽 바다에 울릉도가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에는 동해 바다 멀리에 하나의 섬이 울릉도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이 지도는 알려주고 있다.

1402년 권근과 이회가 제작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부산포(釜山浦)가 있는 것으로 보아 1481년경 모사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가 일본의 龍谷大學에 보존되고 있다. 국내에는 1982년 이찬교수가 龍谷大學본을 모사한 것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전시되어 있으며, 1990년 세로 19.5cm, 가로 20.8cm로 축소한 천연색 축소본과 영문해설문 「Korean World Map compiled by K. Kwon and H. Lee in 1402」을 첨가하여 500부 한정판으로 출판해서 동서문화 교류의 뚜렷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권근의 발문에 의해서 이 세계지도가 이택민의 성교 광피도, 청준의 혼일강리도, 조선도, 일본도 등 4가지 지도를 종합해서 편집하여 제작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도 중요하다. 《한상복》

2. 동양자료

1875년 출판된 부산항

도서번호 : AJ001580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6년
 구 성 : 1매 43.8x30cm

1875년 일본에서 발행된 조선국부산항(朝鮮國釜山港) 해도를 원본의 35%로 영인하고, 설명을 붙여서 1996년 한정판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 해도(海圖)는 1875년 7월 일본국 해군함정 제2정묘호 사관(士官)들이 부산항을 측량하고 곧 이어 일본해군수로료에서 발행한 것으로, 원도면의 크기는 93x78.6cm 이다. 1875년 당시의 부산항 모습뿐만 아니라, 그 때의 정세(情勢)까지 종합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역사적 기록으로 가치가 큰 해도이다. 1875년 7월은 조선이 개항하기 이전이지만, 당시 일본해군들은 초량의 왜관(倭館)에서 해도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영문으로 설명된 부분은 Korea East Coast에 있는 FUSAN HARBOUR로 나타내고 있다. 《한상복》

1876년 출판된 朝鮮東海岸圖

도서번호 : AJ001561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6년 (원본 1876년)
 구 성 : 1매 42x30cm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는 1876년 일본해군수로료(日本海軍水路寮)에서 발행한 러시아해도의 일본어판으로, 일본해도 제54호 개정판(초판 1875년 발행)인데, 여기서는 원본을 40% 축소하였다. 울릉도가 ソヤレス(소야레소)島로 나타나고, 독도의 서도가 オリウツ(오리우쯔)瀨, 동도가 メネライ(메네라이)瀨로 나타난다. 울릉도 북서쪽에 있는 섬을 점선으로 그리고 アルコナフク(아루고나후꾸)島라 하고 있다. 1860년 작성된 독도의 측면도 3가지가 그려져 있다. 한반도 동해안은 1854년 Pallada호가 측량한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점선은 당시 Pallada호의 항적을 알려주고 있다. 《한상복》

20만분지 1 지형도

도서번호 : AJ001264~AJ001326

저 자 : 조선총독부

발행기관 : 조선총독부

발행년도 : 1920년

구 성 : 63도엽 36.5x41.8cm(46.0x57.8cm)

한반도 전체의 20만분지 1 지형도 65매 중에서 육지도와 울릉도가 누락된 63매가 수집되어 있어서 한반도 지형을 20만분지 1로 살펴보기에 유익하다. 한 도엽은 위도 40분, 경도 1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쪽으로부터 제주도남부, 제주도북부, 흑산도, 진도, 고흥, 매가도, 목포, 순천, 마산, 부산, 군산, 전주, 대구, 경주, 어청도, 홍성, 공주, 상주, 영덕, 백아도, 남양, 충주, 영주, 울진, 백령도, 웅진, 경성, 춘천, 강릉, 삼척, 장산곶, 해주, 신막, 철원, 간성, 평양, 곡산, 원산, 장전, 선천, 안주, 영원, 함흥, 의주, 창성, 희천, 홍원, 북청, 성진, 초산, 강계, 장진, 갑산, 길주, 자성, 후창, 혜산진, 나남, 백두산, 회령, 경흥, 종성, 경원 등의 63도엽이 있다. 20만분지 1 지형도는 아직 영인본이 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원본의 중요성이 더욱 높은 상태이다. 《한상복》

50만분지 1 도별(道別) 지형도

도서번호 : AJ001161, AJ001164~AJ001173

저 자 : 조선총독부

발행기관 : 조선총독부

발행년도 : 1920-1932년

구 성 : 11도엽

1920년 초판이 발행된 1: 500,000 지형도로 각 도별 지도가 다음과 같이 소장되어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부분이 앞으로 보충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보관중인 각 도별 지형도의 발행년도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咸鏡北道). 1928. 59.2×44.8cm(65.5×55.4cm).

함경남도(咸鏡南道). 1928. 77.5×46.2cm(84.5×57.8cm).

강원도(江原道). 1928. 63.8×54.8cm(77.4×68.8cm).

경상북도(慶尙北道). 1932. 37.0×40.0cm(42.0×51.0cm).

경상남도(慶尙南道). 1932. 37.0×40.0cm(41.7×51.8cm).

충청남도(忠淸南道). 1932. 29.0×37.5cm(39.8×50.4cm).

충청북도(忠淸北道). 1920. 31.9×30.2cm(40.3×40.7cm).

경기도(京畿道). 1932. 35.5×43.8cm(41.8×56.6cm).

황해도(黃海道). 1932. 37.5×47.1cm(43.3×58.1cm).

평안남도(平安南道). 1933. 39.0×41.5cm(44.0×55.8cm).

평안북도(平安北道). 1920. 56.0×61.5cm(62.0×70.5cm).

《한상복》

5만분지 1 조선교통도

도서번호 : AJ001328~AJ001352
저 자 : 조선총독부
발행기관 : 조선총독부
발행년도 : 1926년
구 성 : 25도엽 37.0x43.6cm(45.6x57.8cm)

1926년 발행된 조선교통도(1:50,000) 25매(3색도)가 수집되어 있다. 백령도 4도엽, 옹진 8도엽, 원산 5도엽, 함흥 5도엽, 경흥 2도엽, 나남 1도엽으로 총 25도엽이 수집되어 있다. 5만분지 1 지형도와 교통도 사이의 관계를 밝혀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상복>>

5만분지 1 지형도

도서번호 : AJ001353~AJ001560
저 자 : 조선총독부
발행기관 : 조선총독부
발행년도 : 1921년
구 성 : 208도엽 36.8x40.8cm(42.5x54.0cm)

1917년 측도, 1920년 재판한 축척 1:50,000 지형도 총 208매가 원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평양 지도가 6도엽, 신막 지도가 9도엽, 옹진 1도엽, 백아도 2도엽, 장산곶 4도엽, 해주 3도엽, 곡산 8도엽, 안주 16도엽, 선천 12도엽, 희천 15도엽, 춘천 4도엽, 철원 11도엽, 울진 2도엽, 강릉 10도엽, 간성 7도엽, 장전 3도엽, 원산 9도엽,

길주 10도엽, 나남 12도엽, 창성 2도엽, 자성 1도엽, 영원 2도엽, 초산 1도엽, 강계 11도엽, 북청 13도엽, 갑산 4도엽, 장진 7도엽, 함흥 7도엽, 마양도 1도엽, 성진 2도엽, 홍원 6도엽, 후창 7도엽 등 208도엽이 수집 정리되어 있다. 5만분지 1 지형도는 위도 10분, 경도 15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20만분지 1 지형도 1도엽의 내용이 5만분지 1 지형도로는 16도엽으로 세분된다. 1910년대에 완성된 한반도의 지형측량 성과로 5만분지 1 지형도를 표준도형으로 정했으며, 20만분지 1 지형도는 5만분지 1 지형도 16도면을 축소해서 제작한 것이다. 5만분지 1 지형도는 영인본이 발행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나열된 지도 이외의 것들은 영인본을 참고할 수 있다. 또 영인본에서 뚜렷하지 아니한 부분 중에서 위에 소개한 도면들의 경우에는 직접 원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한상복》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도서번호 : AJ001669

저 자 : 長久保赤水(나가꾸보세끼스이)

발행년도 : 1779년

구 성 : 1매(영인본) 83x134.5cm

일본의 나가꾸보 세끼스이(長久保赤水)는 1775년(安永 乙未) 「日本輿地路程全圖」를 제작했으며, 1778년(安永七年) 출판허가를 받아서 1779년(安永八年) 개정판을 목판본으로 발행했다. 개정판 지도는 위도를 1도 간격으로 기입해놓고 있으며, 위도의 간격과 같은 길이의 경도선도 그려 넣어서 정사각형 격자선을 이루고 있다. 이 지도의 크기는 세로 83cm 이고, 가로가 134.5cm이다.

대마도(對馬島) 서북쪽 약 60해리(위도 1도에 해당하는 거리)에 조선(朝鮮)의 부산(釜山)을 그려놓았고, 그 위도를 36도 30분 정도로 했다. 隱岐(오끼)의 서북서쪽 약 90해리 거리에 松島(마쯔시마)를 그려놓고, 그 서북서쪽 20해리 거리에 竹島(다께시

마)를 그려놓았다. 松島(마쯔시마)의 위도는 북위 37도 40분쯤 되고, 竹島(다게시마)의 위도는 북위 37도 45분쯤 된다. 竹島(다게시마)의 설명에 ‘一云 磯竹島’라 하고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주를 보는 것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고 적어 놓고 있다.

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전도는 1779년 이후 여러 번 출판되었으며, 일본쪽에서 가까운 것이 松島(마쯔시마), 먼 것이 竹島(다게시마)로 되어있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1690년대 후반부터 먼 쪽의 것이 우산도(于山島), 가까운 쪽의 것이 울릉도(鬱陵島)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울릉도(鬱陵島)가 일본에서 부르는 竹島(다게시마)와 같았고, 우산도(于山島)는 일본에서 부르는 松島(마쯔시마)와 같았다. 이 지도는 1800년대 초기에 일본에 온 서양의 항해가들에게도 소개되어, 그들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외딴 곳에 있는 두 개의 섬 이름을 일본식으로 Matusima 와 Takesima 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 나라는 당시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서양인들이 찾아올 수 없었고, 따라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Oulangto 와 Oasan으로 소개되기는 1855년 한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프랑스의 지리학잡지에 실려 있어서 항해가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한상복>>

근세한국 5만분지 1 지형도

도서번호 : 독도 912.51 ㅎ155
저 자 : 조선총독부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1998년 (원본 1918년)
구 성 : 722도엽(상 344도엽, 하 378도엽)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대에 조사한 한반도의 5만분지 1 지형도를 중심으로, 그 후에 추가된 것들을 합하여 총 722도엽의 흑백 영인본으로, 상권이 제주도 남부 모슬포에서부터 해주 남호리까지 344도엽이고, 하권이 해주 장연으로부터 훈계동부까지

378도엽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조사를 시작한 것은 1910년 3월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국 관제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7년 8개월이라는 기간으로 토지조사를 계획했으나 1910년 8월 28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에서 계승해서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191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1918년 11월 토지조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한반도의 지형도가 완성되었는데, 1:50,000 지형도가 기본으로 되었다.

한반도의 지형도 제작에는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육지측량부에서 실제적으로 주관이 되어 일이 진행되었다. 위도와 경도를 동경천문대 기본치로부터 계산했으며, 표고도 평균해면을 정해서 결정한 과학적인 지형도이다. 1910-1918년간 한반도의 지형측량을 위한 측량표석(測量標石)은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개,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개, 소삼각(小三角) 1등점 6,297개, 소삼각 2등점 25,349점 등 도합 34,447점이나 되었다. 대삼각점은 2등삼각측량 정도의 정밀도에 해당하고, 소삼각점은 3등삼각측량 정도의 정밀도에 해당한다. 수준점(水準點)은 총 1,391점이었고, 평균해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천, 목포, 진남포, 원산, 청진 등 5개소에서 다음과 같은 기간에 조석관측이 이루어졌다.

인천: 1914년 1월-1916년 6월.

목포: 1912년 9월-1915년 12월.

진남포: 1913년 1월-1916년 6월.

원산: 1911년 9월-1915년 5월.

청진: 1911년 8월 1915년 5월.

삼각점이나 수준점의 설치에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했는데, 이 기관은 토지조사를 위한 한시적인 임시조직이었지만 직원이 3,000명 정도 되는 방대한 기구로, 총무과, 조사과, 기술과, 측지과, 제도과, 정리과 등 6개 과(課)로 구성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1918년 이루어진 지형도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만분지 1 지형도: 기본도형 일반지도 620도엽, 군사기밀지도 98도엽, 총 718도엽.

1만분지 1 지형도: 중요 도시 일반지도 41도엽, 군사기밀지도 13도엽, 총 54도엽.

2만 5천분지 1 지형도: 중요 지역 일반지도 87도엽, 군사기밀지도 57도엽 총 144도엽.

20만분지 1 지형도: 일반지도 65도엽.

50만분지 1 지형도: 도별지도 13도엽.

150만분지 1 지형도: 전국지도 1도엽.

250만분지 1 지형도: 전국지도 1도엽.

1918년에는 완성된 5만분지 1 지형도가 총 718도엽이었으나, 그 후 4개 도엽이 보충되어 이 영인본에서는 총 722도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 하나의 지도에는 측량된 날짜와 발행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 지형의 변화를 연구하는 목적에는 측량된 날짜가 더 중요하므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정측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초판과 각 개정판은 시대별로 지형의 변화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시대별 지형 변화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한상복》

大日本國沿海略圖 속의 독도

도서번호 : AJ001606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3년

구 성 : 1매 42x30cm

대일본국연해약도(大日本國沿海略圖)는 1867년 勝海舟이 57.5x65cm 크기의 목판본으로 발행했는데, 이는 영국해군성에서 1863년 발행한 「Japan and Korea」의 일본어판이 된다. 울릉도를 松島로 나타냈고, 독도를 리양고루도로꾸(リヤンコルト口ワアク)로 나타냈으며, 울릉도 북서쪽에 섬을 점선으로 그리고 竹嶋라 하였다. 1993년 3월 大日本國沿海略圖 속의 독도, Dokdo in Japanese Chart in 1867를 원

본 크기대로 일부분 영인본으로 발행해서 소개했다. 《한상복》

레지의 조선도(1721)

도서번호 : AJ001603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2년 (원도면 목판본 1721년, Fuchs 영인본 1943년)

구 성 : 1매 42x30cm

청(淸)나라 강희제(康熙帝)의 명(命)에 의해서 프랑스인 선교사 Jean Baptiste Regis (1663-1738)가 1709년 5월부터 1710년 7월까지 만주지방과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실측하고, 서울의 위도 측정치와 조선국 궁정에서 가져온 지도를 편집하여 만든 것이 조선도(朝鮮圖)이다. 이 지도는 1721년 목판으로 출판된 황여전람도 32장의 하나로 세로 54.2cm, 가로 40.2cm의 크기를 가진다. 지명(地名)은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다. 울진 남쪽에 있는 평해(平海)의 위치가 북위 36도 45분, 북경기점 동경 12도 40분 정도에 나타나고 있으며, 울진과 평해의 동쪽 바다에 천산도(千山島)와 울릉도(菴陵島) 두 개의 섬이 표시되어 있다. 千山島는 于山島(우산도)가 잘못 읽혀진 것이고, 菴陵島는 鬱陵島(울릉도)가 잘못된 것이다. 千山島는 북위 36도 45분, 북경기점 동경 12도 50분에 있고, 울릉도는 북위 36도 50분, 북경기점 동경 13도 5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무성할 울자는 자완 완자로도 읽혀진다.

그러나 이 지도에 나타난 두 개의 섬은 너무 육지에 가깝게 위치시켜서 일반적으로 동해 먼 바다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연상하기는 어렵다. 1992년 12월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에서 「레지의 조선도, 1721, Map of Korea by Regis」란 제목으로 이 지도에 설명문을 첨부하여 영인본을 500부 한정판으로 발행한 바 있으며, 원도면은 1943년 Fuchs의 영인본을 사용했다. 이 지도는 위도와 경도가 각기 30분 간격으로 격자선이 그려져 있어서 지도 제작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은 만주 쪽에서 실측한 것이기도 하다. 경도는 북경(北京) 천문대 기점의 경도인데,

London 기점 경도로는 116도 28분, Paris 기점 경도로는 114도 8분, Ferro 기점 경도로는 134도 8분에 해당한다. London 기점 경도는 Paris 기점 경도보다 2도 20분이 더 많고, Ferro 기점 경도는 Paris 기점 경도보다 20도 더 많다.

이 지도는 당빌의 조선도로 서양에 더 많이 알려졌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이 과학적으로 측량된 최초의 지도이면서, 위도와 북경기점 경도가 각기 30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수도(首都) 서울은 조선(朝鮮)이라는 명칭으로 북위 37도 40분, 북경 기점 동경 10도 40분에 위치시켰는데, 실제와 달리 내륙 깊숙이 자리 잡아서, 한반도 중앙부의 거의 중간에 있다. 압록강 입구는 북위 40도, 북경기점 동경 8도 10분으로 나타나고, 두만강 입구는 북위 42도 30분, 북경 기점 동경 14도 30분으로 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북위 34도, 북경기점 동경 8도 45분이 그 중앙부가 된다. 북위 38도 30분 선상에서 한반도의 폭은 북경 기점 동경 8도 30분에서 12도 35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상복》

舞水端至豆滿江

도서번호 : AJ001154

저 자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기관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년도 : 1909년

구 성 : 1매 94.5x62.0cm

무수단에서 두만강(舞水端至豆滿江) 해도(海圖)는 일본해군수로부 발행 해도 309호로, 1906-1907년 일본해군 측량으로 이루어졌다. 40도 35분-42도 30분, 129도 26분-131도 05분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1907년 당시의 두만강 하구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다. 《한상복》

三國接壤之圖

도서번호 : AJ002964
 저 자 : 林子平
 발행년도 : 1785년
 구 성 : 1매(38.5x26cm)

林子平(하야시 시헤이)의 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되어있는 지도중 하나로, 북위 38도, 경도 155도 20분에 鬱陵嶋에 해당하는 섬을 이름 없이 그려 놓고, 북위 38도 30분, 경도 159도에 竹嶋를 위치시키고 조선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상복》

實測朝鮮全圖

도서번호 : AJ001676
 발행기관 : 積善館(日本)
 발행년도 : 1894년
 구 성 : 1매 54.1x39.0cm

實測朝鮮全圖는 1894년 日本 積善館에서 발행된 지도로, 鬱陵島 竹島 于山島 로 표기된 하나의 섬이 경도 130도에 있고, 松島는 경도 131도에 있다. 《한상복》

鴨綠江口

도서번호 : AJ001137
저 자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기관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년도 : 1925년
구 성 : 1매 96.0x68.3cm

해도(海圖) 압록강구(鴨綠江口, Amunokku Kan)는 1925년 일본해군수로부 발행 해도 350번으로, 1921-1922년간 일본해군 측량자료와 중국해관자료를 이용하여 발행되었으며, 북위 39도 34분-40도 12분, 동경 123도 58분-124도 33분의 범위를 가진다. 압록강 하구 삼각주의 1922년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압록강을 사이에 둔 국경문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상복》

日本近海 海底地形圖

도서번호 : AJ001105~AJ001106
저 자 : 日本海上保安廳 수로부
발행기관 : 日本海上保安廳 수로부
발행년도 : 1966년
구 성 : 2도엽 52.9x91.3cm(76.0x108.0cm), 57.8x91.3cm(76.0x108.0cm)

일본근해 해저지형도 제1(日本近海 海底地形圖 第一, Bathymetric Chart of the Adjacent Seas of Nippon Sheet 1)은 1966년 일본해상보안청 수로부 해도 제6301호로 발행되었고, 북위 35도-48도, 동경 120도-150도 범위를 가진다. 朝鮮 Korea, 鬱陵島 등의 명칭이 보인다.

일본근해 해저지형도 제2(日本近海 海底地形圖 第二, Bathymetric Chart of the Adjacent Seas of Nippon Sheet 2)도 1966년 일본해상보안청 수로부 해도 제6302호로 발행되었고, 북위 18도-35도, 동경 120도-150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동중국해가 Eastern China Sea로 표시되어 있다. 《한상복》

日本近海演習區域一覽圖

도서번호 : AJ001084
 저 자 : 일본수로부
 발행기관 : 일본수로부
 발행년도 : 1971년
 구 성 : 1매 97x68cm(108x76cm)

일본근해연습구역일람도(日本近海演習區域一覽圖, Index Chart of Maneuver Areas of the Adjacent Seas of Japan)는 1971년 일본수로부 해도번호 6973호로 발행되었고, 북위 26도-46도, 동경 128도-146도의 범위를 가진다. 鬱陵島, 竹島 등의 표기가 되어 있다. 《한상복》

日本總部及附近諸海

도서번호 : AJ001152, AJ001153
 저 자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기관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년도 : 1919년
 구 성 : 2매 64.2x96cm, 63.2x96cm

일본총부 급 부근제해 I(日本 總部及 附近諸海 第一, The Whole Japan and the Adjacent Seas Sheet 1)은 1919년 일본해군수로부 발행(發行) 해도 1A번으로 발행되었으며, 1918년까지 자료가 이용되었다. 북위 30도-62도, 동경 100도-173도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日本海, 黃海, 東海(East China Sea 해당) 등 명칭이 있다.

일본총부 급 부근제해 II(日本總部及附近諸海 第二, The Whole Japan and the Adjacent Seas Sheet 2)도 1919년 일본해군수로부 발행(發行) 해도 1B번으로 발행되었으며, 1918년까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북위 30도에서 남위 17도까지와, 동경 100도-173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한상복》

日本海西部

도서번호 : AJ001101

저 자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기관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년도 : 1935년

구 성 : 1매 95.6x66.6cm(108.0x76.2cm)

일본해서부(日本海 西部, Western Portion of Nippon Kai)는 1935년 일본해군 수로부 발행 해도 162호로 발행되었으며, 1933년 일본해군 측량결과에 의했다. 북위 33도 40분-43도 30분, 동경 127도 15분-136도 00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鬱陵島(Uturyo To), 竹島, 朝鮮海灣, 對馬海峽(Tusima Kaikyo) 등이 나타난다. 《한상복》

조선총독부제작 1만분지 1 조선지형도 집성

도서번호 : 독도 912.51 ㅎ155
 저 자 : 조선총독부
 발행기관 : 경인문화사(영인본)
 발행년도 : 1990년 (원본 1917-18년)
 구 성 : 98면

조선총독부 발행의 1만분지 1 지형도를 모아서 흑백으로 영인한 지도첩으로 1910년
 대 회령, 청진, 나남, 경성, 성진, 북청, 함흥, 원산, 의주, 신의주급 안동, 정주, 선천,
 신안주, 안주, 평양, 진남포, 검이포, 황주, 사리원, 해주, 철원, 강릉, 춘천, 개성, 경
 성(서울), 영등포, 삼척, 수원, 충주, 포항, 상주, 김천, 조치원, 대전, 공주, 강경, 군
 산, 이리, 대구, 경주, 울산, 부산, 진해, 마산, 통영, 진주, 남원, 순천, 광주, 나주,
 목포, 해산진, 강계, 김제, 부여, 인천 등지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상복》

朝鮮八道之圖

도서번호 : AJ002965
 저 자 : 林子平
 발행년도 : 1785년
 구 성 : 1매(38.5x26cm)

林子平(하야시 시헤이)의 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되어있는 지도중 하나로, 북위 39도
 의 강능 동쪽에 鬱陵嶋 千山國을 크게 그려 놓고 있다. 《한상복》

最新極東大地圖

도서번호 : AJ001176

저 자 : 京城日報社

발행기관 : 京城日報社

발행년도 : 1939년

구 성 : 1매 72.0x48.3cm(78.8x54.7cm)

최신극동대지도(最新極東大地圖)는 1939년 서울의 京城日報社에서 발행한 지도로, 10S-55N, 95E-145E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鬱陵島(松島), 竹島, 東朝鮮灣, 西朝鮮灣, 朝鮮海峽, 對馬海峽 등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竹島는 다케시마로 우리의 독도를 표시하며, 울릉도는 일본인들이 松島(마쯔시마)라 불렀다. 《한상복》

最新實測日清韓三國圖

도서번호 : AJ001676

발행기관 : 積善館(日本)

발행년도 : 1895년

구 성 : 1매 39.0x54.1cm

최신실측일청한삼국도(最新實測日清韓三國圖)는 1895년 日本 積善館에서 발행한 일본 중국(청) 한국의 3국 지도로 松島와 竹島가 나와 있다. 《한상복》

韓國全圖

도서번호 : AJ001212
 저 자 : 博文館(日本)
 발행기관 : 博文館(日本)
 발행년도 : 1905년
 구 성 : 1매 (52.5x39.0cm)

한국전도(韓國全圖)는 1905년 일본 博文館에서 발행한 日露戰爭實記 第76編 부록으로 나온 지도로, 鬱陵島 松島, 竹島(リヤソコーレト岩), 東朝鮮灣, 西朝鮮灣, 朝鮮海峽 등의 명칭이 나오고 있다. 독도에 해당하는 리양꾸르가 竹島라고 표기된 최초의 지도이다. 《한상복》

咸興灣至舞水端

도서번호 : AJ001149
 저 자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기관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년도 : 1911년
 구 성 : 1매 61.5x94.5cm

함흥만에서 무수단(咸興灣至舞水端) 해도는 1911년 일본해군수로부 발행 해도 308번으로 발행되었는데, 1907-1908년 일본해군 측량 자료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39도 37분-40도 54분, 128도 25분-130도 00분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한상복》

海上交通保護擔任區域圖

도서번호 : AJ001224
저 자 : 吳鎮守府
발행기관 : 吳鎮守府
발행년도 : 1943년
구 성 : 1매 52.2x38.9(57.9x42.3cm)

해상교통보호담임구역도(海上交通保護擔任區域圖)는 1943년 2월 17일(昭和十八年二月十七日) 機密吳鎮命令 第一二號 吳鎮守府 戰時日誌 附圖 第一로, 독도해역이 진해경비부(鎭海警備府) 담당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도해역이 한반도의 진해경비부 담당으로 해상교통 보호 담임구역이 설정된 사실이 중요하다. 이 구역도는 35S-60N, 105E-175E의 범위를 가지는 도면이다. 《한상복》

黃海, 東支那海(東海)及 附近

도서번호 : AJ001133
저 자 : 日本水路部
발행기관 : 日本水路部
발행년도 : 1958년
구 성 : 1매 98.4x66.9cm

황해, 동중국해 및 부근(黃海, 東支那海(東海)及 附近, Yellow Sea, Eastern China Sea (Eastern Sea) and Approaches)는 1958년 일본수로부 해도번호 381호, 제6판(초판 1934)으로 발행되었고, 1933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편찬했다. 북위 12도-43도, 동경 114도-138도 범위를 가지며, 鬱陵島, 竹島가 표기되어 있고, 朝鮮海灣, 日本海, 東支那海(東海), 對馬海峽 등도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東海는 東支那海 즉 東中國海를 말한다. 《한상복》

黃海 東海 及 附近

도서번호 : AJ001133
 저 자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기관 : 日本海軍水路部
 발행년도 : 1934년
 구 성 : 1매 98.4x66.9cm

황해 동해 급 부근(黃海 東海 及 附近, Ko Kai To Kai and Approaches)은 1934년 일본해군수로부 해도 381호로 발행되었으며, 북위 11도 20분부터 43도 20분 까지와, 동경 113도 30분부터 138도 20분 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울릉도(鬱陵島), 다게시마(竹島), 조선해만(朝鮮海灣), 대마해협(對馬海峽) 등의 명칭이 나온다. 여기서 黃海는 한반도의 서해를, 東海는 동중국해를 이른다. 《한상복》

General Map of Eastern Asia

도서번호 : AJ001210
 저 자 :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Railways
 발행기관 :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Railways
 발행년도 : 1913년
 구 성 : 1매 67.5x45.8cm(73.5x50.5cm)

동아시아지도(General Map of Eastern Asia)는 1913년 일본 동경(東京)에서 일본 철도국이 영문으로 발행한 An Official Guide to Eastern Asia vol. I, Manchuria & Chosen이라는 Tourist Guide 삽입도로, 축척 1:12,000,000 이고, 8N-55N, 80E-150E 범위이다. 동해를 Sea of Japan, 달단만을 Gulf of Tartary, 동중국해를 Tung Hai(Eastern Sea), 서해를 Hwanng Hai(Yellow Sea) 등의 영문 명칭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상복》

Karte vom JAPANISCHEN REICHE

도서번호 : AJ001620
저 자 : Siebold
발행년도 : 1840년(영인본)
구 성 : 1매 39x50cm

Siebold의 일본도(Karte vom JAPANISCHEN REICHE)는 위도 1도와 Mijako 기점 경도 1도 간격으로 격자선이 있다. Greenwich 기점 경도 135도 40분이 Mijako 기준경도이다. 존재하지 않는 섬인 Takasima(I. Argonaute)를 37도 52분, 129도 50분으로 표시하고, 지도상에는 위도 1도 아래에 나타내고 Broughton에 의한 것으로 했는데 이는 Colnett의 잘못이다. 울릉도인 Matsusima(I. Dagelet)를 37도 25분, 130도 56분으로 표시하고, 지도상에는 위도 1도 아래에 나타내고 La Perouse에 의한 것으로 하였다. 《한상복》

Map of Chosen

도서번호 : AJ001247
저 자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기관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년도 : 1911년
구 성 : 1매 50.0x33.1cm(59.1x40.8cm)

조선도(Map of Chosen)는 1911년 조선총독부의 영문보고서 Annual Report for 1910-11 에 삽입된 지도로 축척 1:2,400,000이고, 33N-44N, 123E-132E 범위를 가졌다. 동해가 Sea of Japan, 서해가 Kokai or Yellow Sea, 대한해협이 서수도가 Chosen Channel, 동수도가 Tsushima Channel 등의 영문명칭으로 나타난다. 《한상복》

Map of Chosen

도서번호 : AJ001248

저 자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기관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년도 : 1917년

구 성 : 1매 52.8x33.0cm(58.5x39.3cm)

조선도(Map of Chosen)는 1917년 조선총독부(Government General of Chosen)에서 발행한 영문보고서 Annual Report for 1915-16에 삽입된 지도로, 동해가 Sea of Japan, 서해가 Kokai or Yellow Sea, 대한해협 서수도가 Chosen Channel, 동수도가 Tsushima Channel로 나와 있다. 《한상복》

Map of Chosen

도서번호 : AJ001163

저 자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기관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년도 : 1921년

구 성 : 1매 49.0x31.0cm(57.5x38.7cm)

조선도(Map of Chosen)는 1921년 조선총독부(Government General of Chosen)에서 영문판으로 발행한 Annual Report for 1918-21의 삽입도로, 축척 1:2,500,000이고, 33N-44N, 123E-131E의 범위를 가진다. 동해가 Sea of Japan, 황해가 Kokai or Yellow Sea, 대한해협 서수도가 Chosen Channel, 동수도가 Tsushima Channel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상복》

Ma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도서번호 : AJ001244

저 자 : Cartographic Publishing House

발행기관 : Cartographic Publishing House

발행년도 : 1982년

구 성 : 1매 45.3x66.8cm(52.8x75.0cm)

중국지도(Ma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1982년 중국 Cartographic Publishing House (China)에서 발행했으며, 동해가 Sea of Japan, 대한해협이 Korea Strait, 황해가 Huang Hai (Yellow Sea), 동중국해가 Dong Hai (East China Sea), 발해가 Bo Hai, 남중국해가 Nan Hai (South China Sea) 등의 영문명칭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Dong Hai(東海)를 동중국해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지도이다. 울릉도와 오키시마는 명칭 없이 그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한상복》

Reproduction der Karte vom Japanischen Reich nach Originalkarten und astronomischen Beobachtungen der Japaner von V. Siebold 1840

도서번호 : AJ001203

저 자 : Siebold

발행년도 : 1897년

구 성 : 1매

Reproduction der Karte vom Japanischen Reich nach Originalkarten und astronomischen Beobachtungen der Japaner von V. Siebold 1840은 Siebold의 Nippon 1897년판 삼입도면으로, 대한해협이 Canal v. Korai, 서수도가 Broughton Str., 동수도가 Krusenstern Str. 로 나오고 있다. 《한상복》

Road Construction Map of Korea

도서번호 : AJ001209

저 자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기관 :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발행년도 : 1908년

구 성 : 1매 72.3x46.5cm(78.2x50.8cm)

조선도로건설도(Road Construction Map of Korea)는 1908년 통감부에서 발행한 영문보고서 Annual Report for 1907에 삽입된 지도로 1907년의 도로 건설 현황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지도이다. 《한상복》

3. 서양자료

1798년 출판된 북서태평양

도서번호 : AJ001604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6년(원본 1798년)
구 성 : 1매 30x37cm

프랑스의 La Perouse 일행이 1787년 제주도 남단을 경유해서 부산근해와 장기갑 근처까지 접근했다가, 울릉도를 표징하고, 계속 동진하여 일본의 Cape Noto에 접근했으며, 방향을 북서쪽으로 돌려 북위 43도의 곳에서부터 대륙연안을 따라 북위 52도 해역까지 북상했다가, 사할린 연안을 따라 남하해서, 사할린과 북해도(北海道) 사이의 해협을 빠져 나와 쿠릴열도를 따라 캄차카 반도 남단에 이르면서 탐사활동을 한 것이 1797년 『La Perouse 항해도첩』으로 항해기와 함께 출판되었으며, 해도번호 제39호, 43호, 46호에 잘 나타나 있다. 1798년 영국의 Aaron Arrowsmith의 La Perouse의 탐사결과와 1797년까지 조사된 북서태평양 해역의 해양 지리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태평양해도 (Chart of the Pacific Ocean)」를 발행했다. Arrowsmith는 태평양을 9개의 해역으로 분할하여 그린 태평양해도는 각기 범위가 달라서 한반도 부근 해역이 나타나는 것은 북위 28.3도에서 61.4도까지와, 동경 105.7도에서 168도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윤곽선 안의 크기가 60.8x77.8cm 이고, 1798년 10월 1일 발행으로, 발행지는 No. 24 Rathbone Place London이다. 이 해도에는 다음과 같은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Sea of Japan: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동해).

Channel of Tartary: 사할린과 대륙 사이의 해협(달단만).

Strait of Corea: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협(대한해협).

Strait of Matsmai: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쓰가루해협).

- Perouse Strait: 흑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해협(소야해협).
 Sea of Ochotsk: 사할린,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사이의 바다(오호츠크해).
 Whang-Hai or Yellow Sea: 한반도와 중국대륙 사이의 바다(황해).
 Gulf of Pe-Tche-Lee: 발해만.
 Gulf of Leo-Tung: 요동만.
 I. Dagelet: 울릉도.
 C. Clonard: 장기갑.
 Isle of Tchoka or Sachalin: 사할린.
 Island of Insu: 흑카이도(北海道).
 Tschosan Harbour: 부산항.
 Thosang: 통영에 해당함.

Arrowsmith의 해도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해역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1797년 발행된 『La Perouse 항해도첩』보다 더 정리가 잘되어 있다. 그러면서 낱장으로 판매되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값싸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 해도를 낱장으로 판매하는 것은 획기적인 판매방법이었다. 보통은 해도 집 또는 지도첩 전체를 값비싸게 사야만했던 시절에 Arrowsmith의 개별판매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태평양해도는 인기가 높았다. 따라서 그 속에 담겨진 해양 지리적 지식도 효과적으로 알려졌다. 「Sea of Japan」과 「Korea Strait」는 1797년 출판된 『La Perouse 항해도첩』에서 시작되었지만, 1798년 Arrowsmith의 「태평양해도」로 널리 애용되면서 더욱 보편화되었다. Arrowsmith의 「태평양해도」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개정판을 여러 번 내어서 1800년대 초기 북동아시아 해역의 부속해 명칭 표준화에 기여했다.

해도(海圖)의 작성은 지리학자인 Arrowsmith 자신이 했으며, T. Foot가 조판(組版)하고, George Allen (1790-1821년간 활동)이 조각(彫刻)했다. 이 해도는 Joseph de Mendoza Rios (1763-1816)에게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동경(東經) 110도에서 서경(西經) 65도, 북위 60도에서 남위 55도의 해역을 186 x 237 cm 크기로 나타내서, 축척이 약 9백만분의 1이 되며, 9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태평양해도의 제일 상단 왼쪽, 즉 북서쪽의 것이 북서태평양해도가 되지만 이 이름은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북서태평양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간단히 양자강 입구에서 캄차카반

도까지의 해역이라고 말 할 수 있다. Arrowsmith의 태평양해도는 1798년 첫 출판 이후, 1808년, 1810년, 1814년, 1817년, 1818년, 1820년, 1822년, 1826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바다의 명칭에 관해서는 La Perouse의 항해도첩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1798년의 초판본에 나타난 것들과, 이들이 1808년판, 1814년판, 1826년판에서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1798년 초판본

- (1) 1793년 Lion과 Hindoostan의 황해 항적(航跡)과 수심(水深)기록, 1779년 Capt. Clarke의 캄차카행 항적과 1779년 Capt. Gore의 캄차카발 항적, Boussole과 Astrolabe의 1787년 항적 등이 나타남.
- (2) Sea of Ochotsk, Channel of Tartary, Sea of Japan, Strait of Corea, Whang-Hai or Yellow Sea, Gulf of Pe-Tche-Lee, Gulf of Leo-Tung 등의 바다 명칭 나타남.
- (3) I. Dagelet, C. Clonard, Tschosan Har., Thosang, Quelpert, Tsusima 등의 지명(地名) 나타남.
- (4) 발행지 주소가 No. 24 Rathbone Place, London으로 되어있음.

2. 1808년판

- (1) 1791년 James Colnett의 Argonaut 항적 추가됨.

3. 1814년판

- (1) 1791년 Argonaut 항적 없어짐.
- (2) Strait of Vandimen 추가됨.
- (3) 북위 40도 30분, 동경 129도 24분에 White Rock, 북위 37도 50분, 동경 129도 50분에 Argonaut I. 추가됨.
- (4) 발행지 주소가 No. 10 Soho Square, London으로 변경되었음.
- (5) Additions to 1810 and 1814 표시됨.

4. 1826년판

- (1) Additions to 1810, and 1814, 1817, 1818. D'o to 1820, 22, 26으로 변경되었음.

한반도 주변 해역의 명칭이 Channel of Tartary(달단만), Sea of Japan(동해), Strait of Corea(대한해협), Whang-Hai or Yellow Sea(황해), Gulf of Pe-Tche-Lee(발해만), Gulf of Leo-Tung(요동만) 등으로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Arrowsmith의 1798년 태평양해도 초판본이 처음이며, 초판본에는 1797년의 Broughton 탐사결과도 실려 있다. Argonaut I.가 1810년판부터 표시된 것도 다른 곳에서는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한상복》

1852년에 조사된 한반도 동해안

도서번호 : AJ001599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3년(원본 1854년)
 구 성 : 1매 30x42cm

프랑스 군함 Capricieuse호는 세계일주 항해를 위해서 1850년 5월 28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Toulon항을 출항하였다. 함장 Rocquemaurel의 지휘로 1851년 3월 3일에 마카오에 도착해서 극동해역의 조사에 착수했다. 1852년 7월 25일에는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와서 한반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Argonaut Island의 확인작업을 하였는데 찾아내지 못하고, 북위 38도에서 43도에 이르는 한반도 동북해안을 조사하였다. 탐험항해에서의 위치 결정과 해도 제작은 Mouchez가 담당했다. 이들은 8월 18일 당빌만을 벗어나고 8월 21일 혼슈와 북해도 사이의 해협을 통해 동해를 빠져나갔으며, 1853년 9월 13일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올라, 이듬해인 1854년 3월 15일 Toulon에 돌아왔다.

이들의 한반도 동북해안 조사 결과는 1854년 프랑스 해도 제1467호로 출판되었는데 「Reconnaissance Hydrographique de la COTE ORIENTALE DE COREE et d'une partie DE LA TARTARIE CHINOISE reconnue par la Corvette la Capricieuse」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해도는 1993년 4월 한수당자연환

경연구원에서 「1852년에 조사된 한반도 동해안, East Coast of Korean Peninsula Surveyed in 1852」 라는 명칭으로 44% 축소 영인본을 발행했다. 1854년에 출판된 해도에 해안선과 해역의 명칭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C. Ducos, C. Duroch(수원단), I. Mouchez(난도), P. Codrica(압룡단), Golfe de Coree(동한만), Baie Younghing(영흥만), Ile des Pecheurs(여도), I. du Nord(고도), I. Boisee(신도), P. Desfosses, P. Trompeuse, Baie Broughton(함흥만), P. Providence, C. Rouge, C. du Petit Thouars(황단단), C. Bruat(무수단)

여기서 북위 38도에서 40도까지는 가능한대로 모두 기록했고, 북위 40도 이북에서는 중요한 곳만을 간단히 정리했다. 이들은 Korea Gulf와 Younghing Bay를 명명하고, 함흥만에 해당하는 곳을 Broughton Bay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원단을 Cape Duroch, 황단단을 Cape Petit Thouars, 무수단을 Cape Bruat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1854년 출판된 해도는 한반도 동북부 연안의 서양식 별칭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며, 독도를 Liancourt로 나타낸 초기의 해도이기도 하다. 《한상복》

1855년 출판된 조선지도

도서번호 : AJ001601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6년(원본 1855년)

구 성 : 1매 45.5x33cm

1855년 발행된 Bulletin de la Societe de Geographie(Paris) 제4 Series, 제 9 권에 있는 지도로, 지도의 자세한 명칭은 「COREE d'Apres l'Original dresse par Andre Kim en 1846 et apportee par M. de Montigny, reduit a la moitie par V. A. Malte-Brun 1855」 이다. 1846년 김대건신부가 원도면을 제공한 지도가

1855년 Parris 지리학잡지에 소개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37.5x30.3cm이다. 울진(Oultin)과 삼척(Samtsek) 중간 동쪽 바다 멀리에 울릉도(Oulangto)를 그려놓고, 그 동쪽에 우산도(Ousan)을 그려 놓아서,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잘 그려놓은 지도이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도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서양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소개한 최초의 지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도는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지 못하기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Oulangto(울릉도)와 Dagelet의 관계도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

압록강 하구 남부는 원도면을 반으로 축소했지만, 그 북쪽은 6분지 1로 축소해서 별도 처리하여, 함경도나 평안도보다,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을 상대적으로 더 정밀히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조선8도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Hamkiengto(함경도), Pienganto(평안도), Houanghaito(황해도), Kanguento(강원도), Kiengkeito(경기도), Tsoutsengto(충청도), Tsenlato(전라도), Kiengsangto(경상도),

각 도(道)를 TO로 표기한 특징을 가지며, 한양 즉 서울을 Aniang ou Seoul로 표기하고 있어서, 서울을 Seoul로 표기하는 최초의 지도가 되었다. 《한상복》

아시아지도(Map of Asia, 1615)

도서번호 : AJ001680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2년(원본 1615년)

구 성 : 1매 25x38cm

말라카 태생의 포르투갈 지도제작자 Manoel Godinho de Heredia(1563-1623)가

1615년 제작한 지도로, 한반도를 「Coria」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를 「Mar Coria」라 하여서, 서양에서 동해 명칭을 부여한 초기의 지도이다. 1992년 10월 「아시아 지도, Map of Asia 1615」라는 명칭으로 지도 설명과 함께 원본 크기와 같은 영인본으로 발행되었다. 《한상복》

조선지도(1747)

도서번호 : AJ001602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2년(원본 1747년)

구 성 : 1매 38x25cm

영국의 지도학자 John Green은 당빌의 중국령달단전도 중에서 한반도 부분을 수정 편집하여 『A Map of Quantong or Lyautong Province and the Kingdom of Kau-li or Korea』라는 지도를 제작하고, 1747년 Astley판 『New General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 제4권에 수록해서 널리 알려졌다. 세로 27cm, 가로 22cm의 크기를 가진 이 지도는 북경기점 동경과 함께 Ferro 기점 동경도 적어놓아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북경기점 동경 13도를 Ferro 기점 동경 147도 20분으로 해서 두 기점간의 차이를 134도 20분으로 정하고 있는 셈이다.

당빌의 Fan-ling-tao가 Fang-ling-tau로 변했으며, Tchian-chan-tao는 Chyan-shan-tau가 되었다. d'Anville은 불어로 기술했고, Green은 영어로 기술한 차이가 있는데 그 철자법이 약간 달리 표현되었다. 당빌의 Ping-hai는 Green의 Ping-hay와 일치한다. Green은 황해를 Whang-Hay or Yellow Sea라 하고 한반도 동쪽 바다를 Sea of Korea로 명명했다. 당빌의 Toui-la-tao를 Twi-ma-tau라고 하여 對馬島의 중국식 발음에 더욱 근접시켰다.

이 지도는 북위 33도 10분과 북경기점 동경 11도 10분(Ferro 기점 동경 145도 30분)에 Quelpaert 라는 커다란 섬을 그려놓고 있어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

전까지 우리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서양지도가 되었다. 프랑스의 지도학자 Bellin은 1764년 Green의 지도를 붙여판으로 내면서 제목을 「Carte du Royaume de Kau-Li ou Coree」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에서 원본 크기대로 영인본 500부를 「조선지도, 1747, Map of Korea Compiled by John Gree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 지도를 보면 평해 앞 바다에 있는 두 개의 섬이 당벌의 지도에서처럼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지도는 당벌의 조선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Quelpaert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Ferro기점 경도와 북경기점 경도를 함께 적어놓아서, 서양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편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상복》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와 독도(1864)

도서번호 : AJ001600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2년

구 성 : 1매 42x30cm

이 해도는 1864년 프랑스 해군성 해도번호 제2150호로 출판된 CARTE DES ILES ET MERS DU JAPON을 48%로 축소하고, 설명을 첨가한 것으로, 울릉도가 Matsusima I. 혹은 Dagelet로 나오고, Rc Boussole, pt Seal도 나타난다. 독도는 Res. Liancourt dec. par les Fr. en 1849 en Ang. I. Hornet, en Russe Menelai et Olivutsa 라고 설명하고 있다. 울릉도 북서쪽의 섬은 점선으로 그리고, Takosima ou Argonaute P. D.로 하여 존재에 대해 의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해도가 출판되었을 당시에는 경도(經度)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프랑스해군에서는 Paris 기점 경도를 사용하고 있기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영국 Greenwich 표준과는 2도 20분의 차이가 난다. 즉 Paris 기점 동경 130도는 London 기점 동경 132도 20분이 된다. 《한상복》

Aeronautical Charts

도서번호 : AJ001228
저 자 : U. S. Army
발행기관 : U. S. Army
발행년도 : 1964년
구 성 : 14도엽 46.0x54.0cm (55.7x72.0cm)

1964년 주한 미8군 특별판으로 발행된 25만분지 1 항공도로, 남한을 총 14도엽의 지도로 편집했다. 군용지도이면서 한반도 남부 전체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위도 1도와 경도 1.5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Cheju-do), 목포(Mokpo), 여수(Yosu), 광주(Kwangju), 전주Chonju), 부산(Pusan), 서산(Sosan), 대전(Taejon), 안동(Andong), 서울(Soul), 춘천(Chunchon), 삼척(Samchok), 남천점Namchonjom), 화천(Hwachon) 등의 14도엽이 있다. 서해가 Yellow Sea, 동해가 Sea of Japan, 남해가 Korea Strait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서울이 Soul로 되어 있다. 지도의 최동단이 동경 130도 30분이므로 독도에 관한 정보는 없으나, 울릉도는 삼척 도면에 별도(別圖) 형식으로 삽입했으며, 1964년 당시 미8군에서 사용하던 한반도 지명(地名)의 영문표기에 관한 우수한 정보가 많이 있다. 《한상복》

Carte de CORÉE

도서번호 : AJ001193
저 자 : H. Zuber
발행기관 : la Societe de Geographie, Paris
발행년도 : 1870년
구 성 : 1매 22.7x14.4cm

조선도(Carte de CORÉE)는 1870년 H. Zuber가 Bulletin de la Societe de Geographie(Paris) 제5Series, 제19권에 발표했다. 울릉도를 I. Dagelet ou

Oul-leung 으로 나타내서 울릉도가 바로 Dagelet임을 밝혔다. Argonaut I.에 해당하는 섬은 없으며, 독도에 해당하는 섬은 지도가 Paris 기점 128도까지이므로 나타낼 수 없었다. 동한만을 Golfe Broughton 이라고만 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바다 명칭은 이 지도가 한반도만을 중심으로 했기에 나타나지 못했다. 대마도를 Is. Tsu-sima ou Tai-ma-to 라 하였고, 제주도를 I. Quelpaert ou Tjiei-Tjou, 흑산도를 I. de Mackau ou Hauk-san, 서울을 Seoul로 표기했다. 《한상복》

Carte Des DECOUVERTES faites en 1787

도서번호 : AJ001623

저 자 : La Perouse

발행년도 : 1797년

구 성 : 1매 49.8x69cm(58x81.5cm)

라 페루즈 1787년 발견도 제2(Carte Des DECOUVERTES faites en 1787. dans les Mers de Chine et de Tartarie par les Fregates Francaises la Bousole et l'Astrolabe. depuis leur Depart de Manille jusqu a leur Arrivee au Kamtschatka. 2e Feuille)로, Atlas du Voyage de la Perouse No. 46이다. 북위 37도 30분, 파리 기점 동경 129도에 Dagelet(울릉도)가 위치한다. 울릉도를 Dagelet 라는 별칭으로 소개한 효시가 되며, Ping-hay 동쪽 만 내에 두 개의 섬을 그려놓고, 위의 것을 Fanlin, 아래의 것을 Tchiang-chan으로 나타냈다. 장기갑을 C. Clonard 라는 별칭으로 불렀으며, 울릉도를 과학탐사에 의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정한 최초의 해도이다.

1797년 발행된 Atlas du Voyage de la Perouse에는 라 페루즈 1787년 발견도 제1(Carte Des DECOUVERTES faites en 1787. dans les Mers de Chine et de Tartarie par les Fregates Francaises la Bousole et l'Astrolabe. depuis leur Depart de Manille jusqu a leur Arrivee au Kamtschatka. 1ere Feuille)이

46.6×65.2cm(55.4×80.0cm)의 크기로 43번에 있으며, 장기갑을 C. Clonard 라는 별칭으로 나타냈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협을 Detroit de Cor e라 하였다.

항해도첩의 제39번 해도는 라 페루즈 1787년 발견 총도(Carte Generale des DECOUVERTES faites en 1787 dans les Mers de Chine et de Tartarie ou depuis Manille jusqu a Avatscha, par les Fregates Francaises la Bousole et l'Astrolabe)로 크기는 65.6×46.8cm(80.5×55.0cm)이다. 북위 13도-63도, Paris 기점 동경 110도-158도 범위로 마닐라에서 캄차카반도까지 포함한다. 북위 37도 30분, 파리 기점 동경 129도에 Dagelet(울릉도)가 위치하며, Pinhay 동쪽 만 내에 두 개의 섬을 그려놓고, 위의 것을 Fanlin으로 나타냈다.

항해도첩의 제44번 해도는 조선 다도해 분도(Plan de la Partie des isles ou Archipel de Cor e)로 47.2x67.1(58.4×82.3cm)의 크기를 가졌으며, 한반도 부분 no. 63의 위치를 북위 35도 00분 33초, Paris 기점 동경 126도 56분 40초 (London 기점 동경 129도 16분 40초)로 결정했다. 제45번 해도는 제주도, 울릉도 등 분도(Plan de la Partie de L,ile de Quelpaert et Dagelet)로 57.2×41.2cm의 크기이며, 제주도 남부, 울릉도 서부 분도(分圖)가 있다. 《한상복》

Carte des Huit Provinces du TCHAO SIAN

도서번호 : AJ001160

저 자 : Julius Heinrich Klaproth

발행기관 : Oriental Translation Fund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발행년도 : 1832년

구 성 : 1매 71x49cm

林子平의 朝鮮八道之圖 붙어판으로, 북위 39도의 Kiang Ling 동쪽 바다에 있는 큰 섬을 Thsian Chan Koue ou Tyu Ling Tao라고 했다. 불어(佛語)로 번역되어 서양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지도중 하나다. 《한상복》

Carte des TROIS ROYAUMES

도서번호 : AJ001184

저 자 : Julius Heinrich Klaproth

발행기관 : Oriental Translation Fund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발행년도 : 1832년

구 성 : 1매 71x50cm

林子平의 三國接壤之圖 붙어판으로, 북위 38도 30분, 경도 160도에 있는 섬을 Takenosima라 하고 'a la Coree'라는 설명이 있으며, 북위 38도, 경도 156도 20분에 이름 없이 섬 표시를 하였다. 불어(佛語)로 번역되어 서양세계에 널리 알려진 동북아시아 지도중 하나다. 《한상복》

Carte du Royaume de Kau-li ou Corée(조선도)

도서번호 : AJ001156

저 자 : Bellin

발행년도 : 1764년

구 성 : 1매, 20.5x18cm

1747년 John Green의 관동성 및 조선도를 붙어판으로 정리한 것으로, 1764년 Paris에서 발행된 Le petit atlas maritime: recueil de cartes et plans des quatre parties du monde 제3권 지도번호 55번으로 나오는 지도이다. Ping hay 동쪽 근해에 Chiang san tau 와 Fang ling tau 두 섬이 있으며, 한반도 동쪽 바다를 Mer de Coree 라고 하였고, 한반도 서쪽 바다를 Mer Jaune 라고 표기했다. 《한상복》

Carte Generale de L'OCEAN PACIFIQUE

도서번호 : AJ001112

저 자 : C. A. Vincendon-Dumoulin

발행년도 : 1853년

구 성 : 1매 59.6X89cm

프랑스 해군성 해도번호 제1264호 개정판(초판 1851년)으로 40N-68S, 90E-60W의 범위를 가진다. 울릉도가 Matsusima, 독도가 Liancourt, 울릉도 북서쪽에 Takasima가 있으며, 동해를 Mer du Japon, 황해를 Houang-Hai ou Mer Jaune, 대한해협을 Detroit de Coree 등으로 나타냈다. 독도가 Liancourt로 나타나는 최초의 해도이기도 하지만 태평양 전체를 나타내는 해도이기에 동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가진다. 《한상복》

Chart of the Coast of China and of the Japan Islands

도서번호 : AJ001327

저 자 : W. L. Maury and S. Bent

발행기관 : U. S. Navy

발행년도 : 1855년

구 성 : 1매 105x101cm

이 해도는 1856년 발행된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merican S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performed in the years 1852, 1853,

and 1854, under the command of Commodore M. C. Perry』 volume II에 삽입된 해도로, 「Chart of the Coast of CHINA AND OF THE JAPAN ISLANDS including the Marianas and a part of the Philippines」가 원래의 명칭이지만 중국과 일본 해안도에 해당하고, 한반도 부분도 당시의 지리적 지식을 충동원해서 작성했다. 울릉도가 Dagelet or Matsusima, 독도가 H. M. Sh. Hornet 1855로만 설명되고 있으며, 울릉도 북서쪽에 I. Argonaut(not existing) 으로 표시했다. Pinghai Bay 동쪽 연안에 점선으로 Tchian-shan-tao 와 Fanlingtao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해를 SEA OF JAPAN, 대한해협을 KOREA CHANNEL 이라 표기하고 있다. 《한상복》

A Chart of the Indian Ocean and a part of the Pacific Ocean

도서번호 : AJ001618

저 자 : W. Faden

발행년도 : 1984년 (원본 1817년)

구 성 : 1매 58.8x111.7cm(66.0x116.5cm)

47S-36N, 18E-192E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COREA, Strait of Corea, Whang-Hai or Yellow Sea, Tung-Hai or Eastern Sea, Eastern Sea(북서태평양 해당), Chinese Sea(남중국해 해당) 등의 바다 명칭이 있다. 1984년 발행된 Henry Stommel의 Lost Islands 부록 해도로 나왔다. 《한상복》

A Chart of the N. E. Coast of ASIA, and Japanese Isles with the Track of H.M.S. Providence and her Tender in 1796 and 1797

도서번호 : AJ001615

저 자 : W. R. Broughton

발행기관 : T. Cadell and W. Davies

발행년도 : 1804년

구 성 : 1매 50.3x69.5cm

아시아 북동해안도(A Chart of the N. E. Coast of ASIA, and Japanese Isles with the track of His Majestys Sloop Providence and her Tender in 1796 and 1797 under the Command of W. Rob. Broughton)로, Broughton의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 and round the World에 삽입된 해도이다. 당일의 조선도에서부터 알려진 동해안의 두 섬이 사라졌으며, Broughton은 1797년 한반도 동해안을 과학조사 하였기에 울릉도에 관한 기록은 없고, 부산이 Tshesan Harbour로 나타난다. <<한상복>>

Chart of the Northern Seas of China and Japan including the Discoveries of H.M.S. SAMARANG 1845

도서번호 : AJ001179

저 자 : E. Belcher

발행년도 : 1848년

구 성 : 1매 45.9X29.5cm (49.7X32.2cm)

1848년 출판된 『Voyage of H.M.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삽입도로, 북위 24도 0분-34도 40분, 동경 123도-130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Quelpart Island, Korea Strait 등의 명칭이 있다. 제주도가 정확히 측량되어서 정확한 해안선이 도면으로 나타나 있다. 《한상복》

A Chart of the World exhibiting the Track of M. de La Perouse and the Route of M. Lesseps across the Continent

도서번호 : AJ001182
 저 자 : La Perouse
 발행기관 : J. Stockdale Picadilly
 발행년도 : 1798년
 구 성 : 1매 33.8x60.0cm(37.8x62.8cm)

라 페루즈 항적 표시 세계지도로 1798년 London에서 발행된 영문판 라 페루즈 항해기에 삽입된 지도이다. 64S-80N, 15W-15W 범위를 가지고 La Perouse의 세계 일주 탐사 항적과 Lesseps의 캄차카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육로 여로(旅路)가 나타나 있다. 《한상복》

Chart Showing the Tracks of H.M.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도서번호 : AJ001178
 저 자 : E. Belcher
 발행년도 : 1848년
 구 성 : 1매 45.0x29.6cm (50.6x33.9cm)

1848년 출판된 『Voyage of H.M.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삼입도로, 남위 10도에서 북위 35도까지와, 동경 100도에서 130도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843-46년간 Samarang호의 항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상복》

China

도서번호 : AJ001180

저 자 : M. Huc

발행기관 : Schenck & McFarlane, Lonon

발행년도 : 1855년

구 성 : 1매 (24.6X35.2cm)

중국지도(Map of China)는 1855년 M. Huc의 The Chinese Empire(2nd ed.) English tr. (Original French in 1854) 첨부도로, 20N-42N, 95E-135E 범위이다. 동해가 Sea of Japan, 대한해협이 Strait of Corea, 황해가 Yellow Sea, 발해만이 G. of Petcheli, 요동만이 G. of Leao-Tong, 실존하지 않는 섬이 Argonaut I., 우리나라를 Corea 등의 영문명칭으로 기록했다. 《한상복》

CHINA(중국)

도서번호 : AJ001231

저 자 : British Naval Intelligence Agency

발행기관 : British Naval Intelligence Agency

발행년도 : 1944년

구 성 : 1매 50.5x69.5cm

중국(CHINA)지도는 1944년 British Naval Intelligence Agency에서 발행했으

며, 울릉도를 Matsu Shima (Dagelet), 독도를 Liancourt Rock (Hornet Is.)으로 표기했다. 대한해협을 표기 없이 서수도를 Tyosen Strait, 동수도를 Tsushima Strait로 표기하고, 우리나라를 Korea(Chosen)로 표기했다. 동해는 Sea of Japan 이고 황해는 Yellow Sea(Hwang-Hai), 동중국해는 East China Sea(Tung-Hai)로 나와 있다. 《한상복》

CHINA(중국)

도서번호 : AJ001232

저 자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기관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년도 : 1945년

구 성 : 1매 62.1x88.8cm (67.5x94.0cm)

중국(CHINA)은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45년 6월 호 부록 지도로, 울릉도를 Utsuryo To, 독도를 Take Shima (Liancourt Rocks)로 표기했고, 대한해협의 표기 없이 서수도를 Tyosen Strait, 동수도를 Tsushima Strait로 나타냈다. 우리나라를 Chosen (Korea)으로 표기했으며, 동해가 Sea of Japan, 황해가 Yellow Sea, 동중국해가 East China Sea 등으로 나오고 있다. 《한상복》

CHINA and JAPAN

도서번호 : AJ001186

저 자 : Keith Johnston

발행년도 : 1861년

구 성 : 1매 43.8x57cm

중국과 일본도(CHINA and JAPAN)는 1861년 Keith Johnston이 발행한

『The Royal Atlas of Modern Geography』의 48장 지도 중 34번째 지도이다. 울릉도가 Dagelet or Matsusima로 나타나고, 울릉도 북서쪽에 Argonaut가 점선으로 나타난다. 독도에 해당하는 섬은 없으며, 대한해협이 Channel of Corea로 나타난다. 《한상복》

CHINA divided into its great Provinces and the Islet of JAPAN(중국 및 일본도)

도서번호 : AJ001157

저 자 : Samuel Dunn

발행기관 : R. Sayer, London

발행년도 : 1774년

구 성 : 1매 29.1x42.8cm(41.9x55.9cm)

『A new Atlas of the Mundane System: or of Geography and Cosmography』라는 이름의 지도첩 속에 있는 29번째 지도로, 북위 20도-42도, Ferro 기점 동경 115도-155도 범위를 가지며, 우리나라가 COREA, 한반도 동쪽 바다 명칭이 Corean Sea, 한반도 서쪽 바다 명칭이 Hoan-Hay or Yellow Sea, 동중국해에 해당하는 바다가 Eastern Ocean으로 나타나 있다. 《한상복》

CHINA nebst COREA(중국 및 조선도)

도서번호 : AJ001181

발행년도 : 1749년

구 성 : 1매, 26.3x29.6cm(31.0x34.6cm)

독일의 Schawabe는 1747년부터 독일어본 Collection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1권에서 6권까지는 Astley Collection의 번역본이다. 1749년 북위 18도에서 43도까지

와, Ferro 기점 동경 114도에서 149도(134E Ferro를 북경 기준으로 함)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지도를 발행했는데, 그 제목은 CHINA nebst COREA und den benachbarten Laendern der Tartarey 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명칭을 Kao-Liqoue od Koenigr. Corea 등으로 하였고, 중국 동쪽의 바다를 Oceanus Orientalis od. Meer von China 라고 했다. 이 지도는 1747년 출판된 Astley판 항해기집 제4권의 첫 번째로 나오는 중국전도(Map of China)의 독일어본에 해당한다. 《한상복》

Chinese Empire and Japan

도서번호 : AJ001183

저 자 : C. Gutzlaff

발행년도 : 1838년

구 성 : 1매 27.6x36.6cm

1838년 London에서 발행된 C. Gutzlaff의 China Opened vol. 1 첨부 지도로, 15N-55N, 75E-145E 범위를 가지고 있다. 달단만을 Channel of Tartary, 동해를 Sea of Japan, 대한해협을 Str. of Corea, 황해를 Yellow Sea, 우리나라를 Corea, 발해만을 Gulf of Pe-che-li, 요동만을 Gulf of Leaou-Tung, 남중국해를 Chinese Sea 등의 영문명칭으로 표기했고, London 기점 경도 116도 15분을 북경 기점 0도로 했다. 《한상복》

Corea and Japan

도서번호 : AJ001681

저 자 : John Thomson

발행년도 : 1827년

구 성 : 1매 37.2x46.5cm

1827년 Edinburgh에서 발행된 A New General Atlas 74도엽중 38번째 지도로, 동해에 존재하지 않는 섬 Argonaut 와 울릉도인 Dagelet가 나타나고, Pinghai (평해) 앞 바다에 Fanting tao와 Tchianchan tao 도 나타난다. 《한상복》

CORÉE

도서번호 : AJ001195
저 자 : Delamare
발행기관 : Imp. Barousse, Paris
발행년도 : 1874년
구 성 : 1매 41.2x24.6cm

조선도(CORÉE)는 1874년 Dallet의 조선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ée)에 첨부된 지도이다. 울릉도가 Oul-leng-to로 되어있고, 그 동쪽 가까이에 Ou-san을 작게 표시하였으며, 울릉도와 우산도를 합하여 Is. Dagelet 로 나타냈다. 《한상복》

CORÉE

도서번호 : AJ001197
저 자 : R. Hausermann
발행기관 : Paris Imp. Beequet
발행년도 : 1880년
구 성 : 1매 48x31cm

조선도(CORÉE)는 R. Hausermann이 작성했으며, 1880년 Yokohama에서 발행된 한불사전에 삽입된 지도이다. 울릉도가 Oul-neung-to로, 죽도가 Ou-san으로 나타나고, 울릉도와 우산도를 합하여 Is. Dagelet로 했다. 《한상복》

CORÉE d'Apres l'Original dressee par Andre Kim en 1846

도서번호 : AJ001198
 저 자 : Andre Kim, V. A. Malte-Brun
 발행기관 : la Societe de Geographie, Paris
 발행년도 : 1855년
 구 성 : 1매 37.5X30.3cm

조선도(CORÉE d'Apres l'Original dressee par Andre Kim en 1846 et apportee par M. de Montigny, reduit a la moitie par V. A. Malte-Brun 1855)는 1855년 발행된 Bulletin de la Societe de Geographie(Paris) 제4 Series, 제9권에 있다. 1846년 김대건신부가 원도면을 그려서 De Montigny에게 전했고, Malte-Brun이 축소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울진(Oultin)과 삼척(Samtsek) 중간 동쪽 바다 멀리에 울릉도(Oulangto)를 그려놓고, 그 동쪽에 우산도(Ousan)를 그려 놓았다. 서양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소개한 최초의 지도이기도 하다. 1996년 8월 「1855년 출판된 조선지도, Map of Korea published in 1855」 영인본이 한정판으로 발행되기도 했다. 《한상복》

De Fer의 동아시아지도(1705)

도서번호 : AJ001581
 저 자 : 한상복
 발행기관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발행년도 : 1993년(원본 1705년)
 구 성 : 1매 26.7x37.7cm

Nicolas de Fer(1646-1720)가 Paris에서 1705년 제작한 동아시아지도(La Partie Orientale De L'ASIE)는 우리나라를 Royaume de Coree로 표시한 반도로 나타냈으

며, 1668년 초판이 나온 하멜표류기에 의한 지명(地名)을 기입한 지도중의 하나이다. 서울이 Sior로, 부산이 Pousan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에 “유럽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바다로 달단인들은 동해(Mer Orientale)라 부른다”라는 설명이 있으며, 일본 쪽에 오끼섬을 Ogui 혹은 Bacasa라고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이 나타나지 않으니, 독도에 해당하는 섬이 나타날 리도 없다. 제주도는 Quelparts와 Fungma로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Pousan)이 한반도 동해안의 남쪽에 있어서, 대마도(Suijsima)가 동해의 남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지도는 1700년경 서양인들의 동해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세로 23.1cm, 가로 33.5cm의 크기를 가진 이 지도는 원본 크기대로 1993년 7월 한정판으로 500부를 영인하여 연구 자료로 제공하였다. 1655년에 출판된 Martini-Blaeu의 Novus Atlas Sinensis(신중국지도첩) 속에 있는 일본도(Iaponia)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에 아무런 명칭을 적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 까지 이 바다는 서양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곳이었음을 나타낸다. 1655년 출판된 지도첩에서는 조선 팔도의 위도와 경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을 의미하는 경기(Kingki)가 북위 38도 0분, 북경 기점 동경 7도 40분으로 되어 있다. Blaeu는 북경의 경도를 145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1674년 북경에서 곤여전도(坤輿全圖)를 간행한 Ferdinand Verbiest(남회인)는 서울의 경도를 북경기점 10도 30분으로 정했으며 이 값은 우리나라에서 책력을 편찬하는데 기본 값으로 사용되었다. 1602년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를 목판으로 간행한 마테오 리치는 서울에 해당하는 곳의 위치를 북위 38도, 북경과의 경도 차이를 약 6도로 했으며, 북경은 복도(福島)에서 동경 129도로 한 바 있는데, 1705년 발행된 이 지도는 서양지도로는 특이할 정도로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지 않았다. 《한상복》

Die Aufnahmen an der sued Kueste der Mandschurei

도서번호 : AJ001188

발행기관 : Petermanns Geographischen Mitteilungen

발행년도 : 1858년

구 성 : 1매 24.5X19.2cm

만주남부해안선도(Die aufnahmen an der sued kueste der Mandschurei)는 1858년 발행 Petermanns Geographischen Mitteilungen에 있다. 울릉도가 Dagelet I., 독도가 Hornet In.(Oliwuz & Menelai d. Russ. Karten)으로 나타나고, 울릉도 북서쪽에 Argonaut I.를 점선으로 나타냈다. 동해는 Japanisches Meer, 황해는 Whang Hai oder Gelbes Meer이다. 《한상복》

Die Neuen Departements-Haupstaedte von JAPAN

도서번호 : AJ001187

저 자 : Leo Metschnikoff

발행기관 : Petermanns Geographischen Mitteilungen

발행년도 : 1876년

구 성 : 1매 24,5x18,8cm

일본도(Die Neuen Departements-Haupstaedte von JAPAN)는 1876년 발행된 Petermanns Geographischen Mitteilungen에 있는 지도로, 울릉도가 Matusima(Dagelet I.)로 나타나고, 울릉도 북서쪽에는 섬이 없다. 독도가 Liancourt In.(a. Franzosen) 또는 Hornet In.(a. Englaender)로 나타나며, 대한해협 서수도가 Broughton Str., 동수도가 Krusenstern Str.로 되어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상복》

Eastern Soviet Union

도서번호 : AJ001233

저 자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기관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년도 : 1967년

구 성 : 1매 48,1x63,3cm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67년 3월호 부록 지도로, 울릉도를 Ullung Do(Dagelet), 독도를 Take Shima (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다. 동해는 Sea of Japan이고, 황해는 Yellow Sea로 나와 있다. 《한상복》

General Map of Korea

도서번호 : AJ001216
저 자 :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발행기관 :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발행년도 : 1916년
구 성 : 1매 75.5x49.3cm

General Map of Korea(朝鮮地圖)는 1916년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 발행의 Trans.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 vol. 7, Part I 에 나오는 지도로, 鬱陵島가 Ul-Leung-Island로 표기되어 있다. 《한상복》

General Map of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도서번호 : AJ001204
저 자 : Isabella Bird Bishop
발행년도 : 1898
구 성 : 1매 25.7x27.1cm

한국과 주변국 총도(General Map of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는 1898년 Isabella Bird Bishop의 『Korea and her Neighbours』에 삽입된 지도로,

울릉도가 Matsu Shima(Dagelet)로 나타나고, 독도가 Liancourt Rock(Hornet Is.)로 나타난다. 한국에 관한 단행본에는 자주 한반도 지도가 삽입되고 있는데, 이 지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것으로, Bishop여사의 여행지가 표시되어 있다. 《한상복》

Islands of JAPAN with Corea, Manchooria and the New Russian Acquisitions

도서번호 : AJ001199

저 자 : A. H. Keane

발행기관 : D. Appleton & C., New York

발행년도 : 1884년

구 성 : 1매 30x21.8cm

일본도(The Islands of JAPAN with Corea, Manchooria and the New Russian Acquisitions)는 1884년 New York에서 발행된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vol. VII 『East Asia: Chinese Empire, Corea, and Japan』에 삽입된 지도로, 울릉도를 Dagelet I.로 표시하고, 독도를 Hornet Is.로 표시했다. 이 책은 1882년 발행된 불어본을 영어본으로 A. H. Keane가 편집한 것이다. 《한상복》

JAPAN

도서번호 : AJ001245

저 자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기관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년도 : 1984년

구 성 : 1매 92.5x27.0cm

일본(JAPAN) 지도는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84년 6월 호 부록 지도로,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에 있는 섬을 Tok Do (Liancourt Rocks)로 표기하였다. 제3국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수용한 사례의 하나다. 《한상복》

Japan and Korea

도서번호 : AJ001225

저 자 : Gilbert Grosvenor

발행기관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년도 : 1945년

구 성 : 1매 62.1x88.3cm(67.3x93.5cm)

일본과 조선(Japan and Korea) 지도는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45년 12월호 부록 지도로, 울릉도를 Utsuryo To (Ullung Do), 독도를 Take Shima (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 대한해협을 Korea Strait, 서수도는 Chosen Kaikyo, 동수도는 Tsushima Kaikyo로 표기했다. 《한상복》

Japan and Korea

도서번호 : AJ001227

저 자 : Melville Bell Grosvenor

발행기관 : Washington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년도 : 1960년

구 성 : 1매 63.1x48.1cm

일본과 한국(Japan and Korea) 지도는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60년 12월호 부록 지도로, 울릉도가 Ullung Do (Dagelet), 독도가 Take Shima (Liancourt Rocks), 대한해협이 Korea Strait, 동해가 Sea of Japan, 동중국해가 East China Sea, 황해가 Yellow Sea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울릉도에는 Namyang-dong, Taeha-dong, Chang-dong 등의 동(洞) 이름이 나와 있다. 대한해협(Korea Strait)의 서수도를 Western Channel, 동수도를 Eastern Channel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Cheju Do (Quelpart)라 하고 서울을 Soul(Seoul)이라고 했다. 《한상복》

JAPAN and KOREA

도서번호 : AJ001207

저 자 : Encyclopaedia Britannica

발행기관 : Encyclopaedia Britannica

발행년도 : 1903년

구 성 : 1매 26.3x38cm

1903년 발행된 대영백과사전 제10판 제34권 지도첩(Atlas)의 46번째 지도로, 울릉도가 Matsu Shima, 독도가 Hornet Is. (Liancourt Rocks)로 나타나고, 울릉도 북서쪽에 Taka Shima도 나오고 있다. 북위 30도에서 45도와 동경 124도에서 150도까지의 범위를 가지면서 Kurile Islands와 Lie-Kiu Islands and Formosa, Bonin Is.가 별도 삼입도면으로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명칭이 Korea, 동해가 Sea of Japan, 황해가 Yellow Sea(Hwang-hai), 동중국해가 Eastern Sea (Tung-Hai) 등으로 나타나 있고, 대한해협은 Korea Strait인데,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수로를 Western Channel, 대마도와 규슈 사이의 수로를 Eastern Channel이라고 적고 있다. 120 feet, 300, 600, 6,000, 10,000, 15,000 feet depth 등의 등심선(等深線)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한상복》

Korea, Nordost-China und Sued-Japan

도서번호 : AJ001202

저 자 : Ernst von Hesse-Wartegg

발행년도 : 1894년

구 성 : 1매 34.5x45.5cm

한반도 주변도(Korea, Nordost-China und Sued-Japan)는 1894년 Dresden에서 출판된 『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에 삽입된 지도로, 울릉도가 Matsu-schima(Dagelet I.)로 나타나고, 독도가 Liancourt (Hornet In.)로 나타난다. 독도의 서도가 Skala Oliwutsa, 동도가 Skala Menelai로 표시되고 있다. 《한상복》

KOREA oder Tscho-Sen der Japaner

도서번호 : AJ001190

저 자 : B. Hassenstein

발행기관 : Petermanns Geographischen Mitteilungen

발행년도 : 1883년

구 성 : 1매 53x27.5cm

조선도(KOREA oder Tscho-Sen der Japaner)는 B. Hassenstein이 작성했고, 1883년 발행된 Petermanns Geographischen Mitteilungen(PGM)에 첨부되어 있다. 지도의 동쪽 경계가 129도 30분으로 울릉도가 나타날 수 없긴 하지만 한반도를 정확하게 나타낸 지도로 평가된다. 《한상복》

Map of China

도서번호 : AJ001177
 저 자 : L. Oliphant
 발행년도 : 1859년
 구 성 : 1매 47.3x59.0cm(51.0x62.0cm)

중국도(Map of China)는 1859년 발행된 L. Oliphant의 『Narrative of the Earl of Elgin's Mission to China and Japan in the years 1857 '58 '59』에 삽입된 지도로, 북위 16도에서 42도 까지와 동경 96도에서 130도 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Corea, 동해가 Sea of Japan, 대한해협이 Strait of Corea, 황해가 Yellow Sea, 동중국해가 Eastern Sea, 발해만이 Gulf of Pechele, 요동만이 Gulf of Leatong, 동한만이 Broughton Bay 등의 영문명칭으로 나온다. 《한상복》

Map of CHO-SEN or COREA

도서번호 : AJ001189
 저 자 : William Elliot Griffis
 발행기관 : Charles Scribner's Sons
 발행년도 : 1882년
 구 성 : 1매 43x30.2cm

조선도(Map of CHO-SEN or COREA)는 1882년 London에서 발행된 William Elliot 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에 삽입된 지도로, 울릉도가 Dagelet Isd.로 나타난다. 지도의 동쪽 경계가 131도이므로 독도에 해당하는 섬은 나타날 수 없었다. 《한상복》

Map of Korea and Manchuria

도서번호 : AJ001208
저 자 : War Department, U. S. A.
발행기관 : National Geographical Magazine
발행년도 : 1904년
구 성 : 1매 106.0x85.6cm

Map of Korea and Manchuria는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04년 3월 호 부록 지도로, 울릉도는 명칭 없이 나타난다. 노일전쟁 발발로 인한 한반도와 만주 지방의 군사지도를 부록으로 발행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국을 Korea, 동해가 Japan Sea, 서해(황해)가 Yellow Sea, 남해가 Korea Strait로 나와 있다. <<한상복>>

Map of Manchuria

도서번호 : AJ001200
저 자 : H. E. M. James
발행년도 : 1888년
구 성 : 1매 30.9x37.6cm(34.9x41.4cm)

만주지도(map of Manchuria)는 1888년 발행된 H. E. M. James의 『The Long White Mountain』에 삽입된 지도로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가 잘 나타나고 있다. <<한상복>>

Map to Accompany the Notes on Manchuria

도서번호 : AJ001194
 저 자 : Alexander Williamson
 발행년도 : 1870년
 구 성 : 1매 24.5x30.6cm(26.5x32.6cm)

만주지도(Map to accompany the Notes on Manchuria)는 1870년 Rev. Alexander Williamson이 저술한 『Journeys in North China, Manchuria, and Eastern Mongolia; with some Account of Corea』 vol. 2 첨부도로, 38.5N-46.5N, 120E-132E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동한만을 Broughton Bay, 동해를 Japan Sea, 황해를 Whang-Hai or Yellow Sea, 발해만을 Gulf of Pe-chili, 요동만을 Gulf of Liau-Tung, 서한만에 해당하는 곳을 Pylades Shoal 등의 영문명칭으로 기록했다. 《한상복》

North West Pacific Ocean including Yellow, Japan & Okhotsk Seas, the Kuril Islands and Kamchatka

도서번호 : AJ001150
 저 자 : Admiralty, U.K
 발행기관 : Admiralty, U.K
 발행년도 : 1960년
 구 성 : 1매 63x76.5cm (71x86cm)

북서태평양(North West Pacific Ocean including Yellow, Japan & Okhotsk Seas, the Kuril Islands and Kamchatka) 해도는 1960년 영국해군성 수로부 해도 번호 2459번으로 발행되었으며, 1877-1934년 자료를 이용했다. 울릉도가 Utsuryo

To, 독도가 Take Shima, 대한해협이 Tsushima Kaikyo, 황해가 Hwang Hai (Yellow Sea), 동해가 Sea of Japan 등의 영문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한상복》

Pacific Ocean

도서번호 : AJ001618

저 자 : Admiralty, U.K

발행기관 : Admiralty U.K

발행년도 : 1984년 (원본 1859년)

구 성 : 1매 60.5x93.0(66.0x116.5cm)

태평양(Pacific Ocean) 해도는 1859년 영국해군성 수로부에서 발행했으며, 남위 60도에서 북위 61도와 동경 100도에서 서경 30도의 범위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Korea, 동해가 Sea of Japan, 대한해협이 Korea Strait, 황해가 Whang-ae or Yellow Sea, 남중국해에 해당하는 바다가 CHINESE SEA, 울릉도 북서쪽에 있는 실존하지 않는 섬이 Argonaut, 울릉도가 Dagelet, 독도가 Hornet, 동한만이 Broughton Bay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1984년 발행된 Henry Stommel의 Lost Islands 부록 해도로 영인하였다. 《한상복》

Pacific Ocean(North-West Part)

도서번호 : AJ001622

저 자 : Aaron Arrowsmith

발행기관 : Arrowsmith, No. 10 Soho Square

발행년도 : 1814년(영인본)

구 성 : 1매 628x79cm

Arrowsmith의 1798년판 해도에 1810년과 1814년 자료로 고친 개정판으로, 28N-62N, 106E-168E 해역을 포함하며, No. 10 Soho Square 주소 표시가 있다. I. Dagelet가 북위 37도 25분, London 기점 동경 130도 50분에 위치하고, Argonaut I. 가 북위 37도 50분, 동경 129도 55분에 위치하여 Colnett 결과를 나타낸 초기의 해도이다. Sea of Japan, Channel of Tartary, Strait of Corea, Hwang-Hai or Yellow Sea 등의 명칭이 있고, 한국을 Corea로 나타냈다. 《한상복》

Partie de la Chine

도서번호 : AJ001158

저 자 : Van der Maelen

발행년도 : 1827년

구 성 : 1매 41.5x49.5cm(53.0x69.0cm)

Van der Maelen의 Atlas Universel 제2편 Asie 지도번호 48호로, 42N-48N, 126E-136E 범위이다. 두만강 하구 연구에 참고가 되는 지도이다. 《한상복》

People's Republic of China

도서번호 : AJ001243

저 자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기관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발행년도 : 1980년

구 성 : 1매 73.5x91.3cm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지도는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80년 7월호 부록 지도로, 울릉도를 Ullung Do(Dagelet)로 표기했으며,

독도는 명칭이 없으나, 독도와 오끼시마 중간에 국경선을 표시하여 한국령으로 나타냈다. 《한상복》

Royaume de Corée(조선지도)

도서번호 : AJ001626

저 자 : d'Anville

발행기관 : Henri Scheurleer

발행년도 : 1989년 (원본 1737년)

구 성 : 1매

당빌(d'Anville, 1697-1782)은 1730년 『조선도(Royaume de Coree)』를 작성했는데, 그가 사용한 자료는 1721년 중국에서 목판인쇄된 『조선도(朝鮮圖)』였다. 조선도의 한문으로 되어있던 지명(地名)을 프랑스말로 바꾼 것이 당빌의 조선도인 셈이다. 당빌은 당대의 대표적인 지도제작자로서, 중국에서 황여전람도 제작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이 보내온 자료들을 정리해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당빌의 조선도는 1735년 Du Halde 에 의해서 처음으로 출판되었으며, 1737년 D'anville에 의해서 하나의 지도첩 형식으로 나왔다. 1737년 출판된 지도첩 『Nouvel Atlas de la Chine』가 더 널리 알려져서 당빌의 「조선도」 하면 보통 1737년의 것을 말한다. 당빌이 정리한 『신중국지도첩』은 당시에 출판된 가장 훌륭한 지도첩으로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을 “Hoang-Hai ou Mer Jaune”라고 명명했다. “Hoang-Hai”는 「黃海」의 중국식 발음이다. Mer Jaune은 영어로 Yellow Sea가 된다. 이 이름은 조선 팔도의 황해도(黃海道)에 기인한 것으로 그의 「조선도」에서 황해도를 “Hoang-Hai”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의 동쪽 바다에는 아무런 명칭을 기입하지 못했다.

울진(蔚珍)에 해당하는 곳을 Tchen이라고만 하였고, 평해(平海)를 Ping-hai로, 영해(寧海)를 Ning-hai라고 표기했으며, 울릉도에 해당하는 섬을 Fan-ling-tao라고 하여 무성할 울자보다는 자완 완자로 읽었던 것 같으며, 천산도(千山島)에 해당하는 섬을

Tchian-chan-tao 라고 했다. 대마도(對馬島)는 Toui-la-tao라고 하였다. 북위 36도 45분, 북경기점 동경 13도 해역에 두 개의 섬 이름이 Fan-ling-tao와 Tchian-chan-tao로 나타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이들 두 섬이 너무 육지에 가깝게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울릉도와 우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가 과학적으로 표정 될 때에는 이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도 되었다. 당빌의 조선도는 세로 51.8cm, 가로 35.3cm의 크기를 가졌으며 1989년 우리나라에서도 영인본이 나온바 있다. 지도에는 1도 간격의 위도와 1도 간격의 북경기점 경도의 격자선이 그려져 있으며, 위도와 경도는 각기 10분 단위의 눈금으로 표시되었다. 《한상복》

여 백

저자명색인

여 백

葛生修吉	227
岡庸一, 徳永勳美, 小松悦二	224
江原道誌刊行委員會	41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470, 471, 473
건설부 국립지리원	393
京各司(朝鮮)	33
京城日報社	466
경화사	445
高野雄一	262, 263, 265, 267, 269
關澤明清, 竹中邦香	273
Gutzlaff, C.	493
舊韓國政府 官報局	3
鞠德源	260
국립지리원	443
국립해양조사원	394, 443
宮崎道生	189
奎章閣(朝鮮)	117
Grosvenor, G.	500
Grosvenor, M.	500
芹田健太郎	268
Griffis, W.	231, 503
金健瑞	137
김명기	239, 241, 243
김병렬	236, 237
金普根	274
金富軾	99
金世鎬	45
金正明	272
Kim, A., Malte-Brun, V.	495
金子利喜男	255
金正浩	50, 54, 107
金宗瑞	44

金指南141
 吉田敬市411

ㄴ

羅燾佑120
 南九萬106
 內閣(朝鮮)49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U.S.A.429,433
 National Geographic Society491,497,499,507

ㄷ

Dahlitz, J.358
 d'Anville508
 大島蘭三郎187
 대한민국 수로국403,448,441,442,444,445,447
 대한제국학부편집국441
 Delamare494
 東京地學協會伊能忠敬記念出版編輯委員會199
 東萊監理署32
 Dunn, S.492
 Dzurek, D.355,371

ㄹ

La Perouse483,489
 Laver, R.323
 Ronald St. John Macdonald318

ㅁ

Maury, W., Bent, S.486
 Malanczuk, P.295

Macdonald, R.	318
McHugo, J.	331
Metschnikoff, L.	497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56
Miyoshi, M.	348
梶村秀樹	275
민족문화추진회	155

보

博文館(日本)	467
박지태	235
Van der Maelen	507
배설(裴說; Bethell, E.T)	5
Butterworth-Heinemann	352
法政大學 Ph.Fr.Von Siebold 研究會	229
Bellin	485
Belcher, E.	427, 488, 489
北澤正誠	216
備邊司	37, 79
Bishop, I.	498
Vincendon-Dumoulin, C.	486
Brownlie, I.	299, 362
British Naval Intelligence Agency	490
Blake, G., Hildesley, W., Pratt, M., Ridley, R., Schofield, C.	357
Blake, G., Topalovic, D.	354
Broughton, W.	436, 488
Blum, Y.	329
Brus, M.	379

보

寺島良安	19
山辺健太郎	218

Sharma, S.	376
徐居正	67
서울대학교 규장각	132,177
섬연구회	399
St John, R.	297,317,350
小林高壽	277,278,279
Society of Gentlemen(ed)	27
宋炳基	246
Shaw, M.	335
Smith, R., Thomas, B.	347
Svarlien, O.	313
承文院(朝鮮)	69
承政院	103
Symmons, C.	367,385
Siebold	470,472
シ-ボルト 先生渡來百年記念會	17
植田棲雄	285
深津榮一	253



Amer, R.	363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28,296
Amirahmadi, H.	365
安鼎福	70,102
Antunes, N.	319
Armstrong, P., Forbes, V.	321
岩波茂雄	191
Admiralty, U.K.	505,506
Adler, R.	327,360
Arrowsmith, A.	506
Eiriksson, G.	344
Encyclopaedia Britannica	501
呂一燃	223

영남대학교 박물관	160
禮曹 典客司(朝鮮)	143
禮曹(朝鮮)	76
O'Reilly, G.	302
Oliphant, L.	503
Ohlinger, F.	406
Öztürk, B.	292
吳鎮守府	468
吳天穎	183
Aldridge, J.	426
外部(朝鮮)	39,68
外部交渉局(朝鮮)	46
外事局(朝鮮)	31
War Department, U. S. A.	504
원경렬	53
Williamson, A.	50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325,326
U. S. Army	482
議政府(朝鮮)	35,47,138
議政府記錄局(朝鮮)	38
伊能忠敬記念出版物編輯委員會	201
伊藤一男	196
이병연	129
李山海	104
李相泰	81
이상태	146
이석용	244
李灝	7
이중학	404
이진명	57,414
이찬	158
李苻	59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386

International Bureau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332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333
日本 大藏省 理財局	204
日本 外務省	270
일본 육군참모본부	207
일본수로부	408,463,468
日本海軍水路部	411,460,462,463,464,467,469
일본해상보안청 수로부	462
一然	100
林子平	185,461,465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Railways	469

스

長久保赤水	455
田中周二	194
田村清三郎	254
鄭夢周	248
井上 清	214
丁若鏞	9
鄭容郁, 李吉相	247
정윤용	77
鄭麟趾	43
Jennings, R.	288
James, H.	504
제헌국회사무처	11
朝鮮總督府	22,24,26,452,453,454,456,465
Johnston, K.	491
Zuber, H.	482

스

Charney, J., Alexander, L.	338,343
川上健三	219

Chemillier-Gendreau, M.	368
塚本孝	286
春秋館(朝鮮王朝)	121

ㅋ

Carnegie Institution	307
Castellino, J.	337
Cartographic Publishing House	472
Carleton, C., Schofield, C.	311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498
Klabbers, J., Koskeniemi, M., Ribbelink, O., Zimmermann, A.	374
Klaproth, J.	484, 485
Keane, A.	499
King, J.	415, 420

ㅌ

太壽堂鼎	256, 283
太政官文書局	15
Thomson, J.	493

ㅍ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359
Perry, T.	425
Prescott, V., Schofield, C.	381

ㅎ

河鍊洙	284
Hassenstein, B.	502
Hausermann, R.	494
下條正男	28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67
한상복	58,391,397,405,446,451,458,459,474,477,478,479,480,481,495
한상복, 안유환, 강청미, 서영상, 진현국, 진경암, 하성학	400
Hahn, S.	449
韓致齋	175
Haller-Trost, R.	301
해군본부 수로관실	400
해군수로국	448
Hudson, M.	382,383
헨버트	169
Hulbert, H.	406
Hesse-Wartegg	502
弘文館	135
Faden, W.	487
皇城新聞社	13
黃遵憲	210
Franckx, E.	353
Huc, M.	490
Hill, N.	304
Heap, R.	434

해 제 자

책	임	이석용(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감	수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관, 법학박사)
해	제	김찬규(경희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문학박사)
		양태진(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장, 문학박사)
		이상태(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문학박사)
		이석용(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임영정(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문학박사)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한상복(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장, 이학박사)
교열편집		곽영조 김지영 박수진 전영준 조은정
		▷가나다 순

독도자료실 자료해제집

인 쇄 2004년 3월
발 행 2004년 3월

발행처 해양수산부
120-715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02)3148-6114, Fax(02)3148-6044-5
<http://www.momaf.go.kr>

인 쇄 **·애드파워**

305-80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16-6
☎(042)862-9607 Fax(042)862-4510
<http://www.addpower.co.kr>